발 간 등 록 번 호

최신 전기관계법령

2024. 1.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전력기술관리법령
1. 전력기술관리법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령
1. 전기사업법
2. 전기사업법 시행령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령
1. 전기공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3.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령
1. 전기안전관리법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기타 전기관련 규정
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고시
3. 전기설비기술기준
4.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6. 한국전기설비규정

에너지관계법령
1. 에너지법
2. 에너지법 시행령
3. 에너지법 시행규칙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1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1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승강기안전관리법령

1.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전력기술관리법령

1. 전력기술관리법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 - 203 - 3896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26.>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1., 2011. 7. 25., 2019. 12. 10.>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08. 12. 26.>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전문개정 2008. 12. 26.]

제6조의2 삭제 <2016. 1. 6.>

제6조의3 삭제 <2016. 1. 6.>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학력·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8조(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9. 12. 10.]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본조신설 2019. 12. 10.]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 감리 <개정 2008. 12. 26.>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 기술기준 " 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 2019. 12. 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이거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27.>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發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⑦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전력기술인 " 은 " 설계사 " 로, " 전력기술 용역업무 " 는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으로, " 인정 " 은 " 면허 " 로, " 경력수첩 " 은 "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 " 로 본다.<신설 2019. 12. 10.>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면허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08. 12. 26.]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인정,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2016. 1. 19.>
⑨ 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감리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로, "경력수첩"은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08. 12. 26.]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27.>

③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27.>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⑤ 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ㆍ감리업자가 설계ㆍ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1. 15.]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 12. 26.]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4.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전문개정 2008. 12. 26.]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려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7조(휴업 등의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ㆍ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개정 2008. 12. 26.>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8조의2(공제사업) ① 단체는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19조 삭제 <1999. 2. 5.>

제20조 삭제 <1999. 2. 5.>

제21조 삭제 <1999. 2. 5.>

제22조 삭제 <1999. 2. 5.>

제5장 보칙 <개정 2008. 12. 26.>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검사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 시 그 공무원의 성명, 검사 시간 및 검사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4조(비밀 유지)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25조(청문)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전문개정 2008. 12. 26.]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9. 12. 10.>

1. 삭제 <2016. 1. 6.>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08. 12. 26.]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9. 12. 10.>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6장 벌칙 <개정 2008. 12. 26.>

제27조의2(벌칙)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7조의3(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6.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 12. 26.]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5.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7.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8.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9.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전문개정 2008. 12. 26.]

제29조의2(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ㆍ제28조 또는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삭제 <2016. 1. 27.>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개정 2016. 1. 27.>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1조 삭제 <2002. 3. 25.>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6.]

부칙 <제5132호,19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기사협회"라 한다)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기사협회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중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를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4조 (설계ㆍ감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설계ㆍ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계ㆍ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53호,1997. 12. 13.>(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84호,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부칙 <제6673호,2002. 3.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로 고시한 전력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부칙 <제7428호,2005. 3. 3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 파산자 "를 " 파산선고를 받은 자 "로 한다.

<9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40호,2005. 12.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4> 까지 생략

<39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7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및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80호,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제3조(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의 집행계획 작성 및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부칙 <제9680호,2009. 5. 21.>(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부칙 <제10911호,2011. 7. 25.>(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9>까지 생략

<42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

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2조의2제5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4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4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70호,2013. 7.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5호,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41호,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지정ㆍ보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805호,2016. 1. 19.>(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6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60호,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02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2호,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사업은 계약을 말한다)한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부터 적용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5.] [대통령령 제33856호, 2023. 11.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 - 203 - 3896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16.>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2017. 1. 26., 2021. 1. 5.>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가.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ㆍ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나.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다. 제어장치
   라. 전기기계ㆍ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4. “전력사용설비”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ㆍ원방감시제어설비ㆍ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ㆍ빛ㆍ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본설계”란 설계 중에서 주요 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개략적인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를 말한다.
6. “실시설계”란 설계 중에서 기본설계의 검토, 설계지침,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시공 목적의 설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3조 삭제 <2020. 6. 9.>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5조(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3. 30.>

1. 법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 전력기술인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다른 연구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방법·절차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6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해당 연구 과제의 제안자
2. 해당 연구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구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4.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16.]

제7조 삭제 <2016. 7. 26.>

제7조의2 삭제 <2016. 7. 26.>

제7조의3 삭제 <2016. 7. 26.>

제7조의4 삭제 <2016. 7. 26.>

제7조의5 삭제 <2016. 7. 26.>

제7조의6 삭제 <2016. 7. 26.>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監理員)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2021. 3. 30.>

1. 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사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변경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2020. 6. 9.>

[전문개정 2009. 6. 16.]

제11조 삭제 <1999. 9. 30.>

제12조 삭제 <1999. 9. 30.>

제13조 삭제 <1999. 9. 30.>

제14조 삭제 <1999. 9. 30.>

제15조 삭제 <1999. 9. 30.>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6조 삭제 <1999. 9. 30.>

제17조(설계사의 면허)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18조(설계감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2016. 8. 11.>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ㆍ철도신호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차선설비ㆍ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9. 20., 2011. 4. 6., 2013. 3. 23., 2016. 7. 26.>

③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10. 9. 20., 2011. 4. 6., 2012. 1. 25., 2020. 9. 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삭제 <2009. 12. 24.>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7.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1. 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및 준공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그가 공사감리한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것

[전문개정 2009. 6. 16.]

제20조(공사감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개정 2021. 3. 30., 2022. 2. 8., 2023. 11. 15.>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1,0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감리원의 자격 인정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6. 16.]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24조(감리원의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현장이동 사항
2. 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항
3. 상벌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 경력 또는 감리원 보유 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25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9. 20., 2016. 8. 11.>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7. 26.>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6.>
[전문개정 2009. 6. 16.]

제25조의3(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8. 11.>
[전문개정 2009. 6. 16.]

제26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 사항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이 한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변경, 감리원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4와 같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⑥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의2(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5.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제18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ㆍ공사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집행계획의 공고를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의4(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시ㆍ도지사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기술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 우위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 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의6(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력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같은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5.]

제4장 보칙 <개정 2009. 6. 16.>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0. 9.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9조에서 이동 <2009. 7. 7.>]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2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법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력시설물 공사 중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

제5장 벌칙 <개정 2009. 6. 16.>

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架空) 송전설비 중 철탑기초 부분, 철탑조립 부분 및 가선(架線)연결 부분
2.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 부분

[전문개정 2009. 6. 16.]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 6. 16.]

부칙 <제15160호,1996. 10.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4 비고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자로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사무실 및 자본금과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자(전기분야 감리원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는 이 영에 의하여 감리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감리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원교육을 받은 전력기술인은 이 영에 의한 감리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신고서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부칙 <제15463호,1997. 8. 18.>(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부칙 <제15598호,1997. 12. 31.>(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93호,1999. 1. 29.>(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내지4& 생략

부칙 <제16560호,1999.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7호,2001. 2. 24.>(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 전가사업법 제2조제7호 "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 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 전기사업법 제48조 " 를 " 전기사업법 제74조 " 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 를 "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 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 전기사업법 제17조 " 를 " 전기사업법 제16조 " 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800호,2002. 12.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8조제4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신기술의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관련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경력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설계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 설계사면허 또는 2급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146호,2003. 11. 29.>(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4) 내지 <54>생략

부칙 <제18207호,2003. 12. 30.>(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 내지1(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6호,2005. 3. 8.>(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호중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으로, " 사회간접자본시설 " 을 " 사회기반시설 " 으로 한다.

1^ 내지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206호,2005. 12. 28.>(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⑫생략

부칙 <제19543호,2006. 6.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 보호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정을 받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제7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 만료 후 제7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최초 보호기간과 연장된 보호기간을 합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인정을 위한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급을 인정하고 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678호,2008. 2. 29.>(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제2항,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의4제3항 및 제30조제5항 중 " 산업자원부령 "을 각각 "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의4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7조의5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6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025호,2008. 9. 2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 「군사시설보호법」 "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3> 까지 생략

<12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와 별표 2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 중 "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12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540호,2009.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6호,2009. 7. 7.>(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4호,2009. 12. 24.>(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부터3)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356호,2010. 8. 2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4호나목2) 및 별표 2의 비고의 제4호나목2) 중 “ 「기능대학법」 ”을 각각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399호,2010. 9.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26호,2011. 1. 17.>(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 ”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한다.

2& 부터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86호,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설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535호,2012. 1. 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까지 생략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442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별표 1 비고의 제3호다목,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별표 2 비고의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945호,2014. 12. 30.>(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3@ 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205호,2016. 5. 31.>(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4& 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384호,2016. 7. 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4호,2016. 8. 11.>(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를 “ 「주택법 시행령」 제31조 ”로 한다.

제25조의3 중 “ 「주택법」 제2조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제3호 ”로 한다.

<5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806호,2017. 1. 26.>(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960호,2017. 3. 27.>(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243호,2017. 8. 16.>(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6호,2019. 10. 8.>(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770호,2020. 6. 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12호,2020. 9. 10.>(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 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76호,2021. 3. 30.>(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01호,2022.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의 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6>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434호,2023. 4. 25.>(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56호,2023.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1. 15.>

전력기술인의 자격(제9조제2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2년 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종목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 설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2. 위 표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석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라.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위 표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기술 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 과정 이상의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
   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위 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 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 병과, 시설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과명에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등 "전기"가 포함된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공학군 또는 공학부 등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전력기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심사위원회가 정한 전력기술 관련 학과목을 전체 이수학점의 30퍼센트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7.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전력기술 관련 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공사감리, 안전관리 또는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공병 병과, 발전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사람을 말하며, 그 경력 인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전력기술 관련 학과 및 학력·경력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1. 15.>

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특급 감리원	○기술사	
고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력기술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종목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 설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2. 위 표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석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라.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위 표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기술 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 과정 이상의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
   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위 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 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 병과, 시설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과명에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등 "전기"가 포함된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공학군 또는 공학부 등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전력기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심사위원회가 정한 전력기술 관련 학과목을 전체 이수학점의 30퍼센트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7.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전력기술 관련 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공사감리, 안전관리 또는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공병 병과, 발전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사람을 말하며, 그 경력 인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전력기술 관련 학과 및 학력·경력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공사 종류	총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비고: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 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고,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7. 26.>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종류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기술인력	자본금	
종합설계업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1억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전문 설계업	1종	전기 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3천만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1천만원 이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비고

1. 설계보조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인 전력기술인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감리업자가 설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2. 8.>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1. 감리업의 등록 기준

종류	등록 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장비명	대수
종합 감리업	특급감리원 2명 이상, 고급감리원 2명 이상 및 중급감리원 2명 이상을 포함한 8명 이상의 감리원	1억원 이상	절연저항 측정기(500볼트)	3
			절연저항 측정기(1천볼트)	3
			절연저항 측정기(1만볼트)	1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형 전류계(클램프미터)	3
			고압·특고압 검전기	3
			저압 검전기	3
			마이크로미터	3
			회로시험기(멀티테스터)	3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조도계(밝기측정기)	1
전문 감리업	특급감리원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감리원	5천만원 이상	절연저항 측정기(500볼트)	1
			절연저항 측정기(1천볼트)	1
			절연저항 측정기(1만볼트)	1
			접지저항 측정기	1
			클램프형 전류계	1
			고압·특고압 검전기	1
			저압 검전기	1

			마이크로미터 회로시험기 버니어캘리퍼스 조도계	1 1 1 1

※비고

1. 기술인력 중 50퍼센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설계업 등록을 한 자가 감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2. 감리업의 영업 범위

종류	영업 범위
종합감리업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발전·변전설비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전·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	70	100
나. 감리업자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	70	100
다. 감리업자등이 법 제12조의2제2	법 제30조제2항제1호	30	50	80

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라. 감리업자등이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30	50	80
마.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3호	50	70	100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30	50	80
사.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80	
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5호	50	70	10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 - 203 - 3896

제1장 총칙 <개정 2010. 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조 삭제 <2010. 9. 1.>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10. 9. 1.>

제3조 삭제 <2016. 7. 29.>

제4조 삭제 <2016. 7. 29.>

제5조 삭제 <2016. 7. 29.>

제6조 삭제 <2016. 7. 29.>

제6조의2 삭제 <2016. 7. 29.>

제6조의3 삭제 <2016. 7. 29.>

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7. 29.>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훈련의 교육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0. 6. 26.>
③ 교육수수료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4.>

④ 단체가 교육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4.>
[전문개정 2010. 9. 1.]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20. 6. 26.>
[전문개정 2010. 9. 1.]

제8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6.>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증명사진(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한다)
5. 경력사항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6. 26.>

1. 증명사진
2. 경력수첩 원본(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6. 7. 29.>

③ 영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6. 26.>

④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7. 29.>

⑤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개정 2020. 6. 26.>

⑥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6. 26.>

[전문개정 2010. 9. 1.]
[제목개정 2020. 6. 26.]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①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6. 26.>
② 삭제 <2020. 6. 26.>
③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및 경력(보유)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교육수수료"를 "수수료"로 본다.<신설 2011. 4. 4., 2013. 3. 23., 2020. 6. 26.>
[전문개정 2010. 9. 1.]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사용자에게 해당 전력기술인의 변경 요구. 이 경우 전력기술인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11조 삭제 <1999. 12. 3.>

제12조 삭제 <1999. 12. 3.>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개정 2010. 9. 1.>

제13조(전력기술기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전문개정 2010. 9. 1.]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하여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전기사업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3. 그 밖에 반복하여 시행되는 같은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 표준화 및 자재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수명을 연장하고 용량을 늘릴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

제15조(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6.>

1. 발급의 경우

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증명사진

나. 가목 외의 사람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증명사진

2. 재발급의 경우

가. 삭제 <2016. 7. 29.>

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증명사진

②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개정 2020. 6. 26.>

[전문개정 2010. 9. 1.]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일반 설계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 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기술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것

3. 설계도서에는 신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업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의 종류별로 제3항에 따른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란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명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9.>

1.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2.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③ 시ㆍ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제4항에 따라 설계감리자 변경확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18조(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①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개정 2010. 9. 1., 2020. 6. 26.>

② 삭제 <2003. 2. 6.>

③ 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 9. 1.>

④ 단체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0. 9. 1., 2020. 6. 26.>
[제목개정 2020. 6. 26.]

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①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 경력확인서를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 종류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 수행 시 감리원 수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발주자 등 관계자가 감리원 수첩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①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면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현황(변경배치 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다. 예정공사비의 총괄내역서 사본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치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1조의3(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23조제1항제1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현장 조사ㆍ분석
2.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

제23조(감리원의 관리)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원 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4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25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사용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변경 요구. 이 경우 감리원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5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원 수첩 원본
2.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장비명세서(감리업만 해당한다)
4.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6조(등록증의 게시 등) ①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ㆍ임직원 및 기술인력의 이력카드
3. 기술인력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5. 보유장비 명세서 및 증명서류
6. 계약 체결 현황 및 기술인력 배치 현황, 그 밖의 관계 서류

[전문개정 2010. 9. 1.]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1.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2.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퇴사자: 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으려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자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이를 기록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요청하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단체는 제5항에 따른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5호의5서식에 따라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7조의3(기술ㆍ가격 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5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6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8조(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삭제 <2016. 7. 29.>
2. 등록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았을 때(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았을 때에는 잃어버린 등록증을 다시 찾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0. 9. 1.]

제29조(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9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ㆍ양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양도ㆍ양수 신고서 또는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양수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다. 양도ㆍ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라. 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 규정에 따른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바.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합병 신고의 경우
   가.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나.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다.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라.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바.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신고만 해당한다)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30조(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② 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31조 삭제 <1999. 12. 3.>

제32조 삭제 <1999. 12. 3.>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개정 2010. 9. 1.>

제33조(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체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② 단체는 전력기술인, 감리원, 설계업자, 감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전문개정 2010. 9. 1.]

제5장 보칙 <개정 2010. 9. 1.>

제34조(수수료)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9. 1.]

제35조 삭제 <2017. 4. 7.>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및 책임감리원의 수시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조치의 순서: 2015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등록증 게시 의무 및 갖추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시의 제출서류 및 등록증 반납 요건: 2015년 1월 1일
6. 제29조의2에 따른 설계업 및 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2015년 1월 1일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보고 사항: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제49호,1996. 11.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시·도지사"를 각각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분야 10. 건축의 자격종목중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기술분야 4. 전기의 자격종목중 철도신호기술사란 다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감리 및 의장 기타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부칙 <제80호,1999. 7. 16.>(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2호,199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01. 4. 7.>(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 전기사업법 제39조 "를 " 전기사업법 제67조 "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5호,2003. 2.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4호,2005. 2. 2.>(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06.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성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교육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학력ㆍ경력자로서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의 등급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4의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설계감리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계감리자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369호,2006. 10. 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07. 11.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계업자ㆍ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08. 3. 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중 “ 산업자원부령 ”을 각각 “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의4제2항, 제7조 전단,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호의3 비고란 제1호ㆍ제2호, 별표 1호의4 비고란 제1호 중 “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 산업자원부 ”를 각각 “ 지식경제부 ”로 한다.

5)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47호,201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1.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2. 10. 5.>(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 지식경제부령 ”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령 ” 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 지식경제부 ” 를 “ 산업통상자원부 ” 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의 제1호 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 지식경제부 ” 를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 ” 로 한다.

4&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75호,2014.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6.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53호,2017.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20.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21. 4. 1.>(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 ”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448호,2022. 1.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0.9.1>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

(제6조의4제1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및 대상

가. 양성교육: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학력·경력에 따른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의 등급을 받으려는 사람

나. 전문교육: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자격 확인을 받은 사람

2. 교육내용 및 기간

종류	교육내용	교육기간
가. 양성교육	○ 소양 교육 ○ 전기 관련 법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 ○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전력기술인만 해당한다)	1주 (35시간 이상)
나. 전문교육	○ 소양 교육 ○ 전기 관련 법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행정실무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실무(전력기술인만 해당한다)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비고: 위 표 중 전문교육은 교육대상자의 등급,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구분·실시할 수 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9.1>

경력 산정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자격 · 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 · 공사 · 감리 · 유지보수 · 관리 · 진단 · 점검 · 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 관계 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 · 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 · 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 · 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 · 제조 · 검사 등 기술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 · 공사 · 감리 · 검사 · 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 · 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 · 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 · 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 · 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 · 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 · 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 · 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3.3.2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1. 참여전력기술인	50	참여한 전력기술인의 등급·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5	업체의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0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5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5. 업무 중첩도	10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비 고

1.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부실 벌점을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입찰공고기간 중 설계용역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자격심사 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13.3.23>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0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5. 업무 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6. 교체 빈도	5	감리원의 교체 빈도에 따라 평가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비 고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점·감점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이하 이 표에서 "시·도지사"라 한다) 및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이

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2점의 범위에서 가점,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할 수 있으나, 평가 결과 그 점수와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가점(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자격자인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4. 발주자 및 시·도지사는 입찰공고 또는 모집공고기간 중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 등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5.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 실적, 업무 중첩도, 교체 빈도 등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시·도지사는 사전자격심사 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공동도급으로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지역가산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5] <개정 2010.9.1>

설계업자의 **평가기준**(제27조의3제1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		30	별표 1의3의 평가 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2. 작업계획 및 기법		70	
	수행계획 및 기법	(25)	과업수행 세부 계획, 인원 투입,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작성기준	(30)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성, 자재 및 기기 선정의 적정성, 전기 관련 법령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 전력 공급의 신뢰성 및 무정전(無停電) 대책, 운전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 환경요인에 대한 검토,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신기술·신공법 등 도입	(8)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 기술 향상	(7)	보유장비, 설계개선 방안,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비 고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설계용역계약문서로 정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6] <개정 2010.9.1>

감리업자의 평가기준(제27조의3제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1. 과업내용 이해도		15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	사업 추진 현황과 같은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 표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기술제안서 발표	(5)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2. 과업수행 조직		15	
	조직 구성의 적정성	(5)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평가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사 종류를 고려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3. 과업수행 세부 계획		55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20)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10)	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사 종류별 체크리스트 제시)
	안전관리 방안	(10)	재해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공사관리 방안	(10)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사 종류별 검사,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방안 수립
	공정관리 방안	(5)	주변공사(해당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사 종류)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4. 과업수행 지원체계		15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5)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회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주요 공사 종류별 보고·협의체계) 구축 방안
	본사의 지원체계	(5)	상주(常住)하는 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 방안(전산장비, 상주하지 않는 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관리 체계	(5)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 평가

비 고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감리용역계약문서로 정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9.1>

설계업 · 감리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6조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 제16조제2호	등록취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법 제16조제3호	
가. 4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미만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나. 사망,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4개월
다. 부실설계 또는 공사감리로 인하여 해당 전력시설물 및 인근 전력시설물의 여러 기능 및 전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제4호	등록취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제5호**	
가. 1차		영업정지 6개월
나. 2차		등록취소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6. 26.>

수수료 기준(제34조 관련)

구 분	수수료
1. 삭제 <2016. 7. 29.>	
2. 설계사면허증의 발급	1만원/건
3. 설계사면허증의 재발급	5천원/건
4.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	5천원/부
5.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천원/부
6.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5천원/건
7. 감리원의 자격 인정	
가. 최초 자격 인정 신청	6만원(최초)
나. 최초 자격 인정 신청 후 자격의 지속적 유지·관리	5만원/년
다. 감리원 수첩의 발급	1만3천원/건
라. 감리원 수첩의 재발급	5천원/건

비고: 수수료는 발급·신고 또는 자격 인정하는 단체에 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6. 7. 29.>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6. 7. 29.>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2016. 7. 29.>

[별지 제2호의3서식] 삭제 <2016. 7. 29.>

[별지 제2호의4서식] 삭제 <2016. 7. 29.>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0.5>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전력기술인의 수	합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자					학력 또는 경력에 따른 전력기술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학사이상	전문대졸	고졸	기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인력 현황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국가기술자격		학력		전력기술인 등급	감리원 등급	설계사 면허
			퇴사일	종목 및 등급	등록일	해당 학교명	전공학과 / 졸업일	발급일	발급일	발급일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6. 26.>

[ ] 전력기술인 [ ] 감리원 자격 인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증명사진 (2.5cm×3cm)	① 신청인 성명	[한글]	구분	등급	등록번호	발급일	⑨발급신청
			*경력수첩				
		[한자]	*감리원수첩				
		[영문]	*설계사면허증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 (휴대전화:) (E-mail:)
②주소	

③근무처	회사명	근무부서
	주소	(전화:) (FAX:)

④학 력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졸업 연월일	졸업여부

⑤기술자격	자격종목	등록번호	합격 연월일

⑥교육훈련	기간	교육 과정명	교육훈련기간
	. . . ~ . . .		
	. . . ~ . . .		
	. . . ~ . . .		

⑦상 훈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⑧근무처 경력사항 요약

일련번호	근무기간	근무처	업종	*비고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제1항(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력기술인(감리원)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증명사진 1장 5.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 감리원의 자격 인정 · 최초 자격 인정신청: 6만원 · 최초 자격 인정신청 후 자격의 지속적 유지·관리: 5만원/년

작 성 방 법

1. *표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한글로 적습니다.
3. "①~③"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근무처를 적습니다.
4. "④"란은 최종 학력순으로 적으시고, 졸업 여부는 졸업, 수료, 중퇴, 이수로 적습니다.
5. "⑤"란은 전기 분야 국가기술자격사항을 상위 자격순으로 적습니다.
6. "⑥"란은 전력기술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 이수사항을 최근 이수날짜순으로 적습니다.
7. "⑦"란은 전력기술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받은 상훈내용을 적습니다.
8. "⑧"란은 과거 또는 현재의 근무처 경력을 과거 경력부터 적으며, 업종란은 전력기술 관련업(전기설계, 감리, 시공, 안전관리대행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을 적습니다.
9. "⑨"란은 수첩 및 면허증의 발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란에 "V"표시하면 되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각 항목별 내용은 첨부서류를 근거로 적고 첨부서류가 없는 항목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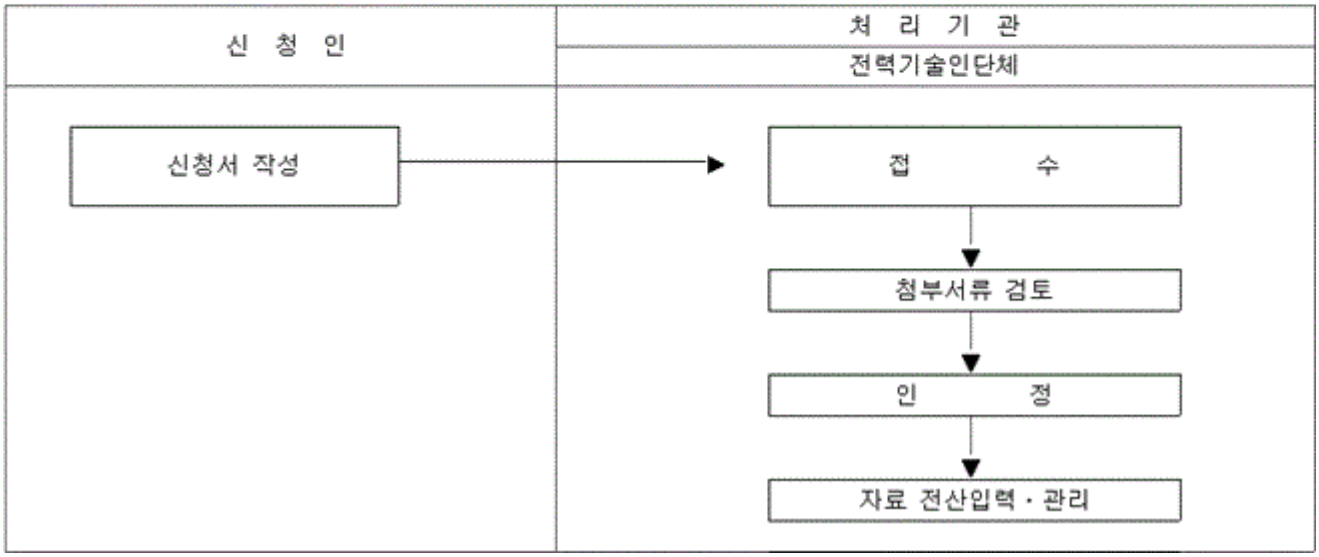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6. 26.>

[ ] 전력기술인 [ ] 감리원 변경 인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휴대전화:) (E - m a i l :)

②근무처	회사명	근무부서
	주소	(전화:) (FAX:)

③ 변경 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졸업 연월일	졸업여부
학력					

	자격종목	등록번호	합격 연월일
기술 자격			

	기간	교육 과정명	교육훈련기간
교육 훈련	. . . ~ . . .		
	. . . ~ . . .		
	. . . ~ . . .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상훈	. . .			
	. . .			

	일련번호	근무기간	근무처명	업종	*비고
근무처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기술경력	※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제1항(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력기술인(감리원) 자격 변경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작 성 방 법

1. *표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한글로 적습니다.
3. "① · ②"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근무처를 적습니다.
4. "③"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학력"란은 최종 학력순으로 적으시고, 졸업 여부는 졸업, 수료, 중퇴, 이수로 적습니다.
   - "기술자격"란은 전기 분야 국가기술자격사항을 상위 자격순으로 적습니다.
   - "교육훈련"란은 전력기술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 이수사항을 최근 이수날자 순으로 적습니다.
   - "상훈"란은 전력기술 업무 수행으로 받은 상훈내용을 적습니다.
   - "근무처"란은 과거 또는 현재의 근무처 경력을 과거 경력부터 적으며, 업종란은 전력기술 관련업(전기설계, 감리, 시공, 안전관리대행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제조업 등 주요업종을 적습니다.

* 각 항목별 내용은 첨부서류를 근거로 적고 첨부서류가 없는 항목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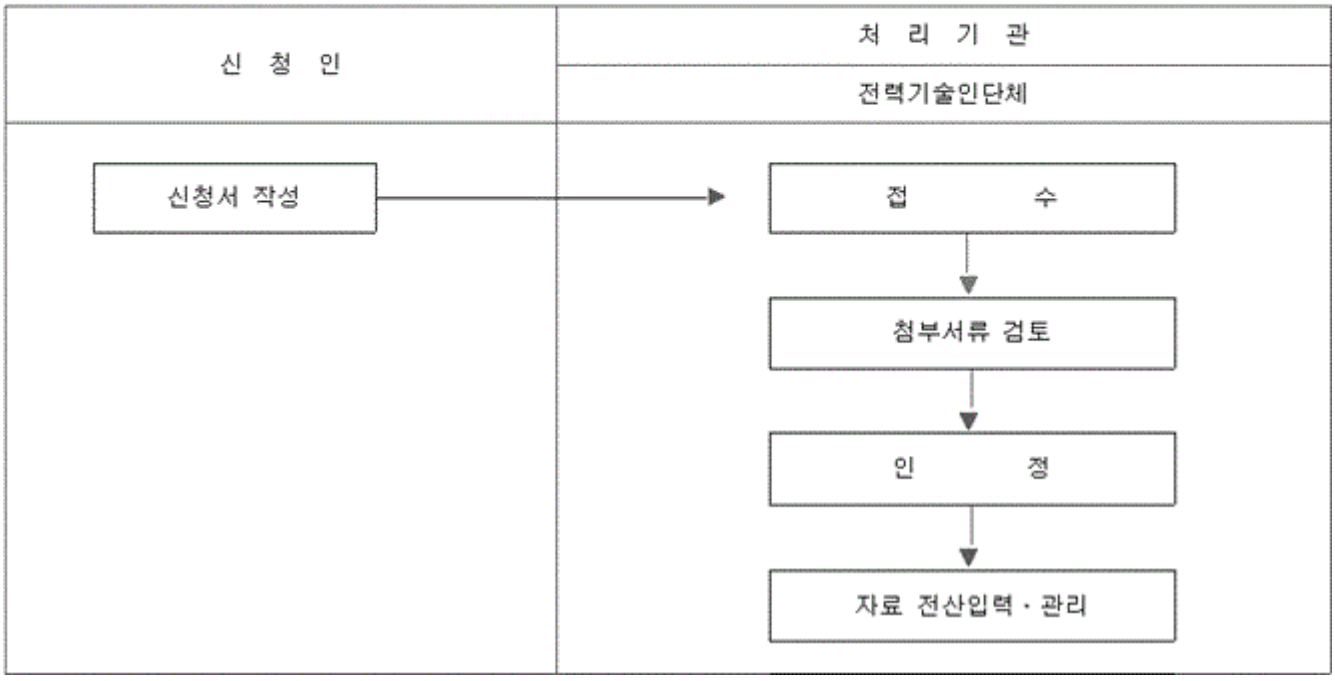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4. 7.>

경력확인서

(앞 쪽)

①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근무처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근무기간 . . . ~ . . .	

	일련번호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 ㉰발주자	코드 / 코드	㉱직무분야 / ㉲참여분야	코드 / 코드	㉳담당분야 / ㉴담당업무	㉵근무형태 / ㉶직위	비고
③ 전력기술근무경력		~							
		~							
		~							
		~							
		~							
		~							
		~							
	※ 전력기술근무경력을 ( )번까지 확인합니다.[작성: 총무·인사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전력기술근무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일련번호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코드 코드	㉱직무분야 ㉲참여분야	코드 코드	㉳담당분야 ㉴담당업무	㉵근무형태 ㉶직위	비고
③ 전력 기술 근무 경력		~							
		~							
		~							
		~							

작 성 방 법

1. "①" 란은 해당 전력기술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②" 란은 해당 근무처 사항을 적습니다.
3. "③" 란은 "②" 란의 근무처에서 수행한 전력기술 근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가. "㉮참여기간"란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적습니다.
   나. "㉯참여사업명"란은 참여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 "㉰발주자"란은 해당 참여사업을 발주한 기관명을 적습니다.
   라. "㉱직무 분야"란은 해당 참여사업의 직무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하단 참조).
   마. "㉲참여 분야"란은 해당 참여사업의 참여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하단 참조).
   바. "㉳담당 분야"란은 해당 참여사업의 담당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하단 참조).
   사. "㉴담당 업무"란은 해당 참여사업의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하단 참조).
   아. "㉵근무 형태"란은 현장근무와 본사근무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분류코드]

*직무 분야: 10. 전기, 20. 정보통신, 30. 소방, 40. 건설·토목·환경, 50. 산업안전, 60. 계량·측정, 70. 전기용품, 90. 기타

*담당 분야 및 담당 업무: 해당되는 담당 분야 또는 담당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코드를 적되, 두 개 이상 적을 수 없습니다.

담당 분야	담당 업무	담당 분야	담당 업무
10. 설계	101. 설계	15. 교육·연구	151. 교수·교사, 152. 교육행정, 153. 연구
11. 설계감리	111. 설계감리	16. 점검·진단	161. 검사, 162. 점검, 163. 진단, 164. 시험
12. 공사	121. 시공, 122. 시공관리, 123. 공사감독, 124. 견적, 125. 품질관리	17. 용품·기기제조	171. 제조, 172. 설계제작, 173. 제작설치, 174. 수리, 175. 정비, 176. 기기검사
13. 공사감리	131. 상주감리, 132. 부분상주감리, 133. 비상주감리	18. 그 밖의 전력기술	181. 검토, 182. 계획, 183. 조사, 184. 측량, 185. 산업안전, 186. 기술행정, 187. 사업관리, 188. 시운전
14. 안전관리	141. 상주안전관리, 142. 대행안전관리, 143. 유지관리	19. 미분류	

*참여 분야: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시설의 코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를 적습니다.

발송변배전시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그 밖의 발송변배전시설	건축물시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연구시설 29. 그 밖의 건축시설	공공시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에너지·환경시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폐수 처리시설 43. 상수도·하수도·정수 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그 밖의 에너지·환경시설	산업시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6. 26.>

[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 ]발급 [ ]재발급
[ ]설계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
[ ]감리원 수첩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분	신청 사유	
		신규 발급	재발급
신청구분	경력수첩		
	설계사면허증		
	감리원 수첩		

재발급 사유	[ ] 잃어버린 경우 [ ]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 그 밖의 사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 감리원 수첩)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1.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재발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설계사면허증 발급: 10,000원, 설계사면허증 재발급: 5,000원 3. 감리원 수첩 발급: 13,000원, 감리원 수첩 재발급: 5,000원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첨 부 서 류

1. 전력기술인 경력수첩·감리원 수첩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경우

가. 증명사진 각 1장

나.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 원본(재발급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계사면허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경우

가. 발급의 경우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 받은 전력기술인: 증명사진 1장

2) 1) 외의 전력기술인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다) 증명사진 1장

나. 재발급의 경우

1)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증명사진 1장

작 성 방 법

1. 신청구분란의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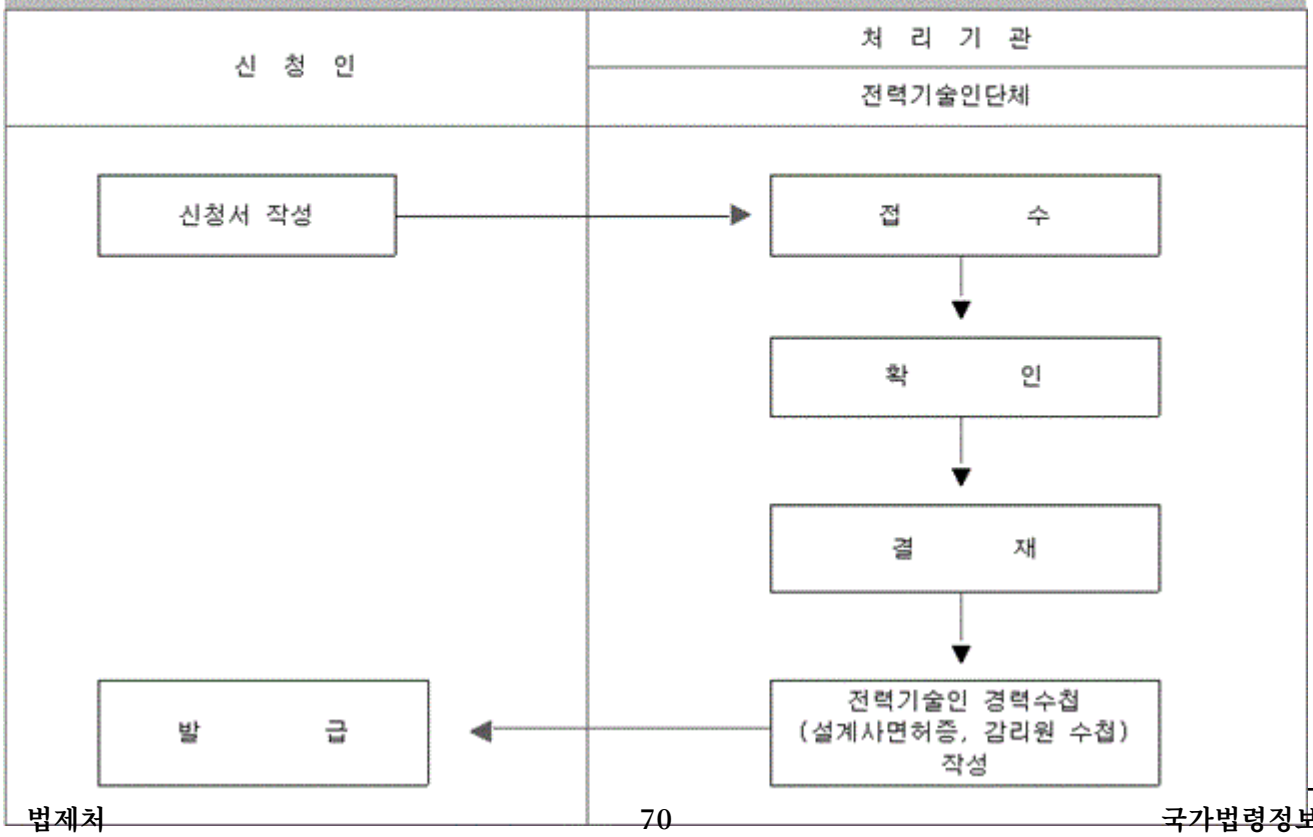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5>

[ ] 전력기술인 [ ] 감리원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업체	대표자	
	주소	

신청구분 및 신청부수	[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부) [ ]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부)	[ ] 감리원 경력확인서(부) [ ] 감리원 보유확인서(부)

신청사유 및 발급구분	신청사유	발급구분 [ ] 총괄 [ ] 분야(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및 감리원 경력(보유)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유의사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작 성 방 법

1. 신청사유란은 각각의 확인서 용도에 따라 입찰, 취업 등으로 적습니다.
2. 발급구분에는 해당 부분에 "√"표기를 하고, 분야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 분야에 해당하는 번호[발송변배전시설(1), 건축물시설(2), 공공시설(3), 에너지·환경시설(4), 산업시설(5)]를 적습니다.
3. 대표자는 업체 단위로 각각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속 기술인력에 대한 각각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뒤쪽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소속 기술인력 발급신청 내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 각각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소속 기술인력에 대해서만 적습니다.
2. 비고란은 발급받으려는 신청구분, 신청부수, 발급구분 및 확인서명 등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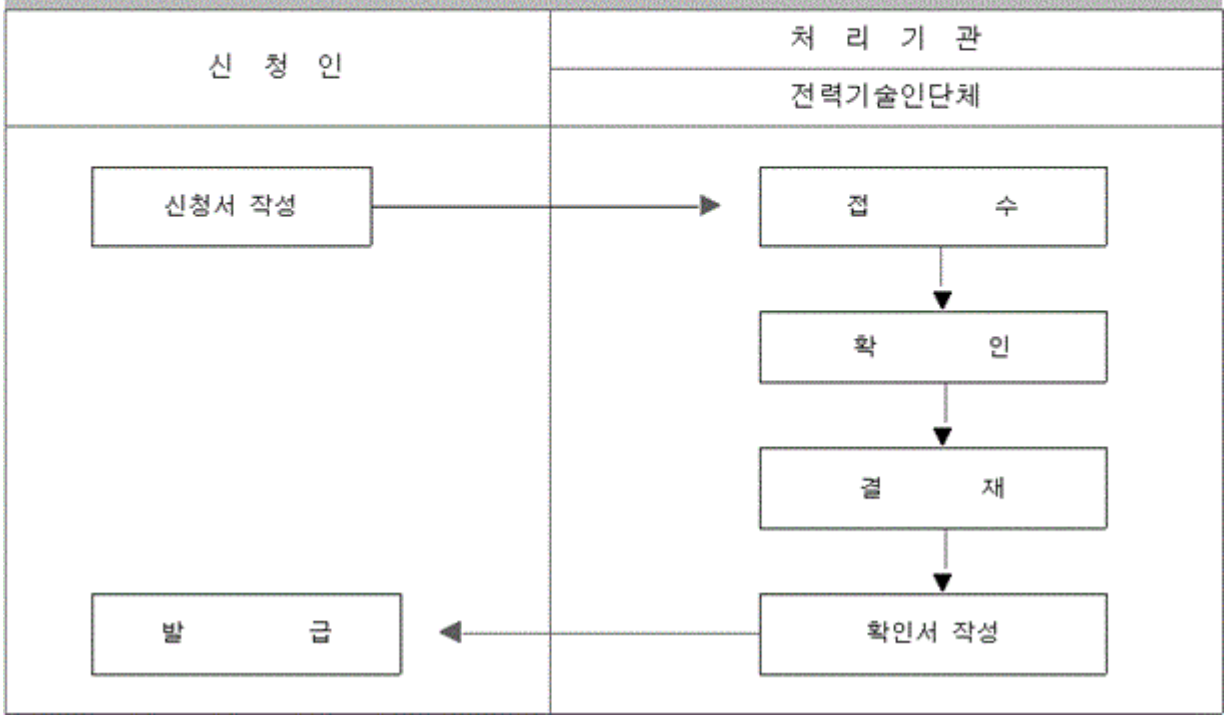

[서식 9] 삭제 <2003.2.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6. 26.>

[ ] 전력기술인 [ ] 감리원 경력확인서

(앞 쪽)

회원번호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인)
발행번호		
성 명		등급 생년월일

학 력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졸업 연월일

국가기술자격	자격종목	등록번호	합격 연월일	자격종목	등록번호	합격 연월일

교육훈련	기간(일수/시간)	교육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상 훈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제 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근거

근무처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근무기간	근무처명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전력기술 근무경력: [ ]( )분야, [ ]총괄

성 명 :

근무처명	참여기간 (참여일수)	참여사업명 발주자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	근무형태 직위	비고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6. 26.>

(표 지)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전력기술인단체

145mm×90mm(백상지 120g/㎡)

(제1쪽)

유 의 사 항

1.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의 재발급 사유(기술인 등급 변경,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및 잃어버린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8조 및 제29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쪽)

등록번호: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증명사진
(2.5cm×3cm)

발급자 확인
㊞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정해진 직인, 철인 및 발급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인

▲감리원 수첩, 설계사면허 현황

(제3쪽)

구 분	등 급	등 록 번 호	발급 연월일

▲학력

학 교 명	학 과 (전 공)	학 위	졸업 연월일

▲국가기술자격 (제 4쪽)

자 격 종 목	등 록 번 호	합격 연월일

▲교육훈련 (제 5쪽)

기 간 (일 수 / 시 간)	교 육 과 정 명	교 육 훈 련 기 관

▲상 훈 (제6쪽)

연 월 일	종 류	상 훈 기 관	근 거

▲제 재 (제7쪽)

연 월 일	종 류	제 재 기 관	근 거

▲근무처 경력 (제8쪽 ~ 제9쪽)

근 무 처 명	근 무 기 간	비 고

▲주소 변경 (제10쪽)

날 짜	주 소	확인자(서명 또는 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0.5>

[ ] 전력기술인 [ ]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번호			업종	[ ]종합 [ ]전문([ ]1종 [ ]2종)						
회사명		대표자	기술 인력 (명)	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 연월일	등급/면허	국가기술자격 종목	최종학력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력기술인(감리원)의 보유 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인)

210㎜×297㎜[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0.5>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대장

등록번호	발급일	성명	생년월일	전력기술인 등급	주소	회원번호	수령인	확인	
								담당자	부서장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4] 삭제 <1999.12.3>

[서식 15] 삭제 <2003.2.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설계사면허증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증명사진
(2.5cm×3cm)

발급자 확인
㊞

정해진 직인, 철인 및 발급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인

210㎜ × 297㎜(백상지 12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0.5>

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

면허번호	발급일	성명	생년월일	설계사	주소	회원번호	수령인	확인	
								담당자	부서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0.5>

설계감리자 [ ] 확인 / [ ] 확인사항 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설계감리자 확인번호	확인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계(감리)업 등록번호	설계업	감리업	기술인력 (총 명)	기술사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감리자 [ ]확인 [ ]확인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가.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설계감리자 확인증 원본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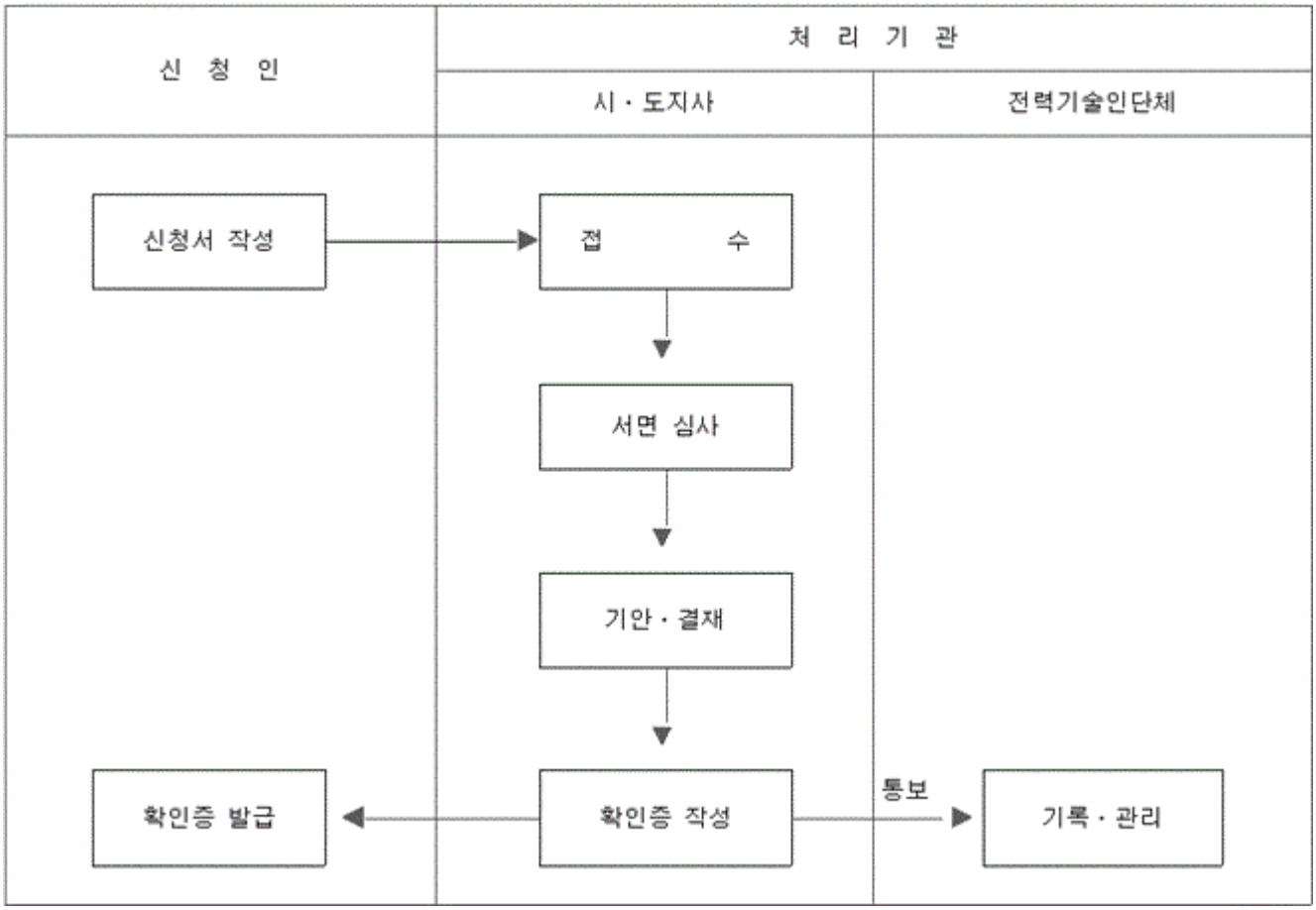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0.5>

확인번호: 제 호

설계감리자 확인증

1. 회사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업종: [ ] 설계업 [ ] 감리업

5. 영업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감리자로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인

210㎜ × 297㎜(백상지 120g/㎡)

[서식 20] 삭제 <2003.2.6>

[서식 21] 삭제 <2003.2.6>

[서식 22] 삭제 <2003.2.6>

[서식 23] 삭제 <2003.2.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6. 26.>

(표 지)

감리원 수첩

전력기술인단체

145mm×90mm(백상지 120g/㎡)

(제1쪽)

유 의 사 항

1.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시 이 수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감리원 수첩의 재발급 사유(감리원 등급 변경,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및 잃어버린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4. 감리원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제29조제7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감리원 수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쪽)

등록번호: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증명사진
(2.5cm×3cm)

발급자 확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수첩을 발급합니다.

정해진 직인, 철인 및 발급자 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인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설계사면허 현황

(제 3쪽)

구 분	등 급	등 록 번 호	발급 연월일

▲학력

학 교 명	학 과 (전 공)	학 위	졸업 연월일

▲국가기술자격 (제4쪽)

자 격 종 목	등 록 번 호	합격 연월일

▲교육훈련 (제5쪽)

기 간 (일 수 / 시 간)	교 육 과 정 명	교 육 훈 련 기 관

▲상 훈 (제6쪽)

연 월 일	종 류	상 훈 기 관	근 거

▲제 재 (제7쪽)

연 월 일	종 류	제 재 기 관	근 거

▲근무처 경력(감리업체) (제8쪽 ~ 제9쪽)

근 무 처 명	근 무 기 간	근 무 기 간

▲주소 변경 (제10쪽)

날 짜	주 소	확인자(서명 또는 인)

[서식 25] 삭제 <2003.2.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10.5>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

등록번호	발급일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등급	주소	회원번호	수령인	확인	
								담당자	부서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0.5>

감리원 배치현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감리업자 [ ]자체감리)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인 (감리업자등)	회사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감리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자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감리 용역현황	공사구분	[ ]신설공사 [ ]보수공사	참여분야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용역구분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 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용역개요	○전기설비: 수전(kW, V), 그 밖의 심야전력 등(kW, V), 발전(상용)(kW, V), 발전(비상용)(kW, V) ○내용: 연면적(㎡), 지상/지하 층수(/ 층), 공동주택(세대, 동), 선로 길이(km) ○그 밖의 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공사감리기간: ~	공사감리금액: 천원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감리원 배치현황					~ ( )
					~ ( )
					~ ( )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 ] 군 입대 [ ]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 ] 부도·폐업으로 인한 퇴직 [ ] 이민 [ ] 사망 [ ] 발주자의 교체 요청 [ ]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 ] 2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 ]배치현황신고 [ ]배치현황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배치현황 신고의 경우 가.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1부 다. 예정공사비의 총괄내역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배치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감리원 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 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작 성 방 법

1. "발주자"란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원 발주자를 적습니다.
2. "신고인"란은 감리업자 또는 자체감리자를 적습니다.
3. "공사업자"란은 전기공사업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주 공사업자를 적습니다.
4. "공사감리용역 현황"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공사 구분: 해당 공사를 선택하여 표기하고, 참여 분야는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시설의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 다만,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를 기재

발송변배전시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그 밖의 발송변배전시설	건축물시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연구시설 29. 그 밖의 건축시설	공공시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에너지·환경시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폐수 처리시설 43. 상수도·하수도·정수 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그 밖의 에너지·환경시설	산업시설 [5]	50. 산업시설 (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나. 용역명: 공사감리용역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다. 용역구분은 다음과 같이 기재
      1) 연차감리: 1개의 공사현장을 1개의 감리업체가 연차계약으로 감리 수행
      2) 통합감리: 2개 이상의 공사현장을 1개의 감리업체가 통합하여 감리 수행
      3) 공동·승계감리: 1개의 공사현장을 둘 이상의 감리업체가 공동 또는 승계계약을 하여 감리 수행(해당 감리업체의 이행비율과 공동·승계계약업체의 감리업등록번호 및 업체명을 적습니다)
   라. 기간 및 금액 : 공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공사감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재
5. "감리원 배치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직무: 배치 감리원을 상주(책임·보조), 비상주로 구분하여 기재
   나. 등급: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감리원 배치기간: 배치 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를 기재(구체적인 배치날짜는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별도 기재)
6. "변경내역"란은 변경내용에 발주자, 공사업자, 공사감리 현황, 감리원을 적고 그에 따른 변경 전후의 상세내용을 적습니다.
   ※ 감리원이 교체된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해당 사항 또는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교체 빈도로 적용됩니다).

처리절차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전력기술인단체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 자료 전산입력·관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감리원 배치확인서

[ ]감리업자 [ ]자체감리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인 (감리업자등)	회사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감리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자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감리 용역현황	공사구분	[ ]신설공사 [ ]보수공사	참여분야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용역구분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 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용역개요	○전기설비: 수전(㎾, V), 그 밖의 심야전력 등(㎾, V), 발전(상용)(㎾, V), 발전(비상용)(㎾, V) ○내용: 연면적(㎡), 지상/지하 층수(/ 층), 공동주택(세대, 동), 선로 길이(㎞) ○그 밖의 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공사감리기간: ~	공사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 현황

1. 총괄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2. 감리원 배치일정

성명	근무형태	감리원 배치일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배치변경현황을 신고(변경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인

210㎜×297㎜(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12.10.5>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제출인 (감리업자등)	회사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감리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자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감리 용역현황	공사구분	[ ]신설공사 [ ]보수공사	참여분야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용역구분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 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용역개요	○전기설비: 수전(kW, V), 그 밖의 심야전력 등(kW, V), 발전(상용)(kW, V), 발전(비상용)(kW, V) ○내용: 연면적(㎡), 지상/지하 층수(/ 층), 공동주택(세대, 동), 선로 길이(㎞) ○그 밖의 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공사감리기간: ~	공사감리금액: 천원
		공사감리 완료일: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감리원 배치현황					~ ( )
					~ ( )
					~ ( )

발주자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 1부(해당자만 첨부합니다)

작 성 방 법

1. "발주자"란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원 발주자를 적습니다.
2. "신고자"란은 감리업자 또는 자체감리자를 적습니다.
3. "공사업자"란은 전기공사업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주 공사업자를 적습니다.
4. "공사감리용역 현황"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공사 구분: 해당 공사를 선택하여 표기하고, 참여 분야는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시설의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 다만,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를 기재

발송변배전시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 · 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그 밖의 발송변배전시설	건축물시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 · 연구시설 29. 그 밖의 건축시설	공공시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에너지 · 환경시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 · 폐수 처리시설 43. 상수도 · 하수도 · 정수 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그 밖의 에너지 · 환경시설	산업시설 [5]	50. 산업시설 (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나. 용역명: 공사감리용역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다. 용역구분은 다음과 같이 기재
      1) 연차감리: 1개의 공사현장을 1개의 감리업체가 연차계약으로 감리 수행
      2) 통합감리: 2개 이상의 공사현장을 1개의 감리업체가 통합하여 감리 수행
      3) 공동 · 승계감리: 1개의 공사현장을 둘 이상의 감리업체가 공동 또는 승계계약을 하여 감리 수행(해당 감리업체의 이행비율과 공동 · 승계계약업체의 감리업등록번호 및 업체명을 적습니다)
   라. 기간 및 금액: 공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공사감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고, 공사감리 완료일은 실제 공사감리를 완료한 날자를 기재
5. "감리원 배치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직무: 배치 감리원을 상주(책임 · 보조), 비상주로 구분하여 기재
   나. 등급: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감리원 배치기간: 배치 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를 기재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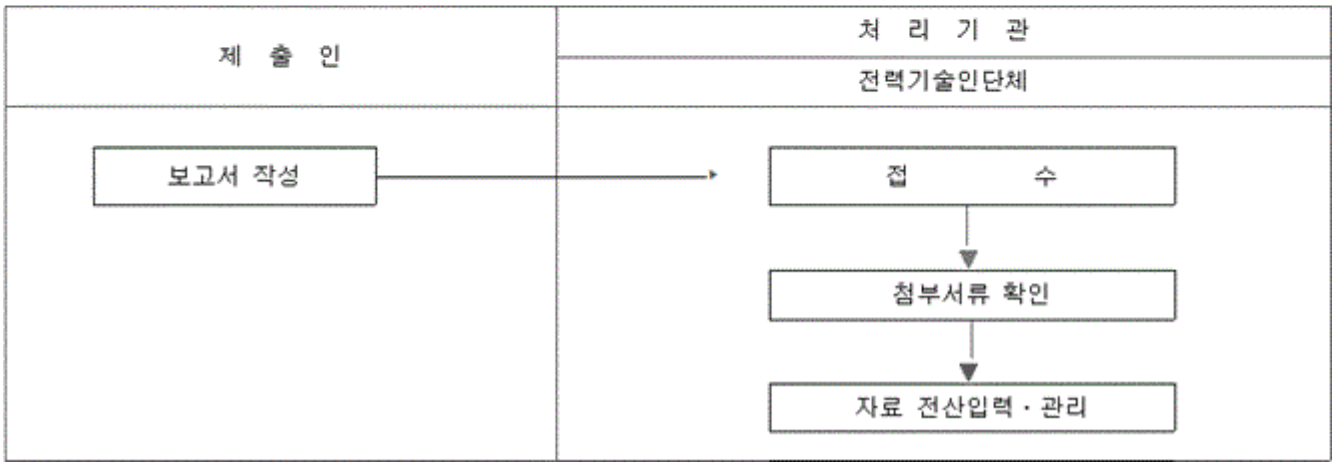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2012.10.5>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사명		
대표자		감리업등록번호
공사감리 용역기간	~	지연사유가 종료된 날
지연사유	○ 지연사유명 ○ 구체적인 지연사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서명 또는 인)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사유명"란에는 다른 공사의 지연 등 해당 지연 사유를 요약하여 적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유내용"란에 기록하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2. 사유가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발주자가 부도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 <개정 2012.10.5>

공사감리 완료증명서

[ ]감리업자 [ ]자체감리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자 (감리업자 등)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감리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자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감리 용역현황	공사구분		참여분야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용역구분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 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용역개요	○전기설비: 수전(kW, V), 그 밖의 심야전력 등(kW, V), 발전(상용)(kW, V), 발전(비상용)(kW, V) ○내용: 연면적(㎡), 지상/지하 층수(/ 층), 공동주택(세대, 동), 선로 길이(㎞) ○그 밖의 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공사감리기간: ~	공사감리금액: 천원
		공사감리 완료일: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감리원 배치현황					~ ( )
					~ ( )
					~ ( )
					~ ( )
					~ ( )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2.10.5>

감리원 현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보유인력	합계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기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감리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장이동 사항 1부 2. 기술자격 또는 학력 변경 사항 1부 3. 상벌 사항 1부

210㎜×297㎜(백상지 80g/㎡)

(제2쪽)

1. 현장이동 사항						
일련번호	감리원 등급	성명	생년월일	배치 연월일	발주자	근무 구분
				철수 연월일	사업명	직책

210㎜×297㎜(백상지 80g/㎡)

(제3쪽)

2. 기술자격 또는 학력 변경 사항

가. 기술자격 또는 학력 취득자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학력		
			취득 연월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졸업 연월일	학교명	학과명

나. 기술자격 상실자 또는 정지자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자격상실일 (자격상실자)	자격정지기간 (자격정지자)

210㎜× 297㎜(백상지 80g/㎡)

(제4쪽)

3. 상벌 사항

일련번호	감리원 등급	성명	생년월일	시행일	종류	상훈기관 제재기관	제재기간	사업명

210㎜× 297㎜(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0.5>

[ ]설계업 [ ]감리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사항	종류	[ ]종합 [ ]전문(설계업: [ ]1종 [ ]2종)					
	기술인력	설계업	계(명)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감리업	계(명)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자본금	[ ]설계업: 원 [ ]감리업: 원					
	보유장비(감리업만 해당함)	(명세표를 작성하여 첨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계업 [ ]감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 수첩 원본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1부
시·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시·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시·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위의 시·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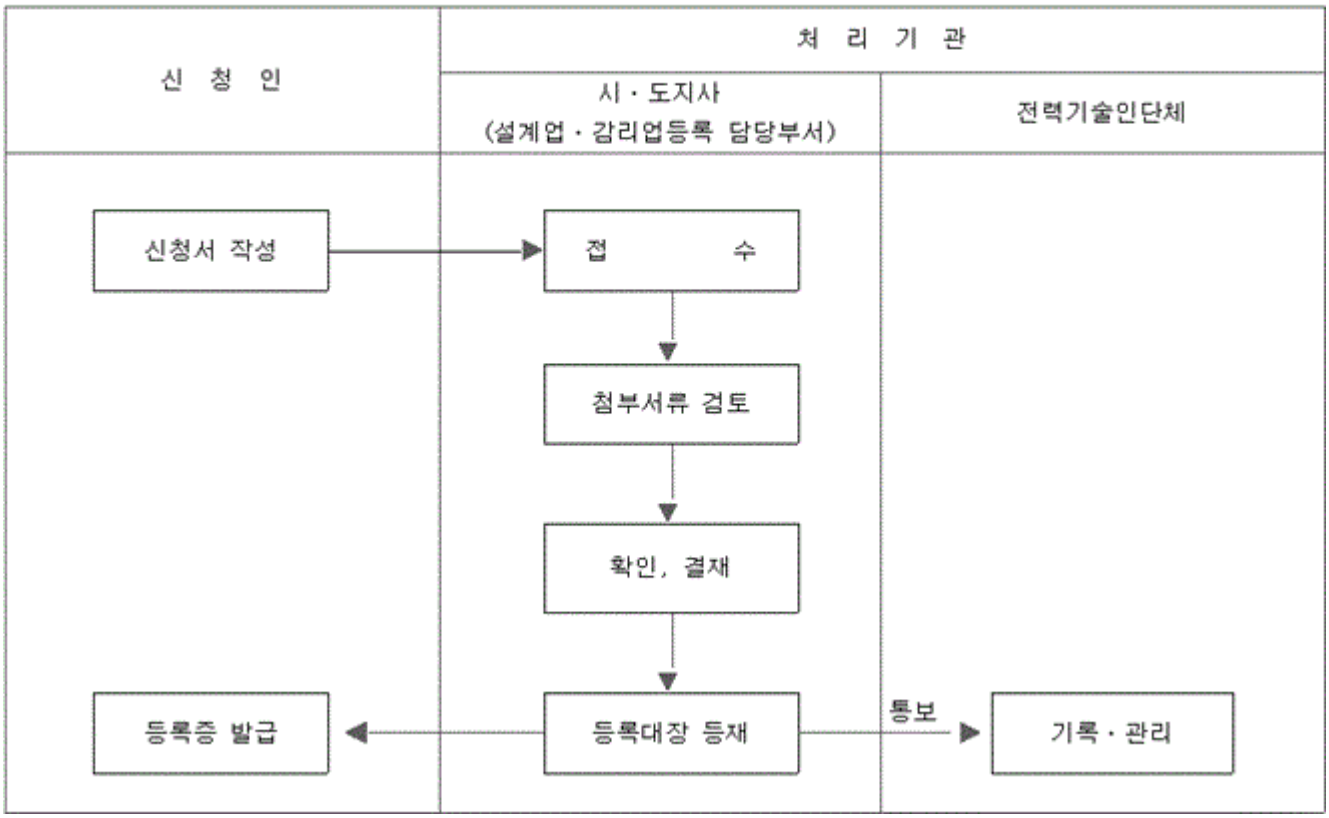

[서식 30] 삭제 <2003.2.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설계업등록증

1. 회 사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 성명:

4.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5. 설계업의 종류:

6. 등 록 연 월 일:

7. 영 업 범 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설계업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감리업등록증

1. 회 사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 성명:

4.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5. 감리업의 종류:

6. 등 록 연 월 일:

7. 영 업 범 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감리업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210㎜ × 297㎜(백상지 12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10.5>

설계업등록대장

(제1쪽)

설계업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본금	납입 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 자본금	
	· 금 액 · 외국인 투자율 · 외국인 투자금액					
상훈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사업명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사업명	비고

210㎜× 297㎜(백상지 80g/㎡)

(제2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사항	변경내용	기록자 확인

등록증 재발급			
발급일	사유	발급일	사유

210㎜×297㎜(백상지 80g/㎡)

(제3쪽)

기술인력 현황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설계사	국가기술자격		입사일	주소
			발급번호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10.5>

감리업등록대장

(제1쪽)

감리업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본금	납입 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 자본금
	· 금 액 · 외국인 투자율 · 외국인 투자금액		

상훈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사업명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사업명	비고

210㎜× 297㎜(백상지 80g/㎡)

(제2쪽)

감리업 장비 보유 현황			
변경일	변경사항	변경내용	기록자 확인

등록증 재발급			
발급일	사유	발급일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쪽)

기록 변경사항

품명	규격	수량	취득일

210㎜×297㎜(백상지 80g/㎡)

(제4쪽)

감리원 현황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국가기술자격		입사일	주소
			등급	발급번호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2.10.5>

[ ]설계업 [ ]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회사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종 [ ]종합 [ ]전문(설계업: [ ]1종 [ ]2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			
	보유장비			
	기술인력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 기술인력 변경등록: 5천원/건 2. 그 밖의 사항의 변경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2.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퇴사자: 퇴직증명서 1부
시·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고인이 시·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다만, 신고인이 시·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위의 시·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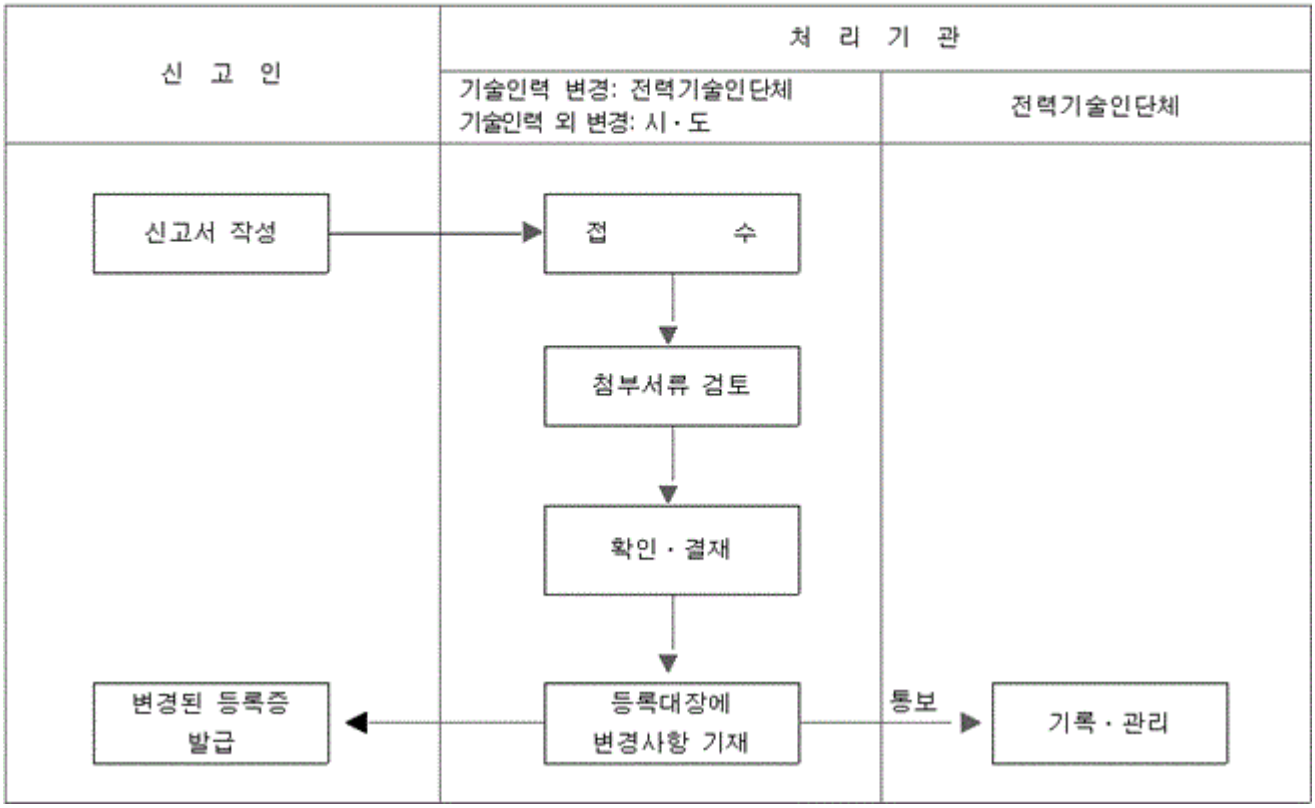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기 관 명

수신자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경유)
제 목 **입찰참가제한 설계업자·감리업자 현황 통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입찰참가자가 제한된 설계업자·감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제한 개시	년 월 일		제한 만료	년 월 일
제한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 )호			
제한 사유와 그 밖의 사항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서식] <개정 2012.10.5>

[ ]설계
[ ]설계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1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용도:)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평균자기자본비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평균유동비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회사명: (제 2 쪽)

5. 설계(설계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행 중			

나. 완료된 설계(설계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설계기간	발주자	비고 참여분야

회사명: (제 3 쪽)

다. 진행 중인 설계(설계감리)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공사구분/참여분야	
발주자		설계구분	
용역개요	○전기설비: 수전(kW, V), 그 밖의 심야전력 등(kW, V) 발전(상용)(kW, V), 발전(비상용)(kW, V) ○내용: 연면적(㎡), 지상/지하 층수(/ 층), 공동주택(세대, 동), 선로 길이(㎞) ○그 밖의 개요:		
용역계약내용	○용역형태: [ ]단독, [ ]공동·승계(이행비율: %) (공동·승계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		

이행내용	구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전력기술인 현황

구 분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합계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회사명: (제 4 쪽)

6. 부실벌점

연번	점검일자/ 점검종류	용역명/ 측정기관	부실내용/ 부실번호	부실벌점 (누계 부실벌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4서식] <개정 2012.10.5>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1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용도:)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법인(사업)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평균자기자본비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평균유동비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회사명: (제 2 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행 중			

교체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건)	비상주(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명)	비상주(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기간	발주자	비고 참여분야

210mm×297mm(백상지 80g/㎡)

회사명: (제 3쪽)

다.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발주자		공사구분/참여분야	
용역명			
용역개요	○전기설비: 수전(kW, V), 그 밖의 심야전력 등(kW, V) 발전(상용)(kW, V), 발전(비상용)(kW, V) ○내용: 연면적(㎡), 지상/지하 층수(/ 층), 공동주택(세대, 동), 선로 길이(㎞) ○그 밖의 개요:		
용역계약내용	○감리형태: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감리용역비: 천원, ○감리기간: ~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감리원 현황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회사명: (제 4 쪽)

6. 부실벌점

연번	점검일자/ 점검종류	용역명/ 측정기관	부실내용/ 부실번호	부실벌점 (누계 부실벌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5서식] <개정 2012.10.5>

기 관 명

수신자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경유)
제 목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변경) 통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변경) 결과를 통보합니다.

1. 용역명					
2. 감리업자 및 사업주체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주체명				
	주 소 (전화번호:)				
3. 용역개요	○전기설비: 수전(kW, V), 그 밖의 심야전력 등(kW, V) 발전(상용)(kW, V), 발전(비상용)(kW, V) ○내용: 연면적(㎡), 지상/지하 층수(/ 층), 공동주택(세대, 동) ○그 밖의 개요:				
4. 용역계약내용	○형태: [ ]단독, [ ]공동(업체명 및 이행비율: / %) ○용역비: 천원(VAT 포함)				
5. 참여감리원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책 임				~
	보 조				~
	보 조				~
	비상주				~
6. 변경사항(통보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통보사항		변경사항		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7. 29.>

[ ] 설계업 [ ] 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종	

재발급 신청사유	[ ] 잃어버린 경우 [ ]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 그 밖의 사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설계업 [ ] 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재발급
신청인		시·도지사 (설계업·감리업 등록 담당부서)		시·도지사 (설계업·감리업 등록 담당부서)		시·도지사 (설계업·감리업 등록 담당부서)		시·도지사 (설계업·감리업 등록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22. 1. 21.>

[ ]설계업 [ ]감리업 양도·양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양도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재지
	양수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재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계업 [ ]감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양수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 규정에 따른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시·도지사 확인사항	양도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만, 신고인이 시·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양도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위의 시·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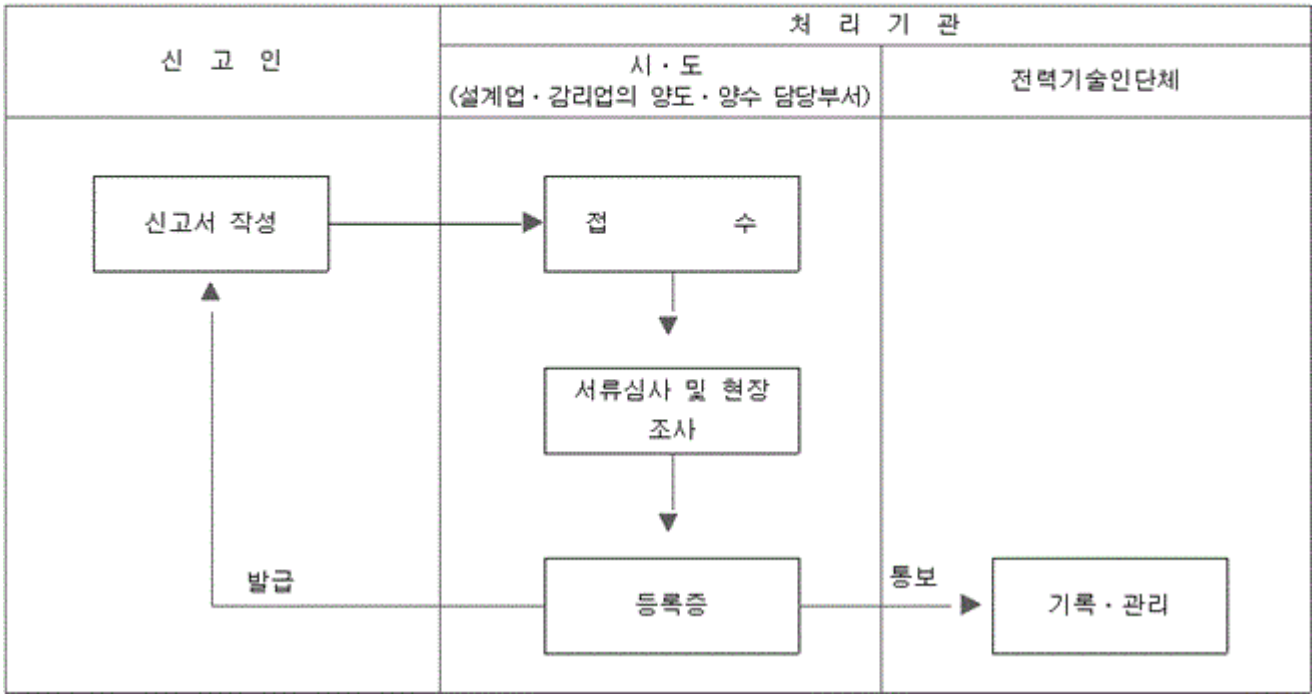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22. 1. 21.>

[ ]설계업 [ ]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합병된 법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재지
	합병된 법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재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재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계업 [ ]감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법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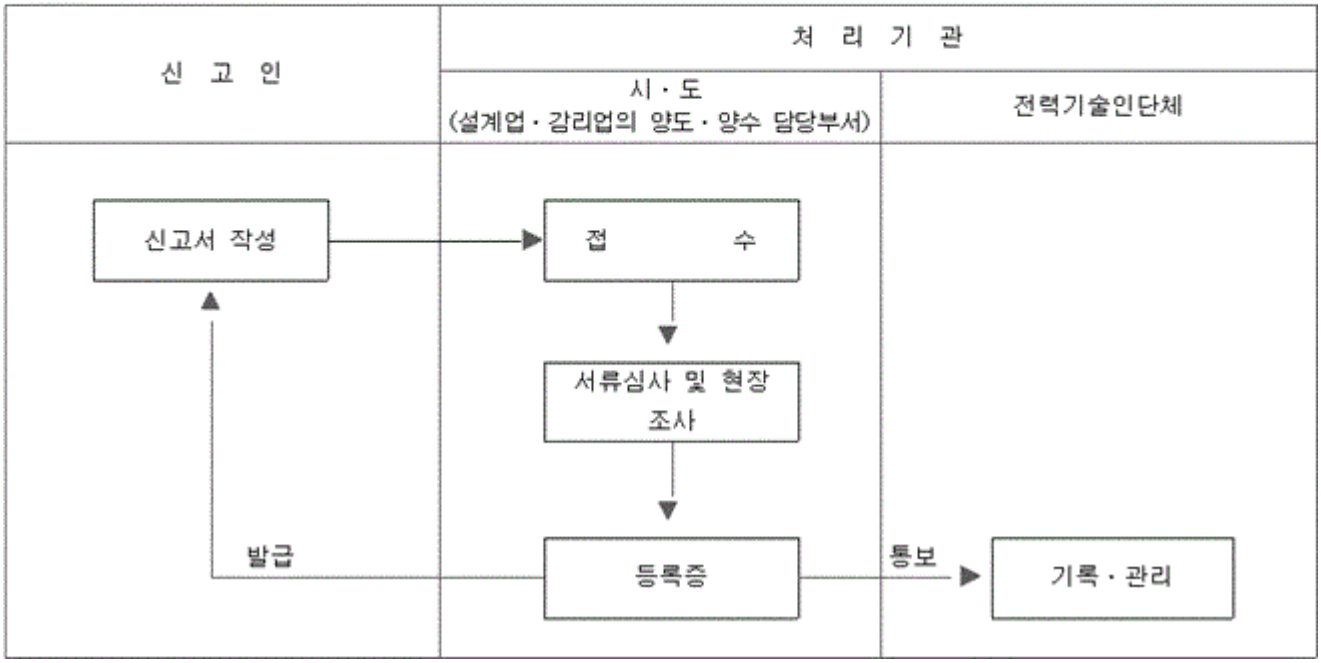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10.5>

[ ]설계업 [ ]휴업
[ ]감리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회사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업종	

휴업일	재개업일	폐업일

사 유

「전력기술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업·감리업 [ ]휴업 [ ]재개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법령

1. 전기사업법
2. 전기사업법 시행령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 - 203 - 3888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 - 203 - 3916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 - 203 - 392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044 - 203 - 393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 - 203 - 3982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044 - 203 - 4593

제1장 총칙 <개정 2009. 5. 21.>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1. “ 전기사업 ” 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 전기사업자 ” 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 발전사업 ” 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발전사업자 ” 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 송전사업 ” 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 송전사업자 ” 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 배전사업 ” 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 배전사업자 ” 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 전기판매사업 ” 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 전기판매사업자 ” 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③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전문개정 2009. 5. 21.]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 전기사업자등 ” 이라 한다)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09. 5. 21.]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 전기사업등 ” 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09. 5. 21.]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개정 2013. 3. 23.>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전문개정 2009. 5. 21.]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 허가권자 ”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 전기위원회 ”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15., 2020. 3. 31.>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목개정 2018. 6. 12.]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6. 1. 27., 2018. 6.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신설 2018. 6. 12.>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전문개정 2009. 5. 21.]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5. 21.]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16. 1. 27., 2019. 4. 23., 2020. 2. 18.>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0. 15., 2020. 2. 18., 2020. 3. 31.>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09. 5. 21.]

[제목개정 2014. 10. 15.]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 4. 23.>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신설 2018. 6. 12.>

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 6. 12.>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9. 5. 21.]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0. 15., 2018. 6. 12., 2020. 2. 18., 2020. 3. 31., 2022. 10. 18.>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6. 12.>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8. 6. 12., 2020. 2. 18., 2020. 3. 31.>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6. 12.>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2020. 3. 24.>

[전문개정 2009. 5. 21.]

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8. 6. 12.]

제2절 업무 <개정 2009. 5. 21.>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8. 6. 12., 2021. 4. 20.>
[전문개정 2009. 5. 21.]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 4. 20.>
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
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소유자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8. 6. 12.>]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8. 6. 12.>]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12.>
[전문개정 2009. 5. 21.]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자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2020. 6. 9.>
③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2020. 6. 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09. 5. 21.]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12., 2020. 2. 4.>

1.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

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18. 6. 12., 2020. 2. 18.>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2. 내부 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6.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등은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등이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전문개정 2009. 5. 21.]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유형,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24.>

[전문개정 2009. 5. 21.]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3. 7. 30.>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3. 7. 3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30.>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3. 7. 30., 2017. 3. 21.>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7. 30., 2015. 5. 18., 2019. 4. 23.>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30., 2021. 9. 24.>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7. 30.>

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9. 5. 21.]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의견청취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12. 23., 2008. 2. 29., 2013. 3. 23.>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5. 5. 18.>
[본조신설 2013. 7. 30.]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0조(손실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3. 7. 3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0., 2020. 12. 29.>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9. 5. 21.]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ㆍ절차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4. 5. 20.>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신설 2011. 3. 30., 2014. 5. 20.>
[제목개정 2011. 3. 30.]

제34조(차액계약) ①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출연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21. 6. 15.>

③ 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5. 2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 5. 20.>

[전문개정 2009. 5. 21.]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30.>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6. 12.>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지분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1.]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6. 12.>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전문개정 2009. 5. 21.]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 3. 23.>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10. 18.>

[전문개정 2015. 5. 18.]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5. 21.]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6. 12.]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개정 2014. 5. 2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3. 23.>

1. 기본계획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 1. 27.>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08. 3. 28.]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 기금 ”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 7. 30., 2014. 1. 28., 2015. 5. 18., 2019. 8. 20., 2020. 3. 31., 2021. 6. 15., 2021. 10. 19.>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의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0의2. 삭제 <2020. 3. 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전문개정 2009. 5. 21.]
[법률 제18280호(2021. 6. 15.) 제4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4. 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6장 전기위원회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1.]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8. 6. 12.>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3. 30.>

[전문개정 2009. 5. 21.]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18.>
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10. 18.>
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2. 10. 18.>
[전문개정 2009. 5. 21.]

제62조 삭제 <2020. 3. 31.>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5. 21.]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65조 삭제 <2020. 3. 31.>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66조 삭제 <2020. 3. 31.>

제66조의2 삭제 <2020. 3. 31.>

제66조의3 삭제 <2020. 3. 31.>

제67조(기술기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2020. 3. 31.>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3. 31.>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3. 물밑에서 광물ㆍ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4.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5. 21.]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5. 21.]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

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3. 30.>

[전문개정 2009. 5. 21.]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 지중이설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신설 2021. 6. 1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6. 15.>

[본조신설 2011. 3. 30.]

[법률 제18280호(2021. 6. 15.)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3조 삭제 <2020. 3. 31.>

제73조의2 삭제 <2020. 3. 31.>

제73조의3 삭제 <2020. 3. 31.>

제73조의4 삭제 <2020. 3. 31.>

제73조의5 삭제 <2020. 3. 31.>

제73조의6 삭제 <2020. 3. 31.>

제73조의7 삭제 <2020. 3. 31.>

제73조의8 삭제 <2020. 3. 31.>

제8장 삭제 <2020. 3. 31.>

제74조 삭제 <2020. 3. 31.>

제75조 삭제 <2020. 3. 31.>

제76조 삭제 <2020. 3. 31.>

제77조 삭제 <2009. 5. 21.>

제78조 삭제 <2020. 3. 31.>

제79조 삭제 <2020. 3. 31.>

제80조 삭제 <2020. 3. 31.>

제81조 삭제 <2020. 3. 31.>

제9장 삭제 <2008. 3. 28.>

제82조 삭제 <2008. 3. 28.>

제83조 삭제 <2008. 3. 28.>

제84조 삭제 <2008. 3. 28.>

제85조 삭제 <2008. 3. 28.>

제86조 삭제 <2008. 3. 28.>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및 식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9. 5. 21.]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89조(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목개정 2011. 3. 30.]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2011. 4. 12.>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 3. 30., 2019. 4. 23.>

[본조신설 2009. 5. 21.]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전문개정 2009. 5. 21.]

[제목개정 2011. 3. 30.]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30.]

제91조(원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11장 보칙 <개정 2009. 5. 21.>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4조(상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ㆍ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95조 삭제 <2008. 3. 28.>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전문개정 2009. 5. 21.]

제96조의2 삭제 <2020. 3. 31.>

제96조의3 삭제 <2020. 3. 31.>

제96조의4 삭제 <2020. 3. 31.>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3. 31.>
1. 삭제 <2020. 3. 31.>
2.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삭제 <2020. 3. 3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9. 5. 21.]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09. 5. 21.]

제12장 벌칙 <개정 2009. 5. 21.>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20. 10. 20.>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삭제 <2016. 1. 27.>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9. 5. 21.]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6. 1. 27., 2020. 3. 31.>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삭제 <2014. 5. 20.>
5.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09. 5. 21.]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3의2.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삭제 <2020. 3. 31.>

4의2. 삭제 <2020. 3. 31.>

5. 삭제 <2020. 3. 31.>

[전문개정 2009. 5. 21.]

제104조 삭제 <2020. 3. 31.>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2020. 3. 31.>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4. 5. 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전문개정 2009. 5. 21.]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2016. 1. 27.>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삭제 <2020. 3. 31.>
4. 삭제 <2020. 3. 31.>
4의2. 삭제 <2020. 3. 31.>
5. 삭제 <2020. 3. 31.>
6. 삭제 <2020. 3. 31.>
7.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삭제 <2020. 3.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6. 12., 2019. 8. 20., 2020. 3. 31.>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삭제 <2020. 3. 31.>
6. 삭제 <2020. 3.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부칙 <제6283호,2000. 12.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특정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5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그 허가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수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급계약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전기공급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가 매각한 발전설비를 양수받은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전기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30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 행정행위 또는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 장기전력수급계획 ” 을 “ 전력수급기본계획 ” 으로 한다.

제3조중 “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 ” 를 “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 ” 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 한국전력공사 ”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 ” 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전기사업법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37호,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선로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에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될 때에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선로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수행주체 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제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3조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종전의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안전공사의 이사장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에 이사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ㆍ제3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73조"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전단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로, "동법 제45조"를

“ 동법 제73조 ”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중 “ 제1항제5호 및 제6호 ”를 각각 “ 제1항제5호 ”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 ”를 “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로 한다.

부칙 <제6656호,2002. 2. 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중 “ 토지수용법 ”을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로 한다.

5)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017호,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25일 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사업자를 이 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는 당해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88호,2004. 3. 1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 재난관리법 ” 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7284호,2004. 12. 31.>(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 를 각각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 로 한다.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508호,2005. 5.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통보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통보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7744호,2005. 12.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3호,2006. 4. 28.>(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중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 ” 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8135호,2006. 12. 30.>(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를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로 한다.

⑮내지1&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194호,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가신청、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4호 내지 제13호 및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346호,2007. 4. 11.>(문화재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 제20조제4호 ”를 “ 제34조제3호 ”로, “ 제58조 ”를 “ 제75조 ”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1> 까지 생략

<392>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 산업자원부 "를 " 지식경제부 "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7조제1항·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6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4항·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9항, 제6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73조의2제1항·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제85조제2항·제3항,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의3제1항·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제2항 중 " 산업자원부령 "을 각각 "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3항·제4항·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제3항, 제5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3호·제2항,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제1항, 제66조의3제1항·제3항, 제67조,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0조 단서, 제71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항, 제73조의6,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8조제6호, 제80조,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제2항, 제92조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중 "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 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 기획예산처장관 "을 "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 ” 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 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3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16호,2008. 3. 28.>(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제9장(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3호,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3항 중 “ 제2항제1호ㆍ제3호 ” 를 “ 제2항제1호 ” 로 한다.

제101조제7호,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 제9조제4항(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 제9조제4항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017호,2008.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4호,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0호,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위 공중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필증은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증명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은 제7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전단 중 "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 전기사업법 제31조 "를 " 「전기사업법」 제61조 "로, " 동법 제32조 "를 " 같은 법 제62조 "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 동법 동조제17호 "를 " 같은 조 제19호 "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로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로 한다.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를 각각 "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로 한다.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로, " 제2조제17호 "를 " 제2조제19호 "로 한다.

부칙 <제10000호,2010. 2. 4.>(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 제34조제3호 "를 "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로, " 제75조 "를 " 제74조 "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53호,2010. 4. 1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칙 <제10500호,2011.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80호,2011. 4. 12.>(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89호,2011. 6. 7.>(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 보육시설 " 을 " 어린이집 " 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10912호,2011. 7. 25.>(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 를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 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 지식경제부령 "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령 " 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

2항, 제16조의2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제4호,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7조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1조, 제7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2제1항 전단,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8조제8호,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4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 지식경제부 ”를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 ”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을 “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4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5호,2013. 7. 3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968호,2013. 7.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54호,2014. 1. 1.>(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를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329호,2014. 1. 21.>(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중 " 「청소년활동진흥법」 "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2357호,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2호,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16호,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전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시점을 포함한 준비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3313호,2015. 5.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0호,2015. 6. 22.>(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 제51조제2항 " 을 " 제46조제2항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제51조제4항 " 을 " 제46조제4항 " 으로 한다.

부칙 <제13858호,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72호,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4호,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9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64호,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10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80호,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8호,2019. 8. 27.>(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4& 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945호,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7호,2020. 2. 18.>(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170호,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 「전기사업법」 제12조 ”를 “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 ”으로 한다.

부칙 <제17171호,2020. 3. 31.>(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을 “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 제61조 및 제62조 ”를 “ 제61조 ”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를 “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 ”를 “ 전기사업자 ”로 한다.
제71조 중 “ 제63조 또는 제65조 ”를 “ 제63조 ”로, “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 ”를 “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 ”로 한다.
제73조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안전공사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제63조 및 제65조 ”를 “ 제6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 ”을 “ 제61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를 “ 전기사업자 ”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 ”을 “ 제18조제2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 ”을 “ 제61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344호,2020. 6. 9.>(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 ”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 ”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 ”으로 한다.

⑬부터2)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535호,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9호,2020. 12. 2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으로 한다.

<6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097호,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0호,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8284호,2021. 6. 15.>(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단서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310호,2021. 7. 2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8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18469호,2021. 9. 2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로 한다.

⑪부터1(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504호,2021. 10.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3호,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중 “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를 “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을 “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으로 한다.

부칙 <제19117호,2022. 12. 2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2호 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으로 한다.

<72>부터 <98>까지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 - 203 - 3888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 - 203 - 3916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 - 203 - 392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044 - 203 - 393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 - 203 - 3982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044 - 203 - 4593

제1장 총칙 <개정 2009. 11. 20.>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 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 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21. 10. 19.>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 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 이란 해당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장 전기사업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신설 2020. 9. 29.>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6. 7. 28., 2020. 9. 29., 2022. 3. 25.>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1. 20.]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본조신설 2018. 12. 11.]

[제4조의2에서 이동 <2020. 9. 29.>]

제5조(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28.>

1. 본인 또는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할 것을 본인과 합의 또는 양해한 관계(이하 “공동보유관계”라 한다)

1)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본인 또는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자가 지정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는 행위

4)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선임

나.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와 전기사업자 간의 임직원 겸임 또는 파견 등 인사교류의 실시

다. 그 밖에 전기사업자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4.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15.]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9.]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

제5조의3(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20. 9. 29.>]

제5조의4(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본조신설 2018. 12. 11.]

[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20. 9. 29.>]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11., 2021. 3. 30., 2021. 10. 19., 2023. 3. 21.>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제외한다) 약관
나.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다.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4의2.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제1호의2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5의2.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나.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7.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9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6. 7. 28.]

[제5조의4에서 이동 <2020. 9. 29.>]

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4. 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5. 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면책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2. 11.]

제7조의3(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1.>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 신청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자료
4.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사항
   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조신설 2021. 4. 20.]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09. 11. 20.]

제9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그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개정 2013. 3. 23.>

1.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 제공 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算定)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개정 2013. 3. 23.>

1. 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複數)의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개정 2013. 3. 23.>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개정 2017. 12. 26.>

1.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해당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11. 20.]

제10조(사실조사)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8. 12. 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 9.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7. 28.]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11.>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

[제목개정 2018. 12. 11.]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8. 12. 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전문개정 2009. 11. 20.]
[제목개정 2018. 12. 11.]

제1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삭제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1. 20.]
[제목개정 2018. 12. 11.]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4. 24.>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 4. 24.>

1.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2.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0.]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4. 24.]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8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4., 2014. 6. 25., 2014. 11. 19., 2015. 7. 24.>
1.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 기금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 관련 단체
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
[전문개정 2009. 11. 20.]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 사업예정자 ”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 기초조사 ”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8. 12. 11.>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 의견청취 ”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2. 기초조사의 결과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의 제출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예정자는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24.]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17조의2(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8.>
1.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수준
2.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의 계획 및 실적
   나. 전기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다. 전기설비와 통신ㆍ전산설비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관리의 적정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평가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평가의 항목
2.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목록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와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8. 18.>

[본조신설 2014. 4. 24.]

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ㆍ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③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4장 전력시장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 12., 2021. 10. 19., 2023. 3. 21.>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같은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3. 2., 2021. 3. 30.>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ㆍ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21. 1. 12.>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3. 3. 21.>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
2.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3. 제59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한 전력으로는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⑤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란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⑥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신설 2014. 11. 19.>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가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합한 전력거래량에서 제1호의 전력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 11. 19.>

1.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내부의 전력소비자(해당 수요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전력소비감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하는 전력소비 감축의 지시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2.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외부의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감축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전문개정 2009. 11. 20.]

제19조의2(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준공을 완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3.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09. 11. 20.]

제20조의2(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1. 발전사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발전사업자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원가 발전원(發電源)을 사용할 것
   나. 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보유할 것
2. 전력구매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구매자
   가. 전기판매사업자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중 이 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다. 법 제32조 단서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본조신설 2014. 11. 19.]

제20조의3(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계약 개시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이하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개시되기 6개월 전까지 그 감소 사실과 감소하는 출연금의 액수를 해당 전력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4.>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력구매자는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그 감소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20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①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하는 차액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당사자
2.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준가격
   나.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다. 계약전력량
   라. 계약기간
3. 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정산 방법 및 절차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이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기간 개시 3개월 전까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인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 전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차액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등 차액계약의 체결 및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2. 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3.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1. 19.]

제20조의6(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18.]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 × 2]

② 제1항의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1.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ㆍ용역비ㆍ연구개발비, 시설비ㆍ수선유지비 및 차입금 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해당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전문개정 2009. 11. 20.]

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방송
2.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의6에 따른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④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 8. 18.]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의 석탄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補塡)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

⑤ 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2항에 따른 기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6조(협약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0.]

제27조 삭제 <2009. 11. 20.>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삭제 <2016. 7. 28.>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6. 7. 28., 2017. 7. 26.>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 7. 28.>

⑤ 전력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09. 11. 20.]

제28조의2(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0.]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 3. 23.>
③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1조(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2조(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4., 2019. 5. 28., 2021. 1. 12., 2021. 6. 8.>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ㆍ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전문개정 2009. 11. 20.]

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2. 26.]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7조(가산금)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 11. 20.]

제3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회사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2013. 3. 23.>

④ 기금의 지원 조건·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7장 전기위원회

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9조의2(재정의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당사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전기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당사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재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9. 30.]

제3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심의ㆍ재정(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40조(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1조(운영규정)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09. 11. 20.]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30.>

[전문개정 2009. 11. 20.]

제42조의2 삭제 <2021. 3. 30.>

제42조의3 삭제 <2021. 3. 30.>

제42조의4 삭제 <2021. 3. 30.>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 11. 20.]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魚礁) 설치행위

[전문개정 2009. 11. 20.]

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지났을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에 설치될 것

[전문개정 2009. 11. 20.]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2. 인ㆍ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본조신설 2011. 9. 30.]

제45조 삭제 <2021. 3. 30.>

제46조 삭제 <2021. 3. 30.>

제47조 삭제 <2002. 7. 27.>

제48조 삭제 <2002. 7. 27.>

제49조 삭제 <2021. 3. 30.>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신설 2011. 9. 30.>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2조 삭제 <2008. 12. 24.>

제53조 삭제 <2008. 12. 24.>

제54조 삭제 <2008. 12. 24.>

제55조 삭제 <2008. 12. 24.>

제56조 삭제 <2008. 12. 24.>

제57조 삭제 <2008. 12. 24.>

제58조 삭제 <2008. 12. 24.>

제59조 삭제 <2008. 12. 24.>

제10장 보칙 <개정 2009. 11. 20.>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3. 21.]

제60조(회계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61조 삭제 <2008. 12. 24.>

제61조의2 삭제 <2021. 3. 30.>

제61조의3 삭제 <2021. 3. 30.>

제61조의4(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96조의5제1항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충전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충전요금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2021. 1. 5.>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나.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4. 삭제 <2021. 3. 30.>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21. 3. 3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2021. 3. 30.>

1. 삭제 <2021. 3. 30.>
2. 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
4. 삭제 <2021. 3. 30.>

④ 삭제 <2021. 3. 30.>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신설 2018. 12. 11.>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전문개정 2009. 11. 20.]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3. 2.>

1. 삭제 <2021. 3. 2.>
2. 삭제 <2020. 3. 3.>
3.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의 비율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 3. 3.>
5. 제20조의2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1. 3. 2.>
7. 삭제 <2021. 3. 2.>

[본조신설 2013. 12. 30.]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이용요금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3. 30.>

⑤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설비의 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출입에 관한 사무

⑥ 삭제 <2021. 3. 30.>

[본조신설 2017. 3. 2.]

제11장 벌칙 <신설 2009. 11. 20.>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부칙 <제17137호,2001.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력의 직접구매의 허용시기)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3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4조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허용량의 적용에 대한 특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도의 연간 총생산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생산한 것으로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도의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 “일반전기사업자”를 “발전사업

자 ” 로 한다.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 을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 로 한다.

③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라목중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 을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 로 한다.

④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9호중 “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 ” 를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 로 한다.

⑤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중 “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 ” 을 “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 ” 으로 한다.

⑥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6호중 “ 전기사업법 제43조 ” 를 “ 전기사업법 제72조 ” 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 를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 로 한다.

⑦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 ”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 로,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 전기사업법 제31조 또는 제32조 ” 를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 ” 로 한다.

⑧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 로 한다.

별표 9 제3호중 “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 ” 을 “ 전기사업법 제26조 ” 로 한다.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 ”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 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 전기사업법 제48조 ” 를 “ 전기사업법 제74조 ” 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 를 “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 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 전기사업법 제17조 ” 를 “ 전기사업법 제16조 ” 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⑩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4호중 “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 ”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 로 한다.

⑪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 ”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 ” 로 한다.

⑫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 전기사업법 제39조 ” 를 “ 전기사업법 제67조 ” 로 한다.

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0호 바목중 “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 ” 을 “ 전기사업법 제73조 ” 로 한다.

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5호 내지 제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4호 내지 제88호를 각각 삭제한다.

75. 전기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76. 전기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

77. 전기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78.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0.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

81.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8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83. 전기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⑮방화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 ” 를 “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 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54호,2001. 12. 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6호,2002. 7.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를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 로 한다.

부칙 <제17824호,2002. 12. 30.>(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8267호,2004. 1. 29.>(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내지 ⑦생략

부칙 <제18458호,2004. 6. 29.>

제47조 제3항중 “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 을 “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9023호,2005. 8. 3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024호,2005. 8.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제2항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64호,2005. 9.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분 부담금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88호,2005.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 이후의 전기요금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0>생략

<181>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182>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14호,2006. 10. 2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 나목 및 제42조의3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⑦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963호,2007. 3. 27.>(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을 “ 「도서관법」 ”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090호,2007. 6. 15.>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1호,2007. 10. 23.>(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중 “ 「통계법」 제17조제1항 ”을 “ 「통계법」 제22조제1항 ”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78호,2008. 2. 29.>(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42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6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ㆍ제3항제3호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181호,2008. 12. 2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2호란을 삭제한다.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76호,2009. 8. 6.>(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33호,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2조제17호"를 "같은 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칙 <제22568호,2010. 12. 2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자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188호,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의 또는 재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48호,2011. 10. 25.>(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 「원자력법」 ”을 “ 「원자력안전법」 ”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356호,2011. 12. 8.>(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 보육시설 ”을 “ 어린이집 ”으로 한다.

4* 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458호,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6호,2012. 5.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18호,2012. 8. 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4442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23호,2014.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93호,2014. 6. 2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736호,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신청서 제출 및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의4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시되는 차액계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차액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차액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26054호,2015. 1. 15.>

이 영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39호,2015. 7. 2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 에너지관리공단 ”을 “ 한국에너지공단 ”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6489호,2015. 8. 18.>

이 영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30호,2015.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6703호,2015. 12. 1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3호,2015. 12. 2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1& 부터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6916호,2016. 1. 1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4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404호,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27927호,2017.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74호,2017. 5. 29.>(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2@ 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212호,2017. 7. 26.>(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 미래창조과학부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8493호,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기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납부받아 출연하지 아니한 기술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344호,2018. 12. 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50호,2018. 12. 3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 중 “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을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792호,2019. 5.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6호,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6호,2021.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16호,2021. 3.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6호,2021. 3. 30.>(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6호 중 "법 제66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66조제6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2조제1항 전단"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3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7,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제6호로 한다.

⑫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614호,2021. 4.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630호,2021. 4. 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42호,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014호,2021. 9. 2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2072호,2021. 10. 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57호,2022. 3. 25.>(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2697호,2022. 6. 1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338호,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급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82호,2023. 4. 11.>(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국가보훈처장 "을 " 국가보훈부장관 "으로 한다.

<5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913호,2023. 12. 1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0. 19.>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구분	등록기준		
	인력	시설	자본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	해당없음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에너지·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에너지·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고

1. 위 표에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기술인 중에서 중급 기술자·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9. 29.>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과징금 금액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해당없음
2.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해당없음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해당없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해당없음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의2	허가취소	해당없음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6개월	4천만원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3개월	2천만원
7.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7호	사업정지 3개월	2천만원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8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9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0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0호의2	사업정지 6개월	해당없음
1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해서만 전력을 거래해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1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12.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2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13.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3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4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4천만원 (사업정지 명령을 갈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 9. 29.>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과징금 금액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12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해당없음
2.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2조 제2항제2호	등록취소	해당없음
3.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2항제3호	등록취소	해당없음
4.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12조 제2항제4호	사업정지 3개월	2천만원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2항제5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법 제12조 제2항제6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4천만원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외4] <개정 2018. 12. 11.>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상한액
1. 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제1호	매출액의 100분의 4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매출액의 100분의 2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제3호	매출액의 100분의 4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제4호	매출액의 100분의 4
5.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제5호	매출액의 100분의 1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제6호	매출액의 100분의 4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18. 12. 11.>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6조의2제1항 관련)

분야	세부 항목
1. 환경 분야	가.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 규제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발전설비가 대기·수질 및 토지 등의 환경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 다. 발전설비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 라. 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분석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구축 방안
2. 경제·사회 분야	가.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나. 발전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고용 유발 효과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외6] <개정 2018. 12. 11.>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22조제1항 관련)

분 야	공개 항목
1.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	가. 시장참여자(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장참여자별 설비용량 다. 시간대별 전력계통 한계가격(SMP,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가격을 말한다) 라. 발전기 및 시간대별 제약발전전력량(계통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목적 또는 발전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계획된 발전량을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을 말한다) 및 제약비발전전력량(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을 말한다) 마. 전력계통 운영 보조서비스(예비전력 및 외부전원 없이 스스로 기동이 가능한 자체기동발전기 등 전기품질과 전력계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정산금 바. 기준용량가격(발전설비의 공급가능용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간당 가격을 말한다) 사. 지역 및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지역과 시간대를 구분하여 기준용량가격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계수를 말한다)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1)부터 3)까지의 정보 1) 설비용량 2) 전력거래량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및 금액
2.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	가. 발전기 및 시간대별 자동발전제어(AGC) 대상 여부 및 제외 사유 나. 발전기별 5분 단위 경제급전(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연료비와 송전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발전출력을 배분한 전

	기공급을 말한다) 자료 다. 발전기별 5분 단위 안전도제약 경제급전(SCED, 발전기 및 송전선로 용량 등 전력계통의 제약을 고려한 경제급전을 말한다) 자료 라. 발전기별 5분 단위 상태추정(전력계통과 발전설비·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 데이터를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전력(MW) 마. 모선(발전소 또는 변전소에 설치하여 전력을 모아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전력설비를 말한다)별 5분 단위 상태추정 자료[전력(MW) 및 전압(kV)] 바. 주파수 유지율 사. 5분 단위 전력수요 예측자료(MW) 아. 상태추정에 의한 총부하 및 실부하 자료 자. 운전 예비전력
3. 그 밖의 정보	가. 전력수요 전망(주간, 월간, 2년간, 7년 이상) 나. 발전기별 예방정비 계획(주간 단위) 다. 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휴전계획 라. 발전설비 고장통계 마. 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고장통계 바. 개정내용 및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全文)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7] 삭제 <2021. 3. 30.>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삭제 <2021. 3. 30.>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삭제 <2021. 3. 30.>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3.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8조제2항제1호	80만원
2.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8조제2항제2호	50만원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8조제2항제3호	50만원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1호	200만원
4의2.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2호	200만원
5.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법 제108조제2항제4호	80만원
6.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7호	200만원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1.9.30>

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

구분	사용기간	보상금액 산정기준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사용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한시적 사용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 평가가액 ×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사용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지하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비고

1. "입체이용저해율"이란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말한다.
2. "추가보정률"이란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이란 법 제9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면적을 말하며, "지하 공간의 사용면적"이란 법 제9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4. "한시적 사용"이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송전선로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가 계획된 경우를 말한다(법 제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토지의 가격(단위면적당 적정가격 및 단위면적당 사용료 평가가액을 말한다), 입체이용저해율 및 추가보정률 등 손실보상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평가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0호, 2023. 12.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 - 203 - 3888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 - 203 - 3916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 - 203 - 392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044 - 203 - 393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 - 203 - 3982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044 - 203 - 45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0., 2021. 4. 1., 2021. 7. 21.>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 전기수용설비 ” 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말한다.
6. “ 수전설비 ” 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7. “ 구내배전설비 ” 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8. “ 저압 ” 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 고압 ” 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 특고압 ” 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21. 4. 1.>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7. 1. 6., 2020. 2. 21., 2021. 4. 1.>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 "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1.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2호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나. 구역전기사업자
   다.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본조신설 2019. 7. 24.]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31., 2020. 9. 29., 2022. 1. 21.>

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한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주명부. 이 경우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6. 삭제 <2014. 7. 31.>
7. 삭제 <2014. 7. 31.>
8. 삭제 <2014. 7. 31.>
9. 삭제 <2014. 7. 31.>
10. 삭제 <2014. 7. 31.>
11. 삭제 <2014. 7. 31.>
12. 삭제 <2014. 7.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0. 9. 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2013. 3. 2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1. 20.]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1.>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설치장소(동일한 읍ㆍ면ㆍ동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발전설비[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원동력설비 중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및 보일러와 같은 목에 따른 발전기계통설비 중 발전기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1. 20.]

제6조(사업허가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31.>

1. 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31.>

1.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전기설비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7. 31.>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한다.<신설 2022. 4. 22.>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7. 31., 2022. 4. 22.>

[전문개정 2009. 11. 20.]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전력망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예산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영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전력망 협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능형전력망 협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9.]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31., 2015. 1. 27., 2020. 9. 29., 2022. 1. 21.>

1. 양수이유서 또는 분할ㆍ합병이유서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ㆍ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사업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분할ㆍ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5.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6.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7. 발전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8.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7., 2018. 12. 13., 2020. 9. 29.>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2.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자료(가목 및 나목은 법인만 해당한다)
   가. 정관
   나. 주주 현황
   다. 사업 현황
3. 주식취득의 목적 및 사유에 관한 자료
4. 영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획(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2013. 3. 23., 2015. 1. 27.>

[전문개정 2009. 11. 20.]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26.]

제10조(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내용
3.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예정 연월일

[전문개정 2009. 11. 20.]

제10조의2(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1.>

1. 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본조신설 2018. 12. 13.]

제11조 삭제 <2018. 12. 13.>

제12조 삭제 <2018. 12. 13.>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4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3.>

[전문개정 2016. 7. 28.]

제14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이용요금
2. 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3. 송전ㆍ배전사업자 간 및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5. 공사비 등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의 기준 및 부담방법
6.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접속점 및 접속기준
7. 그 밖에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0.]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안
2.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전문개정 2009. 11. 20.]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류
3. 공급전압 및 주파수
4. 전기요금
5.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 및 요금계산 방법
7.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점
8. 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ㆍ기구 등 용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개정 2009. 11. 20.]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본공급약관안
2. 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제1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전문개정 2009. 11. 20.]

제17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신사업 약관
2. 요금 또는 가격 산정의 근거

②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변경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구대비표
2. 전기신사업 약관의 변경사유 및 근거

③ 법 제16조의2제3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
2. 전기신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8. 12. 13.]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8. 12. 13.>]

제17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3.>

1. 생산한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2.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택지개발사업의 일정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허가 받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

[제17조의2에서 이동 <2018. 12. 13.>]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1.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0. 21.]

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 따른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전문개정 2009. 11. 20.]

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
2.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3.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전기판매사업자 ”는 “ 구역전기사업자 ”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7.>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신규건설 또는 폐지되는 연도별 전기설비용량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전기설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
   나. 연도별 공사비명세서
   다. 연도별·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적은 서류(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별표 4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2.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전문개정 2009. 11. 20.]

제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라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시설의 개요서
2. 제조시설의 공사공정표
3. 연도별 공사비명세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4. 제조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 생산계획을 적은 서류
5. 생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6. 공급계약서 사본
7.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변경이유서
2. 변경공사 개요 설명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11. 20.]

제22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영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2. 28.>

[본조신설 2009. 11. 20.]

제22조의3(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20. 9. 29.>]

제22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법 제34조제3항, 영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액계약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액계약서(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것에 한정한다)의 사본
2.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서류 등 차액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4. 11. 21.]

[제22조의3에서 이동 <2020. 9. 29.>]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 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출연금 및 회원의 출자금
2. 금융기관에 자산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전문개정 2009. 11. 20.]

제24조(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수료 결정을 위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사회 의결서 사본
2. 수수료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전문개정 2009. 11. 20.]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법률ㆍ분쟁조정 분야,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전력계통 분야, 구조개편 분야 및 시장조성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7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2. 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전력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연구ㆍ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21. 4. 1.>

④ 삭제 <2021. 4. 1.>

[전문개정 2009. 11. 20.]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

[전문개정 2009. 11. 20.]

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4. 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

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 11. 20.]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1. 4. 1.>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 4. 22.>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21. 4. 1.>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2022. 4. 22.>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11. 20.]

제31조의2(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4. 1.>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ㆍ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2조 삭제 <2021. 4. 1.>

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① 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 4. 1., 2021. 7. 21., 2023. 11. 8., 2023. 12. 20.>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별로 수행해야 한다.<신설 2021. 7. 21.>

1. 제1항 각 호의 사람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전문개정 2009. 11. 20.]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제31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4. 1.>

③ 삭제 <2021. 4. 1.>

[전문개정 2009. 11. 20.]

제35조(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검사 항목ㆍ절차 등의 기준

③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
2.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본조신설 2021. 7. 21.]

제35조의2 삭제 <2021. 4. 1.>

제35조의3 삭제 <2021. 4. 1.>

제35조의4 삭제 <2021. 4. 1.>

제36조 삭제 <2021. 4. 1.>

제37조 삭제 <2021. 4. 1.>

제37조의2 삭제 <2021. 4. 1.>

제38조 삭제 <2021. 4. 1.>

제38조의2 삭제 <2021. 4. 1.>

제38조의3 삭제 <2021. 4. 1.>

제39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물밑선로보호구역 위치도(축척 25만분의 1 지도)
2. 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적은 서류

② 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0조 삭제 <2021. 4. 1.>

제41조 삭제 <2021. 4. 1.>

제42조 삭제 <2021. 4. 1.>

제43조 삭제 <2021. 4. 1.>

제44조 삭제 <2021. 4. 1.>

제44조의2 삭제 <2021. 4. 1.>

제45조 삭제 <2021. 4. 1.>

제45조의2 삭제 <2021. 4. 1.>

제45조의3 삭제 <2021. 4. 1.>

제46조 삭제 <2021. 4. 1.>

제46조의2 삭제 <2021. 4. 1.>

제46조의3 삭제 <2021. 4. 1.>

제46조의4 삭제 <2021. 4. 1.>

제47조 삭제 <2021. 4. 1.>

제48조 삭제 <2008. 12. 31.>

제49조 삭제 <2008. 12. 31.>

제50조 삭제 <2008. 12. 31.>

제50조의2 삭제 <2021. 4. 1.>

제50조의3 삭제 <2021. 4. 1.>

제51조 삭제 <2021. 4. 1.>

제52조 삭제 <2021. 4. 1.>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2020. 9. 29.>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0. 8. 3.>
3. 제22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 8. 3.>
5. 삭제 <2020. 8. 3.>
6. 삭제 <2020. 8. 3.>
7. 삭제 <2021. 4. 1.>
8. 삭제 <2020. 8. 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1. 삭제 <2017. 2. 28.>
2.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변경허가의 대상인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17. 2. 28.>
4. 삭제 <2017. 2. 28.>
5.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기준 및 기간: 2015년 1월 1일
7. 삭제 <2017. 2. 28.>
8. 삭제 <2017. 2. 28.>
9. 삭제 <2017. 2. 28.>
10. 삭제 <2017. 2. 28.>

11. 삭제 <2017. 2. 28.>
12. 삭제 <2021. 4. 1.>
13. 삭제 <2017. 2. 28.>
[본조신설 2014. 11. 21.]

부칙 <제122호,2001. 4.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 " 를 "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 " 로 한다.

②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 " 을 "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 으로 한다.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 전기사업법 제39조 " 를 " 전기사업법 제67조 " 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호,2001.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2. 9.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3차 점검을 실시한다.

부칙 <제193호,200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4. 4. 20.>(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다목중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을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 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244호,2004. 8.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 2004년 5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254호,2005. 2. 2.>(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5. 5.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03호,200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06. 10. 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07.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ㆍ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중 “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산업자원부령 ”을 각각 “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 산업자원부 ”를 각각 “ 지식경제부 ”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 행정자치부 ”를 “ 행정안전부 ”로 한다.

4(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1호,2008. 12. 31.>(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 법 제9조제4항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 법 제10조제1항 ”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을 “ 발전사업 ”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 법 제10조제3항 ”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업내용란의 다음란 중 “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 ”를 “ 「전기사업법」 제9조 ”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 기재요령란의 제1호 중 “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 ”을 “ 「전기사업법」 ”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양수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 ”를 “ 「전기사업법」 제10조 ”로, “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을 “ 전기사업 ”으로, “ 산업자원부장관 ”을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을 “ 발전사업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합병(분할)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 ”를 “ 「전기사업법」 제10조 ”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을 “ 발전사업 ”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3호,2009. 11. 2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11. 10. 19.>(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71호,2012. 10. 5.>(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7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 지식경제부 ”를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 ”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4$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2호,2013.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ㆍ갱신ㆍ만료 등으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를 새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호,2014.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호,2014.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5.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5. 11. 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 시설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야영장업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야영장업 시설: 1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된 야영장업 시설: 이 규칙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부칙 <제235호,2017. 1. 6.>(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 생략

부칙 <제248호,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17. 7. 26.>(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 국민안전처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부칙 <제286호,2018. 1. 1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18.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역전기사업자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21호,2018. 12. 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19. 7. 24.>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19.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20.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의 정기점검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375호,2020.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계통의 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10 제1호(7) 및 제2호가목(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부칙 <제384호,2020.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검검을 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부칙 <제395호,2020. 9. 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2021.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는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설비별 검사주기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부칙 <제435호,2021. 10. 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22. 1.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2022.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나목,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별표 9 제8호다목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3호,2022.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23.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계획 인가의 신청 또는 신고(변경인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 21.>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제4조제1항제1호 관련)

1.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업 구분

나. 사업계획 개요(사업자명, 전기설비의 명칭 및 위치, 발전형식 및 연료, 설비용량, 소요부지면적,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다. 전기설비 개요

라. 전기설비 건설 계획(구체적인 주요공정 추진 일정 및 건설인력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마. 전기설비 운영 계획(기술인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바.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경우 회(灰)처리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발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발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 온실가스 감축계획(화력발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차.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전기사업회계규칙」의 계정과목 분류에 따른 공사비 개괄 계산서를 포함한다)

카.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 연도별·용도별 공급계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1호다목의 전기설비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발전설비

1) 수력설비

가) 저수지 또는 조정지(수력발전용 유량 조절 못)의 전용량, 유효용량, 계획 홍수량, 이용 수심, 수차의 종류, 출력, 회전수 및 대수

나) 댐, 취수구 및 방수구의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다) 최대 및 상시 유효낙차

2) 화력설비

가) 가스터빈 또는 증기터빈의 종류, 정격출력, 정격전압, 주파수, 주증기 정지밸브의 입구 압력 및 온도

나) 보일러의 종류, 증발량,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대수

다) 연료의 종류

3) 원자력설비

가) 원자로의 형식·열출력 및 기수, 연료의 종류 및 초기 농축도 원자로의 제어방식

나) 증기터빈의 종류, 정격출력, 정격전압, 주파수, 주증기 정지밸브의 입구 압력 및 온도

4) 풍력설비

가) 최대·상시 풍속, 풍차의 운전(시동·정격 및 정지) 풍속, 풍차의 회전수·직경, 회전날개의 수·길이 및 지주의 높이

나) 발전기의 종류 및 정격출력, 정격전압, 주파수

5)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정격출력

나) 인버터(Inverter)의 종류, 입력전압, 출력전압 및 정격출력

다) 집광판(集光板)의 면적

6) 전기저장장치

가) 이차전지의 종류, 입력전압, 출력전압 및 정격출력

나)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및 제어방식

7) 그 밖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의 경우에는 원동력의 종류 및 정격출력, 공급 전압, 주파수, 설비별 제원 등

나. 송전·변전설비

1)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 변압기의 종류·용량·전압·대수

2) 송전선로의 명칭·구간 및 송전 용량

3) 개폐소의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4) 송전선의 종류·길이·회선 수 및 굵기의 1회선당 조수(條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4.7.31>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구비서류
1. 재무능력 관련	가.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의 의견서. 다만,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나.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2. 기술능력 관련	가.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서류
3. 계획에 따른 수행 가능 여부 관련	가. 발전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풍력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발전설비용량이 10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나.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다. 송전관계 일람도(一覽圖) 라.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마.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 실적 사.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그 밖의 사항 관련	가.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발전원가명세서(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의 허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허가 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말한다)

비고

1.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초과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2호가목, 제3호다목,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서류만 제출한다.
2.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4호나목에 따른 서류만 제출하며,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외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8. 12. 13.>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3.3.23>

표준전압 ·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제18조 관련)

1.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

표 준 전 압	허 용 오 차
110볼트	110볼트의 상하로 6볼트 이내
220볼트	220볼트의 상하로 13볼트 이내
380볼트	380볼트의 상하로 38볼트 이내

2.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

표 준 주 파 수	허 용 오 차
60헤르츠	60헤르츠 상하로 0.2헤르츠 이내

3. 비 고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체적인 품질유지 항목 및 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9.11.20>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제21조제1호라목 관련)

전 기 설 비	기 재 사 항
1. 발전소	
가. 설치 또는 출력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1. 명칭 및 위치 2. 원동력의 종류(수력발전소는 취수하는 하천 및 그 수계(水系)의 명칭이나 유입식·조정지식·저수지식 및 양수식의 구분, 기력발전소는 연료의 종류,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의 형식 및 연료의 종류를 적을 것) 3. 출력(변경의 경우에는 증감 출력) 4.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연간 가능발전 전력량(변경의 경우에는 증감되는 연간 가능발전량을 적고 양수식의 경우에는 양수발전분을 구분하여 적을 것. 그에 따라 다른 수력발전소의 연간 가능발전량의 변경이 부수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연간 가능발전 전력량의 증감분) 5. 발전전력의 송전방법 6. 공사비 개괄 산정액 7. 착공·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 연월일
나. 폐 지	1. 명칭 및 위치 2. 원동력의 종류 3. 출 력 4. 폐지 이유 5. 폐지 예정 연월일
2. 변전소	
가. 전압 15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또는 용량의 변경	1. 명칭 및 위치 2. 출력(변경의 경우에는 증감 출력) 3. 공사비 개괄 산정액 4. 착공·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 연월

	일
나. 전압 15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폐지	1. 명칭 및 위치 2. 출 력 3. 폐지 이유 4. 폐지 예정 연월일
3. 송전선로	
가. 전압 1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 또는 구간의 변경	1. 명칭, 구간 및 경유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의 명칭 2. 회선 수 3. 전 압 4. 전선(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굵기 5. 공사비 개괄 산정액 6. 착공·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 연월일
나. "가"의 전선로의 폐지	1. 명칭 및 구간 2. 전 압 3. 폐지 이유 4. 폐지 예정 연월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4. 2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가) 원동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수력설비		
(가)댐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댐의 설치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을 수반한 것
(다)침사지(沈砂池)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라)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도수로 또는 방수

길) 또는 방수로		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마)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여수로(餘水路)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압력 조정용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라) 압력 조정용 용기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바)수압관로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압관로 설치 및 연장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 본체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사)수 차	수차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차 설치 (2) 대체 또는 개조
(아)양수식발전소의 양수용 펌프	펌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펌프 설치 (2) 대체 및 개조
(자)저수지 또는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조정지	치	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수위(滿水位)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기력설비		
(가)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 체
(나)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 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연료연소설비	(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마)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바)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가스터빈 설치		
(가)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다)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4)복합화력설비		
(가)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다)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가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 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마)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바)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 설치 또는 대체
(사)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 체
(아)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5)내연력설비		
(가)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 설치 또는 대체
(6)풍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외함과 외함 내외에 발전기 등 나셀 구성품이 설치되어 있는 풍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7)원자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원자력발전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증기터빈설비	(1) 증기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증기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2)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3)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3)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급수설비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

	체	체
(다)복수설비	복수기(復水器)의 설치 또는 대체	복수기의 설치 또는 대체
(라)보조설비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발전기계통설비		
(1)발전기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2)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모듈을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된 모듈 교체량이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교체하여 누적된 모듈 교체량이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2) 연료전지설비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보조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 전기저장장치(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4)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다)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2. 변전소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1)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2) 차단기		(1) 전압 20만볼트 이상

		인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전압 1만볼트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3) 전기저장장치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의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3. 송전선로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송전선로의 설치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의 설치 (3)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인 지중(地中) 송전선로의 설치 (4)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지중 송전선로의 설치
나. 변경공사		
1)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	(1) 전압 20만볼트 미만

	서 선로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2) 개폐소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개폐소 설치 또는 개조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개폐소 설치 또는 개조
4. 배전선로		
가. 설치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설치[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 또는 전력구(이하 "공동구·전력구"라 한다)만 해당한다]
나. 변경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공동구·전력구만 해당한다)
다.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	용량이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이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2)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3)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12. 6.>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가) 원동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수력설비		
(가)댐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댐의 설치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을 수반한 것
(다)침사지(沈砂池)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라)도수로(물을 끌어들이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연장 및 개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

는 길) 또는 방수로	조	·연장 및 개조
(마)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여수로(餘水路)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압력 조정용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라) 압력 조정용 용기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바)수압관로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압관로 설치 및 연장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 본체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사)수 차	수차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차 설치 (2) 대체 또는 개조
(아)양수식발전소의 양수용 펌프	펌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펌프 설치 (2) 대체 및 개조
(자)저수지 또는 조정지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

		지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수위(滿水位)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기력설비 (가)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 체
(나)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 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연료연소설비		(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마)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바)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가스터빈 설치		
(가)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다)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4)복합화력설비		
(가)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다)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가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 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마)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바)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 설치 또는 대체
(사)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

		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 체
(아)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5)내연력설비		
(가)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 설치 또는 대체
(6)풍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외함과 외함 내외에 발전기 등 나셀 구성품이 설치되어 있는 풍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7)원자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원자력발전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증기터빈설비	(1) 증기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3)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	(1) 증기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3)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

	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급수설비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체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체
(다)복수설비	복수기(復水器)의 설치 또는 대체	복수기의 설치 또는 대체
(라)보조설비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발전기계통설비		
(1)발전기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2)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된 모듈 교체량이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된 모듈 교체량이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2) 연료전지설비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정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보조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 전기저장장치(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4) 무정전전원장치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

	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나트륨계 이차전지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5)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다)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2. 변전소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의 변전소 설치	설치
나. 변경공사		
1)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2) 차단기		(1)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전압 1만볼트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3) 전기저장장치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의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4) 무정전전원장치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나트륨계 이차전지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3. 송전선로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송전선로의 설치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의 설치 (3)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인 지중(地中) 송전선로의 설치 (4)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지중 송전선로의 설치
나. 변경공사		
1)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2) 개폐소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개폐소 설치 또는 개조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개폐소 설치 또는 개조
4. 배전선로		

가. 설치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설치[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 또는 전력구(이하 "공동구·전력구"라 한다)만 해당한다]
나. 변경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공동구·전력구만 해당한다)
다.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	용량이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이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2)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3)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7. 2. 28.>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제2항 관련)

공사의 종류				변경 시 인가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공통사항			○발전소 준공 시기
	나. 원동력설비	1) 수력설비	가) 수력설비댐	○위치, 종류
			나) 취수로	○위 치
			다) 방수구	○위 치
			라) 수차/양수용펌프	○종류, 대수, 출력, 낙차
			마) 저수지/조정지	○유효용량
		2) 기력설비	가) 증기터빈/왕복기관	○종류, 대수, 출력, 입구압력, 온도
			나) 보일러	○종류, 대수, 증발량, 출입구압력, 온도
			다) 연료연소설비	○사용 연료의 변경
		3) 가스터빈설비	가) 가스터빈	○종류, 회전수, 압력, 온도
			나) 공기압축기	○종류, 출력, 회전수
			다) 연료연소설비	○사용 연료의 변경
		4) 복합화력설비	가) 가스터빈	○종류, 회전수, 압력, 온도
			나) 공기압축기	○종류, 출력, 회전수
			다) 연료연소설비	○사용 연료의 변경
			라) 보일러	○종류, 대수, 증발량, 출입구압력, 온도
			마) 증기터빈	○종류, 대수, 출력, 입구압력, 온도
		5) 내연력설비	내연기관	○종류, 출력, 회전수
		6) 풍력설비	풍 차	○종류, 출력 및 회전수
		7) 원자력설비	가) 증기터빈	○종류, 대수, 출력, 입구압력, 온도
			나) 급수펌프	○종류, 대수, 용량
			다) 복수펌프	○종류, 대수, 용량
	다. 발전기계통설비		가) 발전기	○종류, 용량, 전압, 회전

			나) 변압기	수 ○종류, 용량, 전압
	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태양전지	○종류, 출력
		2) 연료전지설비	연료전지	○종류, 출력
		3)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2. 변전소		1) 변압기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2)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3. 송전선로			가) 전선로 나) 개폐소	○선로(회선)수, 전압 ○전 압

비 고

1. 수력설비의 위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수력설비(댐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2. 수력설비의 출력, 낙차, 유효용량: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12. 6.>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제2항 관련)

공사의 종류				변경 시 인가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공통사항			○발전소 준공 시기
	나. 원동력설비	1) 수력설비	가) 수력설비댐	○위치, 종류
			나) 취수로	○위 치
			다) 방수구	○위 치
			라) 수차/양수용펌프	○종류, 대수, 출력, 낙차
			마) 저수지/조정지	○유효용량
		2) 기력설비	가) 증기터빈/왕복기관	○종류, 대수, 출력, 입구압력, 온도
			나) 보일러	○종류, 대수, 증발량, 출입구압력, 온도
			다) 연료연소설비	○사용 연료의 변경
		3) 가스터빈설비	가) 가스터빈	○종류, 회전수, 압력, 온도
			나) 공기압축기	○종류, 출력, 회전수
			다) 연료연소설비	○사용 연료의 변경
		4) 복합화력설비	가) 가스터빈	○종류, 회전수, 압력, 온도
			나) 공기압축기	○종류, 출력, 회전수
			다) 연료연소설비	○사용 연료의 변경
			라) 보일러	○종류, 대수, 증발량, 출입구압력, 온도
			마) 증기터빈	○종류, 대수, 출력, 입구압력, 온도
		5) 내연력설비	내연기관	○종류, 출력, 회전수
		6) 풍력설비	풍 차	○종류, 출력 및 회전수
		7) 원자력설비	가) 증기터빈	○종류, 대수, 출력, 입구압력, 온도
			나) 급수펌프	○종류, 대수, 용량
			다) 복수펌프	○종류, 대수, 용량
	다. 발전기계통설비		가) 발전기	○종류, 용량, 전압, 회전

		나) 변압기	수 ○종류, 용량, 전압
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태양전지	○종류, 출력
	2) 연료전지설비	연료전지	○종류, 출력
	3)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4) 무정전전원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2. 변전소	1) 변압기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2)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3) 무정전전원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3. 송전선로		가) 전선로 나) 개폐소	○선로(회선)수, 전압 ○전 압

비 고

1. 수력설비의 위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수력설비(댐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2. 수력설비의 출력, 낙차, 유효용량: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3. 12. 20.>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 신고 방법(제29조 관련)

1. 제출서류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제출대상기관</th><th>서 식</th><th>첨 부 서 류</th></tr>
<tr><td rowspan="3">인가신청·신고</td><td colspan="2">법 제61조제1항 전단</td><td>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d>별지 제25호서식</td><td rowspan="3">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td></tr>
<tr><td rowspan="2">법 제61조제3항 전단</td><td>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td><td>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d rowspan="2">별지 제26호서식</td></tr>
<tr><td>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td><td>시·도지사</td></tr>
<tr><td rowspan="3">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td><td colspan="2">법 제61조제1항 후단</td><td>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d>별지 제25호서식</td><td rowspan="3">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td></tr>
<tr><td colspan="2">법 제61조제2항</td><td>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d rowspan="2">별지 제26호서식</td></tr>
<tr><td>법 제61조제3항 후단</td><td>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td><td>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r>
</table>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아.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시·도지사		

비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바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사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 발전소	(1)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발전소의 출력(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력 및 상시첨두출력을 적을 것) (3)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용수량, 유효낙차 및 이론수력(최대·상시 및 상시첨두로 각각 구분하여 적을 것) (4) 내진설계 대상설비 정	(1) 송전계통도 (2)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수력발전소의 경우는 5만분의 1) 지형도 (3)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단선결선도

	착부 목록	
가. 원동력설비 1) 수력설비		(1) 유량자료 (2) 사용수량의 결정에 관한 설명서 (3) 유효낙차, 이론수력 및 출력에 관한 계산서 (4) 유량의 조정방법 및 인수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양수발전소의 양수량 결정에 관한 설명서 (6) 수차와 발전기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지하에 시설하는 것의 주변 지반의 지질 및 유수 제거방법에 관한 설명서
가) 댐	(1) 종류 · 높이 · 여유고 · 마루높이 · 마루넓이 · 일류정표고 · 일류폭 및 일류수심 (2) 댐 본체의 체적, 최대부폭, 상하류면 기울기 또는 중심각 및 반경 (3) 기초지반의 처리방법 (4) 홍수토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및 용량 (나) 수문의 종류, 주요 치수 및 문의 수 (다) 수문조작용 동력설비의 종류 및 용량 (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1) 댐의 구조도 (2) 계획홍수유량계산서 (3) 댐의 강도 및 안전도에 관한 계산서 (4) 홍수토의 구조도 및 용량 계산서
나) 취수설비	(1)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취수지점의 위치 (동 · 리까지 적을 것) (2) 취수방법 (3) 취수구의 주요 치수 및 취수구 상단표고	취수설비의 구조도

	(4) 스크린의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다) 침사지	(1) 주요 치수 (2) 토사의 침전방법 및 침전된 토사의 제거방법	침사지의 구조도
라) 도수로	(1) 길이(본수로 및 지수로와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및 압력 (2)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표준라이닝 두께 및 표준관 두께(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3) 합류조의 주요 치수	(1) 도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3) 압력도수로의 터널 경과지의 지질 및 시공방법에 관한 설명서
마) 방수로	(1) 방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방수지점의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길이,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및 표준라이닝 두께(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와 입력 (3) 방수구의 주요 치수 및 방수구 상단표고 (4) 압력 조정용 용기의 종류 및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1) 방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바)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	(1) 종류 및 압력 (2) 탱크의 주요 치수 (3) 스크린의 주요 치수 (4)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구조도

	(5) 여수로의 종류 및 주요 치수	
사) 수압관로	(1) 압 력 (2) 관 본체의 길이(본관과 지관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최대 관 두께, 최소 관 두께, 최대 안지름, 최소 안지름, 재료, 접합방법 및 지지방법 (3) 앵커블록의 종류 및 개수	수입관로의 구조도
아) 수 차	(1) 종류 · 출력 · 회전수와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양수량 · 양정 및 입력 (2) 조속기의 종류 (3)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4) 흡출관의 종류 및 흡출고 (5)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력	펌프수차의 입력결정에 관한 설명서
자) 양수식 발전소의 양수용 펌프	(1) 종류, 양수량, 양정, 입력 및 회전수 (2)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3)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력	
차) 저수지 또는 조정지	(1) 전용량, 유효용량, 이용수심, 상시만수위, 최저수위, 서차지(surcharge)용량, 서차지수위 및 제한수위 (2) 주변의 보강방법	(1)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2) 수위 담수면적곡선도 (3) 수위용량곡선도 (4) 배수위계산서
2) 기력설비		발전소 열정산도
가) 증기터빈	(1)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주요치수	(1) 증기터빈 구조도 (2) 증기터빈 하반부 기초구

	(2) 종류,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력, 배기압력, 회전수 (3) 냉각수의 종류 및 가능 취수량 (4)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5)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 복수펌프 및 냉각수펌프의 종류·용량 및 대수 (다) 튜브누설감지장치의 종류 (6)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온도, 설계외기습도, 주요 치수와 대수 (7)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열교환기의 종류, 발생증기량(가열증기량) 및 급수량,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최고 사용압력(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최고 사용온도(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가열면적과 대수,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치수와 취부개소	조물의 구조도 (3)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나) 왕복기관	(1) 종류, 출력, 기통수,	왕복기관의 구조도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배기압력과 회전수 (2) 조속장치의 종류 (3)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복수펌프의 종류·용량 및 대수 (다) 튜브누설감시장치의 종류 (4) 왕복기관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습도, 설계외기온도와 대수 (5) 냉각수의 종류 및 사용수량	
다) 보일러	(1) 종류, 증발량, 출구의 압력 및 온도, 최고 사용압력 및 온도, 가열면적, 유효화상면적, 급수온도와 상용 및 예비의 구분 (2) (증기)재가열장치 통과 증기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가열면적 (3) 절탄기의 가열면적 (4)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치수 및 취부개소 (5)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급수펌프의 종류, 급수량, 토출압력, 대	(1) 보일러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2) 급수처리 계통도

	수(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나) 저수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6)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처리설비 및 보일러수처리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7) 보일러에 부속하는 공기예열기의 종류, 입구 및 출구의 공기온도, 가열면적과 대수	
라) 연료연소설비	(1) 미분탄 연소용 기기에 관한 급탄기, 분쇄기,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용량과 대수 (2) 미분탄 외의 석탄의 연소용기에 관한 스토커(stoker)의 종류, 연소용량, 화상의 폭 및 길이와 개수 (3) 유류 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원유용과 원유 외의 석유용 구분 (나)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4) 가스연소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5) 액화가스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액화가스의 종류 및 발열량 (나) 버너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연료계통도 (2) 액화가스용 저장조 기화기냉동설비 및 가스홀더의 구조도 (3) 액화가스용 도관의 경로(지중·물밑 및 기타로 구분 표시) 경과지의 명칭 및 부근에 있는 주요 도로, 건축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축척 3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다) 액화가스용 용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6) 그 밖의 연료의 연소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및 연소기의 종류, 용량과 대수 (7) 연료운반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양탄기 및 운탄기의 종류 (나) 액화가스용 관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바깥지름의 두께 (다) 액화가스용 가압수송기의 종류·능력·대수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8) 연료저장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석탄저장소의 면적 및 저탄용량 (나) 유류탱크 및 가스·액화가스탱크의 종류, 용량과 대수 (9) 회전수송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0) 가스발생설비에 관한 액화가스용 기화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바)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3) 가스터빈 설비		발전소 열정산도
가) 가스터빈	(1) 가스터빈 기초구조물	(1) 가스터빈의 구조도

	의 주요치수 (2) 종류, 출력,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설계외기 온도와 회전수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4)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기동용 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5)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굴뚝의 종류, 지표상의 높이 및 개수	(2) 가스터빈 하반부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3) 가스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공기압축기의 구조도
다)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4) 복합화력설비		발전소 열정산도
가) 가스터빈	3)의 (가)에 열거한 사항	(1) 가스터빈의 구조도 (2) 가스터빈 하반부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3) 가스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공기압축도의 구조도
다) 보일러	2)의 다)에 열거한 사항	2)의 다)에 열거한 서류
라)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 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바)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사) 증기터빈	2)의 가)에 열거한 사항	(1) 증기터빈 구조도 (2) 증기터빈 하반부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3)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5) 내연력설비		
가) 내연기관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1) 비상정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2) 연료계통도

	(3) 과급기의 종류, 출구의 압력, 회전수와 대수 (4) 내연기관에 부속된 냉각수설비의 용량	
6) 풍력설비		
가) 풍차	(1) 풍력 기초구조물의 주요치수 (2) 종류, 출력 및 회전수 (3) 날개 지름 및 재료 (4)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1) 풍력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2) 풍력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3) 풍차정지 회로도 (4) 풍차 출력곡선 (5) 풍차구조도
7) 원자력설비		(1) 발전소 열정산도 (2)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 (증기터빈 및 발전기 계통)
가) 증기터빈설비	(1)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주요 치수 (2) 증기터빈의 종류,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의 종류, 개수,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의 종류, 대수,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력, 배기압력 및 온도, 회전수,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4)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 및 급수가열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최고 사용압력 및 최고 사용온도(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가열면적, 튜브의 재료 (나) 추기차단밸브의 종	(1) 증기터빈 구조도 (2) 증기터빈 정지 회로도 (3) 증기터빈 하반부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4)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5) 주증기 계통도 (6) 제어유 계통도 (7) 윤활유 계통도 (8) 밀봉증기 계통도

	류 (5) 윤활유펌프, 저장조, 정화장치, 가열장치의 종류·용량·대수 및 윤활유냉각기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6) 제어유펌프 및 재킹오일펌프의 종류·용량·대수 (7) 터닝기어장치의 종류, 회전수 (8) 밀봉증기의 압력·온도 및 밀봉증기응축기, 배출팬의 종류·용량·대수 (9)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개소, 개수	
나) 급수설비	(1) 급수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원동기의 종류·출력·대수 (나) 급수펌프의 종류, 급수량,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압력 (2) 저수설비, 탈기기의 종류·용량 (3)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개소, 개수	(1) 급수펌프의 구조도 (2) 급수계통도
다) 복수설비	(1)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 또는 진공펌프의 종류·용량·대수 (다) 튜브누설감시장치	(1) 복수계통도 (2) 냉각수계통도 (3) 복수탈염계통도 (4) 원수 및 순수제조설비 배치도

	의 종류 (2) 냉각수펌프, 복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출구압력 (3) 급수처리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복수탈염펌프, 복수탈염저장조의 종류·용량·대수 (나) 원수 및 순수제조설비의 종류·용량·대수	
라) 보조설비	(1) 기기냉각수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냉각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 (나) 냉각수열교환기의 종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튜브의 재료 (2) 공기압축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압축기의 종류, 용량, 대수, 입구와 출구의 압력과 온도 (나) 공기저장조의 용량 (3) 보조증기발생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용량, 출구증기 압력 및 온도,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나) 급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 (다) 연료의 종류, 저장조의 용량 (4)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최고 사용압력 (5)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	(1) 기기냉각수 계통도 (2) 공기압축장치 계통도 (3) 보조증기발생장치 구조도 및 계통도 (4) 공해방지설비의 배치도 및 계통도

	수, 취부개소 · 개수 (6) 공해방지설비의 종류, 용량과 예상 발생량 및 배출량	
나. 발전기계통설비		
1) 발전기	(1) 종류 · 용량 · 역률 · 전압 · 상 · 주파수 · 회전수 · 결선법 및 냉각법과 발전전동기의 경우에는 출력(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의 종류 · 용량 · 회전수 · 구동방법 및 대수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원동기와의 연결방법 (5) 발전기 냉각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하는 펌프) 및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의 종류 · 용량 · 대수 (나) 수소가스의 압력 · 온도 · 순도 (다) 고정자 냉각수 냉각기의 종류 · 대수 (라) 치환가스의 종류	(1) 발전기 정지회로도 (2) 발전기 밀봉유 계통도 (3) 발전기 냉각수 계통도 (4) 발전기 수소가스 계통도
2) 변압기	(1) 종류 · 용량 · 전압(1차 · 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 · 상 · 결	(1)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 차단기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선단락용량계산서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1)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개방전압, 단락전류 및 모듈의 수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발전방식 설명서 (4)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
2) 연료전지설비	(1) 연료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전압, 냉각법, 대수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연료전지 설명서
3)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4)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

	사항 (1) 전압·상수·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건물쪽·옥상·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 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 계산서 (6) 애자의 종류·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3호가목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
2. 변전소	(1)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변전소의 출력	(1) 송전선로 계통도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가. 변압기	(1) 종류·용량·전압(1차·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상·결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차단기	(1) 종류·전압·전류 및	3상단락용량계산서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다. 조상설비	(1) 종류 · 전압 · 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라. 제어장치	제어방법	제어방법에 관한 설명서
마.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 · 습도 · 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3. 송전선로	(1) 송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송전선로의 전압(설계전압과 다른 경우에는 설계전압도 적을 것)	(1) 송전선로 계통도 (2) 송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가. 전선로	(1) 길이(공중 · 지중 · 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전기방식, 중성점접지방식, 회전수(설계회선수와 다른 경우에는 설계회선수도 적을 것) 및 재폐로 방식 (3) 전선의 종류, 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전선 간의 간격 및 연가의 방법 (5) 공중지선의 종류 · 굵기 및 가닥수 (6)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전선로의 중심선(공중 · 지중 · 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경과지(동 · 리까지 표시할 것)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 · 철도 · 도로 · 건조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시가지 경우에는 2천분의 1)의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또는 물밑전선로의 부설도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통신선로와 공중전선로가 5킬로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이거나 통신선로가 지중전선로와 50미터 이내의 이

		격거리로 5킬로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전파장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개폐소	개폐소의 위치(동 · 리까지 적을 것)	주요 설비의 배치 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배전선로(공동구 및 전력구만 해당한다)	(1) 배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배전선로의 전압	(1) 배전선로 계통 (2) 배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1만분의 1 지형도
가. 전선로	(1) 길 이 (2) 전기방식, 중성점 접지방식, 회선수 및 재폐로방식 (3) 전선의 종류 · 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5)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전선로의 중심선, 경과지(동 · 리까지 표시할 것)와 전선로에서 좌우 2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 · 철도 · 도로 · 건조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천분의 1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부설도
나. 부대설비		조명 · 환기 · 배수설비의 단선결선도 및 평면도
5. 수용설비	(1) 수용설비의 위치(동 · 리까지 적고 사업자 명칭도 적을 것)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및 수용전압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명칭	(1) 주요 설비의 배치평면도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 · 전압 · 전류 및 차단 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 · 상수 · 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 · 건물쪽 · 옥상 · 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6) 애자의 종류 · 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3호 가목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3. 12. 20.>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 신고 방법(제29조 관련)

1. 제출서류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제출대상기관</th><th>서 식</th><th>첨 부 서 류</th></tr>
<tr><td rowspan="3">인가신청·신고</td><td colspan="2">법 제61조제1항 전단</td><td>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d>별지 제25호서식</td><td rowspan="3">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td></tr>
<tr><td rowspan="2">법 제61조제3항 전단</td><td>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td><td>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d rowspan="2">별지 제26호서식</td></tr>
<tr><td>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td><td>시·도지사</td></tr>
<tr><td rowspan="3">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td><td colspan="2">법 제61조제1항 후단</td><td>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d>별지 제25호서식</td><td rowspan="3">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td></tr>
<tr><td colspan="2">법 제61조제2항</td><td>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d rowspan="2">별지 제26호서식</td></tr>
<tr><td>법 제61조제3항 후단</td><td>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td><td>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r>
</table>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아.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시·도지사		

비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바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사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 발전소	(1)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발전소의 출력(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력 및 상시첨두출력을 적을 것) (3)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용수량, 유효낙차 및 이론수력(최대·상시 및 상시첨두로 각각 구분하여 적을 것) (4) 내진설계 대상설비 정	(1) 송전계통도 (2)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수력발전소의 경우는 5만분의 1) 지형도 (3)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단선결선도

	착부 목록	
가. 원동력설비 1) 수력설비		(1) 유량자료 (2) 사용수량의 결정에 관한 설명서 (3) 유효낙차, 이론수력 및 출력에 관한 계산서 (4) 유량의 조정방법 및 인수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양수발전소의 양수량 결정에 관한 설명서 (6) 수차와 발전기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지하에 시설하는 것의 주변 지반의 지질 및 유수 제거방법에 관한 설명서
가) 댐	(1) 종류 · 높이 · 여유고 · 마루높이 · 마루넓이 · 일류정표고 · 일류폭 및 일류수심 (2) 댐 본체의 체적, 최대부폭, 상하류면 기울기 또는 중심각 및 반경 (3) 기초지반의 처리방법 (4) 홍수토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및 용량 (나) 수문의 종류, 주요 치수 및 문의 수 (다) 수문조작용 동력설비의 종류 및 용량 (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1) 댐의 구조도 (2) 계획홍수유량계산서 (3) 댐의 강도 및 안전도에 관한 계산서 (4) 홍수토의 구조도 및 용량 계산서
나) 취수설비	(1)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취수지점의 위치 (동 · 리까지 적을 것) (2) 취수방법 (3) 취수구의 주요 치수 및 취수구 상단표고	취수설비의 구조도

	(4) 스크린의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다) 침사지	(1) 주요 치수 (2) 토사의 침전방법 및 침전된 토사의 제거방법	침사지의 구조도
라) 도수로	(1) 길이(본수로 및 지수로와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및 압력 (2)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표준라이닝 두께 및 표준관 두께(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3) 합류조의 주요 치수	(1) 도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3) 압력도수로의 터널 경과지의 지질 및 시공방법에 관한 설명서
마) 방수로	(1) 방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방수지점의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길이,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및 표준라이닝 두께(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와 입력 (3) 방수구의 주요 치수 및 방수구 상단표고 (4) 압력 조정용 용기의 종류 및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1) 방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바)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	(1) 종류 및 압력 (2) 탱크의 주요 치수 (3) 스크린의 주요 치수 (4)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구조도

	(5) 여수로의 종류 및 주요 치수	
사) 수압관로	(1) 압 력 (2) 관 본체의 길이(본관과 지관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최대 관 두께, 최소 관 두께, 최대 안지름, 최소 안지름, 재료, 접합방법 및 지지방법 (3) 앵커블록의 종류 및 개수	수입관로의 구조도
아) 수 차	(1) 종류 · 출력 · 회전수와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양수량 · 양정 및 입력 (2) 조속기의 종류 (3)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4) 흡출관의 종류 및 흡출고 (5)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력	펌프수차의 입력결정에 관한 설명서
자) 양수식 발전소의 양수용 펌프	(1) 종류, 양수량, 양정, 입력 및 회전수 (2)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3)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력	
차) 저수지 또는 조정지	(1) 전용량, 유효용량, 이용수심, 상시만수위, 최저수위, 서차지(surcharge)용량, 서차지수위 및 제한수위 (2) 주변의 보강방법	(1)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2) 수위 담수면적곡선도 (3) 수위용량곡선도 (4) 배수위계산서
2) 기력설비		발전소 열정산도
가) 증기터빈	(1)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주요치수	(1) 증기터빈 구조도 (2) 증기터빈 하반부 기초구

	(2) 종류,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력, 배기압력, 회전수 (3) 냉각수의 종류 및 가능 취수량 (4)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5)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 복수펌프 및 냉각수펌프의 종류·용량 및 대수 (다) 튜브누설감지장치의 종류 (6)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온도, 설계외기습도, 주요 치수와 대수 (7)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열교환기의 종류, 발생증기량(가열증기량) 및 급수량,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최고 사용압력(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최고 사용온도(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가열면적과 대수,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치수와 취부개소	조물의 구조도 (3)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나) 왕복기관	(1) 종류, 출력, 기통수,	왕복기관의 구조도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배기압력과 회전수 (2) 조속장치의 종류 (3)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복수펌프의 종류·용량 및 대수 (다) 튜브누설감시장치의 종류 (4) 왕복기관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습도, 설계외기온도와 대수 (5) 냉각수의 종류 및 사용수량		
다) 보일러	(1) 종류, 증발량, 출구의 압력 및 온도, 최고 사용압력 및 온도, 가열면적, 유효화상면적, 급수온도와 상용 및 예비의 구분 (2) (증기)재가열장치 통과 증기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가열면적 (3) 절탄기의 가열면적 (4)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치수 및 취부개소 (5)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급수펌프의 종류, 급수량, 토출압력, 대	(1) 보일러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2) 급수처리 계통도	

	수(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나) 저수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6)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처리설비 및 보일러수처리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7) 보일러에 부속하는 공기예열기의 종류, 입구 및 출구의 공기온도, 가열면적과 대수	
라) 연료연소설비	(1) 미분탄 연소용 기기에 관한 급탄기, 분쇄기,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용량과 대수 (2) 미분탄 외의 석탄의 연소용기에 관한 스토커(stoker)의 종류, 연소용량, 화상의 폭 및 길이와 개수 (3) 유류 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원유용과 원유 외의 석유용 구분 (나)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4) 가스연소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5) 액화가스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액화가스의 종류 및 발열량 (나) 버너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연료계통도 (2) 액화가스용 저장조 기화기냉동설비 및 가스홀더의 구조도 (3) 액화가스용 도관의 경로(지중·물밑 및 기타로 구분 표시) 경과지의 명칭 및 부근에 있는 주요 도로, 건축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축척 3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다) 액화가스용 용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6) 그 밖의 연료의 연소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및 연소기의 종류, 용량과 대수 (7) 연료운반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양탄기 및 운탄기의 종류 (나) 액화가스용 관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바깥지름의 두께 (다) 액화가스용 가압수송기의 종류·능력·대수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8) 연료저장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석탄저장소의 면적 및 저탄용량 (나) 유류탱크 및 가스·액화가스탱크의 종류, 용량과 대수 (9) 회전수송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0) 가스발생설비에 관한 액화가스용 기화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바)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3) 가스터빈 설비		발전소 열정산도
가) 가스터빈	(1) 가스터빈 기초구조물	(1) 가스터빈의 구조도

	의 주요치수 (2) 종류, 출력,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설계외기 온도와 회전수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4)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기동용 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5)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굴뚝의 종류, 지표상의 높이 및 개수	(2) 가스터빈 하반부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3) 가스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공기압축기의 구조도
다)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4) 복합화력설비		발전소 열정산도
가) 가스터빈	3)의 (가)에 열거한 사항	(1) 가스터빈의 구조도 (2) 가스터빈 하반부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3) 가스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공기압축도의 구조도
다) 보일러	2)의 다)에 열거한 사항	2)의 다)에 열거한 서류
라)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 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바)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사) 증기터빈	2)의 가)에 열거한 사항	(1) 증기터빈 구조도 (2) 증기터빈 하반부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3)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5) 내연력설비		
가) 내연기관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1) 비상정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2) 연료계통도

	(3) 과급기의 종류, 출구의 압력, 회전수와 대수 (4) 내연기관에 부속된 냉각수설비의 용량	
6) 풍력설비		
가) 풍차	(1) 풍력 기초구조물의 주요치수 (2) 종류, 출력 및 회전수 (3) 날개 지름 및 재료 (4)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1) 풍력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2) 풍력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3) 풍차정지 회로도 (4) 풍차 출력곡선 (5) 풍차구조도
7) 원자력설비		(1) 발전소 열정산도 (2)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 (증기터빈 및 발전기 계통)
가) 증기터빈설비	(1)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주요 치수 (2) 증기터빈의 종류,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의 종류, 개수,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의 종류, 대수,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력, 배기압력 및 온도, 회전수,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4)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 및 급수가열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최고 사용압력 및 최고 사용온도(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가열면적, 튜브의 재료 (나) 추기차단밸브의 종	(1) 증기터빈 구조도 (2) 증기터빈 정지 회로도 (3) 증기터빈 하반부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4)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5) 주증기 계통도 (6) 제어유 계통도 (7) 윤활유 계통도 (8) 밀봉증기 계통도

	류 (5) 윤활유펌프, 저장조, 정화장치, 가열장치의 종류·용량·대수 및 윤활유냉각기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6) 제어유펌프 및 재킹오일펌프의 종류·용량·대수 (7) 터닝기어장치의 종류, 회전수 (8) 밀봉증기의 압력·온도 및 밀봉증기응축기, 배출팬의 종류·용량·대수 (9)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개소, 개수	
나) 급수설비	(1) 급수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원동기의 종류·출력·대수 (나) 급수펌프의 종류, 급수량,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압력 (2) 저수설비, 탈기기의 종류·용량 (3)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개소, 개수	(1) 급수펌프의 구조도 (2) 급수계통도
다) 복수설비	(1)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 또는 진공펌프의 종류·용량·대수 (다) 튜브누설감시장치	(1) 복수계통도 (2) 냉각수계통도 (3) 복수탈염계통도 (4) 원수 및 순수제조설비 배치도

	의 종류 (2) 냉각수펌프, 복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출구압력 (3) 급수처리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복수탈염펌프, 복수탈염저장조의 종류·용량·대수 (나) 원수 및 순수제조설비의 종류·용량·대수	
라) 보조설비	(1) 기기냉각수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냉각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 (나) 냉각수열교환기의 종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튜브의 재료 (2) 공기압축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압축기의 종류, 용량, 대수, 입구와 출구의 압력과 온도 (나) 공기저장조의 용량 (3) 보조증기발생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용량, 출구증기 압력 및 온도,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나) 급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 (다) 연료의 종류, 저장조의 용량 (4)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최고 사용압력 (5)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	(1) 기기냉각수 계통도 (2) 공기압축장치 계통도 (3) 보조증기발생장치 구조도 및 계통도 (4) 공해방지설비의 배치도 및 계통도

	수, 취부개소 · 개수 (6) 공해방지설비의 종류, 용량과 예상 발생량 및 배출량	
나. 발전기계통설비		
1) 발전기	(1) 종류 · 용량 · 역률 · 전압 · 상 · 주파수 · 회전수 · 결선법 및 냉각법과 발전전동기의 경우에는 출력(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의 종류 · 용량 · 회전수 · 구동방법 및 대수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원동기와의 연결방법 (5) 발전기 냉각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하는 펌프) 및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의 종류 · 용량 · 대수 (나) 수소가스의 압력 · 온도 · 순도 (다) 고정자 냉각수 냉각기의 종류 · 대수 (라) 치환가스의 종류	(1) 발전기 정지회로도 (2) 발전기 밀봉유 계통도 (3) 발전기 냉각수 계통도 (4) 발전기 수소가스 계통도
2) 변압기	(1) 종류 · 용량 · 전압(1차 · 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 · 상 · 결	(1)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 차단기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선단락용량계산서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1)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개방전압, 단락전류 및 모듈의 수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발전방식 설명서 (4)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	
2) 연료전지설비	(1) 연료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전압, 냉각법, 대수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연료전지 설명서	
3)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4) 무정전전원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5)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상수·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건물쪽·옥상·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 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 계산서 (6) 애자의 종류·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3호가목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
2. 변전소	(1)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변전소의 출력	(1) 송전선로 계통도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가. 변압기	(1) 종류·용량·전압(1차·2차 및 3차로 구분	

	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 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상·결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차단기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상단락용량계산서
다. 조상설비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라. 제어장치	제어방법	제어방법에 관한 설명서
마.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바. 무정전전원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3. 송전선로	(1) 송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송전선로의 전압(설계전압과 다른 경우에는 설계전압도 적을 것)	(1) 송전선로 계통도 (2) 송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가. 전선로	(1) 길이(공중·지중·물	(1) 전선로의 중심선(공중·

	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전기방식, 중성점접지방식, 회전수(설계회선수와 다른 경우에는 설계회선수도 적을 것) 및 재폐로 방식 (3) 전선의 종류, 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전선 간의 간격 및 연가의 방법 (5) 공중지선의 종류·굵기 및 가닥수 (6)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지중·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경과지(동·리까지 표시할 것)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철도·도로·건조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시가지 경우에는 2천분의 1)의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또는 물밑전선로의 부설도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통신선로와 공중전선로가 5킬로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이거나 통신선로가 지중전선로와 50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킬로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전파장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개폐소	개폐소의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주요 설비의 배치 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배전선로(공동구 및 전력구만 해당한다)	(1) 배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배전선로의 전압	(1) 배전선로 계통 (2) 배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1만분의 1 지형도
가. 전선로	(1) 길 이 (2) 전기방식, 중성점 접지방식, 회선수 및 재폐로방식 (3) 전선의 종류·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5)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전선로의 중심선, 경과지(동·리까지 표시할 것)와 전선로에서 좌우 2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철도·도로·건조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천분의 1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나. 부대설비		(3) 지중전선로 부설도 조명 · 환기 · 배수설비의 단선결선도 및 평면도
5. 수용설비	(1) 수용설비의 위치(동 · 리까지 적고 사업자 명칭도 적을 것)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및 수용전압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명칭	(1) 주요 설비의 배치평면도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 · 전압 · 전류 및 차단 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 · 상수 · 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 · 건물쪽 · 옥상 · 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6) 애자의 종류 · 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3호 가목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4. 22.>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때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하였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해당한다)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소의 타워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전력구 안에 시설된 배전설비만 해당함)에 관한 공사
가.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물밑선로의 설치가 완료된 때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전기저장장치의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12. 6.>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때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하였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해당한다)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소의 타워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전력구 안에 시설된 배전설비만 해당함)에 관한 공사
가.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물밑선로의 설치가 완료된 때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신설 2021. 7. 21.>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제35조제1항 관련)

구 분	검 사 대 상	검 사 주 기	비 고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송전 및 배전 설비	(1) 가공송전설비	3년	
	(2) 지중송전설비	3년	
	(3) 변전설비	3년	
	(4) 송전·변전 특수설비		
	(가) 초고압직류 송전설비(HVDC)	2년	
	(나) 해저케이블	2년	
	(다) 유연송전설비(FACTS)	2년	
	(5) 가공배전설비	4년	
	(6) 지중배전설비	4년	
	(7) 전기저장장치(ESS)	1년	
	(8) 송전·배전 전력구 구조물	3년	

비 고

1. 자체 검사는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날(사용전검사를 받지 않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설비의 사용개시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전기설비별 검사주기에 따라 시행하되,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해가 속한 12월 31일까지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주기에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검사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삭제 <2002.9.28>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삭제 <2008.12.3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7]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8]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1]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합니다)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봅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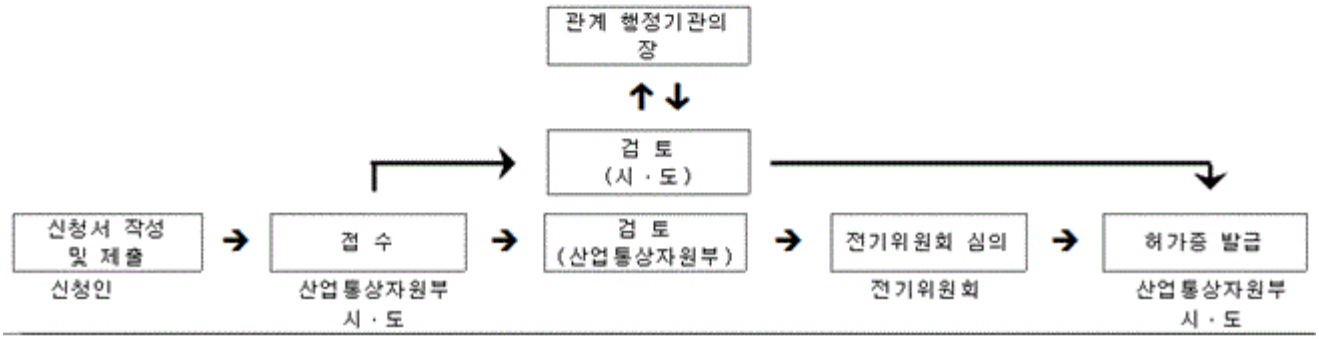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1.20>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사업연도:)

수 익						비 용			
항 목		판매/공급 전 력 량 (MW)	단 가 (원/kWH)	금 액 (백만원)	비고	항 목		금 액 (백만원)	비고
전기 판매 수익	소 계					인 건 비			
	주택용					퇴 직 금			
	일반용					연 료 비			
	교육용					감가상각비			
	산업용					수선유지비			
	농사용					구입전력료			
	가로등								
	기 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제공 수익						전 기 설 비 이용료	송전 설비		
전기공급수익							배전 설비		
						이 자 비 용			
						각 종 수 수 료			
합 계						연구개발비			
						부대사업비			
그 밖 의 수 익						그 밖 의 비 용			
총 계						합 계			

※ 기재요령: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설정·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아니면 전기판매수익의 비용 항목별 명세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29.>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 구분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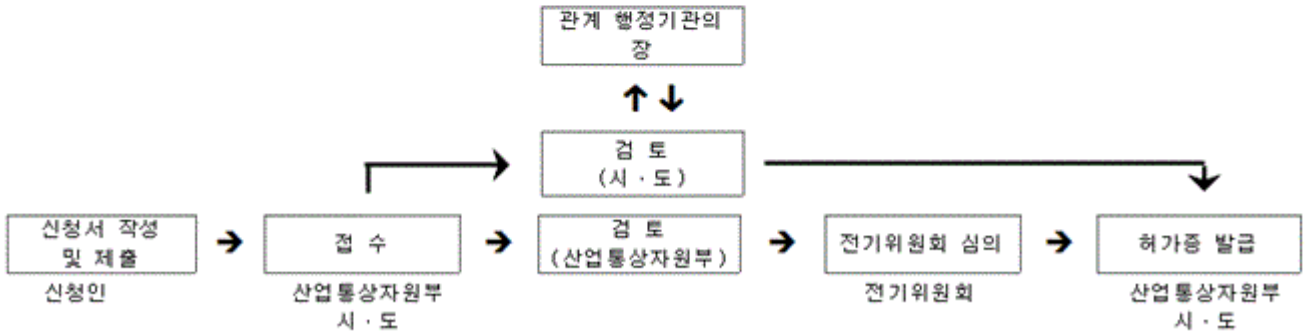

※ 작성방법: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발전, 구역전기) 사업허가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소 재 지:
4. 사업의 내용:
   사업장소:
5. 사업규모
   o 원동력의 종류:
   o 설비용량:　　MW, 공급전압:　　KV, 주파수:　　HZ
6. 특정공급구역:
7. 사업준비기간:
8. 허가조건:
9. 기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직인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발전 · 구역전기 사업의 허가에 사용됩니다
2. 발전사업은 6번란을 적지 않습니다
3. 6번란, 8번란 및 9번란에 적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 12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허가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소 재 지:
4. 사업의 내용:
5. 사업구역:
6. 수전전압 및 공급전압:
7. 사업의 준비기간:
8. 허가조건:
9. 기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송전·배전·전기판매 사업의 허가에 사용됩니다
2. 배전사업은 6번란의 공급전압만 적으며, 전기판매사업은 6번란과 7번란은 적지 않습니다
3. 8번란, 9번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 12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1.>

전기신사업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등록신청 내역	성명(대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전기신사업 종류 [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계획서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1. 10. 21.>

제　　호

전기신사업 등록증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1. 성명(대표자):
2. 상호(명칭):
3.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4. 사무소 소재지:
5. 등록 연월일:　　년　　월　　일
6. 기타:

「전기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 비고 (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재란에 적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9. 29.>

사업개시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내용	사업개시 연월일
	최초 전력거래일(발전사업자의 경우)
	사업내용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합니다)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고 수리
신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작성방법: 「전기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1.>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양수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양수예정 연 월 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시·도지사

첨부서류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 21.>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합병(분할) 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 호	전화번호
	소재지	

당사자	명칭
	주소
	명칭
	주소

합병(분할)의 내용

합병(분할)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합병(분할)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시·도지사

첨부서류	1. 분할·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0. 9. 29.>

주식취득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상대회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주식취득 예정 연 월 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자의 주식취득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2.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자료(가목 및 나목은 법인만 해당한다) 가. 정관 나. 주주 현황 다. 사업 현황 3. 주식취득의 목적 및 사유에 관한 자료 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획(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1. 10. 21.>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전기신사업 종류 [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신고 내용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지위승계 연월일	
	지위승계 원인 [ ] 양수 [ ] 상속 [ ] 합병 [ ] 분할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신설 2019. 7. 26.>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인수규모(설비용량) MW
	인수 연월일
	인수사유 [ ]경매 [ ]환가 [ ]압류재산의 매각 [ ]기타

「전기사업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의 인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	신고수리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7. 28.>

전력수전예정통지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력수전 개요
수용가명
수용장소
예상소요 전력
전력사용 용도
공급방식 전압
전력수전 지점
전력사용 예정일 년 월 일
수전설비 내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기를 대용량으로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장 귀하

(뒤 쪽)

처리절차
이 통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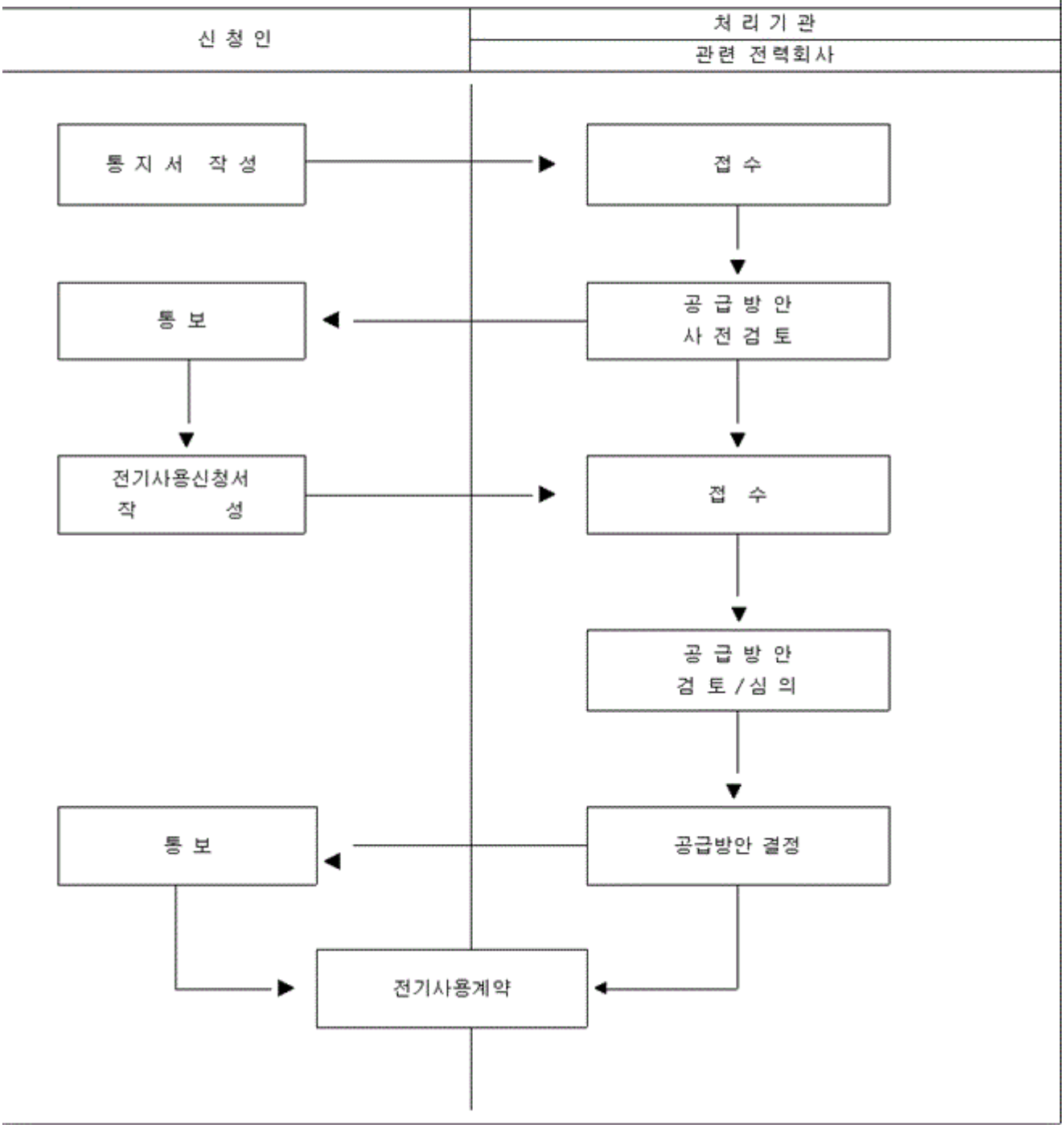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3>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기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안 2.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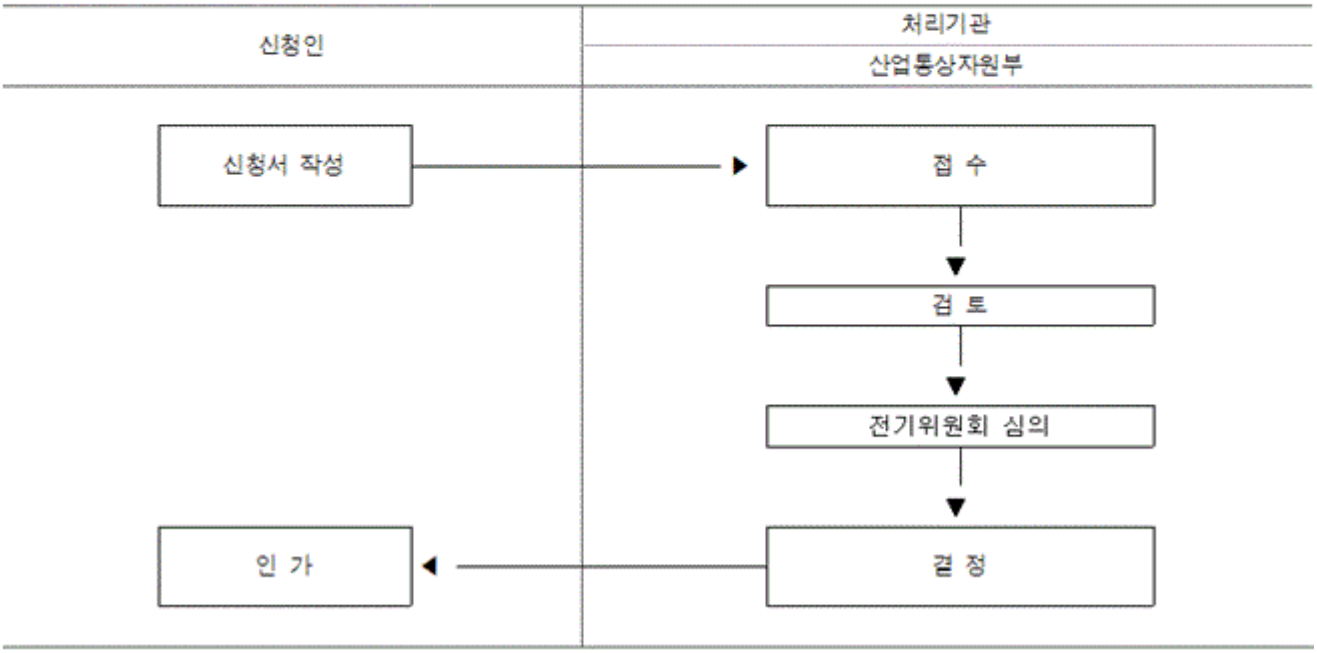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23>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기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이나 그 밖의 이용조건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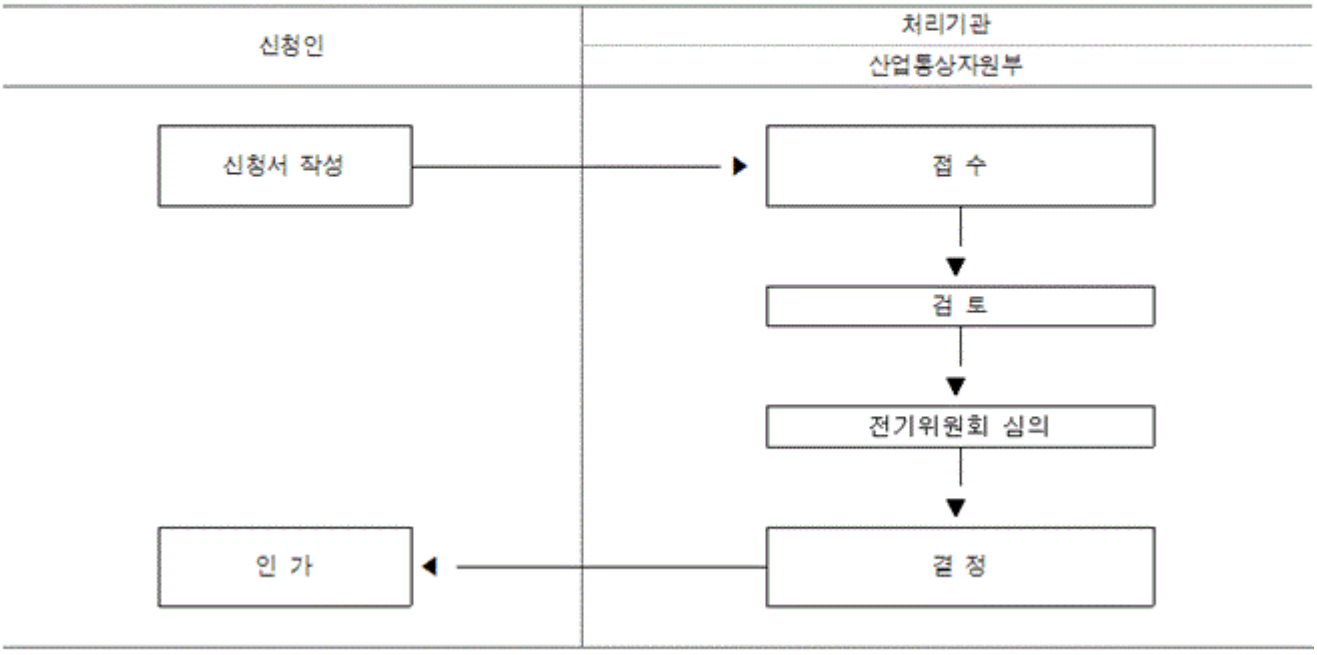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기본공급약관안 2. 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의	→	결 정	→	인 가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 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3.23>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내용		
실시내용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 사업손익산출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의	→	결 정	→	인 가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 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1.>

전기신사업 약관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전기신사업 종류 [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약관 변경내용		

「전기사업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 ] 신고 [ ] 변경신고)합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기관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기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 2. 연도별 공사비명세서 3. 연도별·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적은 서류(발전사업자만 해당합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3.23>

전기공급계획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기관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기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공급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2.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3.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4.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5.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6.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11.20>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단위: 전력량MWH, 전력MW)									
구 분		연도별	제 1 차 연 도					제2차 연 도	제3차 연 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공급전력	자 사 발전량	수 력 발 전 소							
		화 력 발 전 소							
		원 자 력 발 전 소							
		계							
	타 사 수전량	발전전기사업자							
		자 가 용 발 전 자							
		계							
	양 수 발 전 전 력 량								
	방 수 전 합 계								
	송 전 단								
	송 전 손 실 률(%)								
	종 합 손 실 률(%)								
	수 요 단								
최 대 수 요 전 력									
공 급 예 비 력									
공 급 예 비 율(%)									
수 요 전 력 량									
과 부 족 량									

※ 기재요령: 타사 수전량은 발전단 기준입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11.20>

발전계획명세서

(수력·기력·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 (단위: GWH)

발전소명	보일러 및 터빈번호	출력(MW)	제 1 차 연 도					제2차 연 도	제3차 연 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11.20>

보수계획명세서

년도 (수력·기력·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

발전소명	보수하는 보일러(원자로) 및 터빈번호	보수기간	보수내용	보수기간의 월별 감소출력(MW)

※ 기재요령: 2년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11.20>

연료계획명세서
(기력·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

구 분 \ 연도별		제 1 차 연 도					제2차 연 도	제3차 연 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석탄	수 입 량(10^3t)							
	발 전 용 소 비 량 (10^3t)							
	저 탄 량(10^3t)							
중유	수 입 량(10^3kl)							
	발 전 용 소 비 량 (10^3kl)							
	저 유 량(10^3kl)							
경유	수 입 량(10^3kl)							
	발 전 용 소 비 량 (10^3kl)							
	저 유 량(10^3kl)							

※ 기재요령: 석탄량은 습탄기준입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11.20>

수전계획명세서

구 분		상대방 명 칭/ 전 력 시 장	원동력 종 류	제 1 차 연 도					제2차 연 도	제3차 연 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최 대 전 력 (MW)	발전사업자									
		계								
	자가용전기 설비 설치 자									
	계									
전 력 량 (MWH)	발전사업자									
		계								
	자가용전기 설비 설치 자									
	계									

※ 기재요령: 최대전력 및 전력량은 발전단과 송전단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11.20>

송전계획명세서										
구 분			상대방 명칭/전력시장	제 1 차 연 도					제2차 연 도	제3차 연 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최대 전력 (MW)	전 력 시 장									
	직거래	대 수 용 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 설비 설치자								
		소 계								
	합 계									
전력량 (MWH)	전 력 시 장									
	직거래	대 수 용 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 설비 설치자								
		소 계								
	합 계									

※ 기재요령: 최대전력 및 전력량은 발전단과 송전단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3>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기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시설의 개요서 2. 제조시설의 공사공정표 3. 연도별 공사비명세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4. 제조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 생산계획을 적은 서류 5. 생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6. 공급계약서 사본 7.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관계 기관 협의	→	결 정	→	승 인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3.23>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기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이유서 2. 변경공사 개요 설명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0. 9. 29.>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 호	전화번호
	소재지	

계약 대상	전기사업자 구분 : 발전사업자 / 판매사업자 / 직접구매자 / 구역전기사업자
	대상설비(발전사업소명)
	계약기간

「전기사업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차액계약에 대한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차액계약서(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것에 한정합니다)의 사본 2.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서류 등 차액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서식] <개정 2013.3.23>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전호
	주소 또는 소재지		
수수료 금 액	기존 원/kWh	변경 원/kWh	
	증감률(%)		
시행	결정일	시행일	

「전기사업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는 이사회를 거쳐 결정된 전력거래에 관한 수수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수수료의 결정을 위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사회 의결서 사본 2. 수수료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210㎜× 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4. 1.>

공사계획 [ ] 인가 / [ ] 변경인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공사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인 가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첨부 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4. 1.>

공사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접수 처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첨부 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1. 4. 1.>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2. 4. 22.>

사용전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시공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 기 설 비 개 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검 사 희 망 연 월 일	년 월 일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1부.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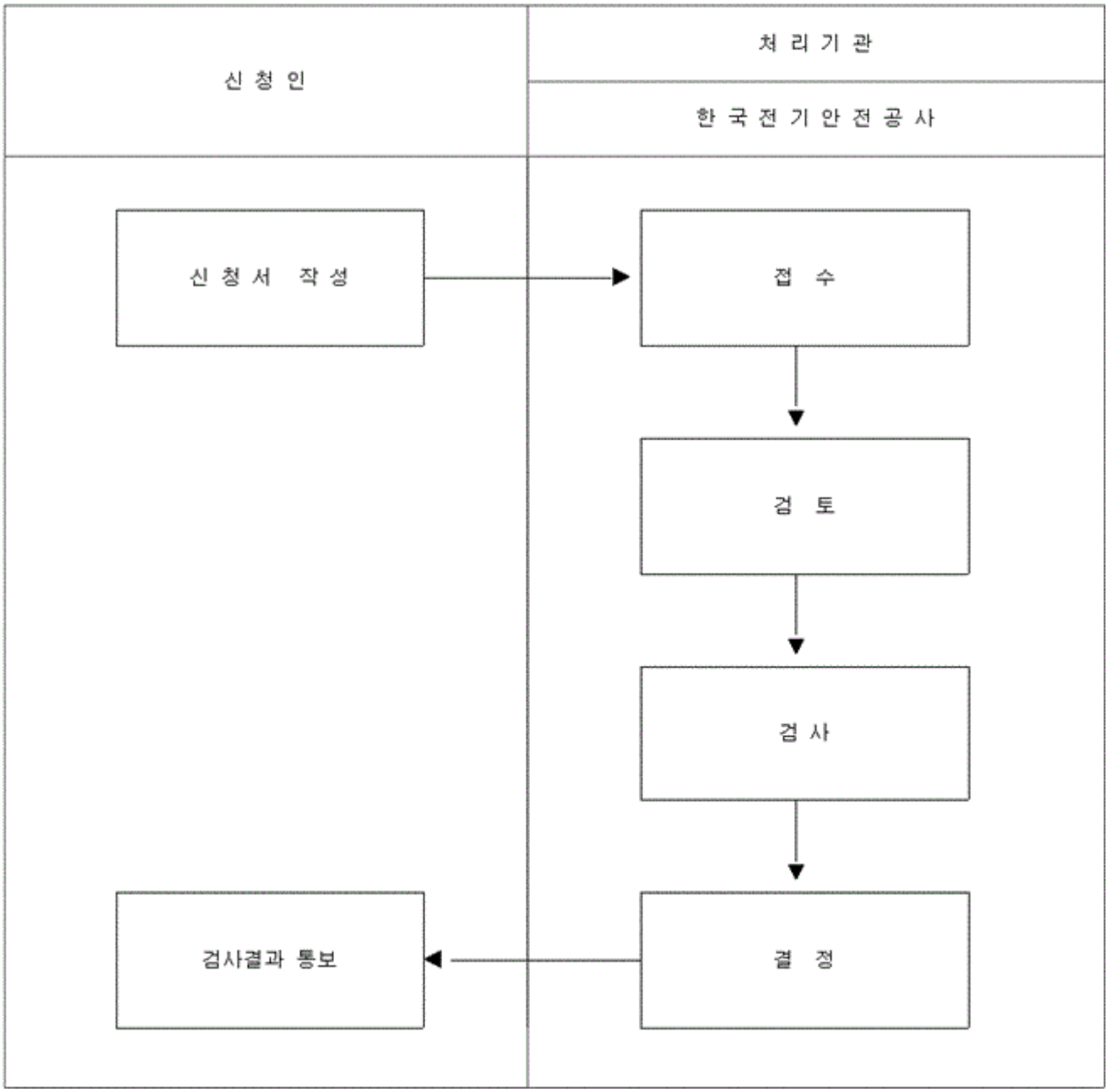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4. 1.>

사용전검사확인증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검사결과	검사전기설비		
	검 사 연 월 일		
	검 사 자	소 속	성 명 ㊞
	판 정		(다음 검사: 년 월)
임시사용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기 타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검사신청인 귀하

작성방법
1. 판정은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등으로 적습니다.
2. 임시사용란은 판정이 임시사용인 경우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21. 7. 21.>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1. 전체 검사 수량

가. 송·변전 전기설비

구분		송전설비			변전설비			특수설비		
		철탑 (기)	전력선 (선로)	맨홀·전력구 전력설비 (개소)	변압기 (대)	개폐장치 (대)	부대설비 (대)	HVDC (대)	해저 케이블 (회선)	FACTS (대)
설비 현황	계									
시행 현황	년도									
	년도									
	년도									

나. 배전, ESS 및 구조물 전기설비

구분		배전설비			전기 저장장치 (ESS, 대)	구조물(전력구)					
						송전(km)			배전(km)		
		전주 (기)	지상기기 (대)	맨홀·전력구 전력설비 (개소)		A	B,C	D,E	A	B,C	D,E
설비 현황	계										
시행 현황	년도										
	년도										
	년도										
	년도										

2. 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　　년도)

가. 송·변전 전기설비

구분		송전설비			변전설비			특수설비		
		철탑 (기)	전력선 (선로)	맨홀·전력구 전력설비 (개소)	변압기 (대)	개폐장치 (대)	부대설비 (대)	HVDC (대)	해저 케이블 (회선)	FACTS (대)
정기 검사	적합									
	부적합									
	미검사									
	계									

나. 배전, ESS 및 구조물 전기설비

구분		배전설비			전기 저장 장치 (ESS, 대)	구분		구조물(전력구)	
		전주 (기)	지상기기 (대)	맨홀·전력구 전력설비 (개소)				송전 (km)	배전 (km)
정기 검사	적합					검사 결과	A		
							B,C		
	부적합						D,E		
	미검사					미검사			
	계					계			

※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3.3.23>

보호구역 [ ] 지정 / [ ] 변경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정목적물의 개요 및 종류	개요
	종류

지정장소	
지정면적	㎡(평)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지정목적	

「전기사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구역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물밑선로보호구역 위치도(축척 25만분의 1 지도) 나. 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적은 서류 2.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제1호와 제2호 서류 중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2021. 4. 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신설 2020. 9. 29.>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완료일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합니다)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	승인서 발급 및 사업정지해제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210㎜×297㎜(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신설 2020. 9. 29.>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 대상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유예 사유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	승인서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210㎜×297㎜(백상지 80g/㎡)

전기공사업법령

1. 전기공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3.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68호, 2023. 1.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 - 203 - 3896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26.>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1.,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2021. 4. 20.>

1. “ 전기공사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 공사업(工事業) ”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 공사업자(工事業者) ”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 발주자(發注者) ”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5. “ 도급(都給) ”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 하도급(下都給) ”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 수급인(受給人) ” 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8. “ 하수급인(下受給人) ” 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9. “ 전기공사기술자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10. “ 전기공사관리 ” 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ㆍ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 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③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통지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통지는 제외한다)ㆍ제5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8. 12. 26.>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 등록기준 ”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9. 4. 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5.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 12. 26.]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전기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공사업자로 본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9. 4. 23.>

③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④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9. 4. 23.]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①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개정 2008. 12. 26.>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23. 1. 3.>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5., 2023. 1.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3. 1. 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1. 7. 25.]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개정 2021. 4. 20.>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①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전기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5조의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개정 2008. 12. 26.>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학력·경력의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設計圖書)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8. 12. 26.]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2조의2(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5장 공사업자단체 <개정 2008. 12. 26.>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6조(「민법」의 준용) 공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6장 감독 <개정 2008. 12. 26.>

제27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삭제 <2021. 4. 20.>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 12. 26.]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21. 4.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의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4의2.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6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20. 3. 24.>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신설 2011. 3.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1. 3. 30.]

제28조의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9조의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하도급의 적절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것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전기공사의 발주자,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 그 밖의 전기공사 관계 기관에 전기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자재ㆍ시설의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담당 공무원 자신의 성명, 조사 시간 및 조사 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3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전문개정 2008. 12. 26.]

제7장 보칙 <개정 2008. 12. 26.>

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 3.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9. 4. 23.>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7.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8.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ㆍ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② 공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제35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전문개정 2008. 12. 26.]

제36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전문개정 2008. 12. 26.]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전문개정 2008. 12. 26.]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 8.>

[전문개정 2008. 12. 26.]

제8장 벌칙 <개정 2008. 12. 26.>

제40조(벌칙) ①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41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過失)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본조신설 2019. 4. 23.]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2. 30.>

1. 삭제 <2019. 4. 23.>
2. 삭제 <2019. 4. 23.>
3. 삭제 <2019. 4. 23.>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5.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전문개정 2008. 12. 26.]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21., 2019. 4. 23.>

1. 삭제 <2019. 4. 2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 제22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10.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11.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26.]

제44조 삭제 <2014. 1. 21.>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2019. 4.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2. 30.>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부칙 <제5726호,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로 본다.

제5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 을 " 공사업의 등록을 한 " 으로 한다.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78호,200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71호,2004. 2. 9.>(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741호,2005. 12.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0> 까지 생략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79호,2008. 12. 26.>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0호,2009. 5. 21.>(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0493호,2011. 3.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7호,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4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98호,2013. 8. 6.>(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를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로 한다.

<60>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139호,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03호,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76호,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6호,2019. 1.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63호,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091호,2020. 3. 2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096호,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68호,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 4.] [대통령령 제34090호, 2024. 1. 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 - 203 - 3896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 9. 1.>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3조 삭제 <2002. 11. 29.>

제4조 삭제 <2002. 11. 29.>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 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 5.>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 ”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문개정 2010. 6. 18.]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9. 1.>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 공제조합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한다)를 제출할 것
   가. 공제조합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을 것
   나. 공제조합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적을 것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공제조합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ㆍ도지사 ”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 12. 30., 2015. 9. 1.>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개정 2011. 12. 30., 2015. 9. 1.>

[전문개정 2010. 6. 18.]
[제목개정 2011. 12. 30.]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

[전문개정 2010. 6. 18.]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가설 전기공사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24. 1. 2.]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4.>

1. 공사 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18.]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6. 18.]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사람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0. 6. 18.]

제12조의4(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1.>
1.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별표 4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
2.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2조의5(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18.]

제14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6. 18.]

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4. 29., 2016. 12. 30.>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본조신설 2014. 3. 24.]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5. 9. 1.]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3.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공사업자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5.]

제17조(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 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345킬로볼트 이상의 공중 송전설비 중 철탑 기초부분, 철탑 조립부분 및 공중전선 연결부분
2.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

[전문개정 2010. 6. 18.]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대표자 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6. 12. 30., 2022. 3. 8.>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9.>

[전문개정 2013. 12. 30.]

[제17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

부칙 <제16448호,1999.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11호,1999.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 항공보안시설 ” 을 “ 항행안전시설 ” 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7789호,2002. 1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5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8404호,2004. 5. 29.>(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ㆍ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 ” 을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 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69호,2008.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거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678호,2008. 2. 29.>(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ㆍ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26호,2009. 7. 7.>(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11호,2010. 6.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7호,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2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2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 지식경제부령 "을 "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6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71호,2014. 3. 24.>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503호,2015. 9.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정지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전기공사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전기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급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4제1항제1호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 및 이 영 제12조의2에 따라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115호,2016. 4. 29.>(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⑭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727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자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806호,2017. 1. 26.>(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228호,2018. 10. 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8호,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전기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56호,2019. 12. 2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까지 생략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1379호,2021. 1. 5.>(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5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04호,2022. 11. 2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 부터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3434호,2023. 4. 25.>(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090호,2024. 1. 2.>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1. 29.>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전기공사의 종류	전기공사의 예시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열병합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의 전기설비공사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공사
	나. 송전설비공사	1) 공중송전설비공사: 공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철탑기초공사 및 철탑조립공사(지지물설치 및 철탑도장을 포함한다), 공중전선설치공사(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횡단개소의 보조설비공사, 보호선·보호망 공사 2) 지중송전설비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3) 물밑송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4)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궤도·자동차도·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다. 변전설비공사	1) 변전설비기초공사: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덕트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 2) 모선설비공사: 모선(母線)설치(금구류 및 애자장치를 포함한다), 지지(支持) 및 분기개소의 설비공사 3) 변전기기설치공사: 변압기, 개폐장치(차단기, 단로기 등을 말한다), 피뢰기 등의 설치공사 4) 보호제어설비설치공사: 보호·제어반 및 제어케이블의 설치공사
	라. 배전설비공사	1) 공중배전설비공사: 전봇대 등 지지물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가선공사(수목전지공사를 포함한다)

		2) 지중배전설비공사: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3) 물밑배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4)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궤도·자동차도·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가.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1)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전기설비공사 2)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공사
	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 수전·변전설비공사[큐비클(전기 기기, 수전 · 변전 설비 등을 둘러싼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비전원설비공사(비상용 발전기, 축전지,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연료전지, 정류장치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및 보호·제어설비공사 2) 전원공급설비공사: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관(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등의 설비공사 3) 전력부하설비공사: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를 포함한다), 콘센트 등 기계·기구 및 동력설비의 공사 4) 운송설비공사: 이동보도(무빙워크),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동 소형물품 운반용 승강기, 권상용(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용도를 말한다) 모터, 궤도, 운반차량, 컨베이어, 공조(덕트 · 시스템 · 설비), 곤돌라, 케이블카 등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하게 하는 운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 5) 방재 및 방범 설비공사: 서지보호설비[서지(surge: 전류 · 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

		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낙뢰설비, 잡음·전자파(EMI, EMC, EMS 등을 말한다)의 방지설비공사, 항공장애등설비공사, 헬리포트조명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전기공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6) 지능형 빌딩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7) 지능형 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8) 약전설비공사: 전기시계설비, 시보설비, 주차관제전기설비 9) 그 밖에 건축물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10) 삭제 <2016. 12. 30.>
	다.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 전식방지공사: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공사 2) 동결방지공사: 제설·제빙용, 바닥난방용, 동파방지용,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설비공사 3) 신호 및 표지 설비공사: 네온사인, 큐빅보드, 광고표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4) 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공사와 그 밖에 구조물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가. 도로 전기설비공사	1) 가로등설치공사: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터널등의 설치공사 2) 터널설비공사: 터널조명설비공사와 터널방재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3) 그 밖에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나. 공항 전기설비공사	1) 「항공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설비공사 2) 그 밖에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다. 항만 전기설	1) 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2) 그 밖에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가. 전기철도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수전선로설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전선로의 설치공사, 전차선설비공사, 역사전기설비공사
	나. 철도신호설비공사	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 정지장치, 열차집중 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제어기설치공사
5.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1) 전기기계·전기기구(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반, 조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2) 조광설비공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공사 3) 주변전실 및 부변전실의 보호·제어를 위한 설비공사 4) 유입케이블 또는 가스절연 송전선 등의 계측 및 보호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5) 하천변, 유원지, 교각, 빌딩, 고궁 등의 무대조명 및 경관조명을 위한 설비공사 6) 전력설비의 내진·방재(소음·진동·화재 방지를 말한다)·계측 및 보호를 위한 설비공사 7) 건축용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8) 전기충격울타리 시설공사, 전기충격살충기 시설공사, 풀용 수중조명 시설공사, 분수의 조명 시설공사 9) 그 밖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4의2]로 이동 <2002.11.29>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12. 30.>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 관련)

항목	공사업의 등록기준
1.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3.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비 고

1. 기술능력

위 표 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전기공사의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1. 발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나. 가목 외 시설공사	3년
2. 터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구 송전·배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나.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5년
다.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년
3. 지중 송전·배전설비공사	
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나. 배전설비공사	3년
4. 송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다)	3년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6. 배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다)	
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나.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년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8.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12. 30.>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에 따른 모든 전기공사
2. 별표 4의2에 따른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3.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비 고

1.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영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따라 모든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2.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1999년 3월 28일 이후에 전기공사산업기사로 그 자격이 변경된 사람 중 이 영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따라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2. 2. 17.>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비고

1.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마.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전기 관련 학과 및 학과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전기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고등전문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 분야 교육기관에서 6개월 또는 700시간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공사감독·감리·전기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 (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훈련시설·기능대학·훈련기관 또는 학원에서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시험·검사·유지관리·전기안전관리·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술자격 또는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나.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다. 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마. 전기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7.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가.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한다.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다.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의 전기공사 경력

라.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마.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바.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전기공사기술자격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기공사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3] <개정 2010.6.18>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4제2항 관련)

대 상 자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20시간	기술능력의 향상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4] <신설 2015.9.1.>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법 제28조의2제3항	
1. 6개월 미만 빌려 준 경우		인정정지 6개월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빌려 준 경우		인정정지 1년
3. 1년 이상 2년 미만 빌려 준 경우		인정정지 2년
4. 2년 이상 빌려 준 경우		인정정지 3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간 경과 후 60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2호	100		
다. 법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3호	100		
라. 법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4호	300		
마.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5호	100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6호	100	200	300
사.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7호	100		
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법 제46조 제1항제8호	50	100	200

경우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9호	50	100	200
차.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2항	100		
카.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10호	100	200	300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7호, 2023. 1. 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 - 203 - 38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2조 삭제 <2002. 12. 31.>

제3조(등록신청 등)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3. 3. 23., 2017. 12. 29., 2020. 6. 26.>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1. 5. 18., 2017. 12. 29.>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表記)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1. 5. 18.>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1. 5. 18.,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24.]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8.>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서류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3.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 6. 24.]

제5조(등록신청 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①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0. 6. 26.>

[전문개정 2010. 6. 24.]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6. 6. 13., 2020. 6. 26.>

1. 기업진단보고서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 등록수첩 ” 이라 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1. 5. 18., 2017. 12. 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8.>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 ” 는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류 ” 로 본다.<개정 2011. 5. 18.>

[전문개정 2010. 6. 24.]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 등록증 ” 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1. 5. 18., 2017. 12. 29.>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3.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7조(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4.>

1. 등록번호
2. 등록 연월일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전문개정 2010. 6. 24.]

제7조의2(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사업의 상속(이하 이 조에서 "공사업 양도등"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20. 6. 26.>

1. 양도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라. 삭제 <2011. 5. 18.>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양도ㆍ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사.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이 경우 “ 신청인 ”을 “ 신고인 ”으로 본다.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사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 신청인 ”을 각각 “ 신고인 ”으로 본다.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1. 5. 18., 2017. 12. 29., 2020. 6. 26.>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개정 2011. 5. 18., 2012. 9. 14., 2020. 6. 26.>

1.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 수리의 연월일

2.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공사업 양도등 신고 서류"로 본다.<개정 2011. 5. 18., 2020. 6. 26.>

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5. 18., 2020. 6. 26.>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1. 5. 18., 2020. 6. 26.>

[전문개정 2010. 6. 24.]

[제목개정 2020. 6. 26.]

제7조의3(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1. 무효판결 확정일
2.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26.]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7. 12. 29.>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5. 18., 2016. 6. 13.>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신설 2017. 12. 29.>

⑤ 제1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개정 2011. 5. 18., 2017. 12. 29.>

[전문개정 2010. 6. 24.]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통보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9. 14.>

1. 폐업 연월일
2. 등록번호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
[전문개정 2010. 6. 24.]

제10조(전기공사 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11조(하도급 통지서) ①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재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3. 공사 예정 공정표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전문개정 2010. 6. 24.]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3. 3. 23., 2016. 6. 13.>
1. 졸업증명서
2.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3. 증명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1. 5. 18., 2016. 6. 13., 2017. 12. 29.>
1.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8.>

1.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
2. 삭제 <2020. 6. 26.>
3. 증명사진

④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8.>

⑤ 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1. 5. 18., 2020. 6. 26.>

⑥ 제5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21호의5서식(1)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개정 2020. 6. 26.>

⑦ 지정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1. 5. 18., 2020. 6. 26.>

⑧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의 등급 및 경력 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6. 26.>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6. 26.>

⑩ 제8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신설 2020. 6. 26.>

⑪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8., 2013. 3. 23., 2020. 6. 26.>

[전문개정 2010. 6. 24.]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

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17.>

1. 교육훈련 전담조직ㆍ인력 보유 현황 자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1. 5. 18., 2013. 3. 23., 2021. 12. 17.>

[전문개정 2010. 6. 24.]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24.]

제13조(표지의 게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 1. 5.]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 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0. 6. 24.]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2.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전문개정 2010. 6. 24.]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8., 2012. 9. 14., 2016. 6. 13., 2017. 12. 29.>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의 발주자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이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이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2.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별표 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류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전문개정 2010. 6. 24.]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도 또한 같다.<개정 2020. 6. 26.>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 6. 13., 2020. 6. 26.>

1.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삭제 <2011. 5. 18.>

3.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6. 13.>

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양도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거나 공사업의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ㆍ양도ㆍ합병의 신고일 또는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2. 9. 14., 2016. 6. 13., 2020. 6. 26.>

1.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2. 제1호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사실적평가액
   나. 경영평가액
   다. 기술능력평가액
   라. 신인도평가액
   마. 직전 연도 공사실적총액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6항 전단에 따른 공시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시기간은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6. 6. 13.>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3., 2017. 12. 29.>

⑨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항 전단에 따라 공시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3.>

⑩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3.>

⑪ 제10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3.>

[전문개정 2010. 6. 24.]

제20조(수수료)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중요사항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실적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제80호,1999. 7.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ㆍ공시되는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ㆍ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공능력이 평가ㆍ공시되는 때까지의 사이에 등록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당해 공사업자의 자본금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ㆍ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중 하나만을 존속시키고 다른 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 존속하는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폐업하는 공사업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호,2000. 6.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및 공사실적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 및 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③(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호,2002.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호,2005. 2. 2.>(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07. 9. 2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08. 2.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계약 또는 합병등기가 행하여진 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08. 3. 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7항, 제12조의3제1항 중 “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 산업자원부령 ”을 각각 “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4*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31호,2010.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호,2011.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0호,2012.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사실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전기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4#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06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16.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합병등기를 한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 등록번호 ”를 “ 자격번호 ”로, “ 등록 연월일 ”을 “ 합격 연월일 ”로, “ 변경일 ”을 “ 변경일자 ”로, “ 면허 등재 ”를 “ 선임ㆍ해임 ”으로, “ 처리 지회 ”를 “ 처리 시ㆍ도회 ”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83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8호,2020.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효판결의 신고에 관한 특례) 공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고 그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3조(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간 이 규칙에 따른 경력수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또는 경력변경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9호,2021.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23.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 5.>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또는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릴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또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부 과 기 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또는		등록취소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2의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2	
가. 등록기준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만료일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부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다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5호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라.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400만원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6.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다음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나.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라.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2조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6의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6호의2	
가. 1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나. 2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7호	등록취소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2.9.1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전기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전년도 말일(末日)로 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공사실적평가액=연평균공사실적액

1) 공사실적액은 해당 공사업자의 수급액에서 하도급분을 제외하고 하수급분을 포함하며, 두 곳 이상의 공사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공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실적을 각각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액으로 한다.

2)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3)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4)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5)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 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적힌 실질자본금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나. 경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50/100

1)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로 한다)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전기공사업 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와 경영평가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0으로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적힌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경영평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점=(부채비율평점+유동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자산회전율평점)/4

가) 부채비율평점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

자본)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4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4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9 이상 1.9 이하인 경우에는 3으로, 1.9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한다.

나) 유동비율평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0.9 이상 1.2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7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다.

다) 매출액순이익률평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순이익/매출액)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매출액순이익률로 나눈 값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4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4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라) 자산회전율평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자산회전율로 나눈 값이 1.4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6 이상 1.4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6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3)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 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해당 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30/100+교육훈련실적평가액

1)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수×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가) 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는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등록수첩에 등재된 사람만을 말한다)되어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한다. 다만, 공사업 경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업 영위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한다.

나) 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는 산정일 현재의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기술사의 가중치는

3.0으로 한다.

보유 전기공사 기술자	특급 전기공사 기술자	고급 전기공사 기술자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
가중치	2.5	2.0	1.5	1.0

3)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전기공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4) 교육훈련실적평가액은 「전기공사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2일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이수자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0.1

나) 이수자가 4명 또는 5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0.2

다) 이수자가 6명 이상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0.3

라.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 시마다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에서 20/100을 차감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 분	신인도 반영비율
가) 최근 3년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1) 국가기관	+4/100
(2) 지방자치단체	+3/100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2/100
나) 전기공사 시공과정에서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 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에 대한 증액을 요청받은 경우	+2/100
다) 공사업 경영기간이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1)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1/100
(2)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2/100
(3) 15년 이상인 자	+3/100

라) 최근 1년 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국가기관	−3/100
(2) 지방자치단체	−2/100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1/100
마) 최근 1년간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100×영업정지기간(개월 수)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에 대한 감액 요청을 받은 경우	
(1) 평가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1배 이상 2배 미만의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2/100
(2) 평가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3/100
사) 전기공사 시공과정에서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 폐기물의 처리 실태가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에 대한 감액 요청을 받은 경우	−2/100
아) 최근 3년간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승인받은 전국규모의 전기공사 관련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1) 1위 수상	+3/100
(2) 2위 수상	+2/100
(3) 3위 수상	+1/100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새로 공사업을 등록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승계한 공사업자의 해당 연도 및 그 다음 해 시공능력을 산정할 때 제1호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6. 26.>

수 수 료 (제20조 관련)

구 분	수수료(원)
1.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인정	70,000
2.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변경인정	10,000
3. 삭제 <2020. 6. 26.>	
4. 삭제 <2020. 6. 26.>	
5.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 발급	건당 5,000
6.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140,000
7. 시공능력의 평가	100,000
8. 전기공사업 관련 정보의 모든 증명서 발급	건당 5,000

[서식 1] 삭제 <2002.12.31>

[서식 2] 삭제 <2002.12.31>

[서식 3] 삭제 <2002.12.31>

[서식 4] 삭제 <2002.12.31>

[서식 5] 삭제 <2002.12.31>

[서식 6] 삭제 <2002.12.31>

[서식 7] 삭제 <2002.12.31>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6. 26.>

(앞쪽)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 등록번호
	공제조합출자좌수 또는 담보·예치 금액	비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증 사본 각 1부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1호 또는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4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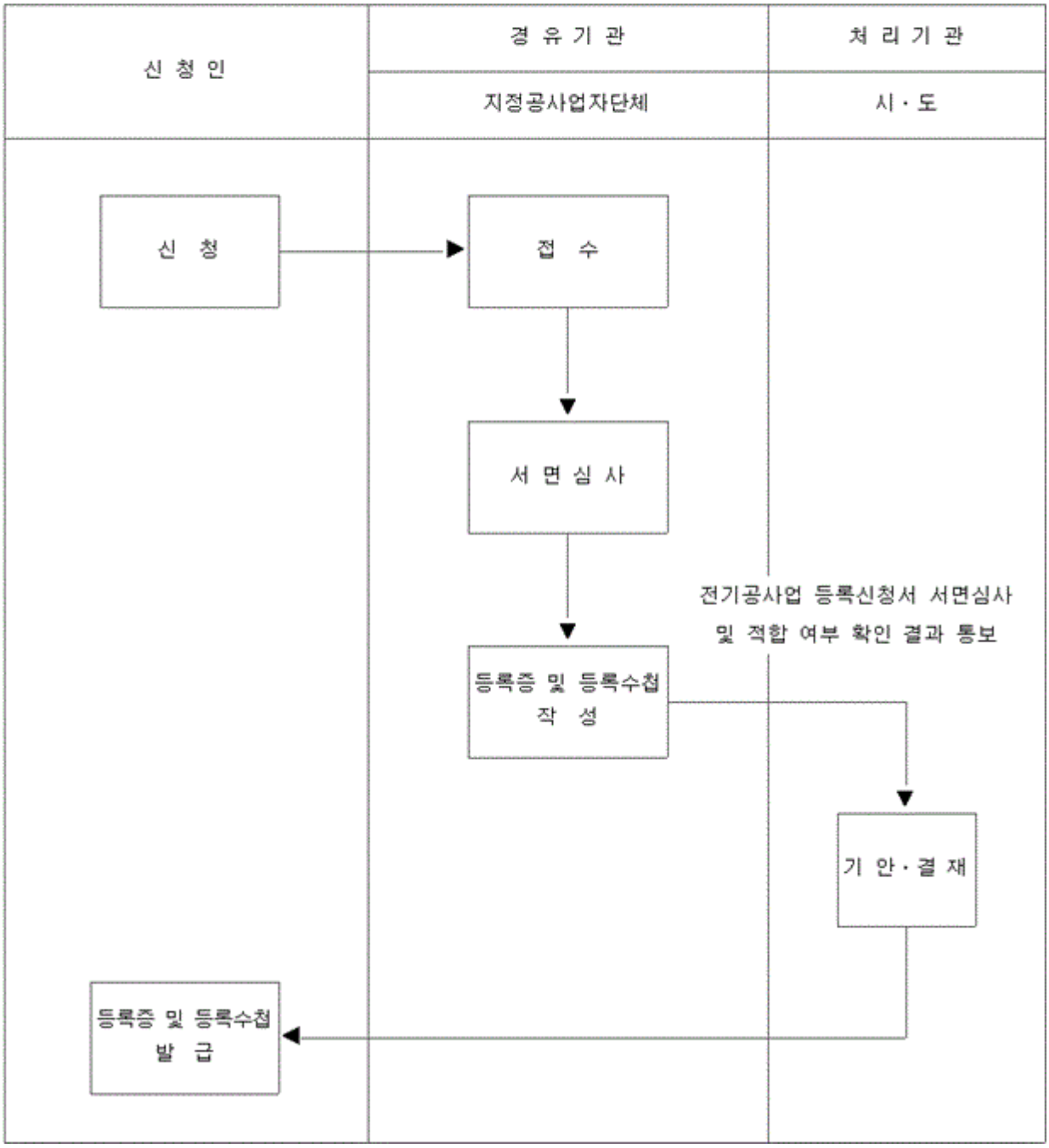

[서식 8의2] 삭제 <2002.12.31>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신청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실제조사 확인사항	전 기 공 사 기 술 자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급	경력수첩번호	입사 연월일	적합 여부
	자 본 금					
	전기공사 실질자본금		적합 여부	확인서		적합 여부
	원					
	사 무 실					
	사무실 용도		사무실 면적		적합 여부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인에 대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냅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지정공사업자단체장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0. 6. 26.>

(앞 쪽)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 등록번호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1부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증 사본 1부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등록수첩 사본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업자 단체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3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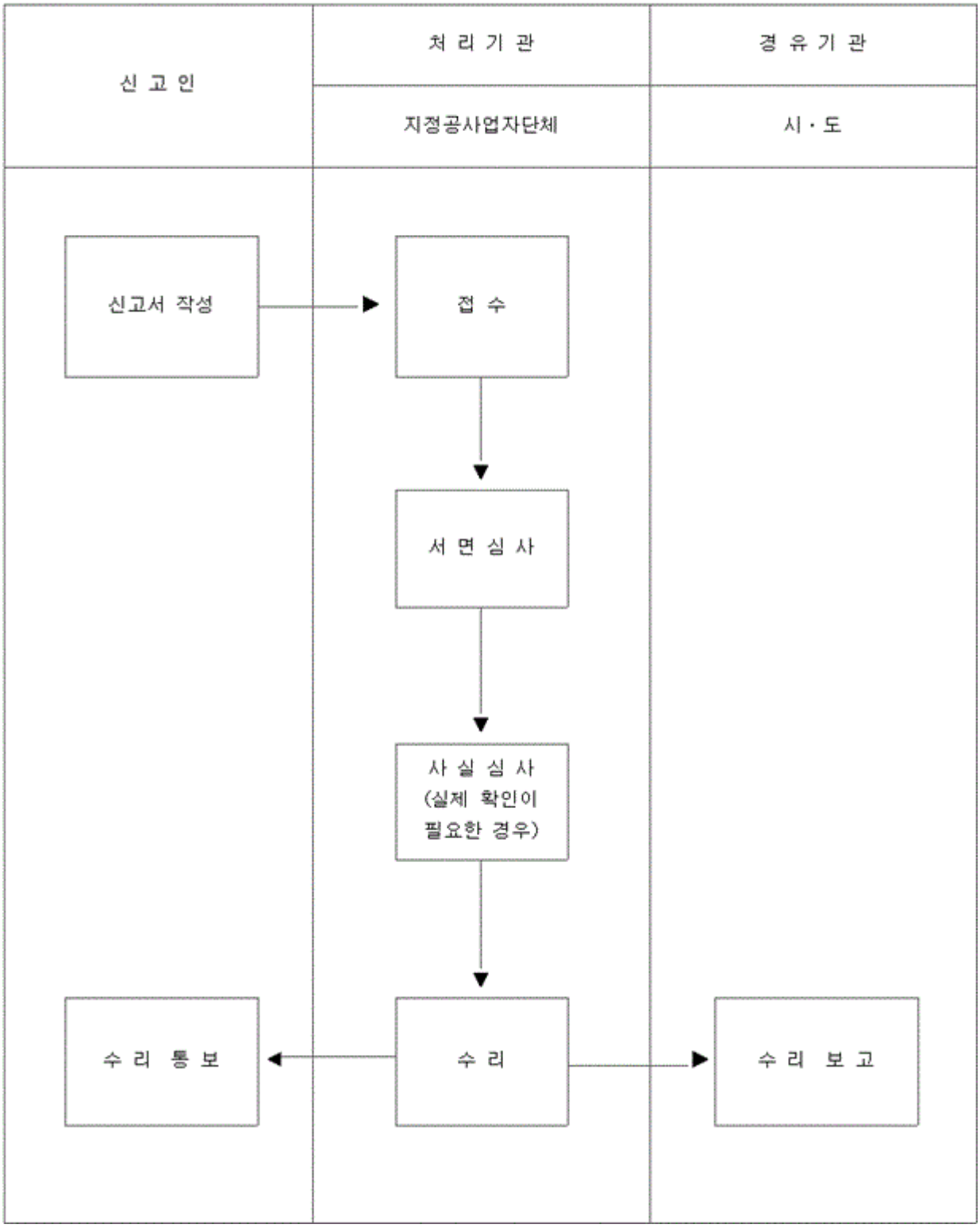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5.18>

(앞 쪽)

제　　호

전기공사업 등록증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영 업 소
　소 재 지

○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기 재 사 항 변 경					
일련번호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신고수리 연월일	비 고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5.18>

(표지)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 시·도)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면)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등 록 번 호		등 록 연 월 일	
상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 업 소 소 재 지			
자본액 또는 자산액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2면)

전기공사 시공능력			
연 도	금 액	연 도	금 액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3면)

상호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상 호	신고접수 연월일	비 고

(4면)

대표자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신고접수 연월일	비 고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5면)

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영업소 소재지	신고접수 연월일	비 고

(6면)

자본금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자 본 금	신고접수 연월일	비 고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7면)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변 경 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등 록 번 호	성 명	신고접수 연 월 일	비 고

(8면)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9면)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변 경 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등 록 번 호	성 명	신고접수 연 월 일	비 고

(10면)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1면)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변 경 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등 록 번 호	성 명	신고접수 연 월 일	비 고

(12면)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3면)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변 경 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등 록 번 호	성 명	신고접수 연 월 일	비 고

(14면)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5면)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변 경 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등 록 번 호	성 명	신고접수 연 월 일	비 고

(16면)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7면)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변 경 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등 록 번 호	성 명	신고접수 연 월 일	비 고

(18면)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9면)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변 경 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등 록 번 호	성 명	신고접수 연 월 일	비 고

(20면)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21면)

행정처분 사항			
연 월 일	처 분 내 용	사 유	비 고

(22면)

주 의 사 항

1. 공사도급인은 물론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전기공사업법」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라 이 수첩을 언제든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이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 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지정공사업체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등록을 취소, 상속, 양도·양수, 합병하였을 때에는 이 수첩을 등록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이 수첩을 등록권자에게 제시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12. 29.>

(앞쪽)

전기공사업 [ ]등 록 증 [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재발급 신청 사유	[ ]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 ]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신청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이 지정공사업자단체장을 경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유확인자 **지정공사업자단체장** (인)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전기공사업 등록증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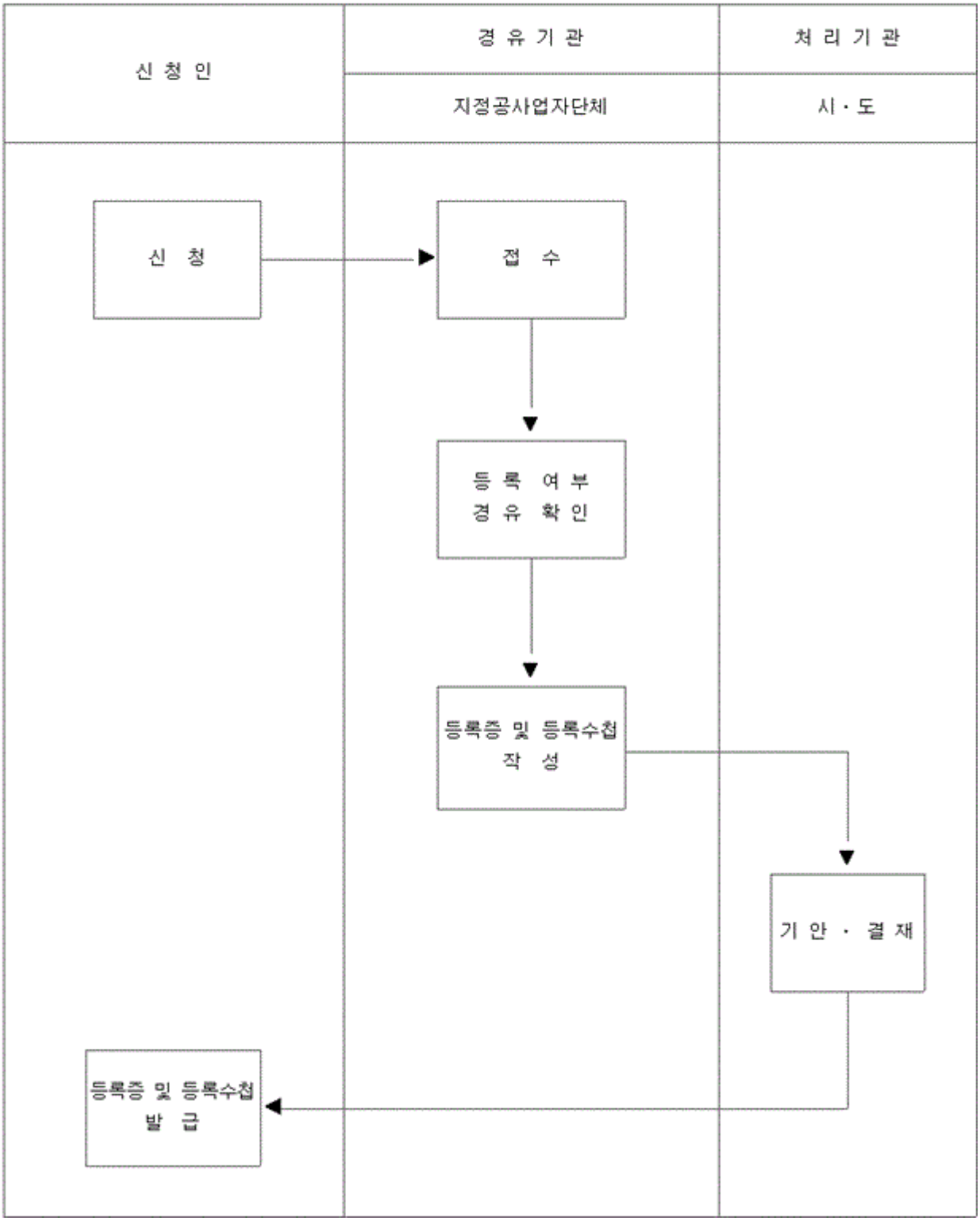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수령자인	비고(발급, 재발급)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

(앞쪽)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상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겸 업 사 항

종 류	등록번호	종 류	등록번호

자 본 금

납입 자본금	실질 자본금	증명기관(진단기관)	연월일

공사 실적 및 시공 능력

연도	공사 실적	전국 순위	지역 순위	연도	시공 능력	전국 순위	지역 순위

전 기 공 사 기 술 자

순번	성명	기술자 등급	자격(경력)수첩번호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기 재 사 항 변 경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신고접수 연월일	신고수리 연월일	확 인	비 고

승 계 사 항			
승계일	승계 구분	승계 근거	피합병등록번호

처 벌 사 항			
처벌일	처벌 내용	처벌 사유	비고

취소 또는 폐업사항			
취소(폐업)일	사 유	근 거	비 고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0. 6. 26.>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피상속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주소		사망일	
합병된 법 인	상 호	① ②	등록번호	① ②
	대표자	① ②	법인등록번호	① ②
	영업소 소재지	① ②	등록 연월일	① ②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 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양도(합병,상속)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다.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라.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마. 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바.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1부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공고문 사본 1부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5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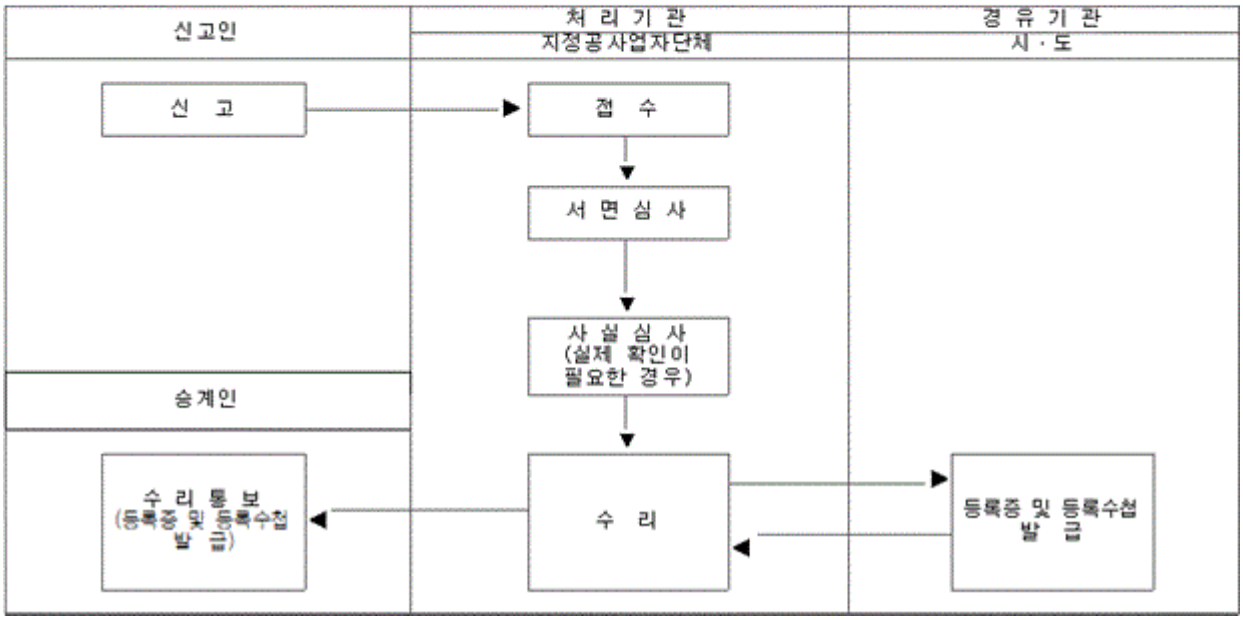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20. 6. 26.>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상 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피승계인	상 호	① ②	등록번호	① ②
	대표자	① ②	법인등록번호	① ②
	영업소 소재지	① ②	등록 연월일	① ②
	무효원인		판결확정일자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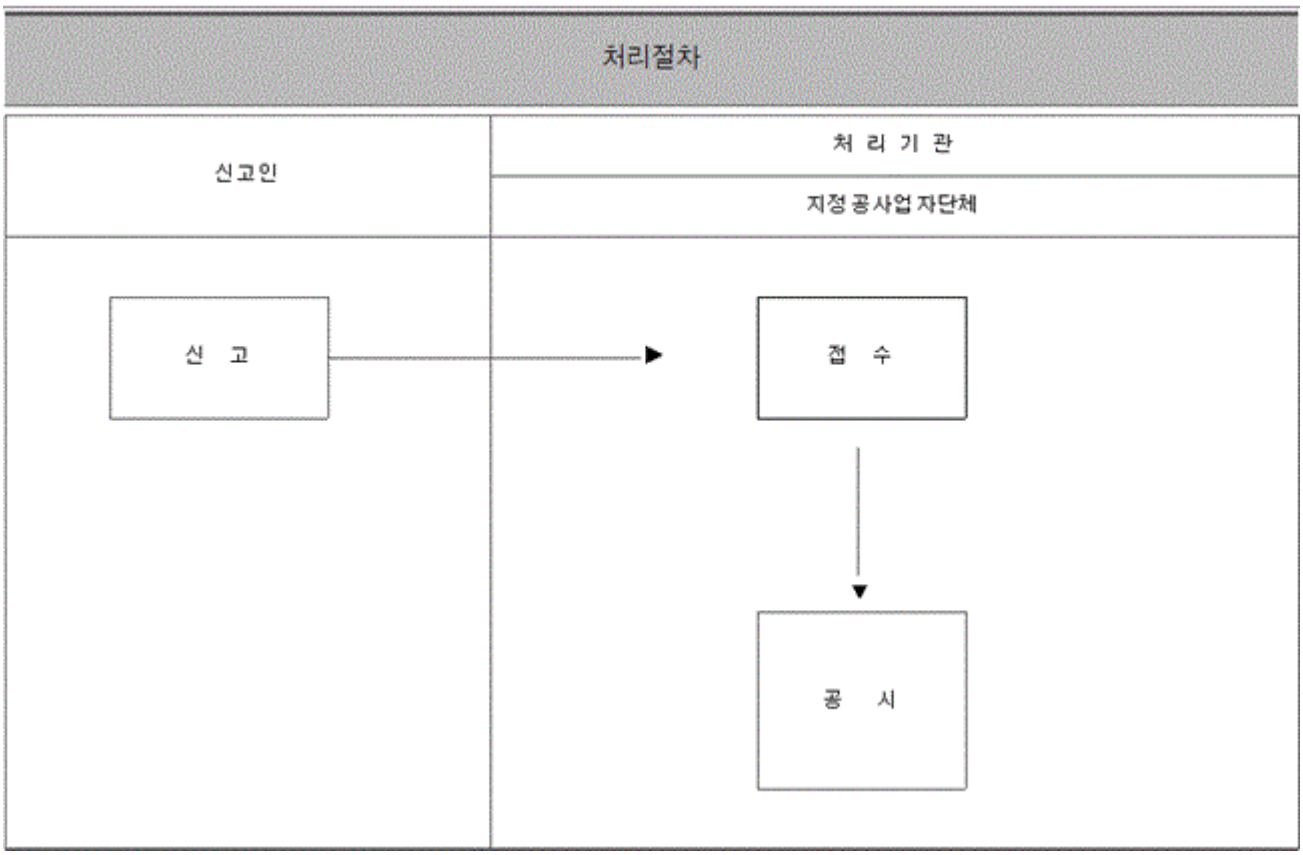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2. 29.>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 경 내 역

변경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5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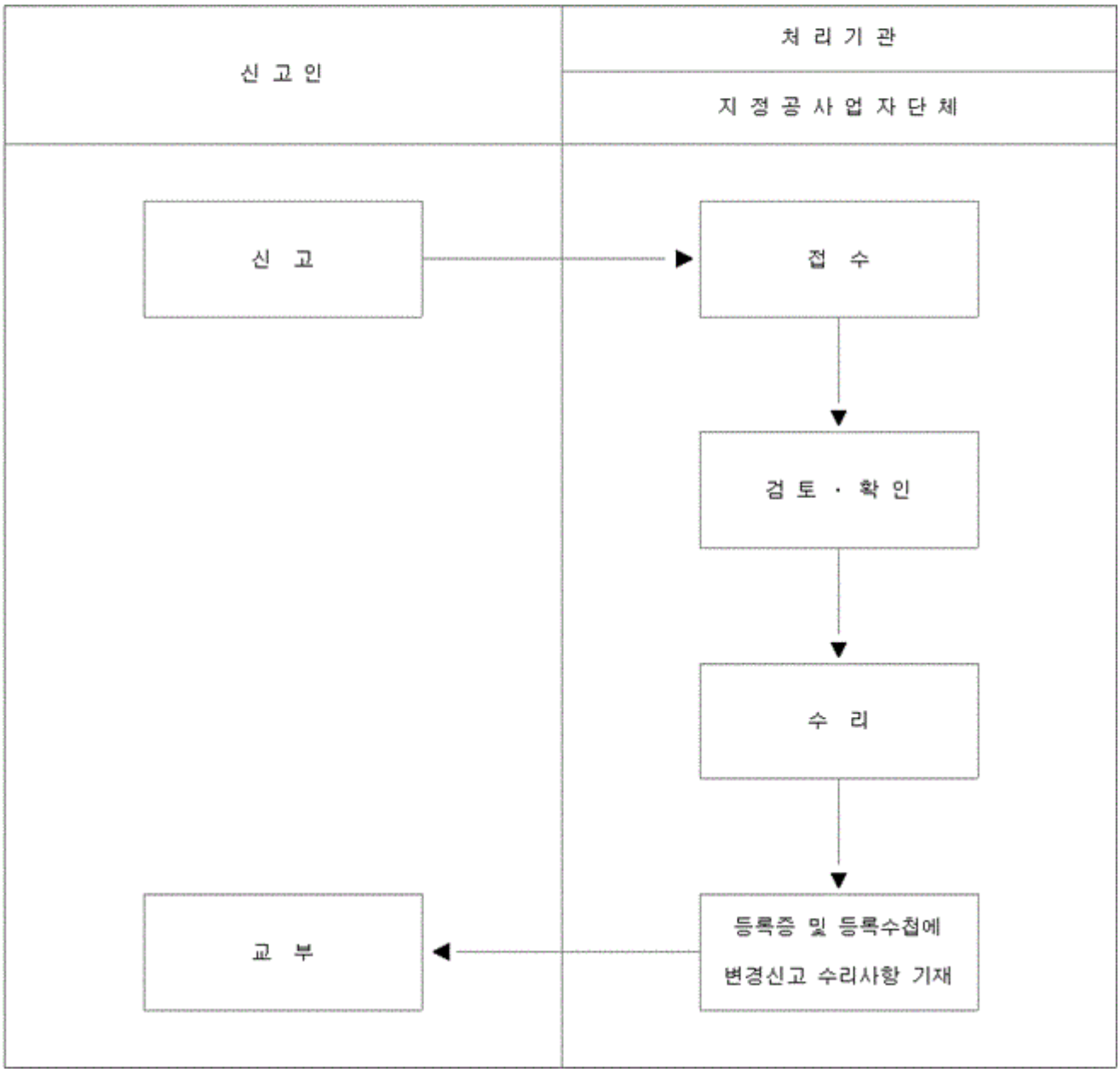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격내용			비고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자격내용 중의 등록번호는 경력수첩의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5.18>

(　)월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　.　일부터　.　일까지)

1. 접수 건수

구분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	비 고

2. 접수 현황

신 고 인			변경 구분	변경일	신고일	처리일	변경 내용	비 고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연월일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수 리	→	대 장 정 리	→	지정공사업자단체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처리기관 (시·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 도급대장

(앞쪽)

공 사 명			
소 재 지			
발 주 자	상호(기관명)	대표자	주소
공사 개요			

도 급 계 약 내 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 급 금 액	처음		1차 변경		2차 변경	
계 약 보 증	보증률		보증 금액		보증금 예치 방법	
하자보수 보증	보증률		보증 금액		보증금 예치 방법	

이행·지체·위약, 그 밖의 손해배상

공 사 대 금 지급시기 및 조건	기성금	지급 횟수		준공금	
		지급 조건			

발 주 자 의 지 급 재 료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연 대 보 증 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주 소	

발주자(하도급 공사인 경우 수급인) 확인란

확 인 내 용	처 음 계 획	1 차 변 경	2 차 변 경
확 인 인 (확인 연월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 분	처 음	1 차 변 경	2 차 변 경
시 공 관 리 책 임 자	성 명			
	전기공사기술자 등급			
	자 격 번 호			
	배 치 기 간			

시공참여 전기공사기술자 및 전기공사 기능인

성 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성 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공사 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현황

구 분					
검사 연월일					
기성금액(기성률)					
수령 금액					
미수령 금액					
수령 연월일					

사 후 관 리

하자발생 연월일		하자보수 완료 연월일	
그 밖의 사항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수 급 인 (하수급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 수 급 인 (다시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 급 내 용	공사명		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 도 급 (재하도급) 내용	공사 종류		하도급(재하도급)금액	
	계약(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 사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또는 하수급인(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 (서명 또는 인)

발주자 · 수급인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재하도급)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3. 공사 예정 공정표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

또는 수급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5.18>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공 사 명			
공사현장			
시공관리 책 임 자	성 명	기술자 등급	자격(경력)수첩 번호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재지

발주자·수급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0. 6. 26.>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2.5cm×3cm)
		[한자]		
		[영문]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현 근무처	상호	대표자	업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구분	[ ] 국가기술자격자	[ ] 전기 관련 학력자	[ ] 순수경력자		
신청등급	[ ] 초급	[ ] 중급	[ ] 고급	[ ] 특급	[ ] 경력만 인정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학과	입학 연월일	졸업 연월일	학위번호

기술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 연월일	발급기관
교 육	시작 연월일	종료 연월일	교육과정	교육기관
상훈·제재	발생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수첩발급신청	[ ] 발급신청	[ ] 발급보류		

210㎜×297㎜(백상지 80g/㎡)

(뒤쪽)

	확인원 번호	근무기간	근무 연수	근무회사명	회사업종	담당업무	증명서류 유 무
전기공사 업무경력 (총괄기재표)	1						
	2						
	3						
	4						
	5						
	6						
	7						
	8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지정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1부 2.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 업무 경력 확인서(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3. 증명사진 2장	수수료 70,000원
지정단체장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단체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단체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 및 학력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 및 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학교,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 - 이용 목적: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및 학력, 자격조회 - 제공 항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력, 학력, 자격 - 제공기관 보유·이용 기간: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인정(심사완료)시까지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목적: 전기공사기술자 업무처리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스캔·저장하여 전산으로만 보존·관리됩니다.

작성방법

1. 주소는 우편물 발송 및 수첩에 기재될 주소를 적습니다.
2. 현 근무처의 업종란 및 회사업종은 근무회사가 인·허가받은 주업종으로서 전기공사업, 전기사업자, 감리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등을 적습니다.
3. 신청구분은 본인이 경력확인을 받으려는 기술경력으로서 해당되는 곳에 "√"를 표시합니다.
4. 신청등급은 본인이 "√" 표시하고, 무급(경력만 인정)일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경력기간이 부족하나 단순 경력확인 또는 앞으로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5. 학력사항은 최종 학력(대학 이상은 모두)을 적습니다.
6. 기술자격은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및 전기 관련 민간자격증[활선(活線)자격 등]을 모두 적습니다.
7. 교육은 전기공사 관련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교육 이수한 사항 및 인정(승급)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8. 상훈·제재는 본인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적습니다.
9. 삭제 <2020. 6. 26.>
10. 전기공사업무 경력(총괄기재표)는 경력확인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를 총괄하여 경력 순서로 적으며, 근무기간과 근무회사는 경력확인서의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개정 2016. 6. 13.>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회사전화
	① 근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② 근무 부서	③ 담당 업무 □ 현장시공 □ 시공관리 □ 공사견적 □ 유지관리 □ 기타 ( ) ※ "√"표시(중복표기금지), 기타는 작성방법 참조	
	④ 업종 구분	⑤ 전기공사업 등록(면허)번호	
	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근무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 기 공 사 업 등록(면허)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회 사 명

대 표 자 (직인)

지정단체장 귀하

지정단체장 확인사항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단체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단체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 인 자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기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① 근무 기간: 근무한 회사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습니다.
② 근무 부서: 본사 ○○○부, 현장 등으로 적습니다.
③ 담당 업무: 본인의 주요 업무를 표시하되, 기타의 경우 품질관리, 안전관리, 설계, 감리, 유지 · 보수, 교수 · 교사, 연구, 기술행정, 공사감독, 군인, 그 밖의 업무로 적습니다.
④ 업종 구분: 근무회사의 주요업종(전기공사업, 감리업, 설계업, 발주기관, 학교, 연구소 등)을 적습니다.
⑤ 전기공사업의 등록(면허)번호: 지역 및 1 · 2종으로 구분된 경우 구분하여 적고, 적지 않는 경우 전기공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210㎜×297㎜(백상지 80g/㎡)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개정 2020. 6. 26.>

전기공사업무 [ ] 경력 [ ] 등급 변경 인정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첩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변경 사항	학력	학교명	전공학과	입학 연월일	졸업 연월일	학위번호
	기술 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 연월일	발급기관	
	교육 사항	시작 연월일	종료 연월일	교육과정	교육기관	
	상훈·제재	상훈·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추가 근무 경력	근무기간	근무연수	근무회사명	회사 업종	담당 업무
		~				
		~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지정단체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 별) 각 1부 2. 삭제 <2020. 6. 26.> 3. 증명사진(2.5cm×3cm) 1장(등급 변경 인정신청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학력사항 기재를 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0,000원
지정단체장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1부(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단체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단체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 및 학력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 및 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학교,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 - 이용 목적: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및 학력, 자격조회 - 제공 항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경력, 학력, 자격 - 제공기관 보유·이용 기간: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인정(심사완료)시까지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목적: 전기공사기술자 업무처리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스캔·저장하여 전산으로만 보존·관리됩니다.

작성방법

1. 주소는 우편물 발송 및 수첩에 기재될 주소를 적습니다.
2. 현 근무처의 업종란 및 회사업종은 근무회사가 인·허가받은 주업종으로서 전기공사업, 전기사업자, 감리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등을 적습니다.
3. 신청구분은 본인이 경력확인을 받으려는 기술경력으로서 해당되는 곳에 "√"를 표시합니다.
4. 신청등급은 본인이 "√" 표시하고, 무급(경력만 인정)일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경력기간이 부족하나 단순 경력확인 또는 앞으로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5. 학력사항은 최종 학력(대학 이상은 모두)을 적습니다.
6. 기술자격은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및 전기 관련 민간자격증[활선(活線)자격 등]을 모두 적습니다.
7. 교육은 전기공사 관련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교육 이수한 사항 및 인정(승급)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8. 상훈·제재는 본인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적습니다.
9. 전기공사업무 경력(총괄기재표)는 경력확인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를 총괄하여 경력 순서로 적으며, 근무기간과 근무회사는 경력확인서의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5서식(1)] <개정 2020. 6. 26.>

CERTIFICATE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발급번호 :
등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지정단체장이 경력카드를 발급합니다.

등급 인정 연월일 :　　년　　월　　일

지정단체장 [인]

▲전기공사업체 선임 사항

등 록 번 호	상호	선임일	선임신고일

이 경력카드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며, 경력카드 규격은 모바일 크기에 따라 조정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2)] <신설 2020. 6. 26.>

(1면)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 발급번호

○ 등　　급

○ 자　　격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증명사진

위 사람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지정단체장이 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등급 인정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지정단체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면)

▲전기공사업체 선·해임 내역

등 록 번 호	상호	선임·해임	변경일	신고일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 <개정 2020. 6. 26.>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수첩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변경 사항	[ ] 사진변경 [ ] 개명, 생년월일 정정 [ ] 그 밖의 사항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8항에 따라 경력수첩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지정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지정단체장 확인사항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단체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단체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 인 자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기간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목적: 전기공사기술자 정보변경 업무처리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스캔·저장하여 전산으로만 보존·관리됩니다.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7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

연번	발급일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발급번호	담당자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8서식] <개정 2011.5.18>

(　　.　　)월 중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현황 보고

(　.　일부터　.　일까지)

1. 발급 건수

구 분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계
발급자 수					

2. 발급현황

연 번	발급일	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9서식] <개정 2021. 12. 17.>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건물 및 대지	건물	㎡	대지	㎡
훈련기관 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훈련 전담조직 · 인력 보유 현황 자료 1부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현장 표지

공 사 명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시공관리책임자	
공 사 비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비 고	

이 표지의 규격은 게시하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공 사 명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시공관리책임자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비 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란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기 바랍니다)

이 표지의 규격은 게시하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1.5.18>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

번호	행정처분 연월일	성 명 (대표자)	주 소 (상 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 용	과징금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일	비고
				날짜	위반 행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1.5.18>

(앞 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유효기간:)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전기공사업법」 제29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6. 6. 13.>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

(앞쪽)

1. 업체현황

상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등록기준

자본금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확인서 적합 여부		확인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확인서
사무실	공부상 면적	자기 소유 여부	자기 소유 시 확인서류		전세(임차) 시 확인서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기술능력	성 명	주 소	자격번호	급여액 (천원)	시공관리 현장 (시공사항 점검의 해당 번호 기재)

3. 시공사항(점검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기준)

일련번호	공사명	현장 주소 (시・군)	계약서 작 성 (○, ×)	도 급 대 장 작 성 (○, ×)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통보 (○, ×)	시공관리 책 임 자 성 명	현 장 연락처
1							
2							
3							
4							
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4. 조사자 인적사항

성 명	①	소 속	①
	②		②
	③		③
직 급	①	생년월일	①
	②		②
	③		③

조사일시: 년 월 일

조 사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9.14>

(　　)년도 전기공사실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신자	수신	지정공사업자단체장
	참조	
	제목	(　　)년도 전기공사 실적 제출

제출자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재지	
	실제 작성자 성명 및 소속	
	전화번호	

승계사항	승계인 상호	
	승계인 등록번호	
	승계 연월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　　)년도 전기공사실적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 1부 2.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 공사의 경우로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1부를 제출합니다. 3.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 입금 실적 증명서 또는 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전기공사의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1부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8. 그 밖의 증명서류(별표 2에 따른 신인도 반영비율의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1.5.18>

년도 전기공사 실적

(앞쪽)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접수 번호	매 수	등록번호
- -				

(실질자본금 ₩)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재지
전화번호

①일련번호	②공사명	③공사분야(부호기입)	④공사지역(부호기입)	⑤발주자명		⑥원도급업체명(하도급자가 기입)		⑦발주자 등 류(부호기입)	⑧하도급업체명(원도급자가 기입)		⑨계약방법 1.입찰 경쟁 2.제한 경쟁 3.지명 경쟁 4.수의(번호기입)	⑩계약종류 1.원도급 2.하도급 3.자 가 공 사(번호기입)	⑪계약연월	⑫착공연월	⑬준공연월	⑭지난 연도 미기성 이월공사금액 ⑮해당 연도 계약액	⑯해당 연도 기성액 (공사실적) (⑭+⑮)-(⑰+⑱)	⑰하도급금액(원도급자가기입)	⑱해당 연도 미기성액	⑲해당 연도 발주자 공급원자재금액 (해당 업체만 기입하며 실적자는 상관없음)	⑳공사건수	㉑공급세금류(부호기입)	㉒비고
						등록번호	상 호						년 월	년 월	년 월	천백십억 천백십만 천만원	천백십억 천백십만 천만원	천백십억 천백십만 천만원	천백십억 천백십만 천만원	천백십억 천백십만 천만원			
(998)	소 계																						
(999)	합 계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전기공사 실적 실적표 작성요령

〈표제부관련〉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소재지	본사 소재지 코드	접수번호	매수	등록번호
		11:서울 24:광주 32:강원 36:전남 21:부산 25:대전 33:충북 37:경북 22:대구 26:울산 34:충남 38:경남 23:인천 31:경기 35:전북 39:제주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번호로서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2) 접수번호: 업체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장수: 실적표 총 장수와 현재 장수를 다음 예에 따라 기입합니다.
(예) 실적표 총 장수 10장 중 7번째 장의 경우 : 010-007
(4) 등록번호: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에 적혀 있는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5) 실질 자본금: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에 적혀 있는 자본금을 기입합니다.

<공사내용 관련>

① 일련번호: 매 건별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첨부서류 포함)를 취합한 후 1부터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② 공사명: 해당 공사의 공사분야 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예) ○○지구 택지조성 가로등공사, 한전○○지점 공량단가 계약공사, ○○○일반전기공사 외 ○건 인입선 및 계기부설공사 ○건, ○○공장 플랜트 계장공사 등
③ 공사 분야: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공사분야 분류부호」 코드를 확인하여 정확한 부호를 적되, 해당 공사 분야 분류코드가 없는 송전(T/L), 변전(S/S), 배전(D/L)의 전기공사는 590번으로 기입합니다.
④ 공사 지역: 공사 현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부호를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소재지 및 공사 지역별 부호」에서 찾아 기입합니다.
(예) 한국전력공사 청주지점 공량단가 계약공사
- 해당 공사가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주된 공사 지역의 부호를 기입합니다.
- 공사 지역이 해외인 경우에는 국내 공사분 다음에 총괄 내용을 기입하고(예 : ○○국가 전기공사 외 ○건 ○○○원) 별지에 공사건별로 구분·작성합니다.
⑤ 발주자명: 발주자명은 발주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공식명칭을 기입합니다.
- 발주자가 군부대 및 방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상 "정부(기타)"로 기입합니다.
- 발주자가 주한 외국군부대 또는 외국기관일 경우 "국내 외국기관"으로 기입합니다.
⑥ 원도급 업체명: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에서만 적으며, 원도급한 업체명을 기입합니다.

⑤ 발주자명	한국전력공사
⑥ 원 도 급 업 체 명	(주)거국전기

예)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 서울-00987호 (주)거국전기에서 원도급 후 실적표 작성업체에서 하도급받는 경우
- 전기공사업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체의 경우 또는 건설업체의 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원도급이므로 ⑤란에만 기입합니다.

⑦ 발주자 분류: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발주자 분류해설」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한 후 발주자별 분류번호를 찾아 기입합니다.
⑧ 하도급업체명: 원도급인 작성업체에서 수주한 공사 중에서 일부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명을 기입합니다.
⑨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합니다.
1.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수주한 경우
2.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수주한 경우
3. 지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을 수주한 경우
(예) 발주처로부터(민간 제외) 특수시공 기술보유 우수시공업자 지정 등으로 지명을 받아 입찰한 공사의 경우(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지명원을 제출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분합니다)
4. 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경우
- 관공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수의계약 범위(5,000만원) 이내의 경우를 말합니다.
⑩ 계약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번호를 기입합니다.
1. 원도급 2. 하도급 3. 자가 수요공사
- 원발주자로부터 1차적으로 도급받은 경우 또는 건설업체의 자가 수요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원도급으로 구분합니다.
⑪ 계약연월: 계약이 체결된 연도와 월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며, 자가 수요공사의 경우 계획이 확정된 연도와 월을 기입합니다.
⑫⑬ 착공(준공)연월: 착공연월, 준공연월은 실제 착공 또는 준공된 연월을 기입합니다.
⑭ 전년도 미기성 이월공사 금액: 해당 연도 이전 계약액 중에 미기성되어 이월된 공사금액을 기입(이월 공사금액)합니다.
⑮ 해당 연도 계약액: 해당 연도에 계약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추가 공사계약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기입(비고란에 추가액 기입, 천 단위 미만은 버림)합니다.
- 공사 공급가액 외에 부가가치세도 포함합니다.
⑯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과 해당 연도 미기성액을 제외한 해당 연도 중 기성된 금액을 기입(공사실적)합니다.
⑰ 하도급금액: 원도급자가 적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⑱ 해당 연도 미기성액: 과년도에서 이월된 공사 중 해당 연도 미기성액과 해당 연도 계약액 중 미기성된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⑲ 발주자 공급 원자재금액: 공사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발주처로부터 원자재(관급 또는 사급 자재)를 공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⑳ 공사 건수: 해당 공사의 건수를 기입합니다.
- 한전공량 단가공사는 총공사 건수를 기입합니다.
- 1건의 공사로서 추가 또는 변동된 공사는 1건으로 기입합니다.
- 일반 전기공사 실적명세서의 공사는 1란에 적고 총 건수를 기입합니다.
㉑ 공사 종류 세분류: 공사의 성질에 따라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공사종류 세분류부호」를 기입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6. 13.>

(　　)년도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앞쪽)

일련번호:					
1.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2.공사내역					
공 사 명				공사종류	
공사현장소재지 (주소)					
발 주 자		원도급자		등록번호	
계 약 일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계약방법	1. 일반경쟁입찰 2. 제한경쟁 3. 지명경쟁 4. 수의계약				※해당 번호에 ○표
도급종류	1. 원도급 2. 하도급 3. 자가수요공사				※해당 번호에 ○표
3.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원)
총 도급계약액		지난 연도까지의 기성액 누계		지난 연도 이월액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 (원도급자가 기재)		미기성액	
관급 자재액		다른 공사 종류 포함 기 성 액		해당 연도 추가 또는 변경 계약액	

4.하도급내역(원도급자가 작성)			
하도급업체	등록번호	대표자	하도급액
	※ 3개 업체 이상인 경우 ○○외 ○개 업체로 표기 후 합산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5.시공규모	※ 공란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위와 같은 전기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인)
소　재　지:
담　당　자: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

(뒤쪽)

6. 복합 공사 종류(다른 공사 종류 포함)실적 명세

공사(종)명	계약액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지난 연도 기성액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 금액 / 미기성 금액
전 기 공 사						
토 목 공 사						
건 축 공 사						
통 신 공 사						
소 방 공 사						
기계설비공사						
그 밖의 공사						
계						

작성요령

1. 시공자

- 시공(신청)자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2. 공사 내용

- 공사명: 계약서상의 공사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공사 내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 1. 발전설비, 2. 송전설비, 3. 변전설비, 4. 배전설비, 5. 산업시설물전기설비, 6. 건축물전기설비, 7. 구조물전기설비, 8. 도로전기설비, 9. 공항전기설비, 10. 항만전기설비, 11. 전기철도설비, 12. 철도신호설비, 13. 기타 전기설비 중 해당되는 공사종류를 적습니다.
- 발주자: 공식명칭을 적으며, 하도급자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최초 발주자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원도급자: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에 적으며, 원도급자의 상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등록번호: 원도급자의 전기공사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해당 공사 계약체결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을 정확하게 적으며, 미완성공사인 경우에는 준공 예정일을 적되, 추후 준공연도 확정 시 다음 해 실적 신고기한까지 정정신고(발주자의 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준공 연월일로 확정합니다.

3. 실적금액

- 총 도급계약액: 해당 공사의 이월된 계약액과 해당 연도 추가계약액을 포함한 총 도급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연도기성액: 하도급금액과 해당 연도 미기성액을 제외한 해당 연도 중 기성된 금액을 적습니다.
- 관급자재액: 공사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발주처로부터 원자재(관급 또는 사급자재)를 공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른 공사 종류 포함 기성액: 복합공종의 경우로서 다른 업종의 기성 실적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해당 연도 추가 또는 변경 계약액: 전년도 이월공사 중 해당 연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금액만 적습니다.

4. 하도급 명세

- 하도급을 한 경우 적으며, 하수급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하도급액을 적습니다.

5. 시공규모

- 추후 실적확인서의 시공 내용 확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연면적, 층수, 시공거리, 자재비 등 시공 규모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서식 28] 삭제 <2002.12.31>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9.14>

(　　)년도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해외전기공사 시공 내용

(단위: 천원)

일련번호	공사명	계약액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수령액		비고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지난 연도까지	해당 연도	
							원화
							원화
							원화
							원화
							원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전기공사 실적(공사대금 수령 사실)이 있음을 증명(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행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14>

(　　)년도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수출(군납)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입 금 내 용　　(원화 단위: 천원)

일련번호	매 입 일	계약번호	공 사 명	지 역 명	금 액	비 고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행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9.14>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 공사실적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만 해당합니다.

(앞쪽)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부가가치세액 포함) 전기공사 시공 내용 (단위: 천원)

일련번호	수용자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계 약 액	기 성 액
	성명(상호)	주 소	전화번호				
소 계							
합 계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뒤쪽에 시공 명세서가 계속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부가가치세액 포함) (단위: 천원)

일련번호	수용자			착 공 연월일	준 공 연월일	계약액	기성액
	성명(상호)	주 소	전화번호				
소 계							
합 계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00.6.26>

전기안전관리법령

1. 전기안전관리법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 - 203 - 39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8. “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10. “원격점검”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ㆍ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 안전공사 ”라 한다)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기안전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전검사)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0. 18.>

② 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이하 "원격점검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③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1.>

⑤ 안전공사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2022. 10. 18.>

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⑥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⑦ 안전공사는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2022. 10. 18.>

⑧ 안전공사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12. 21.>

⑩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12. 21.>

⑪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

⑬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개정 2021. 12. 21., 2022. 10. 18.>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21.>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공사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가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1.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검사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전기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1. 안전공사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8. 4. 1.] 제22조제3항 단서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전기안전관리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 시공관리책임자 ”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 전기안전교육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2.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4.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4.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제32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33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ㆍ용역의 수출
9.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4.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제2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이하 "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관리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3.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제48조(벌칙)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50조(벌칙)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12조제8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5.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자
7. 제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자
8.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12. 21.>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2조제7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자
6.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
7.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8.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9.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0.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7171호,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단서는 공포 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8항 및 제52조제2항제4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시공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5호 및 제44조제3항제2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각각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9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 「전기사업법」 제6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로 한다.
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7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5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각각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 같은 법 제7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 ”을 “ 제63조 및 제64조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0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4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⑮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 「전기사업법」 제6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로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7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5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1*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1(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7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0호의2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 제63조 ”를 “ 제9조 ”로 한다.
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3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7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0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0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8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 「전기사업법」 제6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로 한다.
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을 “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 제61조 및 제62조 ”를 “ 제61조 ”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를 “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 ”를 “ 전기사업자 ”로 한다.
제71조 중 “ 제63조 또는 제65조 ”를 “ 제63조 ”로, “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 ”를 “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 ”로 한다.
제73조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안전공사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 안전공사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제63조 및 제65조 ”를 “ 제6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 ”을 “ 제61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를 “ 전기사업자 ”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 ”을 “ 제18조제2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 ”을 “ 제61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 「전기사업법」 ”을 “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을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으로 한다.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5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26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제303조제1항 중 “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을 “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 제62조제1항 ”을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으로 한다.
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8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 「전기사업법」 제6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로 한다.
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9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5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 ”로 한다.
<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5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5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6>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60>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02호,2021.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4호,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 - 203 - 398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2.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의 실시
3.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4. 전기설비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기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 전기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전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① 전기안전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기안전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공사계획의 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해야 한다.

제6조 삭제 <2023. 4. 11.>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이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 11. 29.>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수용인원 300명 미만의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각 학원 수용인원을 합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1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가용전기설비로 한정한다)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2.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는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교체 및 보수 공사
   가. 전기공급의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긴급한 경우
   나. 전기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손실 보상)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의 상호명(상호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소재지
2. 전기설비 현황(수전설비 및 발전설비의 전압 및 용량)
3.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연월일 및 결과
4. 전기설비의 검사자 또는 점검자 성명
5.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 연월일 및 결과
6. 전기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 형태, 업체명 및 교육 현황
7.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1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별표 3의 요건을 말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4의 장비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 실태조사 ”라 한다)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나 자가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며,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2.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예산

[제목개정 2023. 4. 11.]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3.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현황,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ㆍ제출 및 전기안전교육 현황 관리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 법 제40조에 따른 중대사고의 통보ㆍ조사에 관한 업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전기재해통계(이하 "전기재해통계"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자료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21.]

제15조(전기사고의 조사대상)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고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 재산피해[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가 3억원 이상인 화재사고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2. 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전기설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22. 6. 21.>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3. 법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4. 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5.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6.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업무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목개정 2022. 6. 21.]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4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관한 등록 사무
2.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고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 6. 21.>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31576호,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아목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준란 나목 중 “ 「전기사업법」 ”을 “ 「전기안전관리법」 ”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8호 중 “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를 “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바목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④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1호 중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 ”을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 ”으로 한다.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을 “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으로, “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 ”을 “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으로 한다.

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5호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별표 5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제4호 중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로 한다.

별표 1의5 제7호라목의 공시정보의 범위란 중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로 한다.

⑧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0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62호 중 “ 「전기사업법」 제65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로 하고, 같은 표 제63호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로 한다.

61.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호 중 “ 「전기사업법」 ”을 “ 「전기안전관리법」 ”으로 한다.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6호 중 “ 법 제66조제1항 ”을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 법 제66조제6항 ”을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6항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 법 제62조제1항 전단 ”을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으로 한다.

제42조 중 “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을 “ 법 제61조제1항 ”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안전공사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3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7,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을 “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 ”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 법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 ”을 “ 법 제18조제2항 ”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 ”을 “ 법 제61조제2항 ”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제6호로 한다.

⑫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 「전기사업법」 제74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 「전기사업법」 ”을 “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 ”를 “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 「전기사업법」 ”을 “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으로 한다.

별표 1의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의 등록기준란 제1호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로 한다.

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란 제1호마목 중 “ 「전기사업법」 ”을 “ 「전기안전관리법」 ”으로 한다.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종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4.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 「전기사업법」 제74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로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 ”를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1*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7호 중 “ 「전기사업법」 제74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로 한다.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 「전기사업법」 제74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을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 ”를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안전관리에 관하여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709호,2022. 6. 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04호,2022. 11. 2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9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부터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3401호,2023. 4. 11.>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제10조 관련)

분 야	업무 정보
1. 전기설비 검사·점검	가. 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정보 나.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이력정보 다. 법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이력정보 라.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이력정보 마. 법 제12조에 따른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이력정보 바.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이력정보 사. 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점포 점검 이력정보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이력정보 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이력정보 차.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및 안전등급 변경 이력정보
2.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가.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설비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9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정보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나. 전기설비 안전사고 및 전기재해통계에 관한 사항 다.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3. 장비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나. 절연내력(絶緣耐力)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다. 절연유(絶緣油) 내압 시험기: 1대 라.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대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2대 바. 회로 시험기: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자.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차. 고압절연장갑: 3켤레 카. 절연장화: 3켤레 타. 절연안전모: 3개

	개인장비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클램프미터, 고압·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 1명당 각 1대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구분	요건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2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3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3. 장비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1대	1대
2) 계전기 시험기	1대	1대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1대	1대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1대	1대
5) 특고압 COS 조작봉	1대	1대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1대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1대
8) 고압절연장갑	3켤레	3켤레
9) 절연장화	3켤레	3켤레
10) 절연안전모	3개	3개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7대	5대
2) 접지저항 측정기	7대	5대
3) 클램프미터	7대	5대
4) 저압검전기	7대	5대
5) 고압 · 특고압 검전기	7대	5대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고,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 · 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한다.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

장 비	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1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1
3. 접지저항 측정기	1
4. 클램프미터	1
5. 저압검전기	1
6. 고압 및 특고압기	1
7. 계전기 시험기	1
8.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
9. 고압절연장갑	1
10. 절연장화	1
11. 절연안전모	1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80만원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호	80만원
다. 법 제12조제7항(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50만원
라. 법 제12조제8항(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마. 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2호	200만원
바.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200만원
사.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4호	200만원
아. 법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4호	50만원
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법 제52조	80만원

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경우	제2항제5호	
차.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5호	200만원
카.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6호	50만원
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7호	50만원
파.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8호	50만원
하. 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9호	50만원
거.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6호	200만원
너.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0호	50만원
더.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1호	50만원
러.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2호	80만원
머. 법 제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7호	200만원
버.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8호	200만원
서.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9호	200만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9호, 2023. 12.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 - 203 - 39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0.>

1. “ 전기수용설비 ” 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2. “ 수전설비 ” 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3. “ 구내배전설비 ” 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 저압 ” 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5. “ 고압 ” 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 특고압 ” 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7. “ 피뢰설비 ” 란 벼락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ㆍ시설 또는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 ” 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 안전공사 ” 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계획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이하 "전기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 4. 22.>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3.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4. 22.>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배치확인서(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했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및 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4. 22.>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4. 22.>

③ 안전공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토목·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

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2023. 4. 19.>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3. 4. 19.>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시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다목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시설

아.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 시설. 다만,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한다.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호등 시설

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카.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시설

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①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이하 "원격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②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로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원격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22.]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 6. 22., 2023. 4. 19.>

1.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 연월일
3. 점검의 결과
4. 통지 연월일
5. 통지사항
6. 점검자의 성명
7. 사용전점검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12조제8항 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屋內)ㆍ옥외(屋外)ㆍ건물쪽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2. 1. 21., 2022. 6. 22.>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2. 6. 22.>

④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6. 22.>

⑤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6. 22.>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① 법 제12조제10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22.>

1.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2. 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 폐지, 전기의 재공급,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 내용의 변경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제17조(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법 제12조제12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6. 22.>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점검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가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전기안전점검 연월일
3. 전기안전점검 결과
4. 전기안전점검자의 성명
5.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가 발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6. 22.>

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했을 때에는 긴급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시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개정 2022. 4. 22., 2023. 12. 20.>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가.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

나. 설비용량(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의 합계가 2천 500킬로와트 미만일 것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120개소를 말한다)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
3.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지역
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5. 그 밖에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시행일: 2028. 4. 1.] 제27조</br>[시행일: 2028. 4. 1.] 제27조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22.>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또는 그 증명서류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28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만 제출한다)

2.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 제3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기재해의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검사를 받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2.>

1.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한다): 별표 11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2.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별표 12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2. 4. 22.>

1.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4. 22.>

④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 4. 22.>

⑤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4. 22.>

1.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의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2. 전기 관련 기관의 장: 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1.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 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2. 장비명세서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①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적은 서류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

② 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드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보고)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5와 같다.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별표 16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통보의 방법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7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44조(수수료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비는 별표 1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것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제4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21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및 기간: 2021년 1월 1일
3.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2021년 1월 1일

부칙 <제415호,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및 별표 10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전기수용설비 설치공사로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의 신고는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0호가목에 따른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로서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어촌민박사업 시설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8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예외지급 사유란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0)바)(1)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8호,2022. 1.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2022.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및 다목, 제26조제2호나목 및 다목, 별표 3 제6호 및 제7호와 별표 8 비고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1호(5)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3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9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사감리의 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기안전교육 이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발전설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송전선로ㆍ변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된 경우: 수용설비 검사 시
2.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부칙 <제471호,2022. 6. 22.>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22.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 제1호(5)(나)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23. 4. 19.>
이 규칙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전기설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0.>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설비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가) 원동력 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수력설비		
(가) 댐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댐의 설치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을 수반한 것
(다) 침사지(沈砂池)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라) 도수로(물을 끌어들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

이는 길) 또는 방수로		·연장 및 개조	
(마)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여수로(餘水路)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압력 조정용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라) 압력 조정용 용기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바) 수압관로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압관로 설치 및 연장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 본체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사) 수차	수차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차 설치 (2) 대체 또는 개조	
(아) 양수식발전설비의 양수용 펌프	펌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펌프 설치 (2) 대체 및 개조	
(자) 저수지 또는 조정지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	

		지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수위(滿水位)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기력설비 (가)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나)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연료연소설비	(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 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마)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바) 보조설비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 가스터빈 설치			
(가)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	

		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다) 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 보조설비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4) 복합화력설비			
(가)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다) 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온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가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마) 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바)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 설치 또는 대체	
(사) 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아) 보조설비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5) 내연력설비			
(가) 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 설치 또는 대체	
(6) 풍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외함과 외함 내외에 발전기 등 나셀 구성품이 설치되어 있는 풍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발전기계통설비			
(1) 발전기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2) 연료전지설비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보조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 전기저장장치(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kwh)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4)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다)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변전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송전선로를 제외한다)		
가.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나. 변경공사		
1)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3. 피뢰설비		
가. 설치공사		피뢰설비의 설치
나. 변경공사		
1) 수뢰부		수뢰부의 설치 또는 변경
2) 인하도선		인하도선의 설치 또는 변경
3) 접지시스템		접지시스템의 설치 또는 접지시스템의 2분의 1 이상 변경

비고

1. 피뢰설비는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피뢰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적 구성부재의 주변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0.>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설비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가) 원동력 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수력설비		
(가) 댐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댐의 설치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을 수반한 것
(다) 침사지(沈砂池)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라) 도수로(물을 끌어들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

이는 길) 또는 방수로		·연장 및 개조	
(마)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여수로(餘水路)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압력 조정용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라) 압력 조정용 용기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바) 수압관로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압관로 설치 및 연장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 본체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사) 수차	수차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차 설치 (2) 대체 또는 개조	
(아) 양수식발전설비의 양수용 펌프	펌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펌프 설치 (2) 대체 및 개조	
(자) 저수지 또는 조정지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	

		지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수위(滿水位)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기력설비 (가)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나)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연료연소설비	(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 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마)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바) 보조설비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 가스터빈 설치			
(가)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	

		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다) 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 보조설비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4) 복합화력설비			
(가)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다) 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온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가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마) 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바)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 설치 또는 대체	
(사) 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아) 보조설비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5) 내연력설비			
(가) 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 설치 또는 대체	
(6) 풍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외함과 외함 내외에 발전기 등 나셀 구성품이 설치되어 있는 풍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발전기계통설비			
(1) 발전기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2) 연료전지설비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보조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 전기저장장치(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kwh)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4) 무정전전원장치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kwh)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나트륨계 이차전지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

		는 제외한다.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5)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다)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변전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송전선로를 제외한다)			
가.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나. 변경공사			
1)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3. 피뢰설비	변경	
가. 설치공사		피뢰설비의 설치
나. 변경공사		
1) 수뢰부		수뢰부의 설치 또는 변경
2) 인하도선		인하도선의 설치 또는 변경
3) 접지시스템		접지시스템의 설치 또는 접지시스템의 2분의 1 이상 변경

비고

1. 피뢰설비는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피뢰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적 구성부재의 주변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 21.>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제4조 관련)

1. 제출서류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제출대상기관</th><th>서식</th><th>첨부서류</th></tr>
<tr><td rowspan="3">인가신청·신고</td><td>법 제8조제1항 전단</td><td>산업통상자원부장관</td><td>별지 제1호서식</td><td rowspan="2">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td></tr>
<tr><td>법 제8조제2항 전단</td><td rowspan="2">전기안전공사</td><td rowspan="2">별지 제2호서식</td></tr>
<tr><td>법 제8조제2항 전단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또는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1 제2호나목에 해</td><td>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td></tr>
</table>

	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법 제8조제1항 후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아.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법 제8조제2항 후단	전기안전공사	별지 제2호서식	
	법 제8조제2항 후단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비고

1.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 발전소	(1)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1) 송전계통도
	(2) 발전소의 출력(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력 및 상시첨두출력도 적을 것)	(2)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수력발전소의 경우는 5만분의 1) 지형도
	(3)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용수량, 유효낙차 및 이론수력(각각 최대·상시 및 상시첨두로 구분하여 적을 것)	(3)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단선결선도
가. 원동력설비		
1) 수력설비		(1) 유량자료 (2) 사용수량의 결정에 관한 설명서 (3) 유효낙차, 이론수력 및 출력에 관한 계산서 (4) 유량의 조정방법 및 인수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양수발전소의 양수량 결정에 관한 설명서 (6) 수차와 발전기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지하에 시설하는 것의 주변 지반의 지질 및 유수 제거방법에 관한 설명서

가) 댐	(1) 종류·높이·여유고·마루높이·마루넓이·일류정표고·일류폭 및 일류수심	(1) 댐의 구조도
	(2) 댐 본체의 체적, 최대부폭, 상하류면 기울기 또는 중심각 및 반경	(2) 계획홍수유량계산서
	(3) 기초지반의 처리방법	(3) 댐의 강도 및 안전도에 관한 계산서
	(4) 홍수토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및 용량 (나) 수문의 종류, 주요 치수 및 문의 수 (다) 수문조작용 동력설비의 종류 및 용량(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4) 홍수토의 구조도 및 용량계산서
나) 취수설비	(1)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취수지점의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취수방법 (3) 취수구의 주요 치수 및 취수구 상단표고 (4) 스크린의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취수설비의 구조도
다) 침사지	(1) 주요 치수 (2) 토사의 침전방법 및 침전된 토사의 제거방법	침사지의 구조도
라) 도수로	(1) 길이(본수로 및 지수로와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및 압력	(1) 도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3) 압력도수로의 터널 경과지의지질 및 시공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표준라이닝 두께 및 표준관 두께(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3) 합류조의 주요 치수	
마) 방수로	(1) 방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방수지점의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길이,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및 표준라이닝 두께(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와 입력 (3) 방수구의 주요 치수 및 방수구 상단표고 (4) 압력 조정용 용기의 종류 및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1) 방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바)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	(1) 종류 및 압력 (2) 탱크의 주요 치수 (3) 스크린의 주요 치수 (4)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5) 여수로의 종류 및 주요 치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구조도
사) 수압관로	(1) 압력 (2) 관 본체의 길이(본관과 지관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최대 관 두께, 최소 관 두께, 최대 안지름,	수입관로의 구조도

	최소 안지름, 재료, 접합 방법 및 지지방법 (3) 앵커블록의 종류 및 개수	
아) 수차	(1) 종류·출력·회전수와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양수량·양정 및 입력 (2) 조속기의 종류 (3)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4) 흡출관의 종류 및 흡출고 (5)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력	펌프수차의 입력결정에 관한 설명서
자) 양수식발전설비의 양수용 펌프	(1) 종류, 양수량, 양정, 입력 및 회전수 (2)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3)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력	
차) 저수지 또는 조정지	(1) 전용량, 유효용량, 이용수심, 상시만수위, 최저수위, 서차지(surcharge)용량, 서차지수위 및 제한수위 (2) 주변의 보강방법	(1)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2) 수위 담수면적곡선도 (3) 수위용량곡선도 (4) 배수위계산서
2) 기력설비		
가) 증기터빈	(1) 종류,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력, 배기압력, 회전	(1) 발전소 열정산도 (2) 증기터빈 구조도

	수 (2) 냉각수의 종류 및 가능 취수량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장치의 종류 (4)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 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 복수펌프 및 냉각수펌프의 종류·용량 및 대수 (다) 튜브누설감지장치의 종류 (5)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온도, 설계외기 습도, 주요 치수와 대수 (6)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열교환기의 종류, 발생증기량(가열증기량) 및 급수량,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최고 사용압력(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최고 사용온도(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가열면적과 대수,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치수와 부착개소	
나) 왕복기관	(1) 종류, 출력, 기통수,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왕복기관의 구조도

	압력 및 온도, 배기압력과 회전수 (2) 조속장치의 종류 (3)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복수펌프의 종류·용량 및 대수 (다) 튜브누설감시장치의 종류 (4) 왕복기관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습도, 설계외기온도와 대수 (5) 냉각수의 종류 및 사용수량	
다) 보일러	(1) 종류, 증발량, 출구의 압력 및 온도, 최고 사용압력 및 온도, 가열면적, 유효화상면적, 급수온도와 상용 및 예비의 구분 (2) (증기)재가열장치 통과증기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가열면적 (3) 절탄기의 가열면적 (4)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치수 및 부착 개소 (5)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다음의	(1) 보일러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2) 급수처리 계통도

	사항 (가) 급수펌프의 종류, 급수량, 토출압력, 대수(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나) 저수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6)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처리설비 및 보일러수처리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7) 보일러에 부속하는 공기예열기의 종류, 입구 및 출구의 공기온도, 가열면적과 대수	
라) 연료연소설비	(1) 미분탄 연소용 기기에 관한 급탄기, 분쇄기,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용량과 대수 (2) 미분탄 외의 석탄의 연소용기에 관한 스토커(stoker)의 종류, 연소용량, 화상의 폭 및 길이와 개수 (3) 유류 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원유용과 원유 외의 석유용 구분 (나)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4) 가스연소용 기기에 관	(1) 연료계통도 (2) 액화가스용 저장조 기화기냉동설비 및 가스홀더의 구조도 (3) 액화가스용 도관의 경로(지중·물밑 및 기타로 구분 표시) 경과지의 명칭 및 부근에 있는 주요 도로, 건축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축척 3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한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5) 액화가스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액화가스의 종류 및 발열량

(나) 버너의 종류, 용량 및 대수

(다) 액화가스용 용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6) 그 밖의 연료의 연소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및 연소기의 종류, 용량과 대수

(7) 연료운반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양탄기 및 운탄기의 종류

(나) 액화가스용 관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바깥지름의 두께

(다) 액화가스용 가압수송기의 종류·능력·대수와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8) 연료저장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석탄저장소의 면적 및 저탄용량

(나) 유류탱크 및 가스·액화가스탱크의 종류, 용량과 대수

(9) 회전수송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0) 가스발생설비에 관한 액화가스용 기화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바)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3) 가스터빈 설비		
가) 가스터빈	(1) 종류, 출력,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설계외기온도와 회전수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3)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기동용 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4)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굴뚝의 종류, 지표상의 높이 및 개수	(1) 발전소 열정산도 (2) 가스터빈의 구조도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공기압축기의 구조도
다)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4) 복합화력설비		
가) 가스터빈	(3)의 (가)에 열거한 사항	가스터빈의 구조도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공기압축도의 구조도
다) 보일러	(2)의 (다)에 열거한 사항	(2)의 (다)에 열거한 서류
라)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 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바)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온도 및 대수	
사) 증기터빈	(2)의 (가)에 열거한 사항	증기터빈 구조도
5) 내연력설비		
가) 내연기관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1) 비상정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2) 연료계통도
	(3) 과급기의 종류, 출구의 압력, 회전수와 대수	
	(4) 내연기관에 부속된 냉각수설비의 용량	
6) 풍력설비		
가) 풍차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1) 풍차정지 회로도
	(2) 날개 지름 및 재료	(2) 풍차 출력곡선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3) 풍차구조도
나. 발전기계통설비		
1) 발전기	(1) 종류·용량·역률·전압·상·주파수·회전수·결선법 및 냉각법과 발전전동기의 경우에는 출력(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1) 발전기 정지회로도 (2) 발전기 밀봉유 계통도 (3) 발전기 냉각수 계통도 (4) 발전기 수소가스 계통도
	(2)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의 종류·용량·회전수·구동방법 및 대수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원동기와의 연결방법	
	(5) 발전기 냉각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하는 펌프) 및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	

	주는 장치)의 종류·용량·대수 (나) 수소가스의 압력·온도·순도 (다) 고정자 냉각수 냉각기의 종류·대수 (라) 치환가스의 종류		
2) 변압기	(1) 종류·용량·전압(1차·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상·결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3) 차단기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선단락용량계산서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1)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개방전압, 단락전류 및 모듈의 수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발전방식 설명서 (4)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	
2) 연료전지설비	(1) 연료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전압, 냉각법, 대수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연료전지 설명서	

3)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4)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상수·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건물쪽·옥상·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 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 계산서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기술 서류 (1) 전선로 지형도(전선로의 중심선·경과지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m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철도·도로·건조물·기타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5,000분의 1(시가지의 경우 2,000분의 1)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의 부설도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통신선로와 공중전선로가 5킬로미터 이내의 이격거리

		로 500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이거나 통신선로가 지중전선로로 5킬로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애자의 종류·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5) 전파방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6)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라. 비상용예비발전설비	(1) 발전설비의 종류, 출력용량, 전압, 전류, 대수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발전설비의 배치도
2. 수용설비	(1) 수용설비의 위치(동·리까지 적고 사업자 명칭도 적을 것)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및 수용전압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변전소의 명칭	(1) 주요 설비의 배치평면도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상수·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건물쪽·옥상·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6) 애자의 종류·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1호 다목 4) 다)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2. 6.>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제4조 관련)

1. 제출서류

구 분		제출대상기관	서식	첨부서류
인가신청·신고	법 제8조제1항 전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법 제8조제2항 전단	전기안전공사	별지 제2호서식	
	법 제8조제2항 전단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또는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1 제2호나목에 해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법 제8조제1항 후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아.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법 제8조제2항 후단	전기안전공사	별지 제2호서식	
	법 제8조제2항 후단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비고

1.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 발전소	(1)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1) 송전계통도
	(2) 발전소의 출력(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력 및 상시첨두출력도 적을 것)	(2)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수력발전소의 경우는 5만분의 1) 지형도
	(3)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용수량, 유효낙차 및 이론수력(각각 최대·상시 및 상시첨두로 구분하여 적을 것)	(3)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단선결선도
가. 원동력설비		
1) 수력설비		(1) 유량자료 (2) 사용수량의 결정에 관한 설명서 (3) 유효낙차, 이론수력 및 출력에 관한 계산서 (4) 유량의 조정방법 및 인수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양수발전소의 양수량 결정에 관한 설명서 (6) 수차와 발전기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지하에 시설하는 것의 주변 지반의 지질 및 유수 제거방법에 관한 설명서

가) 댐	(1) 종류·높이·여유고·마루높이·마루넓이·일류정표고·일류폭 및 일류수심	(1) 댐의 구조도
	(2) 댐 본체의 체적, 최대부폭, 상하류면 기울기 또는 중심각 및 반경	(2) 계획홍수유량계산서
	(3) 기초지반의 처리방법	(3) 댐의 강도 및 안전도에 관한 계산서
	(4) 홍수토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및 용량 (나) 수문의 종류, 주요 치수 및 문의 수 (다) 수문조작용 동력설비의 종류 및 용량(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4) 홍수토의 구조도 및 용량계산서
나) 취수설비	(1)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취수지점의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취수방법 (3) 취수구의 주요 치수 및 취수구 상단표고 (4) 스크린의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취수설비의 구조도
다) 침사지	(1) 주요 치수 (2) 토사의 침전방법 및 침전된 토사의 제거방법	침사지의 구조도
라) 도수로	(1) 길이(본수로 및 지수로와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및 압력	(1) 도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3) 압력도수로의 터널 경과지의지질 및 시공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표준라이닝 두께 및 표준관 두께(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3) 합류조의 주요 치수	
마) 방수로	(1) 방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방수지점의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길이,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및 표준라이닝 두께(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와 입력 (3) 방수구의 주요 치수 및 방수구 상단표고 (4) 압력 조정용 용기의 종류 및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1) 방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바)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	(1) 종류 및 압력 (2) 탱크의 주요 치수 (3) 스크린의 주요 치수 (4)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5) 여수로의 종류 및 주요 치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구조도
사) 수압관로	(1) 압력 (2) 관 본체의 길이(본관과 지관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최대 관 두께, 최소 관 두께, 최대 안지름,	수입관로의 구조도

	최소 안지름, 재료, 접합 방법 및 지지방법 (3) 앵커블록의 종류 및 개수	
아) 수차	(1) 종류·출력·회전수와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양수량·양정 및 입력 (2) 조속기의 종류 (3)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4) 흡출관의 종류 및 흡출고 (5)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력	펌프수차의 입력결정에 관한 설명서
자) 양수식발전설비의 양수용 펌프	(1) 종류, 양수량, 양정, 입력 및 회전수 (2)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3)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력	
차) 저수지 또는 조정지	(1) 전용량, 유효용량, 이용수심, 상시만수위, 최저수위, 서차지(surcharge)용량, 서차지수위 및 제한수위 (2) 주변의 보강방법	(1)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2) 수위 담수면적곡선도 (3) 수위용량곡선도 (4) 배수위계산서
2) 기력설비		
가) 증기터빈	(1) 종류,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력, 배기압력, 회전	(1) 발전소 열정산도 (2) 증기터빈 구조도

	수 (2) 냉각수의 종류 및 가능 취수량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장치의 종류 (4)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 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 복수펌프 및 냉각수펌프의 종류·용량 및 대수 (다) 튜브누설감지장치의 종류 (5)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온도, 설계외기습도, 주요 치수와 대수 (6)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열교환기의 종류, 발생증기량(가열증기량) 및 급수량,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최고 사용압력(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최고 사용온도(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가열면적과 대수,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치수와 부착개소	
나) 왕복기관	(1) 종류, 출력, 기통수,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왕복기관의 구조도

	압력 및 온도, 배기압력과 회전수 (2) 조속장치의 종류 (3)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복수펌프의 종류·용량 및 대수 (다) 튜브누설감시장치의 종류 (4) 왕복기관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습도, 설계외기온도와 대수 (5) 냉각수의 종류 및 사용수량		
다) 보일러	(1) 종류, 증발량, 출구의 압력 및 온도, 최고 사용압력 및 온도, 가열면적, 유효화상면적, 급수온도와 상용 및 예비의 구분 (2) (증기)재가열장치 통과증기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가열면적 (3) 절탄기의 가열면적 (4)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치수 및 부착 개소 (5)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다음의	(1) 보일러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2) 급수처리 계통도	

	사항 (가) 급수펌프의 종류, 급수량, 토출압력, 대수(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나) 저수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6)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처리설비 및 보일러수처리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7) 보일러에 부속하는 공기예열기의 종류, 입구 및 출구의 공기온도, 가열면적과 대수		
라) 연료연소설비	(1) 미분탄 연소용 기기에 관한 급탄기, 분쇄기,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용량과 대수 (2) 미분탄 외의 석탄의 연소용기에 관한 스토커(stoker)의 종류, 연소용량, 화상의 폭 및 길이와 개수 (3) 유류 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원유용과 원유 외의 석유용 구분 (나)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4) 가스연소용 기기에 관	(1) 연료계통도 (2) 액화가스용 저장조 기화기냉동설비 및 가스홀더의 구조도 (3) 액화가스용 도관의 경로(지중·물밑 및 기타로 구분 표시) 경과지의 명칭 및 부근에 있는 주요 도로, 건축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축척 3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한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5) 액화가스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액화가스의 종류 및 발열량

(나) 버너의 종류, 용량 및 대수

(다) 액화가스용 용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6) 그 밖의 연료의 연소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및 연소기의 종류, 용량과 대수

(7) 연료운반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양탄기 및 운탄기의 종류

(나) 액화가스용 관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바깥지름의 두께

(다) 액화가스용 가압수송기의 종류·능력·대수와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8) 연료저장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석탄저장소의 면적 및 저탄용량

(나) 유류탱크 및 가스·액화가스탱크의 종류, 용량과 대수

(9) 회전수송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0) 가스발생설비에 관한 액화가스용 기화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바)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3) 가스터빈 설비		
가) 가스터빈	(1) 종류, 출력,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설계외기온도와 회전수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3)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기동용 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4)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굴뚝의 종류, 지표상의 높이 및 개수	(1) 발전소 열정산도 (2) 가스터빈의 구조도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공기압축기의 구조도
다)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4) 복합화력설비		
가) 가스터빈	(3)의 (가)에 열거한 사항	가스터빈의 구조도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공기압축도의 구조도
다) 보일러	(2)의 (다)에 열거한 사항	(2)의 (다)에 열거한 서류
라)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 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바)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온도 및 대수	
사) 증기터빈	(2)의 (가)에 열거한 사항	증기터빈 구조도
5) 내연력설비		
가) 내연기관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1) 비상정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2) 연료계통도
	(3) 과급기의 종류, 출구의 압력, 회전수와 대수	
	(4) 내연기관에 부속된 냉각수설비의 용량	
6) 풍력설비		
가) 풍차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1) 풍차정지 회로도
	(2) 날개 지름 및 재료	(2) 풍차 출력곡선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3) 풍차구조도
나. 발전기계통설비		
1) 발전기	(1) 종류·용량·역률·전압·상·주파수·회전수·결선법 및 냉각법과 발전전동기의 경우에는 출력(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1) 발전기 정지회로도 (2) 발전기 밀봉유 계통도 (3) 발전기 냉각수 계통도 (4) 발전기 수소가스 계통도
	(2)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의 종류·용량·회전수·구동방법 및 대수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원동기와의 연결방법	
	(5) 발전기 냉각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하는 펌프) 및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	

	주는 장치)의 종류·용량·대수 (나) 수소가스의 압력·온도·순도 (다) 고정자 냉각수 냉각기의 종류·대수 (라) 치환가스의 종류		
2) 변압기	(1) 종류·용량·전압(1차·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상·결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3) 차단기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선단락용량계산서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1)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개방전압, 단락전류 및 모듈의 수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발전방식 설명서 (4)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	
2) 연료전지설비	(1) 연료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전압, 냉각법, 대수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연료전지 설명서	

3)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4) 무정전전원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5)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상수·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건물쪽·옥상·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기술 서류 (1) 전선로 지형도(전선로의 중심선·경과지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m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철도·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 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도로·건조물·기타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5,000분의 1(시가지의 경우 2,000분의 1) 지형도)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의 부설도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 계산서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통신선로와 공중전선로가 5킬로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이거나 통신선로가 지중전선로로 5킬로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애자의 종류·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5) 전파방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6)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라. 비상용예비발전설비	(1) 발전설비의 종류, 출력 용량, 전압, 전류, 대수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발전설비의 배치도
2. 수용설비	(1) 수용설비의 위치(동·리까지 적고 사업자 명칭도 적을 것)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및 수용전압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변전소의 명칭	(1) 주요 설비의 배치평면도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	

	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상수·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건물쪽·옥상·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6) 애자의 종류·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1호 다목 4) 다)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4. 22.>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때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했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소의 타워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2. 6.>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때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했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소의 타워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12. 20.>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 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4년 이내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2년 이내	
	(3) 수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발전기계통(토목 기초를 포함한다)	3년 이내	
	(5) 태양광설비		
	(가) 태양광·전기설비계통	4년 이내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 지역(「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척지였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으로 등록된 지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	2년 이내	

	물		
	(6) 연료전지 · 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 · 전기설비 계통 (전기저장장치 중 변전소에 설치되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는 제외)	1년 이내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천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 · 변전 및 배전설비	2년 이내	
	(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 · 변전소	4년 이내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4년 이내	(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2년 이내	
	(3) 수차 · 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 · 발전기 계통	4년 이내	
	(5) 태양광 · 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6) 연료전지 · 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 · 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	1년 이내	

	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3년마다 2개월 전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4년 이내	

비 고: 1.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12. 20.>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4년 이내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2년 이내	
	(3) 수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발전기계통(토목 기초를 포함한다)	3년 이내	
	(5) 태양광설비		
	(가) 태양광·전기설비계통	4년 이내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 지역(「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척지였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으로 등록된 지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	2년 이내	

	물 (6) 연료전지 · 전기설비 계통 (7) 전기저장장치 · 전기설비 계통 (전기저장장치 중 변전소에 설치되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는 제외)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천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나) (가) 외의 설비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 · 변전 및 배전설비 (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 · 변전소 (10) 무정전전원장치 · 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나) (가) 외의 설비.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 · 나트륨계 배터리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4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보일	4년 이내 2년 이내	(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

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수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5)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8) 무정전전원장치·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나트륨계 배터리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2년 이내	
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	2년마다 2개월 전후	

	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자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3년마다 2개월 전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4년 이내	

비 고: 1.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 21.>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

점검 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ㅇ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일 것
인입구 배선 및 옥내·옥외·건물쪽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맨눈)으로 점검할 것 ㅇ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및 전선 상별 색상 ㅇ전선의 접속 상태 ㅇ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ㅇ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ㅇ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ㅇ열화 및 손상 여부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ㅇ개폐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ㅇ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ㅇ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ㅇ개폐기의 결선 상태 ㅇ다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 적정 여부 ㅇ전선용량 및 허용전류 적정 여부
접지	ㅇ접지저항은 기술기준에 정한 기준 값 이하일 것 ㅇ접지극,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적정 여부 ㅇ시공방법 적정여부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비 고: 점검기관은 절연저항(누설전류) 등 점검 항목에 대해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기능을 갖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기 준
A(우수)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할 것
B(양호)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일 것
C(주의)	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危害)요소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상태일 것
D(경고)	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 기능성 향상을 위해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일 것
E(위험)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검사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일 것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 안전등급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주기를 다음 표의 안전등급에 따른 해당 주기로 조정할 수 있다.

검사·점검종류 및 주기 / 안전등급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점검		
	2년주기	3년주기	4년주기	1년주기	2년주기	3년주기
A(우수)	3년	4년	5년	2년	3년	4년
B(양호)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C(주의)						
D(경고)	1년	2년	3년	1년	1년	2년
E(위험)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2. 위 표에서 우수, 양호, 주의, 경고, 위험은 별표 6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4. 2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2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명, 기계 분야 1명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1명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나. 기계설비(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함)	(1)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	(1)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한다) (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다. 토목설비(수력발전소만 해당함)	(1)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 압력조정용 용기 및 방수로, 그 밖의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1) 모든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	(1)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3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명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2명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비고

1.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한다.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해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보의 경우

나.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발전소: 전기 및 기계 분야(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전기 분야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12. 20.>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

1. 대행 범위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개인대행자: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가 연계되어있는 경우 제2호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의 0.2배를 가산한다. 다만, 전기저장장치 연계에 의해 가산되는 가중치는 가목의 60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전기설비 규모		대행 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점)		점검 횟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저압	용량 50킬로와트 이하	85	60	0.7	1.0	매월 1회 이상
	용량 50킬로와트 초과 100킬로와트 이하	75	46	0.8	1.3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66	40	0.9	1.5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60	35	1.0	1.7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40	23	1.5	2.6	매월 2회 이상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33	20	1.8	3.0	
고압 및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	60	35	1.0	1.7	매월 1회 이상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50	30	1.2	2.0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	46	27	1.3	2.2	

	킬로와트 이하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 킬로와트 이하	30	17	2.0	3.4	매월 2회 이상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500 킬로와트 이하	25	15	2.4	4.0	
	용량 500킬로와트 초과 600 킬로와트 이하	20	12	3.0	5.0	매월 3회 이상
	용량 600킬로와트 초과 700 킬로와트 이하	15	10	4.0	6.0	
특고압	용량 700킬로와트 초과 800 킬로와트 이하	12	8	5.0	7.5	매월 4회 이상
	용량 800킬로와트 초과 900 킬로와트 이하	10	8	6.0	7.5	
	용량 900킬로와트 초과 1,000 킬로와트 이하	8	8	7.5	7.5	
	용량 1,000킬로와트 초과 1,250 킬로와트 이하	6	6	10	10	
	용량 1,250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	5	5	12	12	
	용량 1,500킬로와트 초과 2,000 킬로와트 이하	4	4	15	15	매월 5회 이상
	용량 2,000킬로와트 초과 2,500 킬로와트 이하	3	-	20	-	매월 6회 이상
	용량 2,500킬로와트 초과 3,500 킬로와트 이하	2	-	25	-	
	용량 3,500킬로와트 초과 4,500 킬로와트 미만	2	-	30	-	

비고

1.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한다.
2. 전기설비에 저압, 고압 또는 특고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설비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장 비	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
3. 클램프메타	1
4. 접지저항측정기	1
5. 멀티테스터기	1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1
7. 특고압검전기	1
8. 저압검전기	1
9. 특고압 COS 조작봉	1
10. 고압절연장갑	1
11. 절연장화	1
12. 절연안전모	1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3. 12. 20.>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다. 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내용

가.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다.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실습

라.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마.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바.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사.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차.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요령

카.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 대상자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라.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을 같은 호 나목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3. 12. 20.>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안전시공교육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기술자	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3년마다 1회 이상

2. 교육내용

가. 산업안전 관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다. 사업장 시공관리 및 시공안전관리 실무

라. 전문 공종별 시공안전

마. 전기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바. 신기술·신산업 및 에너지설비 안전시공 방법

사. 신·재생에너지원별 안전시공 요령

아.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시공 요령

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시공 요령

차. 그 밖에 전기안전시공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나.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라. 삭제 <2023. 12. 20.>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 제1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법 제27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마.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3. 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처리 결과(법 제12조, 제20조 및 제52조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의 등록 현황(법 제26조 관련)		

2. 안전공사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검사업무 실시 결과(법 제9조, 제11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결과(법 제12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법 제13조 관련)	별지 제28호서식	
라.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결과(법 제14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3. 전기판매사업자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전기공급 정지 현황(법 제12조제9항 관련)	별지 제29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2항 관련)

○ 전력기술인단체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23조 관련)	별지 제30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2. 4. 22.>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중대한 사고의 종류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1) 전기화재사고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

다)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전기설비사고

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나)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전·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다)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전선로를 말한다)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라)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국가 주요 설비인 상수도·하수도 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

바)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사)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아)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전력계통 운영사고[가목2)가)부터 다)까지의 사고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사고는 제외한다]

2. 통보의 방법

가.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할 것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3) 사고 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6)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나.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2. 1. 21.>

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table>
<tr><th>구분</th><th>지정요건</th></tr>
<tr><td>1. 기술인력</td><td>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1명과 나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과정 중 “전기화재·감전·설비사고조사”에 관한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 기계, 토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td></tr>
<tr><td>2. 장비</td><td>가. 전기화재사고 조사용 장비
<table>
<tr><th colspan="2">계측기</th><th>용도</th></tr>
<tr><td rowspan="3">전자현미경 시스템</td><td>주사전자현미경(SEM)</td><td>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고배율 조직 분석</td></tr>
<tr><td>에너지 분산형 X-선 분석기(EDX)</td><td>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정량 분석</td></tr>
<tr><td>파장 분산형 X-선 분석기(WDX)</td><td>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정성 분석</td></tr>
<tr><td colspan="2">금속현미경</td><td>금속조직 관찰 촬영 및 분석</td></tr>
<tr><td colspan="2">실체현미경</td><td>미소물질의 확대관찰 및 분석</td></tr>
<tr><td colspan="2">동시열분석기</td><td>도전 및 절연재료의 열분석, 흡열·발열반응시차조사 열량 분석</td></tr>
<tr><td colspan="2">적외선분광기</td><td>고체, 액체, 기체 절연재료의 화학적 표면 내부·외부 구조 분석</td></tr>
<tr><td colspan="2">연마성형기</td><td>현미경 관찰을 위한 성형작업</td></tr>
<tr><td colspan="2">전류공급기</td><td>전선 및 배선기구류에 대전류를 통전(通電)시켜 발열, 발화시험</td></tr>
</table></td></tr>
</table>

전기로	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 등의 온도상승 시험
기록계	전압, 전류, 온도 등 시험데이터 측정 및 저장
만능재료시험기	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인장강도, 압축 등 실험
항온항습기	온도·습도 조절에 의한 열화시험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 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	파형, 주파수, 전압, 전류 등 측정
산소농도측정기	지하실이나 전력구 등의 산소 농도 측정
초저항측정기	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다기능계측기	절연·접지저항 등 측정
클램프미터	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나. 감전사고 조사용 장비

계측기	용도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전기설비의 비접촉식 발열온도 측정
특고압검전기	전기의 통전 여부 확인
접지저항측정기	접지극의 접지저항 측정
산소농도측정기	지하실이나 전력구 등의 산소 농도 측정
초저항측정기	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다기능계측기	절연·접지저항 등 측정
클램프미터	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다. 전기설비사고 조사용 장비

계측기	용도
금속현미경	금속조직 관찰 촬영 및 분석
저압회로망분석기	저압회로의 고장회로 파악 및 분석
정밀전력분석계	전압, 전류, 전력 및 고조파 등 측정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전력기기의 접촉상태, 전선 및 배선기구류의 열화시험 시 온도 측정
AC절연진단장비	전력기기의 유전정접(tanδ) 측정
초음파음향진단장비	전력기기 내부 부분방전을 검출·분석하여 이상현상 측정
절연유가스분석기	변압기 등 유입기기의 절연유의 가스성분을 분석하여 이상 열화현상 분석
활선수트리진단장비	전력용 케이블의 절연열화상태 측정
SF6가스분석기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SF6가스를 검출하여 내부 이상현상을 판별
변압기권선비측정기	변압기, 계기용 변성기 등의 권선비와 여자

	전류와 위상각 측정
초저항측정기	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초음파두께측정기	초음파를 이용한 용기·관 등의 두께 측정
초음파탐상시험기	용기, 관 등의 초음파 탐상으로 용접부 결함 판정
다기능계측기	절연·접지저항 등 측정
클램프미터	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

1.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항목	금액
가. 인건비	○ 검사·전기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나. 재료비	○ 검사·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차량 구입 비용과 이를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소모성 재료, 수리·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다. 감가상각비	○ 계측장비 및 차량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산출된 비용
라. 경상비	○ 검사·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인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의류비, 일반 소모품비 등의 비용
마. 그 밖의 항목	○ 그 밖에 검사·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교육훈련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정경비 등을 말하며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및 기술인력 변경등록의 수수료

항목	금액
가. 인건비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나. 경상비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으로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전산 및 일반소모품비 등의 비용

3.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비

항목	금액
가. 교육교재비	○ 교육교재 및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쇄물 비용
나. 강의료	○ 교육과정별 강사기준에 따른 강의료
다. 교육개발비	○ 교육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교육원고 집필 및 감수비 ○ 영상교육교재 제작비
라. 홍보·인쇄비	○ 교육을 위한 안내공문 인쇄·발송 및 홍보 비용
마. 시설유지비	○ 교육시설의 유지비, 영상장비 수리 및 교환 등에 드는 비용 및 장비·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료·수도료 등의 비용
바. 인건비	○ 교육개발·실시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사. 그 밖의 항목	○ 교육강사 및 집행자의 출장 여비 ○ 교육교재 및 기자재 운반비, 교육생 음료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

위반내용	관련 조문	처분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업무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의 정도, 수탁사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획 [ ] 인가 / [ ] 변경인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공사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기술시방서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인 가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첨부요령

1.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사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기술시방서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1부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접수 처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첨부 요령

1.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지 사 귀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첨부서류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4. 22.>

사용전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시공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주소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	
전 기 설 비 개 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검사희망연월일	년 월 일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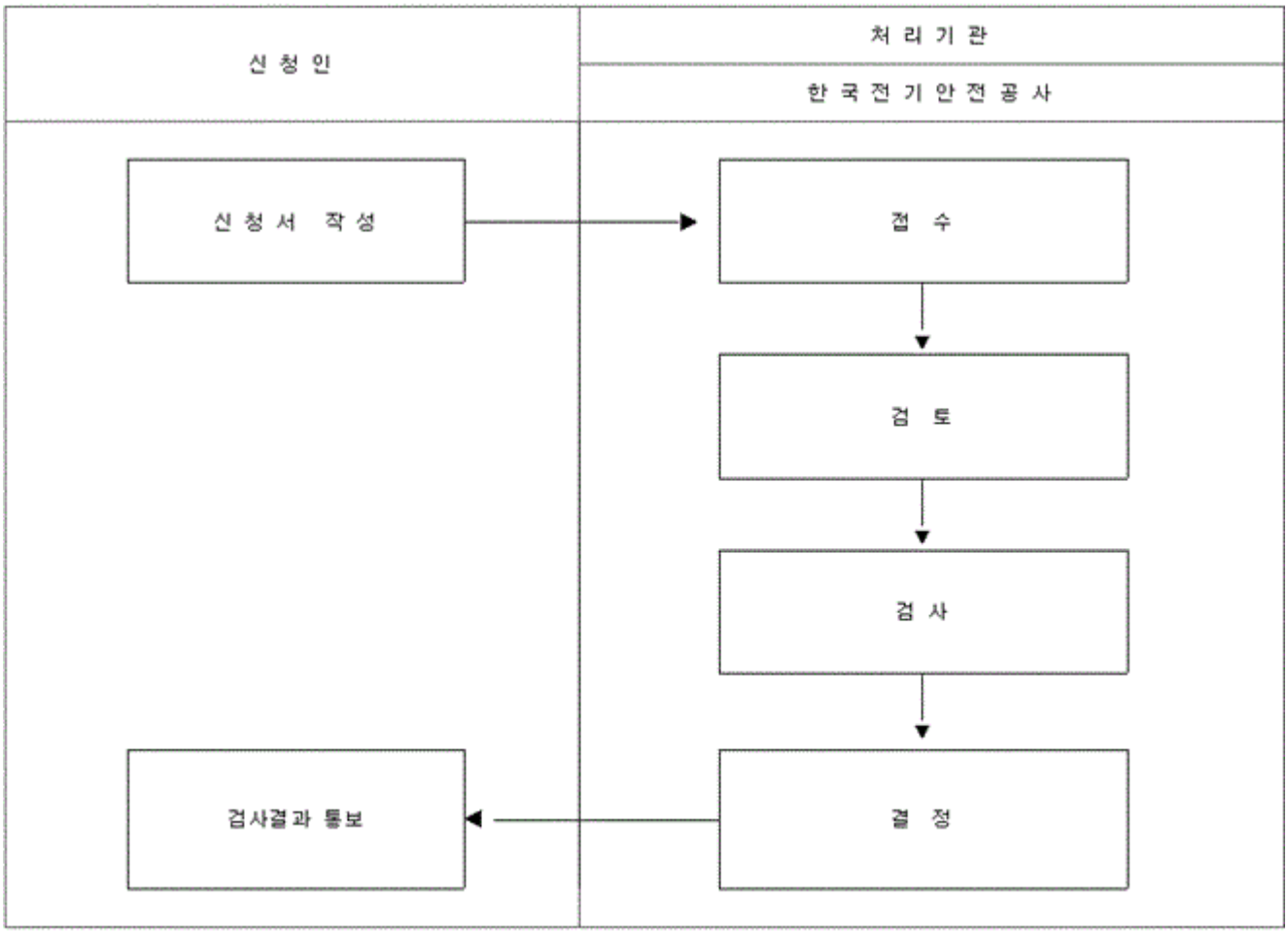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검사확인증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검사결과	검사전기설비		
	검사연월일		
	검사자	소속	성명 ㊞
	판 정	(다음 검사:　　년　　월)	
임시사용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기 타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검사신청인 귀하

작성방법

1. 판정은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등으로 적습니다.
2. 임시사용란은 판정이 임시사용인 경우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4. 22.>

정기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기설비 설치장소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
전기설비 개요
검사희망 연월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위와 같이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2.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검사	→	결정	→	검사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4. 19.>

사용전점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시공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점검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 개요

점검희망 연월일

년 월 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점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전압 및 용량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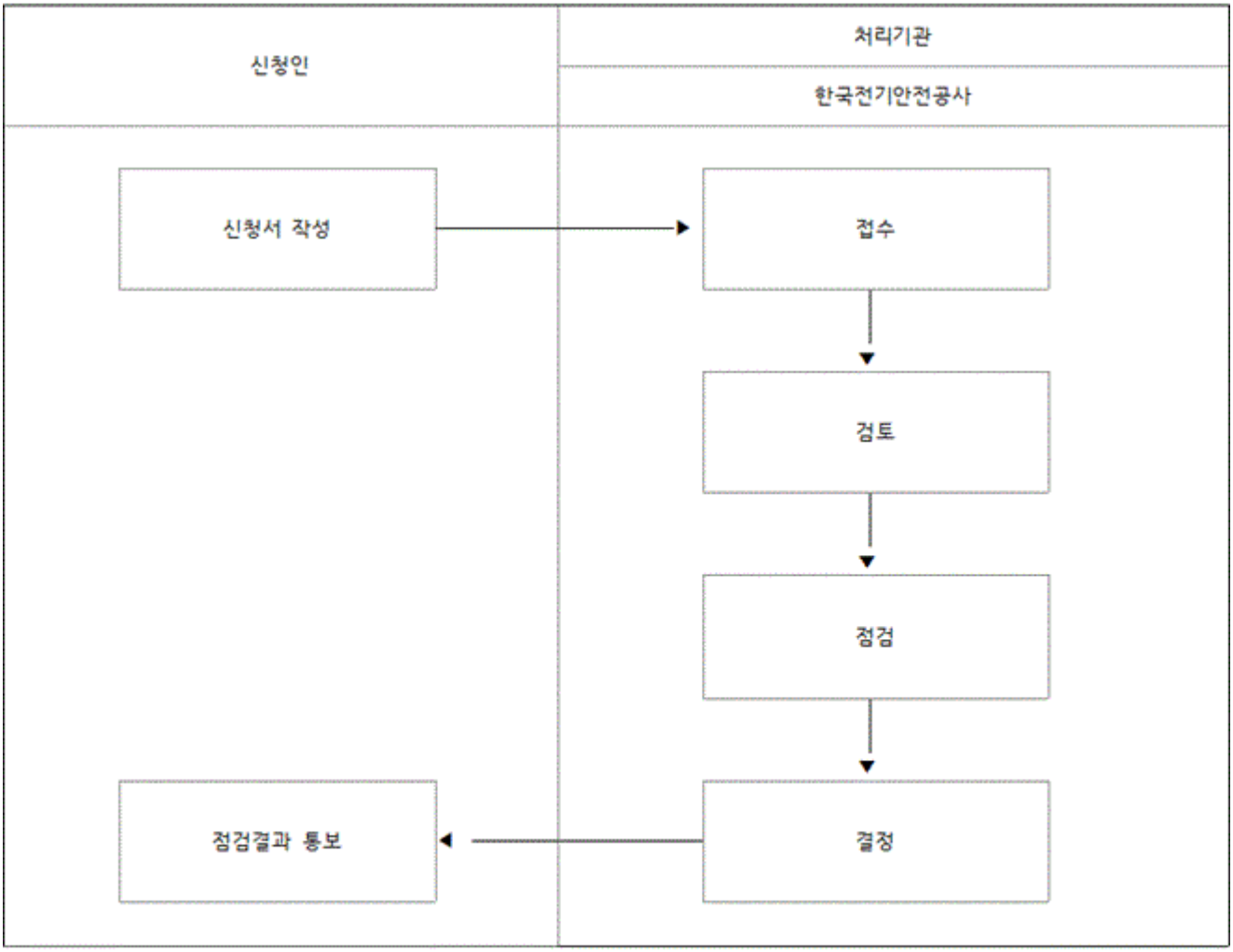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4. 19.>

사용전점검 확인증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점검결과	점검 전기설비		
	점검 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
	판정	적합	

기 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점검 신청인 귀하

210mm× 297mm[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시공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점검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 개요

점검희망 연월일

년 월 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점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류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1부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전압 및 용량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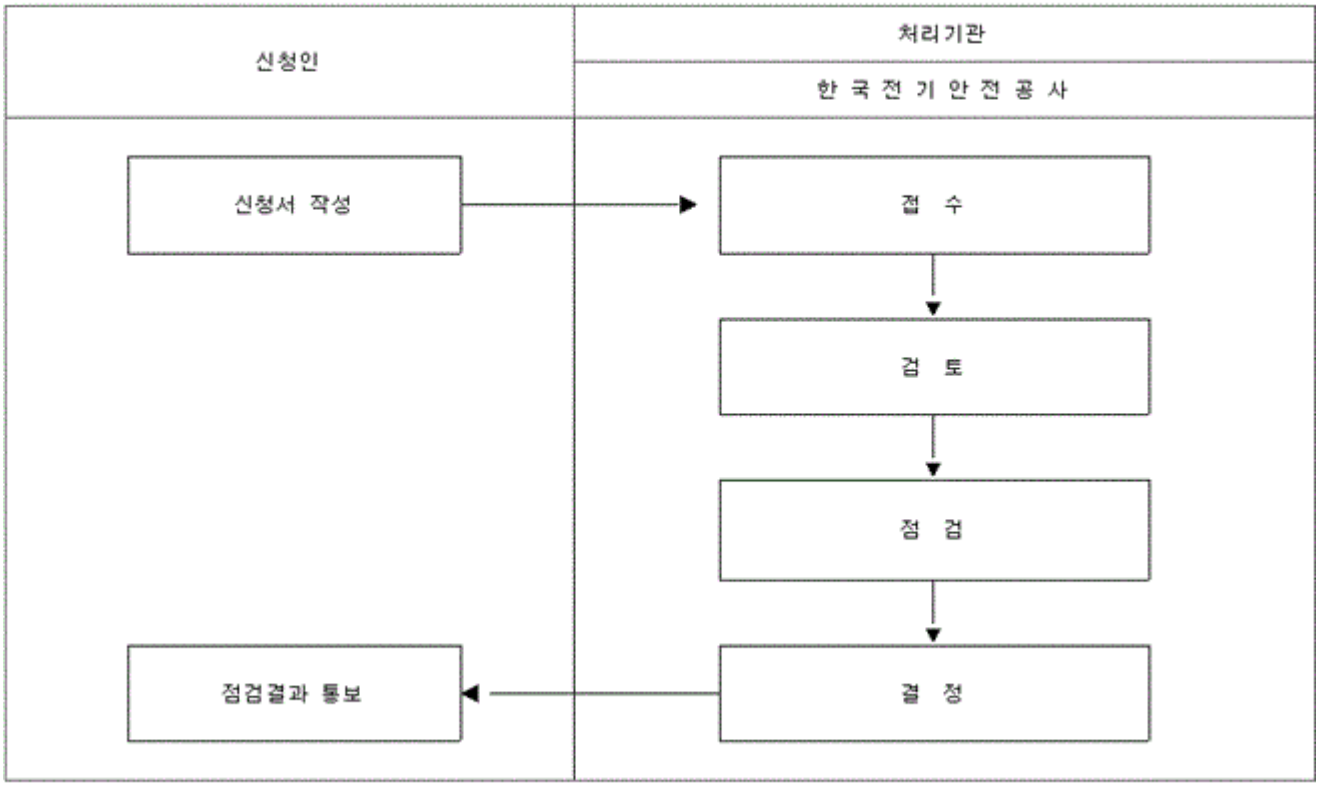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점검결과	점검전기설비		
	점검 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
	판정	적합	

기타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점검신청인 귀하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조치명령서

제 호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치명령 대상	대상	
	위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구분	
조치명령 구분	사유	
	내용	
	방법	
	기간	

「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

안전조치 이행의무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안전조치를 이행한 시설명·지역명 또는 위치	
안전조치 이행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전기설비	전기설비 종류	
	설비규모	
	안전등급	

변경신청 사유

「전기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	결정 및 통보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지정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설비	수전설비	용량 ㎾	전압 V
	발전설비	상용 ㎾	전압 V
		비상용 ㎾	전압 V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책	기술자격사항	근무연수	비 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정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21.>

전기안전관리자 [ ] 선임 [ ]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①업체코드			
신고인	(상주) [ ] 전기사업자 [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주소	
		⑤ 대표자 성명	⑥ 전화번호
	(위탁사업자) [ ] 전기안전관리전문 [ ] 시설물관리전문	⑦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회사명 또는 상호
		⑨ 주소	
		⑩ 대표자 성명	⑪ 전화번호

전기설비	⑫ 설치장소의 주소			
	⑬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⑭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	전 압 V
			연료전지 ㎾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⑮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안전관리자	⑯ 선임·해임 구분	⑰ 성명	⑱ 주민등록번호	⑲ 휴대전화 번호	⑳ 기술자격사항	㉑ 선임·해임일	㉒구 분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210㎜×297㎜[백상지(80g/㎡)]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전확보 등	해임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부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내역(필수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산업통상자원부와 권한이 위임·위탁된 기관 및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전확보 등	성명, 휴대전화번호	해임 시까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후에도 전기설비 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부동의

전기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선임신고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만 첨부합니다) 1부 2.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⑥란까지 적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⑪란까지 적습니다.
2. ②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번호를 적고,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⑲란은 심야전력,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 용도란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
5. ㉒란은 분야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2. 21.>

전기안전관리자 [ ]선임 [ ]해임 신고서

([ ]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① 업체코드				
신고인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주소			
	⑤ 대표자 성명		⑥ 전화번호	
전기설비	⑦ 설치장소의 주소			
	⑧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⑨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태양에너지	kW	전 압 V
		연료전지	kW	전 압 V
		전기저장장치	kWh	전 압 V
		기타( )	kW	전 압 V
	⑩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⑪ 등록번호			⑫ 대표자 휴대전화번호(업무용)
	⑬ 회사명 또는 상호			⑭ 대표자성명
	⑮ 주소			⑯ 선·해임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첨부서류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기안전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전확보 등	해임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부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내역(필수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산업통상자원부와 권한이 위임·위탁된 기관 및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안전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전확보 등	성명, 휴대전화번호	해임 시까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후에도 전기설비 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부동의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②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⑩란은 심야전력,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 용도난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전력기술인단체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 자료 전산입력·관리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소재지:	

기술인력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격사항	등록번호(등록일)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수전설비		발전설비		선임·해임(변경) 연월일	가중치	가중치 누계	구 분
			전압(v)	용량(㎾)	전압(v)	용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작성방법

구분란에 선임 시에는 "선임", 해임 시에는 "해임"을, 기술인력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기술인력의 성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 작성	→	접 수	→	자료 전산입력·관리
통보인		전력기술인단체		전력기술인단체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4. 22.>

전기안전관리자 [ ]선임신고 [ ]해임신고 [ ]변경신고 증명서

[[ ]상주 [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업체코드					
(변경) 신고인	(상주) [ ] 전기사용자 [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위탁사업자) [ ] 전기안전관리전문 [ ] 시설물관리전문	업등록번호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kW	전 압	V
			연료전지	kW	전 압	V
			전기저장장치	kWh	전 압	V
			기 타	kW	전 압	V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격사항	선·해임일	구 분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제35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 ]선임신고 [ ]해임신고 [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장 직인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4. 22.>

[ ] 선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 [ ] 해임신고 증명서
[ ] 변경신고

([ ]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업체코드		
신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태양에너지	kW	전 압 V
		연료전지	kW	전 압 V
		전기저장장치	kWh	전 압 V
		기타( )	kW	전 압 V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선·해임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 ]선임신고 [ ]해임신고 [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장 직인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4. 2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업체코드		
신고인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 전기사업자 [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kW, V	kW, V	
	발전설비	상 용		kW, V	kW, V	
		비 상 용		kW, V	kW, V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kW, V	kW, V	
			연료전지	kW, V	kW, V	
			전기저장장치	kWh, V	kWh, V	
			기타( )	kW, V	kW, V	
	휴지설비			kW, V	kW, V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4. 22.>

제　　호

전기안전교육 수료증

1. 성 명:　　(생년월일:　　.　.　.)

2. 소 속:

3. 교육과정:

4.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 상지(15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 ]등록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기술인력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로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전력기술인단체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다.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증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사업구역			
영업소 또는 출장소	명 칭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에 따라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12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활동사항	기간
	내용
신청비용	금액
	산출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3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첨부서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적은 서류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 신: 인

제 목: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보고(년도)

1.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점검 결과 조치사항

부적합 건수	개선명령 건수				
	이행	미이행			계
		단전 요청	과태료 부과	기 타	

2.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조치사항

구분	불합격 건수	적합명령 건수				계
		이행	미 이 행			
			사용정지 또는 제한조치	벌금부과 요청	기타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3.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 등록 현황

구 분	등록 건수	변경등록 건수	비 고
대 행 사 업 자			
개 인 대 행 자			

※ 기재요령

1. 부적합 건수 및 불합격 건수는 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건수를 적습니다.
2. 기타란에는 그 건수 및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210㎜ × 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한국전기안전공사

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 신: 인

제 목: 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년도)

1. 자가용전기설비

구분		용 량 별(kW)										전 압 별		
		저 압		고압·특고압							계	저압	50kV 미만	50kV 이상
		75 미만	75 이상	300 미만	500 미만	1,000 미만	5,000 미만	5,000 미만	10,000 미만	10,000 이상				
사용전 검사	합격													
	불합격													
	계													
정기검사	합격													
	불합격													
	미수검													
	계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구분		발전소								변전 설비	송전 설비	배전 설비
		수력 설비	기력 설비	가스터빈설비	복합화력설비	내연력 설비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기타			
사용전 검사	합격											
	불합격											
	계											
정기검사	합격											
	불합격											
	미수검											
	계											

210㎜ × 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한국전기안전공사

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 신: 인

제 목: 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의 점검 결과보고(년도)

1. 일반용전기설비

구분 \ 시·도																		계
사용전점검	적 합																	
	부적합(재점검)	적합																
		부적합																
정기 점검	적 합																	
	부적합(재점검)	적합																
		부적합																
	미점검	거부																
		부재																
	개선명령발부																	
	미개수수용가																	

2.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

구분 \ 시·도																		계
공동 주택	적 합																	
	부적합(재점검)	적합																
		부적합																
	미점검	거부																
		부재																
	개선명령발부																	
	미개수수용가																	
전통 시장	적 합																	
	부적합(재점검)	적합																
		부적합																
	미점검	거부																
		부재																
	개선명령발부																	
	미개수수용가																	

210㎜ × 297㎜ [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한국전기안전공사

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 신: 인

제 목: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점점검 결과보고(년도)

시 설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계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제공업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재						
공연장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종합병원						
호텔						
카지노						
국제회의장						
기타						
소 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4. 19.>

(전기판매사업자명)

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 신: ㊞

제 목: 전기공급 정지 현황(년도)

시·군·구 구분																	계
전기공급 정지요청을 받은 건수																	
전기공급 정지 건수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전력기술인단체명

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시·도지사** 발 신: 인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년도)

구분			대상 사업장	선임	미선임
상주	자체 선임				
	위탁관리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대행관리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안전공사			
계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호수 현황

회사명 또는 상호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기설비		주소 또는 소재지	미선임 기간
			수전 설비	발전 설비		

※ 기재요령: ( ) 안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수를 적습니다.

210㎜ × 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고종류	[ ] 감전사고 [ ] 전기설비사고 [ ] 기타( )		
발 생 일	년 월 일(요일) 시 분 날씨		
발생구분	[ ] 전기설비의 사용 중 [ ] 공사 중 [ ] 정지 [ ] 이동 [ ] 기타( )		
발생장소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전압, 용량)	V, kW	전기안전관리자 직책 및 성명	
피해현황	인명피해 사망 명, 부상 명		
	재산피해 천원		
특기사항	보험가입 유무 [ ] 가입 [ ] 미가입		
	보험가입 금액 억원		
사고발생개요 및 내용			
조치사항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한 전기사고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80g/㎡)]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7. 27.] [고시 제2022 - 128호, 2022. 7. 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 - 203 - 399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ㆍ대체ㆍ개조ㆍ증설ㆍ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란 각각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ㆍ점검 및 수리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ㆍ가동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ㆍ측정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구 분		주 기						기록서식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중	감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별지 제1호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변압기 점검		-	-	-	-	-	-	별지 제4호
- 절연저항		-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별지 제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별지 제7호
전원품질분석		-	-	-	○	-	-	별지 제8호

[비고] ○ : 필수, △ : 필요시

1.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
2.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월차 점검시 별지 제9호 14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량별 점검횟수 및 간격

용 량 별		점검횟수	점검 간격
저압	1~300㎾이하	월1회	20일 이상
	300㎾초과	월2회	10일 이상
고압 이상	1~300㎾이하	월1회	20일 이상
	300㎾초과~500㎾이하	월2회	10일 이상
	500㎾초과~700㎾이하	월3회	7일 이상
	700㎾초과~1,500㎾ 이하	월4회	5일 이상
	1,500㎾초과~2,000㎾이하	월5회	4일 이상
	2,000㎾초과~	월6회	3일 이상

[비고]

1.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설비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점검간격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부적합 판정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 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안에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 검사자와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계측장비 등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

구 분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계측장비 교정	계전기 시험기	1
	절연내력 시험기	1
	절연유 내압 시험기	1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전원품질분석기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1
	회로시험기	1
	접지저항 측정기	1
	클램프미터	1
안전장구 시험	특고압 COS 조작봉	1
	저압검전기	1
	고압·특고압 검전기	1
	고압절연장갑	1
	절연장화	1
	절연안전모	1

제10조(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
2.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
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
5.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
6.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공사에 사용된 모든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되었는지의 여부
3.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 실시

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제12조(공사계획 서류 검토)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ㆍ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을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 여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감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중지 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재발방지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밝혀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자세히 알고 그 사용범위를 넘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그 밖의 고압 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소유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2.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제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제19조(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해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사고 대처요령)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나. 피재자의 의식、호흡、맥박、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전기설비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하여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제21조(중대사고보고) 소유자 등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구 분		사고규모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별표16)
사고구분	전기화재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부상 2명 이상 · 재산피해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인 사고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감전사고	· 사망 1명 이상 / 부상 1명 이상
	설비사고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 - 16호,2016. 1.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 - 226호,2018. 12. 1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 - 105호,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 - 221호,2021. 12. 22.>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 - 128호,2022. 7.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설비명(상호) :

결재			

1. 기본사항

수전전압/용량	V/ kW	발전전압/용량	V/ kW	태양광	kW
점검일자		점검종별		점검횟수	

2. 점검내역

저압설비	판정	설비현황 증	설비현황 감	부적합수량	개수 수량	개수 구분	특고압설비	판정	설비현황 증	설비현황 감	부적합수량	개수 수량	개수 구분	구분		전압(V)	전류(A)	누설전류(mA)
인입구배선							가공전선로							측정개소 :	A			
배·분전반							지중전선로								B			
배선용차단기							수배전용개폐기								C			
누전차단기							배선(모선)								N			
개폐기							피뢰기							측정개소 :	A			
배선							변성기								B			
전동기							전력퓨즈								C			
전열설비							변압기								N			
용접기							수·배전반							측정개소 :	A			
커패시터							계전기류								B			
조명설비							차단기류								C			
구내전선로							전력용콘덴서								N			
기타설비							보호설비							역률(%)	○주간:	○심야:		
발전설비 발전기							부하설비							유효전력량(kWh)				
발전설비 차단장치							접지시설							무효전력량(kvarh)				
발전설비 측정장치							기타설비							최대전력(kW)		배율		

※ 점검결과의 판정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3. 종합의견

※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점검확인자		㊞
	점검담당자		㊞

[별지 제2호 서식]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분기 · 반기 · 연차)

□ 절연저항 · 누설전류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년 월 일

점검대상	사용전압(V)	기준치	□ 절연저항(MΩ) □ 누설전류(mA)		비고	점검대상	사용전압(V)	기준치	□ 절연저항(MΩ) □ 누설전류(mA)		비고
			측정치	결 과					측정치	결 과	

[비고] 1. 절연저항 : SELV(비접지회로) 및 PELV(1차와 2차가 절연된 접지회로) - 0.5MΩ, FELV(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는 접지회로 - 1MΩ) 적용

다만, 2020.12.31.이전의 전기설비는 대지전압 150V 이하-0.1MΩ, 300V 이하 - 0.2MΩ, 400V 미만-0.3MΩ, 400V 이상-0.4MΩ 적용

2. 저항성 누설전류 : 1mA 이하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년 월 일

측정대상	사용전압(V)	기준치(Ω)	측정치(Ω)	결과	비고	측정대상	사용전압(V)	기준치(Ω)	측정치(Ω)	결과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년 월 일

측정회로 및 기기	전선-대지 (MΩ)	전 선 상 호 간 [MΩ]			결 과	비 고
		A-B	B-C	C-A		
전선로						
고압모선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년 월 일

설 비 명 칭	접 지 선 종류및굵기	기 준 치 [Ω]	측 정 치 [Ω]	결 과	비 고
개 폐 기					
피 뢰 기					
MOF 외 함					
변 압 기 외 함					
차 단 기 외 함					
친구및가공지선					
제 2 종 접 지					
보 호 울 타 리					

□ 절연내력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년 월 일

시험항목 \ 시험전압(kV)									
	누 설 전 류(㎂)								
	절 연 저 항(MΩ)								
	누 설 전 류(㎂)								
	절 연 저 항(MΩ)								
	누 설 전 류(㎂)								
	절 연 저 항(MΩ)								

[별지 제4호 서식]

변압기 점검기록표

□ 변압기 점검기록표

점검자 : (서명) 년 월 일

상수 및 용량	전 압 (kV/V)	제작 회사	제작 번호	외부 점검 양부	절연저항(MΩ)			※내 부 점 검				결과	비 고 (설치장소)
					1차 대지	2차 대지	1차 2차	OT 내압시험	OT 산가도	유량	탭위치		
Φ kVA	/												
Φ kVA	/												
Φ kVA	/												
Φ kVA	/												
Φ kVA	/												
Φ kVA	/												
Φ kVA	/												

[비고] 1. ※표 항목은 필요시에 실시함.

2. 결과란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시험자 : (서명) 년 월 일

계전기	계전기명								
	설치장소								
	계전기번호								
	제작회사명								
	제작년도								
	형식								
	정정탭	1차측							
		2차측							
		3차측							
	정정레바(비율탭)								
	CT/VT 비율	CT	1차측						
			2차측						
			3차측						
		VT							
	결합차단기명								
	자체시험	최소동작치							
		위상특성(mA)	lead.						
			lag.						
		비율특성(억제/동작)							
		시한특성 (%/sec)							
	연동시험 (%/sec)								
	결과								

차단기	설치장소		차단기명	차단용량	정격전압 전류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작년도	용도
	1								
	2								
			붓싱파손 및 손상		동작상태	유위(油位)	절연유내압 및 산가		결과
	1						kV mgKOH/g		
	2						kV mgKOH/g		

종합의견	※ 검사(점검)전에 고객설비의 정정치 및 트립, LOCK 등을 확인 기록

[비고] 1. SGR, DGR의 최소동작시험은 Φ/mA로 표기

2. 결과란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으로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점검자 : (서명) 년 월 일

구 분	원 동 기	발 전 기	
형 식			
정 격 용 량			
정 격 회전수	rpm		rpm
제 작 회 사			
제 작 번 호			
제 작 년 월	년 월		년 월
냉 각 방 식		정 격 전 압	V
기 동 방 식		정 격 전 류	A
차 단 기 명		역 률	%

발전기 부하용량 현황			
정전시 부하용량	kW	화재시 부하용량	kW

점 검 사 항		결과	점 검 사 항		결과
비상정지장치시험			조속장치	◦ 이상음 ◦ 누유	
부하운전시험			상용전원측과 접속상태 적정 여부		
부하차단시험			배·분전반 및 보호시설의 적정 여부		
연료유계통	◦ 누유 ◦ 저장조 ◦ 밸브류 ◦ 연료유 보급 차단장치		접지선 설치상태 및 탈락 여부		
윤활유계통	◦ 누유 ◦ 유압 및 유온 ◦ 탱크 ◦ 유 청정기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적정 여부		
냉각수계통	◦ 누수 ◦ 냉각수펌프 ◦ 수온 ◦ 유량 조절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 상태		
축 수	◦ 진동 ◦ 유량 ◦ 온도 ◦ 이상음 및 냄새		계측장치 설치 상태		

측 정 사 항						
절연 및 접지	절연저항	MΩ		접지저항(중성점/외함)	Ω/ Ω	
축전지 측정	전 압	V		비 중		
발전기 운전	출력전압	V	부하전류	A	운전시간(h/m)	
기타사항						

[비고] 1. 내연력발전설비의 비상정지장치시험은 500kW 초과만 실시

2. 절연저항은"발전기코일-대지"간을 측정한다.

3. 결과란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4. 정전시 부하용량은 "한전 전원공급 중단 시 비상발전기에 소요되는 부하용량"을 표기하며, 화재시 부하용량은 "정전 시 부하용량과 소방용 부하용량의 합"을 표기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분기 · 반기 · 연차)

측정자 : (서명) 년 월 일

측정대상		사용전압		측정조건	

1. 판정기준(3상 비교법)

구 분 / 판정요소	정 상	요주의	이 상	비 고
온도차	5℃ 이하	5℃ 초과 ~ 10℃	10℃ 이상	

※ 온도차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임.

2. 부위별 측정온도

측정부위	Point 1	Point 2	Point 3	온도차
온도측정				

3. 측정부위의 Thermographic

실화상	열화상
측정부위	측정부위 온도분포

4. 종합의견

[별지 제8호 서식]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년 월 일

구 분	최대전력 (kW)	역률 (PF)	전 압		전 류			결 과
			전압(kV)	고조파 함유율(%)	전류 (A)	불평형률(%)	고조파 함유율(%)	

[종합의견]

구 분		기 준	판 정
전원품질 분석	전류불평형[%]	30% 이하	적 합
		30% 초과	요주의
	역 률	90% 이상	적 합
		90% 미만	요주의
	전 력	설비용량기준 이하	적 합
		설비용량기준 초과	요주의

[비고] 전압전류에 함유된 고조파함유율 측정은 필요시 측정

[별지 제9호 서식]

태양광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일기 :) 년 월 일

점검자	(소 속) / (성 명) (서명)		
설비명		발전설비 전압/용량	[V] / [kW]

태양전지			전력변환장치		
	형 식			형 식	
	최대전력용량	[kW]		정격용량	[kW]
	최대동작전압	[V]		입력전압범위	~ [V]
	최대동작전류	[A]		출력전압	[V]

NO	항 목	소분류	점검 사항	점검 결과
1	태양전지	출력	일사량 대비 안정적 출력(월간 발전량 등) 확인	
		외관	변색(황변, 백화, Glass, Back sheet 등), 변형 여부 확인 적외선열화상 측정시 핫스팟 등 열화현상 확인 프레임 부식, 손상(파손) 확인	
		음영	태양전지 어레이 설치장소의 주변으로 인한 음영 발생 확인	
		접속함	외함의 부식 및 손상, 접속점 및 부속품 발열 등 확인	
2	지지물	설치상태	지지물이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	
		도금상태	용융아연도금 상태, 절단면 또는 용접부분 등 녹 방지 유지 등 확인	
		기초상태	기초부위, 지지대 등의 결속 및 정착상태 이상여부 확인	
		볼트 체결상태	용융아연도금 이상의 재질의 볼트 너트사용과 녹발생, 볼트체결 상태 등 이상 여부(스프링 등 풀림방지와셔 사용)	
		본딩	태양전지모듈과 지지대의 전기적 접속 상태 이상 여부 확인	
3	전선로	전선연결	스트링별 DC케이블 및 간선기준 접속부 발열 등 이상 여부 확인	
		커넥터	모듈, 출력단자, 파손 등 습기 및 빗물 침투방지 구조 확인	
		고정	모듈 간의 직렬배선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확인	
4	전력변환장치 및 보호장치	외관	외함 손상, 도금상태 등 변형 여부 확인	
		작동상태	소음, 진동, 냄새 등과 같이 평소와 다른 **현상** 발생 확인	
		전선로	배선의 손상, 접속단자(AC, DC) 체결, 관통부분 마감처리 확인	
		설치환경	제조사가 제시한 설치환경(온도, 습도, 청소상태) 준수 여부 확인	
		보호값 설정	저주파수 설정 등 인버터 전체 보호요소 및 계전기 설정치 적정 여부	
5	주변환경	부지안전	배수시설 맨홀 및 배수로 정비상태 확인	
			지지대 또는 지반의 침하가 없으며, 지지대-지반의 고정상태 확인	
			부지 내 지반 침하, 토사유출 등 현상의 흔적 유무	
			축대의 균열, 누수 등 자연재해 대비 이상 여부 확인	
		구조물 등	지붕과 기초, 구조물은 헐거움 없이 **고정되었는지 확인**	
			별도의 추가 하중 적재 등 위험물 설치 여부 등 확인	
6	기타	측정값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기술기준	기타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적합 여부	
7	종합의견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10호 서식]

전기저장장치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 (일기 :) 년 월 일

점검자	(소 속) / (성 명) (서명)		
구 분	배 터 리	구 분	전력변환장치
형식/배터리종류	/	형 식	
최대전력용량	[kWh]	정 격 용 량	[kW]
배터리 구성	(셀) ×(팩) ×(랙)	입력전압범위	DC - [V]
최대동작전압	[V]	출 력 전 압	[V]
최대동작전류	[A]	제 작 회 사	
제 작 회 사		제 작 번 호	
제 작 년 월	년 월	제 작 년 월	년 월

NO	항목	확인 사항	점검 결과	비 고
1	일반사항 점검	ESS의 충전부분의 노출 여부 확인		
		전선 및 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확인		
		ESS 시설 장소의 온도 적정성 여부 확인		23±5℃
		폭발성 가스 축적 여부 및 환기시설 작동 여부 확인		
		ESS 관련시설 분진, 먼지 등 관리상태 확인		사무실 수준 이상
		가연성 물질이 근처에 있거나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소방설비 상태 확인		
2	배터리 점검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점검 • 배터리 집합체의 출력단자 전압, 전류, 전력 • 배터리 균등화 및 과충전, 과방전 기능 여부		
		배터리 파손 및 액 누출 여부 등 외관 점검 확인		
		배터리 단자의 접속 상태 확인		
		배터리 회로 개방 후 전로와 대지 간 절연저항 측정		
		금속제 외함 및 ESS의 지지대 접지저항 측정		
		배터리 지지물의 부식 여부 확인		
		적재 하중 또는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지 확인		
		배터리 침수 우려가 있는지 확인		
		ESS에 이물질 및 수분이 침투되었는지 확인		
3	전력변환 장치 점검	PCS 상태 등 외관 이상 유무(온도, 습도, 먼지, 부식 등)		제조사 권장기준
		PCS 통풍구, 환기필터 상태 확인		
		배전반(보호 및 제어)의 계기, 경보장치 이상 유무 확인		
		금속제 외함 접지저항 측정		
		입출력 개폐기 개방 후 전로와 대지 간 절연저항 측정		
		비상스위치 동작상태 확인		
4	충전율 (SOC)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율 상한 80% 이하 확인		ESS충전지침 ('20.2.28)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율 상한 90% 이하 제한 확인		
5	종합 의견			

[비고] 점검결과는 O(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11호 서식]

풍력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 (날씨 : 습도: 풍향:) 년 월 일

점검자	(소 속) / (성 명) (서명)		
구 분	풍차설비	구 분	발전설비
형 식		형 식	
정 격 용 량	[kW]	정 격 용 량	[kW]
제 작 회 사		제 작 회 사	
제 작 번 호		제 작 번 호	
제 작 년 월		제 작 년 월	
풍차날개수/직경	개 / m	극수 / 역률	극 / %
		정격전압 / 전류	V / A
풍향 조건 (사동/정격/정지)	/ / [m/s]	절연저항	[MΩ]
		접지저항	[Ω]

NO	항목	확인 사항	점검 결과	비 고
1	풍 차	풍력터빈의 자동정지장치 동작 상태 확인		
		풍력터빈 운전상태 계측장치 확인(회전계, 진동계, 풍속계 등)		
		풍력설비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상태 확인		
		기어박스 윤활유 및 유압장치 작동유 누유여부 확인		
2	발전기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상태 확인		
		부하운전상태 및 계측장치 확인(전압, 전류 등)		
		운전 시 이상 소음 발생 여부 확인		
3	전력변환장치 및 보호장치	외관 손상, 도금상태 등 변형여부 확인		
		배선의 손상, 접속단자 체결 등 마감처리 상태 확인		
		설치환경(온도, 습도, 청소상태) 확인		
		보호계전기 설정값의 적정 여부 및 계전기 연동상태 확인		
		기타 보호장치가 인터록 도면대로 동작상태 여부 확인		
4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	인버터 입/출력 운전상태 확인		
		전력조절장치, 인버터, 정류기 등 경보상태 확인		
5	지지물	기초부지, 지지대 등의 결속(정착상태) 및 기초주변의 배수 처리상태		
		지지물의 볼트체결 상태 등 이상여부 확인		
6	기 타	소방설비 상태 확인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값 이상 여부 확인		
		운전 및 유지보수 기록 및 서류보존 상태 적정성 확인		
7	종합 의견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12호 서식]

연료전지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 (일기 :) 년 월 일

점검자	(소 속) / (성 명) (서명)		
구 분	연료전지	구 분	연료전지
형 식(모델명)		정격출력	[kW]
사용가스명		정격전압/주파수	[V] / [Hz]
사용가스 압력범위	~ [kPa]	발전효율/열효율	[%]/ [%]
정격출력 가스소비량	[kW]	계통연계방식	□ 독립형 □ 계통연계형
설치위치	□ 옥내형 □ 옥외형	제 작 회 사	
급배기방식		제 작 번 호	
급배기통 최대길이	[m]	제 작 년 월	

NO	항목	확인 사항	점검 결과	비고
1	일반요건	외관 손상, 도장상태 등 변형여부 확인		
		설비별 누수 여부 확인		
		각 기기별 접지상태 확인		
		기계설비 및 배관 등 누설 상태 확인		
		고온 노출부 단열상태 확인		
2	연료전지	연료전지 시스템의 자동정지장치 동작 상태 확인		
		연료전지 시스템의 운전 계측장치 상태 확인		
		연료전지 시스템의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동작상태 확인		
3	제어 및 보호장치	인버터 입/출력 운전상태 확인		
		전력조절장치, 인버터, 정류기 등 경보상태 확인		
		배선의 손상, 접속단자 체결 등 마감처리 상태 확인		
		보호계전기의 설정치 적정 여부 및 계전기 연동상태 확인		
4	부하운전	부하운전 상태 확인		
5	기 타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값 이상 여부 확인		
		가스누설감지기 경보상태 확인		
		기타 보호장치가 인터록 도면대로 동작상태 여부 확인		
		기타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적합 여부		
6	종합 의견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13호 서식]

수력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일기 :) 년 월 일

점검자	(소 속) / (성 명) (서명)		
설비명		발전설비 전압/용량	[V] / [kW]

NO	항 목	소분류	점검 사항	점검 결과
1	댐(보) 기초	기초	기초의 불안정, 침식 및 침투, 부등침하 발생하였는지 확인	
		양안부	균열, 박리, 박락 및 층분리, 파손 및 손상여부 여부 확인	
			수축 및 수평시공 이음부 등에서 누수 발생여부 확인	
		터널	점검터널에서 종·횡방향 균열 발생, 기초배수의 탁수 여부 확인	
2	댐(보) 제체	댐마루	종·횡방향 균열 및 단차 발생, 수축이음부의 열림 여부 확인	
			침하 및 수평변위, 사면불안정, 제체의 유실 발생여부 확인	
		상류사면	수축이음부의 열림 및 균열, 박락, 누수 등의 발생 여부 확인	
			침하 및 변형, 차수벽 노후화, 사면불안정 및 사면보호 상태 확인	
		하류사면	균열, 단차, 박락, 누수 등의 발생 여부 확인	
			사면의 불안정, 침식, 침하 및 변형 등 발생여부 및 보호상태 확인	
3	여수로	접근수로	콘크리트 라이닝, 불안정한 측벽, 상부의 자연사면 불안정 등 확인	
		조절부	에이프런, 피어와 벽체, 월류부 웨어 구조물의 손상 및 노후화	
			수문 가이드, 수문지수판에서의 공동화 현상 발생여부 확인	
4	도수로	도수로	바닥 슬래브의 부등침하, 단차, 콘크리트 균열 및 손상 등 확인	
			벽체의 손상 및 노후화, 횡방향 이음부의 손상 등 확인	
		감세공	플립버켓의 세굴, 침식, 이음부 손상과 정수지 바닥·측벽 세굴 등을 확인	
5	취수 설비	취수탑	취수탑 파손 및 변위 발생 여부 확인	
			취수량 감소 및 취수 곤란 발생 여부 확인	
		방수로	제진 격자망의 부식 및 변형 손상 여부 확인	
			둑과 사면의 침식 여부 확인	
6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노출, 균열,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파손 및 손상, 백태 등 확인	
7	종합 의견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14호 서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 (일기 :) 년 월 일

점검자	(소 속) / (성 명) (서명)			
확인사항	내 용			
설치장소				
전기설비 전압/용량	[V] / [kW]			
충전시설 설치기수	( ) kW ( )기			
충전시설 설치위치	□옥내 □옥외 □기타 ( )			
충전시설 충전형식	□ DC차데모 □ DC콤보 □ AC3상			
충전시설 충전기 사양	전압/용량			
	제조사		모델명(일련번호)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인입선	전선의 종류, 굵기, 지상고 등 시설 상태 확인		
배·분전반	설치장소, 방수·방습조치, 방청여부, 공간확보 구조의 적정성 확인		
	전원조건, 충전부접촉 방지, 외함 접지 확인		
개폐기 등	전원측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가 시설되었는지 확인		
	전로에 누전차단기 동작 및 상태를 확인		
옥내배선 및 기구 등	전선굵기 적정성, 사용전선, 배선방법, 접속, 전로의 절연, 이격거리 적정성 확인		
	배선기구의 충전부분이 노출되었는지 확인		
	습기 많은 곳, 물기 있는 곳의 저압 배선기구 방습장치 확인		
	저압 배선기구에 전선 접속시 전기적 완전접속 및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지 확인		
충전시설	충전소 설치 주변 배수시설 확인		
	외함의 발청, 누수여부, 고정상태, 차량과 충전기의 충돌 방지 조치 확인		
	충전케이블 손상여부 확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는지 확인		
	충전장치의 철대, 금속제 외함 접지 적정성 확인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시설하였는지, 옥외에 설치시 비, 눈에 대한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을 갖는 것인지 확인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였는지 확인		
	분진이 많은 장소 등에는 충전설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확인 다만, 일반 먼지가 많은 곳은 설치 가능		
	충전장치 시설장소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였는지 확인		
접지 연속성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간의 장치 접지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		
시험 및 측정 절연저항	도전부-대지간의 절연저항 측정		
시험 및 측정 접지저항	충전설비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저항 측정		
종합 의견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_____ 호

_____ 귀하 _____ 년 월 일

귀하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부적합 설비	위험요인	확인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절 연 (누 전)	감 전 화 재 전력손실	주회로 및 각 분기회로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배 선 (규격미달 불량전선)	감 전 합 선 화 재	세대용 계량기 인입선 접촉불량 및 탄화 · 손상		
		전선 노후화, 열화 및 피복 손상이 심한 경우		
		전선보호용 개폐기, 차단기 용량 과다		
배선기구 (기구파손 불량기구)	감 전 합 선 화 재	누전차단기 미설치 또는 동작불량, 열화 및 손상		
		욕실 등에 시설하는 콘센트회로에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소비전력 3kW 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용개폐기 미시설		
		개폐기, 차단기, 배선기구, 접속기, 콘센트 등의 손상		
접 지 (미 접 지 기준치 미달)	감 전	금속제 분전반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전기기계기구(에어컨, 세탁기 등) 접지 미시설		
		옥내 전로에 접지선 미설치		
기타사항				

※ 부적합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전력손실로 인한 전기 요금의 추가부담 등의 원인이 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확인	호	인
	담당자	인

기타 전기관련 규정

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고시
3. 전기설비기술기준
4.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6. 한국전기설비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시행 2011. 12. 15.] [공고 제2011 - 1198호, 2011. 12.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044 - 201 - 4585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은 PDF 파일로 관리되므로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7. 6.] [고시 제2023 - 143호, 2023. 7. 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 - 203 - 39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업무 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이하 ‘ 사업용전기설비 ’ 라 한다)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2. ‘ 자가용전기설비 ’ 란 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3. ‘ 일반용전기설비 ’ 란 법 제2조제8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4. ‘ 전기수용설비 ’ 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5. ‘ 수전설비 ’ 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로, 수전지점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6. ‘ 구내배전설비 ’ 란 수전설비의 배전반부터 전기사용기기까지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7. <삭 제>
8.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풍력、수력、연료전지、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석탄가스화발전、전기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9. ‘ 사업장 ’ 이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을 말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곳을 말하며, 용량이 증설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10. ‘ 기술기준 ’ 이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
11. ‘ 검사기관 ’ 이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부에서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 안전공사 ’ 라 한다)를 말한다.
12. ‘ 검사자 ’ 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 시행규칙 ’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전공사에 소속되어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 점검기관 ’ 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점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안전공사를 말한다.
14. ‘ 점검자 ’ 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공사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5. ‘ 사용전점검 ’ 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한전과 계약한 전기공급계약 용량의 증감 또는 공급 방식 등이 변경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6. ‘ 정기점검 ’ 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6의2. "원격점검장치"란 전기안전 원격점검기능을 갖추고 측정된 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6의3. "원격점검장치통합시험"(이하 "통합시험"이라 한다)이란 원격점검장치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원격점검장치 기능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7. ‘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 란 전기설비의 인입선부터 최하위 분전반까지 그 사이에 있는 개폐기, 차단기 종류、용량, 전등, 전열 등과 연결된 전선의 종류、굵기、수를 한 선으로 나타내는 결선도(별표 1)를 말한다.
18. ‘ 안전점검용단말기 ’ 란 법 제12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결과를 입력하는 업무용 전산장비를 말한다.
19. ‘ 전기설비검사서 ’ (별지 제6호 서식)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자와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각각 보관하는 문서를 말한다.
20. ‘ 수검자 ’ 란 검사 대상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사람 또는 해당 전기설비의 관련 기기를 제작하는 등의 검사를 받는 사람 또는 검사 신청인을 말한다.
21. ‘ 성적서 ’ 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전기기계、기구 등을 국내외 표준에 따라 시험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전기설비 안전성을 확인하려고 검사 대상 설비를 검사기관이 정하는 자격、장비와 방법、절차로 시험、측정하여 작성한 기록지, 점검기록표, 그래프, 자체시험성적서 등을 말한다.

22. ‘ 설치공사 ’ 란 전기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증설공사도 포함한다.
23. ‘ 변경공사 ’ 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수리ㆍ개조, 대체(재권선 등)를 하는 공사로 다음 각 목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가. ‘ 수리ㆍ개조 ’ 란 전기설비를 일단 철거하였다가 수리 또는 개조 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하지 않더라도 수리 또는 개조로 그 전기설비의 일부가 변경 또는 교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 대체 ’ 란 기존 전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재권선 등)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기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이설 재사용 포함)를 말한다.
 다. ‘ 용량감소 ’ 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철거하여 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말한다.
24. ‘ 시공관리책임자 ’ 란 전기공사기술자로서 공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 시설물의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5. <삭 제>
26. ‘ 연속운전허용출력 ’ 이란 기력발전소 및 수력(양수)발전소에서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에 따라 최종 부하운전검사를 완료한 후, 공급자(제작자)가 그 성능을 보증하는 최대보증출력과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 사이의 규정된 운전 조건에서 연속하여 발전할 수 있는 최대출력으로, 발전설비의 제작, 설치, 조정, 경년상태와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자가 결정하고 신청하여 시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출력을 말한다.
27. ‘ 수입검사 ’ 란 전기설비를 국외에서 제작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설치(반제품 포함)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청으로 제작 현장에서 검사자 입회하에 수행하는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28. ‘ 무정전검사 ’ 란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통의 사용전압으로 운전 중인 전기설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9. ‘ 발전전용 ’ 이란 전기설비 중 공사계획 인가(신고) 출력을 기준으로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보일러의 증기 증발량이 열생산에 사용되는 증발량 이상인 발전설비를 말한다.
30. ‘ 무정전전원장치 ’ 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31. ‘ 공해방지설비 ’ 란 시행규칙 [별표2]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발전소 중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복합화력설비 등에서 대기ㆍ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탈질설비, 탈황설비, 집진설비, 폐수처리설비 등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법, 전기사업법령,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제4조(점검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범위는 한전 측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이하 ‘ 수급지점 ’ 이라 한다)부터 분

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사용전점검의 경우는 배전반ㆍ분전반 및 고정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점검 범위에 포함하고, 등기구와 이동하며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점검 시점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 범위에 포함한다.

② 변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제5조(점검 항목 및 처리 방법) ①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정기점검의 경우, 전기설비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부적합설비는 부적합 경중에 따라 통지, 구두통보, 시설개선으로 나누어 점검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 점검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사용전점검의 신청) ①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점검 희망일 3일 전까지 한전과 체결한 전기 사용 계약 단위별로 사용전점검(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집단 신청인(동일 장소, 동일 신청인명)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해야 하며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설계 내용 검토 후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선설비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단선결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전점검의 신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전점검의 절차) ① 한전은 전기사용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에게 사용전점검 신청 방법 및 사용전점검에 적합한 설비에 한하여 전기를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할 때, 신청인에게, 신청인 또는 신청인에게 신청 대행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입회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나 대행을 위탁받은 사람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유선 확인 포함)를 받아 점검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한다.

1. 점검자의 신분증
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
3. 점검 확인증 및 관련 서류

③ 점검자는 제출된 서류 및 현장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별표 2의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한다. 다만, 점검에 필요한 전원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원 없이 점검이 가능한 항목만 점검할 수 있다.

④ 점검자는 한전의 상용 전원을 시험용 전원으로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완료 후에는 시험용 전원을 원래 상태로 복귀하여 전기의 무단 사용 방지 조치 및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전점검의 결과 처리 등) ① 점검자는 점검을 완료한 후,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 사용전점검 확인증(부착용) ’ 을 배전반、분전반에 붙이고 사용전점검 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집단 신청인의 경우에는 점검확인증에 점검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에게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설비는 한전이 점검 확인증을 접수하고 전기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한전은 사용전점검을 받지 않은 설비에 전기를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단, 점검에 필요한 시험용 전원 공급은 예외로 한다.

④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를 재점검할 때에는 신청서만 접수하며 이전 점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개소와 개수부분을 점검한다.

제9조(사용전점검의 그 밖의 사항) 안전공사는 신청인에게 점검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조치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점검의 시기) 정기점검의 시기는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11조(정기점검의 절차) ① 정기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안내한다.

1.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역 행정기관(읍、면、동)에 점검 지역, 점검 일정 등 점검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문 목적, 방문 일정 등을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 등으로 안내(이하 ‘ 점검안내 ’ 라 한다)한다. 다만, 비주거시설, 옥외시설 등 점검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점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정기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점검자의 신분증
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
3. 안전점검용단말기 및 정기점검확인증(부착용) 등의 서류

③ 점검자가 방문 점검할 때는 입회자에게 점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정기점검 실시 내역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입력한다.

④ 전력량계를 부착하지 않고 정액 요금제로 전기가 공급되는 전기설비는 공급단위별 개별 시설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제12조(정기점검의 결과 처리 등) ① 정기점검 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점검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 정기점검 적합확인증(부착용) ’ 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전반、분전반에 붙이고 이를 점검 결과 통지로 갈음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 사목1)의 지표면에서 2.5미터를 초과하는 고위치 전기설비(가로등, 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의 경우에는 정기점검 확인증(부착용)을 붙이지 않고 점검 결과를 소유자 또는 점유

자에게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통지한다.

2. 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별표 3의 방법 중 ‘ 통지 ’ 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 정기점검 부적합확인증(부착용) ’ 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전반ㆍ분전반에 붙이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한 ‘ 정기점검 부적합통지서 ’ 에 재점검 예정 일자를 기록하고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한 경우(별표 3의 방법 중 ‘ 구두 ’ 및 ‘ 개선 ’ 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 정기점검 적합확인증(부착용) ’ 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전반ㆍ분전반에 붙이고 시설개선이 가능한 부분(「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를 말한다.)은 시설개선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부적합 사항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입력하고 통지 또는 구두통보로 각각 처리한다.

가. 부적합 사항 및 개수 방법 절차 등이 점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나. 부적합 사항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재해와 벌칙 내용 등

3. 가로등ㆍ신호등 설비의 정기점검 결과는 등주 단위로 알려야 한다.

② 정기점검의 재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기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점검은 부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재점검할 때는 정기점검 결과에서 부적합 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3. 재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 정기점검 확인증(부착용) ’ 을 붙임으로써 통지로 갈음한다.

4. 재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사항을 기록한 ‘ 재점검 부적합통지서 ’ 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점검자가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여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기점검 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방문 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을 활용하여 전기안전점검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점검이 가능한 사항(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누설전류 및 접지저항 측정 등)을 점검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여 점검을 종결하였더라도 나중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점검한다.

나. 가 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설전류 측정치가 1밀리암페어(㎃) 이하인 경우 ‘ 누설적합 ’ 으로 처리하고 점검을 끝낸다.

2. 재점검 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재점검하러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정기점검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2차 방문 예정일을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을 활용하여 안

내한다.

나. 2차 방문 시에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부재’를 입력하고 점검을 끝낸다. 다만, 점검을 종결하였더라도 나중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점검에 준하여 점검한다.

④ 점검자가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기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를 부과함을 안내한 후 2개월 이내에 재방문하고, 2차 방문 시에도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각 항목별로 사유, 시간 등을 입력하여 정기점검을 끝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린다.
2. 재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를 부과함을 안내하고 안전점검용단말기에 각 항목별로 사유, 시간 등을 입력하여 재점검을 끝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린다.
3. 점검을 종결하였더라도 나중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에 준하여 점검한다.

⑤ 점검 대상이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여 전기공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⑥ 점검 대상이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선임을 안내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
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3. 별표 4의 구분 기준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⑦ 재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 여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선 명령을 한 경우에는 개선 명령일, 개수 기한 등을 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2. 점검 방법은 재점검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안전공사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의2(원격점검장치 기능 및 통합시험) ① 법 제12조제2항의 원격점검장치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1. 전기설비의 계통전압, 부하전류, 누설전류 등 측정
2. 제1호에 따른 측정 정보, 경보신호 등을 관제센터로 전송
3. 측정정보 유출 및 외부 침입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4. 장치의 통신상태 확인 및 기능 추가를 위한 원격제어 등

② 안전공사는 원격점검장치의 기능 및 관제센터와의 통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시험을 할 수 있다.

1. 단락 및 전기적특성(안전포함) 시험
2. 낙하 및 진동 시험
3. OTA 방사성능, 항온ㆍ항습 시험
4. 방송통신 기자재 등(전자파 적합성) 시험
5. 전압, 전류, 누설전류 오차율 시험
6. 원격점검장치와 관제시스템 자료전송 여부
7. 제조시설에 대한 공장심사 및 출하전 시험
8. 그 밖에 원격점검장치의 기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점검기관의 장은 통합시험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시험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의3(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전공사는 통합시험 및 측정정보 분석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점검을 위한 전산관리 및 통합시험 등의 업무
   가. 측정정보 수집
   나. 측정정보의 전산 관리 및 처리
   다. 통합시험
   라. 측정정보의 보존(5년간)
2. 원격점검에 따른 측정결과, 통합시험 등의 정보공개 업무
3. 원격점검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4.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4(원격점검의 절차) ① 안전공사는 제12조의2제1항의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의 측정정보가 문제없이 관제센터로 전송된 날부터 원격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를 개수한 날부터 원격점검을 실시한다.

② 안전공사는 시행규칙 제17조(별표5)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이 지난 날까지 점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자가용ㆍ사업용 전기설비 검사

제13조(검사 대상ㆍ방법 및 시기)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내배전설비 사

용전검사 적용 예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3과 같다.

③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와 같다.

⑤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및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 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경우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경우에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자가용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검사 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

⑦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 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한다.

⑧ 무정전검사의 대상은 검사기관이 검사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기설비 용량,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중 1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여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저장장치(ESS)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정전 온라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 정지 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 시기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시기 전에 변경공사 사유로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검토하여 변경공사 종료시까지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⑩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제1호 (8),(9))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연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무정전검사 대상은 검사기관이 전력계통의 운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⑪ 시행규칙 별표 3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제품 출하 전 검사는 공장(제조시설) 품질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 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⑫ 산지 등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정기검사는 해당 연도의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⑬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대상은 발전전용 설비로 한다.

제14조 (검사 항목)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 항목은 별표 7,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 항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따로 지정한 검사 항목은 무정전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안내) ① 안전공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서, 신고서 접수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사용전검사의 검사 신청 방법, 검사 수수료,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연간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년 1월 또는 검사가 예정된 달의 2개월 전에 검사 신청 방법, 검사 수수료, 검사 기간이 지날 경우의 행정 처분 사항, 검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신청) ① 전기설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 신청인 ’ 이라 한다)은 안전공사에 검사 희망일의 7일 전까지 사용전검사(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 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전자 문서, 무정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 표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용전검사는 안전공사와 협의 시, 신청 후 7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및 용량 5백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
2. 수리 또는 대체공사
3. 임시전력 설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연속운전허용출력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발전설비의 ‘ 안전성 검증에 관한 기술검토자료 ’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출력이거나 전회 검사출력 이하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③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 포함)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사계획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일부를 사용하고자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
   다. 접지공사가 완료된 경우
   라.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
나. 전기설비가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
다. 무정전검사를 부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⑤ 신청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안전공사와 협의하여 검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검사를 신청할 때,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검사수수료를 안전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신청인의 요청으로 수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항공료 및 체제비 등 소요 경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7조(검사 실시 전 준비 사항) 검사자는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2.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 공정별로 공사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업체의 시공관리책임자)
3. 고압 이상 전기 기계ㆍ기구는 별표 8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 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4. 별표 7 또는 별표 9에 따른 수검자 준비 자료
5. 제4호에 따른 수검자 준비자료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일까지 제출한다. 다만, 정기검사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다음에 따른다.
   가.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 성적서 등 제출서류는 발행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
   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준비자료는 발행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제18조(검사 전후 회의 실시)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나 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 입회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회의를 열 수 있다.

1. 검사의 목적과 내용
2. 작업 안전수칙
3. 검사의 절차 및 방법
4. 검사에 필요한 기술 자료 검토 및 확인
5.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 내용 및 개수 방법ㆍ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6. 준공 표지판 설치
7. 검사 대상인 전기설비가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전기설비 검사결과지적서(별지 제8호 서식) 발행
8. 압력용기 명판 설치 안내

제19조(검사 실시) ① 검사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 범위를 확인하고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하며, 수검자 준비 자료를 검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중요 기기의 절연내력시험은 전기설비 설치자가 제출 또는 가지고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증명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사자는 고압 이상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별표 8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정하여 설치된 저압 전기 기계ㆍ기구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KC인증서(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준에 적합하도록 기술기준 등에 규정된 품목은 KS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성적서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따라 입증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③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 시에는 구내배전설비가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와 같게 시공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등시설의 경우에는 배선기구까지 시공이 완료되면 조명기구 부착과 관계 없이 검사할 수 있다.
2. 동력시설의 경우에는 현장조작개폐기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계기구(모터 등)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검사확인증 발행 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알린다.

④ 무정전검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해당 법정 검사 시기 또는 무정전검사를 실시하는 달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개월 이내에 확인하여 검사를 마친다. 다만, 전기사용상황상 정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신청서와 전기설비 정전계획서(Overhaul 등)를 제출받아 전체 검사 시기가 1년 또는 검사주기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 고압 이상의 구내배전설비 정기검사는 제3조제21호에 따른 성적서 등 수검자 준비자료를 확인하고 제4항의 무정전검사 방법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검사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0조(부분검사 실시) ①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분검사는 검사를 신청한 부분만 검사 대상으로 삼는다.

② 검사자는 검사 완료 후 검사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발행 시, 나머지 검사 대상 부분을 서면으로 안내
2.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 또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을 안내

제21조(검사의 결과 처리) ① 검사자는 검사 결과를 합격, 부분합격, 합격(요주의), 불합격 및 임시사용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판정을 유보할 수 있다.

1. 전기설비의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 합격 ’ 또는 ‘ 부분합격 ’ 으로 판정한다.
2. 무정전검사 결과 요주의할 경우 ‘ 합격(요주의) ’ 으로 판정하며 요주의 사항은 정밀 점검 또는 정전 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검사에서 무정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3. 전기설비의 검사 결과가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불합격 ’ 으로 판정하고 전기설비시정요구서 또는 검사실시확인서를 발행하며,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안내한다.
   가. 사용전검사의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상용 발전설비의 경우 설비의 제작ㆍ수리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수검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정기검사의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 가 및 나의 재검사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4. 법 제10조 및 「전기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임시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검사자가 그 허용 사유ㆍ사용 기간ㆍ사용 범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하며, 임시사용기간 및 허용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 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임시사용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ㆍ수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 검사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현장에서 발부한다.

제22조(검사 결과의 통지) ① 안전공사는 검사 완료일 또는 검사공정별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산으로 알려야 하며 무정전검사 결과가 ‘ 합격(요주의) ’ 의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사항을 함께 알린다. 검사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불합격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기한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불합격으로 판정받은 검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통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에 대한 최종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검사확인증의 검사설비란에 정격출력을,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또는 연속운전허용출력을 명시한다. 다만, 복합화력설비의 경우에는 설계외기온도에 따른 보정출력을 명시한다.

제23조(재검사) ① 검사 결과, 불합격한 전기설비는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신청은 검사 신청서만 접수하여 이전 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을 검사한다.

② 사용전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공사업체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업체를 전기설비 부실시공업체(별지 제5호 서식)로 보고한다.

③ 정기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해당 행정 관청에 보고한다.

제24조(그 밖의 사항) ① 안전공사는 검사 과정에서 보완된 시정 및 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전기설비 휴지(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 신청 시의 전기공급 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휴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한전의 간이 점검 후 전기공급
2. 휴지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는 전기공급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확인증 확인 후 전기공급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거나 제19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④ 전기저장장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운영ㆍ관리업체는 안전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안전공사는 그 절차와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검사ㆍ점검 업무에 필요한 전기설비 정보를 한전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세부 운영사항) ① 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검사ㆍ점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기준 등과 정합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전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세부 검사ㆍ점검기준의 제정ㆍ개정

2.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제3조제1항제21호 후단에 따른 검사기관이 정하는 성적서 시험ㆍ측정자 등의 자격ㆍ장비와 방법ㆍ절차 등의 세부기준

③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정ㆍ개정된 세부 검사ㆍ점검기준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점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2항에 따라 정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수검자가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전기설비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ㆍ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사유 포함)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 사유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반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검토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2023년 7월 6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78호,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행일은 별도로 한다.

1. 별표 9 Ⅰ- 6 태양광발전설비 제13호 부터 제15호 까지의 세부검사항목과 수검자준비자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사계획인가(신고)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2. 별표 9 Ⅰ- 7 100kW 초과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제품 출하전 검사에 관한 세부검사항목과 수검자준비자료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제품 출하분부터 시행한다.
3. 별표 9 Ⅱ- 6 태양광발전설비 종합검사의 제3호의 세부검사항목과 수검자준비자료는 2021년 9월 1일 정기검사신청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공사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공사계획신고를 한 전기설비(변경인가ㆍ신고를 포함한다)는 종전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2호, 2020.7.20.) 또는 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1호, 2020.7.20.)을 따른다.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종전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80호, 2020.3.17.)
2.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2호, 2020.7.20.)
3. 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1호, 2020.7.20.)

부칙 <제2022 - 141호,2022. 8.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력ㆍ가스터빈ㆍ복합화력 발전설비의 보일러계통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6에 따라 설치하여 운용중인 기력ㆍ가스터빈ㆍ복합화력 발전전용설비의 보일러계통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22 - 187호,2022. 11.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 - 223호,2022. 12.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9 Ⅰ - 5 풍력발전설비 □ 제작이 완료된 때의 검사항목, 세부검사내용 및 수검자 준비자료는 2023년 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2. 별표9 Ⅱ - 6 태양광발전설비 □ 부지 및 구조물의 검사항목, 세부검사내용 및 수검자 준비자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 - 64호,2023. 4. 19.>

이 고시는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 - 81호,2023. 4.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 - 143호,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조 제2항 제3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별표9 Ⅰ-9 전기저장장치 □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의 세부검사내용 중 전기저장장치(ESS) 통합관리시스템 연계상태 확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단선결선도 작성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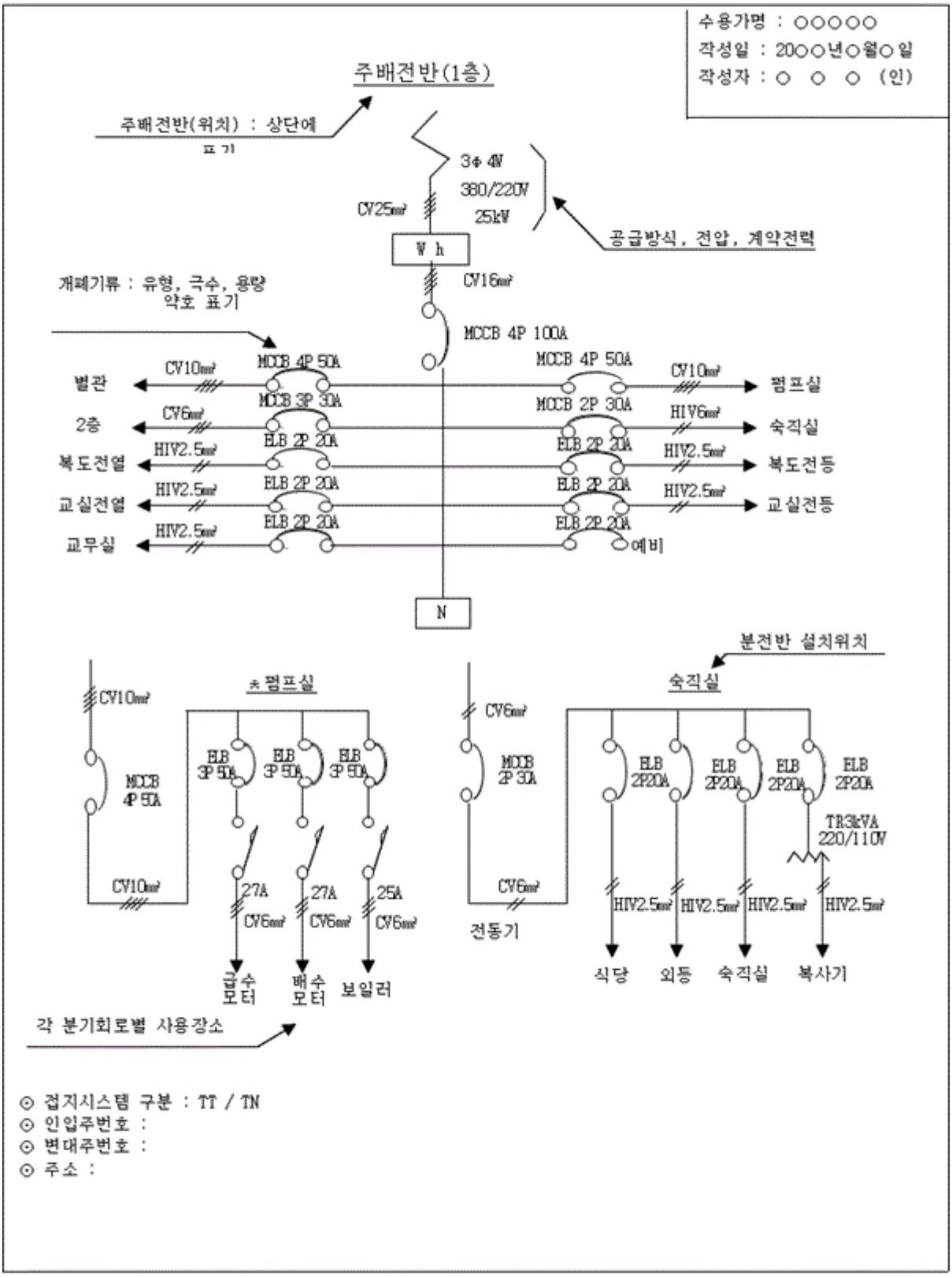

약 호 표 기

□ 개폐기 · 차단기 표기방법

○ 차단기 종류, 극수, 프레임크기, 정격전류, 정격감도전류 등 순으로 표기

※ 프레임크기, 정격감도전류 ⇒ 생략가능

예1) 배선용 차단기

MCCB 2P 50AF 20AT ⇒MCCB 2P 20A

MCCB 3P 100AF 50AT ⇒MCCB 3P 50A

MCCB 4P 220AF 100AT ⇒MCCB 4P 100A

예2) 누전차단기

ELB 2P 50AF 20AT ⇒ ELB 2P 20A

ELB 3P 100AF 50AT ⇒ ELB 3P 50A

예3) 커버나이프 스위치

CKS 2P 20A ⇒ CKS 2P 20A(f : 10A)

CKS 3P 30A ⇒ CKS 3P 30A(f : 20A)

□ 기타

○ Wh : 적산전력계(전기계량기)

○ MC : 전자접촉기(M/g s/w)

○ 전선

- IV2.5㎟ : 600V 비닐절연전선 2.5㎟
- CV16㎟ : 600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 16㎟
- 전선수 : 빗금으로 표기[(2가닥 : //), (3가닥 : ///), (4가닥 : ////)]

○ TR 3kVA 220/110V : 변압기(Transformer) ⇒ (강압기 용량 : 3kVA)

○ 3Φ4W 380/220V : 수전방식 3상 4선식, 전압 380/220V

○ 상기 이외 기타 기호는 전기관계법규 등의 표준기호에 의한다.

[별표 2]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정기점검) 항목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내 용	비 고 (부적합내용, 특기사항기재)
절연저항	o 절연저항 1.0 MΩ 이상 - 정전 불가 시 누설전류 1 mA 이하 o 다만, 2020.12.31.이전의 전기설비는 절연저항 0.2 MΩ 이상	
인입구배선 및 옥내(옥외 · 옥측)배선	o 전선 상별 색상 -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PE(녹-노란색) o 배선공사방법의 적정 여부 - 합성수지관,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 애자사용공사, 버스덕트공사 o 가공 및 지중전선로 시설의 적정 여부 ※ 지중전선로의 경우 매설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o 규격전선 사용 및 전선피복 손상 여부 o 구내인입 · 옥측 · 옥상 · 옥내 전선로의 적정 여부	
누전차단기	o 누전차단기의 시설	
개폐기 · 차단기	o 과전류에 대한 보호 -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 - 저압전로 중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 개폐기설치위치 적합여부 - 개폐기열화 및 손상여부 - 정격퓨즈 사용여부 - 개폐기 결선상태 - 다선식전로의 각극 개폐장치여부 o 전선용량 및 허용전류 적정 여부 - KS C IEC 60364-5-52 부속서 A와 B를 참조하여 표에서 선정된 적절한 값	
접지	o 감전에 대한 보호 - 계통별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TN계통, TT계통(누전차단기 보호), TT계통(과전류차단기 보호)) o 접지시스템 및 접지저항 값 - 인체감전보호 및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 값 이하 o 접지극 시설,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o 통합접지시 요구사항 o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o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기 타 점검사항	기타 기술기준에 부적합 사항	

비고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전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의 열화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를 구두통보 할 수 있다.

[별표3]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

1. 절연저항

<table>
<tr><th rowspan="2">부 적 합 내 용</th><th colspan="3">처리방법</th><th rowspan="2">근거규정</th></tr>
<tr><th>통지</th><th>구두</th><th>개선</th></tr>
<tr><td>가. 주회로 및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이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 절연저항 기준값
<table>
<tr><th>전로의 사용전압(V)</th><th>DC 시험전압(V)</th><th>절연저항(MΩ)</th></tr>
<tr><td>SELV 및 PELV</td><td>250</td><td>0.5</td></tr>
<tr><td>FELV, 500V 이하</td><td>500</td><td>1.0</td></tr>
<tr><td>500V 초과</td><td>1,000</td><td>1.0</td></tr>
</table>
- 정전 불가 시 누설전류 1 ㎃ 초과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 허가, 신고,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아래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table>
<tr><th colspan="2">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th><th>절연
저항치</th></tr>
<tr><td rowspan="3">400V
미만</td><td>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0V 이하인 경우</td><td>0.1MΩ</td></tr>
<tr><td>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td><td>0.2MΩ</td></tr>
<tr><td>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td><td>0.3MΩ</td></tr>
<tr><td colspan="2">400V 이상</td><td>0.4MΩ</td></tr>
</table>
나. 다음의 경우에는 절연저항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인입선접속점에서 최초의 인입구장치 까지
◦ 가공방식 저압 옥외조명시설에 단극개폐기(점멸기) 설치시</td><td>○</td><td></td><td></td><td>[기]5,27,52
[K]131,132</td></tr>
<tr><td>다.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이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td><td></td><td>○</td><td></td><td></td></tr>
</table>

비고 : 근거규정의 "[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K]"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의미한다.

2. 인입구배선 및 옥내(옥외 · 옥측) 배선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근거규정

	통지	구두	개선	
가. 전선 상별 색상				
1)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PE(녹-노란색) ∘ 2022.1.1.이후	○			[K]121.2
2) 종단 및 연결지점의 색상 식별(도색, 밴드, 색테이프 등) ∘ 2022.1.1.이후	○			
나. 배선 공사방법의 적정여부				
1) 합성수지관,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 애자사용공사, 버스덕트공사 이외 방법으로 시공했을 경우	○			[K]221.2
2) 지중전선 매설방법 미준수 ※ 매설전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			[기]38 [K]223 [K]334.1, 2
3) 전선길이, 지지점, 이격거리 초과 등 공사방법 미준수 (전선상호, 조영재, 지지점 등)		○		[기]37 [K]232.11,12 [K]232.41,51
4) 지지물(애자) 이탈 및 벽관통 부분의 전선관 삽입 여부 등	○			[K]232.56
다. 가공배선, 임시배선의 시설방법 미 준수	○			
라. 규격전선 사용여부				
1) 단면적 2.5㎟ 미만의 전선 사용시	○			[K]221.1.1
2) 절연전선, 케이블 이외 전선사용	○			
마. 전선 접속 상태 및 피복손상여부				
1) 중도에 접속점(전선연결)있는 경우	○			[K]232.11 [K]232.12
2) 접속점 전선노출 및 피복손상시		○	○	
바.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1) 단면적 2.5㎟ 미만의 연동선사용 (단면적 1㎟미만 MI케이블 사용 포함)	○			[K]231.3
2) 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으로 1.5㎟ 미만의 연동선 사용		○		[K]241.14

사. 전선 및 배선기구 손상				
1) 절연전선 사용개소의 전선피복 손상		○	○	[기]50, 51
2) 전선노후, 열화 및 피복손상이 심할 경우	○			
3) 기계기구, 배선기구, 접속기 등의 손상		○		[K]123
4) 주택에 접지극부 콘센트 미시설				[K]234.5
∘ 2003.12.31.이전		○		
∘ 2004.1.1.이후	○			
아. 비닐코드배선				
1) 간선으로 시설사용	○			
2) 백열전등, 전열, 냉방장치에 사용	○			
3) 콘센트 5개회로 이상사용(난잡배선)	○			
4) 가공배선으로 연결사용	○			
○ 동일구내(이동전선 사용 포함)		○		
○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	○			
5) 쇼윈도우, 쇼케이스 배선으로 0.75㎟ (0.18×30) 미만의 비닐코드배선 사용		○		
자. 기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기]39
인입선, 연접인입선 공사방법 부적정 등		○		[K]221.1.1 [K]221.1.2

비고 : 근거규정의 "[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K]"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의미한다.

3. 누전차단기(ELB)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근거규정
	통지	구두	개선	
가.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				[K]231.6
1) 대지전압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주택의 인입구(인체감전보호용)	○		○	
2) 대지전압 150V이하 주택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동작상태 불량		○	○	

3) 금속제 외함을 갖는 사용전압 5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		○	[기]14,57 [K]211.2.4 [K]234.10 [K]234.11 [K]234.14 [K]234.15 [K]235.1 [K]235.5 [K]241.5 [K]241.14 [K]241.15 [K]242.5 [K]242.10
4) 특수설비에 공급하는 전로 ∘ 화약류저장소, 가로등(보안등), 교통신호등, 전기온돌, 전기온상, 풀용수중 조명등, 의료실의 전원회로, 임시배선 등	○			
5)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콘센트설비	○			
6) 욕실 등에 시설하는 콘센트회로에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미설치				
∘ 2003.12.31.이전		○		
∘ 2004.1.1.이후	○			
7)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주택용 누전차단기 미시설 ○ 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주택, 준주택 및 숙박시설) -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2016.12.31.이전		○		
∘ 2017.1.1.이후	○			
- 숙박시설 : 호텔, 모텔, 여인숙, 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용 시설				
∘ 2021.4.26. 이전		○		
∘ 2021.4.27. 이후	○			
나. 누전차단기가 인입개폐기를 겸하는 경우로서 과전류 보호기능이 없는 것(지락전용E)	○			
다. 누전차단기 설치로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비상용조명, 비상용승강기, 유도등, 철도용신호장치 등)은 누전경보장치 설치		○		
라. 권장 수명연한(제조일로부터 15년) 초과시		○	○	

비고 : 근거규정의 "[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K]"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의미한다.

4. 개폐기 · 차단기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근거규정
	통지	구두	개선	
가. 주개폐기(과전류 차단기 포함)			○	[기] 13,56

1) 인입구개폐기 미시설 (단락 과부하 겸용 ELB 시설시 제외)	○			[K]212.6.2
2) 주개폐기 미시설(집합시설하는 경우)				
ㅇ 분기개폐기수 6개 초과시	○			
ㅇ 분기개폐기수 6개 이하시		○	○	
나. 분기개폐기				
1) 미시설 단,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 접속이 없고 단락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외	○			[K]212.4.2
2)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 접속이 없고 단락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된 경우 3m 초과	○			
다. 전용 분기개폐기				
1) 정격소비전력 3kW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용 개폐기 미시설	○		○	[K]231.6
2) 방전등(형광등 제외), 네온방전등, 연쇄노점, 전식 애드벌룬	○			[K]235.5
라. 다선식 전로(1Φ3W, 3Φ4W) 1) 인입전원측 각극마다 개폐장치 미시설	○			[K]341.9 [K]212.6.2
2) 중성선에 퓨즈(과전류차단기) 삽입		○	○	[K]341.11
마. 개폐기 및 차단기 상태				
1) 용량부족, 접촉불량으로 과열 및 손상정도가 극심한 것	○		○	[K]212.4
2) 개폐기, 차단기 및 퓨즈 용량과다		○	○	
3) 권장 수명연한(제조일로부터 15년) 초과시		○	○	
바. 결선상태 (조치 가능시 현장보수)				
1) 개폐기 오결선	○		○	
2) 개폐기 역부착		○	○	
사. 배 · 분전반 상태				
1) 설치위치 부적정 (고위치, 장애물 등으로 점검 측정 불가능)	○			
ㅇ 가로등, 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의 전기설비로서 고위치, 장애물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상태		○		[K]212.6.2 [K]235.1
2) 공통접지단자, 러그, 터미널, 부스바 등 노후 및 접속상태 불량 등	○	○		

아.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주택용 차단기 미시설				
∘ 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주택, 준주택 및 숙박시설)				
-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2016.12.31. 이전		○		
∘ 2017.1.1. 이후	○			[K]212.3.4
- 숙박시설 : 호텔, 모텔, 여인숙, 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용 시설				
∘ 2021.4.26. 이전		○		
∘ 2021.4.27. 이후	○			
자. 주택용분전반이 은폐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에 시설				
∘ 2018.3.8. 이전		○		[K]232.84
∘ 2018.3.9. 이후	○			

비고 : 근거규정의 "[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K]"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의미한다.

5. 접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근거규정
	통지	구두	개선	
가.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및 미 시설				[기]6
1) 금속제 배·분전반 및 금속관 공사의 금속관	○			
2) 습기 많은 장소의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외함 (전용의 인체감전보호용 ELB 설치 및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 제외)	○			[K]142.7
가)가정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나)농사용(양수기, 절초기, 착유기, 건조기 등)	○			
- 이동식(전원플러그 연결방식)		○		
다)업무용(에어컨, 대형냉장고, 전기드릴, 전동기, 용접기, 의료기 등)	○			
3) 주택의 옥내전로에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 사용 및 접지시설 시공여부	○			[K]234.5
ㅇ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방적형 콘센트사용 및 접지시설 여부 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K]234.5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가 부착된 콘센트 시설여부				
∘ 2003.12.31. 이전		○		
∘ 2004.1.1. 이후	○			
4)기타 접지시설이 요구되는 개소		○		
가) 네온변압기 외함				[K]234.12.5
나) 접지극부 콘센트				[K]234.5
다) 가로등주내 컨버터 등				
나. 접지시설상태				
1) 접지선 규격 미달	○			[K]142
2) 접지극(동판, 동봉 등) 규격 미달		○		
3) 시공방법 부적정		○		

비고 : 근거규정의 "[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K]"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의미한다.

6. 기타

접지대상 시설장소 및 조건	접지		근거규정
	시설	생략	
① 대지전압 150V이하인 기계기구 시설			
∘건조한 장소		○	
∘습기 및 물기있는 장소	○		
②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	
∘ 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을 표면에 칠한 경우 ※ APT, 주택의 타일 또는 점포, 사무실의 아스타일, 모노륨 등은 절연성 물질로 본다	○		[K]142.7
③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	
④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	
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	
⑥ 저압용 (삭제)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		○	

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 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은 경우			
⑦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 ㎃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	
⑧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 절연대를 시설하는 경우		○	

비고 : 근거규정의 "[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K]"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의미한다.

[별표4]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구분기준

□ 적용기준

동일구내 또는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전력은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이 다른 2개 이상의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형태]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동일 공급단위 내에 소유권이 다른 2개 이상의 연접된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단위를 기준으로 동일 공급단위 내에 있는 각 소유자의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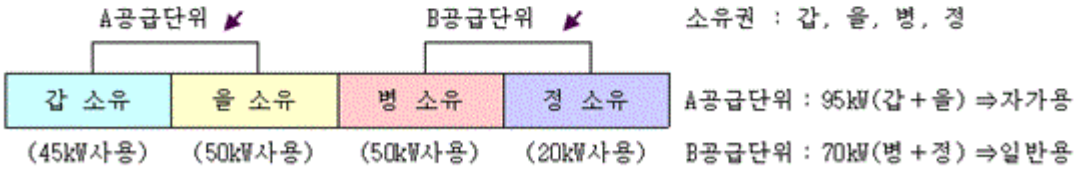

[제2형태]

동일소유의 연접된 설비에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공급단위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일 된 소유의 연접된 각 공급단위의 전기설비의 용량은 합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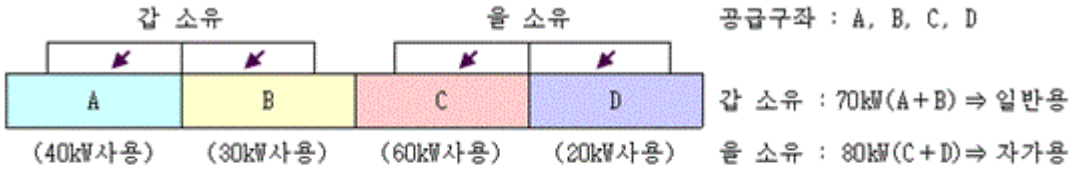

[제3형태]

연접된 각 공급단위별로 소유권이 서로 다른 경우의 전기설비의 용량은 소유자별로 별개로 구분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 공급단위별, 소유권별로 합산 75kW이상이면 자가용 전기설비임.

[제4형태]

동일건물,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동일소유자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설비를 가지고 있을 경우 → 각각 별개로 구분함

※ 예) 4층 건물을 김씨와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급단위 4개)

(한전)	➡ 70kW	4층 김씨소유(일반용)
	➡ 80kW	3층 이씨소유(자가용)
	➡ 60kW	2층 김씨소유(일반용)
	➡ 60kW	1층 이씨소유(일반용)

□ 심야전력 및 제조업 적용구분
한전과 수급 계약된 상시전력과 심야전력(제조업)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
→ 개개 설비별 계약용량 구분 적용

[제1형태] 상시전력 75kW 미만, 심야전력(제조업) 100kW 미만인 경우

75kW 미만 ⬇ (저압)	100kW 미만 ⬇ (저압)
상 시 전 력	심 야(제조업) 전 력

공급단위별 합산용량은 자가용이나 심야(제조업)전력 100kW미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용전기설비임

[제2형태] 상시전력 75kW 이상, 심야전력(제조업) 100kW 미만인 경우

75kW 이상 ⬇ (저압)	100kW 미만 ⬇ (저압)
상 시 전 력	심 야(제조업) 전 력

상시전력이 자가용설비이므로 용량 합산하여 자가용설비임

[제3형태] 상시전력 75kW 미만, 심야전력(제조업) 100kW 이상인 경우

75kW 미만 ⬇ (저압)	100kW 이상 ⬇ (저압)
상 시 전 력	심 야(제조업) 전 력

상시전력은 일반용설비이나 심야전력(제조업)이 자가용설비이므로 용량합산 하여 자가용설비임.

[별표 5]

수전설비 범위도

1. 저압 수전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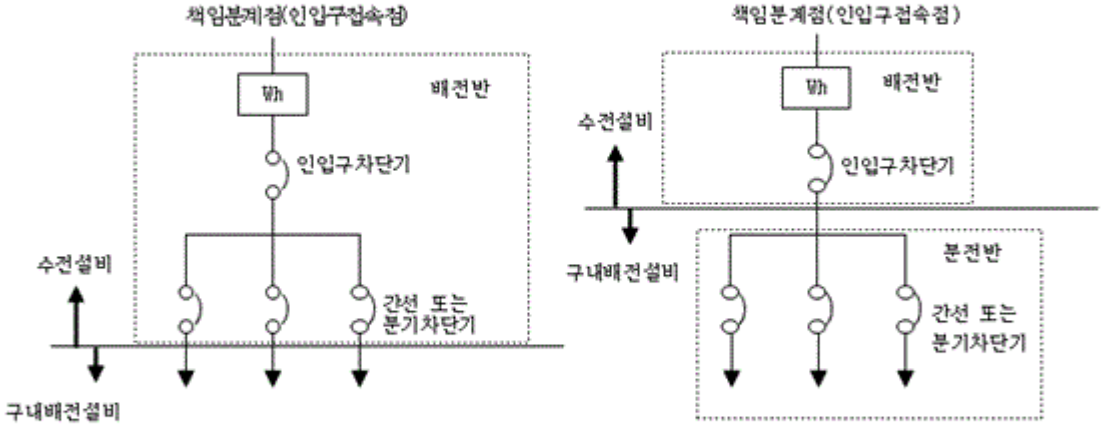

∘ 저압에서 저압으로 증설공사시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
가. 일반용에서 자가용으로 증설공사시 : 사용전검사 대상임
나. 자가용에서 자가용으로 증설공사시 : 사용전검사 대상임

2. 고압이상 고객

가. 특고압 또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경우의 수전설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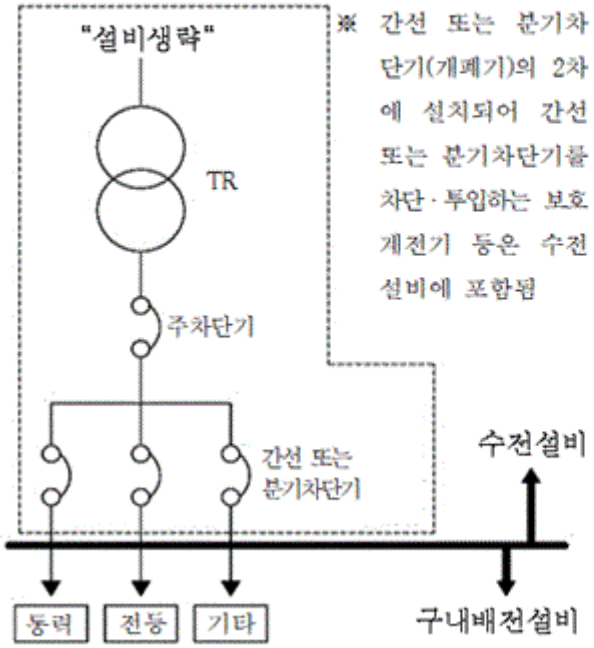

※ 간선 또는 분기차단기(개폐기)의 2차에 설치되어 간선 또는 분기차단기를 차단·투입하는 보호계전기 등은 수전설비에 포함됨

나.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성되는 경우의 수전설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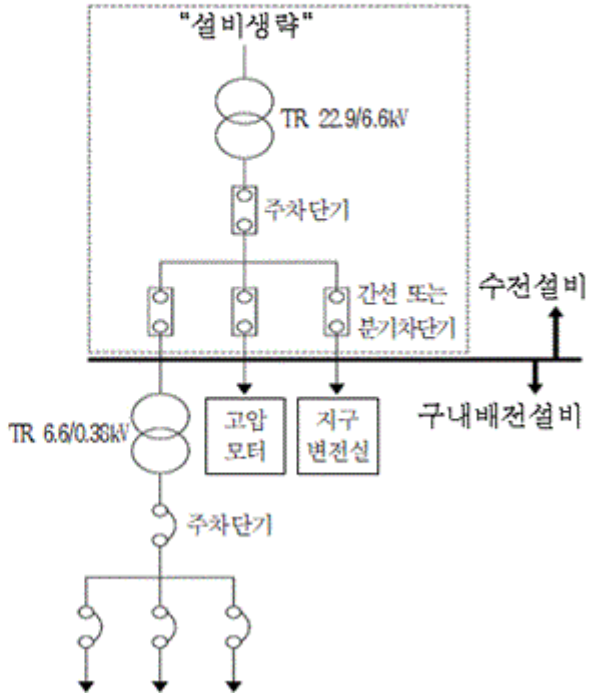

다. 수전실과 배전반의 설치장소가 떨어져 설치된 경우의 수전설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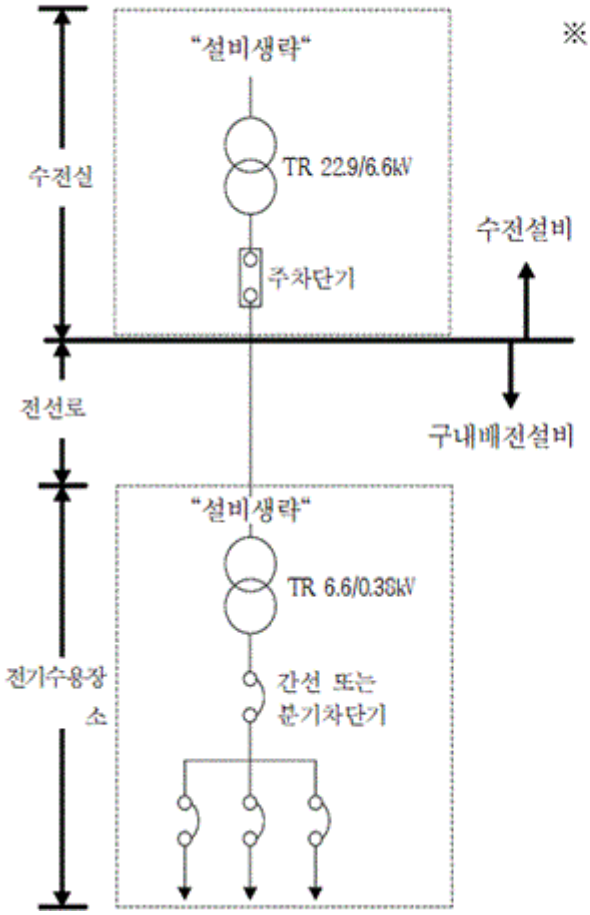

※ 전선로 : 발전소 · 변전소 · 개폐소, 이와 유사한 곳[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3장 고압 · 특고압전기설비 341.2의 규정에 의한 특고압 배전용변압기의 시설장소 · 공장구내 등에 있어서의 변전실(전기를 변성하는 곳을 말한다.) 주상변압기의 시설장소 등], 전기사용장소(배전반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전차선, 소세력회로, 출퇴표시 등은 제외) 및 이를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설비(애자, 지선등을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인입선 및 변전소간의 전선 · 전선로 등은 포함되며, 단위공장내의 배선 즉 발 · 변전소내의 배선,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옥내배선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별표 6]

전기설비 설치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의 적용 예

1. 수용설비

전기설비별 유형	인가 또는 신고대상
1. 설치공사 고압 이상 변압기로 수전받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전체 전기수용설비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2. 증설공사 기존설비 (300 kW) + 추가설치 (500 kW) 기존설비 (1,000 kW) + 추가설치 (500 kW) 고압 이상 변압기로 수전받는 전기설비의 증설공사의 경우	수전설비 증설에 따른 전기수용설비 (증설된 수전설비 용량 500kW와 해당 구내배전설비)

비고 : 전기수용설비 중 고압이상 변압기 용량이 증설되지 아니하는 구내배전설비의 추가 설치공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피뢰설비

가. 설치공사 대상은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한다.

나. 변경공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변경대상	신고대상
수뢰부	수뢰부의 추가설치 및 변경
인하도선	인하도선의 추가설치 및 변경
접지시스템	접지시스템의 2분의 1 이상 변경

비고 : 피뢰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적 구성부재의 주변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7]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

Ⅰ. 사용전검사

Ⅰ-1 전기수용설비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외관	∘ 전선의 이격거리 및 높이 ∘ 전선 접속상태 ∘ 전선의 배선방법 ∘ 과전류보호장치와 전선 단면적 보호협조 ∘ 지지물의 경간, 이도, 지지금구류 ∘ 지지물의 기초 및 재료구성 ∘ 애자련 검사 ∘ 지중전선로 직선접속부 및 단말부분 처리상태 ∘ 지중전선로 방재 조치사항 ∘ 아크발생기구 이격거리 ∘ 충전부분 방호 및 이격거리 ∘ 개폐기 · 차단기 설치 및 개폐 상태 ∘ 접지시스템 적용 및 접지도체, 보호도체, 본딩도체 굵기 및 시설상태 ∘ 지락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 ∘ 감전보호의 적정성 ∘ 계통보호방식 시설상태 ∘ 기계 · 기구 보호장치 ∘ 계측장치 및 공기압축기 시설상태 ∘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시설 ∘ 감시 및 조작에 필요한 조명시설 ∘ 특고압 전로의 상별표시상태 ∘ 전력휴즈 용량 및 설치상태 ∘ 비상용 예비전원 시설상태 ∘ 보호울타리 및 위험표시상태 ∘ 제품규격 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 내용의 확인	∘ 시험성적서 (대상 품목에 한함) ∘ 전선의 단면적 선정 계산서 ∘ 과전류보호장치 정격선정 계산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대지저항율 실측 또는 토질분석 자료 ∘ 감전보호 계산서
2. 접지저항 측정	∘ 접지시스템별 접지저항 측정 ∘ 매설지선 등의 시설상태	∘ 감리보고서 또는 점검기록표
3. 절연저항 측정	∘ 모선, 배선, 전선로 및 기기 ∘ 변압기, 발전기 등의 절연저항 ∘ 케이블의 절연저항	∘ 감리보고서 또는 점검기록표
4. 절연내력 시험	∘ 변압기 및 발전기 등 기계기구 ∘ 케이블 등 ∘ 모선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기, 차단기	∘ 시험성적서 ∘ 감리보고서 또는 점검기록표
5. 절연유시험 및	∘ 내압시험	∘ 시험성적서

측정	∘ 산가측정	∘ 감리보고서 또는 점검기록표
6. 보호장치 시험	∘ 과전류차단장치 ∘ 지락차단장치 ∘ 변압기 보호장치 - 경보장치 및 차단장치 - 계측장치 ∘ 공기압축 장치 - 공기압축기 용량 및 동작상태 - 안전밸브 - 공기탱크압력 회복장치 - 수압시험검사 ∘ 전력용 콘덴서 또는 분로리액터 - 경보장치 및 차단장치 ∘ 보호 장치 특성시험 - 최소동작시험 - 한시특성시험 - 연동시험 ∘ 전선로 보호 장치	∘ 시험성적서 ∘ 감리보고서 또는 점검기록표 ∘ 안전밸브규격서
7. 계측장치	∘ 주요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 특고압 변압기의 온도 ∘ 공기압축기 압력	
8. 제어회로 동작 및 기기조작시험	∘ 차단기관련 시험검사 - 개폐동작시험 - 인터록시험 ∘ 수전설비와 발전설비의 연동시험 ∘ 종합 연동시험	∘설계 도면 ∘인터록 도면
9. 전선로	∘ 외관검사 - 전선로 각도에 따른 지지물설치상태 - 전선로 지상고, 이도 및 경간 - 콘크리트주, 목주, 지선, 전선 및 가공지선의 설치상태 - 애자련 및 지지물 설치상태 - 전선의 이격거리 - 철탑의 기초 및 재료구성 - 직선접속부 및 단말부분의 처리상태 - 유입케이블의 누유여부 및 가압장치 - 지중함의 크기, 환기장치 및 배수구조 - 지중전선로내의 조명설비 ∘ 가공전선로 시험검사 - 접지저항 측정 - 절연저항 측정 - 보호장치 및 동작상태 - 전파의 허용한도 ∘ 지중전선로 시험검사	∘ 철주, 강관주, 철탑의 규격서 ∘전파방해파 측정 기록서 ∘ 감리보고서 또는 점검기록표

	- 토목구조물 검사(사업용 검사항목에 준함) - 접지저항 측정 - 절연저항 측정 - 보호장치 및 동작상태 - 가압장치시험 - 전선로 도통시험	
10.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검사기준에 적합여부	

Ⅰ-2 기력 · 가스터빈 발전설비(상용)

□ 제1공정 : 터빈 차실하반부의 설치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터빈일반규격	∘ 규격 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증기터빈 규격서
2. 터빈하반부 콘크리트기초	∘ 기초지반 ∘ 철근 재질 및 규격 ∘ 시멘트 종류 및 품질 ∘ 골재시험 ∘ 콘크리트 배합 ∘ 현장 콘크리트 품질 ∘ 콘크리트 시공방법 ∘ 철근 조립 · 설치 ∘ 치수 및 외관	∘ 설계기준 및 시방서 ∘ 기초 및 구조물 도면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기초지반 - 철근재료 - 시멘트 - 골재관리 - 콘크리트배합설계 - 콘크리트관리 - 콘크리트 타설 전 · 후
3. 터빈 및 발전기 독립설치 상태	∘ 베어링 간극 ∘ 고정부와 회전부 간의 간극 ∘ 축 밀봉장치 간극 ∘ 발전기 공극 ∘ 축계평형	∘ 터빈 구조도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베어링 간극 - 고정부와 회전부간의 간극 - 축 밀봉장치 간극 - 발전기 공극 - 축계평형

□ 제2공정

- 발전용 수전설비 검사는 전기수용설비 검사에 따른다.

□ 제3공정

-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터빈	∘ 규격 확인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 확인 ∘ 터빈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 윤활유펌프시험(AC, DC) - 발전기밀봉유 펌프시험	∘ 터빈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터빈 윤활장치 도면 ∘ 조속기 계통도면 ∘ 조속기유입유 & 밀봉유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베어링 출구 윤활유 고온도 정지시험 - 스러스트 베어링 마모 정지시험 - 복수기 진공도 저하 정지시험 - 배기증기 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 정지 및 복귀 - 비상조속기(과속도) - 밸브개폐 시험(주증기 정지밸브, 증기 조절밸브, 재열증기 정지밸브, 재열증기 조절밸브) - 터빈 진동측정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점화 불량시험 - 고진동 정지시험 - 연료가스 저압력 정지시험	계통도면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계기교정 - 경보회로
2. 상용발전기	∘ 발전기 일반규격 - 규격 확인 및 외관검사 ∘ 발전기 본체검사 - 접지 시공 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보호 장치 시험 - 보호 장치 및 계전기시험 - 고정자 냉각수예비펌프 자동 기동 시험 - 수소가스압력 및 순도 시험 ∘ 제어 및 경보장치 시험 - 계측장치, 경보장치, 제어장치 - 상회전 시험 및 동기 검정장치 - 여자기 및 자동전압 조정기 ∘ 부대시설검사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 접속상태 및 상표시 - 위험표시 ∘ 소내 모선 절체시험 - 상회전 및 Loop 시험 - 절체시험(수동, 자동)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발전기 및 부대설비규격서 ∘ 단선결선도 ∘ 발전기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수소가스 및 고정자 냉각수 계통 도면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계기교정 - 경보회로 - 수소가스 압력 및 순도 - 특성시험 - 보호 장치 및 계전기 - 자동전압조정기 - 절연내력 - 절연저항 - 부대설비 - 접지저항 ∘ 감리보고서
3. 차단기	∘ 규격 확인 및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접지 시공 상태 ∘ 절연저항측정 ∘ 절연내력시험 ∘ 제어회로 및 계측장치시험 ∘ 특성시험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차단기 및 부대설비규격서 ∘ 시퀀스 도면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접지저항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절연유내압(OCB에 한함)시험 ∘ 상회전 및 Loop 시험 ∘ 개폐표시 상태 확인 ∘ 부대시설검사	- 절연유 내압(OCB에 한함) - 상회전 및 Loop시험 - 부대설비
4. 공해방지설비 (발전설비와 연계된 공해방지설비에 한함)	∘사업용전기설비의 세부검사내용을 준용한다.	∘사업용전기설비의 수검자준비자료를 준용한다.
5. 종합시험	∘ 조속장치시험 검사 - 정격부하 차단시험 ∘ 종합연동시험 ∘ 정격부하운전시험 (기력 : 4시간, 가스터빈 : 2시간) - 대기분야(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조속기 특성 - 출력기록지 ∘ 종합 인터록 도면 ∘ 출력기록지

Ⅰ-3 내연력설비(상용)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내연기관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 연료유 압력저하 시험 - 연료유 필터 차압 상승시험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베어링 윤활유 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냉각수 고온도 정지시험 - 비상조속기(과속도) - 비상조속기 시험 - 실린더 릴리이프밸브 - 크랭크실 릴리이프밸브	∘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윤활장치 도면 ∘ 조속기 계통도면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계기교정 - 경보회로 - 실린더 및 크랭크실 릴리이프밸브
2. 발전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및 외관검사 ∘ 발전기 본체검사 - 접지시스템 시공상태 - 절연저항 측정 - 절연내력 측정 ∘ 보호장치검사 - 절연저항 측정 - 제어 및 경보장치 시험 - 상회전 시험 - 동기 검정장치 - 전압조정기 시험 ∘ 부대시설검사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발전기 및 부대설비규격서 ∘ 발전기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특성시험 - 보호장치 및 계전기 - 자동전압조정기 - 절연내력 - 절연저항 - 계기교정 - 경보회로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 접속 상태 및 상 표시 - 축전지 및 충전장치 ∘ 자동기동 시험 ∘ 부하차단시험 ∘ 부하운전시험	- 부대설비 - 접지저항 ∘ 감리보고서
3. 종합시험	∘ 조속장치시험 검사 - 정격부하 차단시험 ∘ 종합연동시험 ∘ 정격부하운전 (2시간) 시험 - 대기분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조속기 특성 - 출력기록지 ∘ 종합 인터록 도면 ∘ 출력기록지

비고 : 계통에 연계하여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포함

Ⅰ-4 수력 · 풍력 · 연료전지 · 태양광 · 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지중전선로 토목검사

∘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을 준용한다.

Ⅰ-5 용접부 검사

∘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을 준용한다.

Ⅰ-6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내연기관 및 발전기	∘ 외관검사 - 누유, 누수여부 - 접지시공상태 - 배기관의 적정여부 - 연료계통의 적정여부 - 급수시설의 적정여부 - 각종 지시계기의 시설 여부 - 상용전원과의 절체방법 -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설치상태 - 공기압축시설의 적정여부 - 환기시설의 적정여부 - 배전반의 설치상태 및 접지 시공여부 - 차단기의 용량 및 설치상태 등의 적정여부 - 변류기 등의 변성기 비율 또는 배율의 적정 여부 -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방식의 적정여부	∘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 사용전선의 적정여부 - 윤활유 계통의 적정여부 - 보호설비의 적정여부 ∘ 비상부하 용량	∘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 ∘ 비상부하 일람표
2. 가스터빈 및 발전기	∘ "Ⅰ-2 기력 · 가스터빈 발전설비(상용)"의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세부 종목을 준용한다. ∘ 비상부하 용량	∘ "Ⅰ-2 기력 · 가스터빈 발전설비(상용)"의 수검자 준비자료와 같다. ∘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 ∘ 비상부하 일람표
3. 전기저장장치	∘ "Ⅰ-4 전기저장장치"의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세부 종목을 준용한다. ∘ 비상부하 용량	∘ "Ⅰ-4 전기저장장치"의 수검자 준비자료와 같다. ∘ ESS 용량계산서 ∘ 비상부하 일람표
4. 종합시험	∘ 절연저항측정 ∘ 절연내력시험 ∘ 접지저항측정 ∘ 비상정지장치시험 (내연력 발전설비는 500㎾초과만 실시) ∘ 부하운전시험 ∘ 부하차단시험	

비고

1. 부하차단시험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부하운전시험은 고객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부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작회사 시험성적서의 부하시험 기록으로 갈음
   (2) 부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출력 가능한 최대부하로 하여 시험하되, 운전시간은 30분 이상 실시
3. 저압발전기의 절연내력시험은 절연저항 측정으로 갈음

Ⅰ-7 피뢰설비

검사항목	검사 세부종목	수검자 준비자료
1. 일반사항	∘ 공사계획신고서류 ∘ 일반규격 - 규격 확인 및 외관검사 ∘ 피뢰등급(레벨) 확인	∘ 공사계획신고서 ∘ 설계도면 ∘ 관계법령에 따른 등급(레벨) 확인서 ∘ 제품 시험성적서 ∘ 감리보고서 또는 점검기록표
2. 수뢰부		

∘ 배치	∘ 수뢰부의 조합 및 배치확인 ∘ 수평도체의 설치위치 확인 ∘ 코너 돌출부의 추가 수뢰부 유무 확인 ∘ 건축물 높이 60m 이상 부분 측뢰보호	
∘ 구성부재	∘ 수뢰부의 치수 및 재질 확인 ∘ 부식에 대한 고려여부 확인 ∘ 금속제 구성 부재의 치수 확인 ∘ 전기적 연속성 확보 확인	
∘ 부착·접속부	∘ 수뢰부의 부착상태 확인 ∘ 부품 및 접속확인	
3. 인하도선		
∘ 배치	∘ 인하도선의 적정성 확인 ∘ 인하도선의 평균간격 확인 ∘ 수평 환상도체의 배치 확인	
∘ 구성부재	∘ 인하도선의 치수 및 재질 확인 ∘ 부식에 대한 고려여부 확인 ∘ 금속제 구성부재의 치수 확인 ∘ 전기적 연속성 확인	
∘ 부착·접속부	∘ 인하도선의 설치상태 ∘ 부품 및 접속확인 ∘ 기계적 보호상태 확인	
4. 접지극시스템		
∘ 배치	∘ 접지극의 유형(A · B형 구조체 이용 접지극) 확인 ∘ 매설위치 및 깊이 적정성 ∘ 접지극간 최소길이, 접지극 최소면적 확인	
∘ 구성부재	∘ 접지극 수치, 재질확인 ∘ 접지도체 보호상태	
∘ 접지저항	∘ 접지저항 확인	

Ⅰ-8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외관	∘ 전선 굵기, 세기, 이격거리 및 높이	∘ 설계도면 ∘ 충전장치 시험성적서(KC 인증

	∘ 전선 접속 상태 ∘ 충전부분의 노출 여부 ∘ 개폐기 및 차단기 시설 상태 ∘ 지락차단장치 시설 상태 ∘ 계측장치 시설 상태 ∘ 위험표시상태 ∘ 전용표지 여부 ∘ 조명설비 시설 상태 ∘ 충전장치 설치장소의 적정성 ∘ 접지극 콘센트 사용 여부 ∘ 방호장치 시설상태 ∘ 설치위치 적정성	대상 이외 충전장치에 한함) ∘ 감리보고서 또는 점검기록표
2. 접지시스템	∘ 접지시설 유지상태 ∘ 접지시스템별 접지저항 측정	
3. 절연저항	∘ 모선, 배선, 전선로 ∘ 충전장치	
4. 보호장치	∘ 과전류차단장치 ∘ 지락차단장치 ∘ 비상정지장치	
5. 동작시험	∘ 충전시스템 정상동작	
6. 기타	∘기타 검사기준 적합 여부	

Ⅱ. 정기검사

Ⅱ-1 전기수용설비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외관	∘ 전선 굵기, 세기, 이격거리 및 높이 ∘ 지지물의 경간, 이도 및 지지금구류 ∘ 애자련 검사 ∘ 전선 접속상태 ∘ 지중전선로 직선 접속부 및 단말 부분 ∘ 접지시설 유지상태 ∘ 아크발생기구 이격거리 ∘ 충전부분 방호 및 이격거리 ∘ 개폐기 및 차단기 개폐 및 동작상태 ∘ 지락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 ∘ 기기의 노후, 변형 및 조작상태 ∘ 기계 · 기구 보호 장치 ∘ 계측장치 및 공기압축기 시설상태 ∘ 보호울타리 및 위험표시상태 ∘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시설	∘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변압기 점검기록표

	∘ 감시 및 조작에 필요한 조명시설 ∘ 특고압 전로의 상별표시상태 ∘ 전력휴즈 용량 및 설치상태 ∘ 비상전원 시설상태 ∘ 건물의 검사항목 - 누수, 습기로 인한 전기설비 손상여부 - 조작 장애물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적정성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
2. 접지저항 측정	∘ 접지시스템별 접지저항 측정 ∘ 매설지선 시설상태 ∘ 기타 기술기준에 적합여부	
3. 절연저항 측정	∘ 모선, 배선, 전선로 및 기기 ∘ 변압기, 발전기 등 ∘ 케이블 ∘ (부분방전 측정)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누설전류 측정) ∘ (SF_6가스 수분 측정) ∘ (SF_6가스 순도 측정) ∘ (SF_6가스 SO_2 측정) ∘ (SF_6가스 누기 측정)	∘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
4. 절연내력 시험	∘ 변압기 및 발전기 등 기계기구 ∘ 케이블 등 ∘ 모선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기, 차단기 ∘ (부분방전 측정)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누설전류 측정) ∘ (SF_6가스 수분 측정) ∘ (SF_6가스 순도 측정) ∘ (SF_6가스 SO_2 측정) ∘ (SF_6가스 누기 측정)	∘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
5. 절연유 시험 및 측정	∘ 내압시험 ∘ 산가측정 ∘ (절연유가스 분석)	
6. 보호장치 시험	∘ 과전류차단장치 ∘ 지락차단장치 ∘ 변압기 보호장치 - 경보장치 및 차단장치	

	- 계측장치 ◦ 공기압축 장치 - 공기압축기 용량 및 동작상태 - 안전밸브 - 공기탱크압력 회복장치 - 수압시험검사 ◦ 전력용콘덴서 또는 분로리액터 - 경보장치 및 차단장치 ◦ 보호장치 특성시험 - 최소동작시험 - 한시특성시험 - 연동시험 ◦ 전선로 보호장치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7. 계측장치 설치상태	◦ 주요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 특고압변압기의 온도 ◦ 공기압축기 압력계 ◦ (전원품질 분석)	◦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8. 전선로	◦ 외관검사 - 전선로 각도에 따른 지지물설치상태 - 전선로 지상고, 이도 및 경간 - 콘크리트주, 목주, 지선, 전선 및 가공지선의 설치상태 - 애자련 및 지지물 설치상태 - 전선의 이격거리 - 직선접속부 및 단말부분 변형 - 유입케이블의 누유여부 및 가압장치 - 지중함의 환기장치 및 배수 - 지중전선로내의 조명설비 ◦ 가공전선로 시험검사 - 접지저항 측정 - 절연저항 측정 - 보호장치 및 동작상태 ◦ 지중전선로 시험검사 - 접지저항 측정 - 절연저항 측정 - 보호장치 및 동작상태 - 가압장치 시험	
	◦ (부분방전 측정)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
9. 제어회로 동작 및 기기조작시험	◦ 차단기관련 시험검사 - 개폐동작시험 - 인터록시험	

	∘ 수전설비와 발전설비의 연동시험 ∘ 종합 연동시험	
10. 전기설비 유지관리	∘ 전기설비 유지관리상태 - 변압기별 최대전력 대비 용량 적정성 - 변압기별 상별 불평형률 적정성 - 전기실 주변온도 적정성 - 자체 점검결과 이상개소 개선여부 - 기타 전기설비 유지관리 상태 적적성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별지에 따른 점검 기록표 - 자체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 증빙자료
11.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검사기준에 적합여부	

비고 : 검사세부 종목 중 ( ) 종목은 무정전검사에 적용

Ⅱ-2 기력 · 가스터빈 발전설비(상용)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터빈	∘ 규격확인 ∘ 터빈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 윤활유펌프시험(AC, DC) ∘ 발전기밀봉유펌프시험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베어링 출구 윤활유 고온도 정지시험 ∘ 스러스트 베어링 마모 정지시험 ∘ 복수기 진공도 저하 정지시험 ∘ 배기증기 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비상조속기 시험(과속도 정지) ∘ 밸브개폐 시험(주증기 정지밸브, 증기 조절밸브, 재열증기 정지밸브, 재열증기 조절밸브) ∘ 터빈 진동측정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점화 불량시험 ∘ 고진동 정지시험 ∘ 연료가스 저압력 정지시험	∘ 터빈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터빈 윤활장치 도면 ∘ 조속기 계통도면 ∘ 조속기 유압유 계통도면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계기교정 - 경보회로
2. 상용발전기	∘ 발전기 일반규격 - 규격확인 및 외관검사 ∘ 발전기 본체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보호장치시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 시험	∘ 발전기 및 부대설비규격서 ∘ 단선결선도 ∘ 발전기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수소가스 및 고정자 냉각수 계통 도면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수소가스 압력 및 순도

	- 고정자냉각수예비펌프 자동 기동 시험 - 수소가스압력 및 순도 시험 ◦ 제어 및 경보장치 시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계측장치 - 경보장치 - 제어장치 - 상회전 시험 - 동기 검정장치 - 여자기 및 자동전압 조정기 ◦ 부대시설검사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접속 상태 및 상표시 - 위험표시 ◦ 소내 모선 절체시험 - 상회전 및 Loop 시험 - 절체시험(수동, 자동)	- 보호장치 및 계전기 - 자동전압조정기 - 절연저항 - 계기교정 - 경보회로 - 부대설비 - 접지저항
3. 변압기	◦ 규격 확인 및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 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 ◦ 제어 및 경보장치시험 ◦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보호장치 및 부대설비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절연유내압 - 절연유유출방지시설 유지 상태
4. 차단기	◦ 규격 확인 및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접지 시설상태 ◦ 절연저항측정 ◦ 제어회로 및 계측장치시험 ◦ 절연유내압(OCB에 한함)시험 ◦ 상회전 및 Loop 시험 ◦ 개폐표시 상태 확인 ◦ 부대시설검사	◦ 시퀀스 도면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접지저항 - 절연저항 - 절연유 내압(OCB에 한함)
5. 접지설비	◦ 접지종별 상태확인 (변경공사 포함) ◦ 접지측정(단독, 공통 · 통합접지)	◦ 접지설계 내역 및 시공 도면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접지저항
6. 부대설비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울타리, 담 등의 시설 상태 ◦ 위험표시 및 상 표시	

7. 공해방지설비 (발전설비와 연계된 공해방지설비에 한함)	∘ 사업용전기설비의 세부검사내용을 준용한다.	∘ 사업용전기설비의 수검자 준비자료를 준용한다.
8. 종합시험	∘ 종합연동시험 ∘ 출력 가능한 부하운전시험 (기력 : 4시간, 가스터빈 : 2시간) - 대기분야(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	∘ 종합 인터록 도면 ∘ 출력기록지

Ⅱ-3 내연력 발전설비(상용)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내연기관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 연료유 압력저하 시험 - 연료유 필터 차압 상승 시험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베어링 윤활유 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냉각수 고온도 정지시험 - 비상조속기 시험 - 실린더 릴리이프밸브 - 크랭크실 릴리이프밸브	∘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윤활장치 도면 ∘ 조속기 계통도면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계기교정 - 경보회로 - 실린더 및 크랭크실 릴리이프밸브
2. 발전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및 외관검사 ∘ 발전기 본체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측정 ∘ 보호장치검사 - 절연저항 측정 - 제어 및 경보장치 시험 - 상회전 시험 - 동기 검정장치 - 전압조정기 시험 ∘ 부대시설검사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 접속상태 및 상 표시 - 축전지 및 충전장치 ∘ 자동기동 시험 ∘ 부하차단시험 ∘ 부하운전시험	∘ 발전기 및 부대설비규격서 ∘ 발전기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보호장치 및 계전기 - 자동전압조정기 - 절연저항 - 계기교정 - 경보회로 - 부대설비 - 접지저항
3. 종합시험	∘ 종합연동시험 ∘ 최대 가능출력 부하운전(2시간) 시험	∘ 출력 기록지 ∘ 종합 인터록 도면

- 대기분야(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	◦ 출력기록지

비고 : 계통에 연계하여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포함

Ⅱ-4 수력 · 풍력 · 연료전지 · 태양광 · 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사업용 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을 준용한다.

Ⅱ-5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내연기관 및 발전기	◦ 외관검사 - 누유, 누수여부 - 접지시공상태 - 배기관의 적정여부 - 연료계통의 적정여부 - 급수시설의 적정여부 - 각종 지시계기의 시설 여부 - 상용전원과의 절체방법 -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설치상태 - 공기압축시설의 적정여부 - 환기시설의 적정여부 - 배전반의 설치상태 및 접지시공여부 - 차단기의 용량 및 설치 상태 등의 적정여부 - 변류기 등의 변성기 비율 또는 배율의 적정여부 -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방식의 적정여부 - 사용전선의 적정여부 - 윤활유 계통의 적정여부 - 보호설비의 적정여부	◦ 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
2. 가스터빈 및 발전기	◦ "Ⅱ-2 기력 · 가스터빈 발전설비(상용)"의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세부 종목을 준용한다.	◦ "Ⅱ-2 기력 · 가스터빈 발전설비(상용)"의 수검자 준비자료와 같다. ◦ 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
3. 전기저장장치	◦ "Ⅱ-4 전기저장장치"의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세부 종목을 준용한다.	◦ "Ⅱ-4 전기저장장치"의 수검자 준비자료와 같다. ◦ 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
4. 종합시험	◦ 절연저항측정 ◦ 절연내력시험 ◦ 접지저항측정 ◦ 비상정지장치시험(내연력 발전설비는	

	500kW초과만 실시) ◦ 부하운전시험 ◦ 부하차단시험	
5. 발전기 용량	◦ 발전기용량 적정성	◦ 발전기점검기록표 ◦ 발전기용량계산서 ◦ 부하일람표

비고 : 부하운전시험은 고객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발전기 2차측에 설치되어있는 출력 가능한 최대부하로 실시한다.
2. 부하운전시간은 30분 이상 실시

Ⅱ-6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외관	◦ 전선 굵기, 종류, 이격거리 및 높이 ◦ 전선 접속 상태 ◦ 충전부분의 노출 여부 ◦ 개폐기 및 차단기 시설 상태 ◦ 지락차단장치 시설 상태 ◦ 연장케이블 사용여부 ◦ 기기의 노후, 변형 및 조작상태 ◦ 발청,누수,녹발생 여부 ◦ 계측장치 시설 상태 ◦ 위험표시상태 ◦ 전용표지 여부 ◦ 접지극 콘센트 사용 여부 ◦ 충전케이블 유지상태 ◦ 커넥터균열,파손 여부 ◦ 방호장치 시설상태	◦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2. 접지시스템	◦ 접지시설 유지상태 ◦ 접지시스템별 접지저항 측정	
3. 절연저항	◦ 모선, 배선, 전선로 ◦ 충전장치	
4. 보호장치	◦ 과전류차단장치 ◦ 지락차단장치 ◦ 비상정지장치 ◦ 커넥터 인터록	
5. 동작상태	◦ 충전시스템 정상 동작여부	

6. 운영환경	ㅇ 충전설비 유지관리상태 ㅇ 소화설비 비치 상태 ㅇ 환기설비 시설상태 ㅇ 보호잠금장치 정상동작 여부 ㅇ 충전장치 설치장소 및 공간의 적정성 ㅇ 조명설비 시설 상태	
7. 기타	ㅇ 기타 검사기준 적합 여부	

[별표 8]

시험성적서

1. 확인대상 품목	(1) 변압기 (2) 차단기 (3) 보호계전기류 (4) 보호설비류 (5) 피뢰기류 (6) 변성기류 (7) 개폐기류 (8) 콘덴서, 모터, 기동기,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 (9) 발전설비 (10) 상기 이외의 전기기계기구와 보호 장치
2. 확인방법	가.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와 고압이상의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는 국내생산품과 수입품 모두 동일하게 국내 공인기관에서 형식시험을 확인하고 발행한 검수시험성적서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작회사 자체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품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품 (3)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고시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이 면제된 제품 나. 다음 각호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참고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1) 전기산업진흥회 국내 미생산품 판정위원회에서 확인받은 제품 (2) 개발품, 수리품, 사용중 제품 (3)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시험이 불가능한 품목 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성적서를 확인한다. (1) 제작회사 자체 시험성적서 (가) 구내배전설비 및/또는 발전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사용전압 1만[V] 미만의 변성기, 개폐기, 피뢰기, 변압기 (나) 30[kV] 이상 옥내 · 옥외형 기중형 단로기, 접지단로기 (다) 50[kV] 이상 초고압변성기, 초고압피뢰기, 대용량콘덴서, 리액터, 조상설비, 접속재 (라) 케이블, 콘덴서, 모터 및 기동기, 20[kV]급 케이블 접속제 이외의 케이블 접속제, 원동력 설비가 회전기인 발전기(내부에

	내장된 개별기기 포함) (2) 초고압 · 대용량 · 신재생 전기설비의 품질보증이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조립(차단기, 개폐기, 접지개폐기, 전압검출기, 변성기, 피뢰기, 접속재 등) 전기설비는 제조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으로 제조시설에서 검사기관이 입회하고 관련 기록을 제출받아 확인된 성적서 (가) 가스절연개폐장치 · 설비 (나) 발전기용 차단설비,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로 한전에 연계되는 발전설비 등 (다) 초고압변압기, 대용량변압기, 전기로 변압기 등 특수목적의 변압기 설비 라. 기타 제품의 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자체 표준규격에 따라 확인한 고압이상 전기기계 · 기구에 대해서는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전선로 승압 및 기타의 사유로 공급한 제품은 자체 발행한 청구 및 불출증을 확인한다. (2) 복합조립기기(냉동기, 패드변압기, 패드스위치)는 동체 단일제품으로 취급하여 검수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마. '가'에도 불구하고 전시 · 사변 등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입 전기기계 · 기구에 대한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해외출장 검수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1) 한국인정기구운영요령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공인기관 검수시험성적서 (2) 제조사가 제품 규격에 따른 검수시험과 동일한 항목으로 시험한 자체시험성적서. 다만, 그 시험과정을 검사기관이 원격 입회하고 관련기록을 제출받아 확인된 성적서
3. 시험 · 인증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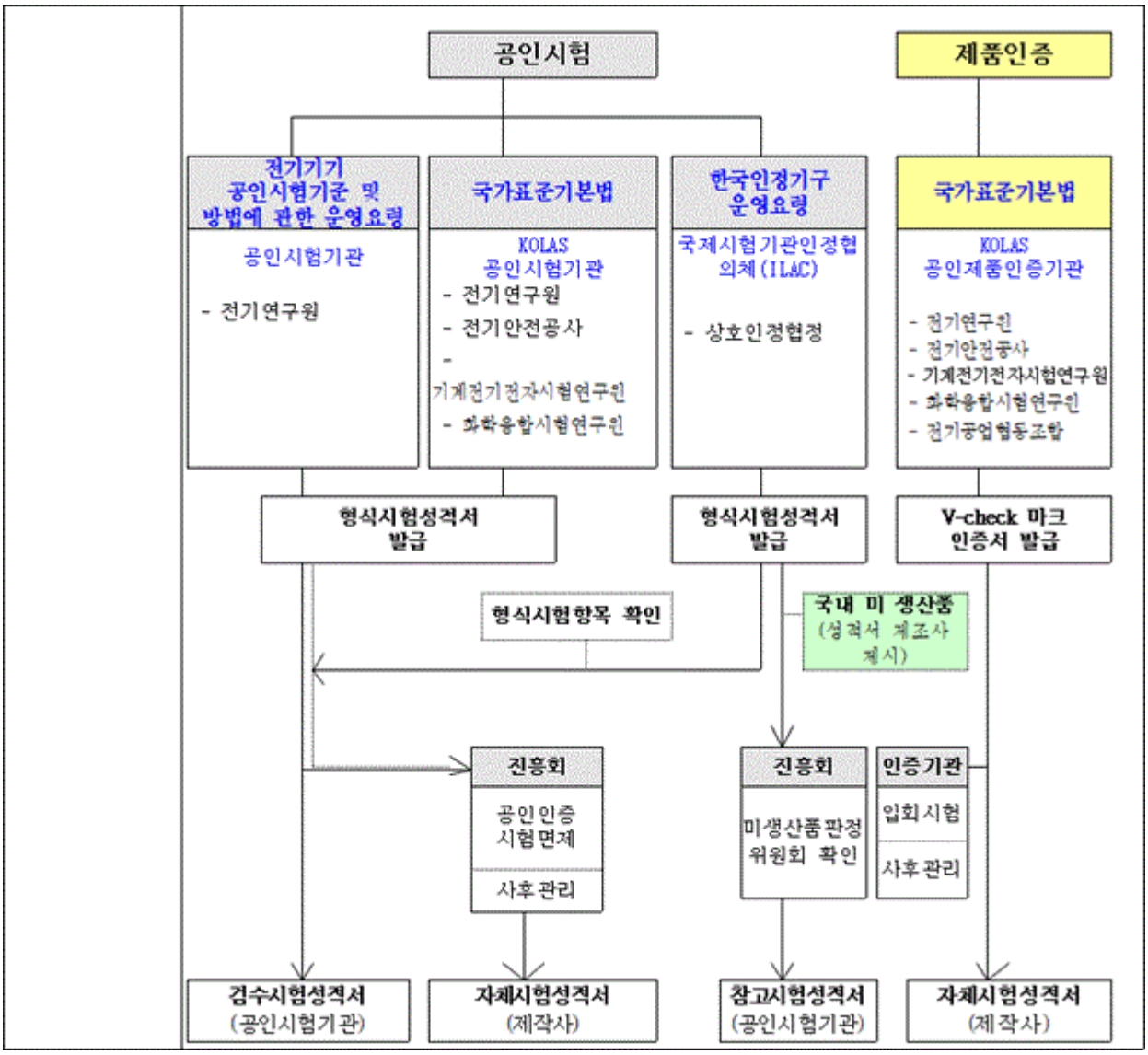
공인시험
제품인증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운영요령
공인시험기관
- 전기연구원
국가표준기본법
KOLAS 공인시험기관
- 전기연구원
- 전기안전공사
-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국제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
- 상호인정협정
국가표준기본법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 전기연구원
- 전기안전공사
-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전기공업협동조합
형식시험성적서 발급
형식시험성적서 발급
V-check 마크 인증서 발급
형식시험항목 확인
국내 미 생산품 (성적서 제조사 제시)
진흥회
공인인증 시험면제
사후관리
진흥회
미생산품판정 위원회 확인
인증기관
입회시험
사후관리
검수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자체시험성적서 (제작사)
참고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자체시험성적서 (제작사)

[별표 9]

사업용전기설비 검사항목

Ⅰ. 사 용 전 검 사

Ⅰ-1 수력설비(양수 및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포함)

□ 제1공정

∘ 댐 축조

- 완성후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
  ·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 완성후의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
  · 기초지반에 댐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고자 할 때
  · 축조한 댐이 완성후 댐 높이의 1/2(완성후 높이 30m 이상인 댐에 있어서는 1/3 및 2/3)에 달하였을 때
  · 댐의 전부나 일부를 유수의 저수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댐 기초지반	∘ 기초지반상태 및 처리 ∘ 기초지반의 수밀시험	∘ 공사계획 인가(신고)서 ∘ 관련 시방서 ∘ 댐 기초 도면 ∘ Grout Hole) 배치도 ∘ 지질조사 보고서 ∘ 기초지반시험 성적서 ∘ 감리보고서
2. 댐 축조 및 제체	∘ 축조재료 ∘ 시공상태 ∘ 계측장치 설치상태 ∘ 차수 및 지수 ∘ 배합(콘크리트댐의 경우)	※ 콘크리트 댐 ∘ 공사계획 인가(신고)서 ∘ 관련 시방서 ∘ 계측장치 설치도 ∘ 댐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 콘크리트 재료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 배합설계 성적서 ∘ 현장콘크리트 품질시험 성적서 ∘ 감리보고서 ※ 사력, 록필(Rock Fill) 댐 ∘ 공사계획 인가(신고)서 ∘ 관련 시방서 ∘ 계측장치 설치도 ∘ 댐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 재료시험 성적서

		∘ 다짐시험 성적서 ∘ 감리보고서
3. 댐 담수전	∘ 담수계획 및 담수시 홍수 처리계획 ∘ 담수지내의 상황 ∘ 축조재료 ∘ 시공상태 ∘ 계측장치 설치상태 ∘ 차수 및 지수 ∘ 배합 (콘크리트댐의 경우) ∘ 가배수로 및 댐내 배수로의 폐쇄 상태 ∘ 취수설비 설치상태 ∘ 여수로의 설치상태	∘ 공사계획 인가(신고)서 ∘ 저수지 평면도 ∘ 수문 관련도면 ∘ 여수로 및 취수설비 도면 ∘ 담수계획서 ∘ 가배수로 폐쇄도 및 계획서 ∘ 수문 재료시험 성적서 ∘ 감리보고서 ※ 콘크리트 댐 ∘ 공사계획 인가(신고)서 ∘ 관련 시방서 ∘ 계측장치 설치도 ∘ 댐 평면도 및 종·횡 단면도 ∘ 콘크리트 재료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 배합설계 성적서 ∘ 현장콘크리트 품질시험 성적서 ※ 사력, 록필(Rock Fill) 댐 ∘ 공사계획 인가(신고)서 ∘ 관련 시방서 ∘ 계측장치 설치도 ∘ 댐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 토질시험 성적서 ∘ 관리시험 성적서
4. 해양에너지 기초 구조물	∘ 기초지반상태 및 처리 ∘ 축조재료 ∘ 시공상태 ∘ 계측장비 설치상태 ∘ 차수 및 지수 ∘ 배합(콘크리트 경우) ∘ 부식방지 상태	∘ 관련시방서 ∘ 재료시험성적서 ∘ 구조계산서 ∘ 지질조사보고서 ∘ 기초지반시험성적서 ∘ 계측장치 설치도 ∘ 기초구조물도면 ∘ 부식방지 시방 절차서 ∘ 감리보고서

□ 제2공정

∘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하였을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압력 도수로 터널	∘ 터널 통과부의 지질상태	∘ 공사계획 인가(신고)서

	◦ 용수, 층리, 균열 등의 처리 상태 ◦ 지보공의 재료, 사용구간, 간격 ◦ 작업터널, 위치, 종류, 길이, 내경 ◦ 굴착방법 ◦ 콘크리트 ◦ 철근의 재질 및 규격 ◦ 내경, 관 재질, 두께, 접합 상태 ◦ 침사지	◦ 관련 시방서 ◦ Grout Hole 배치도 ◦ 도수로 평면도 및 종단면도(작업터널 포함) ◦ 지질조사 보고서 ◦ 터널 구조 계산서 ◦ 수리 계산서 ◦ 재료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 배합설계 성적서 ◦ 현장 콘크리트 품질시험 성적서 ◦ 감리보고서

□ 제3공정

◦ 수압관로를 지하에 매설하고자 할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수압관로 터널	◦ 터널 통과부의 지질 상태 ◦ 절리, 균열 등의 처리 및 보강상태 ◦ 작업터널, 위치, 종류, 길이, 내경 ◦ 지보공의 재료, 사용구간, 간격 ◦ 콘크리트 ◦ 철재의 재질 및 규격 ◦ 수압철관 설치상태 ◦ Head Tank 및 Surge Tank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관련 시방서 ◦ Grout Hole 배치도 ◦ 수압관로 평면도 및 종단면도 (작업터널 포함) ◦ 지질조사 보고서 ◦ 수리 계산서 ◦ Surge Tank, Head Tank) 구조계산서 ◦ 재료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 배합설계 성적서 ◦ 현장 콘크리트 품질시험 성적서 ◦ 감리보고서

□ 제4공정

◦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발전설비표	◦ 발전설비표 작성	
2. 수차 및 발전기 조립설치 상태확인 (해양에너지 한함)	◦ 규격확인 ◦ 베어링 간극 ◦ 고정부와 회전부 간극 ◦ 축 밀봉장치 간극 ◦ 발전기 공극	◦ 수차 규격서 ◦ 수차 구조도 ◦ 베어링 간극측정시험 성적서 ◦ 고정부와 회전부간의 간극

	◦ 주요기자재 재료검사	측정시험 성적서 ◦ 축 밀봉장치 간극측정시험 성적서 ◦ 발전기 공극측정시험 성적서	
3. 수차(펌프)			
◦ 일반규격 ◦ 수차(펌프)시험	◦ 규격확인 ◦ 과속도 정지시험 ◦ 유압장치 유압저하시험 ◦ 베어링 고온도 정지시험 ◦ 발전기 내부고장 정지시험 ◦ 수동 정지 및 복귀 ◦ 자동 기동 및 정지시험 ◦ 발전 및 양수절환시험 ◦ 안전밸브 동작시험 ◦ 유압(공기압) 회복장치시험 ◦ 압력계 설치 ◦ 정격출력에서의 부하 차단(입력)시험 ◦ 수문 동작시험 ◦ 댐 · 수로의 안전시설 ◦ 지하 배수시설 ◦ 진자판 허용각도 정지시험 ◦ 진동수주실 공기 과도 압력시험 ◦ 수차입구 공기 과도 압력시험	◦ 수차제어 계통도 ◦ 수차(펌프) 트립 인터록 도면 ◦ 조속기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 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안전밸브시험 성적서 ◦ 출력 기록지	
4. 발전기			
◦ 일반규격 ◦ 본체 ◦ 보호장치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발전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단선결선도 ◦ 발전기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제품 시험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자동전압조정기시험 성	

		적서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계측장치 ◦ 경보장치 ◦ 제어장치 ◦ 상회전시험 ◦ 동기 검정장치 ◦ 여자기 및 자동전압 조정기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부대설비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 접속상태 및 상표시 ◦ 위험표시 ◦ 중성점 접지장치		
◦ 소내모선절체	◦ 상회전 및 Loop시험 ◦ 절체시험 (수동, 자동)		
5. 변압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변압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절연유 내압시험 ◦ Tap 절환장치시험 ◦ 상회전 및 Loop시험 ◦ 충전시험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절연유 유출방지 시설도면 ◦ 제품 시험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경보장치		

	∘ 제어장치 ∘ 계측장치	
∘ 부대설비	∘ 절연유 유출방지 시설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중성점 접지장치 ∘ 접지 시공상태 ∘ 위험표시 ∘ 상표시 ∘ 울타리, 담 등의 시설상태	
6. 차단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차단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제품 시험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OCB)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절연유 내압시험(OCB) ∘ 상회전 및 Loop시험 ∘ 충전시험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결상 보호장치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개폐기 인터록 ∘ 개폐표시 ∘ 조작용 압축장치 ∘ 가스절연장치 ∘ 계측장치	
∘ 부대설비	∘ 외함 접지시설 ∘ 상표시 및 위험표시 ∘ 계기용 변성기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7. 전선로(모선)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전선로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전선로	∘ 외관검사	

(가공, 지중, GIB, 기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내력시험 ◦ 충전시험	◦ 단선결선도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시퀀스 도면 ◦ 제품 시험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위험표시 ◦ 울타리, 담 등의 시설상태 ◦ 상별 및 모의모선 표시상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감리보고서
8. 접지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접지설계 내역 및 시공도면
◦ 접지	◦ 접지 공사내역 ◦ 접지저항 측정 ◦ 외관검사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 감리보고서
9. 설비정착부	◦ 정착부 육안검사 ◦ 정착부 설치상태 ◦ 정착부 재질 및 내진설계강도 ◦ 앵커볼트 토크값	◦ 정착부 목록 ◦ 정착부 내진 설계강도 계산서 ◦ 정착부 자재 성적서 ◦ 정착부 시공도면 및 절차서 ◦ 용접부 비파괴검사 성적서
10. 비상발전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발전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발전기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제품 시험성적서 ◦ 보호계전기 결선도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자동전압조정기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제어 및 경보장치	◦ 상회전 및 동기 검정장치시험 ◦ 전압조정기시험 ◦ 계측장치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 접속상태 및 상표시 ∘ 위험표시	
∘ 내연기관 안전장치 시험	∘ 연료유 압력저하 시험 ∘ 연료유필터 차압 상승 시험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베어링 윤활유 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냉각수 고온도 정지시험 ∘ 비상조속기 (과속도)	∘ 윤활유장치 도면 ∘ 조속기계통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자동기동시험 ∘ 부하운전시험		
11.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12. 부하운전시험	∘ 정격출력으로 부하운전 (4h)시험 [단, 해양에너지는 최대 가능출력으로 실시하고 조위 (유속), 파력 (파고·주기) -출력곡선과 비교] ∘ 부하운전시험의견	∘ 출력 기록지 ∘ 조위 (유속) 표 ∘ 파력 (파고 · 주기) 표

Ⅰ - 2 기력설비

□ 제1공정

∘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의 설치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증기터빈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 (신고) 서 ∘ 증기터빈 규격서
2. 증기터빈 하반부 콘크리트기초	∘ 기초지반 ∘ 철근 재질 및 규격 ∘ 시멘트 종류 및 품질 ∘ 골재의 품질 ∘ 콘크리트 배합 설계 ∘ 현장 콘크리트 품질 ∘ 콘크리트 시공방법 ∘ 철근 조립 · 설치 상태 ∘ 치수 및 외관	∘ 설계기준 및 시방서 ∘ 기초 및 구조물 도면 ∘ 기초지반시험 성적서 ∘ 철근재료시험 성적서 ∘ 시멘트시험 성적서 ∘ 골재관리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 배합설계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 품질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 타설 전 · 후 점검표
3. 증기터빈 및 발전기 조립설치상태	∘ 베어링 간극 ∘ 고정부와 회전부 간의 간극 ∘ 축 밀봉장치 간극 ∘ 발전기 공극	∘ 터빈 구조도 ∘ 베어링 간극측정 성적서 ∘ 고정부와 회전부 간의 간극 측정 성적서

	◦ 축계평형	◦ 축 밀봉장치 간극측정 성적서 ◦ 발전기 공극측정 성적서 ◦ 축계평형 측정 성적서

□ 제2공정

◦ 연료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매설할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연료가스용 연료 연소설비의 일반규격 2. 안전장치 설치 및 동작시험	◦ 규격확인 ◦ 연료가스 차단밸브 입구 저압력 경보시험 ◦ 연료가스 차단밸브 출구 저압력 정지시험 ◦ 연료가스의 치환 설비 및 누설 ◦ 연료가스배관 표시상태 ◦ 부식방지 상태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연료가스용 연료연소설비 규격서 ◦ 연료가스용 연료연소설비의 구조도 ◦ 안전장치 트립 인터록 도면 ◦ 안전밸브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식방지장치 시공 절차서

□ 제3공정

◦ 보일러의 본체조립이 완성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보일러 일반규격 2. 보일러 안전밸브 설치 및 동작시험 3. 보조기기 안전밸브 설치 및 동작시험	◦ 규격확인 ◦ 안전밸브 설치 ◦ 안전밸브 분출 · 정지압력 ◦ 안전밸브 누설 여부 ◦ 안전밸브 분출압력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보일러 규격서 ◦ 보일러 구조도 ◦ 안전밸브 설치도면 ◦ 안전밸브시험 성적서

□ 제4공정

◦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발전설비표 2. 보일러 팽창량 3. 보일러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시험(드럼형보일러, 기동용보일러)	◦ 발전설비표 작성 ◦ 노 내 퍼지시험 ◦ 버너 연료 압력저하 정지시험 ◦ 제어공기 압력저하 정지시험 ◦ 노 내압 불평형 정지시험 ◦ 드럼 고저수위 정지시험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발전설비 개요 ◦ 보일러 팽창량 설계도면 ◦ 보일러 트립 인터록 도면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보조기기 인터록시험 성적서

4. 보일러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시험 (관류형 보일러)	◦ 주증기 고/저온도 정지시험 ◦ 압입 송풍기 정지시험 ◦ 유인 송풍기 정지시험 ◦ 수동정지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드럼수위 계기 상태확인 ◦ 노 점검문 상태확인 ◦ 노 방압장치 상태확인 ◦ 가스화로의 치환설비 ◦ 연료가스배관 표시상태 ◦ 노 내 퍼지시험 ◦ 버너 연료 압력저하 정지시험 ◦ 제어공기 압력저하 정지시험 ◦ 노 내압 불평형 정지시험 ◦ 주증기 고/저온도 정지시험 ◦ 압입 송풍기 정지시험 ◦ 유인 송풍기 정지시험 ◦ 재열 증기 고온도 정지시험 ◦ 절탄기 입구 저유량 정지시험 ◦ 총 공기 저유량 정지시험 ◦ 과열기 출구 고압력 정지시험 ◦ 수냉벽 출구 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 정지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노 점검문 상태확인 ◦ 가스화로의 치환설비 ◦ 연료가스배관 표시상태		
5. 탈황설비 ◦ 일반규격 ◦ 비상정지장치시험	◦ 규격확인 ◦ 비상댐퍼연동시험 - 탈황설비, 보일러 ◦ 소내모선 절환 ◦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탈황설비 규격서 ◦ 배연탈황설비 배기계통도 ◦ 계기교정 및 경보시험 성적서 ◦ 배연탈황설비 트립 인터록 도면 ◦ 배연탈황설비 단선결선도 ◦ 황산화물 배출량 자체 측정기록지	

6. 배연탈질설비 ∘ 일반규격 ∘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시험	∘ 규격확인 ∘ 탈질반응기 입구 가스온도 저하 ∘ 암모니아기화기 출구온도 저하 ∘ 암모니아 압력 저하 ∘ 탈질반응기 입구 댐퍼 동작 ∘ 유인 송풍기 정지시험 ∘ 보일러 연료 주 차단장치 정지시험 ∘ 수동정지 ∘ 소내모선 절환 ∘ 암모니아 저장탱크 안전밸브 ∘ 암모니아 가스 누설여부 ∘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탈질설비 규격서 ∘ 배연탈질설비 계통도 ∘ 계기교정 및 경보시험 성적서 ∘ 배연탈질설비 트립 인터록 도면 ∘ 배연탈질설비 단선결선도 ∘ 질소산화물 배출량 자체 측정기록지
7. 집진설비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추타장치 동작상태 확인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운전상태 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집진설비 규격서 ∘ 집진설비 계통도 ∘ 집진설비 단선결선도 ∘ 계기교정 및 경보시험 성적서 ∘ 집진설비 트립 인터록 도면
8. 증기터빈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시험	∘ 윤활유 펌프시험 (AC, DC)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스러스트 베어링 마모 정지시험 ∘ 복수기 진공도 저하 정지시험 ∘ 배기증기 고온도 정지시험 ∘ 발전기 내부고장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비상조속기시험 (기계식, 전기식 과속도정지) ∘ 조속기 작동범위시험 (저속도한, 고속도한) ∘ 밸브개폐시험 (주증기 정지밸브, 증기 조절밸브,	∘ 터빈 트립 인터록 도면 ∘ 터빈 윤활장치 도면 ∘ 조속기 유압유 계통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성적서

	재열증기 정지밸브, 재열증기 조절밸브) ∘ 베어링 과진동 정지시험 ∘ 증기터빈 진동측정(무부하)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파열판 설치상태	
9. 발전기		
∘ 일반규격 ∘ 본체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발전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단선결선도 ∘ 발전기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고정자 냉각수 예비펌프 자동 기동시험 ∘ 발전기 밀봉유 펌프시험 ∘ 수소가스 압력 및 순도시험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수소가스 및 고정자 냉각수 계통 도면 ∘ 제품 시험성적서 ∘ 수소가스 압력 및 순도 시험 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계측장치 ∘ 경보장치 ∘ 제어장치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자동전압조정기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발전기 밀봉유 계통도면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상회전시험 ∘ 동기 검정장치 ∘ 여자기 및 자동전압 조정기	
∘ 부대설비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 접속상태 및 상표시 ∘ 위험표시 ∘ 중성점 접지장치	
∘ 소내모선절체	∘ 상회전 및 Loop시험	

	◦ 절체시험 (수동, 자동)	
10. 변압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변압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절연유 내압시험 ◦ Tap 절환장치시험 ◦ 상회전 및 Loop시험 ◦ 충전시험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절연유 유출방지 시설도면 ◦ 제품 시험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경보장치 ◦ 제어장치 ◦ 계측장치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부대설비	◦ 절연유 유출방지 시설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중성점 접지장치 ◦ 접지 시공상태 ◦ 위험표시 ◦ 상표시 ◦ 울타리, 담 등의 시설상태	
11. 차단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차단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절연유 내압시험(OCB) ◦ 상회전 및 Loop시험 ◦ 충전시험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제품 시험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결상보호장치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OCB)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개폐기 인터록 ◦ 개폐표시 ◦ 조작용 압축장치 ◦ 가스절연장치 ◦ 계측장치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부대설비	◦ 외함 접지시설 ◦ 상표시 및 위험표시 ◦ 계기용 변성기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12. 전선로(모선)		
◦ 일반규격 ◦ 전선로(가공, 지중, GIB, 기타)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내력시험 ◦ 충전시험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전선로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단선결선도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시퀀스 도면 ◦ 제품 시험성적서
◦ 부대설비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위험표시 ◦ 울타리, 담 등의 시설상태 ◦ 상별 및 모의모선 표시상태 ◦ 물밑전선로 위치 표시상태 ◦ 물밑전선로 매설상태 ◦ 물밑전선로 보호설비 설치상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물밑전선로 경과지도 ◦ 물밑전선로 매설 점검기록서 ◦ 물밑전선로 보호설비 점검기록서 ◦ 감리보고서
13. 접지설비		◦ 접지설계 내역 및 시공도면
◦ 일반규격 ◦ 접지	◦ 규격확인 ◦ 접지 공사내역 ◦ 접지저항 측정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 외관검사	∘ 감리보고서
14. 비상발전기	∘ 수력발전소 비상발전기 검사항목에 준함	∘ 수력발전소 비상발전기 준비자료에 준함
15. 설비정착부	∘ 정착부 육안검사 ∘ 정착부 설치상태 ∘ 정착부 재질 및 내진설계 강도 ∘ 앵커볼트 토크값	∘ 정착부 목록 ∘ 정착부 내진 설계강도 계산서 ∘ 정착부 자재 성적서 ∘ 정착부 시공도면 및 절차서 ∘ 용접부 비파괴검사 성적서
16. 조속장치시험	∘ 정격출력에서의 부하차단 시험	∘ 조속기 특성시험 성적서 ∘ 출력 기록지
17.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18. 부하운전시험	∘ 정격출력으로 부하운전 (4h) 시험 ∘ 대기분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 ∘ 수질분야 (폐수) ∘ 부하운전시험의견	∘ 출력 기록지

Ⅰ－3 가스터빈설비 및 복합화력설비

□ 제1공정

∘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의 설치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가스터빈 및 공기압축기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서 ∘ 가스터빈 및 공기압축기 규격서
2. 가스터빈 하반부 콘크리트기초	∘ 기초지반 ∘ 철근재질 및 규격 ∘ 시멘트의 종류 및 품질 ∘ 골재의 품질 ∘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 현장 콘크리트 품질 ∘ 철근 조립 · 설치 상태 ∘ 치수 및 외관	∘ 기초 및 구조물 도면 ∘ 설계기준 및 시방서 ∘ 기초지반시험 성적서 ∘ 철근재료시험 성적서 ∘ 시멘트시험 성적서 ∘ 골재관리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 배합설계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 품질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 타설전 · 후 점검표
3. 가스터빈 및 발전기 조립설치 상태	∘ 베어링 간극 ∘ 고정부와 회전부간의 간극 ∘ 축 밀봉장치 간극 ∘ 발전기 공극 ∘ 축계평형	∘ 터빈 구조도 ∘ 베어링 간극측정 성적서 ∘ 고정부와 회전부간의 간극 측정성적서 ∘ 축 밀봉장치 간극측정 성적서

		∘ 발전기 공극측정 성적서 ∘ 축계평형 측정 성적서

□ 제2공정

∘ 연료가스용 연료 · 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매설할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연료가스용 연료, 연소설비의 일반 규격 2. 안전장치 설치 및 동작시험	∘ 기력발전소 연료가스용 연료, 연소설비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연료가스용 연료, 연소설비 준비자료에 준함

∘ 석탄가스화설비, 가스정제설비 및 연료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매설할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석탄가스화설비 일반규격 2. 안전장치 설치 및 동작시험	∘ 규격확인 ∘ 퍼지 인터록 시험 ∘ 산소-탄소 고비율 정지시험 ∘ 산소 고/저유량 정지시험 ∘ 가스화기 고/저압력 정지시험 ∘ 가스화기 슬래그 전/후 탭 차압 상승 정지시험 ∘ 가스화기 애뉼러 공간 고온도 정지시험 ∘ 혼합가스 냉각수 고/저온도 정지시험 ∘ 중압 스팀드럼 저수위 정지시험 ∘ 고압 스팀드럼 저수위 정지시험 ∘ 순환가스 압축기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석탄가스화설비 규격서 ∘ 석탄가스화설비의 구조도 ∘ 안전장치 트립 인터록 도면 ∘ 안전밸브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3. 가스 정제설비 일반규격 4. 안전장치 설치 및 동작시험	∘ 규격확인 ∘ 집진기 입구-출구 차압 상승경보 및 정지시험	∘ 가스정제설비 규격서 ∘ 가스정제설비의 구조도 ∘ 안전장치 트립 인터록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습식세척기 출구 고/저온도 정지시험 ∘ 가수분해 반응기 출구 고온도 정지시험 ∘ 압소버 출구 저압력 경보 및 정지시험 ∘ 혼합가스 포화기 고/저위 정지시험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제3공정

∘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발전설비표	∘ 발전설비표 작성	∘ 공사계획인가서 ∘ 발전설비 개요
2. 가스터빈비상정지 및 안전장치시험	∘ 윤활유 펌프시험(AC, DC)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베어링 출구 윤활유 고온도 정지시험 ∘ 배기가스 고온도 정지시험 ∘ 점화 불량시험 ∘ 비상조속기 시험(기계식, 전기식, 과속도 정지) ∘ 발전기 내부고장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조속기 작동범위시험(저속도한, 고속도한) ∘ 베어링 과진동 정지시험 ∘ 가스터빈 진동측정(무부하)	∘ 윤활유 계통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터빈 트립 인터록 도면 ∘ 조속기 유압유 계통도면
3. 발전기	∘ 기력발전소 발전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발전기 준비자료에 준함
4. 변압기	∘ 기력발전소 변압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변압기 준비자료에 준함
5. 차단기	∘ 기력발전소 차단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차단기 준비자료에 준함
6. 전선로(모선)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준비자료에 준함
7. 접지설비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준비자료에 준함
8. 설비정착부	∘ 정착부 육안검사	∘ 정착부 목록

	◦ 정착부 설치상태 ◦ 정착부 재질 및 내진설계 강도 ◦ 앵커볼트 토크값	◦ 정착부 내진 설계강도 계산서 ◦ 정착부 자재 성적서 ◦ 정착부 시공도면 및 절차서 ◦ 용접부 비파괴검사 성적서
9. 조속장치시험	◦ 기력발전소 조속장치 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조속장치 준비자료에 준함
10. 종합연동시험	◦ 기력발전소 종합연동시험 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종합연동시험 준비자료에 준함
11. 부하운전시험	◦ 기력발전소 부하운전시험 검사항목에 준함 (단, 정격출력으로 부하운전 (2h) 시험)	◦ 출력 기록지 ◦ 온도보정곡선

□ 제4공정

◦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의 설치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증기터빈 일반규격 2. 증기터빈 하반부 콘크리트기초 3. 증기 터빈 및 발전기 조립, 설치상태	◦ 기력발전소 증기터빈차실 하반부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증기터빈 차실하반부 준비자료에 준함

□ 제5공정

◦ 보일러 (배열회수보일러)의 본체조립이 완성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보일러 (배열회수보일러) 일반규격 2. 보일러 (배열회수보일러) 안전밸브 설치 및 동작시험 3. 보조기기 안전밸브 설치 및 동작시험	◦ 규격확인 ◦ 안전밸브 설치 ◦ 안전밸브 분출 · 정지압력 ◦ 안전밸브 누설 여부 ◦ 안전밸브 분출압력	◦ 공사계획인가서 ◦ 보일러 (배열회수보일러) 규격서 ◦ 보일러 (배열회수보일러) 구조도 ◦ 안전밸브 설치도면 ◦ 안전밸브시험 성적서

□ 제6공정

◦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발전설비표	◦ 발전설비표 작성	◦ 공사계획인가서 ◦ 발전설비 개요

2. 보일러(배열회수보일러) 팽창량		∘ 보일러(배열회수보일러) 팽창량 설계도면
3. 보일러(배열회수보일러, 기동용보일러)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시험	∘ 드럼 고/저수위 정지시험 ∘ 주증기 고온도 정지시험 ∘ 저압 드럼 압력 급강하율 정지시험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드럼 수위 계기 상태확인 ∘ 노 점검문 상태확인	∘ 보일러(배열회수보일러) 트립 인터록 도면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4. 탈황설비 ∘ 일반규격 ∘ 비상정지 시험	∘ 기력발전소 탈황설비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탈황설비 준비자료에 준함
5. 배연탈질설비 ∘ 일반규격 ∘ 비상정지 및 안전 장치시험 검사	∘ 기력발전소 배연탈질설비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배연탈질설비 검사준비자료에 준함
6. 증기터빈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시험	∘ 윤활유 펌프시험 (AC, DC)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스러스트 베어링 마모 정지시험 ∘ 복수기 진공도 저하 정지시험 ∘ 배기증기 고온도 정지시험 ∘ 발전기 내부고장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비상조속기시험(기계식, 전기식 과속도정지) ∘ 베어링 과진동 정지시험 ∘ 조속기 작동범위시험(고속도한, 저속도한) ∘ 밸브개폐시험(주증기 정지밸브, 증기 조절밸브, 재열증기 정지밸브, 재열증기 조절밸브) ∘ 증기터빈 진동측정(무부하) ∘ 보조기기 인터록시험	∘ 터빈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터빈 윤활장치 도면 ∘ 조속기 계통도면 ∘ 조속기 유입유 & 밀봉유 계통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7. 발전기	∘ 기력발전소 발전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발전기 준비자료에 준함
8. 변압기	∘ 기력발전소 변압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변압기 준비자료에 준함
9. 차단기	∘ 기력발전소 차단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차단기 준비자료에 준함

10. 전선로(모선)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준비자료에 준함
11. 접지설비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준비자료에 준함
12. 비상발전기	∘ 수력발전소 비상발전기 검사항목에 준함	∘ 수력발전소 비상발전기 준비자료에 준함
13. 설비 정착부	∘ 정착부 육안검사 ∘ 정착부 설치상태 ∘ 정착부 재질 및 내진설계 강도 ∘ 앵커볼트 토크값	∘ 정착부 목록 ∘ 정착부 내진 설계강도 계산서 ∘ 정착부 자재 성적서 ∘ 정착부 시공도면 및 절차서 ∘ 용접부 비파괴검사 성적서
14. 조속장치시험	∘ 정격출력에서의 부하차단 시험	∘ 조속기 특성시험 성적서 ∘ 출력 기록지
15.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16. 부하운전시험	∘ 정격출력으로 부하운전(2h)시험 ∘ 대기분야(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등) ∘ 수질분야(폐수) ∘ 부하운전시험의견	∘ 출력 기록지

Ⅰ- 4 내연력설비

□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내연력 설비표	∘ 내연력설비표 작성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내연설비 개요
2. 내연기관 일반규격	∘ 규격확인	∘ 내연기관 규격서 ∘ 내연기관 트립 인터록 도면
3. 내연기관 안전장치시험	∘ 연료유 저압력 정지시험 ∘ 연료유 필터차압 상승 정지시험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베어링 윤활유 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냉각수 고온도 정지시험	∘ 윤활유장치 도면 ∘ 조속기계통 도면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비상조속기시험(기계식, 전기식 과속도정지) ∘ 조속기 작동범위시험(고속도한, 저속도한)	
4. 엔진 릴리이프밸브 작동시험	∘ 실린더 릴리이프밸브 ∘ 크랭크실 릴리이프밸브	∘ 실린더 및 크랭크실 릴리이프밸브시험 성적서
5. 발전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발전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단선결선도 ∘ 발전기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제품 시험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자동전압조정기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계측장치 ∘ 경보장치 ∘ 제어장치 ∘ 상회전시험 ∘ 동기 검정장치 ∘ 여자기 및 자동전압 조정기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부대설비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 접속상태 및 상표시 ∘ 위험표시 ∘ 중성점 접지장치	
∘ 소내모선절체	∘ 상회전 및 Loop시험 ∘ 절체시험 (수동, 자동)	
6. 변압기	∘ 기력발전소 변압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변압기 준비자료에 준함
7. 차단기	∘ 기력발전소 차단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차단기 준비자료에 준함
8. 전선로(모선)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준비자료에 준함

9. 접지설비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준비자료에 준함
10. 설비 정착부	∘ 정착부 육안검사 ∘ 정착부 설치상태 ∘ 정착부 재질 및 내진설계 강도 ∘ 앵커볼트 토크값	∘ 정착부 목록 ∘ 정착부 내진 설계강도 계산서 ∘ 정착부 자재 성적서 ∘ 정착부 시공도면 및 절차서 ∘ 용접부 비파괴검사 성적서
11. 조속장치시험	∘ 정격출력에서의 부하차단 시험	∘ 조속기 특성시험 성적서 ∘ 출력기록지
12.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13. 부하운전시험	∘ 정격출력으로 부하운전 (2h)시험(단, 도서내연은 최대가능 출력으로 부하 운전시험) ∘ 부하운전시험의견	∘ 출력기록지

Ⅰ－5 풍력발전설비

□ 제작이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블레이드		
∘ 일반사항	∘ 제작시공법 ∘ 자재확인 ∘ 육안검사 ∘ 치수검사	∘ 제작절차서 ∘ 제작(치수)도면 ∘ 자재성적서
∘ 시험 및 평가	∘ 블레이드 열경화도 시험 ∘ 블레이드 무게(균일성) 검사 ∘ 블레이드 모멘트 검사 ∘ 블레이드 고정볼트검사	∘ 시험 및 검사 절차서 ∘ 시험기기 교정시험 성적서 ∘ 열경화도 시험 성적서 ∘ 무게 균일성 검사 시험 성적서 ∘ 블레이트 모멘트 검사 시험성적서 ∘ 고정볼트 시험성적서

2. 나셀		
∘ 일반사항	∘ 제작도면 ∘ 자재확인	∘ 풍력설비규격서 ∘ 나셀 제작 및 설치 도면
∘ 기계설비	∘ 육안검사 ∘ 나셀 조립상태 확인 ∘ 보조기기 설치상태 확인 ∘ 밸브류 동작시험 ∘ 펌프류 동작 및 성능시험 ∘ 종합운전시험	∘ 나셀 제작 및 설치 도면 ∘ 제어용 압유장치 도면 ∘ 보조기기 도면 ∘ 보조기기 시험성적서
∘ 전기설비	∘ 규격확인 ∘ 조립 및 정착상태 확인 ∘ 결선상태 확인 ∘ 접지상태 확인(본딩) ∘ 절연저항 측정 ∘ 접지연속성시험(본딩) ∘ 요잉시험 ∘ 피치제어시험	∘ 규격서 ∘ 제조사 자체시험성적서 ∘ 인증서 또는 국내공인기관 검수시험성적서(고압 이상) ∘ 단선결선도 ∘ 경보 및 비상정지 회로도 ∘ 접지도면 ∘ 평면도 및 측면도 ∘ 용량선정 검토서 ∘ 장비 교정성적서
3. 풍력타워		
∘ 타워 용접부	∘ 일반사항 - 용접시공법 - 자재확인 - 용접부 육안검사 ∘ 용접부 비파괴검사 - 시험방법 - 시험결과 평가	∘ 제작도 ∘ 자재성적서(Mill Sheet) ∘ 용접절차시방서(WPS) 및 용접절차인정기록서(PQR) ∘ 용접사 검정시험 기록서 ∘ 모재 및 용접부 강도 계산서 ∘ 비파괴검사부위 표시도면 ∘ 비파괴검사원 자격 ∘ 비파괴검사 절차서 ∘ 시험기기 교정시험 성적서 ∘ 비파괴검사 보고서
∘ 타워볼트	∘ 타워볼트 재질 ∘ 타워볼트 성능시험	∘ 볼트 도면 및 사양서 ∘ 자재성적서(Mill Sheet)

□ 기초 공사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기초지반	∘ 기초 Pile의 재료 및 규격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기초 Pile의 시공상태 ∘ 기초지반의 처리상태	∘ 기초의 지반 설계서 및 구조계산서, 시방서 ∘ Pile 재료 시험성적서
2. 기초 구조물	∘ 기초 구조물의 규격 ∘ 철근의 재질 및 규격 ∘ 골재의 품질 ∘ 콘크리트의 품질 ∘ 철골의 재질 및 규격 ∘ 철근의 조립 설치상태 ∘ 시공상태 ∘ 부식방지 상태	∘ Pile 시공 시험성적서 ∘ 지반처리 시험성적서 ∘ 설계서 및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 철근시험성적서 ∘ 골재시험성적서 ∘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슬럼프 공기량 시험성적서 ∘ 철골시험성적서 ∘ 용접시험성적서 ∘ 공정별 시공확인 성적서 ∘ 공정별 시공사진
3. 기초의 보호 시설	∘ 기초의 보호상태 ∘ 기초주변의 배수 처리상태	∘ 부식방지장치 시공 절차서 ∘ 감리보고서

□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풍력 설비표	∘ 풍력설비표 작성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풍력설비 개요
2. 풍력설비 일반규격	∘ 규격확인	∘ 풍력설비규격서
3. 풍력설비 비상정지 안전장치	∘ 수동비상정지 시험 ∘ 제어용 압유 고온도 정지 시험 ∘ 제어용 압유 저압력 정지 시험 ∘ 기어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기어윤활유 고온도 정지시험 ∘ 터빈 베어링 고온도 정지 시험 ∘ 컷 아웃 풍속 정지시험 ∘ 제어용 압축공기 저압력 정지시험 ∘ 나셀 고진동 정지시험 ∘ 과속도 정지시험(발전기측) ∘ 과속도 정지시험(터빈측) ∘ 화재방호설비 설치상태 ∘ 베어링 과진동 정지시험 ∘ 터빈 진동측정	∘ 풍차 트립 인터록 도면 ∘ 제어용 압유장치 도면 ∘ 풍차 제어계통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타워구조물 성적서 ∘ 볼트체결 절차시방서 및 기록표 ∘ 부식방지장치 시공 절차서 ∘ 블레이드 시험 성적서

	∘ 터빈 및 타워구조물 설치 상태 ∘ 블레이드 재질 및 인장강도 ∘ 볼트 토크 상태 ∘ 터빈 ·타워구조물 재질 및 인장강도 ∘ 타워구조물 부식방지 상태 및 변형 여부 ∘ 케이블 꼬임방지 정지시험 ∘ 지상 주전원 개폐장치 설치상태	
4. 발전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발전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단선결선도 ∘ 발전기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제품 시험성적서
∘ 보호장치	∘ 특성시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자동전압조정기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계측장치 ∘ 경보장치 ∘ 제어장치 ∘ 상회전시험 ∘ 동기 검정장치 ∘ 여자기 및 자동전압 조정기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부대설비	∘ 계기용 변성기 ∘ 발전기 모선 접속상태 및 상표시 ∘ 위험표시 ∘ 중성점 접지장치	
∘ 소내모선절체	∘ 상회전 및 Loop시험 ∘ 절체시험(수동, 자동)	

5. 변압기	∘ 기력발전소 변압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변압기 준비자료에 준함
6. 차단기 검사	∘ 기력발전소 차단기 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차단기 준비자료에 준함
7. 전선로(모선)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준비자료에 준함
8. 접지설비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준비자료에 준함
9. 설비정착부	∘ 정착부 육안검사 ∘ 정착부 설치상태 ∘ 정착부 재질 및 내진설계 강도 ∘ 앵커볼트 토크값	∘ 정착부 목록 ∘ 정착부 내진 설계강도 계산서 ∘ 정착부 자재 성적서 ∘ 정착부 시공도면 및 절차서 ∘ 용접부 비파괴검사 성적서
10.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11. 부하운전	∘ 정격 또는 최대가능출력으로 부하운전(2h)시험검사(최대가능출력으로 실시할 경우 풍속-출력곡선과 비교확인) ∘ 부하운전시험의견	∘ 출력 기록지

비고 : 세부 검사내용 중 호기당 100㎾ 이하는 검사기준을 따른다.

Ⅰ-6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또는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태양광발전설비표	∘ 태양광발전설비표 작성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태양광발전설비 개요 ∘ 감리보고서 ∘ 토지(임야)대장 (지목 변경사항 포함)
2. 태양광 전지		
∘ 일반 규격	∘ 규격확인	∘ 태양광 전지규격서
∘ 본체	∘ 외관검사 ∘ 전지 전기적 특성시험 - 최대출력	∘ 단선결선도 ∘ 태양광전지 트립 인터록 도면

	- 개방전압 - 단락전류 - 최대 출력전압 및 전류 - 충진율 - 전력변환효율 ∘ Array - 절연저항 - 접지저항	∘ 시퀀스 도면 ∘ 제품 시험성적서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개방전압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3. 전력변환장치 ∘ 일반규격 ∘ 본체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 ∘ 전력조절부/Static 스위치 자동 · 수동절체시험 ∘ 역방향운전 제어시험 ∘ 단독운전 방지시험	∘ 전력변환장치 규격서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제품 시험성적서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DC지락차단장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시험		
4. 변압기	∘ 기력발전소 변압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변압기 준비자료에 준함	
5. 차단기	∘ 기력발전소 차단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차단기 준비자료에 준함	
6. 전선로(모선)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준비자료에 준함	
7. 접지설비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준비자료에 준함	
8. 계측장치	∘ 전압, 전류 또는 전압, 전력		
9.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10. 부하운전시험	∘ 검사시 일사량을 기준으로 가능출력을 확인하고 발		

	전량의 이상유무 확인(30분) ∘ 부하운전시험의견	
11. 구조물	∘ 기초상태 ∘ 외관상태 ∘ 시공상태	∘ 지지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 구조안전확인서(에너지공단 제출범위에 한함) 또는 구조물 점검기록표
12. 부지	∘ 배수로 시공상태 ∘ 부지 시공상태	
13. BIPV (건물일체형) 또는 BAPV(건물부착형) 등	∘ 외관검사 - 정착부 등 구조적 안전성 - BIPV 성능상태 ∘ 방위각 설치상태	∘ 구조물 점검기록표 ∘ 방수 시공상태 점검기록표 ∘ 안전성능 시험 성적서
14. 추락방지장치	∘ 점검통로 상태확인 ∘ 위험표시 확인	∘ 추락방지장치 점검기록표
15. 수상형 구조물	∘ 부력체 안전성 - 태양전지 부력체 - 기타설비 부력체	∘ 안전성능 시험성적서 ∘ 시공상태 점검기록표

Ⅰ-7 연료전지발전설비

□ 제조시설 및 제품검사(초기) 준비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제조시설 초기(사후) 검사	∘ 수입검사 절차 ∘ 생산 · 공정관리 및 공정 · 출하 검사 절차 ∘ 측정장비 기능점검 절차 ∘ 방문기간 중 제품제조 확인 ∘ 측정장비 교정 · 검증 절차 ∘ 취급 및 보관 절차 ∘ 전회차 평가 시정조치 확인 ∘ 내부심사 절차 ∘ 고객불만 처리 절차 ∘ 승인제품 관리 절차 ∘ 검사 샘플링 확인 ∘ 품질경영시스템 확인	∘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 공장등록증 ∘ 수입검사관리 규정 ∘ 외주업체 및 협력업체 관리규정 ∘ 부적합품관리 규정 ∘ 교육 및 자격 관리규정 ∘ 공정관리 규정, 검사관리 규정 ∘ 장비(설비)관리 규정 ∘ 교정관리 규정 ∘ 취급 및 보관 관리규정 ∘ 전회차 공장품질검사보고서 ∘ 내부심사 관리규정 ∘ 고객불만 처리규정 ∘ 제품변경 처리규정 ∘ ISO 9001 인증서(보유시)

2. 제품 초기검사	∘ 적용규격 확인 ∘ 명판 및 제품매뉴얼 ∘ 시험기관 적합성 평가 ∘ 주요부품 승인 확인 ∘ 검사대상 단위제품 확인 ∘ 형식시험 확인 ∘ 검사 환경(온 · 습도) ∘ 재료, 구조, 장치 확인	∘ 제품 형식시험성적서 ∘ 시험기관 인정서 ∘ 주요부품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확인 기록표 ∘ 명판 및 제품매뉴얼 ∘ 도면 및 설치도 ∘ 검사설비목록 ∘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제품 출하검사	∘ 적용규격 확인 ∘ 제품 검수시험 ∘ 검사 환경(온 · 습도) ∘ 명판 표시사항	∘ 검사설비목록 ∘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 제품출하검사 기준서

□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발전설비표	∘ 연료전지발전설비표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연료전지설비 개요
2. 연료전지 일반규격	∘ 규격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연료전지설비 규격서
3. 연료가스용 공급설비의 안전장치	∘ 연료가스 공급배관 고압력 방지 안전장치시험 ∘ 연료가스필터 가스 누설감지 정지시험 ∘ 연료가스의 치환설비 및 누설 ∘ 연료가스배관 표시상태 ∘ 부식방지 상태	∘ 연료가스공급계통 도면 ∘ 안전장치 트립 인터록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식방지 시방 절차서
4. 안전밸브 설치 및 동작시험	∘ 안전밸브 설치상태 ∘ 안전밸브 분출압력 ∘ 안전밸브 누설 여부	∘ 안전밸브 설치 도면 ∘ 안전밸브 공장시험성적서
5. 설비 정착부	∘ 정착부 육안검사 ∘ 정착부 설치상태 ∘ 정착부 재질 및 내진설계 강도 ∘ 앵커볼트 토크값	∘ 정착부 목록 ∘ 정착부 내진 설계강도 계산서 ∘ 정착부 자재 성적서 ∘ 정착부 시공도면 및 절차서 ∘ 용접부 비파괴검사 성적서
6.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내부개질기형)	∘ 음극 입구 온도 불평형 정지시험 ∘ 공기-연료가스 비율 불평	∘ 트립 인터록 도면 ∘ 연료계통 도면 ∘ 제어계통 도면

(외부개질기형)	형 정지시험 ◦ 증기-탄소 비율 불평형 정지시험 ◦ 냉각수 계통 저압력 정지시험 ◦ 셀 간 온도차 상승 정지시험 ◦ 연료전지 모듈 고온도 정지시험 ◦ 공기송풍장치 불량 정지시험 ◦ 송풍공기 고압력 정지시험 ◦ 수동 정지 및 복귀 ◦ 가스누설 감지 정지시험 ◦ 배열회수장치(HRU) 인터록 시험 ◦ 연료가스의 치환설비 ◦ 연료가스 고압력/고온도 정지시험 ◦ 개질기 점화불량 정지시험 ◦ 개질기 증기 고압력/고온도 정지시험 ◦ 개질기 노 내압 불평형 정지시험 ◦ 공기-연료가스 비율 불평형 정지시험 ◦ 증기-탄소 비율 불평형 정지시험 ◦ 셀 간 온도차 상승 정지시험 ◦ 연료가스 고압력/고온도 정지시험 ◦ 개질기 점화불량 정지시험 ◦ 개질기 증기 고압력/고온도 정지시험 ◦ 개질기 노 내압 불평형 정지시험 ◦ 공기-연료가스 비율 불평형 정지시험 ◦ 증기-탄소 비율 불평형 정지시험 ◦ 셀 간 온도차 상승 정지시험 ◦ 연료전지 모듈 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 정지 및 복귀 ◦ 개질기 노 점검문 상태확인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가스누설 탐지 정지시험 ∘ 배열회수장치(HRU) 인터록 시험 ∘ 연료가스의 치환설비		
(수소형)	∘ 연료가스 고압력/고온도 정지시험 ∘ 공기송풍장치 고장 정지시험 ∘ 셀 간 온도차 상승 정지시험 ∘ 스택 간 전압 차 불평형 정지시험 ∘ 연료전지 모듈 고온도 정지시험 ∘ 반응열 냉각수 고압력/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 정지 및 복귀 ∘ 가스누설감지 정지시험 ∘ 배열회수장치(HRU) 인터록 시험 ∘ 방폭구역 수소가스 누설감지 정지시험 ∘ 방폭구역 송풍기 이상감지 정지시험 ∘ 수소 압력용기 및 배관 고압력 방지안전장치 시험 ∘ 수소가스 순도 측정 ∘ 배관용 밸브 KS인증 ∘ 연료가스의 치환 설비	∘ 트립 인터록 도면 ∘ 연료계통 도면 ∘ 제어계통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수소가스 성분분석 성적서	
7. 전력변환장치			
∘ 일반규격	∘ 규격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제품 시험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역방향운전 제어시험 ∘ 단독 운전 방지시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시험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8. 변압기	∘ 기력발전소 변압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변압기 준비자료에 준함	
9. 차단기	∘ 기력발전소 차단기	∘ 기력발전소 차단기	

	검사항목에 준함	준비자료에 준함
10. 전선로(모선)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준비자료에 준함
11. 접지설비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준비자료에 준함
12.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13.부하운전시험	∘ 정격출력으로 부하운전(2h) 시험 검사 ∘ 부하운전시험의견	∘ 출력 기록지

비고 : 세부 검사내용 중 호기당 100㎾이하는 검사기준을 따른다.

Ⅰ－8 바이오에너지설비

□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가스화설비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가스화설비 규격서
2. 안전장치 설치 및 동작시험	∘ 퍼지 인터록 시험 ∘ 가스화기 고저압력 정지시험 ∘ 가스화기 고저온도 정지시험 ∘ 수동 정지 및 복귀 ∘ 가스누설 탐지기 동작상태 확인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가스화설비의 구조도 ∘ 안전장치 트립 인터록 도면 ∘ 안전밸브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3. 가스정제설비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가스정제설비 규격서
4. 안전장치 설치 및 동작시험	∘ 액티브 필터 차압 상승 정지시험 ∘ 패시브 필터 차압 상승 정지시험 ∘ 안전 필터 차압 상승 정지시험 ∘ 가스 냉각기 출구 고온도 정지시험 ∘ 불꽃상태 확인	∘ 가스정제설비의 구조도 ∘ 안전장치 트립 인터록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5. 내연력 설비표	∘ 내연력설비표 작성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내연설비 개요
6. 내연기관 안전장치 시험	∘ 연료유 저압력 정지시험 ∘ 연료유 필터차압 상승 정지시험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	∘ 내연기관 트립 인터록 도면 ∘ 윤활유장치도면 ∘ 조속기 계통도면

	지시험 ∘ 베어링 윤활유 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냉각수 고온도 정지시험 ∘ 비상조속기시험(기계식, 전기식 과속도정지) ∘ 조속기 작동범위시험(고속도한, 저속도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7. 엔진 릴리이프밸브 작동시험	∘ 실린더 릴리이프밸브 동작상태확인 ∘ 크랭크실 릴리이프밸브 동작상태확인	∘ 실린더 및 크랭크실 릴리이프 밸브시험 성적서
8. 발전기	∘ 내연력설비 발전기 검사항목에 준함	∘ 내연력설비 발전기 준비자료 준함
9. 변압기	∘ 기력발전소 변압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변압기 준비자료에 준함
10. 차단기	∘ 기력발전소 차단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차단기 준비자료에 준함
11. 전선로(모선)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준비자료에 준함
12. 접지설비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준비자료에 준함
13. 설비 정착부	∘ 정착부 육안검사 ∘ 정착부 설치상태 ∘ 정착부 재질 및 내진설계강도 ∘ 앵커볼트 토크값	∘ 정착부 목록 ∘ 정착부 내진 설계강도 계산서 ∘ 정착부 자재 성적서 ∘ 정착부 시공도면 및 절차서 ∘ 용접부 비파괴검사 성적서
14. 조속장치시험	∘ 정격출력에서의 부하 차단시험	∘ 조속기 특성시험 성적서 ∘ 출력 기록지
15.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16. 부하운전시험	∘ 정격출력으로 부하운전(2h)시험 검사 ∘ 부하운전시험의견	∘ 출력기록지

Ⅰ- 9 전기저장장치

□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전기저장장치 ∘ 전기설비계통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감리보고서
2. 변압기	∘ 기력발전소 변압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변압기 준비자료에 준함
3. 차단기	∘ 기력발전소 차단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차단기 준비자료에 준함
4. 전선로(모선)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전선로(모선) 준비자료에 준함
5. 부대설비	∘ 설치환경 - 설치장소 - 이격거리	∘ 주요설비 배치도 ∘ 건축재료 성적서
	∘ 운영환경 - 공조시설 확인 - 온·습도 등 확인 - 환기설비 확인	∘ 공조시설 배치도 ∘ 온·습도 등 기록지
6. 접지설비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접지설비 준비자료에 준함

□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전기저장장치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감리보고서
2. 이차전지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이차전지 규격서 ∘ 단선결선도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특성시험 - 충전 및 방전 전압 - 충전 및 방전 전류 - 과충전시험 - 과방전시험 - 온도특성시험	∘ 이차전지 배치도 ∘ 제품시험 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BMS 기능시험(특성시험 이외의 시험) - 계측기능시험 - 보호기능시험	∘ BMS 기능시험 성적서

	- 제어기능시험 - 비상정지기능시험	
3. 전력변환장치 ∘ 일반규격 ∘ 본체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충전 및 방전 전압 - 충전 및 방전 전류 - 주파수 변동시험 - 과도응답 특성시험 - 전압 및 주파수 추종시험 - 온도특성시험 ∘ Loop시험	∘ 전력변환장치 규격서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제품시험 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PCS 기능시험(특성시험 이외의 시험) - 계측기능시험 - 보호기능시험 - 제어기능시험 ∘ 단독운전 방지시험	∘ PCS 기능시험성적서
	∘ EMS 기능시험(BMS 기능시험 이외의 시험) - 충전율 제한시험 - 추가충전 방지시험 - 계측기능시험 - 보호기능시험 - 제어기능시험 - 비상정지기능시험 ∘ 운영정보 보관상태 확인 ∘ 전기저장장치(ESS) 통합관리시스템 연계상태 확인	∘ EMS 기능시험 성적서
4. 종합연동시험	∘ 종합연동상태 확인	∘ 종합인터록 도면
5. 부하운전시험	∘ 정격출력으로 충전 및 방전 시험(각 15분) ∘ 부하운전시험 의견	∘ 출력기록지

Ⅰ- 10 용접부검사

□ 공통사항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일반사항	∘ 규격 ∘ 용접시공법 ∘ 자재 - 화학성분 - 기계적성질 - 모재 사양 ∘ 용접부 육안 - 용접부 어긋남 - 용접 덧살 - 용접부 표면상태 - 용접부 결함유무 ∘ 용접절차시방서 ∘ 용접절차인정기록서 ∘ 용접사 자격 및 검정기록 ∘ 모재 및 용접부 강도 ∘ 지하매설배관 피복상태 ∘ 지하매설배관 매설깊이 및 이격거리	∘ 계통도 및 제작도 ∘ 자재성적서 (Mill Sheet) ∘ 용접절차시방서(WPS) 및 용접절차인정기록서 (PQR) ∘ 용접사 검정시험 기록서 ∘ 모재 및 용접부 강도 계산서 ∘ 압력용기 및 배관계통 목록 ∘ 용접부 육안검사 보고서 ∘ 관련 시방서 ∘ 모재 및 용접부 설계강도 계산서 ∘ 피복강관 재료성적서 ∘ 매설배관 깊이측정 및 이격거리 측정기록서 ∘ 감리보고서
2. 용접후열처리	∘ 열처리방법 ∘ 예열 및 층간온도 ∘ 가열율 및 냉각율 ∘ 유지온도 ∘ 유지시간	∘ 열처리부위 표시 도면 ∘ 용접후열처리 절차서 ∘ 열전대 및 기록계 교정 시험성적서 ∘ 용접후열처리 성적서

비고 : 발전소 경계범위란 발전소 울타리 · 담 등의 시설 이내를 말한다.

□ 비파괴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비파괴시험		
∘ 방사선투과검사(RT)	∘ 시험방법 ∘ 투과사진 구비조건 ∘ 방사선 투과사진 판독	∘ 비파괴시험부위 표시도면 ∘ 비파괴검사원 자격 ∘ 비파괴검사 절차서 ∘ 방사선투과 사진
∘ 초음파탐상검사(UT)	∘ 시험방법 ∘ 탐상 및 평가	∘ 시험기기 교정시험 성적서 ∘ 비파괴검사 보고서
∘ 자분탐상검사(MT)	∘ 시험방법 ∘ 탐상 및 평가	

◦ 침투탐상검사(PT)	◦ 시험방법 ◦ 탐상 및 평가	

□ 기계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시험판 각인	◦ 시험판의 형상 및 치수	◦ 기계시험부위 표시 도면 ◦ 기계시험 절차서
2. 이음부 및 용착금속 인장시험	◦ 시험편 형상, 치수 및 수량 ◦ 인장강도 ◦ 연신율	◦ 시험기기 교정시험성적서 ◦ 기계시험 결과 보고서
3. 굽힘시험 (측면, 표면, 루트)	◦ 시험편 형상, 치수 및 수량 ◦ 굽힘각도 ◦ 표면상태(균열, 불연속부)	
4. 충격시험 (용접금속부 및 열영향부)	◦ 시험편 형상, 치수 및 수량 ◦ 흡수에너지	

□ 내압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내압시험(수압, 기압)	◦ 압력계 수량, 용량 및 위치 ◦ 시험매체 ◦ 시험압력 ◦ 유지시간 ◦ 누설 및 변형	◦ 내압시험부위 표시 도면 ◦ 내압시험 절차서 ◦ 내압시험 보고서 ◦ 압력계 교정시험 성적서
2. 압력용기 및 배관 설비 정착부	◦ 정착부 육안검사 ◦ 정착부 설치상태 ◦ 정착부 재질 및 내진설계 강도 ◦ 앵커볼트 토크값	◦ 정착부 목록 ◦ 정착부 내진 설계강도 계산서 ◦ 정착부 자재 성적서 ◦ 정착부 시공도면 및 절차서 ◦ 용접부 비파괴검사 성적서

Ⅰ- 11 변전설비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변압기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시공상태	◦ 변압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절연유 내압시험 ∘ 탭절환장치시험 ∘ 상회전 및 Loop시험 ∘ 충전 및 부하시험	∘ 시퀀스 도면 ∘ 특성시험 성적서 ∘ 절연유 유출방지 시설도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제어, 계측 및 경보장치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부대설비	∘ 절연유 유출방지시설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중성점 접지장치 ∘ 냉각장치 ∘ 접지시공상태 ∘ 위험 및 상표시 ∘ 울타리, 담 등의 시설	
2. 차단기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차단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절연유 내압시험(OCB) ∘ 상회전 및 Loop시험 ∘ 충전 및 부하시험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절연저항 ∘ 개폐기 인터록 ∘ 개폐표시 ∘ 압축장치 ∘ 가스절연장치 ∘ 제어, 계측 및 경보장치		
∘ 부대설비	∘ 외함 접지시설 ∘ 위험 및 상표시 ∘ 계기용 변성기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 HSGS(High Speed Grounding Switch) (765kV 설비에 한함)		
3. 모선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모선	∘ 외관검사 ∘ 접지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충전 및 부하시험	∘ 전선로, 부대설비규격서 ∘ 단선결선도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보호 및 계측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제어, 계측 및 경보장치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위험 및 상표시 ∘ 울타리, 담 등의 시설상태 ∘ 모의모선 표시상태		
4. 접지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설계 내역 및 시공도면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	∘ 접지 외관검사 ∘ 접지저항 측정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감리보고서	
5. 조상설비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단선결선도	
∘ 본체	∘ 외관검사	∘ 설비규격서	

	∘ 접지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절연유 내압시험 ∘ 상회전 및 Loop시험 ∘ 충전 및 부하시험	∘ 시퀀스 도면 ∘ 절연유 유출방지 시설도서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시험성적서 ∘ 경보회로시험성적서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제어, 계측 및 경보장치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측정성적서 ∘ 접지설계내역, 시공도면
∘ 부대설비	∘ 절연유 유출방지 시설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접지시공상태 ∘ 위험 및 상표시 ∘ 울타리, 담 등의 시설상태 ∘ 냉각장치	
6. 전기저장장치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이차전지	∘ Ⅰ-9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검사항목에 준함	∘ Ⅰ-9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준비자료에 준함
∘ 전력변환장치	∘ Ⅰ-9 전기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검사항목에 준함	∘ Ⅰ-9 전기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준비자료에 준함
∘ 변압기	∘ Ⅰ-9 전기저장장치 변압기 검사항목에 준함	∘ Ⅰ-9 전기저장장치 변압기 준비자료에 준함
∘ 차단기	∘ Ⅰ-9 전기저장장치 차단기 검사항목에 준함	∘ Ⅰ-9 전기저장장치 차단기 준비자료에 준함
∘ 전선로(모선)	∘ Ⅰ-9 전기저장장치 전선로(모선) 검사항목에 준함	∘ Ⅰ-9 전기저장장치 전선로(모선) 준비자료에 준함
∘ 부대설비	∘ Ⅰ-9 전기저장장치 부대설비 검사항목에 준함	∘ Ⅰ-9 전기저장장치 부대설비 준비자료에 준함
∘ 접지설비	∘ Ⅰ-9 전기저장장치 접지설	∘ Ⅰ-9 전기저장장치 접지

	비 검사항목에 준함	설비 준비자료에 준함
∘ 종합연동시험	∘ I - 9 전기저장장치 종합 연동시험 검사항목에 준함	∘ I - 9 전기저장장치 종합 연동시험 준비자료에 준함
∘ 부하운전시험	∘ I - 9 전기저장장치 부하 운전시험 검사항목에 준함	∘ I - 9 전기저장장치 부하 운전시험 준비자료에 준함
7. 집중감시장치 (765kV 설비에 한함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설비규격서
∘ 감시장치	∘ 외관검사 ∘ 접지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시험 ∘ 내환경시험 ∘ 시스템관리 및 고장진단 ∘ 데이터 취득 및 저장 ∘ 데이터 통신 및 자료연계 ∘ 보고서 생성기능 ∘ 동기투입반 기능 ∘ 전원공급장치 검사 ∘ 표준시간 동기 ∘ 전력계통반 및 모의제어반 ∘ Surge 내력	∘ Block Diagram 도면 ∘ 공장시험 성적서 ∘ 접지설계내역, 시공도면

I - 12 송전설비

□ 가공송전선로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지지물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 인가(신고)서
∘ 지지물	∘ 외관검사 ∘ 조립상태 및 시공상태(철탑 승강기 포함) ∘ 경간확인 ∘ 기초지반 및 콘크리트 ∘ 접지시공 상태	∘ 송전선로 및 부대설비 규격서 ∘ 기초도면 설계서 및 시방서 ∘ 송전선로 계통도 ∘ 송전선로 경과지도 ∘ 지지물 설계서
2. 전선 및 가공지선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준공)기별 재료대장
∘ 전력선 및 가공지선	∘ 외관검사 ∘ 전선의 지상고와 이도	∘ 유도장해 검토서 ∘ 이도 및 지상고 측정 결

	∘ 건조물 또는 수목과 이격거리 ∘ 타전선로와의 접근 및 교차 ∘ Spacer 또는 Spacer Damper 취부상태 ∘ Sleeve 시공상태 ∘ 연가시공 ∘ 전선의 접속상태 ∘ 지지물과 절연간격 ∘ 보안공사 시설 ∘ 절연저항 ∘ 절연내역 ∘ 상회전 및 Loop시험 ∘ 유도장해 방지대책 ∘ 충전 및 부하시험	과서 ∘ 압축접속 기록서 ∘ 절연간격측정 기록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정상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과도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콘크리트재료시험 성적서 ∘ 현장 콘크리트품질시험 성적서 ∘ 감리보고서
3. 애자련	∘ 규격확인 ∘ 애자장치 설치상태	
4. 전력보안 통신설비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내력 ∘ 충전 및 부하시험	
5. 차단기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절연유 내압시험(OCB) ∘ 상회전 및 Loop시험 ∘ 충전 및 부하시험	∘ 차단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전력계통보호용 신호 송수신시험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시험 성적서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개폐기 인터록 ∘ 개폐표시 ∘ 압축장치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부대설비	∘ 가스절연장치 ∘ 제어, 계측 및 경보장치 ∘ 외함 접지시설 ∘ 위험 및 상표시 ∘ 계기용 변성기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 고속접지개폐기 (HSGS)	

□ 지중전선로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토목구조물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관련시방서 ∘ 설계도면
∘ 철근 콘크리트	∘ 콘크리트 배합 ∘ 압축강도시험 ∘ 슬럼프시험 ∘ 철근조립 설치상태	∘ 콘크리트 배합설계 성적서 ∘ 현장 콘크리트 품질 성적서 ∘ 관련시험 성적서 ∘ 매설깊이 측정기록서 ∘ 감리보고서
∘ 방수상태	∘ 방수방법 ∘ 방수시공 상태 ∘ 침투수 처리	
∘ 다짐시험	∘ 다짐 상태	
∘ 지중전선로 관로식 매설깊이	∘ 매설깊이	
2. 전선로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송전선로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전선로	∘ 외관검사 ∘ 케이블접속 및 포설시공상태 ∘ 접지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상회전 및 Loop시험 ∘ 유도장해 방지대책 ∘ 가압장치시험 ∘ 충전 및 부하시험 ∘ 물밑전선로 굴착상태 확인 ∘ 물밑전선로 매설심도 확인 ∘ 물밑전선로 광손실 측정시험	∘ 송전선로 계통도 ∘ 송전선로 경과지도 ∘ 가압장치시험 기록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감리보고서 ∘ 물밑전선로 구간별 시공 측량결과서 ∘ 물밑전선로 광손실 측정 결과서 ∘ 물밑전선로 매설심도 측

		정성적서
3. 차단기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차단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절연유 내압시험(OCB) ∘ 상회전 및 Loop시험 ∘ 충전 및 부하시험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특성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전력계통보호용 신호 송수신시험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개폐기 인터록 ∘ 압축장치 ∘ 가스절연장치 ∘ 제어, 계측 및 경보장치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부대설비	∘ 외함 접지시설 ∘ 위험 및 상표시 ∘ 계기용 변성기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 환기 및 배수설비시설 ∘ 조명 및 방재설비 시설	
4. HVDC 변환설비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본체	∘ 외관상태 ∘ 접지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전력변환설비 기능시험 ∘ 전력변환설비 보호동작시험 ∘ 냉각수 누설시험 ∘ 상회전 및 Loop시험 ∘ 충전 및 부하시험	∘ 전력변환설비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시퀀스 도면 ∘ 관련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감리보고서
∘ 보호장치	∘ 외관상태	

	∘ 절연저항 ∘ 보호반 설치상태 ∘ 보호장치시험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상태 ∘ 절연저항 ∘ 제어Line 결선상태 ∘ 제어, 계측 및 경보장치	
∘ 부대설비	∘ 냉각장치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붓싱(애자) ∘ 광케이블 손실율 측정 ∘ 접지 시공상태 ∘ 위험 및 상표시	

□ 개폐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모선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전선로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모선	∘ 외관검사 ∘ 접지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역 ∘ 충전 및 부하시험	∘ 단선결선도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보호 및 계측장치	∘ 외관검사 ∘ 접지시공상태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제어, 계측 및 경보장치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위험 및 상표시 ∘ 울타리, 담 등의 시설상태 ∘ 모의모선 표시상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2. 차단기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 차단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특성시험 성적서

	∘ 특성시험 ∘ 절연유 내압시험(OCB) ∘ 상회전 및 Loop시험 ∘ 충전 및 부하시험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전력계통보호용 신호 송수신시험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제어 및 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개폐기 인터록 ∘ 개폐표시 ∘ 조작용 압축장치 ∘ 가스절연장치 ∘ 제어, 계측 및 경보장치	
∘ 부대설비	∘ 외함 접지시설 ∘ 위험 및 상표시 ∘ 계기용 변성기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3. 접지설비		
∘ 일반규격	∘ 인가(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접지설계 내역 및 시공도면
∘ 접지	∘ 접지 공사내역 ∘ 접지저항 측정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감리보고서

Ⅰ- 13 배전설비

□ 배전선로(공동구 · 전력구에 한함)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토목구조물		
∘ 일반규격	∘ 신고 서류 및 규격확인 ∘ 안전 및 부대설비 외관 검사	∘ 공사계획신고서 ∘ 설계시방서 ∘ 설계도면
∘ 철근 콘크리트	∘ 콘크리트 배합 ∘ 압축강도시험 ∘ 슬럼프시험 ∘ 철근조립 설치상태	∘ 콘크리트 배합설계 성적서 ∘ 현장 콘크리트 품질 성적서 ∘ 관련시험 성적서 ∘ 감리보고서
∘ 방수상태	∘ 방수방법 ∘ 방수시공 상태 ∘ 침투수 처리	
∘ 다짐시험	∘ 다짐 상태	

2. 전선로		
∘ 일반규격 ∘ 전선로	∘ 신고 서류 및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케이블접속 및 포설시공상태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금구류 시공상태 ∘ 타전선로 및 타설비와의 이격거리 ∘ 케이블보호설비 시공상태 ∘ 케이블 방재설비 시공상태 ∘ 유도장해 방지대책 ∘ 상회전 및 Loop시험 ∘ 충전 및 부하시험	∘ 공사계획신고서 ∘ 설계시방서 ∘ 케이블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배전선로 계통도 ∘ 배전선로 경과지도 ∘ 유도장해 검토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케이블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3. 차단기		
∘ 일반규격	∘ 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본체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특성시험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 상회전 및 부하시험	∘ 공사계획신고서 ∘ 차단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특성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보호 및 제어·경보장치	∘ 외관검사 ∘ 접지 시공상태 ∘ 절연저항 ∘ 제어 · 계측 및 경보장치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가스절연 및 조작용 압축장치 ∘ 계기용변류기 및 변성기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4. 공동구 · 전력구내 부대설비		
∘ 일반규격	∘ 신고서류 및 규격확인	∘ 공사계획신고서 ∘ 설계 시방서 ∘ 조명 · 환기 · 배수설비 단선결선도
∘ 부대설비	∘ 절연 · 접지저항 및 시공상	∘ 방재설비 계통도 및 도면

	태 ∘ 환기 및 배수설비 ∘ 조명 및 전원설비 ∘ 안전 및 각종 표시찰 ∘ 방재설비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 일반규격서 ∘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

□ 전기저장장치

-Ⅰ-9 전기저장장치의 검사항목과 수검자준비자료를 준용한다.

Ⅰ-14 무정전전원장치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무정전전원장치 ∘ 일반규격	∘공사계획신고서류 ∘규격확인	∘공사계획신고서 ∘단선결선도 ∘감리보고서
2. 전선로(모선)	∘규격확인 ∘외관검사 ∘보호장치 ∘절연저항 ∘절연내력	∘제품 시험성적서
3. 차단기	∘규격확인 ∘외관검사 ∘보호장치 ∘절연저항	∘제품 시험성적서 ∘보호장치시험 성적서
4. 이차전지 ∘ 일반규격	∘규격확인	∘이차전지 규격서
∘ 본체	∘외관검사 ∘절연저항	∘이차전지 배치도 ∘제품시험 성적서 ∘특성시험 성적서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BMS 기능시험(특성시험 이외의 시험) -계측기능시험 -보호기능시험 -제어기능시험 -비상정지기능시험	∘BMS 기능시험 성적서
5. 전력변환장치 ∘ 일반규격	∘ 규격확인	∘전력변환장치 규격서

◦ 본체	◦외관검사 ◦절연저항 ◦절연내력 ◦특성시험 -충전 및 방전 전압 -충전 및 방전 전류 -온도특성시험 ◦ Loop시험	◦시퀀스 도면 ◦제품시험 성적서 ◦특성시험 성적서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6. 부대설비	◦설치환경 -설치장소 -이격거리 ◦운영환경 -공기조화시설 확인 -온습도 등 확인 -환기설비 확인	◦주요설비 배치도 ◦건축재료 성적서 ◦공기조화시설 배치도 ◦온습도 등 기록지
7. 자동전원공급시험	◦부하절체 상태 ◦연동시험	
8. 접지설비	◦시공상태 확인 ◦접지저항 확인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Ⅱ. 정 기 검 사

Ⅱ- 1 수력설비(양수 및 해양에너지설비 포함)

□ 수차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수차(펌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수차(펌프)	◦ 과속도 정지시험 ◦ 압유장치 유압(조작전원전압)저하시험 ◦ 베어링 고온도 정지시험 ◦ 발전기 내부고장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자동 기동 및 정지시험 ◦ 발전 및 양수 절환시험 ◦ 안전밸브 동작시험 ◦ 유압(공기압) 회복장치시험 ◦ 압력계 설치 ◦ 부하차단시험 ◦ 수문 동작시험	◦ 수차(펌프)제어 계통도 ◦ 수차(펌프) 트립 인터록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안전밸브시험 성적서 ◦ 출력 기록지

	∘ 댐 · 수로의 안전시설 ∘ 지하 배수시설	

□ 발전기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발전기 ∘ 일반규격 ∘ 발전기시험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동기 검정장치시험 ∘ 자동 전압조정기시험 ∘ 소내모선 절체시험(자동, 수동)	∘ 전회검사 성적서 ∘ 발전기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자동 전압조정기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2. 변압기 ∘ 일반규격 ∘ 변압기시험(기동, 소내 변압기 포함)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전회검사 성적서 ∘ 변압기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3. 차단기 ∘ 일반규격 ∘ 차단기시험 (발전기용 차단기)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절연저항 측정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개폐표시 상태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개폐기 인터록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종합검사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2. 부하운전시험	∘ 최대가능출력 또는 연속운전 허용출력 부하운전(2h)시험검사(해양에너지는 조위(유속)출력곡선과	∘ 출력 기록지 ∘ 조위(유속)표

	비교확인) ∘ 부하운전시험 의견	

Ⅱ- 2 기력설비

□ 보일러 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보일러 ∘ 일반규격 ∘ 수압시험	∘ 규격확인 ∘ 전면교체 : 최고사용압력 (설계압력) 1.5배 ∘ 부분교체 : 최고사용압력 (설계압력) ∘ 보수없을 때 : 정격운전압력	∘ 전회검사 성적서 ∘ 보일러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안전밸브 설치도면 ∘ 수압시험 관련자료 ∘ 안전밸브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성적서
∘ 보일러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시험 검사 (드럼형보일러)	∘ 노 내 퍼지시험 ∘ 버너 연료 압력저하 정지시험 ∘ 제어공기 압력저하 정지시험 ∘ 노 내압 불평형 정지시험 ∘ 드럼 고/저수위 정지시험 ∘ 주증기 고/저온도 정지시험 ∘ 압입 송풍기 정지시험 ∘ 유인 송풍기 정지시험 ∘ 수동정지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드럼수위 계기 상태확인 ∘ 노 점검문 상태확인 ∘ 노 방압장치 상태확인	
(관류형 보일러)	∘ 노 내 퍼지시험 ∘ 버너 연료 압력저하 정지시험 ∘ 제어공기 압력저하 정지시험 ∘ 노 내압 불평형 정지시험 ∘ 주증기 고/저온도 정지시험 ∘ 압입 송풍기 정지시험 ∘ 유인 송풍기 정지시험 ∘ 재열 증기 고온도 정지시험 ∘ 절탄기 입구 저유량 정지시험 ∘ 총 공기 저유량 정지시험 ∘ 과열기 출구 고압력 정지시험 ∘ 수냉벽 출구 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정지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노 점검문 상태확인	

◦ 공해방지설비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시험 검사(배연탈질설비)	◦ 탈질설비 입구 가스온도 저하 ◦ 암모니아 기화기 출구온도 저하 ◦ 암모니아 압력 저하 ◦ 암모니아 가스 누설여부 ◦ 유인송풍기 정지시험 ◦ 암모니아 차단밸브 연동시험	
(배연탈황설비)	◦ 탈황설비 입구 가스온도 상승 ◦ 탈황설비 입구 가스압력 상승 ◦ GGH(가스-가스열교환기) 정지 연동 ◦ 탈황설비용 비상댐퍼 연동시험	
(집진설비)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추타장치 동작상태 확인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운전상태 확인	◦ 집진설비 규격서 ◦ 집진설비 계통도 ◦ 집진설비 단선결선도 ◦ 계기교정 및 경보시험 성적서 ◦ 집진설비 트립 인터록 도면
2. 보일러 안전밸브 작동시험	◦ 안전밸브 분출 · 정지압력 ◦ 안전밸브 누설 여부	◦ 시험장비에 의한 안전밸브 분출시험시 계통별 1개씩 실제시험 가능
3. 보조기기 안전밸브 작동시험	◦ 안전밸브 분출압력	
4. 연료가스용 연료 연소설비 안전장치 시험	◦ 연료가스 차단밸브 입구 저압력 경보시험 ◦ 연료가스 차단밸브 출구 저압력 정지시험 ◦ 연료가스 누설 감지기 동작상태 ◦ 연료가스 배관 표시 상태	◦ 누설감지기 설치도면 ◦ 누설감지기 교정성적서

비고 : 배연탈질설비 세부 검사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 6개월 이내 실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 증기터빈 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증기터빈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증기터빈 비상정지	◦ 윤활유 펌프시험 (AC, DC)	◦ 터빈 트립 인터록 도면

및 안전장치시험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스러스트 베어링 마모 정지시험 ∘ 복수기 진공도 저하 정지시험 ∘ 배기증기 고온도 정지시험 ∘ 발전기 내부고장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비상조속기시험(기계식, 전기식 과속도 정지) ∘ 베어링 고진동 정지시험 ∘ 조속기 작동범위시험(저속도한, 고속도한) ∘ 밸브개폐시험(주증기 정지밸브, 증기 조절밸브, 재열증기 정지밸브, 재열증기 조절밸브) ∘ 증기터빈 진동측정(무부하)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파열판 설치상태 확인	∘ 시퀀스 도면 ∘ 터빈 윤활장치 도면 ∘ 조속기 유압유 계통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보조기기 인터록시험 성적서

□ 열교환기 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열교환기 ∘ 복수기 ∘ 탈기기 ∘ 급수 가열기 ∘ 윤활유 & 냉각수 열교환기	∘ 진공 유지상태 ∘ 온도, 수위 조절상태, 역지밸브 ∘ 수압(누설), 역지밸브, 수위조절 상태 ∘ 온도 조절상태	∘ 전회검사 성적서 ∘ 시퀀스 도면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급수가열기 수압(누설)시험성적서

□ 발전기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발전기 ∘ 일반규격 ∘ 발전기시험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스러스트 베어링 마모 정지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전회검사 성적서 ∘ 발전기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수소가스 및 고정자 냉각수 계통도면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고정자 냉각수 예비펌프 자동기동시험 ∘ 발전기 밀봉유펌프시험 ∘ 수소가스 압력 및 순도시험 ∘ 동기 검정장치시험 ∘ 자동전압 조정기시험 ∘ 소내모선 절체시험(자동, 수동)	∘ 수소가스 압력 및 순도시험 성적서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자동전압조정기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발전기 밀봉유 계통도면
2. 변압기 ∘ 일반규격 ∘ 변압기시험(기동, 소내변압기 포함)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전회검사 성적서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3. 차단기 ∘ 일반규격 ∘ 차단기시험 (발전기용 차단기만 해당)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절연저항 측정 ∘ 개폐표시 상태확인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전회검사 성적서 ∘ 개폐기 인터록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종합검사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2. 부하운전시험	∘ 정격 또는 연속운전허용출력으로 부하운전(4h)시험 검사 (단,집단에너지발전설비, 소각발전설비, 타사업자로 부터 증기(열)을 공급받는 발전설비는 최대 가능출력으로 부하운전시험 가능, 최대 가능출력으로 실시할 경우 터빈 출력곡선과 비교 확인)	∘ 출력기록지 ∘ 전회검사 이후 총 운전시간 및 정지횟수 ∘ 전회검사이후 주요정비내용

	∘ 부하운전시험 의견 ∘ 대기분야(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 ∘ 수질분야(폐수)	

Ⅱ- 3 가스터빈설비 및 복합화력설비

□ 가스터빈 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가스터빈 및 공기압축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가스터빈 윤활유 펌프 자동기동 비상정지시험	∘ 윤활유 펌프시험 (AC, DC)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베어링 출구 윤활유 고온도 정지시험 ∘ 배기가스 고온도 정지시험 ∘ 점화 불량시험 ∘ 발전기 내부고장 정지시험 ∘ 비상조속기 시험 (기계식, 전기식 과속도 정지) ∘ 수동정지 및 복귀 ∘ 조속기 작동범위시험 (저속도한, 고속도한) ∘ 베어링 과진동 정지시험 ∘ 가스터빈 진동측정(무부하)	∘ 전회검사 성적서 ∘ 터빈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윤활장치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2. 연료가스용 연료연소설비 안전장치시험	∘ 연료가스 차단밸브 입구 저압력 경보시험 ∘ 연료가스 차단밸브 출구 저압력 정지시험 ∘ 연료가스 누설 감지기 동작상태 ∘ 연료가스 배관 표시 상태	∘ 누설감지기 설치도면 ∘ 누설감지기 교정성적서

□ 열교환기 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열교환기		
∘ 복수기 ∘ 탈기기	∘ 진공 유지상태 ∘ 온도, 수위 조절상태, 역지밸브	∘ 전회검사 성적서 ∘ 시퀀스 도면

◦ 급수 가열기 ◦ 윤활유 & 냉각수 열교환기	◦ 수압(누설), 역지밸브, 수위 조절상태 ◦ 온도 조절상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석탄가스화설비 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석탄가스화설비 일반규격 2. 안전장치 설치 및 동작시험	◦ 규격확인 ◦ 퍼지 인터록 시험 ◦ 산소-탄소 고비율 정지시험 ◦ 산소 고/저유량 정지시험 ◦ 가스화기 고/저압력 정지시험 ◦ 가스화기 슬래그 전/후 탭 차압 상승 정지시험 ◦ 가스화기 애뉼러 공간 고온도 정지시험 ◦ 혼합가스 냉각수 고/저온도 정지시험 ◦ 중압 스팀드럼 저수위 정지시험 ◦ 고압 스팀드럼 저수위 정지시험 ◦ 순환가스 압축기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석탄가스화설비 규격서 ◦ 석탄가스화설비의 구조도 ◦ 안전장치 트립 인터록 도면 ◦ 안전밸브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가스정제설비 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가스정제설비 일반규격 2. 안전장치 설치 및 동작시험	◦ 규격확인 ◦ 집진기 입구-출구 차압 상승경보 및 정지시험 ◦ 습식세척기 출구 고/저온도 정지시험 ◦ 가수분해 반응기 출구 고온도 정지시험 ◦ 압소버 출구 저압력 경보 및 정지시험 ◦ 혼합가스 포화기 고/저위 정지시험	◦ 가스정제설비 규격서 ◦ 가스정제설비의 구조도 ◦ 안전장치 트립 인터록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증기터빈 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증기터빈	∘ 기력설비 증기터빈 정기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설비 증기터빈 정기검사 준비자료에 준함

□ 보일러(배열회수보일러) 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보일러(배열회수보일러)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시험	∘ 드럼 고/저수위 정지시험 ∘ 주증기 고온도 정지시험 ∘ 저압 드럼 압력 급강하율 정지시험 ∘ 보조기기 인터록 시험 ∘ 드럼 수위 계기 상태확인 ∘ 노 점검문 상태확인	∘ 보일러(배열회수보일러) 트립 인터록 도면 ∘ 안전밸브 설치도면 ∘ 수압시험 관련자료 ∘ 안전밸브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보조기기 인터록시험 성적서
∘ 공해방지설비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시험 검사(배연탈질설비)	∘ 기력발전소 배연탈질설비 검사항목에 준함	
2. 안전밸브 작동시험	∘ 안전밸브 분출 · 정지압력 ∘ 안전밸브 누설 여부	∘ 시험장비에 의한 안전밸브 분출시험시 계통별 1개씩 실제시험 가능
3. 보조기기 안전밸브 작동시험	∘ 안전밸브 분출압력	
4. 수압시험	∘ 전면교체 :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1.5배 ∘ 부분교체 :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 보수 없을때 : 정격운전압력	

□ 발전기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발전기	∘ 기력설비 발전기 정기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설비 발전기 정기검사 준비자료에 준함
2. 변압기	∘ 기력설비 변압기 정기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설비 변압기 정기검사 준비자료에 준함

3. 차단기 (발전기용 차단기)	∘ 기력설비 차단기 정기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설비 차단기 정기검사 준비자료에 준함

□ 종합검사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2. 부하운전시험	∘ 정격출력으로 부하운전 (2h)시험 검사 (단, 집단에너지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는 최대 가능출력으로 부하운전시험 가능, 최대 가능출력으로 실시할 경우 터빈 출력곡선과 비교 확인) ∘ 부하운전시험 의견 ∘ 대기분야(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 ∘ 수질분야(폐수)	∘ 출력 기록지 ∘ 온도보정곡선 ∘ 전회검사 이후 총 운전시간 및 정지 횟수 ∘ 전회검사 이후 주요정비내용

Ⅱ- 4 내연력설비

□ 내연기관 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내연기관 ∘ 일반규격 ∘ 내연기관 안전장치 시험	∘ 규격확인 ∘ 연료유 저압력 정지시험 ∘ 연료유 필터 차압 상승 정지시험 ∘ 베어링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베어링 윤활유 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냉각수 고/저온도 정지시험 ∘ 비상조속기시험(기계식, 전기식 과속도 정지) ∘ 조속기 작동범위시험 (고속도한, 저속도한)	∘ 전회검사 성적서 ∘ 트립 인터록 도면 ∘ 윤활장치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실린더 및 크랭크실 릴리이프 밸브시험 성적서
2. 엔진 릴리이프밸브 작동시험	∘ 실린더 릴리이프밸브 ∘ 크랭크실 릴리이프밸브	

□ 열교환기 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열교환기 ◦ 윤활유 & 냉각수 열교환기	◦ 온도 조절상태	◦ 전회검사 성적서 ◦ 시퀀스 도면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발전기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발전기	◦ 기력설비 발전기 정기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설비 발전기 정기검사 준비자료에 준함
2. 변압기 (소내변압기 포함)	◦ 기력설비 변압기 정기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설비 변압기 정기검사 준비자료에 준함
3. 차단기 (발전기용 차단기)	◦ 기력설비 차단기 정기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설비 차단기 정기검사 준비자료에 준함

□ 종합검사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2. 부하운전시험	◦ 정격출력으로 부하운전 (2h)시험 검사(단, 도서 내연은 최대가능 출력으로 부하운전시험) ◦ 부하운전시험 의견	◦ 출력 기록지 ◦ 전회검사 이후 총운전시간 및 정지회수 ◦ 전회검사이후 주요정비내용

Ⅱ- 5 풍력발전설비

□ 토목기초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기초구조물	◦ 기초구조물 관리상태 ◦ 부식방지 상태	◦ 기초구조물 점검기록표 ◦ 부식방지 점검기록표

2. 기초 부대시설	∘ 정착부 설치상태 ∘ 앵커볼트 토크값 ∘ 기초의 보호상태 ∘ 기초주변의 배수처리 상태	∘ 계측 기록표 ∘ 앵커볼트 점검기록표 ∘ 기초 부대시설 점검기록표

□ 풍차 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풍력설비 ∘ 일반규격 ∘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 규격확인 ∘ 수동비상정지 시험 ∘ 제어용 압유 고온도 정지시험 ∘ 제어용 압유 저압력 정지시험 ∘ 기어 윤활유 저압력 정지시험 ∘ 기어 윤활유 고온도 정지시험 ∘ 터빈 베어링 고온도 정지시험 ∘ 컷 아웃 풍속 정지시험 ∘ 제어용 압축공기 저압력 정지시험 ∘ 나셀 고진동 정지시험 ∘ 과속도 정지시험 (발전기측) ∘ 과속도 정지시험 (터빈측) ∘ 화재방호설비 설치상태 ∘ 풍차 및 타워구조물 설치상태 ∘ 케이블 꼬임방지 정지 시험 ∘ 지상 주전원 개폐장치 설치상태	∘ 전회검사 성적서 ∘ 풍차 트립 인터록 도면 ∘ 제어용 압유장치 도면 ∘ 풍차 제어계통 도면 ∘ 보호장치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구조물 설치상태 점검 성적서

비고 : 세부 검사내용 중 호기당 100㎾ 이하는 검사기준을 따른다.

□ 발전기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발전기	∘ 기력설비 발전기 정기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설비 발전기 정기검사 준비자료에 준함
2. 변압기 (소내변압기 포함)	∘ 기력설비 변압기 정기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설비 변압기 정기검사 준비자료에 준함
3. 차단기 (발전기용 차단기)	∘ 기력설비 차단기 정기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설비 차단기 정기검사 준비자료에 준함

□ 종합검사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종합연동시험	∘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2. 부하운전시험	∘ 정격 또는 최대 가능출력으로 부하운전(2h)시험 검사(최대 가능출력으로 실시 할 경우 풍속-출력 곡선과 비교확인) ∘ 부하운전시험 의견	∘ 출력 기록지 ∘ 전회검사 이후 총 운전시간 및 정지횟수 ∘ 전회검사 이후 주요 정비 내용

Ⅱ- 6 태양광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계통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태양광 전지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단선결선도
∘ 본체	∘ 외관검사 ∘ 전지 전기적 특성시험 - 개방전압 - 출력전압 및 전류 ∘ Array - 절연저항 - 접지저항	∘ 태양광전지 트립 인터록 도면 ∘ 시퀀스 도면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보호장치 및 계전기 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2. 전력변환장치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접지저항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 ∘ 단독 운전 방지시험 ∘ 인버터 운전시험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측정 및 점검기록표 - 보호장치 및 계전기 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시험 성적서
∘ 보호장치	∘ 보호장치시험	
3. 변압기	∘ 기력설비 변압기 정기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설비 변압기 정기검사준비자료에 준함
4. 차단기 (발전기용차단기)	∘ 기력설비 차단기 정기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설비 차단기 정기검사준비자료에 준함
5. 전선로(모선)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선로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전선로(가공, 지중, GIB, 기타)	◦ 외관검사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내력시험	◦ 단선결선도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위험표시 ◦ 울타리, 담 등의 시설상태 ◦ 상별 및 모의모선 표시상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6. 접지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접지저항 측정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부지 및 구조물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부지	◦ 부지유지 관리상태 ◦ 배수로 관리상태	◦ 부지 점검기록표
2. 구조물	◦ 기초 관리상태 ◦ 지지물 관리상태	◦ 구조물 점검기록표

□ 종합검사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종합연동시험	◦ 종합연동시험	
2. 부하운전시험	◦ 검사시 일사량을 기준으로가 능출력을 확인하고 발전량 이상유무 확인(30분) ◦ 부하운전시험의견	
3. BIPV(건물일체형) 또는 BAPV(건물부착형) 등	◦ 외관검사 - 정착부 등 구조적 안전성	◦ 구조 안전 점검기록표 ◦ 방수 점검기록표
4. 수상형 구조물	◦ 부력체 안정성 - 태양전지 부력체 - 기타설비 부력체	

Ⅱ- 7 연료전지발전설비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연료전지	◦ 규격확인	

일반규격		
2. 안전밸브 설치 및 동작시험	∘ 안전밸브 설치상태 ∘ 안전밸브 분출압력 ∘ 안전밸브 누설 여부	∘ 안전밸브 설치 도면 ∘ 안전밸브시험 성적서
3.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내부개질기형)	∘ 연료가스 고압력/고온도 정지시험 ∘ 음극 입구 온도 불평형 정지시험 ∘ 공기-연료가스 비율 불평형 정지시험 ∘ 증기-탄소 비율 불평형 정지시험 ∘ 냉각수 계통 저압력 정지시험 ∘ 셀 간 온도차 상승 정지시험 ∘ 연료전지 모듈 고온도 정지시험 ∘ 공기송풍장치 불량 정지시험 ∘ 송풍공기 고압력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가스누설 감지 정지시험 ∘ 배열회수장치 (HRU) 인터록 시험 ∘ 연료가스 배관 표시상태	∘ 트립 인터록 도면 ∘ 연료계통 도면 ∘ 제어계통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외부개질기형)	∘ 연료가스 고압력/고온도 정지시험 ∘ 개질기 점화불량 정지시험 ∘ 개질기 증기 고압력/고온도 정지시험 ∘ 개질기 노 내압 불평형 정지시험 ∘ 공기-연료가스 비율 불평형 정지시험 ∘ 증기-탄소 비율 불평형 정지시험 ∘ 셀 간 온도차 상승 정지시험 ∘ 연료전지 모듈 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정지 및 복귀 ∘ 개질기 노 점검문 상태확인 ∘ 가스누설 탐지 정지시험 ∘ 배열회수장치 (HRU) 인터록 시험	

	∘ 연료가스 배관 표시상태	
(수소형)	∘ 연료가스 고압력/고온도 정지시험 ∘ 공기송풍장치 불량 정지시험 ∘ 셀 간 온도차 상승 정지시험 ∘ 스택 간 전압 차 불평형 정지시험 ∘ 연료전지 모듈 고온도 정지시험 ∘ 반응열 냉각수 고압력/고온도 정지시험 ∘ 수동 정지 및 복귀 ∘ 가스누설감지 정지시험 ∘ 배열회수장치(HRU) 인터록 시험 ∘ 방폭구역 수소가스 누설감지 정지시험 ∘ 방폭구역 송풍기 이상감지 정지시험 ∘ 수소 압력용기 및 배관 고압력 방지안전장치 시험 ∘ 수소가스 순도 측정 ∘ 연료가스 배관 표시상태	∘ 트립 인터록 도면 ∘ 연료계통 도면 ∘ 제어계통 도면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수소가스 성분분석 성적서
4. 전력변환장치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본체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 ∘ 역방향운전 제어시험 ∘ 단독 운전 방지시험	∘ 절연저항시험성적서 ∘ 경보회로시험성적서 ∘ 부대설비시험성적서
5. 변압기	∘ 기력발전소 변압기 정기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변압기 정기검사 준비자료에 준함
6. 차단기	∘ 기력발전소 차단기 정기검사 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차단기 정기검사 준비자료에 준함
7. 종합연동시험		∘ 종합 인터록 도면
8. 부하운전시험	∘ 정격부하운전(2h)시험(스택 사용연수에 따른 계산된 출력 확인)	∘ 출력 기록지 ∘ 전회검사 이후 총 운전 및기동횟수

	∘ 부하운전시험 의견	∘ 전회검사 이후 주요정비 내용

비고 : 세부 검사내용 중 호기당 100㎾이하는 검사기준을 따른다.

Ⅱ- 8 구역전기사업의 송전·변전·배전설비

□ 변전설비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변압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변압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변압기시험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 ∘ 탭절환장치시험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부하시험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절연유가스 분석) ∘ (SF_6가스 수분 측정) ∘ (SF_6가스 순도 측정) ∘ (SF_6가스 SO_2 측정) ∘ (SF_6가스 누기 측정)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2. 차단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차단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차단기시험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 (OCB)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개폐기 인터록 ∘ 개폐표시 상태확인 ∘ 압축장치 ∘ 가스절연장치 ∘ 부하시험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SF_6가스 수분 측정) ∘ (SF_6가스 순도 측정) ∘ (SF_6가스 SO_2 측정) ∘ (SF_6가스 누기 측정)	
3. 모선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모선설비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모선설비시험	∘ 외관검사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부하시험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SF_6가스 수분 측정) ∘ (SF_6가스 순도 측정) ∘ (SF_6가스 SO_2 측정) ∘ (SF_6가스 누기 측정)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4. 조상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조상설비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조상설비시험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부하시험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절연유가스 분석)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5. 부대설비	∘ 절연유 유출방지시설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중성점 접지장치	

	∘ 냉각장치 ∘ 위험 및 상표시찰 등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 조명 및 방재설비 ∘ 울타리, 담 등의 시설	
6. 접지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접지저항 성적서
∘ 접지설비	∘ 외관검사 ∘ 접지시설상태 ∘ 접지저항 측정	

비고 : 세부 검사내용 중 ( ) 내용은 무정전검사에 적용

□ 송전선로

○ 가공송전선로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지지물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송전선로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지지물	∘ 외관검사 ∘ 조립상태 및 시설상태 ∘ 경간확인 ∘ 접지시설상태	∘ 송전선로 계통도 ∘ 송전선로 경과지도 ∘ 기별 재료대장 ∘ 과도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2. 전선로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력선 및 가공지선	∘ 외관검사 ∘ 전선의 지상고와 이도 ∘ 건조물 또는 수목과 이격거리 ∘ 타전선로와의 접근 및 교차 ∘ Spacer 또는 Spacer Damper 취부상태 ∘ Sleeve 시설상태 ∘ 전선의 접속상태 ∘ 지지물과 절연간격 ∘ 애자장치 시설상태 ∘ 보안공사 시설 ∘ 절연저항 ∘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 부하시험 ∘ 기타 기술기준에 적합여부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3. 차단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차단기시험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OCB)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개폐기 인터록 ∘ 개폐표시 상태확인 ∘ 압축장치 ∘ 가스절연장치 ∘ 부하시험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SF6가스 수분 측정) ∘ (SF6가스 순도 측정) ∘ (SF6가스 S02 측정) ∘ (SF6가스 누기 측정)	∘ 차단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4. 부대설비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위험 및 상표시찰 등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5. 접지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접지저항 성적서
∘ 접지설비	∘ 외관검사 ∘ 접지시설상태 ∘ 접지저항 측정	

비고 : 세부 검사내용 중 ( ) 내용은 무정전검사에 적용

○ 지중송전선로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전선로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송전선로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전선로	◦ 외관검사 ◦ 케이블접속 및 포설상태 ◦ 접지시설상태 ◦ 절연저항 ◦ 금구류 시설상태 ◦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 부하시험 ◦ 구조물 시설상태 ◦ 선로침하 상태 ◦ (온도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송전선로 계통도 ◦ 송전선로 경과지도 ◦ 절연저항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2. 차단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차단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차단기시험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OCB)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개폐기 인터록 ◦ 개폐표시 상태확인 ◦ 압축장치 ◦ 가스절연장치 ◦ 부하시험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SF6가스 수분 측정) ◦ (SF6가스 순도 측정) ◦ (SF6가스 SO2 측정) ◦ (SF6가스 누기 측정)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3. 부대설비	◦ 위험 및 상표시찰 등 ◦ 계기용 변성기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 환기 및 배수설비 ◦ 조명 및 방재설비 ◦ 방수시설 상태		
4. 접지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접지저항 성적서
◦ 접지설비	◦ 외관검사 ◦ 접지시설상태 ◦ 접지저항 측정	

비고 : 세부 검사내용 중 ( ) 내용은 무정전검사에 적용

□ 배전선로

○ 가공배전선로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지지물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케이블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지지물	◦ 외관검사 ◦ 조립상태 및 시설상태 ◦ 경간확인 ◦ 접지시설상태	◦ 배전선로 계통도 ◦ 배전선로 경과지도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2. 전선로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력선 및 가공지선	◦ 외관검사 ◦ 전선의 접속 및 시설상태 ◦ 전선의 지상고 및 경간확인 ◦ 건조물 또는 수목과 이격거리 ◦ 타전선로와의 접근 및 교차 ◦ 지지물과 절연간격 ◦ 애자장치 시설상태 ◦ 접지시설상태 ◦ 절연저항 ◦ 금구류 시설상태 ◦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 부하시험 ◦ 기타 기술기준에 적합여부 ◦ (온도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코로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3. 변압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변압기시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 ◦ 부하시험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절연유가스 분석)	◦ 변압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4. 차단기(개폐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차단기(개폐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차단기(개폐기)시험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개폐기 인터록 ◦ 개폐표시 상태확인 ◦ 가스절연장치 ◦ 부하시험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SF6가스 수분 측정) ◦ (SF6가스 순도 측정) ◦ (SF6가스 SO2 측정) ◦ (SF6가스 누기 측정)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5. 부대설비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위험 및 상표시찰 등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6. 접지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접지설비	◦ 외관검사 ◦ 접지시설상태 ◦ 접지저항 측정	◦ 접지저항 성적서

비고 : 세부 검사내용 중 ( ) 내용은 무정전검사에 적용

○ 지중배전선로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전선로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케이블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전선로	∘ 외관검사 ∘ 케이블접속 및 포설상태 ∘ 접지시설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금구류 시설상태 ∘ 타전선로 및 타설비와의 이격거리 ∘ 케이블 보호설비 시설상태 ∘ 케이블 방재설비 시설상태 ∘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 부하시험 ∘ 구조물 시설상태 ∘ 선로침하 상태 ∘ (온도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배전선로 계통도 ∘ 배전선로 경과지도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2. 변압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변압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변압기시험	∘ 외관검사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 ∘ 부하시험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절연유가스 분석)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3. 차단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차단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차단기시험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개폐기 인터록 ◦ 개폐표시 상태확인 ◦ 가스절연장치 ◦ 부하시험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SF6가스 수분 측정) ◦ (SF6가스 순도 측정) ◦ (SF6가스 SO2 측정) ◦ (SF6가스 누기 측정)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4. 부대설비	◦ 위험 및 상표시찰 등 ◦ 계기용 변성기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 환기 및 배수설비 ◦ 조명 및 방재설비 ◦ 방수시설 상태	
5. 접지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접지저항 성적서
◦ 접지설비	◦ 외관검사 ◦ 접지시설상태 ◦ 접지저항 측정	

비고 : 세부 검사내용 중 ( ) 내용은 무정전검사에 적용

Ⅱ- 9 전기저장장치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전기저장장치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설비변경 내역서
2. 이차전지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본체 3. 전력변환장치 ◦ 일반규격 ◦ 본체	◦ 외관검사 ◦ 절연저항 ◦ 특성시험 - 충전 및 방전 전압 - 충전 및 방전 전류 - 과충전시험 - 과방전시험 - 온도특성시험 ◦ BMS 기능시험(특성시험 이외의 시험 - 계측기능시험 - 보호기능시험 - 제어기능시험 - 비상정지기능시험 ◦ 규격확인 ◦ 외관검사 ◦ 접지시설 상태 ◦ 절연저항 ◦ 특성시험 - 충전 및 방전 전압 - 충전 및 방전 전류 - 과도응답 특성시험 - 온도특성시험 ◦ 단독운전 방지시험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BMS 기능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특성시험 성적서	
	◦ PCS 기능시험(특성시험 이외의 시험) - 계측기능시험 - 보호기능시험 - 제어기능시험	◦ PCS 기능시험성적서	
	◦ EMS 기능시험(BMS 기능시험 이외의 시험) - 충전율 제한시험 - 추가충전 방지시험 - 계측기능시험 - 보호기능시험 - 제어기능시험 - 비상정지기능시험 ◦ 운영정보 보관상태 확인 ◦ 운영기록 분석 ◦ 전기저장장치(ESS) 통합관	◦ EMS 기능시험성적서 ◦ 운영정보 기록 자료	

	리시스템 연계	
4. 변압기	∘ 기력발전소 변압기 검사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변압기 준비자료에 준함
5. 차단기	∘ 기력발전소 차단기 항목에 준함	∘ 기력발전소 차단기 준비자료에 준함
6. 전선로(모선)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선로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전선로(가공, 지중, GIB, 기타)	∘ 외관검사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내력시험	∘ 단선결선도 ∘ 보호계전기 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
∘ 부대설비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위험표시 ∘ 울타리, 담 등의 시설상태 ∘ 상별 및 모의모선 표시상태	∘ 상회전 및 Loop시험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7. 부대설비	∘ 설치환경 - 설치장소 - 이격거리 ∘ 공조(환경)시설 확인 - 환기설비 확인 - 온·습도 등 확인	∘ 주요설비 배치도 ∘ 온·습도 등 기록지
8. 접지설비	∘ 접지저항 확인 ∘ 접지상태 확인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9. 종합연동시험	∘ 종합연동상태 확인	
10. 부하운전시험	∘ 정격출력으로 충전 및 방전시험(각 15분) (단 태양광 및 풍력 연계형은 최대 가능출력으로 충전시험 가능)	∘ 출력기록지

Ⅱ- 1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 연계 송전선로, 변전소

□ 변전설비

- Ⅱ-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 · 변전 · 배전설비 중 변전설비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 송전선로

○ 가공송전선로

- Ⅱ-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 · 변전 · 배전설비 중 가공송전선로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 지중송전선로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전선로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송전선로 및 부대설비규격서
◦ 전선로	◦ 외관검사 ◦ 케이블접속 및 포설상태 ◦ 접지시설상태 ◦ 절연저항 ◦ 절연내력 ◦ 금구류 시설상태 ◦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 부하시험 ◦ 구조물 시설상태 ◦ 선로침하 상태 ◦ 물밑전선로의 매설상태 ◦ (온도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송전선로 계통도 ◦ 송전선로 경과지도 ◦ 절연저항 성적서 ◦ 절연내력시험 성적서 ◦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 물밑전선로 매설상태 확인 결과서
2. 차단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차단기 및 부대설비규격서
◦ 차단기시험	◦ 외관검사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OCB)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개폐기 인터록 ◦ 개폐표시 상태확인 ◦ 압축장치 ◦ 가스절연장치 ◦ 부하시험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관련설비 단선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 성적서 ◦ 계기교정시험 성적서 ◦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 성적서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SF6가스 수분 측정) ∘ (SF6가스 순도 측정) ∘ (SF6가스 SO2 측정) ∘ (SF6가스 누기 측정)	
3. 부대설비	∘ 위험 및 상표시찰 등 ∘ 계기용 변성기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 환기 및 배수설비 ∘ 조명 및 방재설비 ∘ 방수시설 상태	
4. 접지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접지저항 성적서
∘ 접지설비	∘ 외관검사 ∘ 접지시설상태 ∘ 접지저항 측정	

비고 : 세부 검사내용 중 ( ) 내용은 무정전검사에 적용

○ 개폐소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모선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모선설비시험	∘ 외관검사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부하시험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SF6가스 수분 측정) ∘ (SF6가스 순도 측정) ∘ (SF6가스 SO2 측정) ∘ (SF6가스 누기 측정)	∘ 모선설비 및 부대 설비 규격서 ∘ 관련설비 단선 결선도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성적서 ∘ 경보회로시험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성적서
2. 차단기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전회검사 성적서 ∘ 차단기 및 부대설비 규격서
∘ 차단기시험	∘ 외관검사	∘ 관련설비 단선 결선도

	∘ 조작용 전원 및 회로점검 ∘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유 내압시험(OCB)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시험 ∘ 개폐기 인터록 ∘ 개폐표시상태확인 ∘ 압축장치 ∘ 가스절연장치 ∘ 부하시험 ∘ (온도 측정) ∘ (코로나 측정) ∘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 ∘ (부분방전 측정) ∘ (SF6가스 수분 측정) ∘ (SF6가스 순도 측정) ∘ (SF6가스 SO2 측정) ∘ (SF6가스 누기 측정)	∘ 시퀀스 도면 ∘ 보호계전기시험성적서 ∘ 계기교정시험성적서 ∘ 경보회로시험성적서 ∘ 절연저항 성적서 ∘ 절연유 내압시험성적서 ∘ 무정전시험 관련성적서
3. 부대설비	∘ 피뢰장치 ∘ 계기용 변성기 ∘ 위험 및 상표시찰 등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 조명 및 방재설비 ∘ 울타리, 담 등의 시설	
4. 접지설비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접지설비	∘ 외관검사 ∘ 접지시설상태 ∘ 접지저항 측정	∘ 전회검사 성적서 ∘ 접지저항 성적서

비고 : 세부 검사내용 중 ( ) 내용은 무정전검사에 적용

Ⅱ-11 무정전전원장치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 무정전전원장치 ∘ 일반규격	∘규격확인	
2. 전선로(모선)	∘규격확인 ∘외관검사 ∘보호장치 ∘절연저항	∘보호장치시험 성적서

	∘절연내력		
3. 차단기	∘규격확인 ∘외관검사 ∘보호장치 ∘절연저항	∘보호장치시험 성적서	
4. 이차전지	∘규격확인 ∘특성시험 -충전 및 방전전압 -충전 및 방전전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온도특성시험 -비상정지기능시험		
	∘BMS 기능시험(특성시험 이외의 시험) -계측기능시험 -보호기능시험 -제어기능시험 -비상정지기능시험	∘BMS 기능시험 성적서	
∘ 본체	∘외관검사		
5. 전력변환장치 ∘ 일반규격	∘ 규격확인		
∘ 본체	∘외관검사 ∘특성시험 -충전 및 방전전압 -충전 및 방전전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온도특성시험 ∘PCS 기능시험 -계측기능시험 -보호기능시험 -제어기능시험	∘기능시험 성적서	
6. 부대설비	∘설치환경 -설치장소	∘주요설비 배치도	

	-이격거리 ◦운영환경 -공기조화시설 확인 -온·습도 등 확인 -환기설비 확인	◦온습도 등 기록지
7. 자동전원공급시험	◦부하절체 상태 ◦연동시험	

[별표 10]

연료전지발전설비 제품검사 수행방법

1. 적용범위

연료전지발전설비의 공장품질 검사, 제품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정보의 확보, 준비, 검사, 검토, 결정)에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안전공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비상사태 또는 긴급사항 발생 등의 사유로 해외출장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원격 입회하고 국내에서 검사할 수 있다.

2. 제조시설검사 및 제품검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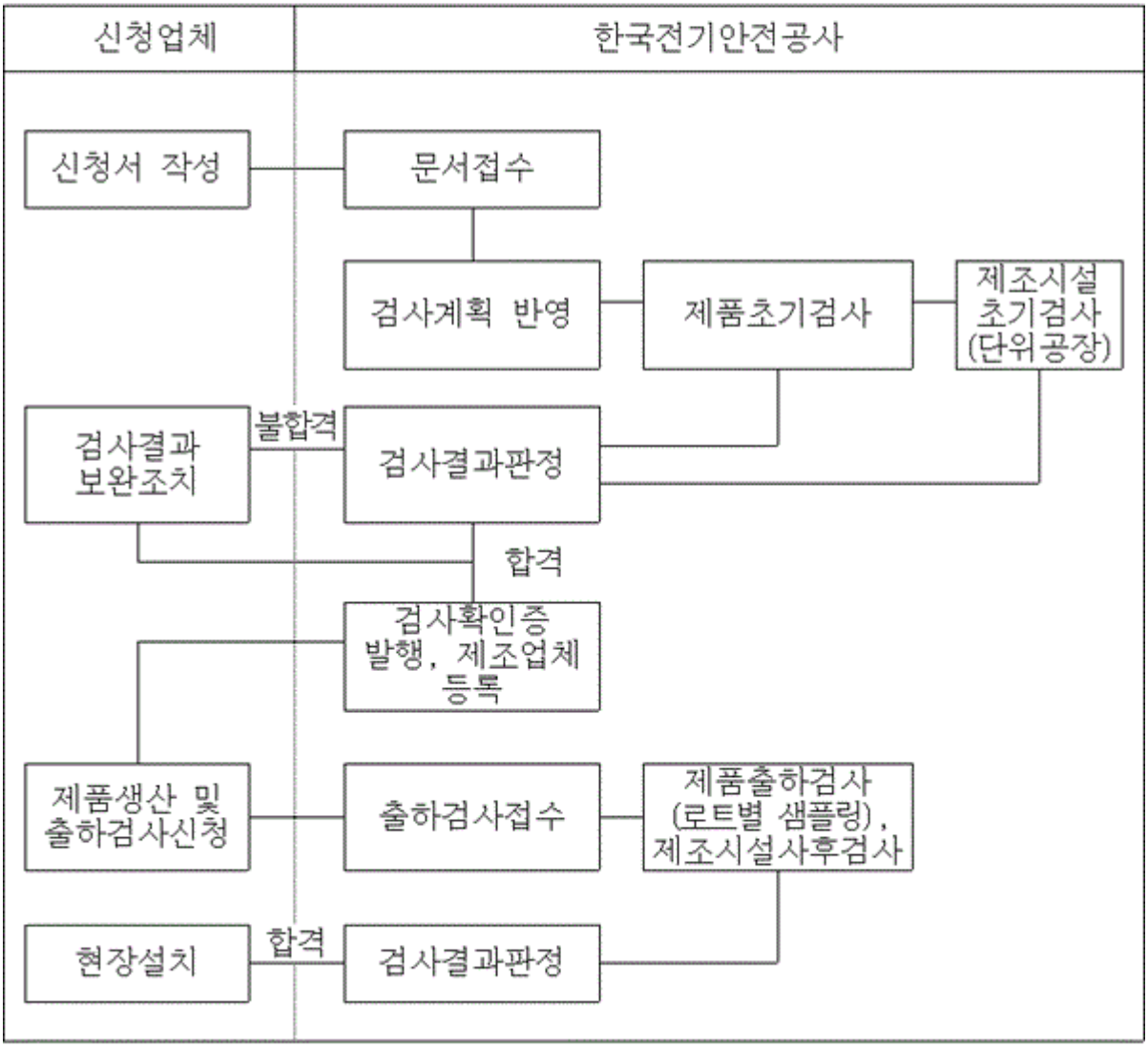

비고 : 제품출하검사와 제조시설사후검사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전점검 확인증(부착용)

<table>
<tr><th>발행기관</th><th>점검 확인증</th></tr>
<tr><td>안전공사</td><td>
<table>
<tr><th colspan="2">사용전점검 확인증</th></tr>
<tr><td>점검일자</td><td></td></tr>
<tr><td>시공업체명</td><td></td></tr>
<tr><td>점 검 자</td><td></td></tr>
<tr><td>점검기관</td><td>한국전기안전공사</td></tr>
</table>
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td></tr>
</table>

■ [별지 제2호 서식]

정기점검 적합확인증(부착용) 및 부적합확인증(부착용)

발행기관	정기점검 적합확인증(부착용)	정기점검 부적합확인증(부착용)
안전공사		

■ [별지 제3호 서식]

(　　) 검사 실시 확인서

발 행 번 호			고객번호	
대표자 성명			검사일자	20 . . .
사업장명			검사결과	
주 소			검 사 자	(서명)
검사대상 전기설비			신 청 인	(서명)
산업 및 업종 구분			차기검사기한	20 . . . 까지

□ 통지내용(불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 조치방법 및 관련근거

□ 참고 또는 권고사항 :

□ 검사 전 회의 내용	□ 검사 후 회의 내용
○ 전기설비 검사목적 및 내용, 절차, 안전사항 등 설명 ○ 입회자 검사협조 및 개폐기 조작 등 안전작업수칙 준수 ○ 검사 전 엘리베이터, 전산 · 통신 · 보안장비 등 사전조치 안내 ○ 비상용 예비발전기 가동 시 과전압 보호에 대한 안내 ○ 전기설비 시험 및 조작 시 고장기기의 부동작 가능성 안내	○ 검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 · 보수 사항 안내 ○ 전기설비 원상복구 등 이상 유 · 무 확인 ○ 검사판정 결과에 이의신청 절차 안내 ○ 검사실시 후 인터넷통신, 엘리베이터, 전산 및 보안장비 등의 전원공급(복전)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업체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안내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위탁에 따른 업무협조 안내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기설비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 및 고객만족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위탁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각종 검사 및 안전관리 안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위탁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

○ 목　　적 :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 및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 수집항목 : 검사업무 입회자 등 관계자의 소속(상호) · 직책 · 성명 · 전화번호(Mobile) · 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 수 탁 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시
○ 위탁업무 : 외부 위탁업체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등
○ 위탁기간 : 해당업무 계약기간 동안 위탁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시)

업무구분	소속(상호)	직책	성명	전화번호(Mobile)	E-mail	동의 여부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1. 전기판매사업자 등에 전기공급 요청시는 본 확인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공사는 검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부조리 행위는** 일체 배격하고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본사 감사실 : 063-716-2724)**
3. **검사확인증은 전기안전여기로(https://safety.kesco.or.kr)**에서 **고객번호로 출력**이 가능하며, 검사결과 보고서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https://www.kes.go.kr)에서 제공하여 드립니다.

(전화 : 전국대표 1588-7500,　　지역본부　　지사 :　　-　　-　　)

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사 장

■ [별지 제4호 서식]

전기설비 시정요구서

고 객 명		검사대상	
검사종류		발행일자	
제 목			

지적근거

내 용

검사자 서 명

조치계획

수검자 서 명 전기안전관리자 서 명

조치예정일자 :

■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설비 부실 시공업체 보고

1. 시공업체
○ 업체명 : ○ 대표자 : ○전화 :
○ 주 소 : ○ 면허종별 및 번호 :

2. 수용가
○ 사업장명 : ○ 대표자 : ○전화 :
○ 검사대상설비 : 수용설비
발전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3. 검사내용
○ 검사신청범위 :
○ 검사일자 및 검사자 : 1차 20 . . . ( )
2차 20 . . . ( )

○ 불합격 내용

내용	불합격 사유	관련근거(법규 및 지시공문)

첨부 1. 검사실시확인서(전기설비 시정요구서) 1부
2. 검사확인증 1부
3. 검사신청서 1부
4. 검사보고서(전기설비 검사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

전 기 설 비 검 사 서

1. 사 업 장 명 :

2. 검사대상 전기설비 :

3. 검 사 종 류 :

4. 검 사 공 정 :

5. 검 사 일 자 :

6. 판 정 :

상기 검사대상 전기설비는 _____법 제__조 및 시행규칙 제__조에 의거 검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 ○ ○ ○ ○	○	○	○	(인)
입 회 자	전기안전관리자(전기)	○	○	○	(인)
	전기안전관리자(기계)	○	○	○	(인)
	전기안전관리자(토목)	○	○	○	(인)
	사용전용접검사담당자(용접)	○	○	○	(인)
검 사 자	한국전기안전공사	○	○	○	(인)

■ [별지 제7호 서식]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신청인	① 대 표 자 성 명		② 전 화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소재지			
⑥ 전 기 설 비 설 치 장 소				
⑦ 전 기 설 비 개 요				
⑧ 전 회 검 사 일			⑨ 검 사 시 한	
⑩ 검사 연기 희망일				
⑪ 연 기 사 유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4]에 따라 정기검사 시기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중

※ 첨부서류

1. 전회검사이후 운전시간 및 기동횟수에 관한 기록
2. 전회검사이후 고장 및 정비기록
3. 정기검사 시기연기 검토서

- 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검자와 협의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정기검사 연기사유의 적합성을 조사할 수 있다.

■ [별지 제8호 서식]

전기설비 검사결과지적서

사 업 장 명		검 사 대 상	
검 사 종 류		발 행 일 자	
제 목			

지적근거

내 용

검사자 서 명

조치계획

상기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조치예정임

수검자 서 명

■ [별지 제9호 서식]

검사 · 점검 결과 이의 신청서

신청인	① 대 표 자 성 명		② 전 화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소재지			
이의신청대상	⑥ 전기설비설치장소			
	⑦ 전 기 설 비 개 요			
	⑧ 검사 · 점검 일자			
	⑩ 결과 통보일			
⑪ 이의신청 사유				
⑫ 증빙서류 목록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 검사 · 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중

※ 첨부서류

1.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검사 · 점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검자와 협의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시행 2023. 10. 12.] [고시 제2023 - 197호, 2023. 10.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 - 203 - 39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 원칙) 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란 발전기ㆍ원동기ㆍ연료전지ㆍ태양전지ㆍ해양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저장장치 그 밖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저장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전기를 공급하는 것]하는 곳을 말한다.
2.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ㆍ전동발전기ㆍ회전변류기ㆍ정류기 그 밖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3. "개폐소"란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ㆍ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
4. "급전소"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조작을 하는 곳을 말한다.
5. "전선"이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

6. "전로"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7.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전기기계기구"란 전로를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
9. "이웃 연결 인입선"이란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입선"이란 가공인입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수용장소의 조영물(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10. "전차선"이란 전차의 집전장치와 접촉하여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11. "전차선로"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2. "배선"이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3. "약전류전선"이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
14. "약전류전선로"란 약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5. "광섬유케이블"이란 광신호의 전송에 사용하는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송매체를 말한다.
16. "광섬유케이블선로"란 광섬유케이블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7. "지지물"이란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8. "무효 전력 보상 설비"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19. "전력보안 통신설비"란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급전、운전、보수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전화 및 원격지에 있는 설비의 감시、제어、계측、계통보호를 위해 전기적、광학적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제 장치、전송로 설비 및 전원 설비 등을 말한다.
20. "전기철도"란 전기를 공급받아 열차를 운행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를 말한다.
21. 극저주파 전자계(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 ELF EMF)라 함은 0Hz를 제외한 300Hz 이하의 전계와 자계를 말한다.
22. "수로"란 취수설비, 침사지, 도수로, 헤드탱크, 서지탱크, 수압관로 및 방수로를 말한다.
23. "설계홍수위(flood water level : FWL)"란 설계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내의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설계홍수량은 빈도별 홍수유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4. "최고수위(maximum water level : MWL)"란 가능최대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내의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한다. 최고수위는 설계홍수위와 같거나, 빈도홍수를 설계홍수량으로 채택한 댐의 경우는 설계홍수위보다 높다.
25. "가능최대홍수량(probable maximum flood : PMF)"이란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 PMP)으로 인한 홍수량을 말하며, 유역에서의 가능최대 강수량이란 주어진 지속시간 동안 어느 특정 위치에 주어진 유역면적에 대하여 연중 어느 지정된 기간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최대 강수량을 말한다.
26. "황산화물제거, 질소산화물제거설비"란 연소시 발생하는 공기 배출가스 중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의 농도를 저감하는 설비로서 보일러, 압력용기 및 배관의 부속설비에 포함한다.
27. "해양에너지발전설비"란 조력, 조류, 파력, 해수 온도차 등으로 해양의 조수, 해류, 파도,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28. "전기저장장치"란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9. "스털링엔진"이란 실린더 내부의 밀봉된 작동유체의 가열ㆍ냉각 등의 온도변화에 따른 체적변화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외연기관을 말한다.
30. 직류전계(DC Electric Fields)란 0Hz인 직류전로와 공간전하에 의해 형성되는 정전계(Static Electric Fields)를 말한다.
31. 직류자계(DC Magnetic Fields)란 0Hz인 직류전로에서 형성되는 정자계(Static Magnetic Fields)를 말한다.
32. "소수력발전설비"란 물의 위치에너지 및 운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로 시설용량 5,000kW 이하를 말한다.

② 전압을 구분하는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압 : 직류는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인 것.
2. 고압 : 직류는 1.5kV를,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
3. 특고압 : 7kV를 초과하는 것.

③ 특고압의 다선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은 그 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을 말한다.

제4조 (적합성 판단)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1. 대한전기협회에 설치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조에서 "기준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 기준위원회에서 이 고시의 제정 취지로 보아 안전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2장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제1절 일반 사항

제5조 (전로의 절연) ① 전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시켜야 하며, 그 절연성능은 제27조제3항 및 제52조에 따른 절연저항 외에도 사고 시에 예상되는 이상전압을 고려하여 절연파괴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1.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로 보아 위험이 없는 경우
2. 혼촉에 의한 고전압의 침입 등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 접속점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변성기 안의 권선과 그 변성기 안의 다른 권선 사이의 절연성능은 사고 시에 예상되는 이상전압을 고려하여 절연파괴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① 전기설비(제3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4장 발전용 수력설비 및 제6장 발전용 풍력설비에 의한 전기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를 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한다.

② 전기설비를 접지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지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6조의2 (전기설비의 피뢰) 뇌방전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피뢰설비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전선 등의 단선 방지) 전선, 지지선, 가공지선(架空地線), 약전류전선 등(약전류전선 및 광섬유 케이블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하는 선은 통상 사용상태에서 단선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8조 (전선의 접속) 전선은 접속부분에서 전기저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접속하고 절연성능의 저하(나전선을 제외한다) 및 통상 사용상태에서 단선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전기기계기구의 열적강도) 전로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는 통상 사용상태에서 그 전기기계기구에 발생하는 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0조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접촉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개폐기ㆍ차단기ㆍ피뢰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할 때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목제(木製)의 벽 또는 천장 기타 가연성 구조물 등

으로부터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 재료 등으로 양자 사이를 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할 수 있다.

1. 발전소 등 공중(公衆)이 출입하지 않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혼촉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 등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
3. 특고압측의 권선과 저압측의 권선이 혼촉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가 차단되는 장치의 시설 그 밖의 적절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제12조 (특고압전로 등과 결합하는 변압기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전로에는 고압 또는 특고압의 침입에 의한 저압측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그 변압기의 적절한 곳에 접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방법 또는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변압기에서 떨어진 곳에 접지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저압측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고압을 고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에는 특고압의 침입에 의한 고압측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접지를 시설한 방전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과전류에 대한 보호) 전로의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손상으로부터 전선 및 전기기계기구를 보호하고 화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차단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락에 대한 보호)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경우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지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등 지락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공급지장의 방지)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설비는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사업자의 원활한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용의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설비는 그 전기설비의 손상으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주파 이용설비에 대한 장해 방지) 고주파 이용설비(전로를 고주파전류의 전송로로서 이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7조 (유도장해 방지) ①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계가 3.5kV/m 이하, 자계가 83.3μT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직류 특고압 가공전

선로에서 발생하는 직류전계는 지표면에서 25kV/m 이하, 직류자계는 지표상 1m에서 400,000μT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유도(靜電誘導) 및 전자유도(電磁誘導)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논밭, 산림 그 밖에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는 전자유도작용이 약전류전선로(전력보안 통신설비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의 정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8조 (통신장해 방지) ① 전선로 또는 전차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선로 또는 전차선로는 약전류전선로에 유도작용으로 인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약전류전선로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지구자기관측소 등에 대한 장해 방지) 직류의 전선로, 전차선로 및 귀선은 지구자기관측소 또는 지구전기관측소에 대하여 관측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0조 (절연유) ①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폴리염화비페닐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전기공급설비의 시설

제21조 (발전소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ㆍ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구내에 출입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방호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ㆍ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 등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한다.

⑤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ㆍ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체중량,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1조의2 (발전소 등의 부지 시설조건) 전기설비의 부지(敷地)의 안정성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하여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를 산지에 시설할 경우에는 풍수해, 산사태, 낙석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하며, 산지전용면적중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토ㆍ성토한 경사면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토ㆍ성토한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다만, 345kV급 이상 변전소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인 발전소로서 불가피하게 절ㆍ성토면 수직높이가 15m 초과되는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토ㆍ성토한면의 안정성에 대한 전문용역기관(토질 및 기초와 구조분야 전문기술사를 보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의 검토결과에 따라 용수, 배수, 비탈면보호 및 낙석방지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발전 및 변전설비까지의 최소간격은 보안울타리, 외곽도로, 수림대 등을 포함하여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옥내변전소와 옹벽, 낙석방지망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발전기 등의 보호 장치) ①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상용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에는 그 전기기계기구를 현저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이상(異常)이 그 전기기계기구에 생겼을 경우(원자력 발전소에 시설하는 비상용 예비 발전기에 있어서는 비상용 노심 냉각장치가 작동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의 변압기 또는 조상설비에는 그 전기기계기구를 현저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이상(異常)이 그 전기기계기구에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 ① 발전기ㆍ변압기ㆍ무효 전력 보상 장치ㆍ계기용변성기ㆍ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차 또는 풍차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회전하는 부분은 부하를 차단한 경우에 일어나는 속도에 대하여, 증기터빈, 가스터빈 또는 내연기관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회전하는 부분은 비상 속도조절기 및 그 밖의 비상 정지장치가 동작하여 도달하는 속도에 대하여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③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진동에 대한 기계적 강도는 제8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 (발전소 등의 상시감시) ① 다음 각 호의 발전소는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발전소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이상상태에 따른 제어가 필요한 발전소

2.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필요가 있는 발전소

② 제1항의 발전소 이외의 발전소 또는 변전소(이에 준하는 장소로서 50kV를 초과하는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구내에서 상시감시하지 않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비상용 예비전원은 제외한다)는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안전하고 또한 확실하게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수소냉각식의 발전기 혹은 조상설비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냉각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구조는 수소의 누설 또는 공기의 혼입 우려가 없는 것일 것.
2. 발전기, 조상설비, 수소를 통하는 관, 밸브 등은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일 것.
3. 발전기축의 밀봉부로부터 수소가 누설될 때 누설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누설된 수소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4. 발전기 또는 조상설비 안으로 수소의 도입 및 발전기 또는 조상설비 밖으로 수소의 방출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일 것.
5. 이상을 조기에 검지하여 경보하는 기능이 있을 것.

제26조 (전선로 등의 시설) 전선로 및 전차선로는 시설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7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① 저압 가공전선(중성선 다중접지식에서 중성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성능을 갖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협 횡단ㆍ하천 횡단ㆍ산악지 등 통상 예견되는 사용 형태로 보아 감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중전선(지중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성능을 갖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저압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제28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 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감전예방을 위해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가공전선 등의 높이) ① 가공전선, 가공전력보안통신선 및 가공전차선은 접촉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한 감전의 우려가 없고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높이에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높이에 시설하여야 한다.

제30조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기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전선,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약전류전선 또는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설치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공전선은 기 설치된 가공전선로, 전차선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 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기 설치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전선의 혼촉 방지) 전선로의 전선, 전력보안 통신선 또는 전차선 등은 다른 전선이나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고 접촉, 단선 등에 의해 생기는 혼촉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2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등의 시설) ①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상 시 고전압의 침입에 의해 저압측 또는 고압측의 전기설비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접지를 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위쪽에서 그 지지물에 저압의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는 이상 시 고전압의 침입에 의하여 저압측의 전기설비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접지를 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지지물 강도) ①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지선을 시설하는 경우는 그 지선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그 지지물이 지지하는 전선 등에 의한 인장하중, 풍압하중 및 그 시설장소에서 통상 예상되는 기상의 변화, 진동, 충격 기타 외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가(人家)가 많이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풍압을 고려, 본문 풍압하중의 1/2을 고려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구조상 안전한 것으로 하는 등 연쇄적인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4조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피뢰기 시설) 전로에 시설된 전기설비는 뇌전압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뇌전압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25kV 이하의 중성점 다중접지식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제35조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단선 또는 도괴에 의해 그 지역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그 지역으로부터의 화재에 의한 전선로의 손상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며 동시에 기타 절연성, 전선의 강도 등에 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에 시가지, 그 밖의 인가밀집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제36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사용전압이 400kV 이상의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그 건조물의 화재로 인한 그 전선의 손상 등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와의 수직거리가 28m 이상일 것.
2.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및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닌 건조물로서 내화구조이고, 그 지붕 재질은 불연재료일 것.
3. 폭연성 먼지, 가연성 가스, 인화성물질, 석유류, 화약류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건조물이 아닐 것.
4. 건조물 상부 기준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계 및 자계 허용기준 이하일 것.
5.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7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선의 단선 및 지지물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사용전압이 170kV 초과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도로, 보도교, 그 밖의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의 상호 간의 수평이격 거리는 그 시설물의 도괴 등에 의한 그 전선의 손상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그 건조물의 화재로 인한 그 전선의 손상 등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할 것.
2.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와의 수직거리가 21m 이상일 것.
3. 건조물 상부 기준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류전계 및 직류자계 허용기준 이하일 것.

제37조 (전선과 다른 전선 및 시설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전선로의 전선 또는 전차선 등은 다른 전선,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 등"이라 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고 접촉, 단선 등에 의해 생기는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전선, 옥측전선 및 터널 안의 전선, 그 밖에 시설물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은 다른 전선,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이하 이 조에서 "다른 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장 시의 아크방전에 의하여 다른 전선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지중전선로의 시설) ① 지중전선로는 차량, 기타 중량물에 의한 압력에 견디고 그 지중전선로의 매설표시 등으로 굴착공사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전선로 중 그 내부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에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웃 연결 인입선의 시설) 고압 또는 특고압의 이웃 연결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옥내전선로 등의 시설) 옥내를 관통하여 시설하는 전선로와 옥측, 옥상 또는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그 전선로로부터 전기의 공급을 받는 자 이외의 자의 구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가스절연기기 등의 시설)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절연기기(충전부분이 압축절연가스로 절연된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압력을 받는 부분의 재료 및 구조는 최고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고 안전한 것일 것.
2. 압력이 상승할 경우에 그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 압력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일 것.
3. 이상 압력을 조기에 검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4. 압축공기 장치의 공기탱크는 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5. 압축공기 장치는 주 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하였을 경우에 압력을 자동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일 것.
6. 가스절연기기에 사용하는 절연 가스는 가연성, 부식성 및 유독성이 없는 것일 것.

제42조 (가압장치의 시설)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압력을 받는 부분은 최고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고 안전한 것일 것.
2. 자동적으로 압축가스를 공급하는 가압장치로서 고장에 의하여 압력이 현저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상승한 압력에 견디는 재료 및 구조임과 동시에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 그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 압력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일 것.

3. 압축가스는 가연성, 부식성 및 유독성이 없는 것일 것.

제43조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시설) ①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ㆍ급전소 및 기술원 근무지, 그 밖의 곳으로서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고 또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의 상호 간에는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력보안 통신선은 기계적 충격, 화재 등에 의하여 통신 기능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전기설비의 사이버안전 확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것을 말한다)의 운영을 위한 전력정보통신시스템은 전기설비가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전기설비의 손상 및 전기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사이버 공격[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이버 공격을 말한다]에 대응가능한 사이버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44조 (시가지의 특고압 전선로에 전선 첨가하는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시가지에 시설하는 전력보안 통신선은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된 전력보안 통신선과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전압에 의한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무선통신용 안테나 등의 지지물 강도) 전력보안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이하 이 조에서 "무선용 안테나 등"이라 한다)을 시설하는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는 풍압하중을 고려하여 도괴에 의한 통신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로 주위의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무선용 안테나 등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전차선로의 시설) ① 직류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류 전차선로의 공칭전압은 25kV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전차선로는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전용부지는 전차선로가 제3레일방식인 경우 등 사람이 그 부지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철도 등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47조 (가공 절연귀선 등의 시설) ① 가공 절연귀선의 시설은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3조, 제37조제1항, 제39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가공으로 시설하는 배류선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 (전기부식작용에 의한 장해 방지) 직류귀선은 누설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전기부식작용에 의한 장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49조 (전압 불평형에 의한 장해 방지) 교류식 전기철도는 그 단상부하에 의한 전압 불평형으로 인하여 교류식 전기철도 변전소의 변압기에 접속하는 전기사업용 발전기, 조상설비, 변압기, 그 밖의 전기기계기구에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절 전기사용설비의 시설

제50조 (배선의 시설) ① 배선은 시설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불량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이동전선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하였을 때 사람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고 이동전선과 접속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배선의 사용전선) ①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나전선 및 특고압에 사용하는 접촉전선을 제외한다)은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사용상 충분한 강도 및 절연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② 배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사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고 또한 절연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고압 배선에는 접촉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 V	DC시험전압 V	절연저항 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제53조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발열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충전부의 노출 또는 발열체의 시설이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감전 기타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의2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의 시설) 전기자동차(도로 운행용 자동차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축전지, 연료전지, 광전지 또는 그 밖의 전원장치에서 전류를 공급받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말한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충전설비 또는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방전하기 위한 충ㆍ방전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및 충ㆍ방전설비는 안정적으로 충전 또는 충ㆍ방전할 수 있도록 제어 및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전기저장장치의 시설) ①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체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전기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저장장치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54조 (무선설비에 대한 장해 방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접촉전선은 전파, 고주파전류 등이 발생함으로서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55조 (배선과 다른 배선 및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배선은 다른 배선,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혼촉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배선은 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는 방전에 의하여 이 시설물들을 손상할 우려가 없고 누전이나 방전에 의하여 이 시설물들을 통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56조 (저압간선 등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 ① 저압간선, 저압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의 전로 및 인입구에서 저압간선을 거치지 않고 전기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의 전로(이하 "간선 등" 이라 한다)에는 적절한 곳에 개폐기를 시설함과 동시에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그 간선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간선 등에서 단락사고에 의한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사용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출력이 0.2kW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과전류에 의한 그 전동기의 손상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기의 구조 또는 부하의 특성이 전동기를 손상될 정도의 과전류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통신호등, 그 밖에 손상으로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손상으로부터 그 기기들의 전선 및 전기기계기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57조 (일반 공중 출입 장소의 전기설비의 지락에 대한 보호) 일반 공중이 출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절연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고압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에 대한 보호) ①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고압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그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다중 이용 시설의 전기설비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기타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설치장소의 환경에 맞는 보호등급으로 시설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먼지가 많은 장소) 먼지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먼지에 의한 그 전기설비의 절연성능 또는 도전성능의 열화에 따른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61조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통상 사용상태에서 그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새거나 체류하는 장소로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먼지가 있는 곳으로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화약류가 있는 장소
4.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제62조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이 발산되는 장소(산류, 알카리류, 염소산카리, 표백분, 염료 혹은 인조비료의 제조공장, 동, 아연 등의 제련소, 전기분동소, 전기도금공장, 개방형 축전지를 설치한 축전지실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를 말한다)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에 의한 그 전기설비의 절연성능 또는 도전성능의 열화에 따른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화약류 저장소) 조명을 위한 전기설비(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한다) 이외의 전기설비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화약류 저장소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쉽게 착화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화약류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특수장소의 특고압 전기설비) 특고압 전기설비는 제6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 및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연성 가스 등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가 강구된 정전도장장치(靜電塗裝裝置), 동기전동기, 동기발전기,

유도전동기 및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를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특수장소의 접촉전선) ① 접촉전선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방된 장소에서 저압 접촉전선 및 그 주위에 먼지가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또한 면, 마, 견, 그 밖의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존재하는 장소에는 저압 접촉전선과 그 접촉전선에 접촉되는 집전장치가 사용상태에서 떨어지기 어렵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접촉전선은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압 접촉전선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 (전기울타리의 시설) 전기울타리(옥외에서 나전선을 고정하여 시설한 울타리로서 그 나전선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논밭, 목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짐승의 침입 또는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절연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전격살충기,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 전격살충기 또는 엑스선 발생장치는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 (파이프라인 등에 전열장치의 시설) 파이프라인 등(도관 및 기타 시설물에 의하여 액체를 수송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에 시설하는 전열장치는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장소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전,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 (전기욕기, 은（銀） 이온 살균장치의 시설) 전기욕기(욕조의 양단에 전극을 설치하여 그 전극 상호 간에 미약한 교류전압을 가하여 입욕자에게 전기적 자극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은 이온 살균장치(욕조 안에 전극을 가지는 이온발생기를 설치하여 그 전극 상호 간에 미약한 직류전압을 가하여 은 이온을 발생시켜서 이것으로 살균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감전에 의한 사람의 위해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시설할 수 있다.

제70조 (전기부식방지설비의 시설) 전기부식방지설비는 다른 시설물에 전기부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71조 (특고압 전기집진 응용장치 등의 시설)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정전도장장치(靜電塗裝裝置)、전기탈수장치、전기 선별장치 그 밖의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제50조 및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옥측 또는 옥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전기설비의 충전부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수용장소 이외의 전로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
2.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 또는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공간에는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용전원의 정전 시 자동으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절환 기능을 갖는 장치를 시설할 것.

제3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1절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

제73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재료) 보일러, 독립과열기(화기, 연소가스 그 외의 고온가스 또는 전기에 의해 증기를 과열시키는 장치), 증기 저장기,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황산화물제거, 질소산화물제거설비를 포함하며, 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당 기기의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74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는 자체중량,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75조 (안전밸브)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그 부속설비에는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압력을 방출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밸브는 작동시 부속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76조 (급수장치) ① 보일러에는 최대 연속 증발시 열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비의 이상 등에 의해 순환 보일러의 수위 또는 관류 보일러의 급수 유량이 현저하게 저하했을 때 급속히 연료의 공급이 차단되어도 계속해서 보일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열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일러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 (증기 및 급수의 차단) ① 보일러의 증기출구(안전밸브로부터의 증기출구 및 재열기로부터의 증기출구는 제외한다)는 증기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터빈 입구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단밸브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일러 급수의 입구는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또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마다 급수장치를 설치할 때 보일러에 가장 가까운 급수가열기의 출구 또는 급수펌프장치의 출구에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에는 차단밸브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8조 (보일러 수 배출장치) 순환 보일러에는 보일러 수의 농축을 방지하고 또 수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일러 수를 배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9조 (계측장치) 보일러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0조 (개폐표시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및 배관의 설비에 부착된 중요밸브, 공기댐퍼 및 가스댐퍼는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증기 ·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제81조 (증기 ·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재료) 증기、가스터빈 및 부속설비(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82조 (증기 ·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증기、가스터빈은 비상 속도조절기가 작동했을 때 도달하는 회전속도에 대하여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가스터빈은 가스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하여 연료의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작동했을 때의 가스온도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강도 및 열적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③ 증기、가스터빈은 베어링 또는 축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진동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 증기、가스터빈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하게 지지할 수 있고 또한 이상 마모, 변형 및 과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증기、가스터빈 및 발전기 그 외의 회전체를 동일한 축으로 결합하였을 때(회전체를 동일한 축으로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기、가스터빈)의 위험속도는 속도조절기에 의해 조정 할 수 있는 회전속도 중 최소의 것으로부터 비상속도조절기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속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속도에서의 진동이 해당 증기、가스터빈의 운전에 지장을 미치는 일이 없게 충분한 대책을 강구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증기、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증기ㆍ가스터빈 및 부속설비는 자체중량,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83조 (속도조절기) 증기ㆍ가스터빈에는 부하가 변동할 때에도 그 속도 및 출력이 지속적으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기터빈에 유입되는 증기 또는 가스터빈에 유입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기터빈에 유입되는 증기 또는 가스터빈에 유입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는 정격부하를 차단한 때에 도달하는 속도를 비상속도조절기가 작동하는 회전속도 미만으로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증기ㆍ가스터빈에 유도발전기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경보 및 비상정지 장치) ① 증기ㆍ가스터빈에는 운전 중에 진동을 검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증기ㆍ가스터빈에는 운전 중에 일어나는 과속도 및 그 이외의 이상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증기터빈에 유입하는 증기 또는 가스터빈에 유입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차단하는 비상속도조절기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 (과압방지장치) 증기ㆍ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에는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압력을 분출할 수 있는 적당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6조 (윤활유장치) 증기ㆍ가스터빈에는 윤활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도 윤활유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 (계측장치) 증기ㆍ가스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삭제>

제88조 <삭제>

제89조 <삭제>

제90조 <삭제>

제91조 <삭제>

제92조 <삭제>

제93조 <삭제>

제4절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

제94조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재료) 내연기관의 부속설비(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95조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내연기관은 비상 속도조절기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 속도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내연기관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하게 지지할 수 있고 또한 이상 마모, 변형 및 과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는 자체중량,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96조 (속도조절기) 유도 발전기와 결합하는 내연기관 이외의 내연기관에는 그 회전속도 및 출력이 부하의 변동시에도 지속적으로 동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연기관에 유입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속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도조절기는 정격 부하를 차단했을 경우에 도달하는 회전속도를 비상 속도조절기가 작동하는 회전속도 미만으로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97조 (비상정지장치) 내연기관에는 운전 중에 일어나는 과속도 및 그 이외의 이상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내연기관에 유입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차단하는 비상속도조절기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8조 (과압방지장치) 내연기관 및 그 부속 설비에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압력을 방출하기 위한 적당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9조 (계측장치) 내연기관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절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

제100조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재료) ①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 및 최저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갖고 또한 난연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배관 지지물의 재료는 사용하중에 대해 충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101조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구조) ①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내압부분 또는 도관과 관련되는 지지물과 기초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과 최고 사용온도 또는 최저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는 자체중량,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02조 (안전밸브)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용기 및 배관에는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전밸브는 작동시 안전밸브로부터 방출되는 가스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03조 (가스의 누설 대책)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는 해당 설비로부터 가스 또는 액화가스가 누설 했을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4조 (정전기 제거) 액화가스가 통과하는 설비에는 해당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에 의해 인화 할 우려가 없도록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 (경보 및 비상정지장치) ①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에는 가스나 액화가스 및 제어용 기기의 사용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검지해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에는 사용 중 이상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나 액화가스의 유출 및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장치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6조 (차단장치)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가스출구 및 입구에는 가스나 액화가스의 유출 및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7조 (가스의 바꿔놓음)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액화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불활성 가스등으로 가스를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08조 (표시)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액화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연료전지설비

제109조 (연료전지 설비의 재료) 연료전지설비(펌프 및 압축기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110조 (연료전지 설비의 구조) ① 연료전지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 중 최고 사용압력이 0.1MPa 이상 부분의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료전지 설비는 자체중량,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11조 (안전밸브) 연료전지설비(액화가스 설비는 제외한다)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는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전밸브는 작동시 안전밸브로부터 방출되는 가스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0.1MPa 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그 압력을 낮추기 위한 적당한 과압방지장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2조 (가스의 누설 대책) 연료가스를 통하는 연료전지 설비에는 해당 설비로부터의 연료 가스 누설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3조 (비상정지장치) 연료전지 설비에는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이상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설비를 자동적이고 신속하게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4조 (연료가스의 치환) 연료전지 설비의 연료가스를 통하는 부분은 불활성 가스등으로 연료가스를 안전하게 치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15조 (공기 계통 설비의 시설) 연료전지 설비의 공기압축기 및 보조 연소기에는 해당 기기에 이상이 발생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절 가스화로 설비

제116조 (간격) ① 가스화로 설비(관 및 그 부속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도 또한 같다)는 그 외면과 발전소의 경계선(경계선이 바다, 하천, 호수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해당 바다, 하천, 호수 등의 바깥 가장자리를 말한다)과의 사이에 가스 누설 또는 화재 등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려면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스화로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건축물, 학교, 기타 별도로 고시되는 건물과의 사이에 가스 누설 또는 재해 등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려면 별도로 고시되는 경계선이나 바깥 가장자리까지의 간격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 (안전구획의 설정) ① 가스화로 설비는 가스 누설 또는 재해 등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려면 설비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상 적절한 구획으로 구분하고 또 설비상호 간에는 안전상 필요한 거리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스화로 설비(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외면에서 발전소의 경계선(경계선이 바다, 하천, 호수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해당 바다, 하천, 호수 등의 건너편을 말한다)에 대해 일정한 거리 이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 (가스화로 설비의 재료) 가스화로 설비(펌프 및 가스압축기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배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당 기기의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

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119조 (가스화로 설비의 구조) ① 가스화로 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스화로 설비는 자체중량,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20조 (안전밸브) 가스화로 설비에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압력을 낮추기 위해 적당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전밸브는 작동 시 안전밸브에서 분출되는 가스에 의한 위험 및 가스화로 설비에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21조 (급수장치) ① 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용기에는 가스발생량이 최대상태일 때의 연속운전 시 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비의 이상 등에 따라 급수유량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에는 급속하게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용기에 손상을 주는 열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 (증기 및 급수의 차단) ① 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용기의 증기출구(안전밸브의 증기출구 및 재열기의 증기출구는 제외한다)는 증기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기 또는 증기발생설비와 결합된 용기 이외의 용기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공급되는 설비의 입구에서 증기의 유로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용기의 증기출구 또는 2개 이상의 용기 혹은 증기발생설비가 일체가 되어 증기를 발생하고 이를 다른 것에 공급하는 경우의 해당 용기 사이의 증기출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용기의 급수 입구는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또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별로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용기와 가장 가까운 열교환기의 출구 또는 급수장치의 출구가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또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 해당 용기의 급수 입구 또는 2개 이상의 용기 혹은 증기발생설비가 일체가 되어 증기를 발생하고 이를 다른 것에 공급하는 경우의 해당 용기 사이의 급수 입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가스화로 설비의 배수장치) 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물순환형 증기발생설비의 경우에는 물의 농축을 방지하고 수위를 조정하기 위해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4조 (가스의 누설대책) 가스화로 설비에는 해당 설비에서 가스가 누설한 경우의 위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5조 (정전기 제거) 가연성가스를 통하게 하는 가스화로 설비로서 해당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로 인해 인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6조 (계측장치) 가스화로 설비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7조 (경보 및 비상장치) ① 가스화로 설비에는 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가스의 상태를 감지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스화로 설비에는 운전 중 이상에 의한 위해발생방지를 위하여 그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가스의 유출 및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8조 (가스의 바꿔놓음) 가스화로 설비 중 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불활성가스 등으로 가스를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8절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

제128조의2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의 재료) ① 스털링엔진 및 그 부속설비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사용압력, 최고사용온도 및 최저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스털링엔진에 사용하는 작동유체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제128조의3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스털링엔진은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속도 및 왕복속도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스털링엔진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 가능한 것으로 이상 마모, 변형 및 구조 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스털링엔진 및 그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고사용압력, 최고사용온도 또는 최저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내압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 스털링엔진에 직접 접속되는 가스 및 혼합가스의 배관과 냉각수 배관은 최고사용압력, 최고사용온도 및 최저사용온도에 충분히 견디고 스털링엔진의 진동에 의해 풀리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⑤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는 자체중량,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28조의4 (속도조절장치) 스털링엔진에는 정격부하를 차단했을 경우에 도달하는 회전속도 및 왕복속도를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는 회전속도 및 왕복속도 미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유도발전기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8조의5 (비상정지장치) 스털링엔진은 운전 중에 생기는 과속, 과열 및 그 이외의 이상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스털링엔진을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정지

시키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28조의6 (계측장치)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4장 발전용 수력설비
제1절 댐 및 저수지

제129조 (댐의 종류) 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크리트 중력댐
2. 아치댐
3. 필 댐

제130조 (본체에 작용하는 하중) ① 댐의 본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다음 표와 같다.

댐의 종류	콘크리트 중력댐	아 치 댐	필 댐
하 중	자체중량,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지진력, 양압력, 풍하중 및 온도하중	자체중량,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지진력, 양압력 및 온도하중	자체중량, 정수압, 지진력 및 간극수압

② 제1항에 따른 하중에 대하여 극한지에서 대안거리가 짧아 큰 빙압이 가하여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인 경우의 하중에 빙압을 가산하여야 한다.

제131조 (비월류부 마루의 높이) 댐의 비월류부 마루의 높이는 최고수위 또는 설계홍수위에 여유 높이를 더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132조 (기초지반) 댐의 기초지반은 댐의 안정에 필요한 강도 및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제133조 (댐 콘크리트의 재료) ① 댐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멘트는 그 품질에 따라 적절하게 응결하고 소요강도를 낼 수 있을 것.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적당한 입자 크기를 가질 것
3. 골재, 물 또는 혼화재료는 콘크리트의 응결을 방해하고 철근을 현저히 녹슬게 하거나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방해하는 산, 염, 유기물 또는 진흙을 함유하지 않을 것.

② 해수와 접촉하는 댐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재료는 부식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34조 (누수의 방지) 본체 및 본체와 그 기초지반과의 접촉부는 위험한 누수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35조 (감시 장치) 높이가 15m 이상의 댐에는 댐의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36조 (여수로) ① 본체 또는 그 부근에는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여수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여수로는 댐의 본체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 여수로 구조물은 각종 작용하중과 설계홍수위 또는 최고수위 상태에서 저수지로부터 방류되는 유량에 의한 하중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설계홍수위 또는 최고수위 상태에서 흐르는 물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고 방류되는 유량으로 인하여 댐 및 그 부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여수로의 기능에 지장을 줄 부유물이 유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의 여수로 수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수밀성을 가질 것.
2. 개폐가 쉽고 확실할 것.
3. 사용하는 재료는 필요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능을 가질 것.
4. 자체중량,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지진력, 양압력, 개폐력 및 빙압에 의한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개폐시 위험한 진동이 없을 것.
6. 좌굴 하지 않는 구조일 것.
7. 작용하는 하중을 본체 등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구조일 것.

제137조 (여수로 이외의 방류설비) 여수로 이외의 방류설비는 댐 및 그 부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38조 (저수지 및 조정지) 저수지 및 조정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토사의 유실로 인하여 인가, 논밭 및 도로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2. 토사의 퇴적에 의하여 댐에 위험을 주거나 이상 수위상승이 없을 것.

제139조 (콘크리트 중력댐 본체의 강도) ① 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에서 발생되는 압축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압축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는 그 상류단에서 연직방향의 인장응력이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본체의 월류부 부근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에 대하여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0조 (콘크리트 중력댐 본체 및 기초지반의 안정도) 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 및 본체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부에서는 활동에 대해 안정되도록 적절한 전단마찰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제141조 (콘크리트 중력댐 본체의 시설) 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2. 과대한 양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3. 본체의 내부에 설치하는 점검통로, 방류설비, 수압관로 등의 개구부 주변부분은 응력집중 및 온도응력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제142조 (아치댐 본체의 강도) ① 아치댐의 본체에서 발생되는 압축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압축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아치댐의 본체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43조 (아치댐 본체 및 기초지반의 안정도) 아치댐의 본체 및 본체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부에서는 활동에 대해 안정되도록 적절한 전단마찰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제144조 (아치댐 본체의 시설) 아치댐의 본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2. 단면이 갑자기 변화하는 부분 및 본체의 내부에 설치하는 점검통로, 방류설비, 수압관로 등의 개구부 주변부분은 응력집중 및 온도응력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제145조 (필댐 축제재료) ① 필댐의 본체에 사용하는 토질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댐의 안정에 필요한 강도 및 수밀성이 있을 것.
2. 댐의 안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팽창성 또는 수축성이 없을 것.
3. 묽은 진흙으로 되지 않을 것.
4.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광물성분은 불용성일 것.

② 필댐의 본체에 사용하는 토질재료 이외의 재료는 댐의 안정에 필요한 강도, 투수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46조 (필댐 본체의 안정도) 필댐은 본체의 사면활동에 대해 안정되도록 적절한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제147조 (필댐 본체의 시설) 필댐의 본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침윤선이 본체의 하류법면과 엇갈리지 않도록 할 것.
2. 상류측 비탈면은 파도 및 수위의 급강하시 침식되거나 본체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할 것
3. 하류측 비탈면은 강우로 인하여 침식되지 않도록 할 것.

제148조 (필댐 차수벽) 필댐의 차수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차수벽의 재료는 토질재료,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일 것.
2. 차수벽의 재료가 토질재료인 경우에는 차수벽의 상류면 및 하류면으로 그 재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
3. 차수벽의 재료가 토질재료 이외의 재료인 경우에는 댐의 안정에 필요한 수밀성, 강도 및 내구성이 있을 것.

4. 차수벽의 마루의 높이는 최고수위 또는 설계홍수위에 여유 높이를 더한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5. 변형 또는 균열에 의하여 차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것.
6. 차수벽 및 차수벽과 기초지반과의 접촉부에 파이핑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제149조 (필댐 방류설비) 차수벽을 본체의 상류측의 표면에 설치하는 필댐에는 차수벽의 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댐의 수위를 저하시킬 수 있도록 방류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50조 (필댐 방류설비 등의 시설제한) 필댐의 본체에는 방류설비 또는 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설할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2절 수로

제151조 (설계일반) 수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홍수, 산사태, 눈사태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을 것.
2. 설계수량을 안전하게 배수할 수 있을 것.
3. 유목, 쓰레기, 토사 등의 유입에 의하여 현저히 손상을 받을 받지 않을 것.
4. 수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제120조의 규정에 준할 것.
5. 수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는 수로에 필요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능을 가질 것.
6. 수문 또는 조절밸브를 만드는 경우에는 제123조제2항 각 호에 준할 것.
7. 해수를 사용하는 수로에서는 내식성재료를 사용할 것.

제152조 (수문 및 취수설비) 취수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자체중량,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지진력, 양압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2. 취수설비가 압력도수로 또는 수압관로의 관본체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수설비로 흐르는 물이 원활하게 유입되어야 하며 또한 수로, 수차 등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3. 취수설비에는 수문 또는 조절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수로로부터의 유입량이 구조물의 설계수량 미만인 경우 또는 하천취수설비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2조의2 (보（weir）) ① 보(weir)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용수의 취수 시 수위 및 유량조절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필요한 취수위가 확보되고 강기슭이 안정된 하천으로 유속의 변화, 하상변동 및 상ㆍ하류의 영향이 적고 수리적으로 안정할 것.
3. 전도, 활동,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초지반이 양호하여 지지력에 문제가 없을 것.

② 보(weir)는 수위 및 유량조절을 위한 수문 설치 여부에 따라 고정보와 가동보로 분류된다.

제153조 (침사지) 침사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자체중량, 수압, 지진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2. 하류의 수로 및 수차에 손상이 없도록 토사를 침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3. 침전된 토사의 배제가 쉬운 구조일 것.

제154조 (도수로) 도수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도수로는 자체중량, 물의 중량, 수압, 지진력, 토압, 재하중, 설하중, 풍하중, 온도하중 및 그 밖의 외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2. 누수에 의하여 인가, 논밭, 도로 등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3. 터널 또는 개수로인 경우에는 낙석 또는 암석 부스러기 등에 의하여 수로 및 수차에 현저히 손상을 줄 염려가 없을 것.
4. 압력도수로는 다음에 따를 것.
   가. 취수설비 및 서지탱크는 수위가 최저인 경우의 동수경사선 이하에 위치할 것.
   나. 압력도수로에 하천취수 등을 합류시키는 경우, 공기의 유입으로 수로 및 수차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을 것
   다. 물을 채울때에 공기의 배출과 배수할 때에 공기의 유입이 쉽고 확실한 구조일 것.

제155조 (헤드탱크) 헤드탱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자체중량, 수압, 지진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2. 수압관로의 관본체 입구는 유입수가 원활하게 유입되어야 하며, 또한 수압관로 및 수차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제156조 (서지탱크) 서지탱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자체중량, 수압, 지진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2. 수위변동이 가속되지 아니하고 단시간에 평형상태로 회복될 것.
3.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정하는 조도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수위 변동에 의하여 다른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가. 취수설비의 수위가 최고인 경우에 전 부하가 차단될 때
   나. 취수설비의 수위가 최저인 경우에 부하가 반부하로부터 전부하로 급증할 때
   다. 양수식 수력발전소에 있어서는 상부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수위가 최저이고 양수량이 최대인 경우에 전원이 차단될 때
4. 주파수 조정용 수력발전소의 서지탱크는 주파수 변동에 의한 수위의 변동에 의하여 다른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제157조 (수압관로) ① 수압관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아래표의 하중에 의한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수압관로의 형식	노출식	암반매설식	토중매설식
하 중	정수압, 수격압 및 서징에 의한 상승수압의 합성 최대수압, 관의 자체중량, 온도하중, 외압, 관내 물의중량, 설하중, 지진력, 풍하중 및 관내의 흐르는 물에 의한 힘	정수압, 수격압 및 서징에 의한 상승수압의 합성최대수압, 온도하중 및 외압	정수압, 수격압 및 서징에 의한 상승수압의 합성최대수압, 토압, 재하중, 온도하중, 외압, 관내 물의 중량 및 설하중

2. 관본체는 진동, 좌굴 및 부식에 대해 안전할 것.
3. 헤드탱크 또는 서지탱크(이들이 없는 경우는 취수설비)의 수위가 최저의 경우 최저동수경사선 이하로 위치 할 것.
4. 위험한 누수가 없을 것.
5. 앵커블럭은 다음에 따를 것.
   가. 수압관로 본체를 확실히 고정할 것.
   나. 앵커블럭은 자체중량, 관본체와 그 부속설비 및 관내 물의 중량, 관내 흐르는 물에 의한 힘, 점축관에 작용하는 수압에 의한 힘, 지진력, 재하중, 설하중, 풍하중 및 온도하중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6. 받침대는 다음에 따를 것.
   가. 받침대는 자체중량, 관본체와 그 부속설비 및 관내 물의 중량, 지진력, 재하중, 설하중 및 풍하중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나. 받침대의 받침부는 관본체가 신축할 때에 관본체가 안전하고 또한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해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8조 (방수로) ① 방수로의 시설에 관해서는 제154조(제1호, 제4호 "가" 및 "나"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중 "도수로"는 "방수로"로, "압력도수로"는 "압력방수로"로 본다.

② 방수로는 자체중량, 정수압, 동수압, 지진력, 양압력 및 토압에 대해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하여야 한다.

③ 압력방수로에 서지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를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3절 수차 및 기타설비

제159조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재료) 수차 또는 펌프수차에 사용하는 재료는 필요한 역학적 강도를 가져야 하며,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침식, 부식 및 마모 등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제159조의2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구조) ① 수차는 충동수차, 반동수차가 있으며,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유물 및 토사 등의 유입에 따른 피해를 현저하게 받지 않을 것.
2. 수압을 받는 부분은 부하 또는 입력이 차단되었을 때 최대수압이나 부압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3. 제반 수차설비는 부하 또는 입력이 차단되었을 때 최대 무구속 속도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4. 운전 중에 수차의 진동은 발전소별 설계기준 값 이내일 것.

② 펌프수차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물의 유입 또는 유출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설을 펌프수차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시설을 수로에 설치할 경우 또는 수차의 무구속 회전이 정지될 때까지 회전부는 구조상 안전하고 하류에 방류로 인하여 인명이나 시설에 피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펌프수차의 입구 및 토출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를 것.
   가. 펌프수차의 입구밸브 또는 토출밸브는 제136조 제2항 각호(제4호를 제외)에 따를 것.
   나. 펌펌프수차의 입구밸브 또는 토출밸브에 작용하는 자체중량, 수압 및 지진력 등에 의한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입구밸브는 전원공급 상실 등 비상시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제159조의3 (보조설비 및 보조기기) ① 속도조절가

수차는 부하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속도 및 출력이 지속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수차에 유입되는 물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속도조절기는 정격부하를 차단할 때에 도달하는 속도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양수기동설비

흡출관 내부의 러너를 수면압하장치로써 공기상태로 한 후, 발전전동기를 기동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압설비

1. 수차의 속도조절기, 가이드 베인, 러너 베인, 입구밸브의 서보모터 등의 조작 및 제어에 필요한 유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수차의 속조조절기 등의 조작 및 제어에 필요한 유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압설비

1. 일반수력 압력탱크의 압축공기 보급, 발전기 브레이크 조작 등에 필요한 공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양수발전 압력탱크의 압축공기 보급, 수면압하장치 등에 필요한 공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입구밸브 설비

비상시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흐르는 물의 안전한 차단, 정지 시 수차의 누수 및 손실전력 저감, 기기의 유해한 마모 방지, 보수ㆍ점검 시 수로의 충ㆍ배수를 생략하여 정지시간 단축, 취수를 공용으

로 사용하여 분기한 경우 점검용 수차만 정지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수압관 단말이나 수차 케이싱 직전에 지수밸브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윤활설비

수차 또는 펌프수차에 베어링 윤활유를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도 윤활매체의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급수설비

기기의 냉각, 봉수, 윤활, 조작력 등을 목적으로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베어링, 주축봉수 등에 급수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배수설비

배수설비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어야 하며, 하류하천에 기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정지 및 경보 설비

수차, 펌프수차, 보조설비 및 보조기기에 사고 또는 이상상태가 예상될 경우, 비상정지, 급정지, 무부하무여자, 경보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9조의4 (소수력발전 설비) ① 수차에 사용하는 재료는 제159조를 준용한다.

② 수차의 구조는 제159조의2의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소수력발전 보조설비 및 보조기기는 제159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59조의3 제2항.
2. 제159조의3 제3항 유압설비 및 제4항 공압설비에서 전동식의 경우 해당 설비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159조의3 제5항 입구밸브 설비에서 유입수문과 수차 입구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 해당 설비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0조 (발전소의 시설) 수차, 발전기 및 부속설비가 설치되는 발전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는 제133조에 준할 것.

② 자체중량, 수압, 지진력 및 토압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③ 필요한 환기와 염해방지 설비를 할 것.

④ 발전소를 지하공간 이외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지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

제161조 (안전조치) ① 댐, 수로 등에서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철책, 담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에 따라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전소 시설 시 기술기준 제2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장 발전설비 용접

제162조 (용접시공법)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 등을 용접할 때는 적정한 용접절차에 따라 용접하여야 한다.

제163조 (용접설비) 용접기 종류와 용접후열처리 설비 및 용량은 용접시공법에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164조 (용접부의 형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설비를 용접할 경우, 용접부(용접금속부 및 열영향부)는 안전한 형상을 가져야 한다.

제165조 (용접부의 균열) 용접부는 용접에 의한 균열이 없어야 하며 또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166조 (용접부의 결함) 용접부는 용입이 충분하고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슬래그혼입, 블로우홀 등 이와 유사한 결함으로 인해 건전한 용접부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67조 (용접부의 강도) 용접부는 건전한 용접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제6장 발전용 풍력설비

제168조 (안전조치) 풍력터빈 주위에는 안전 표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9조 (풍력터빈의 구조) 풍력터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부하를 차단하였을 때에도 최대속도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2. 풍압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3. 운전 중 풍력터빈에 손상을 주는 진동이 없도록 할 것.
4. 설계허용 최대풍속에 있어서 취급자의 의도와 다르게 풍력터빈이 기동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전 중에 다른 시설물, 식물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6. 풍력터빈의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회전부의 정지 및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한랭지에 시설하는 경우 눈ㆍ비에 의한 착빙을 고려할 것.
8. 먼지 등에 의한 손모를 고려할 것.
9. 지진에 대하여 안전할 것.
10. 해상 및 해안가에 시설하는 경우 염분 및 파랑하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제170조 (풍력터빈의 정지장치) 풍력터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하거나 위험속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2. 풍력터빈의 제어장치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한 경우
3. 풍력터빈을 수동으로 긴급정지 하고자 할 경우

제171조 (압유장치 및 압축공기장치) 풍력터빈에 사용되는 압유장치 및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기름탱크 및 공기탱크의 재료 및 구조는 최고 사용압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고 또한 안전할 것.
2. 기름탱크 및 공기탱크는 내식성을 가질 것.
3.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당 압력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
4. 기름탱크 또는 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하는 경우에 압력을 자동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
5. 이상 압력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제172조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설치환경에 따라 자체중량,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 진동, 충격 및 염분피해에 대해 구조상 안전하여야 한다.

제173조 (소음환경기준) 풍력터빈을 시설하는 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74조 (제어 및 보호장치) 풍력터빈에는 설비의 정상운전한계를 유지하도록 능동적 또는 수동적 방법으로 풍력터빈을 제어 및 보호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75조(풍력터빈의 피뢰설비) 풍력터빈은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피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76조(전자기적합성) 풍력터빈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자기적합성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77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1 - 9호,2001. 1. 20.>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9.2.22, ’ 99.12.7)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시설되어 있거나 공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5 - 1호,2005. 1. 1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증설 및 변경공사 포함)에 의하여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신고(인가)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9 - 035호,2009. 2. 25.>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9 - 193호,2009. 8. 21.>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 - 1호,2010. 1. 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0 - 143호,2010. 8.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 - 1호,2011. 1.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 - 11호,2012. 1.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 - 67호,2012. 3. 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 - 1호,2013. 1. 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 (보고사항)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에 의해 400kV 이상의 가공전선 선하에 건조물을 시설하는 경우 전기사업자는 동 조항에 따른 안전성을 평가ㆍ심의 하고, 그 결과를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부칙 <제2014 - 8호,2014. 1.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 245호,2014. 12.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 - 26호,2015. 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 - 15호,2016. 1.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 - 123호,2016. 6.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 - 26호,2017. 3. 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2017 - 147호,2017. 10. 1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제2013호 - 1호(2013. 1. 4)의 부칙 제3조 본문 중 "전기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심의와 관련한 결과에 대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전기사업자는 동 조항에 따른 안전성을 평가ㆍ심의 하고, 그 결과를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2018 - 26호,2018. 3.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한국전기설비규정은 202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 - 45호,2019.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제52조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2020 - 198호,2020. 12. 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2021 - 227호,202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 제4조제1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제4조제1호 시행일(2022. 1. 1)전까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면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전압범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0 - 198호, 2020. 12. 3) 이전의 전압범위를 따르며, "한국전기설비규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

부칙 <제2021 - 18호,2021. 1. 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 - 169호,2022. 10.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 - 197호,2023. 10.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시행 2021. 10. 5.] [고시 제2021 - 164호, 2021. 10. 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 - 203 - 39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기술기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
3. "판단기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말한다.
4. "한국전기설비규정"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말하고, 그 영문 명칭은 "Korea Electro - technical Code(KEC)"로 표기한다.
5. "표준 및 지침"이란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ㆍ개정 위탁기관에서 발간하는 상세 핸드북,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및 기술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 (위탁기관 지정) 전기사업법 제9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의한 위탁기관으로 대한전기협회를 지정한다.

제2장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기준 등에 대한 5개년 및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수립연도 11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종합관리와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검토업무
2.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기술적 세부사항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
3.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표준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업무

4.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국제표준 적용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위한 평가업무
6.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
7. 기술기준과 관련한 대정부 자문
8.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한 교육, 홍보업무
9.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기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계획수립에는 제1항의 검토내용과 제ㆍ개정 대상 항목 및 선정 사유,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의견 제출의 방법 등) ① 누구든지 기술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의견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2. 개선 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기타 참고사항

제6조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검토 등) ①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 및 지침(이하 "기술기준 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하여 제ㆍ개정을 검토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을 요청받은 경우 제출된 자료를 취합 정리 및 검토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 상정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신기술ㆍ민간표준 등이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 (기술기준 등의 승인 및 시행) ① 위탁기관의 장은 제ㆍ개정이 필요한 기술기준 등에 대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결된 안건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심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기준 등의 제·개정 안건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운영

제8조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① 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운영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준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술기준 및 표준과 관련이 있는 협·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 기술을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조 (적합성평가위원회) ①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④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대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분과위원회) ① 기술기준 등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전문/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 제1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준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탁기관의 장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 제ㆍ개정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제외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참고인에 대하여는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국 조직의 운영) ① 기준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안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탁기관의 정관에 따른다.

제4장 운영관리 사업비의 사용관리

제17조 (사업비의 사용관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등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18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OO월 OO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7 - 130호,2007. 11. 26.>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5, 2007. 1. 17) 제1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수행한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9 - 193호,2009. 8. 21.>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5, 2007. 1. 17) 제1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수행한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 - 67호,2012. 3. 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 - 113호,2015. 6. 5.>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 - 164호,2021. 10. 5.>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시행 2021. 1. 19.] [공고 제2021 - 35호, 2021. 1. 1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 - 203 - 399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img>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 2023. 12. 14.] [공고 제2023 - 875호, 2023. 12. 1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 - 203 - 3982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에너지관계법령

1. 에너지법
2. 에너지법 시행령
3. 에너지법 시행규칙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1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1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044 - 203 - 5125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2. 30., 2019. 8. 20., 2021. 9. 24.>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3조 삭제 <2010. 1. 13.>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10. 6. 8.]

제6조 삭제 <2010. 1. 13.>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비상계획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비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비상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비상시 비축(備蓄)에너지의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ㆍ배급 등 수급조정 대책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대책에 관한 사항
6. 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8.]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개정 2013. 3. 23.>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6. 8.]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①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8. 1. 16.>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국제 에너지기술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ㆍ정보ㆍ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6. 8.]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

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5. 1. 28., 2016. 3. 22., 2019. 12. 31., 2021. 4. 20., 2023. 6. 1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삭제 <2014. 12. 30.>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융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기술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5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8.]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2. 10. 18.>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2. 10. 1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2. 10. 18.>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0. 18.>

[본조신설 2014. 12. 30.]
[제목개정 2022. 10. 18.]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③ 삭제 <2010. 1. 1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6. 8., 2013. 3. 23., 2022. 10. 1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6. 8.,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8., 2013. 3. 23., 2022. 10. 18.>

제20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ㆍ자원의 확보, 도입, 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ㆍ사용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요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1조(질문 및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12. 30.]

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원의 임직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제16조의5제1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2. 10.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2. 10. 18.>

[본조신설 2014. 12. 30.]

부칙 <제7860호,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은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획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으로 본다.

제3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를 "「에너지기본법」 제6조"로 한다.

③법률 제774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37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을 " 「에너지기본법」 "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5> 까지 생략

<376>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 산업자원부령 "을 각각 "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9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중 "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3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72호,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원의 정관
2.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에 관한 계획

③ 설립위원은 평가원에 최초로 선임될 임원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명(連名)으로 추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평가원의 임원을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평가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될 평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평가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있는 재단법인의 이름은 평가원의 이름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이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재단법인을 평가원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재단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협약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원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직원 및 이 법 시행 당시 전담기관에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계획 내용에 따라 평가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9931호,2010. 1. 1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에너지기본법 "을 " 에너지법 "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 기본원칙 "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 "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 기본계획 "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를 "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을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 국가에너지위원회 "를 " 에너지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을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9조제4항 중 " 중앙행정기관의 장 "을 "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 대통령 "을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 지식경제부차관 "으로 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을 " 기본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10352호,2010. 6.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5호,2011. 3. 9.>(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911호,2011. 7. 25.>(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⑦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8>까지 생략

<39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13호,2013. 3. 23.>(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까지 생략

2)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를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1965호,2013. 7. 3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931호,2014.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2호,2015. 1. 28.>(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

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4079호,2016. 3. 2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5344호,2018. 1. 16.>(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까지 생략

2)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로 한다.

2! 부터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478호,2019. 8.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59호,2019. 12. 3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075호,2021. 4. 20.>(연구산업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469호,2021. 9. 2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1(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000호,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38호,2023. 6. 1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044 - 203 - 512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8. 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문서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28.>

1.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3.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
4.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5.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6.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②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개정 2013. 1. 28.>

1. 에너지 관련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세제(稅制) 및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국제 및 남북 협력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9.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에너지ㆍ산업 분야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12.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개정 2013. 1. 28.>

1. 외국과의 전략적 에너지(에너지 중 열 및 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에너지개발 관련 전략 수립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개발 관련 기업 지원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개발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남북 간 에너지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1. 원전(原電)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2. 원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원전연료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1.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산업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2.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의 안정적 확보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4.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 1. 28.>
6.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신설 2013. 1. 28.>

1.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 1. 28.>

⑨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1. 28., 2013. 3. 23.>

1.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제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⑩ 제9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1. 28.>

⑪ 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며, 간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1. 28., 2013. 3. 23.>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 1. 28.>

[전문개정 2011. 9. 30.]

제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문서로 의결한 위원을 포함한다) 및 이해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에너지기술 개발의 추진전략
2. 과제별 목표 및 필요 자금
3.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9. 30.]

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1. 9. 30.]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 번에 지급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평가원의 사업)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3.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보급 및 지도
4.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책수립의 지원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ㆍ관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증연구 및 시범적용
7.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 전시, 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2(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평가원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평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방법 및 관리책임자
2. 사업수행 비용 및 그 비용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 사업수행 결과의 보고, 귀속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 해지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원에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다만,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평가원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3(사업연도) 평가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4. 21.]

제11조의4(평가원의 수익사업) 평가원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평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평가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 5.>

1.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 감사를 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서 및 평가원의 해당 사업연도 감사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전문개정 2011. 9. 30.]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12조의2(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4. 18.>]

제13조(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3년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재산 및 소득 규모
2. 세대원 수 등 세대정보(「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3.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비용지출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냉난방 가동시간 등 에너지 소비행태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이용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간이조사(이하 “간이조사”라 한다)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종전 제13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3. 4. 18.>]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65세 이상의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라. 삭제 <2023. 4. 18.>
   마.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0. 4.]

제13조의3(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 10. 4., 2023. 4. 18.>

1.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나.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장애인 증명서
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2.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5. 6. 30.]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16. 10. 4., 2021. 6. 29.>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제13조의2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제13조의2제1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3조의5(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③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1. 사망한 경우
2.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확인한 경우

④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10. 4.>

[본조신설 2015. 6. 30.]

제13조의6(예외지급)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2. 행정상의 착오ㆍ지연 등 이용자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토한 결과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지급의 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지급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0. 4.]

[종전 제13조의6은 제13조의7로 이동 <2016. 10. 4.>]

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의 홍보 및 교육
2.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3.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4.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본조신설 2015. 6. 30.]

[제1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7은 제13조의8로 이동 <2016. 10. 4.>]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8은 제13조의9로 이동 <2016. 10. 4.>]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9는 제13조의10으로 이동 <2016. 10. 4.>]

제13조의10(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본조신설 2015. 6. 30.]

[제13조의9에서 이동 <2016. 10. 4.>]

제14조(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

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15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 및 그 업무 수행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7.]

제16조(국회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의 산정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5. 6. 30.]

제16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0. 4.>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4.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7.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8.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의 신청 접수 및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0. 4.>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에 대한 발급 업무
6. 제13조의6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5. 6. 30.]

제18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4. 18.>

[본조신설 2015. 6. 30.]

부칙 <제19671호,2006. 9.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기술개발협약은 이 영 제9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은 이 영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7조 및 제24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④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78호,2008. 2. 29.>(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을 "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제8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중 "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 산업자원부령 "을 "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 산업자원부 "를 " 지식경제부 "로 한다.

<11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41호,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을 "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으로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을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으로 한다.

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을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으로 한다.

부칙 <제22117호,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 「에너지기본법」 ”을 “ 「에너지법」 ”으로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 「에너지기본법」 ”을 “ 「에너지법」 ”으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 「에너지기본법」 ”을 “ 「에너지법」 ”으로 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 「에너지기본법」 ”을 “ 「에너지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 「에너지기본법」 ”을 “ 「에너지법」 ”으로 한다.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을 “ 「에너지법 시행령」 ”으로 한다.
⑥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 「에너지기본법」 ”을 “ 「에너지법」 ”으로 한다.
⑦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 「에너지기본법」 ”을 “ 「에너지법」 ”으로 한다.

부칙 <제22343호,2010. 8.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87호,2011.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39호,2013.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개발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4442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3호, 제8조의2제2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1항 중 “ 지식경제부 ”를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 ”로 한다.

제15조제1항 “ 지식경제부령 ”을 “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4& 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9호,2015. 6. 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37호,2016.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2호,2017. 7. 26.>(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조제2항 중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을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으로 한다.
1&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76호,2021. 3. 30.>(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1호 중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 ” 을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 ” 으로 한다.

⑤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838호,2021.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1호,2021. 8. 6.>(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을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으로 한다.

⑨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2014호,2021. 9. 2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까지 생략

2)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5항을 삭제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3235호,2023. 1. 17.>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18호,2023. 4. 18.>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3호,2023. 12. 1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에너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10. 4>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 업무정지 기준(제13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처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행정처분 사유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에너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10.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2. 개별기준

행정처분 사유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금액
가.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2개월	3백만원	4개월	7백만원	6개월	1천만원
나.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2개월	3백만원	4개월	7백만원	6개월	1천만원

■ 에너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4.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 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5호, 2022. 11. 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044 - 203 - 5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 6. 28.,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10. 18.>

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0. 18.>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8.>

[본조신설 2015. 7. 1.]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 전담기관 ”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1.]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4.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6.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전환하는 에너지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30.]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2. 28.>

②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2. 28.>

[전문개정 2011. 12. 30.]

[제목개정 2017. 12. 28.]

부칙 <제359호,2006. 9.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 별표 1의 총발열량 " 을 "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 기준 " 으로 한다.

제2조의2, 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08. 3. 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중 “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24호,2010. 4. 13.>
이 규칙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2. 6. 28.>(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 ”를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지식경제부령 ”을 “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3#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7호,2015. 7. 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6. 10.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7.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18.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19.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21. 4. 1.>(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예외지급 사유란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26호,2021.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22. 1.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22.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11. 21.>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석유	원유	kg	45.7	10,920	1.092	42.8	10,220	1.022
	휘발유	L	32.4	7,750	0.775	30.1	7,200	0.720
	등유	L	36.6	8,740	0.874	34.1	8,150	0.815
	경유	L	37.8	9,020	0.902	35.3	8,420	0.842
	바이오디젤	L	34.7	8,280	0.828	32.3	7,730	0.773
	B-A유	L	39.0	9,310	0.931	36.5	8,710	0.871
	B-B유	L	40.6	9,690	0.969	38.1	9,100	0.910
	B-C유	L	41.8	9,980	0.998	39.3	9,390	0.939
	프로판(LPG1호)	kg	50.2	12,000	1.200	46.2	11,040	1.104
	부탄(LPG3호)	kg	49.3	11,790	1.179	45.5	10,880	1.088
	나프타	L	32.2	7,700	0.770	29.9	7,140	0.714
	용제	L	32.8	7,830	0.783	30.4	7,250	0.725
	항공유	L	36.5	8,720	0.872	34.0	8,120	0.812
	아스팔트	kg	41.4	9,880	0.988	39.0	9,330	0.933
	윤활유	L	39.6	9,450	0.945	37.0	8,830	0.883
	석유코크스	kg	34.9	8,330	0.833	34.2	8,170	0.817
	부생연료유1호	L	37.3	8,900	0.890	34.8	8,310	0.831
	부생연료유2호	L	39.9	9,530	0.953	37.7	9,010	0.901
가스	천연가스(LNG)	kg	54.7	13,080	1.308	49.4	11,800	1.180
	도시가스(LNG)	Nm3	42.7	10,190	1.019	38.5	9,190	0.919
	도시가스(LPG)	Nm3	63.4	15,150	1.515	58.3	13,920	1.392
석탄	국내무연탄	kg	19.7	4,710	0.471	19.4	4,620	0.462
	연료용 수입무연탄	kg	23.0	5,500	0.550	22.3	5,320	0.532
	원료용 수입무연탄	kg	25.8	6,170	0.617	25.3	6,040	0.604
	연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4.6	5,860	0.586	23.3	5,570	0.557
	원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9.4	7,030	0.703	28.3	6,760	0.676
	아역청탄	kg	20.6	4,920	0.492	19.1	4,570	0.457
	코크스	kg	28.6	6,840	0.684	28.5	6,810	0.681
전기 등	전기(발전기준)	kWh	8.9	2,130	0.213	8.9	2,130	0.213
	전기(소비기준)	kWh	9.6	2,290	0.229	9.6	2,290	0.229
	신탄	kg	18.8	4,500	0.450	-	-	-

비고

1. "총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3.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란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으로 10^7kcal를 말한다.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引受式)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코크스는 건식(乾式)을 기준으로 한다.
5. 최종 에너지사용자가 사용하는 전력량 값을 열량 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한다.
6. 1cal=4.1868J이며, 도시가스 단위인 Nm^3은 0℃ 1기압(atm) 상태의 부피 단위(m^3)를 말한다.
7. 에너지원별 발열량(MJ)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발열량(kcal)은 발열량(MJ)으로부터 환산한 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두 단위 간 상충될 경우 발열량(MJ)이 우선한다.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9.>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 재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생계·의료급여			
	대상세대	[ ] 노인(만 65세 이상) [ ] 장애인 [ ] 영유아(만 6세 미만) [ ] 임산부 [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세대원수	[ ] 1명 [ ] 2명 [ ] 3명 [ ] 4명 이상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전화번호 (집/직장/휴대폰 등)
가족사항					

주거형태	[ ] 다가구·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가구 이상 거주) [ ]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 연립주택·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가구만 거주) [ ] 상업시설(상가·공장·바닐하우스 등) [ ]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 ] 종교·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
하절기	[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 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동, 호)

동절기 (이용권방식 택 1)	[ ] 실물카드	
	[ ] 가상카드 (요금차감)	[ ] 전 기 (고객번호: , 전 기 회사명:) (동, 호)
		[ ]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 도시가스 회사명:) (동, 호)
	* 에너지원(택 1)	[ ]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동, 호)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 ]신청, [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가상카드 선택 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임산부인 경우: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4.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5.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관계 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에너지이용권 신청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1.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신청인란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가구정보,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 실물카드 제작 및 배송, 가상카드(요금차감)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 발송 ▪ 허위·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가상카드 이용의 경우) 제3자 제공 동의

제공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고객번호(또는 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에너지이용권 사용내역(바우처 금액)
제공목적	▪ 에너지이용권의 가상카드 발급 및 요금차감 업무에 활용
제공받는 자	에너지공급자,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장애인 유무, 임산부 유무, 질환자 유무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업무에 활용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및 본인 확인 ▪ 허위·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9.>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에너지 이용권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 21.>

[ ] 하절기 결정(적합) [ ] 하절기 결정(부적합)

에너지이용권 ([ ] 동절기 결정(적합) [ ] 동절기 결정(부적합)) 통지서

[ ] 사용중지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 ] 하절기 적합 [ ] 동절기 적합

귀하가 신청한 에너지이용권 조사·심의 결과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성명	구 분	이용권 금액	카드 종류 (실물/가상)	가상카드 에너지원	이용권 사용기간
	하절기				
	동절기				

* 에너지이용권 사용처: 에너지 판매기관[전기, 도시가스(LNG),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 하절기 부적합 [ ] 동절기 부적합

부 적 합 사 유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격 미인정 [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의 가구원 미포함 [ ]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 ] 등유·연탄바우처 등 중복수혜자 [ ] 그 밖의 사유(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제공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향후 에너지이용권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다시 신청한 결과, 적합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용권 사용중지

일 자	년 월 일부터 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 그 밖의 사유( )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사용) 에너지이용권(실물카드, 가상카드 포함) 수령 후 사용 가능 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에너지판매기관에서 **단말기 결제, 자동응답시스템(ARS)·온라인 결제, 자동이체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는 신청하신 대상 에너지원의 요금청구 시 자동 차감되며, 해당 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적용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 준수사항)
   - 에너지이용권은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보관·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이용 도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이용권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에너지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29.>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예외지급 사유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 ] 행정상의 착오·지연 등 이용자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비용 영수증(고지서) 제출 여부	[ ] 제출 [ ] 미제출					
입금 계좌 정보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구분	[ ] 신청인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 ] 지방자치단체(읍·면·동)				
	계좌확인	위 계좌가 입금이 가능한 일반계좌임을 확인함 [ ] *** 입금계좌 종류가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는 예외지급액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지급 신청액	이용권 잔액		신청 금액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신청인이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안내 및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께서는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은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액은 신청인의 에너지이용권 잔액을 확인하신 후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금액 계산 등은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이용권(가상/실물)이 사용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예외지급 신청액(이용권 잔액 및 신청금액)이 잘못 기입된 경우, 에너지이용권 시스템상의 이용권 금액 정보로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3. 1. 19.] [법률 제19001호, 2022. 10.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 - 203 - 51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ㆍ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1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4. 17.>

제5조 삭제 <2018. 4. 17.>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ㆍ도지사 ”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8. 4. 17.>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ㆍ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과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ㆍ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관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실태파악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개정 2013. 7. 30.>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09. 1. 30., 2013. 3. 23.>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 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한 판매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②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 대기전력 " 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3. 3. 23.>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저감기준
3. 대기전력의 측정방법
4.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이라 한다)의 표시
5. 그 밖에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3. 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 대기전력시험기관 " 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3. 7. 30.>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2.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3. 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5. 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6.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5. 1. 28.>

[본조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4. 1. 21.]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와 교육훈련 내용,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발전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0. 18.>

⑧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0. 18.>

⑨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0. 18.>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2. 10.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2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제34조(개선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 목표에너지원단위 " 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붙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 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2. 10.>

1.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 또는 대기전력 기준
3. 그 밖에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3. 7. 30.]

제36조(폐열의 이용)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 30.]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 30.]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이나 세관(洗罐 :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따위를 벗겨 냄)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17.>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17.>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17.>

[제목개정 2018. 4. 17.]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5장 시공업자단체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① 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3조(건의와 자문)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4조(「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 1. 28.>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 1. 28.>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1. 28.]

제4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제49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 28.>

제51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이내(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제52조 삭제 <2009. 1. 30.>

제5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 1. 30.>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09. 1. 30.>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54조 삭제 <2009. 1. 30.>

제55조 삭제 <2009. 1. 30.>

제5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28.>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2. 에너지기술의 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8.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ㆍ설치ㆍ운영ㆍ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자재ㆍ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1.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9조(자금의 차입) 공단이 제57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60조(회계 등) ① 삭제 <2009. 1. 30.>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3. 3. 23.>

③ 삭제 <2009. 1. 30.>

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사업실적 및 결산
3. 제5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4.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30.>

제7장 보칙

제65조(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17.>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4. 17.>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7.>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2. 2.>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제6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3. 3. 23., 2016. 12. 2., 2018. 4. 17., 2022. 10. 18.>

1.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6.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2009. 1. 30.>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제74조(벌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09. 1. 30.]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9. 1. 30.>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9. 1. 30.>
4.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0. 31.>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1. 30.>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09. 1. 30., 2013. 7. 30.>

1. 삭제 <2013. 7. 30.>
2. 삭제 <2013. 7.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개정 2009. 1. 30., 2015. 1. 28.>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0.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3. 3. 23.>

⑥ 삭제 <2009. 1. 30.>

⑦ 삭제 <2009. 1. 30.>

⑧ 삭제 <2009. 1. 30.>

부칙 <제8800호,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9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59조의 규정"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7> 까지 생략

<37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제2항、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제1항、제3항 전단、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1호, 제77조, 제78조제2항 전단、제3항, 제79조, 제80조제1항、제2항, 제82조제1항,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호의2,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전단、제8항,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2항 및 제10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2항제8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제5항、제6항, 제58조제1항、제5항 단서、제6항、제8항, 제59조제2항、제3항、제4항 단서 및 제8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항、제5항, 제24조제2항 단서、제4항、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51조,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36호,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3호,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69조제3항제12호의2 및 제78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31호,2010. 1. 1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에너지기본법」 "을 " 「에너지법」 "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10954호,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9>까지 생략

<40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

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및 제78조제5항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4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6호,2013. 7. 30.>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8호,2014.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0호,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행위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의 행위나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으로 한다.

제61조 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 ”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 ” 으로 한다.

부칙 <제13805호,2016. 1. 19.>(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택법」 제9조 ” 를 “ 「주택법」 제4조 ” 로 한다.

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313호,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6호,2017. 10.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4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65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 조종자 ” 를 각각 “ 관리자 ” 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 조종자 ” 를 각각 “ 관리자 ” 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 조종자 ” 를 “ 관리자 ” 로 한다.

부칙 <제16801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9호,2021. 9. 2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1(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001호,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 - 203 - 51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4조 삭제 <2018. 10. 16.>

제5조 삭제 <2011. 10. 26.>

제6조 삭제 <2018. 10. 16.>

제7조 삭제 <2018. 10. 16.>

제8조 삭제 <2018. 10. 16.>

제9조 삭제 <2018. 10. 16.>

제10조 삭제 <2018. 10. 16.>

제11조 삭제 <2018. 10. 16.>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0. 26.]

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 「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대상자
2.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4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2.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2.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4. 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제17조(투자계획의 수정·보완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 상호간 에너지의 교환, 분배 등 공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투자계획에 제16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투자계획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②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9조(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건설사업
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
7. 관광단지개발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개정 2013. 3. 23.>

1.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개정 2013. 3. 23.>

1.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4.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5.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7. 사후관리계획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에너지사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자의 요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 에너지 관계 연구소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23조(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에너지 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공공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24조(이의 신청) 공공사업주관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 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26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 및 이행계획 중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그 실시설계서가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권고조치의 수용 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의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제3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고 공고할 때에는 그 사업이 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ㆍ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제28조의2(매출액 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 연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통지받은 해 9월 30일까지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의2(공제규정)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제32조(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등록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절약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제33조(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계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2.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협약과 대응 방안

2.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내외 동향
3.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정책 및 감축 방법에 관한 사항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란 기후변화 관련 교통정책, 환경정책, 온난화방지과학, 산업활동과 대기오염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에너지진단주기”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② 에너지진단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起算)한다.

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1. 제39조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하 “에너지진단비용”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3. 3. 2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티오이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진단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제39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 17.>

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개선기간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41조(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내용을 고시예정일 7일 이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7. 27.]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본조신설 2009. 7. 27.]

제4장 시공업자 단체

제43조(정관의 내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단체(이하 "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4조(지도·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 7. 24.>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① 정부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려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2. 2.>

② 정부 외의 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그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출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출연

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2. 2.>
[제목개정 2015. 7. 24.]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이 지부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목적
   나. 명칭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라.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 공고의 방법

제47조(이전등기)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46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46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48조(변경등기)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부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9조(등기 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 3. 23.>

제6장 보칙

제50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7. 27., 2013. 3. 23.>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7. 27., 2013. 3. 23., 2017. 11. 7., 2018. 7. 17., 2023. 1. 17.>

1. 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6.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
8.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4.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3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15.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 중지, 설치자 변경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 접수
16.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2017. 11. 7.>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7.>

제52조(보고) 제51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본조신설 2017. 3. 27.]
[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17. 3. 27.>]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18. 4. 30.>
[본조신설 2009. 7. 27.]

부칙 <제20977호,2008.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다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한국전력공사의 투자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투자계획의 제출은 2009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9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6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7호 중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1조 ”를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 ”로 한다.

⑦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서 ”를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으로, “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 ”을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으로 한다.

⑧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를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로 한다.

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 ”를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 ”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445호,2009. 4. 21.>(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을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을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으로 한다.

⑭ 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43호,2009. 7. 27.>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2호,2009. 12. 14.>(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 중 " 「항만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을 "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 "으로 한다.

⑭ 부터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117호,2010. 4. 13.>(에너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을 " 「에너지법 시행령」 "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2626호,2011. 1. 17.>(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한다.

2@ 부터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260호,2011. 10. 26.>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2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10.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1.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12. 한국전력공사 사장
13. 한국가스공사 사장
14.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식경제부제2차관 ”을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 ”를 “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 ”로, “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 ”을 “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 ”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 지식경제부 ”를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 ”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중 “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을 “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 국토해양부장관 ”을 “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 국토해양부장관 ”을 “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4* 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142호,2014. 2. 5.>

이 영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39호,2014. 4. 29.>(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 ”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 ”으로 한다.

1& 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448호,2014. 7. 7.>(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2)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를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로 하고, 같은 목 2)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1항 ”을 “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 ”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제6조제3항제1호 중 “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 ”를 “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 ”로 한다.

<29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55호,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별표 2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

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439호,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 에너지관리공단 " 을 각각 " 한국에너지공단 " 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 에너지관리공단 " 을 " 한국에너지공단 " 으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 에너지관리공단 " 을 " 한국에너지공단 " 으로 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제5조제3호 중 " 에너지관리공단 " 을 " 한국에너지공단 " 으로 한다.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 에너지관리공단 " 을 " 한국에너지공단 " 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 에너지관리공단 " 을 " 한국에너지공단 " 으로 한다.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 에너지관리공단 " 을 " 한국에너지공단 " 으로 한다.

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 에너지관리공단 " 을 각각 " 한국에너지공단 " 으로 한다.

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에너지공단

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부칙 <제27662호,2016.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요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60호,2017. 3. 27.>(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212호,2017. 7. 26.>(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을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로 한다.

1*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8416호,2017. 11. 7.>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28호,2018. 2.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신청”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840호,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53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49호,2018. 7. 17.>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29호,2018. 10. 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17호,2019. 3. 1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및 같은 1)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0106호,2019. 10. 8.>(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26호,2021. 2.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6호,2021. 3. 30.>(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236호,2023. 1. 17.>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3호,2023. 12. 1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

1. 대상 사업

구분 및 대상 범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가.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지역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전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의 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는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

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획의 승인신청 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 전
다. 에너지개발사업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2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신청 전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수력발전·원자력발전·집단에너지사업용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는 제외하되, 폐기물 에너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발전설비용량이 2	○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전 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공사의 신고 전

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3)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라. 항만건설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 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마. 철도건설사업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다만,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 및 복선화를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바. 공항건설사업	
1)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사.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전

관광시설계획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관광시설계획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아.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1)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2)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2. 대상 시설

구분 및 대상 범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가. 건축물 또는 공장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허가권자와의 협의 전,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2)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 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나. 그 밖의 시설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2)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6. 12.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의3제1항 관련)

1.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과징금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이하 "해당 연도"라 한다)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달성분(未達成分)(km/L)에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이월·거래 또는 상환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감(減)하여 산정한 값을 과징금 요율[원/(km/L)]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달성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달성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실제 달성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판매 대수

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란 개별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하는 자동차(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해당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나. "실제 달성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실제 달성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A ÷ Σ(B ÷ C)]

A: 가목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연도에 제조 또는 수입한 해당 자동차 총 판매 대수

B: 해당 자동차 종류별 판매 대수

C: 해당 자동차 종류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다. "판매 대수"란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해당 자동차의 판매 대수를 말한다.

3. 연도별 과징금 요율[원/(km/L)]은 아래 표와 같다.

해당 연도	과징금 요율[원/(km/L)]
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82,352원
나. 2016년	39,917원
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19,753원
라. 2020년 이후	199,588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7.2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		기준
장비	1. 적외선 온도계		1대 이상
	2. 데이터 기록계		1대 이상
	3. 온도 · 습도계		1대 이상
자산	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비고

1.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2.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3.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3]

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

연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진단주기
20만 티오이 이상	1. 전체진단: 5년 2. 부분진단: 3년
20만 티오이 미만	5년

비고

1.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진단을 하는 연도의 전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티오이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 티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진단(이하 "부분진단"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부분진단을 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주기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부분진단은 10만 티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

1. 장비

내 용	1종	2종
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온도: -20℃ ~ 500℃ 2) 분해능: 0.1℃	1대 이상	해당 없음
나. 초음파 유량계 1) 유량 및 유속 측정 자료 10,000개 이상 저장 가능 2) 온도: 0℃ ~120℃ 3) 파이프 바깥지름: 50mm ~ 2,000mm 4) 유속: 0m/s ~ 10m/s	2대 이상	1대 이상
다. 디지털 압력계 0bar ~ 30bar	2대 이상	1대 이상
라. 데이터 기록계 1) 기록 용량: 512KB 이상 2) 기록 채널: 5채널 이상 3) 온도측정용 감지기: 5개 이상/대	2대 이상	1대 이상
마. 온도·습도계 1) 온도: -10℃ ~ 60℃ 2) 상대습도: 0% ~ 100%	2대 이상	1대 이상
바. 연소가스 분석기 1) 이산화탄소(CO_2), 산소(O_2),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x) 측정 가능 2) 온도: -20℃ ~ 1,000℃(연속측정 가능)	2대 이상	1대 이상
사. 표준 온도계 1) 온도: -50℃ ~ 350℃ 2) 한눈금의 값: 0.1℃	1세트 이상	1세트 이상
아. 온도계 1) 온도: -40℃ ~ 300℃ 2) 분해능: 0.1℃ 3) 침형 감지기: 1개 이상/대 4) 표면 접촉식 감지기: 1개 이상/대	2대 이상	1대 이상
자. 고온용 온도계 0℃ ~ 1,300℃	2대 이상	1대 이상
차. 적외선 온도계 -30℃ ~ 400℃	2대 이상	1대 이상
카. 디지털 풍속계 1) 풍속: 0m/s ~ 50m/s	2대 이상	1대 이상

2) 온도: 0℃ ~ 300℃		
타. 디지털 풍압계	2대 이상	1대 이상
1) 정압, 차압 측정 가능		
2) -1,000Pa ~ 3,000Pa		
파. 전력 분석계	2대 이상	1대 이상
1) 삼상 측정 가능		
2) 전압·전류·역률·고조파 및 전력 적산 가능		
3) 측정 데이터 기록 가능		
하. 교류전력 측정기	2대 이상	1대 이상
1) 삼상·유효전력·피상전력·무효전력 및 역률 측정 가능		
2) 전압: 0V ~ 600V		
3) 전류: 0A ~ 1,000A		
거. 조도계(밝기측정기)	1대 이상	1대 이상
0lx ~ 20,000lx		
너. 회전계	1대 이상	1대 이상
1) 접촉 및 비접촉 측정 가능		
2) 접촉: (1rpm) ~ 15,000rpm		
3) 비접촉: (1rpm) ~ 90,000rpm		
※ ( )는 참고치		

2. 기술인력

내 용	1종	2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해당 없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가스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가스기사 또는 화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2명 이상	해당 없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2명 이상	해당 없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가스기사 또는 화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진단기관의 상근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한다.
2. 에너지 분야의 업무란 에너지사용 설비 및 시설의 제조·설치·시공·조종 ·진단·검사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말한다.
3. 기술인력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계,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에너지 또는 전기 분야의 기사는 에너지진단을 목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같은 분야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5. 한 사람이 2종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종류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술인력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기술인력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목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
8. 법 제25조제1항 및 이 영 제30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진단기관 지정 시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다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그 위반행위에 해당할 때마다 적용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4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1호				
1)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2) 그 밖의 조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50	200	250	30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2호	150	200	250	300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3호	150	200	250	300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2항제1호	500	700	900	1,000
마. 공공사업주관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4호	150	200	250	300
바. 사업주관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5호	150	200	250	300
사. 사업주관자가 법 제12조	법 제78조	150	200	250	300

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4항제6호				
아.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78조 제1항제1호	1,000	1,400	1,800	2,000
자.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	법 제78조 제3항	250	350	450	500
차.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7호	150	200	250	300
카.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8호	150	200	250	300
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9호	150	200	250	300
파.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1항제2호	1,000	2,000	2,000	2,000
하. 법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2항제2호	500	700	900	1,000
거.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법 제78조	300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4항제9호의2				
너.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3	300			
더.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4	150	200	250	300
러.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4	150	200	250	300
머.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78조 제1항제3호	1,000	1,400	1,800	2,000
버.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10호	300			
서.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11호	150	200	250	300
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8조 제2항제3호	500	700	900	1,000
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제12호	150	200	250	30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2호, 2023. 12.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 - 203 - 51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2021. 10. 12.>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 1. 19., 2012. 6. 2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저장의무부과의 대상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ㆍ용도별 에너지 수요의 적절성
3. 연료ㆍ열 및 전기의 공급 체계, 공급원 선택 및 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적절성
4. 해당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절성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배출감소 방안의 적절성
7. 폐열의 회수ㆍ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8.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9.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절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4조(변경협의 요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2013. 3. 23.>

1.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이유
2.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내용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2. 이행 주체
3. 이행 방법
4. 이행 시기

제6조(이의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2013. 3. 23.>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전기세탁기
4. 조명기기
5.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6. 자동차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5., 2013. 3. 23.>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2.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시
3. 에너지비용(일정기간 동안 효율관리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에너지요금을 말한다)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 신고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5., 2015. 7. 29., 2018. 9. 18.>

②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8. 9. 18.>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6. 그 밖에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11. 12. 15.]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년도에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높은 효율관리기자재
2. 전년도에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그 밖에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7. 30.]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전문개정 2016. 12. 9.]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6. 28.>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보고 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조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⑦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제12조의2(과징금 부과대상)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전문개정 2016. 12. 9.]

제1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8.>

1. 삭제 <2022. 1. 26.>
2. 삭제 <2022. 1. 26.>
3. 프린터
4. 복합기
5. 삭제 <2012. 4. 5.>
6. 삭제 <2014. 2. 21.>
7. 전자레인지
8. 팩시밀리
9. 복사기
10. 스캐너
11. 삭제 <2014. 2. 21.>
12. 오디오
13. DVD플레이어
14. 라디오카세트
15. 도어폰
16. 유무선전화기
17. 비데
18. 모뎀
19. 홈 게이트웨이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6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1.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제거
2.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펌프
2. 산업건물용 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5.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 결과(시험성적서)
2. 에너지효율 유지에 관한 사항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를 제외하는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와 관련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2015. 7. 29., 2023. 8. 3.>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11. 1. 19.>
3. 영 별표 2에 따른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한다)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 등"이라 한다) 및 그 이행 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에너지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그 밖에 효율향상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2.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그 밖에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삭제 <2015. 7. 29.>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영 제35조에 따른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업자"라 한다)로 한다.<신설 2014. 8. 6.>

③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6.>

1. 국제표준화기구가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구축

2. 에너지이용효율의 지속적인 개선

④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4. 8. 6.>

1.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의 지도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 에너지경영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그 밖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6.>

1. 에너지사용량 현황
2.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을 위한 경영목표 및 그 관리체제
3. 주요 설비별 에너지이용효율의 목표와 그 이행 방법
4.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및 측정 계획

⑥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8. 6.>

[본조신설 2011. 10. 26.]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지다소비업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분야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4. 지원비율,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5.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
2. 사업장 등의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세부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4. 향후 사업관리계획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과제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2. 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품별 생산공정도

[전문개정 2022. 1. 26.]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 1. 19., 2013. 3. 23.>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며, 공동 에너지사용설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미만인 사업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1. 그 밖에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 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3. 15., 2013. 3. 23., 2014. 2. 21., 2015. 7. 9., 2015. 7. 29., 2016. 12. 9., 2023. 8. 3.>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에너지절약 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3.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기자재 및 설비(이하 “친에너지형 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가. 법 제14조에 따른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설비
나. 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
다. 법 제20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라. 법 제22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이하 “목표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15., 2013. 3. 23., 2014. 2. 21., 2016. 12. 9., 2023. 8. 3.>
1.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의2.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4.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비의 목록, 용량 및 설치사진 등을 말한다)
6.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결과를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신설 2011. 3. 15.,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3. 15., 2013. 3. 23.>

제29조의2(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① 공단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하며, 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중 전년도까지 지정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진단기관의 운영 및 기술인력 관리의 적정성
2. 에너지진단 추진 실적 및 달성도
3. 에너지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이행률
4. 진단기관에 대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만족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진단기관에 알리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8. 3.]

제30조(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진단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8. 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신청의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1. 1. 19., 2013. 3. 23.>

1.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2. 보유장비명세서
3.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3. 8. 3.>

[제목개정 2023. 8. 3.]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1. 냉방: 26℃ 이상
2. 난방: 20℃ 이하

[본조신설 2009. 7. 30.]

제31조의3(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건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의 건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내구역
2.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
3.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4.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국제기준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건물의 용도상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본조신설 2009. 7. 30.]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①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2014. 8. 6.>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 점검 및 실태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교정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동행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그 밖에 냉난방온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7. 30.]

제31조의5(특정열사용기자재)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 12. 1.>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7(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 12. 1.>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8(검사유효기간) ①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은 검사(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를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제31조의20에 따라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9(검사기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2018. 7. 23.>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10(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31조의11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검사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검사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11(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12(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 등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13(검사의 면제) ① 법 제39조제6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1. 별표 3의6에서 정한 검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ㆍ일정량 이상 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수준이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 이상일 것
   나. 제조시설ㆍ검사시설ㆍ기술인력 등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조건에 적합한 공정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2의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가.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나. 최초 설치 후 5년 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 이상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가. 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별표 3의8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에 대한 계속사용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및 개조검사
   가. 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사용안전보험으로서 약정보험금액이 400억원 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2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공단이나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2. 1.>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2. 1.>

④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2. 1.>

1.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그 밖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⑤ 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 등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2. 1.>

⑧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 검사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14(용접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용접 부위도 1부
2.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3.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15(구조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구조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

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접검사증 1부(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2부, 제31조의13에 따라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의 경우에는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16(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를 동시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에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는 구조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ㆍ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18(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1부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19(계속사용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해당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20(계속사용검사의 연기)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 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당 연도 말까지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21(검사의 통지 등)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지정일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이 검사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검사증을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란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⑤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1조의7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6개월(철금속가열로는 1년)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⑥ 제4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검사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31조의17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1. 기계적 시험의 준비
2. 비파괴검사의 준비
3. 검사대상기기의 정비
4. 수압시험의 준비
5. 안전밸브 및 수면측정장치의 분해ㆍ정비
6. 검사대상기기의 피복물 제거
7. 조립식인 검사대상기기의 조립 해체
8. 운전성능 측정의 준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 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3.>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미검사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 7. 23.>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조치의 미완료
2.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의 참여조치의 불이행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사기

관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23(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①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24(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양도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3. 상속인(지위승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25(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39조제7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설치신고대상기기”라 한다)란 별표 3의6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보일러를 말한다.
② 설치신고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이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에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설치신고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26(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는 별표 3의9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관

리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7. 23.>

② 별표 3의9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의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7. 23.>

[본조신설 2012. 6. 28.]

[제목개정 2018. 7. 23.]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23.>

②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개정 2018. 7. 23., 2021. 10. 12.>

[본조신설 2012. 6. 28.]

[제목개정 2018. 7. 23.]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7. 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8. 7. 23.>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④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7. 23.>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8. 7. 23.>

[본조신설 2012. 6. 28.]

[제목개정 2018. 7. 23.]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

상기기 관리대행기관 ” 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7.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2. 향후 1년 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1.>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6. 28.]

제31조의30(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 란 다음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1. 전기냉장고
2. 전기세탁기
3. 식기세척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에너지사용기자재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② 제1항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종류 또는 규모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21.]

제31조의31(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4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란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27.]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공단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28., 2013. 3. 23.>

제32조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65조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 7.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7. 2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7. 23.>

[본조신설 2012. 6. 28.]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 : 연도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 : 개선명령 이행실적
4. 진단기관의 경우 : 진단 수행실적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28., 2013. 3. 23., 2018. 7.

23., 2023. 8. 3.>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8.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9.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 취소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3.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1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1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7.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8. 법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0.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1.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2. 법 제3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2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매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검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8.>

제34조(수수료) ① 공단은 법 제67조제1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인증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② 진단기관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③ 법 제67조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3과 같다.<신설 2012. 6. 28.>

④ 공단 또는 검사기관은 법 제67조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신설 2017. 12.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공단이나 해당 진단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12. 6. 28., 2017. 12. 1.>

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4., 2014. 12. 31., 2018. 7. 23.>

1. 제28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
3. 제32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2018. 7. 23.>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31조의2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3. 2. 28.>
4. 제31조의30제1항에 따른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 제34조제3항 및 별표 4의3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1.]

부칙 <제23호,2008.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9호는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8조제9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9.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

부칙 <제88호,2009. 7. 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09. 9. 10.>(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0.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8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1.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1.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11. 10. 26.>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1.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12. 4. 5.>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2.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검사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31조의8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설치된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로 본다.

제6조(종전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제31조의29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7조(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조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9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의9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9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조종할 수 있다.

제8조(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의 정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거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된 사람 중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종전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2년 12월 31일까지
2.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종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호,2012. 10. 5.>(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1호,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3제2항제4호, 제3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단서,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3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8항, 제31조의26제2항, 제31조의29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 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1제4항ㆍ제5항 및 제3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식경제부령 "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령 " 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 제24호 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3의4 개조검사의 적용대상란 제3호 및 제5호 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3의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3의9 제1호 비고 및 제2호 비고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4의2 시공업의기술인력의 교육기관란 중 “ 국토해양부장관 ”을 “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기관란 및 비고 제1호ㆍ제4호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1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1쪽 중 “ 지식경제부 ”를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 ”로 한다.
3$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3호,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4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호,2014. 2. 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14.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4.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14.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5. 7. 9.>(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2호,2015. 7. 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6.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7. 1. 26.>(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79호,2017. 12. 1.>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18. 4. 27.>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18.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호,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효율관리기자재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거나 자체측정을 시작한 경우로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이후 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거나 자체측정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4호,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한다.

부칙 <제431호,2021.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관해서는 제31조의27제2항 단서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부칙 <제448호,2022. 1.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22. 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23. 2. 28.>(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23.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 비고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 21.>

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

구분	품목명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여러 관이 붙어 있는 용기)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2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2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금속(주철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것. 다만, 소형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가정용 화목보일러는 제외한다.
	소형 온수보일러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다만,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 이하인 가스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만 해당한다.
	축열식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전기보일러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소비전력이 30킬로와트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인 것
	캐스케이드 보일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 2대 이상이 단일 연통으로 연결되어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되며,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가정용 화목보일러	화목(火木) 등 목재연료를 사용하여 90℃ 이하의 난방수 또는 65℃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표시 난방출력이 70킬로와트 이하로서 옥외에 설치하는 것

태양열 집열기	태양열 집열기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을 넘는 것
	2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내부 부피가 0.0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동체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미리미터 이상인 것
요로(窯爐: 고온가열장치)	요업요로	연속식유리용융가마 · 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 · 유리용융도가니가마 · 터널가마 · 도염식가마 · 셔틀가마 · 회전가마 및 석회용선가마
	금속요로	용선로 · 비철금속용융로 · 금속소둔로 · 철금속가열로 및 금속균열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3.3.23>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제12조제1항 관련)

$$\text{평균에너지소비효율} = \frac{\text{기자재 판매량}}{\Sigma\left[\dfrac{\text{기자재의 종류별 국내 판매량}}{\text{기자재의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right]}$$

비고: 기자재의 종류별 국내 판매량 및 기자재의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 26.>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제13조제1항 관련)

1. 삭제 <2022. 1. 26.>
2. 삭제 <2022. 1. 26.>
3. 프린터
4. 복합기
5. 삭제 <2012.4.5>
6. 삭제 <2014.2.21>
7. 전자레인지
8. 팩시밀리
9. 복사기
10. 스캐너
11. 삭제 <2014.2.21>
12. 오디오
13. DVD플레이어
14. 라디오카세트
15. 도어폰
16. 유무선전화기
17. 비데
18. 모뎀
19. 홈 게이트웨이
20. 자동절전제어장치
21. 손건조기
22. 서버
23. 디지털컨버터

2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4.2.2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 기준(제22조의2 관련)

1. 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가.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일 것
 나.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이용효율에 대한 기술 수준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
2. 해당 기자재의 보급 정도
 가. 해당 기자재의 연간 판매 대수가 해당 연도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전체 판대 대수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기자재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
3. 해당 기자재의 인증 등 실적
 가.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연간 10건 이하인 경우일 것
 나. 해당 기자재의 최근 3년간 생산·판매한 실적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현저히 저조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기자재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 12. 9.>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제29조제2항 관련)

대 상 사 업 자	면제 또는 연장 범위
1. 에너지절약 이행실적 우수사업자	
가.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 (중소기업인 경우)	에너지진단 1회 면제
나.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회 선정에 에너지진단주기 1년 연장
1의2.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 면제
2. 에너지절약 유공자	에너지진단 1회 면제
3.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	1회 선정에 에너지진단주기 3년 연장
4.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에너지진단 1회 면제
5.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에너지진단주기 2회 마다 에너지진단 1회 면제
6. 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 면제

비고

1. 에너지절약 유공자에 해당되는 자는 1개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2.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상사업자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3.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진단이 면제되는 "1회"의 시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최초로 에너지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시점을 말한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중소기업이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후
나. 제2호의 경우: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후
다. 제5호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의 에너지사용량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한 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1. 10. 12.>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시공범위(제31조의5 관련)

구분	품목명	설치·시공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태양열 집열기	태양열 집열기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요업요로	연속식유리용융가마 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 유리용융도가니가마 터널가마 도염식각가마 셔틀가마 회전가마 석회용선가마	해당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금속요로	용선로 비철금속용융로 금속소둔로 철금속가열로 금속균열로	해당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개정 2021. 10. 12.>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구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캐스케이드 보일러	별표 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개정 2022. 1. 21.>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1조의7 관련)

검사의 종류		적용대상	근거 법조문
제조검사	용접검사	동체·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구조검사	강판·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확대·조립·주조 등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2항제1호
개조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수리의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가열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수리	
설치장소 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법 제39조제2항제2호
재사용검사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법 제39조제2항제3호
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법 제39조제4항
	운전성능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개정 2023. 12. 20.>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

검사의 종류		검사유효기간
설치검사		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개조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설치장소 변경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재사용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및 압력용기: 2년
	운전성능검사	1. 보일러: 1년 2. 철금속가열로: 2년

비고

1.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해당 보일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 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보일러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 나목에서 같다): 4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 2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로서 같은 표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의 압력용기: 4년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열발생설비 중 터빈에서 나온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 2년

5. 제31조의25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신고 후 2년이 지난 날에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재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은 운전성능검사대상기기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이후 최초로 받는 운전성능검사를 에너지진단으로 갈음한다(비고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6] <개정 2022. 1. 21.>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2. 주철제 보일러 3. 1종 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0.35㎫ 이하인 것	용접검사
	주철제 보일러	구조검사
	1.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 2. 전열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보일러	설치검사
	1. 전열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미리미터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 것 나. 수두압(水頭壓: 압력을 물기둥의 높이로 표시하는 단위)이 5미터 이하이며 안지름이 25미리미터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2.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유류·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32.6㎾)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	제조검사

캐스케이드 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제조검사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1. 용접이음(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용접검사
	1. 2종 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5㎫ 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 4.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1㎫ 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철금속가열로	철금속가열로	제조검사, 재사용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7] <신설 2012.6.28>

검사면제보험의 요건(제31조의13제1항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관련)

구분	보험의 요건
제조안전보험	1.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상 하자와 관련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할 것 3. 연 1회 이상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위험관리 서비스를 실시할 것
사용안전보험	1.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할 것 2.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3. 연 1회 이상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위험관리 서비스를 실시할 것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8] <개정 2022. 1. 21.>

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제31조의13제1항제4호나목 관련)

구 분	보유대수 및 인원
1. 검사시설	
가. 만능재료시험기	용량10톤 이상의 것 1대 이상
나. 수압시험기	2MPa 이상의 것 3대 이상
다. 수질분석설비	산도 · 경도 · 염산이온 및 인산이온의 분석이 가능한 것 1대 이상
라. 가스분석기	3성분(CO,CO_2,O_2) 이상 분석가능한 것 1대 이상
마. 치수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바. 표면온도계	1대 이상
사. 초음파두께측정기	1대 이상
아. CO/CO_2측정기	1대 이상
자. 가스누설검사기	1대 이상
차. 기밀시험설비	1대 이상
카. 연소효율측정기	1대 이상
타. 안전밸브시험기	1대 이상
2. 기술인력	
가.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 기계분야 기사 ·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기계분야 기능장	2명 이상
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3명 이상

다. 안전관리분야 가스기능사	1명 이상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가스 또는 특수용접기능사	3명 이상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개정 2018. 7. 23.>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

관리자의 자격	관리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킬로와트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비고

1.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제31조의27제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3.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은 위 표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의26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10] <개정 2018. 7. 23.>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제31조의29제1항 관련)

장비		기술인력
장비명	보유 대수	
1. 급수유량계	3대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또는 에너지 분야 기술사 1명 이상 2. 제31조의26 및 별표 3의9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및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각 5명 이상
2. 급유유량계	3대 이상	
3. 가스분석기 (CO_2, O_2, CO)	5대 이상	
4. 열전대온도계(0~1,500℃)	2대 이상	
5. 표준온도계	3대 이상	
6. 표면온도계	3대 이상	
7. 매연측정기	1대 이상	
8. 스톱워치	5대 이상	
9. 증기압력계	3대 이상	
10. 수질분석기	1대 이상	
11. 증기건도측정기	1대 이상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5.7.29.>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 육 대 상 자	교육기관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	1일	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신고된 사람	한국에너지공단

비고

1.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에너지관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최초로 신고된 연도(年度)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동일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관리자로 다시 신고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8. 7. 23.>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시공업의 기술인력	1.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2.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기술자과정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2종 또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 중·대형 보일러 관리자과정	1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를 초과하는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의 관리자	공단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2. 소형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과정	1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제1호의 보일러 관리자과정의 대상이 되는 보일러 외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관리자	

비고

1.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목, 교육수수료 및 교육 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공업의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 제1종·제2종 또는 제3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날부터,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후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위 교육과정 중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중·대형보일러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형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도의 변경, 기술의 발달 등 안전관리환경의 변화로 효율 향상을 위하여 추가로 교육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개정 2013.12.31>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

1.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신청 구분	용 량		수수료(원)
강철제 보일러·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0.5t/h 미만	45,800
	0.5t/h 이상	1.0t/h 미만	66,400
	1.0t/h 이상	1.5t/h 미만	87,000
	1.5t/h 이상	2.0t/h 미만	111,900
	2.0t/h 이상	2.5t/h 미만	135,900
	2.5t/h 이상	3.0t/h 미만	141,400
	3.0t/h 이상	3.5t/h 미만	147,300
	3.5t/h 이상	4.0t/h 미만	150,500
	4.0t/h 이상	4.5t/h 미만	151,400
	4.5t/h 이상	5.0t/h 미만	153,200
	5.0t/h 이상	6.0t/h 미만	154,200
	6.0t/h 이상	7.0t/h 미만	156,300
	7.0t/h 이상	8.0t/h 미만	157,400
	8.0t/h 이상	10t/h 미만	159,300
	10t/h 이상	15t/h 미만	170,600
	15t/h 이상	20t/h 미만	183,100
	20t/h 이상	30t/h 미만	192,100
	30t/h 이상	40t/h 미만	201,600
	40t/h 이상	60t/h 미만	221,600
	60t/h 이상	80t/h 미만	223,400
	80t/h 이상	100t/h 미만	224,200
		100t/h 이상	225,100
압력용기		0.5㎥ 미만	37,200
	0.5㎥ 이상	1㎥ 미만	38,400
	1㎥ 이상	5㎥ 미만	44,100
	5㎥ 이상	10㎥ 미만	49,000
		10㎥ 이상	60,900
철금속가열로	0.58MW 초과	1.16MW 이하	63,000
	1.16MW 초과	5.82MW 이하	71,500
	5.82MW 초과	11.63MW 이하	77,800
		11.63MW 초과	84,100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60,900원에 50㎥마다 8,1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2.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신청 구분	용 량		수수료(원)
강철제 보일러·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0.5t/h 미만	52,100
	0.5t/h 이상	1.0t/h 미만	75,700
	1.0t/h 이상	1.5t/h 미만	99,100
	1.5t/h 이상	2.0t/h 미만	127,400
	2.0t/h 이상	2.5t/h 미만	154,800
	2.5t/h 이상	3.0t/h 미만	161,000
	3.0t/h 이상	3.5t/h 미만	171,400
	3.5t/h 이상	4.0t/h 미만	175,000
	4.0t/h 이상	4.5t/h 미만	176,100
	4.5t/h 이상	5.0t/h 미만	178,200
	5.0t/h 이상	6.0t/h 미만	179,300
	6.0t/h 이상	7.0t/h 미만	181,800
	7.0t/h 이상	8.0t/h 미만	183,100
	8.0t/h 이상	10t/h 미만	185,300
	10t/h 이상	15t/h 미만	202,300
	15t/h 이상	20t/h 미만	217,200
	20t/h 이상	30t/h 미만	227,800
	30t/h 이상	40t/h 미만	239,000
	40t/h 이상	60t/h 미만	262,800
	60t/h 이상	80t/h 미만	265,000
	80t/h 이상	100t/h 미만	265,800
		100t/h 이상	267,000
압력용기		0.5㎥ 미만	42,300
	0.5㎥ 이상	1㎥ 미만	43,800
	1㎥ 이상	5㎥ 미만	51,300
	5㎥ 이상	10㎥ 미만	57,000
		10㎥ 이상	72,300
철금속가열로	0.58MW 초과	1.16MW 이하	73,300
	1.16MW 초과	5.82MW 이하	83,100

	5.82MW 초과 11.63MW 이하	90,500
	11.63MW 초과	97,900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72,300원에 50㎥마다 9,5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3. 2016년 1월 1일부터

검사신청 구분	용 량		수수료(원)
강철제 보일러·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0.5t/h 미만	58,500
	0.5t/h 이상	1.0t/h 미만	84,900
	1.0t/h 이상	1.5t/h 미만	111,200
	1.5t/h 이상	2.0t/h 미만	143,000
	2.0t/h 이상	2.5t/h 미만	173,700
	2.5t/h 이상	3.0t/h 미만	180,700
	3.0t/h 이상	3.5t/h 미만	195,400
	3.5t/h 이상	4.0t/h 미만	199,600
	4.0t/h 이상	4.5t/h 미만	200,800
	4.5t/h 이상	5.0t/h 미만	203,200
	5.0t/h 이상	6.0t/h 미만	204,500
	6.0t/h 이상	7.0t/h 미만	207,300
	7.0t/h 이상	8.0t/h 미만	208,700
	8.0t/h 이상	10t/h 미만	211,300
	10t/h 이상	15t/h 미만	234,000
	15t/h 이상	20t/h 미만	251,200
	20t/h 이상	30t/h 미만	263,500
	30t/h 이상	40t/h 미만	276,500
	40t/h 이상	60t/h 미만	304,000
	60t/h 이상	80t/h 미만	306,500
	80t/h 이상	100t/h 미만	307,500
		100t/h 이상	308,900
압력용기		0.5㎥ 미만	47,500
	0.5㎥ 이상	1㎥ 미만	49,200

	1㎥ 이상	5㎥ 미만	58,500
	5㎥ 이상	10㎥ 미만	65,000
		10㎥ 이상	83,600
철금속가열로	0.58MW 초과	1.16MW 이하	83,500
	1.16MW 초과	5.82MW 이하	94,800
	5.82MW 초과	11.63MW 이하	103,200
		11.63MW 초과	111,600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83,600원에 50㎥마다 10,8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09.7.3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본사
		사업장		사업장
	대표자 성명			

효율관리기자재 중 자체측정 승인신청 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합니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시 행	→	승인공문 발송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대기전력 [ ]저감 [ ]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본사
		사업장		사업장
	대표자 성명			

대기전력저감대상 제품 또는 대기전력 경고표지대상제품 중 자체측정 승인신청 제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제2항 단서,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기전력 [ ]저감 [ ]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합니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시 행	→	승인공문 발송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본사
		사업장			사업장
	대표자 성명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 경고표지대상 제품 중 지정신청 제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합니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시 행	→	지정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9.>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본사
		사업장			사업장
	대표자 성명				
인증대상 기자재명					
모 델 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 결과(시험성적서) 2. 에너지효율 유지에 관한 사항	수수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시 행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본사
		사업장		사업장
	대표자 성명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중 지정 신청 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합니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시 행	→	지정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8. 3.>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항	자본금(납입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자본금[ ]백만원, 자산평가액[ ]백만원	
	자본총계(실질자본금) 자본총계[ ]백만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시 행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29.>

등록번호 제 호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2. 주 영업소 소재지:

3. 등 록 연 월 일: 년 월 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 26.>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 □ 중견·중소기업 □ 해당없음 (해당 구분에 √ 표기)

(　　)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5쪽 중 제1쪽)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코드			
기관(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에너지 관리자	부서기존	성명	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팩스번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2. 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제품별 생산공정도	수수료 없음

1.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구분	에너지원	단위	(　　)년도 사용량 실적										(　　)년도 사용량 계획									
			고유단위					toe주					고유단위					toe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연료	B-C유	kl																				
	(　)	(　)																				
	(　)	(　)																				
	(　)	(　)																				
	(　)	(　)																				
	소계	toe						1)										3)				
전력	수전전력	천kWh						2)										4)				
	자가발전	천kWh																				
	판매전력	천kWh																				
계		toe						1)+2)										3)+4)				
원료용 에너지	(　)	(　)																				
	(　)	(　)																				
	소계	toe																				

주)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란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합니다.

(5쪽 중 제2쪽)

2.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

구 분		대책사항	공정 및 설비	에너지원	연간 절감량		절감액 (천원)	투자비(천원)		투자완료	
					고유단위	toe		융자	자체	년	월
( ) 년도 절약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 ) 년도 절약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주) 투자완료 시점에 해당하는 분기에 적습니다(다만, 절감량은 1년치에 해당하는 연간 절감량을 적습니다)

3. 주요 에너지사용설비[주1)] 현황

1) 고정시설

설 비 명		형 식	용량	단위	대수	( )년도 에너지사용량			설치 연도	효율(%)	용도
						에너지원	사용량				
							고유단위	toe			
열사용[주2)]											
전기사용											

주1) 열·전기사용설비의 경우 해당 설비군의 에너지사용량이 총 에너지사용량의 5% 이상인 설비만 적습니다.
주2) 보일러, 요(窯), 로(爐)는 반드시 적습니다.

(5쪽 중 제3쪽)

2) 이동시설

설 비 명	형 식	용량	단위	대수	(　　)년도 에너지사용량			구입 연도	연비	용도
					에너지원	사용량				
						고유단위	toe			
연간 총 주행거리(천km) * 연간주행거리=1대당 주행거리×대수						연간 총 승차인원(인)				
						연간 총 적재량(ton)				

3) 신재생설비

에너지원	설비타입	용량	단위	대수	설치연도	효율(%)	용도

주)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열생산,열병합설비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4. 발전설비에 기재)

4) ESS(에너지저장장치) 설비

저장방식		PCS(인버터)		설치연도
형식	용량(kWh)	용량(kW)	출력시간	

(5쪽 중 제4쪽)

4. 발전설비

발전방식	용량(kW)	총발전량(천kWh)	(　)년도 에너지사용량			설치연도
			에너지원	사용량		
				고유단위	toe	

5. 주요 수·배전용 변압기

계약전력(kW)	최대부하(kW)	용량(kVA)	대　수	설치연도

(5쪽 중 제5쪽)

6. 대지 및 건물 현황

대지 현황	대지면적(㎡)			시설면적(㎡)			
건물 현황	준공연도		층수(층)		건축면적(㎡)		
	연면적(㎡)		난방면적(㎡)		냉방면적(㎡)		
단열 현황	구분	지붕	전후벽	측벽	바닥	창문	
	단열두께(㎜)					이중창률 (%)	
냉·난방 현황	연간난방일수(일)			평균난방실내온도(℃)			
	연간냉방일수(일)			평균냉방실내온도(℃)			
냉·난방방식	난방방식			냉방방식			
절약형설비							

7. 공정 및 제품별 에너지사용실적 및 계획

구 분		공정 및 생산품명								
단 위										
( ) 년도 실적	생산능력									
	생산량									
	연료(toe)									
	전기(천㎾h)									
	생산액(백만원)									
	그 밖의 사항									
	연료비(백만원)									
	전력비(백만원)									
( ) 년도 계획	생산량									
	연료(toe)									
	전기(천㎾h)									

비고

1. 공정 및 생산품명별로 생산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란에 매출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공정 및 생산품명별로 매출액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을 작성합니다.
2. 그 밖의 사항란에는 제1호에 따른 매출액과 사업자가 생산량, 생산액 외에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위나 값(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3. 8. 3.>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7일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업체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 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진단의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1부 5.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비의 목록, 용량 및 설치사진 등을 말합니다) 1부 7.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인 경우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장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비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현장 확인에 드는 기간을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3.3.23>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 결과통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업장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업체 번호	
소 재 지			
면제 또는 주기연장 여부 및 사유			
에너지진단주기 만료기한	20 년 월 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 비고: 에너지진단을 면제받거나 에너지진단주기가 연장된 자는 에너지진단주기 만료기한 1개월 이전까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에너지진단을 신청(계약체결을 포함한다) 후 에너지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8. 3.>

에너지진단전문기관 [ ] 지정 [ ] 변경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본사
		사업장		사업장
	대표자 성명			
	진단전문기관 종류			

변경 내용 (업체명, 사무소 소재지, 진단기관 종류 등 변경내용을 적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진단전문기관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8. 3.>

(앞 쪽)

지정번호 제 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

1. 업 체 명:

2. 본사 소재지:

3.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종류:

4. 지정 연월일: 년 월 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 쪽)

변경 내용		
연 월 일	내 용	담당자 확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2. 1.>

전자민원(www.kemc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 용접 [ ] 구조 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검사대상 기기명	형식	
	용량	최고사용압력	MPa (kg/㎠)
	검사 요청일	원자재검사 성적서번호	
	최초 신청일	검사증번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용접 [ ]구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용접검사 가. 용접 부위도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2. 구조검사: 용접검사증 1부. 다만, 용접검사를 받지 않는 기기는 설계도면 2부를 첨부하고,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는 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검사	→	결 재	→	검사증 작성 및 발급
신청인		공인검사기관		공인검사기관		공인검사기관		공인검사기관		

210㎜×297㎜[백상지 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 26.>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 설치검사 [ ] 개조검사 [ ] 설치장소 변경검사 [ ] 재사용검사 [ ] 계속사용검사 [ ] 검사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검사대상 기기	기 기 명		제 조 자 명
	설 치 장 소 (전화번호)		검사증번호
	형 식	전열면적	용 량
	최고사용압력	버너종류	사용연료

검사대상 기기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자격 종류	자격증번호

시공업자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개조 여부 ([ ] 예, [ ] 아니오) 장소변경 여부([ ] 예, [ ] 아니오)

검사 요청일	년 월 일	연기사유
운전성능요청일	년 월 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부터 제31조의20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 ]개조검사 [ ]설치장소 변경검사 [ ] 재사용검사 [ ]계속사용검사 [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수수료 (다만, 검사연기신청은 제외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90g/㎡)]

(뒤쪽)

◦ 검사별 첨부서류

검 사 명	첨 부 서 류
설 치 검 사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 · 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1부
계속사용검사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시공업자란은 설치검사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의 경우만 적습니다.
2. 검사 요청일란의 운전성능요청일은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정격용량이 0.58㎿를 초과하는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검사대상인 기기를 검사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처리기간은 검사 요청일부터 계산합니다.
5.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시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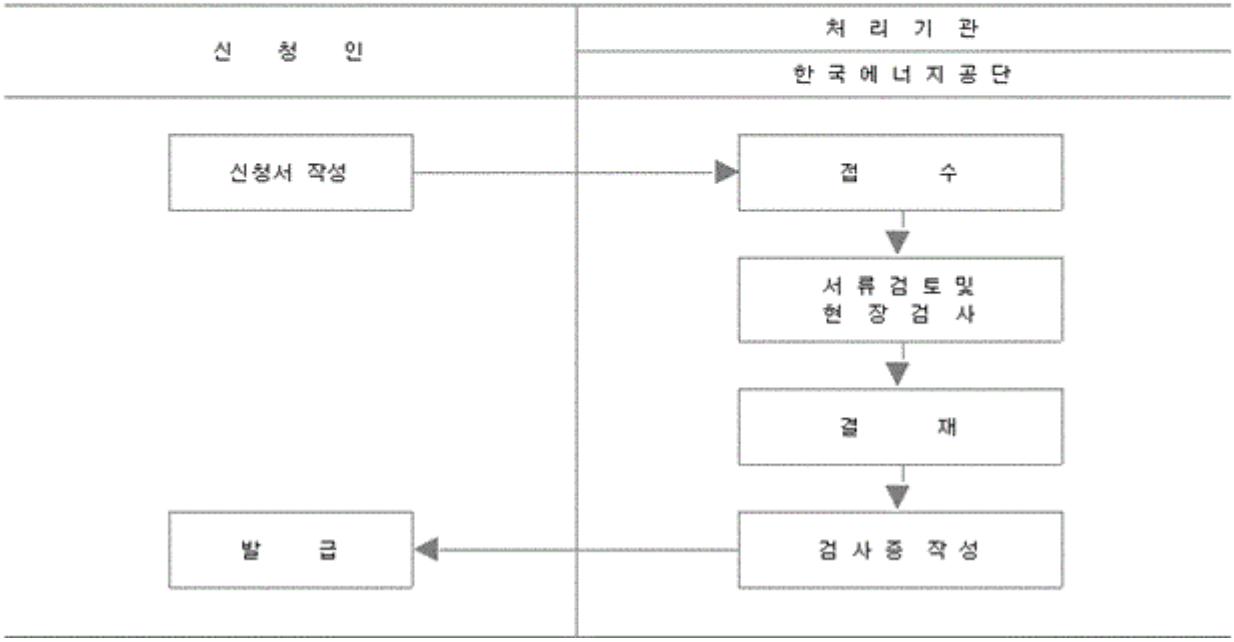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7. 23.>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신고 기기	기기명	제조자명	
	설치일자	구조검사증번호	
	형식	전열면적	용량
	최고사용압력	버너종류	사용연료
관리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시공 업자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사본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설계도면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작성	→	발 급
신고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2.6.28>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번호( )000-0000/전송( )000-0000
담당부서명: 담 당 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발 신 기 관 장 ㊞

검 사 대 상 기 기 검 사 통 지 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소 소재지		
검사종류 및 검사증번호	검사 종류	
	검사증번호	
검사지정일		
검사준비사항		

210㎜×297㎜[백상지 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2.6.28>

제 호

강철제 보일러 용접검사증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보일러형식					검사일자		
용 량			t/h, MW		최고사용압력		MPa
검사 사항	동체 관모음	재 료	길이(㎜)	최대안지름(㎜)	두께(㎜)	끝벌림상태	
						합격	
						합격	
	경판 및 관판	재 료	형 상	안지름(㎜)	두께(㎜)	높이(㎜)	끝벌림상태
							합격
							합격
							합격
	노통 또는 화실	재 료	형 상	최대안지름(㎜)	두께(㎜)	길이(㎜)	공작상태 / 용접상태
							합격 / 합격
							합격 / 합격
							합격 / 합격
	동체의 길이 이음 종류				용 접 효 율		%
	비 파 괴 시 험 결 과		합격		용접부 기계적 시험	합격	
	열 처 리 결 과		합격		덧 살 다 듬 상 태	합격	
	용 접 봉 종 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첨부서류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용접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을 첨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12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2.6.28>

제 호

[ ]종 압력용기 용접검사증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기 기 명		검 사 일 자	
용 량	㎥	최고사용압력	㎫

검사사항	동체	재 료	형 상	최대안지름(㎜)	길이(㎜)	두께(㎜)	끝벌림상태
							합격
							합격
	경판	재 료	형 상	굽힘반지름(㎜)	길이 또는 높이(㎜)	두께(㎜)	끝벌림상태
							합격
							합격
	뚜껑판						합격
							합격
	동체의 길이 이음 종류				용 접 효 율		%
	비 파 괴 시 험 결 과		합격		용접부 기계적시험		합격
	열 처 리 결 과		합격		덧 살 다 듬 상 태		합격
	용 접 봉 종 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첨부서류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용접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을 첨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12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2.6.28>

제 호

강철제 보일러 구조검사증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보일러형식		검사일자	
용 량	t/h, MW	최고사용압력	MPa

검사사항	전 열 면 적						
	구분	종 류	재 료	바깥지름 또는 폭(㎜)	두께(㎜)	개 수	부착상태
	스테이	가셋트					합격
		관					합격
		봉					합격
	수관 또는 연관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구 분		재 료	형 식	바깥지름(㎜)	두께(㎜)	
	관 모 음						
	과 열 기						
	수면측정장치		형 식	개수		부착위치	합격
	수 압 시 험		압 력		MPa	상 태	합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첨부서류	용접검사증(용접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설계도면) 1부(구조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또는 설계도면을 첨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12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2.6.28>

제 호

[ ]종 압력용기 구조검사증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기 기 명				검 사 일 자	
용 량			㎥	최고사용압력	MPa
검사 사항	동 체		최대안지름	㎜	길 이 ㎜
	스테이	종 류	재 료	지름 또는 두께	동체, 경판 등에 부착방법
				㎜	합격
				㎜	합격
	뚜 껑 판 체 결 볼 트		재 료	호칭지름(㎜)	개 수
	관	재 료	바깥지름(㎜)	개 수	부 착 상 태
					합격
					합격
	수 압 시 험		압 력	MPa	상 태 합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2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첨부서류	용접검사증(용접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설계도면) 1부(구조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또는 설계도면을 첨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 297㎜[백상지 12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7. 23.>

(앞쪽)

설치검사증번호 :

검사대상기기 [ ] 설치검사증 [ ] 신고증명서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 업 명
사무소 소재지	
사업소 소재지	
설치장소 소재지	
구조검사증번호	설치검사(신고)일자

기기 명세	기 기 명		용 량	t/h, MW, m³
	최고사용압력	MPa	상용압력	MPa

	안 전			운 전 성 능		
	유효기간	검사원	확 인	유효기간	검사원	확 인
계속 사용 검사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2항 또는 제31조의2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 ]설치검사증 [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인

첨부서류	설계도면(설치검사를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120g/㎡]

(뒤쪽)

검 사 대 상 기 기 관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자격 종류	자격증 번호	선임 일자	검사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비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12.6.28>

전자민원(www.kemc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재발급신청이유	

검사대상 기기	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구 검사증 원본(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2.6.28>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번호( )000-0000/전송( )000-0000
담당부서명: 담 당 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발 신 기 관 장 ㊞

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소 소재지	
검사종류 및 검사증번호	검사종류
	검사증번호
불합격 사유	
관련 규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위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할 경우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는 불합격한 날부터 6개월(철금속가열로는 1년)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기를 개수 또는 보수하여 다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210㎜×297㎜[백상지 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2.6.28>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번호( )000-0000/전송( )000-0000
담당부서명:	담 당 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발 신 기 관 장 ㊞

검 사 대 상 기 기 미 검 사 통 지 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2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검사 사실을 통지합니다.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소 소재지	
검사종류 및 검사증번호	검사종류
	검사증번호
미검사 사유	
관련 규정	

2.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 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2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210㎜×297㎜[백상지 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7.29.>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 폐 기 [ ] 사용중지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장소 소재지	(전화번호)

	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검사유효 기간만료일	폐기·중지일자
검사대상기기					

폐기 또는 사용중지 사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7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3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 ]폐기 [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대장정리	→	확 인
신고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7.29.>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설치자 (신고자)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구 설치자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검사유효기간만료일
검사대상 기기				

변 경 사 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7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2. 다음의 각 목의 서류 중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다. 상속인(지위승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대장정리	→	확 인	→	검사증 작성
신고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1. 26.>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 ] 선 임 [ ] 해 임 [ ] 퇴 직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선임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소속 업체명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자 격 종 목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해임되거나 퇴직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자 격 종 목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 ] 선임일자 [ ] 해임일자 [ ] 퇴직일자		검사대상기기 검사증 번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 ]해임 [ ]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12. 1.>

전자민원(www.kemc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 ] 지정 [ ] 변경지정 신청서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 경 내 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각 1부 2.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지정서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

장 비 명 세 서

(2쪽)

일련번호	장비명	제조번호	제조업	제조회사	구입 연월일

기 술 인 력 명 세 서

(3쪽)

일련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자격 구분	자격증 번 호	자 격 증 발급 연월일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7. 23.>

전자민원(www.kemco.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검사증 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비 고
검사대상기기				

연기사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신청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210㎜×297㎜[백상지 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8. 7. 23.>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관리자 선임기한	
조치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니 관리자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5.7.29.>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수신자 시·도지사
(경유)
제 목 **검사대상기기 검사실적보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　)월 검사대상기기 검사실적

차례	검사 종류	검사 일자	신 청 인				기 기 내 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용도	기기명-구분	용량	압력	사용 연료	검사증 번호

끝.

한 국 에 너 지 공 단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조 삭제 <2010. 4. 12.>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3. 21.>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3. 23., 2020. 3. 3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 1. 28.>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6.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4. 12.]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2016. 3. 22.>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12조의2 삭제 <2015. 1. 28.>

제12조의3 삭제 <2015. 1. 28.>

제12조의4 삭제 <2015. 1. 28.>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4. 20.>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 21.>

[본조신설 2010. 4. 12.]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0. 4. 12.]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8.>

⑧ 신·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5. 1. 28.>

[본조신설 2010. 4. 12.]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4. 12.]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30.>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0. 4. 12.]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4. 12.]

제12조의11(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12조의12(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28.>

④ 삭제 <2015. 1. 28.>

⑤ 삭제 <2015. 1. 28.>
⑥ 삭제 <2015. 1. 28.>
[전문개정 2010. 4. 12.]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14조 삭제 <2015. 1. 28.>

제15조 삭제 <2015. 1. 28.>

제16조(수수료)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5. 1. 28.>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7. 30.>
[전문개정 2010. 4. 12.]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법률 제10253호(2010. 4. 12.)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19조 삭제 <2015. 1. 28.>

제20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1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2조 삭제 <2015. 1. 28.>

제22조의2 삭제 <2015. 1. 28.>

제23조 삭제 <2010. 4. 12.>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개정 2014. 1. 1.>
[본조신설 2013. 7. 30.]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①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혼합의무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혼합의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3. 7. 30.]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2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삭제 <2015. 1. 28.>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0. 4. 12.]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0. 4. 12.]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28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0조(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30조의2(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30조의3(하자보수)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30조의4(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20.>
[본조신설 2020. 3. 31.]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5. 1. 28., 2020. 3. 3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3. 삭제 <2015. 1. 28.>
4.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관리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7. 이미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9. 제2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관리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15의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관리
16.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11. 15.>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7. 30.>

1. 삭제 <2015. 1. 28.>
2.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 <2015. 1. 28.>
5.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0. 4. 12.]

제34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2014. 1. 21.>

1. 삭제 <2015. 1. 28.>
2. 삭제 <2015. 1. 28.>
3. 삭제 <2015. 1. 28.>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 <2015. 1. 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부칙 <제7284호,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 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98호,2006. 9.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1> 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 산업자원부령 ” 을 각각 “ 지식경제부령 ” 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 산업자원부장관 ”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 산업자원부 ” 를 “ 지식경제부 ” 로 한다.

<3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99호,2008. 3.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33호,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2호,2009. 1. 30.>(에너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 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9680호,2009. 5. 21.>(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9931호,2010. 1. 1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10253호,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4호,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차액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칙 <제10445호,2011. 3. 9.>(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3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ㆍ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4항ㆍ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5호,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3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혼합의무비율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⑩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54호,2014. 1. 1.>(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296호,2014. 1.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7호,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제품으로 본다.

부칙 <제14079호,2016. 3. 2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4670호,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6호,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

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169호,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33호,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5호,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0호,2022. 1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2조(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 3. 30.]

제3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법 제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 시의성(時宜性)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 공동연구의 가능성

[전문개정 2010. 9. 17.]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9. 17.]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5.]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6조(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7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5.]

제8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9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5.>
[전문개정 2010. 9. 17.]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전문개정 2010. 9. 17.]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재

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3. 5.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1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전문개정 2010. 9. 17.]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18조의2 삭제 <2015. 6. 15.>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

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 1. 21.>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4. 24.>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4. 4. 24., 2023. 4. 11.>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4. 24.>

⑤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연기된 의무공급량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연기된 의무공급량 중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4.>

⑥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1. 해당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2.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3. 신·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삭제 <2021. 9. 24.>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5.>

② 법 제12조의7제8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6. 15.>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개정 2015. 6. 15.>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6. 15.>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財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9.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4. 24.>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 9. 24., 2021. 1. 5.>

1. 수소
2.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3.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4.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5.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본조신설 2014. 1. 21.]

제18조의13(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본조신설 2014. 1. 21.]

제19조(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20조 삭제 <2015. 6. 15.>

제20조의2(보험·공제 가입 등)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5.>

1. 가입기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

③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21조 삭제 <2015. 6. 15.>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2.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배전 선로 이용요금
4.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5. 운전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6.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전문개정 2010. 9. 17.]

제23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0. 9. 17.]

제24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중소기업자: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전문개정 2010. 9. 17.]

제25조 삭제 <2015. 6. 15.>

제25조의2 삭제 <2015. 6. 15.>

제26조 삭제 <2015. 6. 15.>

제2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15.]

제26조의3(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송용연료의 생산량
   나.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다. 수송용연료의 재고량
   라. 수송용연료의 수출입량
   마. 수송용연료의 자가소비량
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3. 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송용연료 및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다. 결산재무제표
4.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6. 15.]

제26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연도별 혼합의무 불이행분(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혼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양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6. 15.]

제26조의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본조신설 2015. 6. 15.]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5. 6. 15.]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

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3. 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계획
4.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및 친환경성 확보 계획
5.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 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28조(공제규정)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및 공제료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 21.]

제28조의2(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0. 9. 17.]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5. 6. 15.>

1. 삭제 <2015. 6. 15.>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3. 삭제 <2015. 6. 15.>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6. 삭제 <2015. 6. 15.>
7. 삭제 <2015. 6. 1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2014. 4. 24.>

1.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3. 삭제 <2015. 6. 15.>
4. 삭제 <2015. 6. 1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0. 9. 17.]

부칙 <제19023호,2005. 8.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는 이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는 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및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는 이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⑨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5>생략

<14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1급공무원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 기획예산처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을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147>내지 <241>생략

부칙 <제20678호,2008. 2. 29.>(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

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중 " 산업자원부 "를 " 지식경제부 "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4항 중 " 산업자원부령 "을 각각 "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977호,2008. 8. 2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 "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 "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997호,2008. 9.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41호,2009. 4. 21.>(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1629호,2009. 7. 16.>(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ㆍ나목,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용도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쓰는”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2117호,2010. 4. 13.>(에너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2382호,2010.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적용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의무공급량 이행 연기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제1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부칙 <제23640호,2012.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38호,2013.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2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7 비고의 제2호다목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2 중 “ 지식경제부 ”를 “ 산업통상자원부 ”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를 “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로, “ 국토해양부 ”를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로 한다.
제18조의2 중 “ 국토해양부 ”를 “ 국토교통부 ”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4$ 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955호,2013. 12. 11.>(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기술표준원장 ”을 “ 국가기술표준원장 ”으로 한다.

⑬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11호,2014. 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22호,2014.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69호,2015.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6호,2015.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에 관한 특례) ① 별표 6 비고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혼합의무자의 2015년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내수판매량은 2015년 7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

② 별표 6 비고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혼합의무자의 2015년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내수판매량은 2014년도 내수판매량의 365분의 154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④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하고, 제27조의2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으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⑦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바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⑫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26439호,2015. 7. 2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660호,2016. 1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2호,2017. 7. 26.>(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0095호,2019. 9. 24.>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7호,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16호,2021. 3.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7호,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① 별표 6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을,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5를 각각 적용한다.

② 별표 6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5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32014호,2021. 9. 2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5항 및 제26조의5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2169호,2021. 11. 30.>(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32315호,2022.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00호,2023.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66호,2023. 5. 15.>(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를 “ 제23호 ”로 한다.

⑩ 생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	기준 및 범위	
1.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은 에너지
	나. 범위	1) 증기 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2.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가. 기준	1) 중질잔사유(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 등을 말한다)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나. 범위	합성가스
3. 바이오에너지	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1) 또는 2)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나.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4. 폐기물에너지	기준	1)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1)부터 3)까지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보고, 1)부터 3)까지의 에너지 중 비재생폐기물(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으로서 생물 기원이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
5. 수열에너지	가. 기준	물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나. 범위	해수(海水)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9.>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연도	2020 ~ 2021	2022 ~ 2023	2024 ~ 2025	2026 ~ 2027	2028 ~ 2029	2030 이후
공급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4. 11.>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해당 연도	비율(%)
2012년	2.0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0
2016년	3.5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0
2021년	9.0
2022년	12.5
2023년	13.0
2024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2028년	19.0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4.24>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

1. 종류

태양에너지(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한정한다)

2.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 연도	의무공급량(단위: GWh)
2012년	276
2013년	723
2014년	1,353
2015년 이후	1,97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0.9.17>

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업무정지기간	과징금(단위: 만원)
1. 법 제12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10 제2항	1개월 이하	2,000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4,000
2. 법 제12조의9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의10 제2항	1개월 이하	3,000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5,00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6. 29.>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도별 의무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수송용 연료(혼합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의 내수판매량]

비고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해당 연도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03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035
2022년		0.035
2023년		0.035
2024년		0.04
2025년		0.04
2026년		0.04
2027년		0.045
2028년		0.045
2029년		0.045
2030년 이후		0.0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을 재검토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실적과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송용 연료의 종류: 자동차용 경유

3.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 바이오디젤

4. 내수판매량: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5.6.15.>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과징금(단위: 만원)
가. 법 제23조의4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	1개월	2,000
		3개월	4,000
나. 법 제23조의5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	1개월	3,000
		3개월	5,00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1. 30.>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4호	200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5호	300만원	500만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4 - 203 - 53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4.]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4. 23., 2019. 10. 1.>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전문개정 2014. 11. 28.]

제2조의2(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0. 9. 24.]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9. 24.]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3.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6. 제1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9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9. 24.]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 9. 24.]

제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 2022. 1. 21.>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품질검사의 방법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절차

[본조신설 2014. 11. 28.]

제3조 삭제 <2015. 7. 9.>

제4조 삭제 <2015. 7. 9.>

제5조 삭제 <2015. 7. 9.>

제5조의2 삭제 <2015. 7. 9.>

제5조의3 삭제 <2015. 7. 9.>

제6조 삭제 <2015. 7. 9.>

제7조 삭제 <2015. 7. 9.>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9.]

제9조 삭제 <2015. 7. 9.>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7. 9., 2019. 10. 1., 2022. 1. 21.>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는 제외한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에 딸린 업무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에 관한 수수료는 소요경비 및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11. 28.>
[전문개정 2010. 9. 24.]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 3. 23.>
1. 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2.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3. 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24.]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 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7. 9.>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12. 12.>

[전문개정 2010. 9. 24.]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9.]

제13조의2(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9.]

제13조의3(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혼합의무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2. 혼합의무자의 혼합시설 현황, 혼합시설 변동사항 및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혼합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의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간을 정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9.]

제1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9.]

제14조(신·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4.]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15조(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24.]

제16조(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전문개정 2010. 9. 24.]

제16조의2(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9.]

제16조의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13. 3. 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 9. 24.]

제18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개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1. 제4조에 따른 설비인증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2. 4.]

제18조의2 삭제 <2014. 12. 31.>

제19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623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이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에 따른다)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 개시일부터 16년까지 발급한다. 다만, 제철공정, 석유화학공정 등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10. 1.]

부칙 <제305호,2005. 10.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표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재생 에너지 보급시설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④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9호,2006. 10. 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5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뒷쪽, 별지 제8호서식 뒷쪽, 별지 제9호서식 뒷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산업자원부령 ”을 각각 “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49호,2010.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2. 10. 5.>(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까지 생략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ㆍ제5항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 지식경제부 ”를 각각 “ 산업통상자원부 ”로 한다.

3!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13. 12. 12.>(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48호,2014. 2. 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4.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5.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5.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부칙 <제227호,2016.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9호,2019. 10. 1.>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20. 9. 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22. 1.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12. 8.>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한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중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법	지정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의10제1항 제1호			
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12조의10제1항 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10제1항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의10제1항 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7.9.>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5.7.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15.7.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 분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 80g/㎡)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공급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 정 일:
5. 지정번호:
6. 업무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7.9.>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 분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3.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 80g/㎡)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9.>

제　　호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 정 일:
5. 지정번호:
6. 업무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혼합의무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5.7.9.>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5.7.9.>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5.7.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	기업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기타	설립일
	담당자 성명	부서/직책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기술현황	기술명칭
	기술구분 [ ]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 [ ]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천기술 보유기관:)
신청내용	신청분야 [ ] 시험제품 제작 [ ] 설비투자 [ ]교육 및 홍보 [ ] 기타
	총투자자금 융자: 백만원, 보조: 백만원, 자체 : 백만원, 합계: 백만원
	사업기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 1부를 포함합니다. 가.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지원여부 결정	→	결 재	→	결과 회신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 80g/㎡)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3>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주관기관	한글	주소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수행 책임자	한글 성명	영문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총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위탁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합계 (백만원)	
참여 기관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1부 2.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운영계획서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및 심사	→	지정 여부 결정	→	기안 및 결재	→	결과 회신
신 청 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 80g/㎡)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3>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주관기관	한글	주소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수행 책임자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총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위탁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합계 (백만원)		
참여 기관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1부 2.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및 심사	→	지정 여부 결정	→	기안 및 결재	→	결과 회신
신 청 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 80g/㎡)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 9. 29.>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

1. 기본정보

설비종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
사후관리일자	
소유자(연락처)	
실사용자(연락처)	

2. 설비정보

설치연도		
설치위치	□옥외 □옥상 □보일러실 □주차장 □건물일체형(BIPV) □기타( )	
설치장소(주소)		
설치용량		
주요 부품	주요부품1	(수량 : 개)
	주요부품2	(수량 : 개)
	주요부품3	(수량 : 개)
	주요부품4	(수량 : 개)

3. 점검사항 및 가동상태

점검사항	설비의 가동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상태, 전선피복 등 전력시설물 설치 상태, 설치된 설비의 지반 및 배수시설 등 적정 유지 상태 등
가동상태	□ 정상가동 □ 가동중단(고장, 기타사유) □ 폐기처분
점검결과	
비 고	

※ 비고란에는 가동중단 설비의 향후계획(재가동, 폐기 등) 등을 적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 (서명 또는 인)

시행기관의 장 귀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0. 9. 29.>

시행기관의 장 또는 센터의 장

우 주소	/전화( )○○○-○○○○/팩스( )○○○-○○○○
담당 부서명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발 신: ㊞

제 목: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년도)**

1. (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대상 현황(설비개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계

2. (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설비개수)

구 분	정상가동	가동중단		폐기처분	비 고
		고 장	기 타		
태양광					
태양열					
지 열					
연료전지					
기 타					
계					

※ 비고란에는 가동중단 설비의 향후계획(재가동, 폐기 등)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5.7.9.>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5.7.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0. 25.] [고시 제2021 - 166호, 2021. 10. 2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044 - 203 - 514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5. "모델"이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6.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7.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제3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및 측정방법 등)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제품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준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성능기준을 시기별로 사전에 예고할 수 있다.

③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와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단, LED 램프 및 등기구는 [별표 5]를 추가하여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6]과 같다.
⑤ 고효율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모델명, 기자재의 규격, 각 시료의 측정결과, 시료의 사진, 부품리스트, 설계ㆍ회로도면 및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측정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신청)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인증신청은 모델단위로 하되, 공단의 고효율인증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인증 모델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신청일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2. 에너지효율의 유지에 관한 사항(단, 같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업체현황
나. 해당 기자재의 설명서 및 규격사항
다. 제조설비 및 시험ㆍ검사설비의 보유 내역
라.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서, 측정결과 등의 사본
마. 기본모델 대비 파생모델 비교 현황(파생모델만 해당)
바. 그 밖에 에너지효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6조(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별 최초 인증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장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 중 유사품목으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품목 또는 유사품목으로 KS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일모델을 생산하는 다수공장에 대한 인증신청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각각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효율인증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공단이사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인증서 발급 및 제품특징 등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품특징 등을 인증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별도기재 사유,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기 위한 유사품목 분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공단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가 변경된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측정결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의2(비대면 인증심사)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인증심사가 지연될 경우 인증 대상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인증심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1. 공단은 인증 심사 전까지 인증심사원과 인증신청인 등에게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절차 등을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인증신청인은 사내표준,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등 공장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단은 2호에 따른 자료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심사하며,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증 표시)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서의 인증효력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적합하게 인증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고효율인증업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광고매체 그 밖의 인쇄물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 사항을 검사한 결과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고효율인증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고효율인증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를 할 수 없다.

제8조(인증유효기간 및 연장)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시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의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이 변경된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의 변경시에는 변경된 항목만을 시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가 변경된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측정결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4조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협조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인증 받은 내용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효율(효율의 표시가 어려운 기자재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값) 변화없이 단순 부착물 또는 색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8호와 제10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에너지효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제조공장 또는 창고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8호와 제10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판매업소ㆍ제조공장ㆍ창고 또는 설치현장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효율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방법도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의 시료 및 시험수수료는 공단이사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 구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 일부 측정항목만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사후관리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취소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10조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고효율인증업자의 에너지효율 유지사항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효율인증업자가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동일하지 않은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하기 전에 고효율인증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부담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을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의 채취는 공단이사장이 실시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 ①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4.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7]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효율시험기관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발급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별표 2]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제①항 각 호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포함한 시험기관 운영실적보고서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고효율시험기관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고효율시험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의 장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또는 인증기준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세부 운용규정) ①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9 - 202호,2009.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증 일몰제품 품목제외) 인증실적이 없는 자동판매기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010 - 223호,2010.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이 고시에 의해 상향 조정된 인증기술기준에 대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추가된 기기보유에 관한 증빙자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제3조(인증제외 품목예고) 형광램프용고조도 반사갓은 2011년 1월 1일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서 제외한다.

제4조(인증유효기간) 제3조에 의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에서 제외되는 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품목 제외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 - 203호,2011.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멀티에어컨디셔너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력용변압기 및 고기밀성 단열창호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012 - 67호,2012. 3. 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 - 91호,2012.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LED 보안등기구, 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산업ㆍ건물용 기름보일러는 이 고시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2013년 4월 30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또한 이 규정 고시일 이전 직전규정에 의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3 - 3호,2013.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무정전전원장치는 이 고시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또한 이 규정 고시일 이전 직전규정에 의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3 - 165호,2013.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 35호,2014.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 149호,2014.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 250호,2014.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 263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해 인증기준이 조정된 원심식ㆍ스크류냉동기, 인버터, LED유도등, 항온항습기,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센서등기구, 고기밀성단열문,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의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다만, 기존 인증모델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개정된 인증기준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기한을 인증유효기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또한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험을 접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인증제외 기자재 예고)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열회수형환기장치,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LED교통신호등,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단상유도전동기, 환풍기, 수중폭기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램프용고조도반사갓,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산업ㆍ건물용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LED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하며, 신규인증 및 연장가능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 - 36호,2015.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 - 147호,2015.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해 인증기준이 조정된 LED가로등기구의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고시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다만, 기존 인증모델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개정된 인증기준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기한을 인증유효기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또한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험을 접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016 - 59호,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 - 194호,2016.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해 인증기준이 조정된 전력저장장치(ESS)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 - 105호,2017.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제외 품목예고) 컨버터내장형LED램프, 컨버터외장형LED램프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에서 제외하며, 신규인증 및 연장가능 유효기간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 - 168호,2017.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해 인증기준이 조정된 매입형 및 고정형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센서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의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고시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다만, 기존 인증모델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개정된 인증기준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기한을 인증유효기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험을 접수하여 고시 시행일 이후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

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고효율시험기관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해 품목이 조정된 매입형 및 고정형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센서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등기구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승계 지정하고,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의 고효율시험시관은 LED램프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승계 지정한다.

부칙 <제2018 - 125호,2018.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해 인증기준이 조정된 등기구의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고시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다만, 기존 인증모델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개정된 인증기준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기한을 인증유효기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험을 접수하여 고시 시행일 이후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018 - 244호,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해 인증기준이 조정된 펌프,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원심식 송풍기,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의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고시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다만, 기존 인증모델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개정된 인증기준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기한을 인증유효기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험을 접수하여 고시 시행일 이후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인증제외 품목예고) 원심식ㆍ스크류 냉동기 중 원심식 냉동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에서 제외하며, 신규인증 및 연장가능 유효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 - 10호,2020.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0 - 40호,2020. 3.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 - 68호,2021. 4.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 - 166호,2021.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스히트펌프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해 배출가스 농도가 인증기준으로 추가된 가스히트펌프의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별표 1]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제3조 관련)

기 자 재	적 용 범 위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kg/㎠} 이하의 것 또한 온수보일러는 2,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kg/㎠}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
2. 펌 프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
3. 스크류 냉동기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500USRT} 이하인 것
4. 무정전전원장치	1) 단상 :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으로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는 것 2) 삼상 :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 단,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지 않아도 됨
5. 인버터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의 것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가스, 기름을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2,466 ㎾ (2,121,000 ㎉/h), 정격냉방능력 2,813 ㎾ (800 USRT) 이하의 것
7. 원심식 송풍기	압력비가 1.3 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kPa 이하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이하,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로서, 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800mm까지에 적용하며,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기·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8. 터보압축기	압력비가 1.3 초과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를 초과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압축기

기 자 재	적 용 범 위
9. LED 유도등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
10.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 {30100kcal/h} 이하인 것
11. 가스히트펌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 능력이 23 kW 이상인 것
12. 전력저장장치 (ESS)	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단,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 시간 이상인 것
13.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사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 장치(전력량 인출 장치, 동기 접속 장치, 외부 릴레이 장치, 원격 제어 장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어전원은 AC 110 V ~ 220 V 및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 통신방식은 RS232C, RS485, 및 Ethernet 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이 8개 이상이고, 사용소비전력은 20 W 이하인 것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DC 50 V 이하의 LED 모듈(광원)

기 자 재	적 용 범 위
15.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보일러 내부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며 정격난방용량 200만Kcal/Hr이하, 급탕용량 200만Kcal/Hr이하인 것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냉동능력이 2,813 ㎾ (800 USRT)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KS R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18. 등기구	1) 실내용 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2) 실외용 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3) PLS등기구 1000 V 이하의 ISM 대역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700 W 또는 1000 W 등기구 4)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150W 이하의 등기구 5)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기 자 재	적 용 범 위
19. LED램프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컨버터를 포함 2)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컨버터내장형) 이중 캡 및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내장형 LED램프(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 대체형 LED램프)
20. 스마트LED조명	1) 스마트LED램프 AC 220 V, 60 Hz에서 유무선 통신(IR리모컨 제외)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광제어가 가능하고 일체형 LED 광원 및 KS C 7651에 규정된 베이스를 적용한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단, 150W 초과도 포함하고 별도의 아날로그 조광기로만 제어되는 제품은 제외) 2) 스마트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유무선 통신(IR리모컨 제외)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광제어가 가능하고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광원을 적용한 등기구(단, 별도의 아날로그 조광기로만 제어되는 제품은 제외) 3)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재실 또는 사물감지가 가능하고 조도 감지 센서가 포함되어 다음 필수 기능이 구현 가능한 조명제어시스템 ※ 필수 기능 : 재실 감지 또는 사물 감지, 조도 감지, 최대광속 설정기능, 시간대제어, 구역설정, 대체제어, 에너지모니터링, 원격 진단

[별표 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제4조제1항 관련)

1. 기자재별 측정항목 : 기자재에 따라 반제품 및 부품을 추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는 필수 측정항목임

(1) 산업 · 건물용 가스보일러

번 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구조 일반	O	*
2	부하 운전 성능	O	
3	정격 용량	O	*
4	증기 건도	O	
5	배기가스 성분	O	*
6	주위 벽 온도	O	
7	배기가스 응축수	O	*
8	소 음	O	
9	열효율	O	*
10	수압 시험	O	
비 고	성능검사면제 1. 기술기준에서 정한 같은 군내의 상위 용량압력의 보일러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았거나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 같은 군내 하위 용량·압력의 보일러는 성능검사 전항목을 면제한다. 2. 제1호와 같이 성능검사를 면제할 경우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이어야 하며 단위용량당 전열면적(㎡)이 증가하여야 한다. 단, 버너 등의 위치가 대칭구조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로 간주한다.		

(2) 펌 프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2	비고
1	규정 토출량	○	○	*
2	흡입 상태	○	○	
3	펌프(종합)효율	○	○	*
4	성능 허용오차	○	○	*
5	운전 상태	○	○	
6	내수압	○	○	
비 고	성능검사면제 성능검사를 면제할 경우는 - 동일한 형태 및 구조로 상사법칙*에 따라 예측한 성능값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상사법칙 : 기하학적으로 상사한 펌프가 토출량, 양정 등의 상사조건에 따라 제품의 성능도 상사함을 확인하기 위한 계산법 - 펌프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로 회전수만 변경되는 경우, KS B 6301의 회전수 환산을 통하여 토출량, 전양정, 축동력을 예측하여 계산한 성능값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동일한 형태 및 구조로 같은 임펠러를 사용하여 다단으로 구성되는 펌프는 최대단수 및 최소단수의 펌프가 각각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은 경우, 인증받은 최대 및 최소단수 범위내에서 계산식이 확인될 경우 성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펌프본체는 동일한 부품 및 구조이고, 임펠러의 외경만 가공하는 펌프는 최대 외경 및 최소 외경의 펌프가 각각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았거나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 인증받은 최대 및 최소 외경 범위내에서 성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단, 명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실제 외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스크류 냉동기

번 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구조 및 표시	○	*
2	냉동 능력	○	*
3	에너지효율	○	*
4	정격 전류	○	*
5	절연 저항	○	*
6	내전압	○	*
7	내압성 및 기밀성	○	*
8	냉수 입·출구 수온	○	*
9	냉수 유량	○	*
10	냉각수 입·출구 수온	○	*
11	냉각수 유량	○	*
비 고	성능검사면제 1. 기술기준에서 정한 같은 군내의 상위 용량의 스크류 냉동기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았거나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 같은 군내 하위 용량의 스크류 냉동기는 성능검사 전항목을 면제 2. 제1호와 같이 성능검사를 면제할 경우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이어야 하며, 냉매종류 및 유량, 냉매배관 구경, 증발기 및 응축기 열교환면적, 응축기 열교환방식, 과열도 및 과냉도 등을 제시하여 시뮬레이션한 성능값이 기 인증을 받은 용량의 성능값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4) 무정전전원장치

번 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표시	○	*
2	무부하 손실 시험(단상 적용)	○	*
3	효율 시험	○	*
4	저부하시 절체 시험(단상적용)	○	*
5	입력 역률시험	○	*
6	정·복전 및 부하급변 시험	○	*
비고	KS를 득한 제품은 위 시험항목만 시험 적용하고 KS를 득하지 못하는 제품은 KS C 4310의 전 항목과 위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인버터

번 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대상 인버터 및 전동기	○	*
2	출력 주파수 변동	○	
3	과부하 전류 내량	○	*
4	V/f 패턴	○	*
5	출력 전압	○	
6	발전 제동	○	
7	출력 전류 고조파 함유율	○	*
8	온도 상승	○	
9	효 율	○	*
10	온도 운전 내구성	○	*
11	재시동 운전 내구성	○	*
12	내 진 동	○	
13	보호기능	○	*
14	서지 내력 시험	○	
15	상용 주파 내전압	○	
16	절연 저항	○	*
비 고	성능검사면제 1. 기술기준에서 정한 같은 군내의 상위 용량의 인버터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았거나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 같은 군내 하위용량의 인버터는 전항목 측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때 형태 및 구조 확인을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기존의 성능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함 2. 제1호와 같이 성능검사를 면제할 경우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이며 기 인증을 취득한 상위 용량의 기능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신청업체에서 제시 및 선언한 성능값이 기 인증을 받은 같은 군내의 상위 용량의 성능값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번 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구조 및 표시	○	*
2	냉방 능력	○	*
3	통합성능계수(IPLV)	○	*
4	냉방성능계수(고위 발열량 기준)	○	*
5	난방 배기가스	○	*
6	연료 소비량	○	*
7	냉수 유량	○	*
8	절연 저항	○	*
9	내전압	○	*
10	안전장치 작동	○	*
비 고	성능검사면제 1. 기술기준에서 정한 같은 군내의 상위 용량의 직화흡수식 냉온수기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았거나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 같은 군내 하위용량의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측정항목의 전항목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정상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검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기존의 성능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제1호와 같이 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이어야 하며, 단위 용량당 전열면적(㎡)이 동일하거나 증가하여야 한다.		

(7) 원심식 송풍기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2	비 고
1	구 조	○	○	*
2	송풍기 전압효율	○	○	*
3	축동력	○	○	*
비 고	성능검사면제 1. 기술기준에서 정한 같은 군내의 하위 호칭의 원심식 송풍기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았거나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 같은 군내 상위 원심식 송풍기는 성능검사 전항목을 면제 2. 제1호와 같이 성능검사를 면제할 경우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이어야 하며 KS B 6311에 따라 송풍기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성능값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 KS B 6311 부속서A 상사법칙 : 송풍기 전압효율, 유량, 전압 및 동압, 정압, 정압효율, 동력 등의 상사조건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구조적으로 상사한 제품(기하학적 상사, 레이놀즈 상사, 마하수와 속도삼각형의 상사를 모두 만족하는 제품)이 성능도 상사한지 확인하기 위한 계산법. 단 기하학적 상사는 치수 공차가가 1 % 이하이어야 한다.			

(8) 터보압축기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2	비 고
1	구 조	○	○	*
2	종합효율	○	○	*
3	풍 량	○	○	*
4	종합효율 허용오차	○	○	*
비 고	성능검사면제 1. 기술기준에서 정한 같은 군내의 하위 용량·압력의 터보압축기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았거나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 같은 군내 상위 용량의 설비는 성능검사 전항목을 면제 2. 제1호와 같이 성능검사를 면제할 경우는 - 동일한 형태 및 구조로 기하학적인 상사법칙*으로 예측한 성능값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 기하학적 상사법칙 : 기하학적으로 상사한 터보압축기가 공기량, 절대압 등의 상사조건에 따라 제품의 성능도 상사함을 확인하기 위한 계산법 - 터보압축기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로 회전수만 변경되는 경우, KS B 6350의 회전수 환산을 통하여 공기량, 절대압, 축동력을 예측하여 계산한 성능값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9) LED 유도등

번 호	고효율 시험항목	#1	#2	#3	비 고
1	평균휘도	○	○	○	*
2	소비전력	○	○	○	*
3	수명가속	○	○	○	

(10) 항온항습기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고
1	구조 일반	○	*
2	표시치(Q_h, Q_c, P_h, P_c)	○	*
3	성능계수(EER, COP, C_H, C_D)	○	*
비 고	성능검사면제 1. 기술기준에서 정한 같은 군내의 상위 용량의 항온항습기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았거나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 같은 군내 하위 용량의 항온항습기는 성능검사 전항목을 면제 2. 제1호와 같이 성능검사를 면제할 경우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이어야 하며, 냉매종류 및 유량, 냉매배관 구경, 증발기 및 응축기 열교환면적, 응축기냉각방식, 과열도 및 과냉도 등을 제시하여 시뮬레이션한 성능값이 기 인증을 받은 용량의 성능값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11) 가스히트펌프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고
1	구조 및 일반	○	
2	성능 요구사항	○	*
3	성적계수	○	*
4	기밀성능	○	
5	절연저항	○	
6	연소성능(CO)	○	
7	배출가스(NOx 12모드값, CO 12모드값)	○	*
비고	*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필수 측정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한 측정을 검사서류 제출 시 생략할 수 있다. * 성능검사면제 1. 기술기준에서 정한 같은 군내의 상위 용량의 가스히트펌프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았거나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 같은 군내 하위 용량의 가스히트펌프는 성능검사 전항목을 면제 2. 제1호와 같이 성능검사를 면제할 경우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이어야 하며(가스엔진 및 압축기는 상위용량과 동일), 기술적 항목(냉매종류 및 유량, 냉매배관 구경, 증발기 및 응축기 열교환 면적, 과열도 및 과냉도, 엔진 배기량, 가스소비량 및 압축기 용량 등)을 포함한 기술검토서의 성능값(성적계수 등)이 기 인증을 받은 용량의 성능값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12) 전력저장장치(ESS)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효율측정	○	*
2	절연저항시험	○	*
3	절연내력시험	○	*

(13)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성능	○	*
2	소비전력	○	*
3	절연저항측정	○	*
4	상용주파내전압시험	○	*
5	뇌임펄스내전압	○	*
6	정전기내성시험	○	*
7	1) 무선주파 방사 내성 시험	○	*
8	나. Fast Transient Burst 내성시험	○	*
9	1) Surge 내성 시험	○	*
10	2) 무선주파 전도내성 시험	○	*
11	진동성 Surge 내성 시험	○	*
12	전자파장해시험	○	*
13	제어전원이상시험	○	*
14	온도특성시험	○	*
15	진동 및 충격, 지진 시험	○	*
16	내구성 시험	○	*
17	접점용량 시험	○	*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2	#3	#4	비고
1	내열성						별도 시편
2	내화성						별도 시편
3	보호 등급(IP코드)			○			*
4	입력전력				○	○	*
5	광출력	초기광속			○	○	*
		광효율			○	○	*
		광속유지율			○	○	*
6	종단 전압에 의한 광속 변동률			○			*
7	컨버터 입출력 효율 (입력전력, 출력전력)			○			*
8	온도순환시험		○				*
9	개폐(ON/OFF)시험		○				*
10	표시 사항		○				*
비고	-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 #1, #2 : 컨버터를 포함한 컨버터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수의 LED 모듈로 시험한다. - #3, #4 : LED 모듈 단품으로 시험한다.						

(15)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번 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구조 일반	○	*
2	부하 운전 성능	○	
3	정격 용량	○	*
4	배기가스 성분	○	*
5	주위 벽 온도	○	
6	소 음	○	
7	열효율	○	*
비고	성능검사면제 1. 기술기준에서 정한 같은 군내의 상위 용량 보일러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았거나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 같은 군내의 하위 용량의 보일러는 성능시험 전 항목을 면제한다. 2. 제1호와 같이 성능시험을 면제할 경우 동일한 형태 및 구조이어야 하며 단위용량당 전열면적(m^2)이 증가하여야 한다. 단, 버너 등의 위치가 대칭구조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로 간주한다.		

(16)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고
1	구조 일반	○	*
2	절연 저항	○	
3	내전압	○	
4	내압성 및 기밀성	○	
5	온도 및 유량점검 시험	○	
6	냉동능력 시험	○	*
7	구동 온수열 소비량	○	*
8	통합성능계수(IPLV)	○	*
비 고	성능검사면제 1. 기술기준에서 정한 같은 군내의 상위용량 중온수 흡수식냉동기가 성능시험 성적서를 받았거나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 같은 군내의 하위용량의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성능시험 전 항목을 면제한다. 2. 제1호와 같이 성능검사를 면제할 경우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이어야 하며 단위용량당 전열면적(㎡)이 증가하여야 한다.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효율시험	○	
2	정전압제어시 정기편차와 임의편차	○	
3	부하덤프 시험	○	

(18) 등기구

1) 실내용LED등기구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	*
2	역률		○	*
3	고조파 전류		○	*
4	상관색온도 및 연색지수		○	*
5	광학적특성	초기광속	○	*
		광효율	○	*
		광속유지율	○	*
6	표시 사항		○	*
비고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2) 실외용LED등기구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	*
2	역률		○	*
3	고조파 전류		○	*
4	상관색온도 및 연색지수		○	*
5	광학적특성	초기광속	○	*
		광효율	○	*
		광속유지율	○	*
6	표시 사항		○	*
비고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3) PLS등기구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	*
2	역률		○	*
3	고조파 전류		○	*
4	상관색온도 및 연색지수		○	*
5	광학적특성	초기광속	○	*
		광효율	○	*
		광속유지율	○	*
6	표시 사항		○	*
비고	1,2,3,4,5)는 100시간 에이징 후 측청, 6)은 시험전에 확인			

4)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	*
2	역률		○	*
3	고조파 전류		○	*
4	상관색온도 및 연색지수		○	*
5	광학적특성	초기광속	○	*
		광효율	○	*
		광속유지율	○	*
6	표시 사항		○	*
비고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5)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비 고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	*
2	역률		○	*
3	고조파 전류		○	*
4	상관색온도 및 연색지수		○	*
5	광학적특성	초기광속	○	*
		광효율	○	*
		광속유지율	○	*
6	표시 사항		○	*
비고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19) LED램프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2	비 고
1	램프전력		○		*
2	상관색온도 및 연색지수		○		*
3	광학적특성	초기광속	○	○	*
		광효율	○	○	*
		광속유지율	○	○	*
4	시스템효율		○		*
5	표시 사항		○	○	*
비고	* 4)는 LED 모듈전용공급용 컨버터 별도 제출 * 시험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2)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2	비 고
1	램프전력		○		*
2	램프전압		○		*
3	램프전류		○		*
4	상관색온도 및 연색지수		○		*
5	광학적특성	초기광속	○	○	*
		광효율	○	○	*
		광속유지율	○	○	*
6	표시 사항		○	○	*
비고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20) 스마트LED조명

1) 스마트LED램프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2	비 고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		*
2	역률	기준 역률	○		*
		최소 역률	○		*
3	고조파 전류		○		*
4	대기 전력		○		*
5	상관색온도		○	○	*
6	연색지수	R_a	○	○	*
		R_9	○	○	*
7	기준 광속		○	○	*
8	기준 광효율		○	○	*
9	광학적 플리커		○		*
10	조광 특성	최소 광효율	○		*
		소음	○		*
11	광속 유지율			○	*
12	상관색온도 제어	최소 상관색온도		○	-
		최대 상관색온도		○	-
		광속 변화율		○	-
13	표시사항		○	○	*
비고	상관색온도 제어 기능 측정은 해당 기능이 내장된 제품에 한해 시험한다.				

2) 스마트LED등기구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	#2	비 고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		*
2	역률	기준 역률	○		*
		최소 역률	○		*
3	고조파 전류		○		*
4	대기 전력		○		*
5	상관색온도		○	○	*
6	연색지수	R_a	○	○	*
		R_9	○	○	*
7	기준 광속		○	○	*
8	기준 광효율		○	○	*
9	광학적 플리커		○		*
10	조광 특성	최소 광효율	○		*
		소음	○		*
11	광속 유지율			○	*
12	상관색온도 제어	최소 상관색온도		○	*
		최대 상관색온도		○	*
		광속 변화율		○	*
13	표시사항		○	○	*
비고	상관색온도 제어 기능 측정은 해당 기능이 내장된 제품에 한해 시험한다.				

3)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번호	고효율 시험항목		1세트	비 고
1	재실 감지 또는 사물 감지		○	*
2	조도 감지		○	*
3	최대 광속 설정	연속 조광	○	*
		최대 광속 설정	○	*
		사전 설정	○	*
4	시간대 제어		○	*
5	구역 설정	개별 제어	○	*
		그룹 제어	○	*
6	대체 제어		○	*
7	사용자 인터페이스		○	*
8	에너지 모니터링		○	*
9	원격 진단		○	*
10	사이버 보안 (선택)		○	-
비고	- 시스템 인증을 위한 제출 시료에는 필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스마트LED조명기기는 최소 5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 사이버 보안은 해당 인증을 취득한 경우 인증서를 제출하고 표시사항에 반드시 기재한다.			

2. 측정 생략 기준

①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항목과 동일한 항목은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에서 정한 같은 용량구분 군내 기자재에 대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경우 하위용량의 기자재에 대한 측정을 전부 생략할 수 있다.

③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일부 사양만을 변경한 기자재를 추가로 인증받고자 할 경우 필수 측정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한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서 변경된 사양의 내역을 고효율시험기관에서 확인받아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필수 측정항목이라 할지라도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료의 수량

연번	품목명	시료의 수량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1
2	펌프	토출구경 80mm 이하=2 80mm 초과=1
3	스크류 냉동기	1
4	무정전전원장치	1
5	인버터	1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1
7	원심식 송풍기	2
8	터보압축기	2
9	LED 유도등	3
10	항온항습기	1
11	가스히트펌프	1
12	전력저장장치(ESS)	1
13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1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4
15	가스진공온수보일러	1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1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
18	등기구	1
19	LED램프	2
20	스마트LED조명	스마트LED램프 = 2 스마트LED등기구 = 2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 1세트
측정항목	ㅇ 기자재별 인증기술기준의 전 항목	

비고 1. 합격판정 개수 : 시험시료 중 불합격 개수가 없어야 함

2. 허용오차 범위 : 수치로 표시되는 항목은 기자재별 인증기술기준에서 정한 수치의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함

4. 기자재별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 범위 및 개요

1.1 적용 범위

a) 발생 열매에 따른 범위

① 증기 보일러

② 온수 보일러

b) 보일러 방식에 따른 범위

① 노통 연관식

② 수관식

③ 노통·수관 혼합식

④ 관류식

⑤ 입형식

⑥ 기 타

c) 폐열회수 방식 범위

① 미부착

② 공기예열기

③ 온수발생장치

1.2 인용 규격

다음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6205 육용강제 보일러의 열정산 방식

KS B 6233 육용강제 보일러의 구조

KS B 6204 육용 수관 증기보일러의 정격 용량

EN 92/42/EEC Council Directive on Efficiency Requirements for 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for Related Standards See TEST/92/42

ISO/TS 16528/2002 Registration of Codes and Standards to Promote International Recognition

1.3 용어 정의

a) 보일러 관련 용어

① Envelope Boundary : 보일러 효율 계산시 열정산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보 일러 및 그 부속 설비의 한계를 설정한 경계선을 말한다.

② 기준 공기 온도(Reference Air Temperature) : 보일러 효율을 산정함에 있어 열손실 및 부가 입열(Heat Credits) 계측의 기준이 되는 공기 온도를 말한다. 보일러의 열정산을 하려면 보일러 Boundary내로 출입하는 에너지의 기준점인 Zero Level이 먼저 확립되어야 하고, 이것이 기준 공기 온도가 되며 효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기준 온도에 대한 각국의 규정은 서로 상이하여 그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즉 ASME Code는 A/H 입구 공기 온도, ISO 및 BS는 Air Intake 입구 온도, DIN은 25℃(실내 온도) 또한 KS 및 JIS는 외기 온도로 규정하고 있다

③ 외기 온도(Ambient Air Temperature) : 기기의 주변 공기 온도로서 일반적으로 대기 온도를 말한다.

④ 입열, 출열, 순환열(Heat Input, Heat output, Circulating Heat) : 보일러 입열이란 그냥 입력이라고도 하며 보일러에 공급되는 모든 열량의 총계를 의미하며 연료의 화학적 연소열에다 공기, 가스, 물, 연료, 전력 등 외부로부터 보일러 Boundary로 들어오는 각종 유체가 가지고 들어오는 부가 입열을 더하여 준 것이다. 한편 출열 또는 출력이란 작동유체 또는 각종 유체가 보일러에서 유효하게 흡수한 열량을 말하며, 총 입열에서 보일러 손실을 빼준 것을 의미한다. 순환열이란 보일러에서 발생한 열의 일부를 빼내어서 이것을 보일러에 공급되는 열의 일부에 더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⑤ 건·습 가스 : 건 가스(Dry Gas)란 수분이 포함된 가스인 습 가스(Wet Gas)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수분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가스를 의미한다. 연소 생성물인 Fuel Gas 중에는 CO_2, SO_2, CO, O_2, N_2 등 각종 가스 류 외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습 가스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수분은 연료 중의 수소 연소시 생성되는 수분, 연료 자체의 수분, 연소용 공기 중의 수분과 Atomizing Steam의 증발에 의한 수분 등이 포함된다.

⑥ Heat Balance : 열정산, 열수지, 열평형이라고도 불리며 보일러를 출입하는 열의 양적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보일러에 공급된 열은 작동 유체나 동력 변환 장치에 전달되어 유효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실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열의 출입 관계를 나타낸 것이 Heat Balance이며, 여하한 경우에도 공급된 열과 유효 출열 및 손실을 합한 열 사이에는 등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b) LNG 관련 용어

① 몰 분율(Mole Fraction) : Gas Chromatograph로 분석한 LNG 각 성분 분자의

구성 비율로서 체적 %와 동일하며, 각 성분에 대한 몰 분율의 합은 100%가 된다.

② 가스 분석기(Gas Chromatograph) : 기체의 시료를 충진제가 들어있는 세관 중에 통과시켜 각 성분별로 분리, 정량 분석하는 가스 분석 장치로서 원소 분석은 되지 않고 구성 성분에 대한 몰 %만 분석된다.

③ 표준 상태 : 물리학상의 표준 상태는 0℃ 1기압(1.03323㎜/㎠)이나 가스 계산시의 표준 상태(Standard Condition)는 석유 제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15℃, 1기압이 기준이 된다.

④ 이상 기체(Ideal Gas) : 이상 기체란 원자 또는 분자 상호간의 거리가 아주 먼 상태의 기체로서 분자 상호간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고, 분자 자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전 부피에 대해 무시할 정도로 작은 기체를 말한다. 각종 가스에 관련된 기준 Data는 모두 이상 기체를 기준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제 가스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압축 계수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c) A/H 관련용어

① 공기 예열기(Air Heater) : 연소 가스의 보유열을 중간 열전달 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소용 공기에 전달하는 열교환기로서 재생식 공기 예열기, 관형 공기 예열기가 이에 포함된다.

② 공기 누설(Air Leakage) : 공기 예열기의 공기 측에서 가스 측으로 누설되는 공기량을 말하며, A/H 관련 각종 계산식에서는 이 누설 공기량은 A/H의 Heating Element를 거치지 않고 공기 입구 측에서 가스 출구 측으로 직접 누설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배기 가스 온도(Exit Gas Temperature) : 실제 측정되는 냉각되어진 출구가스 온도를 말한다.

④ 공기 온도 상승(Air Temperature Rise) : A/H 출구 공기 온도와 입구 공기 온도의 차로서 구하며, A/H에서의 공기 온도 상승을 의미한다.

⑤ 가스 온도 강하(Gas Temperature Drop) : A/H에서의 가스의 온도 강하를 의미하며, A/H 입구 가스 온도와 출구 가스 온도의 차로써 구한다.

2. 종류 및 구조

a) 종 류

① 용량 구분

- 증기보일러

구 분	정 격 용 량 (T/h)
1 군	0.1, 0.2, 0.3, 0.4
2 군	0.5, 0.6, 0.8, 1.0
3 군	1.5, 2.0, 2.5, 3.0
4 군	3.5, 4.0, 4.5, 5.0
5 군	6.0, 7.0, 8.0, 10.0
6 군	12.0, 15.0, 18.0, 20.0

- 온수 보일러

구 분	정 격 출 력 (10^3 × kcal/h)
1 군	50, 100, 150
2 군	200, 250, 300
3 군	350, 400, 500
4 군	600, 700, 800
5 군	900, 1,000
6 군	1,500, 2,000

② 압력 구분

- 증기보일러

구 분	최고 사용 압력 (kg/㎠)
1 군	3.5, 5.0, 7.0, 10.0

- 온수보일러

구 분	최고 사용 압력 (kg/㎠)
1 군	1.0, 3.5, 5.0, 7.0, 10.0

③ 등급 이외의 용량 및 압력 : 등급 구분 내에서 정한 이외의 용량 및 압력은 신청자의 신청에 따른다.

b) 구 조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제조검사 대상 보일러는 검사 결과 적합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 제조검사 대상 보일러는 검사결과 적합하여야 한다.

③ ①항 및 ②항 이외의 보일러는 KS B 6233 육용강제 보일러 구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B 6233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①항의 검사 기준에 따른다.

④ ③항의 보일러 중 구조 및 검사 기준에 적용할 수 없는 온수보일러는 구조상 강도가 각부의 내압 또는 외압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보일러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는 각 보일러의 특성에 맞게 구비하여야 하며, 원활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⑥ 배기가스가 응축되는 구조일 경우 지속적으로 배기가스 응축수를 중화시키는 적합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배기가스가 응축되어 접촉하는 온수 발생 장치의 열교환기 재료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16과 KS D 3577의 STS 316 TB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기가스가 응축되어 접촉하는 기타부분은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와 KS D 3577의 STS 304 TB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성능 시험

3.1 시험 일반

a) 부하 운전 성능

보일러의 시동 준비가 완료되고 보일러 장치가 가동되면 부하를 걸어서(이때 부하율은 30% 이상으로 하고 가능한 한 정격 용량에 가깝게 한다) 정상 운전 상태에서 이상 진동과 이상 소음이 없고 각종 기계 및 부속품의 작동이 원활한가를 확인한다.

b) 배기가스 성분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는 최종 배출구에서 측정하며 이외의 성분은 보일러 본체 출구에서 측정한다.

c) 주위 벽 온도

보일러 표면 온도를 측정한다. 단, 버너 연결부 및 연도는 제외 한다.

d) 배기가스 응축수의 수소 이온 농도

응축형 보일러의 초기 가동과 3.2 a)항 및 3.3 a)항의 시험조건에서 배출되는 응축수의 pH를 최종 방류구에서 측정한다. 다만, 저탕식일 경우에는 저탕조의 초기 pH를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e) 수압 시험

KS B 6233 육용강제 보일러의 구조에 따른다. 단, 2. b) ①항의 보일러로서 제조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f) 소 음

① 보일러 소음

보일러의 소음은 보일러 측면, 후면의 1.5m 떨어진 곳의 1.2m 높이에서 측정한다. 이 때 송풍기 정면은 측정하지 않는다.

② 송풍기 소음

송풍기의 소음은 송풍기 정면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다.

g) 시험조건

① 3.1 b)항 내지 3.1 f)항의 성능 시험은 3.2 a)항과 3.3 a)항의 정격 용량 및 시험 압력, 시험 온도에서 시험된다. 기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KS B 6205 육용 보일러의 열정산 방식에 따른다.

② 배기가스 열을 회수하여 온수를 발생하는 장치를 부착한 구조의 보일러는 열교환기 출구의 온수 온도를 입구 온도 보다 40±2℃ 높게 설정한다.

③ 시험 연료의 총 발열량은 KS M ISO 6974에 따르며 그 기준을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3.2 증기보일러

a) 정격 용량 및 시험 압력

증기보일러는 최고 사용 압력의 80% 이상에서 시험하며 이때 정격 용량 이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b) 증기 건도

포화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의 증기 건도는 교축 열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x = [\ \{\ 0.46 \times (t_1 - 99.09) + 638.81 - h'\ \}\ /v\ ] \times 100(\%)$$

여기에서, x : 증기 건도(%)

0.46 : 과열 증기의 평균 비열(㎉/kg℃)

t_1 : 건도계 출구의 증기 온도(℃)

99.09 : 1kgf/㎠(절대압) 포화 증기 온도(℃)

638.81 : 출구 측 포화 증기 엔탈피(㎉/kg)

h′ : 측정 압력에서의 포화수 엔탈피(㎉/kg)

v : 측정 압력에 대한 증발 잠열(㎉/kg, 압력은 절대 압력)

c) 효 율

효율은 정격 용량 및 정격 압력의 80% 이상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① 포화 증기 발생 보일러

$$n_s=[Gw\ \{x\ (h''-t_w) + (1-x)\ (h'-t_w)\}]/(Go \times Hh) \times 100(\%)$$

여기에서, n_s : 효율(%)

Gw : 급수량(증발량 : kg/h)

x : 증기 건도(%)

h″ : 측정 압력에서의 포화 증기 엔탈피(㎉/kg)

t_w : 급수 온도(℃)

(1-x) : 포화 수증기의 수분량

h′ : 측정 압력에서의 포화수 엔탈피(㎉/kg)

Go : 연료 소비량(Nm^3/h)

Hh : 연료의 총발열량(㎉/Nm^3)

② 과열 증기 발생 보일러 : KS B 6205에 따른다.

3.3 온수보일러

a) 정격 출력 및 시험 압력

온수보일러는 최고 사용 압력의 80% 이상에서 시험하며 이때 정격 출력 이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b) 시험조건

① 온수보일러에서 난방 전용과 난방·온수의 겸용인 경우는 동일 용량의 난방 에 대하여만 성능 시험하며 온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난방 출력 및 온수 출력 시험은 [그림1]과 [그림2]를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장치를 하여 시험한다.

③ 난방 환수 온수는 60±2℃가 얻어지도록 하며, 난방 환수구 온도와 난방 출구에서의 온도 차이는 20±2℃가 유지되도록 조절하여 안정된 때부터 실시한다.

④ 온수의 출구 온도는 급수 온도보다 35±2℃보다 높게 되도록 조절하여 안정된 때부터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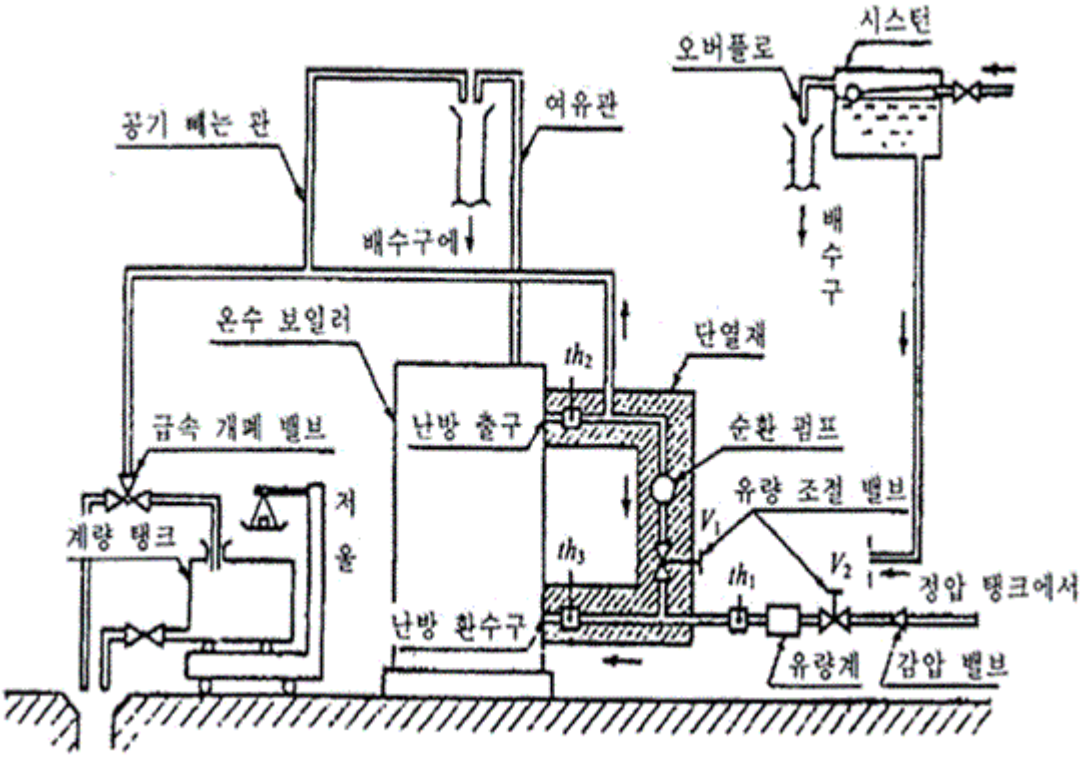

[그림 1] 대기 차단식 난방 성능 시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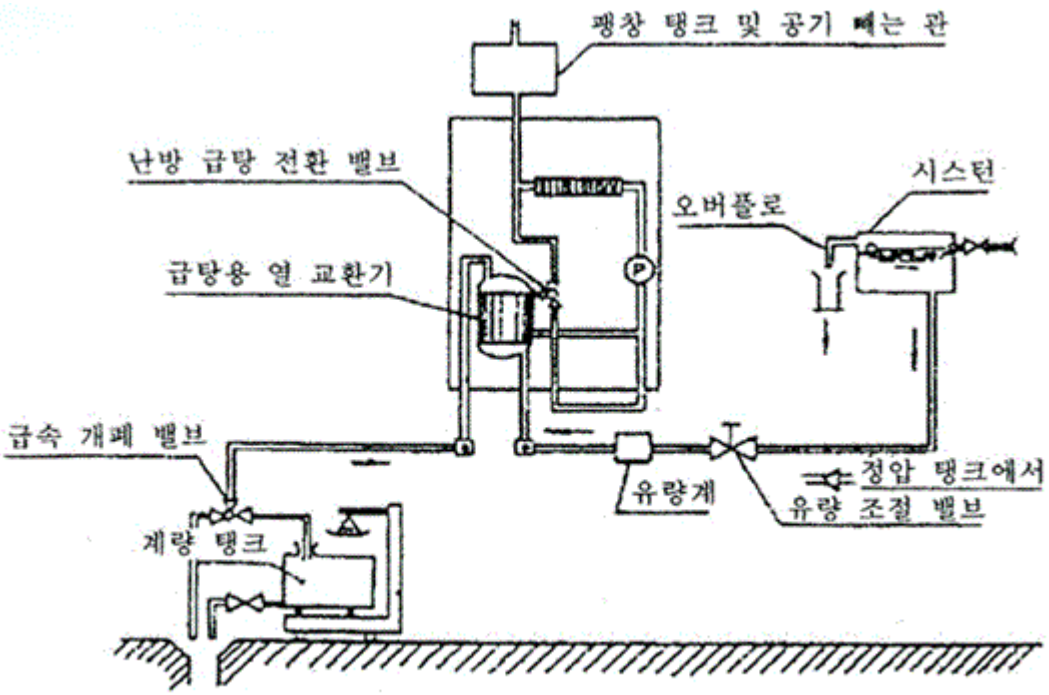

[그림 2] 온수 성능 시험도

c) 효 율

효율은 정격 출력 및 정격 압력의 80% 이상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n_w = \{ Gh \times Cp \times (th_2 - th_1) \ / \ (Go \times Hh) \} \ / \ \times 100(\%)$$

여기에서, n_w : 효율(%)

Gh : 난방(온수) 공급 수량(kg/h)

Cp : 물의 평균 비열(㎉/kg℃)

th : 출구 온도에서의 포화수 엔탈피(㎉/kg)

th_1 : 급수 온도에서의 포화수 엔탈피(㎉/kg)

Go : 연료 소비량(N㎥/h)

H : 연료의 총 발열량(㎉/N㎥)

4. 인증기술기준

a) 증기보일러

증기보일러는 3. 성능 시험에 의하여 측정하여 다음 <표 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증기보일러 인증기술기준

시 험 항 목			인증기술기준	적 용
부하 운전 성능			이상 없을 것	
정 격 용 량			용량의 100% 이상	
시 험 압 력			최고 사용 압력의 80% 이상	
증 기 건 도			98.0% 이상	
배기가스	CO		100ppm 이하	
	LNG	CO_2	10.1% 이상	
		O_2	3.3% 이하	
	LPG	CO_2	12.2% 이상	
		O_2	3.3% 이하	
주위 벽 온도			측정 주위 온도와 차 30℃ 이하	
배기가스 온도	온수발생장치 미부착		10t/h 이하 180deg℃ 이하 10t/h 초과 160deg℃ 이하	
	온수발생장치 부착		10t/h 이하 100deg℃ 이하 10t/h 초과 80deg℃ 이하	
배기가스 응축수			최종 처리 방류 PH 5.8 이상 8.6 이하	
소음	본 체		85dB 이하	
	송 풍 기		3t/h 이하 85dB 이하 3t/h 초과 95dB 이하	
열효율	온수발생장치 미부착		1t/h 이하 85% 이상	
			10t/h 이하 86% 이상	
			10t/h 초과 87% 이상	
	온수발생장치 부착		1t/h 이하 89% 이상	
			10t/h 이하 90% 이상	
			10t/h 초과 91% 이상	
수압 시험			이상 없을 것	2. b) ①항

* 열효율 표시는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가스공급사에서 하는 분석 결과를 참고한 진발열량을 기준으로 한 열효율을 병기할 수 있음.

b) 온수보일러

① 50만 ㎉/hr 이하 온수보일러

50만 ㎉/hr 이하 온수보일러는 3. 성능 시험에 의하여 측정하여 다음 <표 2>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2〉 온수보일러 인증기술기준

시 험 항 목			인증기술기준		적 용
부하 운전 성능			이상 없을 것		
정 격 출 력	난 방		용량의 100% 이상		
	급 탕				
시 험 압 력			최고 사용 압력의 80% 이상		
배기가스	CO		100ppm 이하		
	LNG	CO_2	10.1% 이상		
		O_2	3.3% 이하		
	LPG	CO_2	12.2% 이상		
		O_2	3.3% 이하		
주위 벽 온도			측정 주위 온도와 차 30℃ 이하		
배기가스 온도	온수발생장치 미부착		170deg℃ 이하		
	온수발생장치 부착		110deg℃ 이하		
배기가스 응축수			최종 처리 방류 PH 5.8 이상 8.6 이하		
소음	본 체		83dB 이하		
	송 풍 기		85dB 이하		
열효율	온수발생장치 미부착		난 방	84% 이상	
	온수발생장치 부착		난 방	88% 이상	
수압시험			이상 없을 것		2. b) ①항

* 열효율 표시는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가스공급사에서 하는 분석 결과를 참고한 진발열량을 기준으로 한 열효율을 병기할 수 있음.

② 50만 ㎉/hr 초과 온수보일러

50만 ㎉/hr 초과 온수보일러는 정격출력의 120% 이상의 입열량을 30분이상 연소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표 3〉 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3〉 온수보일러 인증기술기준

시 험 항 목			인증기술기준	적 용
부하 운전 성능			이상 없을 것	
시 험 압 력			최고 사용 압력의 80% 이상	
배기가스	CO		100ppm 이하	
	LNG	CO_2	10.1% 이상	
		O_2	3.3% 이하	
	LPG	CO_2	12.2% 이상	
		O_2	3.3% 이하	
주위 벽 온도			측정 주위 온도와 차 30℃ 이하	
배기가스 온도	온수발생장치 미부착		170deg℃ 이하	
	온수발생장치 부착		110deg℃ 이하	
배기가스 응축수			최종 처리 방류 PH 5.8 이상 8.6 이하	
소음	본 체		83dB 이하	
	송 풍 기		85dB 이하	
수압시험			이상 없을 것	2. b) ①항

5. 제품표시방법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e 마크) 및 제조자명을 각인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인증번호

b) 품명 및 형식

c) 정격 증발량 또는 정격 출력

d) 최고 사용 압력

e) 제조자

f) 제조년월

g) 전열 면적

h) 버너 품명 및 형식

i) 부속 장치

(2) 펌프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범위 및 개요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규격

다음에 규격은 관련 규격으로서, 이러한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0061 터보형 펌프 용어

KS B 6300 펌프의 분류

KS B 6301 원심펌프 ·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방법

1.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터보형 펌프(turbo pump, rotodynamic pump) : 펌프에서 유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밀폐 체적이 없고 대신에 임펠러 블레이드 또는 로터 블레이드라고 하는 회전 블레이드가 있고, 이 회전 블레이드에 의해 운동량(에너지)을 유체에 전달하는 펌프로서, 원심 펌프, 사류 펌프, 축류 펌프가 이에 포함됨

2)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로서, 임펠러로부터 송출되는 흐름이 주로 주축에 수직인 면내에 있는 펌프

3) 축류 펌프(Axial flow pump) :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로서, 임펠러로부터 토출되는 흐름이 주축과 평행한 펌프

4) 사류 펌프(Mixed flow pump) :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로서, 임펠러로부터 토출되는 흐름이 주축의 중심선을 축으로 하는 원추면 내에 있는 펌프

5) 축동력(Shaft power) : 펌프축에 전달되는 동력

6) 펌프효율(Pump efficiency) : 수동력과 축동력과의 비율

7) 입력전력(Input power) : 정상 전원상태에서 전력계의 눈금값에 따라 측정된 값

8) 펌프 종합효율(Pump overall efficiency) : 수동력과 입력전력과의 비율

9) 규정 토출량(Specified capacity) :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정해진 토출량, 일반적으로 최고효율 지점의 토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70%~110%에 해당되는 토출량으로 정의한다.

10) 수동력(Liquid power) : 펌프에 의해 단위시간에 액체로 주어진 유효 에너지

11) 전양정(Total head) : 위치수두, 압력수두와 속도수두의 총합
12) A효율(Maximum efficiency) : 효율곡선 위에서 가장 높은 효율
13) B효율(Guaranteed efficiency) : 제작자가 보증하는 효율
14) 흡입구경 및 토출구경(Suction bore & discharge bore) : 흡입구 및 토출구 플랜지의 호칭지름을 말한다.
15) 지상용 펌프(Ground pump) :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구동부와 펌프가 지상에 설치되는 형태의 펌프
16) 수중용 펌프(Submersible pump) :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구동부와 펌프가 수중에 설치되는 형태의 펌프
17) 모터 직결형(Internal motor) :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모터와 펌프가 동일축으로 연결된 형태
18) 모터 분리형(External motor) :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모터와 펌프가 커플링 같은 축이음으로 연결된 형태
19) 한쪽 흡입 펌프(Single suction pump) : 임펠러의 흡입구가 한쪽에만 있는 펌프
20) 양쪽 흡입 펌프(Double suction pump) : 임펠러의 흡입구가 양쪽에 있는 펌프
21) 보울(Bowl) : 안내깃 붙이 디퓨저를 갖는 토출 케이싱
22) 벌루트(Volute) : 임펠러 토출 측의 달팽이 형태로 된 케이싱 부분

2. 펌프의 종류

펌프의 종류는 KS B 6300(펌프의 분류) 4.2 터보형 펌프에 따른다.

2.1 용도별 펌프 분류

용도별 펌프 분류 방식은 KS B 6300(펌프의 분류) 4.2.1 용도별 분류에 따른다.

2.2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는 KS B 6300(펌프의 분류) 4.2.2 작동 원리에 따른 분류에 따른다.

2.3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는 KS B 6300(펌프의 분류) 4.2.3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에 따른다.

3. 성능시험

3.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4. 시험 조건에 따른다.

3.2 시험설비

시험설비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5. 시험 장치에 따른다.

3.3 시험항목

시험항목은 다음에 따른다. 단, 가압용 펌프의 경우 흡입 상태 항목을 제외하며 수중용 펌프(모터 직결형)의 경우에는 내수압 및 운전상태 항목을 제외한다. 또한, 토출구경이 80mm를 초과하는 펌프는 성능 허용오차 항목을 제외한다.

1) 규정토출량
2) 흡입 상태
3) 펌프효율 또는 펌프종합효율
4) 성능 허용오차
5) 운전상태(진동 및 소음, 베어링 온도)
6) 내수압

3.4 시험방법 및 절차

3.4.1 규정토출량

규정토출량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6.3 토출량에 따른다.

3.4.2 흡입 상태

흡입상태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6.6 흡입 상태에 따른다.

3.4.3 펌프(종합)효율

펌프(종합)효율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3 펌프 효율에 따른다.

3.4.4 운전상태

운전상태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4 운전 상태에 따른다.

3.4.5 내수압

내수압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9 내수압에 따른다.

4. 인증기술기준

4.1 규정토출량 범위

펌프의 규정토출량 범위는 최고효율 지점의 토출량을 기준으로 70% ~ 110%에 해당되는 토출량으로 한다.

4.2 흡입 상태

흡입상태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6.6 흡입상태에 따라 시험하고 10.8 흡입 상태에 따라 캐비테이션에 의한 양정 저하 및 이상음이 없어야 한다.

4.3 펌프효율 및 종합효율

2.3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지상용 펌프(모터 직결형, 모터 분리형)와 수중용 펌프(모터 분리형)의 경우에는 펌프효율을, 수중용 펌프(모터 직결형)의 경우에는 종합효율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표의 해당 토출량(명판 기재사항 또는 시험전에 지정한 토출량)에서 A효율 이상이어야 하며, 규정 토출량 범위에서는 B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4.3.1 지상설치용 펌프

4.3.1.1 WA-C2-G2 : 상수용 / 원심펌프 한쪽 흡입 벌루트 - 수직형 / 지상용 모터 분리형

WA-C1-G2 : 상수용 / 원심펌프 한쪽 흡입 벌루트 - 수평형 / 지상용 모터 분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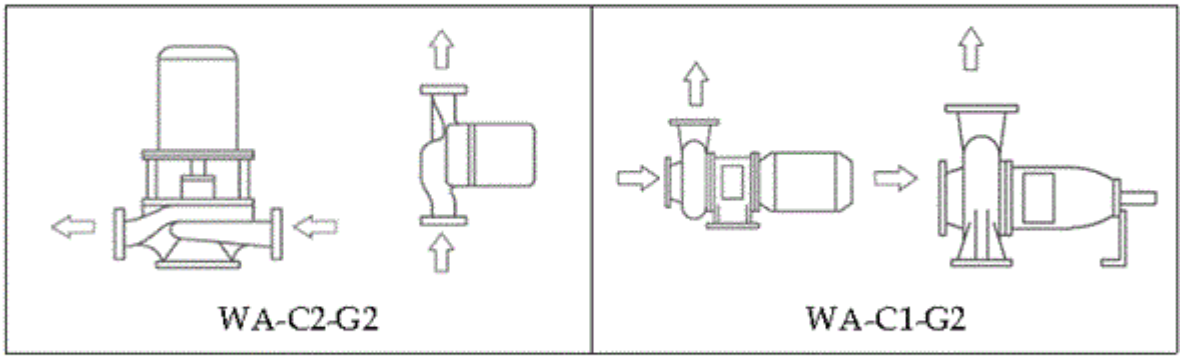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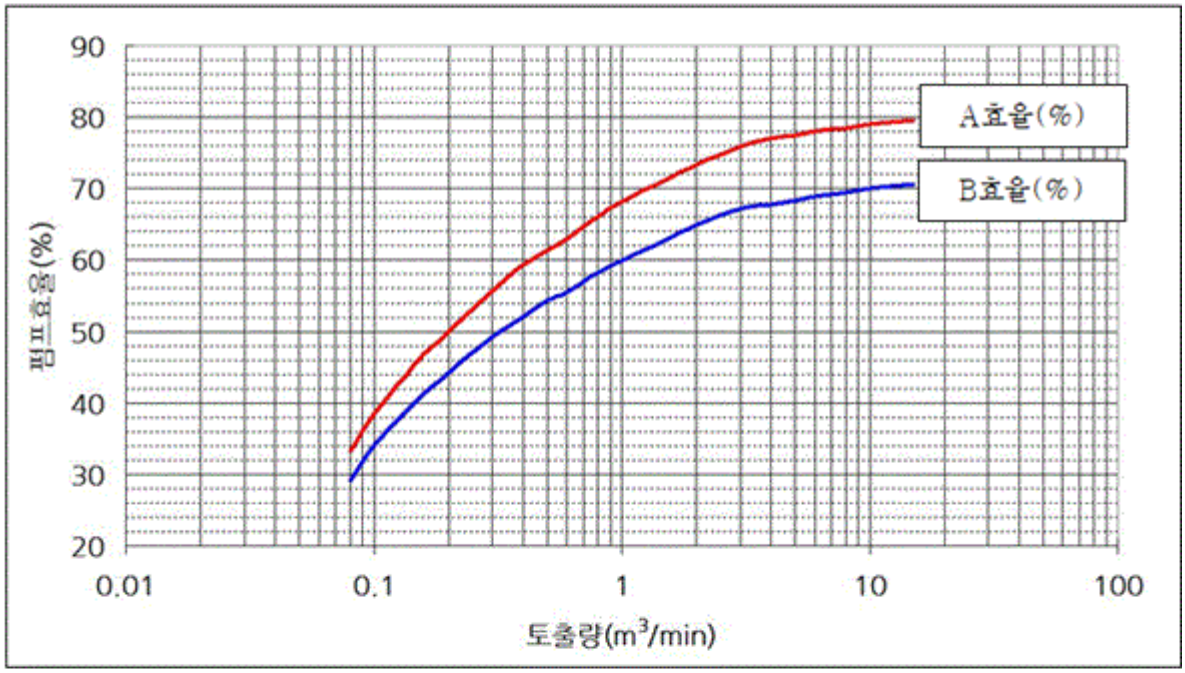

토출량(㎥/min)	0.08	0.1	0.15	0.2	0.3	0.4	0.5	0.6	0.8	1
A효율(%)	33.3	38.5	45.8	49.9	55.6	59.3	61.4	62.9	66.0	68.1
B효율(%)	29.1	34.2	40.3	44.2	49.3	52.1	54.3	55.4	58.2	59.9
토출량(㎥/min)	1.5	2	3	4	5	6	8	10	15 이상	
A효율(%)	71.2	73.3	75.9	77.0	77.5	78.0	78.5	79.0	79.6	
B효율(%)	62.7	65.0	67.2	67.8	68.3	68.9	69.4	70.0	70.6	

4.3.1.2 WA-C7-G2 : 상수용 / 원심펌프 다단 축 수직 분할형 / 지상용 모터 분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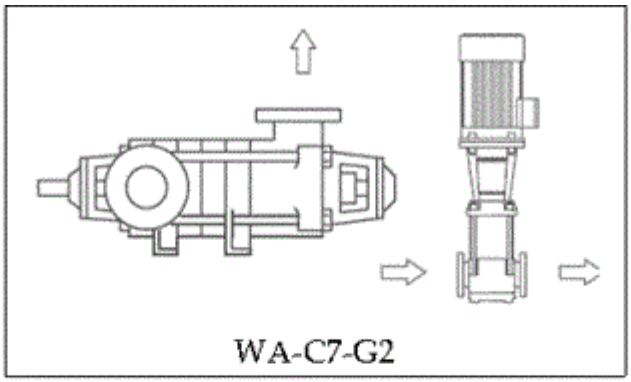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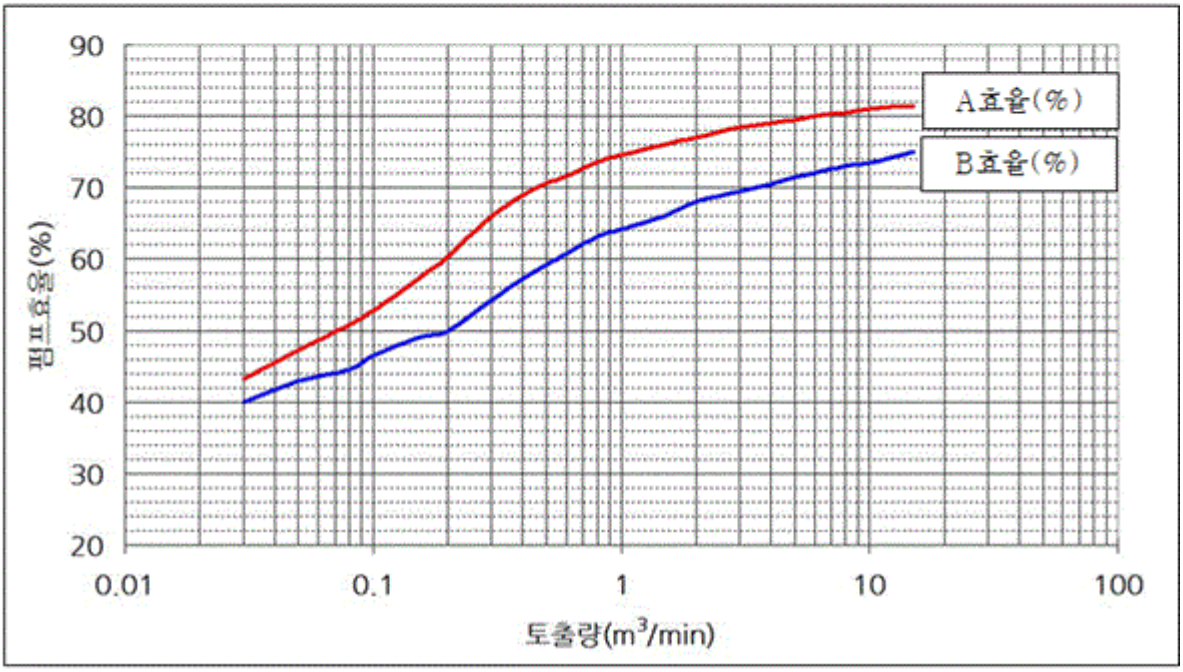

토출량(㎥/min)	0.03	0.05	0.08	0.1	0.15	0.2	0.3	0.4	0.5	0.6	0.8
A효율(%)	43.3	47.3	50.8	52.8	57	60.3	66	69	70.6	71.6	73.6
B효율(%)	39.9	42.9	44.5	46.5	48.9	50	54.2	57.2	59.2	60.7	63.2

토출량(㎥/min)	1.0	1.5	2.0	3.0	4.0	5.0	6.0	8.0	10.0	15.0 이상
A효율(%)	74.6	76	77	78.5	79	79.5	80	80.5	81	81.5
B효율(%)	64.2	66	68	69.5	70.5	71.5	72	73	73.5	75

4.3.1.3 WA-C5-G2 : 상수용 / 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 / 지상용 모터 분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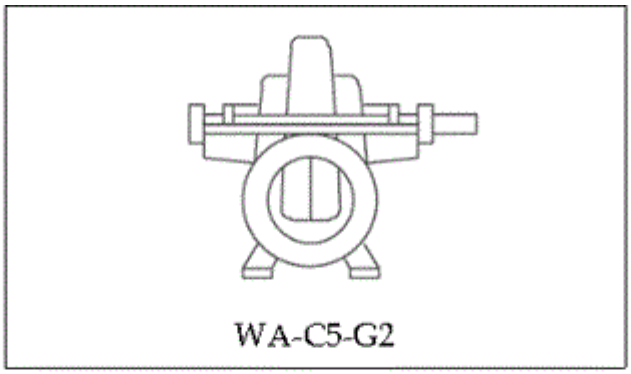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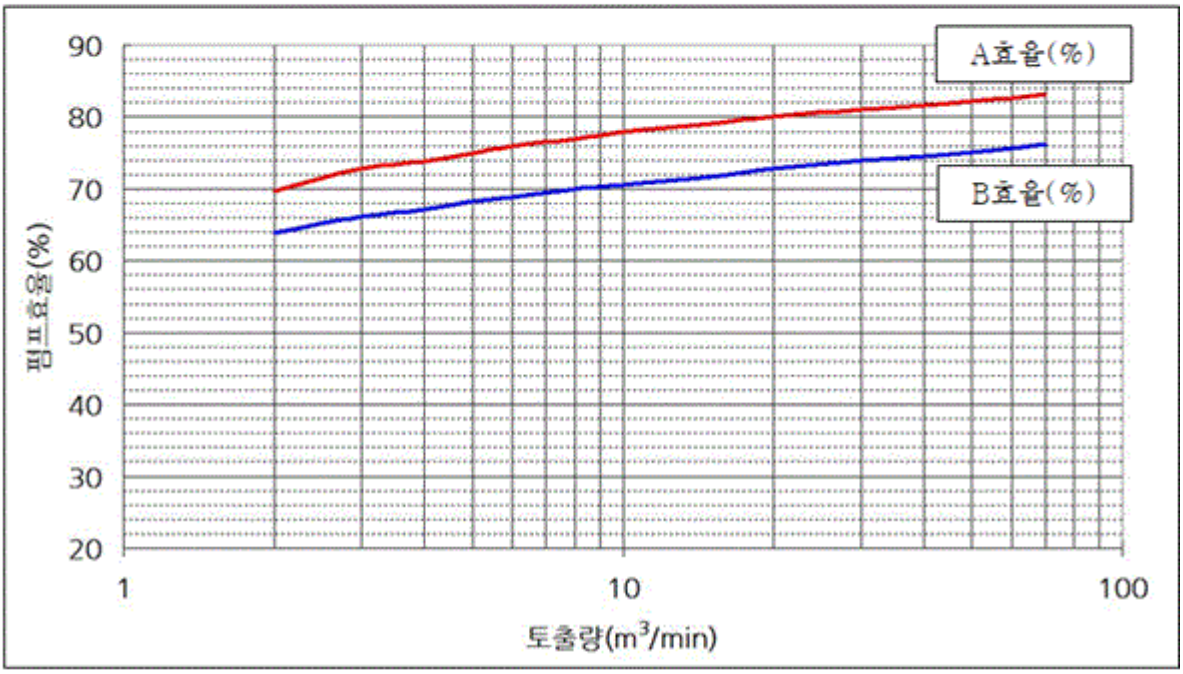

토출량(㎥/min)	2	3	4	5	6	8	10
A효율(%)	69.7	72.8	73.8	74.9	75.9	77	78
B효율(%)	63.8	66.1	67.2	68.3	68.9	70	70.6
토출량(㎥/min)	15	20	30	40	50	60	70 이상
A효율(%)	79	80.1	81.1	81.6	82.2	82.7	83.2
B효율(%)	71.7	72.8	73.9	74.5	75	75.6	76.2

4.3.2 수중용 펌프

4.3.2.1 WA-C1-S1 : 상수용 / 원심 펌프 한쪽 흡입 벌루트 - 수평형 / 수중용 모터 직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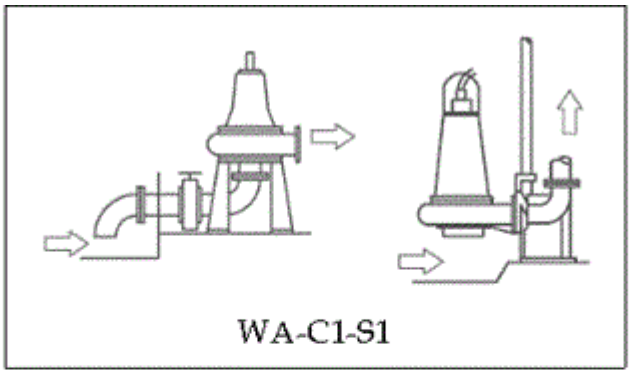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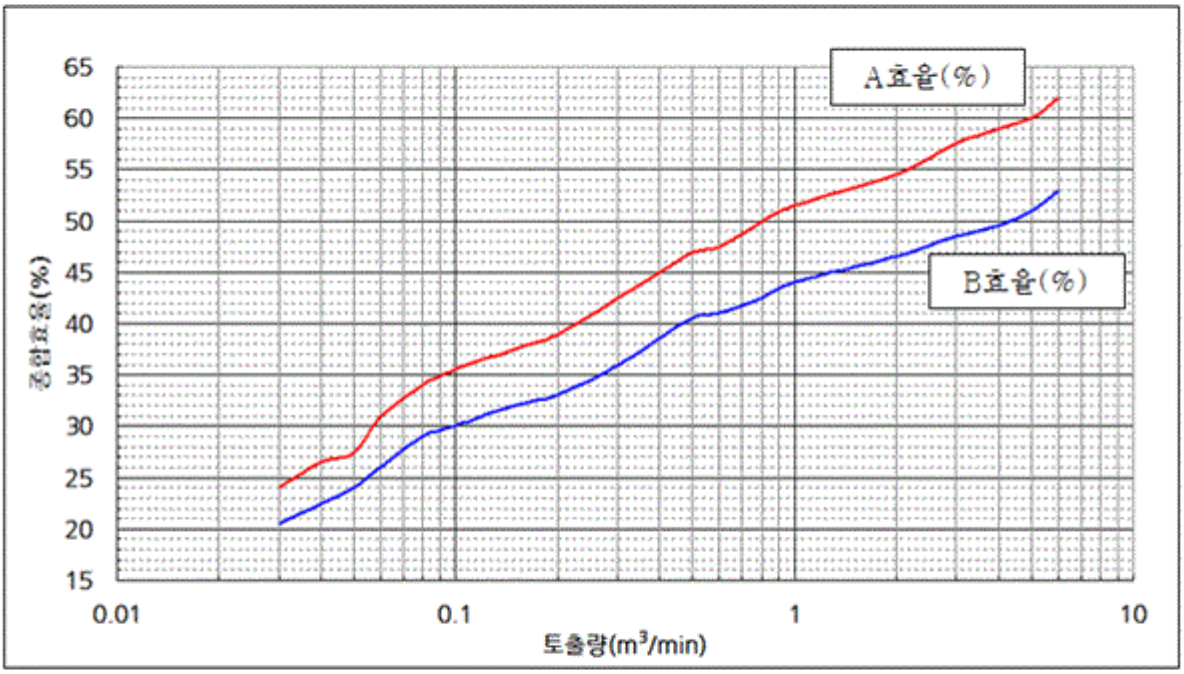

토출량(㎥/min)	0.03	0.04	0.05	0.06	0.08	0.1	0.15	0.2	0.3	0.4
A효율(%)	24.0	26.5	27.5	31.0	34.0	35.5	37.5	39.0	42.5	45.0
B효율(%)	20.5	22.5	24.0	26.0	29.0	30.0	32.0	33.0	36.0	38.5
토출량(㎥/min)	0.5	0.6	0.8	1.0	2.0	3.0	4.0	5.0	6.0	-
A효율(%)	47.0	47.5	50.0	51.5	54.5	57.5	59.0	60.0	62.0	-
B효율(%)	40.5	41.0	42.5	44.0	46.5	48.5	49.5	51.0	53.0	-

4.3.2.2 CO-C3-S1 : 공사용 / 원심펌프 한쪽 흡입 벌루트 - 논클로깅형 / 수중용 모터 직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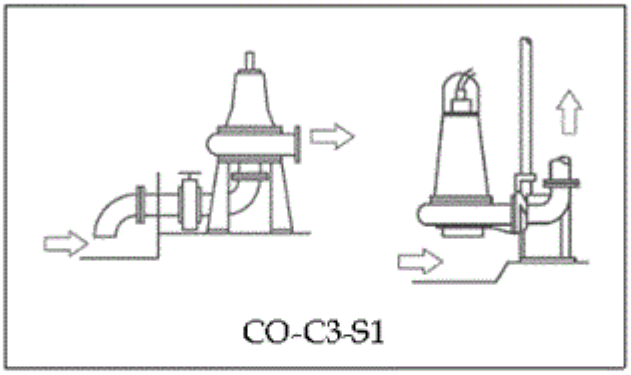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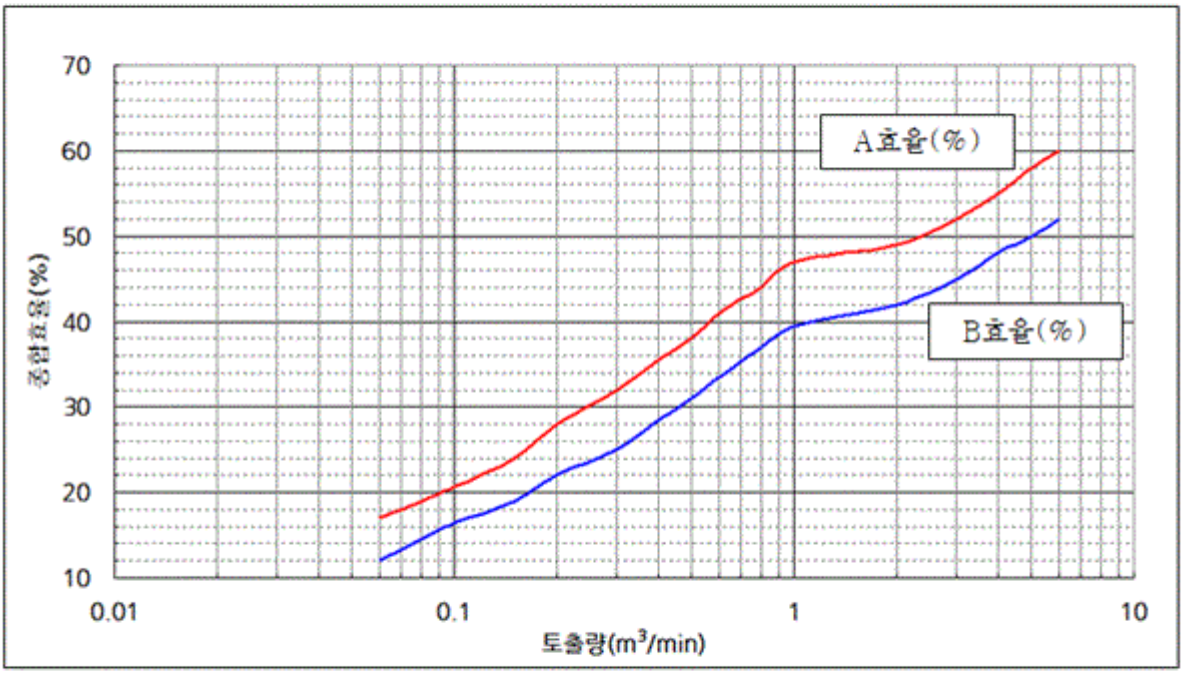

토출량(㎥/min)	0.06	0.08	0.1	0.15	0.2	0.3	0.4	0.5
A효율(%)	17.0	19.0	20.6	24.0	28.0	32.0	35.5	38.0
B효율(%)	12.0	14.5	16.5	19.0	22.0	25.0	28.5	31.0
토출량(㎥/min)	0.6	0.8	1.0	2.0	3.0	4.0	5.0	6.0
A효율(%)	41.0	44.0	47.0	49.0	52.0	55.0	58.0	60.0
B효율(%)	33.5	37.0	39.5	42.0	45.0	48.0	50.0	52.0

4.3.2.3 AG-M2-S1 : 농업용(배수 펌프) / 사류 펌프 보울 / 수중용 모터 직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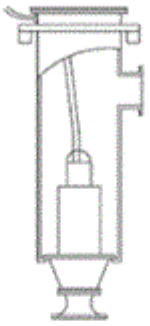

AG-M2-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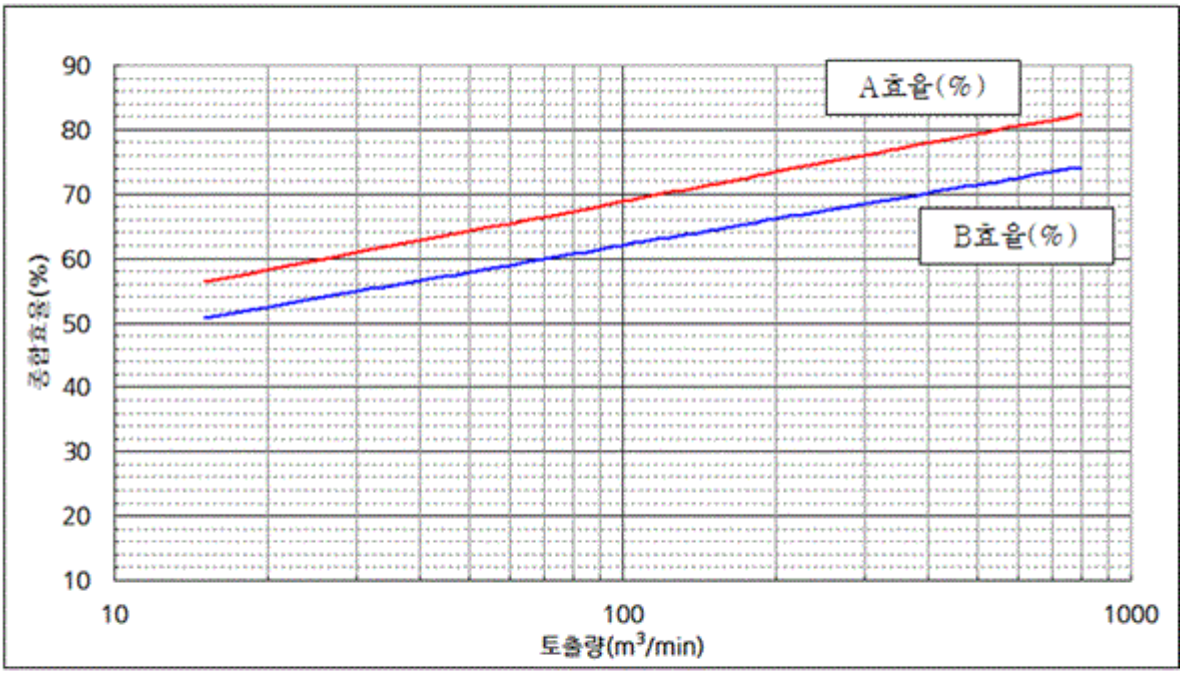

토출량(㎥/min)	15	20	30	50	70	90	110	140	170
A효율(%)	56.4	58.3	61.0	64.3	66.5	68.1	69.5	71.0	72.3
B효율(%)	50.8	52.5	54.9	57.9	59.9	61.3	62.6	63.9	65.1
토출량(㎥/min)	200	260	320	380	440	500	600	700	800 이상
A효율(%)	73.4	75.1	76.4	77.6	78.5	79.3	80.5	81.5	82.4
B효율(%)	66.1	67.6	68.8	69.8	70.7	71.4	72.5	73.4	74.2

4.3.2.4 AG-A1-S1 : 농업용(배수 펌프) / 축류 펌프 우물 / 수중용 모터 직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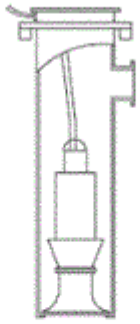

AG-A1-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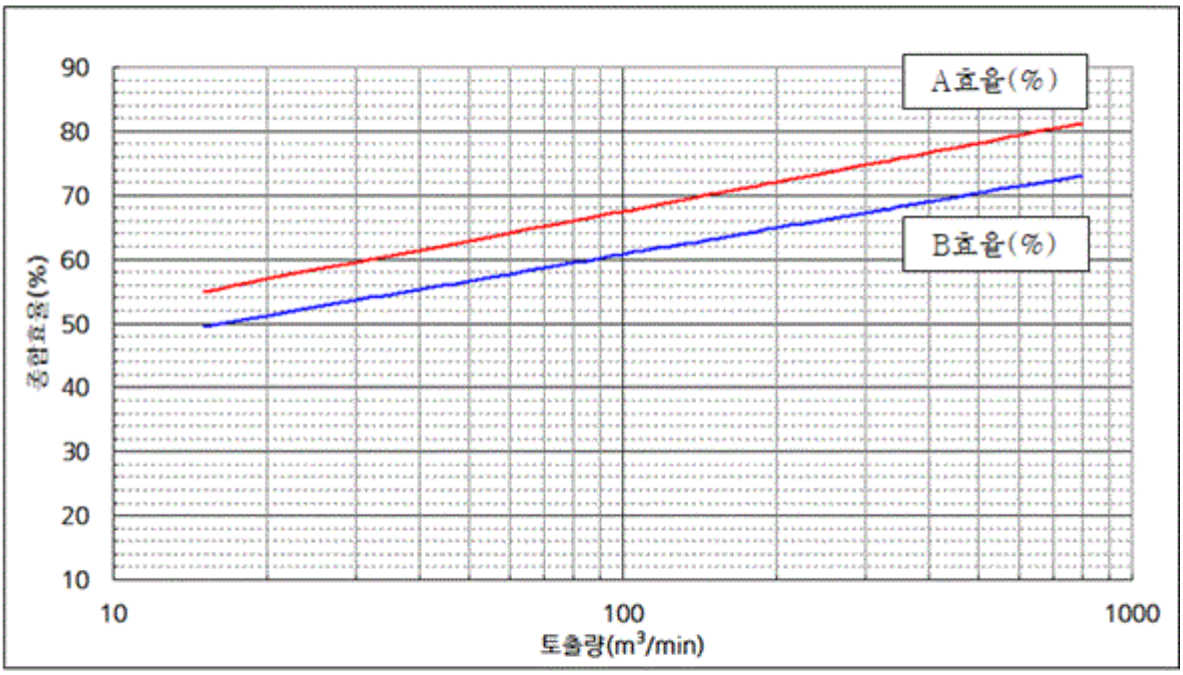

토출량(㎥/min)	15	20	30	50	70	90	110	140	170
A효율(%)	55.0	56.9	59.5	62.9	65.1	66.8	68.1	69.7	71.0
B효율(%)	49.5	51.2	53.6	56.6	58.6	60.1	61.3	62.7	63.9
토출량(㎥/min)	200	260	320	380	440	500	600	700	800 이상
A효율(%)	72.1	73.8	75.2	76.3	77.3	78.1	79.3	80.3	81.2
B효율(%)	64.9	66.4	67.7	68.7	69.6	70.3	71.4	72.3	73.1

4.4 성능 허용오차

각 시험품간의 규정 토출량 범위에서 허용오차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을 때 아래표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text{성능 허용오차} = \left(\frac{\text{시험품 중 높게 측정된 값}}{\text{시험품 중 낮게 측정된 값}} - 1\right) \times 100\ (\%)$$

구 분	펌프(종합)효율(%)	전양정(%)	입력전력(%)
주물형 임펠러	7.0	7.0	10.0
기 타	5.0	5.0	7.0

4.5 운전상태

4.5.1 진동 및 소음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4.1 진동 및 소음에 따라 운전이 원활하고 각 부품에 이상 진동, 이상음이 없어야 한다.

4.5.2 베어링 온도

베어링 온도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4.2 베어링 온도 표 1에 따른다.

4.6 내수압

내수압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9 내수압에 따라 물 누설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제품 표시방법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e마크) 및 다음 사항을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인증번호
2) 품명 및 모델명
3) 흡입구경, 토출구경, 단수 및 임펠러 외경
4) 전원(kW/V/A/P)
5) 펌프(종합)효율(%)
6) 제조년월
7) 제조번호

8) 제조자

9) 제조국

(주) 3) 임펠러 외경은 펌프의 동일한 유로부 부품 및 구조로 임펠러의 외경만을 가공하는 펌프의 경우만 표시한다.

(3) 스크류 냉동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 범위 및 개요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부속 냉매 배관 및 제어 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이 규격에 따라 측정한 냉동 능력이 1,512,000㎉/h {1,758.1㎾, 500USRT} 이하인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6275 워터 칠링 유닛

KS B 6365 냉동용 압축기의 성능 시험 방법

1.3 용어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정격 냉동 능력 : 냉동기를 냉동 능력 시험조건으로 운전하였을 때 순환하는 냉수에서 제거하는 열량(㎉/h{㎾, USRT})

b) 정격 냉동 소비전력 : 냉동기를 정격 냉동 능력 시험조건으로 운전하였을 때의 총 전력사용량(오일 펌프 및 제어에 소요되는 전력 포함, ㎾)

c) 에너지효율 : 냉동 능력당 냉동 소비전력(㎾/USRT)

d) 정격 수량 : 냉동기의 냉동 능력 시험을 할 때의 수량

e) 냉각수 : 수냉식 응축기를 통과하여 방열되는 물

f) 냉수 : 증발기를 통과하여 냉각되는 물

2. 종류 및 용량구분

a) 종류

① 기능에 따른 종류

- 냉각 전용형
- 냉각 가열 겸용형(냉각 또는 열펌프 가열을 각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② 응축기의 열교환 방식에 따른 종류

- 수냉식
- 공랭식

b) 용량구분

구분	냉동능력(kW)
1 군	150이하
2 군	150초과 400이하
3 군	400초과 750이하
4 군	750초과 1,200이하
5 군	1,200초과 1,758.1이하

3. 성능 시험

3.1 시험조건(냉동 능력)

a) 냉동 능력 측정을 위한 표준 정격 조건은 <표 1>과 같다.

<표 1> 표준 정격 조건

구 분	냉 수		냉 각 수	
	입구 수온[℃]	출구 수온[℃]	입구 수온[℃]	출구 수온[℃]
냉동 능력	12 ± 0.3	7 ± 0.3	32 ± 0.3	37 ± 0.3

[비고] 표 중의 허용차는 시험 중의 온도 변동 허용차이다.

b) 냉수 및 냉각 수량은 <표 1>의 조건 하에서 정격치의 ±5%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c) 시험은 정격 주파수, 정격 전압(그 공차는 각각의 정격의 ±2% 이내)으로 한다.

d) 수질은 부식성이 없고 불순물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e) 냉동 능력 시험시 측정코자 하는 값이 안정화 되었을 때 모든 값을 측정한다.

f) 기타 시험조건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KS B 6275를 따른다.

3.2 시험 설비

계기의 형식 및 정밀도는 <표 2>에 따라 교정기관이 검정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표 2> 계기의 형식 및 정밀도

	형 식	정 밀 도
온 도 계	액체 봉입 유리제 봉상 온도계, 열전대, 저항 온도계, 서어머스터 온도계	공기 온도 ±0.1℃ 냉·온수 온도 ±0.1℃ 냉매 온도 ±1℃
수 량 계	차압식, 전자(電磁)식 및 용적식	±2%(온 눈금)
냉매 압력계	부르돈 관식 및 전자(電磁)식	±2%(온 눈금)
전기 계기	지 시 계	±0.5%(온 눈금)
	적 산 계	±2%(눈금 읽기)

3.3 시험 방법 및 절차

a) 냉동 능력 시험

① 냉동 능력 시험은 3.1 시험조건(냉동 능력)에 따라 수행한다.

② 냉수 입·출구 온도 및 냉각수 입구 온도가 안정화된 후 기준 냉수 유량을 만족하는 경우 냉수 입·출구 온도를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3회 이상 측정한 후 이를 산술 평균 한다.

③ 냉동 능력(Qc) 및 에너지효율(η) 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격 냉동 소비전력(피상 전력×역률×효율)은 입력값 기준이며, 냉동기 시험시 직접 소비전력을 측정하거나 혹은 전동기 시험을 별도로 수행한 후 해당 측정 전류값에서의 역률값을 계산하여 구하며, 이때 전동기 효율값은 100%로 가정한다.

$$Qc = Mc \times Cc \times Rc \times (T_2 - T_1) \ / \ 3024$$

여기에서, Qc : 냉동 능력(USRT)

Mc : 냉수 유량 (㎥/h)

Cc : 냉수의 비열(1.002㎉/kg℃)

Rc : 냉수의 비중량(999.920kg/㎥)

T_2 : 냉수 입구 온도(℃)

T_1 : 냉수 출구 온도(℃)

$$\eta = \frac{\text{정격냉동소비전력}}{\text{정격냉동능력}}$$

여기에서, η : 에너지효율 (㎾/$USRT$)

b) 냉수 유량 측정 시험

냉동기가 안정화된 후 정격 운전 조건에서 냉수 유량계 지시치를 판독하여 평균 유량을 구한다.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3회 이상 측정한 후 이를 산 술 평균한다.

c) 절연 저항 시험

절연 저항 시험은 냉동 능력 시험 직전 및 직후에 440V 이하의 회로에서는 500V 절연 저항계, 3000V 이상의 회로에서는 1000V 절연 저항계로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d)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정격 전압이 100V인 회로에서는 1000V, 정격 전압이 200V 또는 220V인 회로에서는 1500V, 정격 전압이 400V 이상의 회로에서는 (2×정격전압 1000)V의 주파수 60㎐인 정현파에 가까운 전압을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에서 연속으로 1분간 실시한다.

e) 내압성 및 기밀성 시험

냉매 쪽의 내압성 및 기밀성은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에 따른 압력 시험에 따른다. 또한 물 쪽의 내압성은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에 따른 내압 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f) 정격 전류 시험

정격 전류 시험은 냉동 능력 시험에 있어 냉동 능력 측정값이 안정화 되었을 때, 냉동기의 운전 전류 값을 측정한다.

4. 인증기술기준

a) 냉동 능력

3.3의 a)에 따라 시험하여 정격 냉동 능력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b) 총 전력사용량

3.3의 a)에 따라 시험하여 정격값의 105% 이하이어야 한다.

c) 에너지효율

3.3의 a)에 따라 시험하여 <표 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 스크류 냉동기의 기준 에너지효율 값

에너지효율 [㎾/USRT]	기 준
	0.70 이하

d) 절연 저항

3.3의 c)에 따라 시험하여 그 값이 1㏁ 이상이어야 한다.

e) 내전압

3.3의 d)에 따라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f) 내압성 및 기밀성

3.3의 e)에 따라 시험하여 이상한 변형 및 누설이 없어야 한다.

g) 정격 전류

3.3의 f)에 따라 시험하여 정격 전류 이하이어야 한다.

5. 제품표시사항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e 마크) 및 제조자명을 각인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 인증마크
b) 제품명 및 모델명
c) 정격 냉방 능력
d) 전동기 정격 입력
e) 에너지효율
f) 사용 냉매
g) 정격 전류
h) 동력 전원
i) 최고 사용 압력
j) 냉수 입·출구 온도
k) 냉각수 입·출구 온도
l) 냉수 유량
m) 냉각수 유량
n) 제조년월
o) 제조번호
p) 제조자명
q) 제조국가

(4) 무정전전원장치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종 류

1) 출력전압 구분

① 단상 : 220V에 한한다. 단, 입력이 삼상이라도 출력이 단상일 경우는 단상으로 본다.

② 삼상 : 3상 3선식 : 380V, 3상4선식 : 380V/220V

2) 정격 용량

① 단상 : 50 kVA 이하

② 삼상 : 300 kVA 이하

2. 성능

1) 무부하 손실은 다음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단상만 적용)

<표-1> 무부하 손실 기준값

정격용량 (kVA)	1 이하	1초과 2이하	2초과 3이하	3초과 5이하	5초과 7.5이하	7.5초과 10이하	10초과 15이하	15초과20이하	20초과 30이하	30초과 50이하
무부하손실 (W)	50	70	100	110	120	140	200	250	350	400

2) 정격용량별 효율

효율은 정격부하(100%) 및 50% 부하의 각각 종합효율을 측정한다. 이때 출력 역률은 단상 : 0.8, 삼상: 0.99 이상으로 하고 각 효율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① 단상

<표-2> 단상 효율 기준값

정격용량(kVA)	1이하		1초과 5이하		5초과 20이하		20초과 30이하		30초과 50이하	
부하율(%)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효 율(%)	81	75	85	84	88	86	92	90	92.5	90.5

② 삼상

<표-3> 삼상 효율 기준값

정격용량(kVA)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75이하		75초과 150이하		150초과 300이하	
부하율(%)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효 율(%)	88	86	92	90	92.5	90.5	93	91.5	94	93

3) 저부하시 절체 (단상만 적용)

① 교류 무정전 전원장치가 동작 중에 사용부하량이 다음 기준값 이하로 될 때, 무정전 전원장치가 정지되고(인버터 회로 동작정지) 상용전원으로 절체되어야 한다.

② 사용부하량이 다음 기준값보다 상승되거나, 정전이 발생되면 즉시 인버터가 가동되어 정격전압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동작조건은 과도전압이 정격전압의 ±8% 이내, 응답속도 시간은 4 msec 이내이어야 한다.

④ 허용범위 : 사용부하량의 7.5kVA 이하는 ± 30 %, 7.5kVA 이상은 ± 20 %

<표-4> 저부하 절체의 사용부하량 기준값

정격용량 (kVA)	1 이하	1초과 2이하	2초과 3이하	3초과 5이하	5초과 7.5이하	7.5초과 10이하	10초과 15이하	15초과20이하	20초과 30이하	30초과 50이하
사용부하량 (W)	100	180	240	350	450	500	750	1000	1500	2000

4) 입력 역률 시험

입력 측을 기준으로 단상일 경우는 0.8 이상, 삼상일 경우는 0.85 이상이어야 한다.

5) 정· 복전 및 부하급변 시험

① 정· 복전시

교류 무정전 전원장치가 동작 중에 정격 100 % 부하시 순간 정전이 되었을 때와 복전 되었을 때 정격전압에서 각각 과도전압이 정격전압의 ±5% 이내, 응답속도시간은 20.0 msec 이내이어야 한다.

② 부하 급변시

교류 무정전 전원장치가 동작 중에 정격 100 % 부하에서 50%로 하강 할 때와 50%에서 100%로 상승 할 때 정격전압에서 각각 과도전압이 정격전압의 ±5% 이내, 응답속도시간은 20.0 msec 이내이어야 한다.

6) KS를 득한 제품은 위 시험항목만 시험 적용하고, KS를 득하지 못하는 제품은 KS C 4310의

전 항목과 위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험방법

KS C IEC 62040-3에 따른다.

(5) 인버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범위 및 개요

1.1 적용범위

KS C 4202에서 규정한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에 대해 가변속으로 운전이 가능한, 팬, 펌프, 블로어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1.2 인용 규격

다음의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90 저압 가변 주파수용 교류 인버터
KS C IEC 60034-1 회전기기－제1부 : 정격 및 성능
KS C IEC 60664-1 전압기기의 절연 협조-제1부 : 원리,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068-2-6 환경시험 - 제2-6부:시험-시험Fc:진동(정현파)

1.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C 4290, KS C 4202, KS C IEC 60034-1 의 규격에 따른다.

2. 종류 및 구분

2.1 전압에 따른 구분

(1) 3상 220V
(2) 3상 440V

2.2 용량에 따른 구분

구 분	용량구분(kW)
1군	0.1 이상 ~ 7.5 이하
2군	7.5 초과 ~ 15 이하
3군	15 초과 ~ 22 이하
4군	22 초과 ~ 37 이하
5군	37 초과 ~ 55 이하
6군	55 초과 ~ 75 이하
7군	75 초과 ~ 110 이하
8군	110 초과 ~ 160 이하
9군	160 초과 ~ 220 이하

3. 성능 시험

3.1 대상 인버터 및 전동기

KS C 4202(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에서 규정한 유도전동기에 대해 가변속으로 운전시키고 팬, 펌프, 블로어 등 저감토크 부하용인버터로서의 기본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3.2 입력 교류 전압 허용 변동과 허용 출력 주파수

정격 입력 주파수에서 입력 교류 전압이 정격치의 ±10% 범위 내에서 변화하여도 출력 주파수의 변동은 정격치의 ±0.5%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과도상태에서의 변동은 정격 입력 주파수에서 입력교류 전압이 정격치의 ±20%(1.5초) 변화하여도 출력주파수의 변동은 정격치의 ±0.5 이하이어야 한다.

3.3 과부하 전류 내량(耐量)

정격 출력 전류의 120%에서 1분 동안 전류 내량을 가져야 한다. 단, 그때의 전동기 토크는 규정하지 않는다.

3.4 V/f 패턴

정토크 영역에서, V/f 패턴은 2승저감 패턴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저속 영역에서 토크 보상이 가능해야 하고 기저 주파수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5 출력 전압

기저 주파수에서 출력 전압의 크기를 50%와 100% 범위 내에서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6 발전 제동

발전 제동이 요구되는 부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동저항 연결단자, 또는 제동저항과 제동 유닛트(unit)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조건적으로 발전제동 모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3.7 출력 전류 고조파 함유율

정격 출력전류에 포함되는 고조파의 함유율(i_{THD})은 최대출력주파수 에서 10% 이하이어야 한다.

3.8 온도상승

정격 부하 조건에서 인버터를 포화시킨 후, 열이 많이 발생하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 콘덴서, 구동소자 등에 대해 온도를 측정할 때 다음과 같이 온도 상승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버터 항목별 온도 상승 기준]

품 명 및 부 품		온도 상승한도 (deg)
권 선	A종	55
	E종	70
	B종	80
	F종	105
	H종	125
외 함		30
IGBT, DC_Link 콘덴서, CPU		개별 부품의 최대 허용 온도의 80%를 넘지 않아야 함.

주) 주위온도 최대 40℃ 이하 조건에서 시험

3.9 효율

정격 입력 전압, 정격 부하조건에서 인버터의 효율은 다음과 같이 만족해야 한다.

구 분	효 율
0.1㎾ 이상 ~ 7.5 ㎾ 이하	96% 이상
7.5㎾ 초과 ~ 220 ㎾ 이하	97% 이상

3.10 온도에 따른 운전 내구성

인버터 장치는 주위온도 -10℃ ~ 40℃에서 인버터의 전 주파수범위에서 성능에 이상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11 재시동 및 운전 내구성

정격 부하 조건에서, 정격 속도까지 올린 후 정지시키는 반복 운전 패턴으로 운전하였을 때 5회 이상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3.12 내진동

인버터의 전후, 좌우, 그리고 상하 방향에 다음과 같이 제시한 조건으로 진동을 인가하였을 때 나사의 풀림과 부품의 이탈 등 각부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내진동 시험 기준]

진동 주파수	진 동 폭	진 동 시 간
50㎐	1㎜	1 분

3.13 보호기능

3.13.1 과전류 보호기능

출력전류를 변화시켜 설정치를 넘었을 경우 출력전류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3.13.2 과전압 보호 기능

직류전압을 변화시켜 설정치를 넘었을 경우 출력전압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3.13.3 부족전압 보호 기능

직류전압을 변화시켜 설정치 이하로 내렸을 경우 출력전압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3.13.4 과열보호

주위 또는 부품의 온도가 설정치를 넘었을 경우 입력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3.13.5 단락 전류 보호

정격 부하에서 운전되는 조건에서 전동기로 인입되는 3개의 전원선 중 임의의 2선을 단락시켰을 때에 인버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3.14 써지 내력시험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다음 값에 따라 인가했을 때 어떠한 동작에도 이상 (오동작, 소자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써지 시험 전압레벨]

인가방법 (인가 위치)	시험레벨 (인가전압)	조합파발생기 전원임피던스 (써지발생장비조건)	교류입력의 위상
정상모드 (선간)	1 kV	2 Ω	최대치를 나타내는 위상에 써지 인가
공통모드 (선-대지간)	2 kV	12 Ω	

써지 발생 장치 사양 Combination Wave(IEC1000-4-5, IEEE Std. C62.45-1992)	최대개방전압 (1.2/50μs)	20kV
	최대단락전류 (8/20μs)	10kV
	전원임피던스	2Ω, 12Ω
	시험 교류 전원	단상, 3상 가능

3.15 상용 주파 내전압

2kV, 60Hz를 써지 내력 시험 규격에 규정된 인가부위에 1분간 인가시 절연파괴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16 절연 저항

무전원 상태에서 샤시와 입력전원 단자 사이에 DC500V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50MΩ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장치

시험용 측정 기기 : 전력분석기와 다이나모메터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정밀도를 구비한 계측기를 이용하여 인버터를 시험한다.

[측정장비사양]

전력분석기 (Power Analyzer)	전압 정밀도 (45㎐ ~ 1㎑)	±0.2% 이상
	전류 정밀도 (45㎐ ~ 1㎑)	±0.2% 이상
	Power 정밀도 (45㎐ ~ 1㎑)	±0.2% 이상
	Fast Fourier Transform 가능	
다이나모메터	토크센서 정밀도	± 0.2% 이상
	부하	IEEE 112 규격에 따라 전동기 효율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임의 부하조건으로 운전이 가능해야 함.

5. 시험방법

5.1 평가 시험장치 및 시험용 측정기기

평가 시험장치는 다음과 같이 인버터와 전동기를 다이나모 시스템에 연결한 후에 전력분석기(power analyzer)와 전압조정기(AVR), 항온항습기, 진동발생장치, 써지발생장치, AC내전압시험기, 그리고 절연저항측정기를 구비하여 시험 장치를 구축한다. 특히 인버터 외함은 반드시 접지를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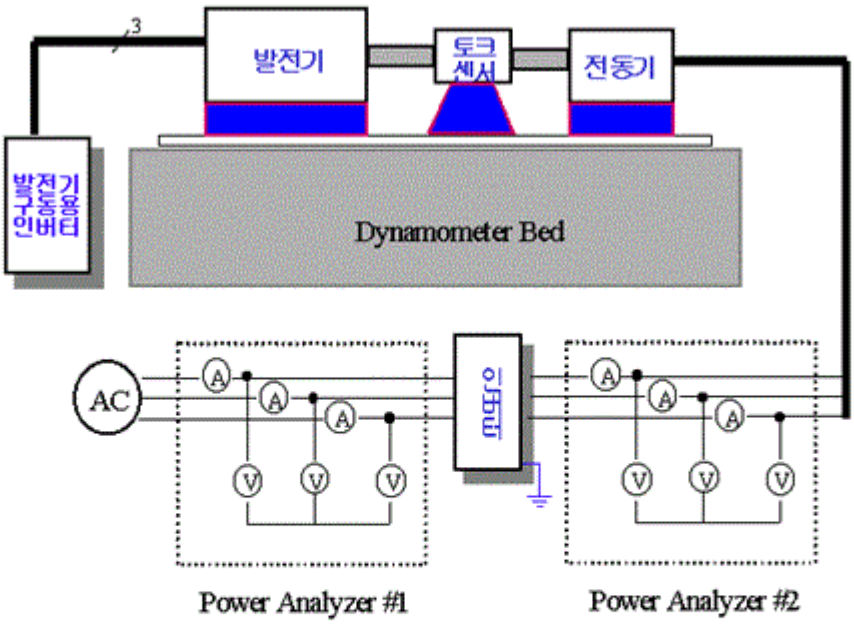

[그림1. 인버터 평가 시험 장치]

5.2 시험 방법

5.2.1 대상 인버터 및 전동기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를 대상으로 하는 범용 인버터에 대해 개루프(open loop) 방식으로 가변속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5.2.2 입력 교류 전압 허용 변동과 허용 출력 주파수

입력 교류 전압을 정격의 90%와 110%를 인가했을 때 출력 주파수를 측정하여 정격 입력 전압 인가시의 출력주파수와 비교하여 변동률을 측정한다.

5.2.3 과부하 전류 내량

정격 출력 전류의 120%에서 운전되도록 전동기의 부하 조건을 설정한 상태에서 1분동안 운전한 다음, 100% 부하 조건에서 운전시켰을 때 정상적인 운전이 되는지 확인한다.

5.2.4 V/f 패턴

V/f 패턴은 2승 저감 패턴이 제공되는지를 정격 속도의 50%, 75%, 100% 지점에서 출력 전압을 측정하여 확인한다. 기저주파수를 변경하였을 때 전동기가 정해진 속도로 운전되는지 속도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5.2.5 출력 전압

기저 주파수에서 출력 전압의 크기를 정격 전압의 50%와 100%사이에서 임의로 설정한 후, 운전시켰을 때 정해진 전압이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5.2.6 발전 제동

제동 저항 또는 제동저항과 제동 유닛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단자가 준비되어 있으며 발전제동이 되는지 확인한다.

5.2.7 출력 전류 고조파 함유율

최대운전 주파수에서 출력전류에 포함된 고조파 함유율을 측정하여 10%가 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2.8 온도상승

정격 부하 조건에서 인버터를 포화시킨 후 IGBT, DC_Link 콘덴서, 그리고 CPU의 온도를 측정하였을 때 표1에서 제시한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단, 시험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열이 많이 발생되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와 콘덴서 등에 대해서는 온도 상승 한도를 알 수 있도록 제품사양서를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2.9 효율

정격 입력 전압, 정격 부하조건에서 입력전력 대 출력전력의 비를 계산하여 구한다. 이때의 효율은 다음 식으로 결정한다.

*인버터 장치의 효율(%) = 출력 전력 / 입력 전력 × 100

5.2.10 온도에 따른 운전 내구성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10℃와 40℃로 각각 30분 동안 온도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전동기의 기동특성과 가변속 제어특성을 유지하는지 인버터를 확인함으로써 정상 여부를 판정한다.

5.2.11 재시동 및 운전 내구성

정격 부하 조건에서, 그림2와 같이 12분 운전 패턴을 5회 반복 수행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속도 제어가 되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정속 이라는 것은 최대 운전주파수에 상당하는 전동기 속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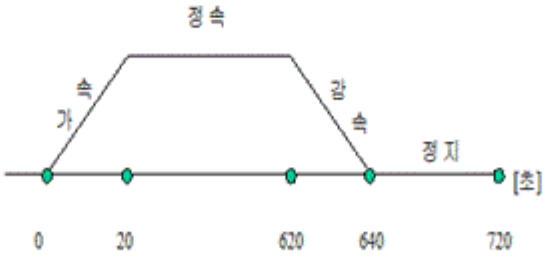

[그림 2. 내구성 운전 패턴]

5.2.12 내진동

인버터에 표 3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진동을 인가한 후 나사의 풀림과 부품의 이탈, 외함의 파손 등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시험 전의 상태와 비교한다.

5.2.13 보호기능

5.2.13.1 과전류 보호기능

보호기능이 동작하는 과전류 값이 설정치(제조사에서 제시한 값)의 ±5%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5.2.13.2 과전압 보호기능

보호기능이 동작하는 과전압 값이 설정치(제조사에서 제시한 값)의 ±5%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5.2.13.3 부족전압 보호기능

보호기능이 동작하는 부족 전압 값이 설정치(제조사에서 제시한 값)의 ±5%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5.2.13.4 과열보호

인버터 냉각용 환풍기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정격부하 조건으로 운전시켜 부품온도를 설정치 보다 넘도록 하였을 때 입력전원 차단이나 운전 정지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5.2.13.5 단락 전류 보호

정격부하 조건에서 전동기로 인입되는 3선 중 임의의 2선을 단락시켰을 때 전류 보호 회로를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5.2.14 서지 내력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조합파 발생기(Combination Wave Generator)를 사용하여 서지(개방 전압 파형 1.2/50 μs, 단락전류파형 8/20 μs)를 선간(normal mode)과, 선과 대지(common mode) 사이에 인가했을 때 오동작이나 소자 파손이 없는지 확인한다.

5.2.15 상용 주파 내전압

2kV/500mA/60Hz인 AC신호를 일괄 대지간((R·S·T)↔외함)에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절연 파괴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5.2.16 절연저항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 결선조건에서 샤시와 전원단자 사이에 DC 500V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절연 저항이 50MΩ 이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6. 제품표시사항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e 마크) 및 제조자명을 각인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품목명
b) 모델명
c) 정격용량
d) 정격 출력 전류, 전압 및 주파수
e) 정격 입력 전류, 전압 및 주파수
f) 제조자명
g) 제조국
h) 제조년월
i) 제조번호

(6)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 범위 및 개요

1.1 적용 범위

가스, 기름을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 난방능력 2,466 kW (2,121,000 kcal/h), 정격 냉방능력 2,813 kW (800 USRT) 이하의 것에 대해 규정한다.

1.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 KS B 8207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
- KS B 6205 육상용 보일러의 열 정산 방식
- KS M 2150 액화석유가스(LPG)
- KS M 2613 등유
- KS M 2610 경유
- KS M 2614 중유
- ANSI/ARI 560 ABSORPTION WATER CHILLING AND WATER HEATING PACKAGES
- JIS B 8622 ABSORPTION REFRIGERATING MACHINES
- GB T 18362 DIRECT-FIRED LITHIUM BROMIDE ABSORPTION WATER CHILLER HEATER

1.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 정격냉방능력 : 냉온수기를 전부하 냉방조건에서 운전하였을 때, 순환되는 냉수로부터 제거되는 열량, 단위는 kW(USRT)로 표시

1.1.2 정격유량 : 냉온수기의 냉방능력 시험 시에 냉수, 냉각수, 구동온수 등의 유량. 단위는 m^3/h 또는 L/h로 표시

1.1.3 통합성능계수(IPLV : Integrated Part Load Value) : 각 부분부하 운전조건에서 산출된 성능계수와 부분부하 운전시간비율을 반영하여 가중 평균한 값으로 무차원임.

1.1.4 1중 효용형 : 냉온수기의 냉방 사이클에서 냉매의 재생을 재생기에서만 행하는 것

1.1.5 2중 효용형 : 냉온수기의 냉방 사이클에서 냉매의 재생을 고온 재생기 및 저온

재생기의 2단계에서 행하는 것.

1.1.6 도시가스 : 가스 사업법에 근거한 가스용품의 검정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스 회사의 가스로, 가스 사업자가 가스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연료 가스

1.1.7 액화 석유가스 : KS M2150에서 규정하는 1종 1호, 2호, 3호로 한다.

1.1.8 기름 : KS M 2613에서 규정하는 등유, KS M 2610에서 규정하는 경유 및 KS M2614에서 규정하는 A종 1호의 중유로 한다.

1.1.9 환산계수 : 1 USRT는 3,024kcal/h, 1kW는 860kcal/h를 이용하여, USRT와 kW간의 환산계수를 소수점 셋째짜리인 3.516으로 한다.

$$\left(\frac{1\,USRT}{1kW} = \frac{3,024\,kcal/h}{860\,kcal/h} = 3.516\right)$$

1.1.10 수치맺음 : 각 냉방, 냉동능력은 USRT 표기치를 근간으로 하며, 환산값은 정수로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1.1.11 3중 효용형 : 기기의 냉동 사이클에서 냉매의 재생을 고온 재생기, 중온 재생기 및 저온 재생기에서 행하는 것

2. 종류

1.1 연료에 따른 구분

1.1.1 가스 : 도시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경우

1.1.2 기름 : 등유, 경유 또는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

1.2 기능에 따른 구분

2.2.1 냉방 전용의 것

2.2.2 냉 · 난방 겸용의 것

1.3 용량 구분

정격 냉방능력은 kW(USRT)로 표시하고 난방능력은 kW(10^3kcal/h)로 표시한다.

<표 1>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 용량구분

구 분	정격 냉방능력 kW(USRT)(단위병기)
1 군	176(50)이하
2 군	176(50) 초과 ~ 352(100) 이하
3 군	352(100) 초과 ~ 703(200) 이하
4 군	703(200) 초과 ~ 1,055(300) 이하
5 군	1,055(300) 초과 ~ 1,406(400) 이하
6 군	1,406(400) 초과 ~ 1,758(500) 이하
7 군	1,758(500) 초과 ~ 2,110(600) 이하
8 군	2,110(600) 초과 ~ 2,813(800) 이하
※ 성능인증용량은 각 군내에서 35.16 kW(10 USRT) 단위로 인정함	

구 분	정격 난방능력 kW(10^3 kcal/h)(단위병기)
1 군	155(133)이하
2 군	155(133) 초과 ~ 308(265) 이하
3 군	308(265) 초과 ~ 616(530) 이하
4 군	616(530) 초과 ~ 926(796) 이하
5 군	926(796) 초과 ~ 1,234(1,061) 이하
6 군	1,234(1,061) 초과 ~ 1,542(1,326) 이하
7 군	1,542(1,326) 초과 ~ 1,850(1,591) 이하
8 군	1,850(1,591) 초과 ~ 2,466(2,121) 이하
※ 냉방용량 기준으로 구분되며 세부구분은 부록 참조	

3. 구조

1.4 구조 일반사항

- 통상 사용상태에서 사람이 접촉하는 부분은 날카로운 돌기나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 제어반 및 배선은 열의 영향이 적은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전선의 관통부분은 전선이 상하지 않는 위치에 배선되어야 한다.

1.5 부속 종류 및 기능

3.2.1 흡수기

- 냉방운전 시 증발기로부터 발생된 냉매 증기를 흡수액에 흡수시키고 증발기내의 압력을 소정의 값으로 유지 한다.
- 냉매증기흡수 시 발생하는 흡수열은 관군 내를 통과하는 냉각수에 의하여 외부로 제거한다.
- 난방운전 시 정지한 채로 두던가 또는 흡수액이 보유하는 현열을 온수에 방출한다.

3.2.2 증발기

- 냉방운전 시 관내부를 흐르는 냉수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관외의 표면에 냉매액을 산포하여 냉매를 증발시킨다.
- 난방운전 시 정지한 채로 두던가, 고온흡수액을 냉매대신 산포하든가 또는 냉매 등 기체를 관군 외면에 응축시켜 온수를 가열한다.

3.2.3 재생기

- 저농도의 흡수액을 가열원에서 가열농축하여 냉매증기를 재생한다. 1중효용의 경우에 사용한다.

3.2.4 저온재생기

- 냉방운전 시 고온재생기에서 발생된 고온의 냉매증기를 관내에 통과시키고 저농도의 흡수액을 가열 농축하며 냉매 증기를 재생한다. 2중효용의 경우에 사용한다.

3.2.5 고온재생기

- 저농도의 흡수액을 연소장치에 의하여 가열 농축하고 냉매 증기를 재생하면서 고농도의 흡수액을 얻는다. 2중효용의 경우에 사용한다.

3.2.6 응축기

- 냉방운전 시 고온재생기에서 발생한 냉매증기와 저온재생기에서 발생된 냉매증기를 관내에 흐르는 냉각수에 의하여 냉각 응축한 냉매를 증발기로 공급한다.

3.2.7 용액열교환기

- 냉방운전 시 고온·고농도의 흡수액과 저온·저농도의 흡수액을 열교환 장치에 의해 교차시켜 각각의 온도 상승, 저하를 도모하여 재생기 효율을 향상한다.

3.2.8 흡수액 펌프

- 냉방운전 시 흡수기의 저농도 흡수액을 재생기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3.2.9 냉매 펌프

- 증발기 하단부 냉매액을 증발기 상단부로 이송하여 냉매를 관군 위에 산포시켜 냉매의 증발 작용을 촉진한다.

3.2.10 추기장치

- 온수기 기내에서 발생한 불응축 가스를 운전 중 항상 추출 제거하여 저장하였다가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3.2.11 연소장치

- 고온재생기에 부착되어 연료(가스 또는 기름)를 연소시키는 버너.

4. 인증 성능기준

표준 정격 성능은 <표 2>에 따른다.

<표 2> 각종 성능지표

항 목		성 능 기 준			시험방법
냉방능력 kW (USRT)		정격 냉방능력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5.2.3
통합성능계수 (IPLV)		1.41 이상			5.2.3
	연료	CO_2(%)	O_2(%)	CO(PPM)	5.2.4
난방 배기 가스 농도	가스 (LNG, LPG)	10 이상	3.7 이하	200 이하	
	기름 (등유, 경유, 중유)	12.7 이상	3.7 이하	200 이하	
난방배기가스온도 (℃)		170 이하			5.2.4
연료소비량 (㎥/h, kg/h)		정격 냉방능력, 난방능력당 표시값의 105% 이하.			5.2.4
절연저항 (MΩ)		1 이상이어야 한다.			5.2.1
내 전 압 (V)		이상이 없어야 한다.			5.2.1
기 밀 성		1.01 Pa·㎖/s 이하			5.2.1
내 압 성		최고사용압력의 1.3배 이상			5.2.1
안전장치 작동	과냉	정상작동 유무			5.2.1
	과열	정상작동 유무			
	과압	정상작동 유무			

※ 난방배기가스온도는 배출가스온도에서 실온을 제외한 값임.

예시) 난방배기가스 온도 = 측정 난방배기가스온도(190 ℃) - 측정시 실온(25 ℃) = 165 ℃

5. 시험방법

1.6 시험일반

1.1.1 시험은 정격주파수 및 정격 전압에서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1.1.2 통상 사용상태에서 사용되는 부품은 모두 부착한 상태로 한다.

1.1.3 시험이 들어가기 전에 불응축 가스는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1.1.1 기타 시험 조건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KS B 6271(흡수식냉동기), KS B 8207(직화 흡수식 냉온수기)에 따른다.

1.7 성능시험

성능시험은 규정된 정격 운전 조건에서 수행하고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다.

1.1.4 안전시험

안전시험은 제조사 제시한 시험 결과값을 포함한 서류 제출로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밀시험 : 흡수액 냉매계통이 포함된 몸체의 기밀시험은 할로겐가스 또는 헬륨가스(기계 밖으로부터 기계 내로)사용하며, 할로겐 가스의 경우 78.5 kPa{0.85 kgf/㎠} 이상 유지하고, 누설량은 1.01 Pa·㎖/s{1×10⁻⁵atm·cc/s} 이하여야 한다.

(2) 내압시험 : 냉/온수, 냉각수 등의 계통에 적용하는 내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3배 이상 조건에서 시행하며, 이를 10분 이상 지속 시 변형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한다.

(3) 절연저항 : 절연저항은 시험운전 전에 시행하며,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충전부와 접지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4) 내전압 : 정격전압 회로에 대한 내전압 시험은 <표 3>의 기준에 따르며, 주파수 60Hz의 사인파에 가까운 전압을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지속적으로 가한다. 정격출력이 400W 미만인 전동기에서는 1,000V로 하며, 조작회로 전압에서 내전압이 직류 30V 이하인 회로에 사용되는 전자응용부품에 대해서는 내전압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표 3> 정격전압 대비 시험전압 기준

정격전압	30V이하	100V	200V/220V	380V/400V	440V
시험전압	500V	1,000V	1,500V	1,800V	1,880V

(5) 과냉 차단시험 : 냉방능력 시험 후 냉수출구 온도조절기를 임의로 낮게 조절하여 운전하였을 때 과냉 차단용 온도스위치가 이상 없이 작동하여 연소가 정지되는지 시험한다.

(6) 과열 차단시험 : 냉방 또는 난방능력 시험 후 계속 운전하여 고온재생기 내의 온도를 임의로 상승시켜 과열 차단용 온도 스위치가 작동되어 연소가 정지되는지 시험한다.

(7) 과압 차단시험 : 냉방 또는 난방능력 시험 후 계속 운전하여 기내의 압력을 임의로 상승시켜 기내의 압력이 대기압 상태가 되기 전에 이상 없이 연소가 정지되는지 시험한다.

1.1.5 온도 및 유량확인 시험

유량계 및 온도계의 교정기간 및 측정 위치를 확인하고, 유량 및 온도 데이터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

(1) 온도데이터 안정범위 이상의 편차 발생 시 제 3의 검교정된 온도계와 온도 검교정 후 진행

(2) 유량데이터 안정범위 이상의 편차 발생 시 제 3의 검교정된 유량계로 유량 검교정 후 진행

1.1.6 냉방능력

(1) 냉방능력 시험조건 및 안정판단 기준은 다음의 <표 4>에 따른다.

<표 4> 냉방능력 시험조건 및 안정판단 기준

항 목		시 험 조 건	비고
냉 수		○ 출구온도 7 ± 0.3 ℃ (유량 : 정격의 ±5%)	
냉각수	100 %부하	○ 입구온도 32 ± 0.3 ℃ (유량 : 정격의 ±5%)	
	75 %부하	○ 입구온도 30.75 ± 0.3 ℃ (유량 : 정격의 ±5%)	
	50 %부하	○ 입구온도 29.5 ± 0.3 ℃ (유량 : 정격의 ±5%)	
	25 %부하	○ 입구온도 28.25 ± 0.3 ℃ (유량 : 정격의 ±5%)	

(2) 안정조건 : 시험조건의 온도변동 허용치 내에서 20분 이상 안정되어 있는 상태. 모든 데이터는 가능한 동시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조건의 판별을 위해 온도 및 유량측정에 대한 데이터 변동 그래프를 확인한다. (디스플레이 사진촬영 대체 가능)

(3) 냉수 입출구 및 냉각수 입구의 온도와 유량이 안정된 후 온도와 유량을 20분 내에 3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한다.

(4) 부분부하 운전 : 냉각수 온도를 부분능력 %에 맞추어 조절하면서 가열원 소비량을 조절하여 정격 냉방능력의 %비율 부분부하 상태를 유지한다.

(5) 도시가스, 액화 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스 사업자 고위 발열량에 따른다.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B 6205에서 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여도 좋다. (KS B 6271)

(6) 연료소비량 측정은 운전이 안정된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3회 이상 측정 후 산술 평균한다.

1.1.7 난방 연소효율 시험

(1)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를 난방모드로 전환한다.
(2) 피시험 버너를 시동하여, 정상 연소 상태에 달한 후에 측정을 개시한다.
(3) 정격 연소량은 연료유량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연료 유량은 정격값의 ±105 % 이하이어야 한다.
(4) 배기가스 중의 CO_2, O_2, CO를 측정하여 <표 2>를 만족해야 함.
(5) 배기가스 온도는 <표 2>를 만족해야 함.

1.1.8 능력 및 효율 산출방법

(1) 냉방능력

$$Q_c = (1/3.6)\, W_c C_c Y_c (t_{c1} - t_{c2}) \{Q_c = 1{,}000\, W_c C_c Y_c (t_{c1} - t_{c2})\}$$

Q_c : 냉방능력 (kW){kcal/h}
W_c : 냉수 유량 (㎥/h)
C_c : 냉수 비열 (kJ/kg℃){kcal/kg℃}
Y_c : 냉수 밀도 (kg/ℓ)
t_{c1} : 냉수 입구온도 (℃)
t_{c2} : 냉수 출구온도 (℃)

(2) 가열원 소비량

a. 단열시공의 경우

1) 도시가스, 액화 석유가스식의 경우

$$Q_i = (1/3{,}600)\, W_g q_g \{Q_i = W_g q_g\}$$

Q_i : 가열원 소비량 (kW){kcal/h}

W_g : 가스 유량 (N㎥/h) [0℃, 1 atm 표준상태]

q_g : 가스 발열량 (kJ/㎥){kcal/㎥}

2) 기름식의 경우

$$Q_i = (1/3,600)\, W_o q_o\, Y_o \{Q_i = W_o q_o\, Y_o\}$$

W_o : 기름 유량 (L/h)

q_o : 기름 발열량 (kJ/kg){kcal/kg}

Y_o : 기름 밀도 (kg/L)

b. 단열 미시공의 경우

1) 도시가스, 액화 석유가스식의 경우

$$Q_i = (1/3,600)\, W_g q_g\, (1-l) \{Q_i = W_g q_g (1-l)\}$$

2) 기름식의 경우

$$Q_i = (1/3,600)\, W_o q_o\, Y_o (1-l) \{Q_i = W_o q_o\, Y_o (1-l)\}$$

l은 열손실률을 나타내며, 열손실률 계산은 다음의 식과 같은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

$$l = \frac{Q_o - Q_1}{Q_i}$$

l : 열손실률

Q_o : 보온시공전의 열손실량 (W){㎉/h}

Q_1 : 보온시공후의 열손실량 (W){㎉/h}

Q_t : 가열원소비량 (W){㎉/h}

※ 열손실률은 냉온수기의 용량분류에 따라 <표 5>를 참조하여 계산한다.

<표 5> 용량군에 따른 열손실률(l)

용량군 / 종 류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8군
직화흡수식	0.08	0.07	0.06	0.05	0.04	0.03	0.03	0.03

(3) 성능계수(COP)

1) 성능계수

$$COP = \frac{Q_c}{Q_i}$$

COP : 성능계수

Q_c : 냉방능력 (kW){㎉/h}

Q_i : 가열원 소비량 (kW){㎉/h}

(4) 통합성능계수(IPLV) : 통합성능계수의 산출은 능력 100 %(운전시간 1 %), 능력 75 %(운전시간 42 %), 능력 50 %(운전시간 45 %), 능력 25 %(운전시간 12 %) 조건으로 아래의 식으로 산출한다.

통합성능계수 = 0.01A + 0.42B + 0.45C + 0.12D

A = 100 % 운전에서 성능계수

B = 75 % 운전에서 성능계수

C = 50 % 운전에서 성능계수

D = 25 % 운전에서 성능계수

※ 통합성능계수(IPLV) 산출 예시

만약 시스템이 25%의 용량에서 용량제어운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운전 가능한 최소용량으로 운전하고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부분부하 성능을 계산한다.

$$COP = \frac{Q_c}{C_d \cdot Q_i} \qquad C_d = (-0.13 \cdot LF) + 1.13$$

$$LF = \frac{\frac{25}{100} \cdot (\text{정격냉방능력})}{(\text{운전가능 최소냉방능력})}$$

COP : 성능계수

C_d : 손실계수(싸이클링 손실을 고려)

LF : 부하계수

5.3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에 따른 세부적용 기준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6>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기본모델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관련자료 등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표 6>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외 형[1], 최고사용압력[2]	시험 면제
2	열교환기[3]	통합성능계수, 성능계수
3	펌프[4]	통합성능계수, 성능계수
4	버너[5]	통합성능계수, 성능계수
비 고		[1] 외형변경은 구조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변경(디자인 등)에 한함. [2] 동일한 형태, 구조이면서 단위용량 당 전열면적이 동등이상인 경우에 한함 [3] 동일한 재질, 형태, 구조이면서 전열면적이 동등이상인 경우에 한함. [4] 펌프의 용량, 구조, 재질, 형식이 동일하고, 효율이 동등이상인 경우에 한함. [5] 연료혼합방식 및 연소방식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5.4 복수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 기준

복수부품 등재에 따른 인증 신청 시 복수부품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7>의 복수부품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7> 복수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펌프[1]	통합성능계수, 성능계수
2	버너[2]	통합성능계수, 성능계수
비 고		[1] 펌프의 용량, 구조, 재질, 형식이 동일하고, 효율이 동등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연료혼합방식 및 연소방식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6. 시험설비(필수 보유 장비 포함)

1) 전력측정장치*

2) 내전압 시험장치

3) 절연저항계

4) 유량계

5) 온도 측정장치

6) 압력 측정장치

7) 배기가스 분석기*

8) 가스미터

9) 초시계

(주) *는 고효율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대체가 가능한 설비

7. 제품 표시사항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 마크

2) 품목명, 모델명

3) 제조자명, 제조번호

4) 정격 냉방능력

5) 정격 난방능력

6) 성능계수(고위발열량 기준)

7) 통합성능계수(IPLV)

8) 냉수 입·출구 온도, 유량

9) 온수 입·출구 온도, 유량

10) 냉각수 입·출구 온도, 유량

11) 사용연료

12) 냉방 연료소비량

13) 난방 연료소비량

14) 최고사용압력

15) 사용전원(상수 ϕ, 전압 V, 주파수 Hz)

16) 제조년월

17) A/S 연락처

부록 모델별 난방용량 세부구분 표

	냉방		난방		냉방		난방	
	kW	USRT	kW	10^3 kcal/h	kW	USRT	kW	10^3 kcal/h
8군	2,813	800	2,466	2,121	2,461	700	2,158	1,856
	2,778	790	2,436	2,095	2,426	690	2,128	1,830
	2,742	780	2,405	2,068	2,391	680	2,097	1,803
	2,707	770	2,374	2,042	2,356	670	2,066	1,777
	2,672	760	2,343	2,015	2,321	660	2,035	1,750
	2,637	750	2,313	1,989	2,285	650	2,005	1,724
	2,602	740	2,281	1,962	2,250	640	1,973	1,697
	2,567	730	2,251	1,936	2,215	630	1,943	1,671
	2,532	720	2,220	1,909	2,180	620	1,912	1,644
	2,496	710	2,190	1,883	2,145	610	1,881	1,618
7군	2,110	600	1,850	1,591	1,934	550	1,695	1,458
	2,074	590	1,820	1,565	1,899	540	1,665	1,432
	2,039	580	1,788	1,538	1,863	530	1,634	1,405
	2,004	570	1,758	1,512	1,828	520	1,603	1,379
	1,969	560	1,727	1,485	1,793	510	1,572	1,352
6군	1,758	500	1,542	1,326	1,582	450	1,387	1,193
	1,723	490	1,510	1,299	1,547	440	1,357	1,167
	1,688	480	1,480	1,273	1,512	430	1,326	1,140
	1,653	470	1,449	1,246	1,477	420	1,295	1,114
	1,617	460	1,419	1,220	1,442	410	1,264	1,087
5군	1,406	400	1,234	1,061	1,231	350	1,079	928
	1,371	390	1,202	1,034	1,195	340	1,049	902
	1,336	380	1,172	1,008	1,160	330	1,017	875
	1,301	370	1,141	981	1,125	320	987	849
	1,266	360	1,110	955	1,090	310	956	822
4군	1,055	300	926	796	879	250	771	663
	1,020	290	894	769	844	240	740	636
	984	280	863	742	809	230	709	610
	949	270	833	716	774	220	678	583
	914	260	801	689	738	210	648	557
3군	703	200	616	530	527	150	463	398
	668	190	586	504	492	140	431	371
	633	180	555	477	457	130	401	345
	598	170	524	451	422	120	370	318
	563	160	493	424	387	110	340	292
2군 ~ 1군	352	100	308	265	141	40	123	106
	316	90	278	239	105	30	93	80
	281	80	247	212	70	20	62	53
	246	70	216	186	35	10	31	27
	211	60	185	159				
	176	50	155	133				

(7) 원심식 송풍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범위 및 개요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압력비가 1.3 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 이하인 직동, 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이하,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로서, 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이 160 mm에서 1800 mm까지에 적용하며,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기, 배기, 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 공기순환용 송풍기-천정형 송풍기 및 데스크형 송풍기(air circulating fans-ceiling fans, desk fans)

b) 내부 냉각 압축기(compressors with inter-stage cooling)

c) 양압 용적형 기계(positive displacement machines)

1.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B 0062 송풍기 · 압축기 용어
-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방법
- KS B 6326 전향익 송풍기
- ANSI/AMCA 210-16 Laboratory Methods of Testing Fans for Certified Aerodynamic Performance Rating

1.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원심식 송풍기(Centrifugal Fan) : 기체가 임펠러의 반지름방향으로 흘러 나가는 송풍기

b) 후향익 송풍기(뒤쪽 굽음깃 송풍기, Backward Inclined Fan) : 뒤쪽 굽음 깃을 가진 원심 송풍기

c) 날개형 송풍기(익형 송풍기, Airfoil Fan) : 익형 베인(주어진 날개 두께의 분포를 가진 베인)을 가진 송풍기

d) 전향익 송풍기(Forward curved Fan) : 다수의 앞방향 임펠러를 가진 송풍기

e) 편 흡입(Single Suction Type) : 흡입구가 하나인 와류 케이싱 내에 한쪽 흡입의 임펠러를 내장한 원심 송풍기

f) 양 흡입(Double Suction Type) : 흡입구가 양쪽대칭으로 설치된 와류 케이싱 내에 한쪽 흡입의 곡선익을 양쪽으로 가진 임펠러를 내장한 원심 송풍기

g) 직결식(Direct Driven Type with Coupling) : 송풍기와 원동기가 축이음으로 직결되어 있는 형식

h) 벨트 구동식(Belt Driven Type) : 송풍기가 원동기에 의하여 벨트로 구동되고 있는 형식

i) 표준 공기(Standard Air) : 밀도 1.2kg/㎥, 비열비 1.4, 점성계수 1.8185×10^{-5}N · s/㎡의 특성을 갖는 공기를 말하여, 기압 101.3kPa에서 20℃, 상대습도 50%의 공기가 근사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j) 전압(Total Pressure, Pt) : 전압은 압축 정도와 운동 속도로 인하여 야기되는 공기 압력이다. 한 점에서의 전압은 그 점에서의 동압과 정압의 대수적 합이다. 그러므로 정지 상태에 있는 공기의 전압은 정압과 같게 된다.

k) 정압(Static Pressure, Ps) : 정압은 공기 압력 중 압축 정도에 의하여만 생기는 압력 부분으로서, 계기 압력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음 또는 양의 값을 가질 수 있다.

l) 동압(Dynamic Pressure, Pd) : 동압은 공기 압력 중 운동에너지에 해당하는 압력 부분이다. 동압은 양의 값을 가진다.

m) 축동력(Shaft Power, kW) : 송풍기의 한 부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동 기구의 모든 요소들을 구동시키는데 소요되는 동력

n) 송풍기 전압효율(Fan Efficiency, %) : 송풍기 축동력에 대한 송풍기 출력의 비

2. 종 류

2.1 구조에 따른 구분

a) 후향익형　　b) 날개형　　c) 전향익형

2.2 공기흡입 형식에 구분

a) 편흡입형　　b) 양흡입형

2.3 동력전달 방식 따른 구분

a) 직결식　　b) 벨트 구동식

2.4 호칭번호에 따른 구분

a) 호칭번호에 따른 구분

(단위 : mm)

호칭번호	016	018	020	022	025	028	032	036	040	045	050
깃 바깥지름	160	180	200	224	250	280	315	355	400	450	500
호칭번호	056	063	071	080	090	100	112	125	140	160	180
깃 바깥지름	560	630	710	800	900	1000	1120	1250	1400	1600	1800

(주) 위 구분외의 깃 바깥지름인 경우 최소, 최대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신청에 따른다.

b) 호칭번호에 따른 군별 구분

구분	호칭번호
1 군	16 이상 ~ 28 이하
2 군	28 초과 ~ 50 이하
3 군	50 초과 ~ 90 이하
4 군	90 초과 ~ 180 이하

3. 구 조

3.1 일반 구조

a) 송풍기는 회전부분과 정지 부분의 접촉이나 운전 및 성능에 지장을 주는 기체의 내부 단락 또는 축 관통 부분에서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b) 송풍기의 회전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케이싱이나 베어링 받침대에 견고하게 고정된 충분한 강도를 갖는 베어링으로 지지되고, 축 중심에 일치되며 원활하게 운전이 되어야 한다.

c) 송풍기는 주어진 풍량, 압력 및 온도 범위 내에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진동이나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d) 송풍기는 설치면이 평면을 이루고, 설치대, 방진대 또는 기초위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 송풍기는 안전을 위하여 보호덮개나 보호망을 부착하고,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2 케이싱

a) 케이싱은 압력 손실이나 진동, 소음 등을 일으키는 심한 와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b) 케이싱의 각 부는 변형, 진동, 운전 성능에 지장을 주는 공기 누설이 없고, 용접 또는 볼트 조립 등에 의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설치 및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3 임펠러

a) 임펠러 허브와 조립되는 축은 회전방향 및 축방향에 대해 견고하게 고정되고, 운전중에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b) 임펠러는 운전 중에 깃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용접구조일 경우 용접부위가 미려해야 하며 언더컷, 오버랩, 기공 또는 갈라짐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3.4. 주 축

a) 주축은 정밀도가 높게 가공되고 휨이나 흠 등이 없어야 한다.

b) 주축의 지름(d)은 다음 식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단, 이 식은 KS D 3752의 SM30C의 경우에 한하며 그 이상 품질(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나, 동력전달에 관계가 없는 부분은 이 보다 가는 것을 사용해도 좋다.

$$d \geq 125\sqrt[3]{\frac{L}{n}} \ \text{(mm)}$$

여기에서 L : 사용 최대 회전속도 에서의 축동력(kW)

n : 사용 최대 회전속도(rpm)

c) 벨트 풀리의 끼워 맞춤부 및 이와 가까운 베어링부의 축 지름은 벨트의 인장강도 등을 고려하여 주축의 지름(d)보다 10%이상 굵게 하여야 한다.

3.5 받침대

전동기 받침대, 베어링 받침대 및 공통 받침대는 하중에 대하여 변형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로 지지되도록 하며, 케이싱이나 공통 받침대 또는 기초에 대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6 겉모양

a) 주조품은 내면과 외면이 매끄럽고, 해로운 주물귀, 균열, 살몰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b) 케이싱은 변형이 없고 플랜지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c) 케이싱, 임펠러, 전동기 받침대, 베어링 받침대, 공통 받침대, 벨트 가드(보호망), 주축 및 풀리의 다듬질 면(홈부의 면은 제외)에는 충분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방청처리가 필요치 않은 재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성능시험

성능시험은 다음 표 1 및 표 2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호칭번호가 없는 경우 그 사이의 값을 기준으로 보간법을 적용하여 해당 효율을 적용한다.

<표 1> 성능 인증기준

시 험 항 목	인 증 기 준
송풍기 전압효율 및 풍량기준	신청자가 시험전에 제시한 정압 및 풍량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 송풍기 전압효율값은 표 2의 값 이상, 풍량은 제시한 값 이상으로서 각 시료의 오차는 ± 2.5%일 것
인증풍량 범위	제시한 정압의 85%에서 측정한 풍량을 인증풍량의 상한영역으로 한다. 단, 85% 정압에서의 효율은 표 2의 90%이상이어야 하며, 전향익 송풍기은 제외한다.
축동력	송풍기 운전시 축동력은 표시 축동력 이하이어야 한다.

<표 2> 호칭번호별 최고 송풍기 전압효율 값

호칭번호	전동기 직결식			벨트 구동식		
	후향익	날개형	전향익	후향익	날개형	전향익
28이하	53.0	-	45.5	51.0	-	43.5
32	57.0	58.0	47.5	55.0	55.5	45.5
36	59.5	61.0	50.0	57.0	58.5	48.0
40	62.5	62.5	53.0	60.0	60.0	50.5
45	65.5	67.0	55.5	64.0	64.5	53.5
50	68.0	70.0	58.5	65.5	67.0	56.0
56	70.0	72.0	59.5	67.0	69.0	57.0
63	72.5	75.5	61.5	69.5	72.5	59.0
71	74.0	76.5	62.5	71.0	73.0	60.0
80	74.5	78.0	63.0	71.5	75.0	60.5
90	76.5	79.5	64.0	73.0	76.5	61.5
100	77.0	80.5	64.5	73.5	77.5	62.0
112	77.0	80.5	65.0	73.5	77.5	62.5
125	77.0	80.5	66.0	73.5	77.5	63.5
140	77.5	81.0	67.0	74.0	77.5	64.5
160	77.5	81.0	68.5	74.0	77.5	65.5
180	77.5	81.0	70.0	74.0	77.5	67.0

5. 시험방법 및 절차

5.1 시험방법

송풍기의 풍량, 전압, 동력 및 회전속도의 시험방법은 원칙적으로 KS B 6311에 의한다.

단, 송풍기 전압효율의 산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text{송풍기 전압효율}(\%) = \frac{\text{풍량}(\text{㎥/min}) \times \text{전압}(Pa)}{60 \times 1000 \times \text{축동력}(kW)} \times 100$$

또한, 여기에서 축동력은 반동동력계로 측정한 보하중, 회전력 검출소자로 측정한 회전력 혹은 교정전동기(공인시험기관 성적서 확인)로 측정한 전기적 입력으로부터 결정한다. 이에 대한 각 세부 산출식은 KS B 6311:2017(송풍기의 시험방법)의 6.3.6(시험조건하에서 송풍기 축동력)에 따른다. 단, 교정전동기를 사용하여 축동력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송풍기 운전부하율에 해당되는 전동기 효율값을 적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축동력}(kW) = \frac{\text{입력전력}(kW) \times \text{송풍기 부하율에 해당되는 전동기 효율 값}(\%)}{100}$$

5.2 측정

a) 송풍기 사용풍량 범위 내에서 흡입 및 토출측의 풍량 조절장치(댐퍼 등)를 이용하여 잠금상태(체절점)로부터 표 1 규정의 송풍기 전압효율값이 포함되게 측정한다.

b) 측정은 규정회전수와 표준공기 상태로 시험하여야 하나, 전원 및 설치 등의 사정상 규정조건에서 운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회전수의 ±5 %, 5 ℃ ~ 30 ℃에서 측정하고 5.3에 의하여 시험결과를 산출한다.

5.3 시험결과의 산출

시험결과는 KS B 6311 7.3 환산공식에 따라 표준 공기 및 표준 회전수로 환산한다.

5.4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3>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기본모델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관련자료 등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표 1>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외형	시험면제
비고	외형변경은 구조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변경(디자인 등)에 한함.	

6. 시험설비

1) 풍량 측정장치*

2) 동력 측정장치

3) 정압 측정장치

4) 온도 측정장치

5) 회전수 측정기

(주)*는 고효율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대체가 가능한 설비

7. 제품표시방법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e 마크), 제조자명 및 다음사항을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a) 품명 및 모델명

b) 송풍기 전압효율 인증범위(%)

c) 풍량 인증범위(㎥/min)

d) 정압 인증범위(Pa)

e) 회전수(rpm)

f)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g) 제조자

h) 제조국

(8) 터보압축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범위 및 개요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압력비가 1.3초과 또는 송출압력이 30kPa를 초과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압축기(이하, 압축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1.2 참고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참고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참고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A 0701 소음도 측정 방법
- KS B 0062 송풍기 · 압축기 용어
- KS B 0898 벤튜리관에 의한 유량측정방법
-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 KS B 6326 전향익 송풍기
- KS B 6350 터보형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 KS B 6351 용적형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 KS B 6361 송풍기 · 압축기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 KS B ISO 5802 산업용송풍기-운전조건에 따른 성능시험
-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AMCA PUBLICATION 99 STANDARDS HANDBOOK
- AMCA PUBLICATION 201 FANS AND SYSTEMS
- AMCA PUBLICATION 203 FIELD PERFORMANCE MEASUREMENT OF FAN SYSTEMS
- ISO 5389 TURBOCOMPRESSORS

1.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한쪽 흡입형(Single suction type) : 한쪽에서 기체를 흡입하는 임펠러의 흡입 형식

b) 양쪽 흡입형(Double suction type) : 양쪽에서 기체를 흡입하는 임펠러의 흡입 형식

c) 회전수 가변형(Variable speed type) : 블로어 가동시 부하에 따라 회전수를 변환할 수 있는 장치(인버터 등)가 부착되어 있는 형식

d) 회전수 증속형(Gear driven type) : 설정압력까지 승압시키기 위하여 기어 등으로 회전수를 증속시키는 형식

e) 표준 공기(Standard air) : 밀도 11.76N, 비열비(k) 1.4, 점성계수 1.8×10^{-5}N · s/㎡의 특성을 갖는 공기를 말하여, 기압 101.3kPa에서 20℃, 상대습도 65%의 공기가 근사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f) 전압(Total pressure, P_t) : 기체의 흐름을 등(等)엔트로피적으로 정지시켰을 때의 압력

g) 정압(Static pressure, P_s) : 유선에 평행인 면에서 미치는 기체의 압력

h) 동압(Dynamic pressure, P_d) : 전압(P_t) - 정압(P_s)으로 표시되는 압력

i) 종합효율(Total efficiency, η_T) : 송풍기 입력에 대한 송풍기 출력의 비

2. 종류 및 구조

2.1 종 류

a) 공기흡입 형식에 구분

① 한쪽 흡입형 ② 양쪽 흡입형

b) 회전수 변환방식에 따른 구분

① 회전수 가변형 ② 회전수 증속형

c) 단수에 따른 구분

① 단단형 ② 다단형

d) 용량에 따른 구분

구분	정 격 입 력 (kW)
1 군	0 초과 ~ 100 이하
2 군	100 초과 ~ 200 이하
3 군	200 초과 ~ 300 이하
4 군	300 초과

2.2 구 조

a) 일반 구조

① 압축기는 회전부분과 정지 부분의 접촉이나 운전 및 성능에 지장을 주는 기체의 내부 단락 또는 축 관통 부분에서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② 압축기의 회전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케이싱이나 베어링 받침대에 견고하게 고정된 충분한 강도를 갖는 베어링으로 지지되고, 축 중심에 일치되며 원활하게 운전이 되어야 한다.

③ 압축기는 주어진 풍량, 압력 및 온도 범위 내에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진동이나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압축기는 설치면이 평면을 이루고, 설치대, 방진대 또는 기초위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압축기는 안전을 위하여 보호덮개나 보호망을 부착하고,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b) 케이싱

① 케이싱 본체는 운전 중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질이어야 한다.

② 케이싱은 압력 손실이나 진동, 소음 등을 일으키는 심한 와류 현상이 발생되 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케이싱의 각 부는 변형, 진동, 운전 성능에 지장을 주는 공기 누설이 없고, 용접 또는 볼트 조립 등에 의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설치 및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c) 임펠러

① 운전 중 추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임펠러 허브와 조립되는 축은 회전방향 및 축방향에 대해 견고하게 고정되고, 운전중에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③ 임펠러는 운전 중에 깃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용접구조일 경우 용접부위가 미려해야 하며 언더컷, 오버랩, 기공 또는 갈라짐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d) 주 축

① 주축은 정밀도가 높게 가공되고 휨이나 흠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주축의 지름(d)은 다음 식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단, 이 식은 KS D 3752의 SM30C의 경우에 한하며 그 이상 품질(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나, 동력전달에 관계가 없는 부분은 이 보다 가는 것을 사용해도 좋다.

$$d \geq 125\sqrt[3]{\frac{n}{L}}$$

여기에서 L : 사용 최대 회전속도 에서의 축동력

n : 사용 최대 회전속도

e) 겉모양

① 주조품은 내면과 외면이 매끄럽고, 해로운 주물귀, 균열, 살몰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케이싱은 변형이 없고 플랜지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3. 시험방법 및 절차

3.1 시험방법

터보압축기의 풍량, 압력, 동력, 온도 및 회전속도 등의 시험방법은 원칙적으로 KS B 6350에 따른다. 단, 구동부 입력의 측정은 압축기 가동시 필요한 모든 부속장치(냉각장치, 윤활장치 등)의 동력을 포함한 값으로 하며, 종합효율의 산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text{종합효율}(\%) = \frac{L_{ad}}{L_s} \times 100$$

$$\text{여기서, } L_{ad} = \frac{k}{k-1} \times \frac{P_1 Q_1}{60} \times \left[\left(\frac{P_2}{P_1}\right)^{\frac{k-1}{k}} - 1\right]$$

L_{ad} : 이론 단열 공기동력 (kW)

L_s : 구동부 입력 (kW)

k : 공기의 단열지수(=1.4)

Q_1 : 흡입상태로 환산한 공기량 (㎥/min)

P_1 : 흡입공기의 절대압 (kPa abs)

P_2 : 토출 절대압 (kPa abs)

3.2 측정절차

흡입 및 토출측의 풍량조절장치 등을 이용하여 신청자가 시험전에 제시한 압력으로 시험조건을 설정한 후 풍량, 회전수, 동력, 온도 등을 측정한다.

3.3 시험결과의 산출

성능시험시 전원, 설비 등의 형편에 의하여 규정 회전수로 운전하기 곤란한 경우, 단단에서는 규정 회전수의 ±20%, 다단일 경우 ±5% 범위내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규정값으로 환산한다. 시험조건이 규정조건과 다른 경우 환산하여야 할 시험값은 공기동력(kW), 입력전력(kW) 및 토출 절대압력(kPa abs)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측정값으로 한다.

a) 공기동력의 환산 $L_d = L_{dt} \times \left(\frac{N}{N_t}\right)^3$

b) 입력값의 환산 $L_s = L_{st} \times \left(\frac{N}{N_t}\right)^3$

c) 토출절대압의 환산 $P_2 = P_1 \times (CK+1)^{\frac{k}{k-1}}$

여기에서 각 기호는 다음과 같다.

N = 규정회전수 (rpm)

N_t = 시험 회전수 (rpm)

L_d = 규정 회전수에서의 공기동력 (kW)

L_{dt} = 시험 회전수에서의 공기동력 (kW)

L_s = 규정 회전수에서의 입력전력 (kW)

L_{st} = 시험 회전수에서의 입력전력 (kW)

P_2 = 규정 흡입 상태로 환산된 토출 절대압 (kPa abs)

P_1 = 규정 흡입 상태에서의 흡입 절대압 (kPa abs)

$$C = \frac{R_t \times (273 + t_{1t})}{R \times (273 + t_1)}$$

$$X = \left(\frac{P_2}{P_1}\right)^{\frac{k-1}{k}} - 1$$

R_t = 시험공기의 기체상수

R = 규정공기의 기체상수

t_1 = 규정 흡입 상태에서의 공기의 온도 (℃)

t_{1t} = 시험시 흡입 공기의 온도 (℃)

4. 인증기술 기준

터보압축기는 표 1의 인증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인증기술기준

시 험 항 목	인 증 기 술 기 준
종합효율 및 풍량기준	신청자가 시험전에 제시한 규정조건(압력, 회전수 및 풍량)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 풍량은 제시한 값을 기준으로 100% ~110%이어야 하며, 종합효율값은 표 2의 값 이상일 것
종합효율의 허용편차	신청자가 시험 전에 제시한 규정조건(압력, 회전수 및 풍량)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 각 시료간의 종합효율 편차범위는 ±5% 이내일 것

<표 2> 유량별 종합효율값

풍 량(㎥/min)	회전수 가변형	회전수 증속형
50 이하	65.0	64.0
51 ~ 100	67.0	65.0
101 ~ 150	68.0	66.0
151 ~ 200	68.0	67.0
201 ~ 250	70.0	68.0
251 ~ 300	71.0	69.0
301 ~ 350	71.0	70.0
351 ~ 400	73.0	71.0

5. 제품표시방법

제조자는 터보압축기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 제조자명 및 다음사항을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a) 품명 및 모델명
b) 종합효율(%)
c) 토출 풍량(㎥/min)
d) 토출 절대압력(kPa abs)
e) 전압(V), 전류(A), 동력(kW)
f) 회전속도(rpm)
g)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제조자

(9) LED 유도등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범위 및 개요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유도등의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 KS C 0262 전기자기적합성(EMC) - 측정일반
- KS C 1302 절연 저항계(전지식)
- KS C 7612 조도 측정 방법
- KS C IEC 60050 - 845 조명 용어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1.3 용어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을 따른다.

1)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 전류 인가 시 광학적 복사를 방출하는 p-n 접합을 구현한 반도체 소자
2) LED 모듈(LED module) : 광원으로 공급되는 장치. 이 모듈은 하나 이상의 LED 외에 광학적, 기계적,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컨버터는 제외
3) 부품 변경 : 인증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인정되고 인증모델명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4) 방열부 : 히트싱크(Heat Sink)와 같이 기구의 열을 방출하거나 열전도에 의해 뜨거워진 표면을 식히는 장치
5) 광원부 : LED 모듈, LED 패키지(Package) 등 빛을 발산하는 구성요소
6) 기구부 : 반사갓(판), 렌즈, 커버, 마감재 등의 기구물
7) 외형 변경 :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방열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광원부를 변경하지 않고 광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단순 부착물, 색상, 디자인, 마감재 등)
8) 표시면 변경 : 기본모델에서 모든 부품이 동일하고 표시면만 변경되는 경우. 단, 표시면은 국민안전처의 유도등의 형식승인 시에 등록된 표시면에 한하며 표시면

변경으로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9) 종별 변경 : 기본모델에서 표시면의 교체로 인해 종별(피난구 유도등/통로유도등)이 변경되는 경우. 단, 표시면은 국민안전처의 유도등의 형식승인 시에 등록된 표시면에 한하며 내부회로가 동일해야 함

10) 설치 형태 변경 : 기본모델에서 설치 형태(돌출/매립)가 변경되는 경우. 단, 표시면 및 내부 회로가 동일한 경우에 한 함

11) 경미한 사항 변경 : 행정자치부령 "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종류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유도등(대형, 중형, 소형)과 통로유도등(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며 표시면의 크기는 국민안전처고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따른다.

3. 시험방법 및 절차

3.1 시험조건

a) 시험상태는 25±5℃의 무풍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위온도의 측정점은 광중심 또는 측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면에서 광원 또는 기구의 끝에서 50cm 이상 2m 이하인 곳으로 하고, 온도계의 감온부에는 방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b) 측정 중의 전압 변동률은 정격치의 ±0.5% 이내로 한다.

c) LED 유도등의 점등자세는 지정한 사용 상태로 지지한다. 또, 이것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는 점등자세의 차이에 따른 오차를 보정한다.

d) 천장, 벽, 바닥 등을 흑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시험설비

a) 전압, 전류 및 전력의 측정에는 0.5급 이상의 계기(KS C 1303-2, KS C 1303-3의 3.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수광기는 AA급 이상의 조도계(KS C 16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c) 수광기의 상대분광감도를 표준비 시감도에 되도록 맞추어서 사용한다. 보정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식에 의하여 보정계수 K를 산출하고 보정한다.

$$K = \frac{\int_{380}^{780} W_{t\lambda} V_{\lambda} d\lambda}{\int_{380}^{780} W_{S\lambda} V_{\lambda} d\lambda} \frac{\int_{380}^{780} W_{S\lambda} S_{\lambda} d\lambda}{\int_{380}^{780} W_{S\lambda} S_{\lambda} d\lambda}$$

여기서, K는 보정계수, V_{λ}는 파장 λ에서의 표준비 시감도, S_{λ}는 파장 λ에서의 수광기 상대 분광감도, $W_{S\lambda}$는 파장 λ에서의 표준 광원의 분광분포, $W_{t\lambda}$는 파장 λ에서의 시험품의 분광분포이다.

d) 수광기로의 빛의 입사각도는 측정 중 일정하게 한다.

e) 수광기에는 측정하는 광원 및 조명기구로부터의 빛만이 측정장치의 광학계를 통하여 입사하도록 효과적인 차광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f) 측정거리는 조도의 역제곱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취하고, 측정 중 일정하여야 하며, 기구의 광속 발산부 최대치구의 5배 이상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 광원의 광중심 및 조명기구의 측광중심이 측광장치의 회전중심과 일치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3.3 시험항목

a) 평균휘도 시험

b) 소비전력 시험

c) 수명가속 시험

3.4 성능시험

a) 평균휘도 시험은 조도측정용 조도계는 KS C 1601(조도계)에서 정한 일반용 AA급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광원은 시험 전에 60분 이상 예비 점등한 것으로 실시하며, 상용 점등시의 조도를 측정한다. 조도계의 측정위치는 표시면과 조도계의 수광부 거리는 표시면의 긴 변 길이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면의 긴 변 길이의 5배 거리가 1m 이내인 경우에는 1m에서 측정한다.

b) 소비전력 시험은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에서 48시간 동안 만충전하고 시료에 정격을 인가한 후 평균휘도 시험에서의 조도를 측정하고 전력계 또는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용하여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이후 입력 전압을 정격의 90%와 110%로 변경한 후 각각의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c) 수명가속 시험은 시험품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상온(25℃)으로 24시간 유지한 후 초기 광도를 측정하고 항온 항습기의 온도를 70℃로 유지한 채로 100시간 점등한 후 다시 상온으로 복귀하여 24시간 유지한 후 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10회를 반복하여 수행한다.

3.5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a)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1>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방열판, LED 모듈 또는 LED PCB	평균휘도
2	외형	시험 면제
3	확산커버 또는 렌즈	평균휘도
4	LED Chip 또는 LED Package	허용 불가
5	LED Chip 또는 LED Package 수량	허용 불가
6	LED package 배열	평균휘도
7	표시면	시험 면제
8	종별	소비전력, 평균휘도
9	설치 형태	시험 면제
10	경미한 사항	시험 면제

4. 인증기술기준

a) 평균휘도는 측정 조도값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La = (E \times R^2)/A \ [cd/m^2]$$

La : 평균휘도

E : 표시면의 긴변 길이의 5배 거리에서 측정한 조도 값 [lx]

R : 표시면의 긴변 길이에 5배 거리, 이하인 경우에는 1[m]

A : 표시면의 단면적 [㎡]

<표 2> 평균휘도 기준

종 별		상용점등시 평균휘도(cd/㎡)
피난구유도등	대 형	320이상 800미만
	중 형	250이상 800미만
	소 형	150이상 800미만
통로유도등	대 형	500이상 1000미만
	중 형	350이상 1000미만
	소 형	300이상 1000미만

b) 정격 전압 인가시의 유도등의 소비전력은 종류에 따라 <표 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정격 전압의 90%와 110%를 인가할 때 각각의 소비전력은 정격을 인가했을 때의 소비전력값의 15% 이내에서 변화해야 한다. 단 정격 전압 인가시의 소비전력이 2.0W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전력의 변화값이 ± 0.3W 이내를 만족하면 된다.

<표 3> 소비전력 기준

종 별		상용점등시 소비전력(W)
피난구유도등	대형	5.0 이하
	중형	4.0 이하
	소형	2.0 이하
통로유도등	대형	5.0 이하
	중형	4.0 이하
	소형	2.6 이하

주) 소비전력은 단면 제품에 대한 것으로, 양면 제품인 경우에는 기준의 1.8배를 적용한다.

c) 수명가속 시험 중 측정된 광도의 변화율은 10%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변경 시 제출 서류

a) 표시면 변경 : 유도등의 형식승인 취득 시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제출된 표시면 관련 서류(도면 등)

b) 종별 변경 : 기인증 모델과 내부 회로가 동일하고 표시면의 교체로 인해 종별(피난구유도등/통로 유도등)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시험 기관의 육안 검사성적서 및 수명 가속 시험을 제외한 기타 항목의 시험 성적서, 유도등의 형식승인 취득 시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제출된 표시면 관련 서류(도면 등)

c) 설치 형태 변경 : 기인증 모델과 표시면 및 내부 회로가 동일하고 설치 형태가 변경(돌출/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시험 기관의 육안 검사 성적서

d) 유도등 형식 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 경미한 사항 변경 증빙 서류 및 변경 내역서(제품의 사진, 회로도, 도면 및 부품리스트)

6. 제품표시방법

제조자는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서 정한 명판내용과 본 규정에서 정한 고효율기자재마크, 인증번호 및 소비전력을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0) 항온항습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 범위 및 개요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 {30,100kcal/h} 이하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 범위의 예외

다음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a) 덕트식 항온항습기

b) 완전한 냉동 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c) 흡수식 냉동 사이클용 설비

d) 흡입 공기 조건이 특수한 구조인 것

e) 가스 구동식 항온항습기

f) 히트 펌프식 항온항습기

g) 그 밖에 a)~f)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1.3 인용 규격

다음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KS B 6365 냉동용 압축기의 성능 시험 방법

KS C IE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제1부 : 일반 요구 사항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제2부-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 펌프의 개별 요구 사항

KS M 2128 냉동기유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ARSE B 0001 항온항습기

KARSE B 0002 항온항습기 시험방법

1.4 용어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냉방 능력(Q_c) : 냉방 능력은 항온항습기를 냉방 운전하였을 때 실내 공기에서 단위 시간당 제거할 수 있는 열량으로, [W]로 표시한 것

b) 냉방 소비전력(P_c) : 냉방 소비전력은 항온항습기를 냉방 운전할 때 항온항습기(실내기 및 실외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합계로, [W]로 표시한 것

c) 냉방 에너지 소비효율(EER) : 냉방 에너지 소비효율은 냉방 능력을 냉방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

$$EER = Q_c / P_c \quad [W/W]$$

d) 난방 능력(Q_h) : 난방 능력은 항온항습기를 난방 운전하였을 때 실내 공기에 단위 시간당 가할 수 있는 열량으로, [W]로 표시한 것

e) 난방 소비전력(P_h) : 난방 소비전력은 항온항습기를 난방 운전할 때 항온항습기(실내기 및 실외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합계로, [W]로 표시한 것

f) 난방 성적 계수(COP) : 난방 성적 계수는 난방 능력을 난방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

$$COP = Q_h / P_h \quad [W/W]$$

g) 전용 가습 능력(H) : 항온항습기를 전용 가습 운전할 때 단위 시간당 가습한 가습량으로, [kg/h]로 표시한 것

$$H = Q \cdot \rho \cdot (X_2 - X_1) \quad [kg/h]$$

여기에서, Q : 풍량 [m^3/h]

ρ : 송출공기 상태에서의 공기 밀도 [kg^*/m^3]

X_2 : 송출공기의 절대습도 [kg/kg^*]

X_1 : 흡입공기의 절대습도 [kg/kg^*]

h) 전용 가습 소비전력(P_H) : 전용 가습 소비전력은 항온항습기를 전용 가습 운전할 때 항온항습기(가습시 필요한 모든 소비전력을 포함)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합계로, [kW]로 표시한 것

i) 전용 가습 계수(C_H) : 전용 가습 계수는 전용 가습 능력을 전용 가습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

$$C_H = H / P_H \quad [(kg/h)/kW]$$

j) 전용 제습 능력(D) : 항온항습기를 전용 제습 운전할 때 단위 시간당 제습한 제습량으로, [kg/h]로 표시한 것

$$D = Q \cdot \rho \cdot (X_1 - X_2) \quad [kg/h]$$

여기에서, Q : 풍량 [m^3/h]

ρ : 송출공기 상태에서의 공기 밀도 [kg^*/m^3]

X_2 : 송출공기의 절대습도 [kg/kg^*]

X_1 : 흡입공기의 절대습도 [kg/kg']

k) 전용 제습 소비전력(P_D) : 전용 제습 소비전력은 항온항습기를 전용 제습 운전할 때 항온항습기(제습시 필요한 모든 소비전력을 포함)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합계로, [kW]로 표시한 것

l) 전용 제습 계수(C_D) : 전용 제습 계수는 전용 제습 능력을 전용 제습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

$$C_D = D/P_D \quad [(kg/h)/kW]$$

2. 종류 및 구조

2.1 종 류

a) 응축기 냉각 방식에 따른 구분

① 공랭식(냉방 운전시에 응축기가 공기로 냉각되는 방식)

② 수랭식(냉방 운전시에 응축기가 물로 냉각되는 방식)

b) 용량에 따른 구분

구분	정격 냉방용량 (kW)
1 군	6이상 17.5미만
2 군	17.5이상 35이하

2.2 구 조

항습항습기의 구조 일반은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성능 시험

3.1 냉방 능력 시험

a) 냉방 능력 시험은 KS C 9306 (에어컨디셔너)의 냉방 운전 시험 표준 조건에 따라 냉방 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로 시험한다.

b) 냉방 능력 시험은 안정화 된 후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방법)의 시험시간과 데이터 취득방법을 따른다(5분간 7회 데이터 취득으로 총 35분 가동)

3.2 난방 능력 시험

a) 전기가열식 난방 능력 시험은 KS C 9306 (에어컨디셔너)의 난방 운전 시험 중

전열장치 난방 표준 조건에 따라 난방 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로 시험한다.

b) 전기가열식 난방 능력 시험은 안정화 된 후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방법)의 시험시간과 데이터 취득방법을 따른다(5분간 7회 데이터 취득으로 총 35분 가동)

<표 1> 냉·난방 능력시험 온도 조건

구분	T1 (여름 냉방)	H1 (겨울 난방)
실내 공기 온도 - 건구 - 습구	 27 ± 0.3 ° C 19 ± 0.2 ° C	 20 ± 0.5 ° C 15 ± 0.5 ° C
실외 공기 온도 - 건구 - 습구	 35 ± 0.3 ° C 24 ± 0.2 ° C	 - -
응축기 물 온도 - 입구 - 출구	 30 ± 0.3 ° C 35 ± 0.3 ° C	 - -
T1 - 온대 기후 표준 냉방 능력 시험 조건 H1 - 온대 기후 표준 난방 능력 시험 조건(전기가열식인 경우에 한함)		

3.3 가습 능력 시험

a) 가습 능력 시험은 시험장치에서 가습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로 가습장치와 실내 송풍기만을 운전하고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 흡입공기온도, 송출공기온도 및 풍량을 측정하여, 송출공기 및 흡입공기의 절대습도를 구하고 1.4 용어의 정의 g)에 따라 가습능력을 산출한다.

b) 가습 능력 시험은 안정화 된 후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방법)의 시험시간과 데이터 취득방법을 따른다
(5분간 7회 데이터 취득으로 총 35분 가동)

<표 2> 가습 능력 시험조건

종류 / 항목	초음파식	기화식	원심 분무식	전열식	전극식
전 원	정격 전압(V), 60 Hz				
실내측 온 도	20±1° C (건구 온도), 13±1° C (습구 온도)				
수 온	20±1° C				
물	상수도 물				150 μS/cm의 NaCl 수용액

3.4 제습 능력 시험

a) 제습 능력 시험은 KS C 9306 (에어컨디셔너)의 제습 운전 시험 전용 제습조건에 따른다. 항온항습기의 조작 스위치를 전용 제습 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로 정상 상태에 도달한 후, 흡입공기온도, 송출공기온도 및 풍량을 측정하여, 송출공기 및 흡입공기의 절대 습도를 구하고 1.4 용어의 정의 j)에 따라 제습능력을 산출한다.

b) 제습 능력 시험은 안정화 된 후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방법)의 시험시간과 데이터 취득방법을 따른다(5분간 7회 데이터 취득으로 총 35분 가동)

<표 3> 제습 능력 시험조건

시험 조건	실내측 공기 상태		실외측 공기 상태			
			공랭식		수랭식	
	건구 온도	습구 온도	건구 온도	습구 온도	입구 수온	출구 수온
전용 제습 조건	24±0.5° C	19±0.3° C	24±0.5° C	22±0.3° C	-	-

4. 인증기술 기준

4.1 냉・난방 인증기술 기준

a) 항온항습기 냉방의 인증기술 기준은 *EER* 값으로 판단한다.

b) 항온항습기 난방의 인증기술 기준은 *COP* 값으로 판단한다.

4.2 제・가습 인증기술 기준

a) 항온항습기 제습의 인증기술 기준은 C_D 값으로 판단한다.

b) 항온항습기 가습의 인증기술 기준은 C_H 값으로 판단한다.

4.3 인증기술 기준

고효율 항온항습기는 <표 4>의 인증기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인증기술 기준

<table>
<tr><th colspan="2">시 험 항 목</th><th colspan="4">인 증 기 술 기 준</th></tr>
<tr><td>표시치 요구사항</td><td>Q_c, Q_h, P_c, P_h, EER, COP</td><td colspan="4">냉·난방 시험시 본 규정의 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제품사양에 표시된 능력의 92% 이상, 표시된 소비전력의 110% 이하, 표시된 효율계수(EER) 및 성적계수(COP)의 90% 이상일 것</td></tr>
<tr><td rowspan="6">성능 계수 요구사항</td><td rowspan="3">EER</td><td colspan="2">정격냉방능력 (6kW 이상 ~ 17.5kW 미만)</td><td colspan="2">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 35kW 이하)</td></tr>
<tr><td>공랭식</td><td>수랭식</td><td>공랭식</td><td>수랭식</td></tr>
<tr><td>$EER \geq 2.60$</td><td>$EER \geq 3.20$</td><td>$EER \geq 2.30$</td><td>$EER \geq 2.90$</td></tr>
<tr><td>COP</td><td colspan="4">$COP \geq 0.97$ (전기가열식에 한함)</td></tr>
<tr><td rowspan="2">C_H</td><td colspan="2">정격냉방능력 (6kW 이상 ~ 17.5kW 미만)</td><td colspan="2">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 35kW 이하)</td></tr>
<tr><td colspan="2">$C_H \geq 1.10$</td><td colspan="2">$C_H \geq 1.00$</td></tr>
<tr><td>C_D</td><td colspan="4">$C_D \geq 0.70$</td></tr>
</table>

5. 제품표시방법

제조자는 항온항습기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 제조자명 및 다음사항을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a) 품명 및 모델명(실내기, 실외기 모델)
b) 정격표시 냉방능력(Q_c), 정격표시 냉방 소비전력(P_c)
c) 정격표시 난방능력(Q_h), 정격표시 난방 소비전력(P_h)
d) 냉방 에너지 소비효율(EER) 및 난방 성적 계수(COP)
e) 입력 전원 방식
f)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제조자

(11) 가스히트펌프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 범위 및 개요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실내를 쾌적하게 하는 공기 조화를 목적으로 해서,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 · 난방 기기(이하 "가스히트펌프"라 한다.)이며, 정격 냉방 능력이 23 kW 이상인 것으로 규정한다.

1.2 적용 범위의 예외

다음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a) 냉방 전용인 것
b) 냉방 시 응축기 냉각 방식이 수랭식인 것
c) 전기 히터 또는 보조 전원 히터에 의한 난방기 능력을 가지는 것
d) 전산 기기용 및 올 프레시형과 같이 흡입 공기 등의 온도 조건이 특수한 것
e) 기기류, 식료품에 대한 공기 조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f) 외기만을 실내에 도입해서 공기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g) 차량용 공기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h) 그 밖에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1.3 인용 규격

다음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1525 종이 점착 테이프
KS B 0222 관용 테이퍼나사
KS B 1539 금속제 플렉시블 호스
KS B 8051 가스 열펌프－일반 요구사항
KS B 8052 가스 열펌프－비덕트형 냉 · 난방 기기－정격 성능 및 운전 성능 시험
KS B 8053 가스히트펌프－덕트형 냉 · 난방 기기－정격 성능 및 운전 성능 시험
KS B ISO 5151 덕트 없는 에어컨과 열 펌프－성능 시험 및 평가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KS M 2128 냉동기유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시험방법
KGS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1.4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가스히트펌프와 관련된 용어는 KS B 8051의 용어정의를 따른다.

a) 정격 냉방 능력

KS B 8052 및 KS B 8053의 4.2에 규정된 냉방 능력 시험 조건에 의해서 가스히트펌프 실내에서 제거되는 열량을 제품에 W로 표시한 것

b) 정격 냉방 표준 가스 소비량

KS B 8052 및 KS B 8053의 4.2에 규정된 냉방 능력 시험 조건에 의해서 가스히트펌프가 소비하는 가스량을 제품에 W로 표시한 것

c) 정격 냉방 소비 전력

KS B 8052 및 KS B 8053의 4.2에 규정된 냉방 능력 시험 조건에 의해서 가스히트펌프가 소비되는 실제 소비 전력의 합계를 장치 명판에 W로 표시한 것

d) 정격 난방 능력

정격 난방 표준 능력, 정격 난방 중온 능력 및 정격 난방 극저온 능력의 총칭으로서, KS B 8052 및 KS B 8053의 5.2에 규정된 난방 능력 시험 조건에 의해 가스히트펌프가 실내로 가해지는 열량으로서 장치 명판에 W로 표시한 것

e) 정격 난방 표준 가스 소비량

KS B 8052 및 KS B 8053의 5.2에 규정된 난방 능력 시험 조건(표준)에서 가스히트펌프가 소비하는 가스량을 장치 명판에 W로 표시한 것

f) 정격 난방 소비 전력

KS B 8052 및 KS B 8053의 5.2에 규정된 난방 능력 시험 조건(표준)에서 가스히트펌프가 소비하는 실제 소비 전력의 합계를 장치 명판에 W로 표시한 것

g) 실제 소비 전력

규정된 시간 내에 기기로 유입되는 평균 전기 입력을 말하며, 이때 전기입력은 실내기를 포함한 제어장치와 안전장치 등의 기기전체에 공급되는 전기입력을

의미한다.

h) 성적 계수

냉방 성적 계수(냉방 COP) 및 난방 성적 계수(난방 COP)의 총칭이며, 냉방 성적 계수란 냉방 능력을 냉방 가스 소비량(W)과 냉방 소비 전력(W)의 합으로 나눈 값. 난방 성적 계수란, 난방 능력을 난방 가스 소비량(W)과 난방 소비 전력(W)의 합으로 나눈 값

i) 표준 풍량

온도 20 ℃에서 표준 대기압 101.325 kPa의 건공기(밀도 1.204 kg/㎥)로 환산한 풍량

j) 정격 풍량

덕트 접속형 가스히트펌프를 정격 기외 정압에서 송풍 운전할 때 제조자가 지정하는 풍량으로 표준 풍량으로 환산한 것

k) 정격 기외 정압

덕트 접속형 가스히트펌프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기외 정압

l) 난방

실외 측에서 흡열되어 실내 측으로 방열되는 방식(히트펌프 기능에 추가적으로 엔진 배열을 회수한 온풍의 온도를 상승하게 하는 방식 포함)의 난방

m) 비덕트형

실내로 직접 공기를 취출해서 사용하는 것

n) 덕트접속형

덕트를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

o) NOx 12모드값

연간 계속적으로 표준 운전을 하는 경우에 가스히트펌프가 배출하는 연소 가스 중의 NOx의 평균 농도로서, KS B 8051 부속서 H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구해지는 값

p) CO 12모드값

연간 계속적으로 표준 운전을 하는 경우에 가스히트펌프가 배출하는 연소 가스

중의 CO의 평균 농도로서 KS B 8051 G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NOx 12모드와 같이 부속서H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구해지는 값

2. 종류 및 구조

2.1 종류

a) 송풍 방식에 의한 분류

1) 비덕트형

2) 덕트 접속형

b) 실외기와 실내기 연결타입에 따른 구분

1) 기본 멀티시스템

2) 모듈 멀티시스템

c) 용량에 따른 구분

구분	정격 냉방용량 (kW)
1 군	23이상 44이하
2 군	44초과 70이하
3 군	70초과 92이하

주) 인증적용범위는 23kW 이상이나 군별 상위용량 인증시 하위용량 성능검사 면제 조건에 적용

2.2 가스 종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

가스 종류 엔진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가스 종류

-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
-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 겸용

b) 발 열 량

가스 공급자에 의해 정해진 발열량을 말한다.

c) 가스 압력

가스 사업자의 가스 공급 규정에 정해진 압력으로서 KS B 8051 5.1에 규정한

바와 같다.

d) 정격 전압 및 정격 주파수

가스히트펌프의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100 V~220 V 또는 삼상 교류 200 V ~ 380 V로서, 정격 주파수는 50 Hz 전용, 60 Hz 전용 또는 50 Hz · 60 Hz 공용이다.

2.3 구조 및 재료

a) 가스히트펌프의 구조 및 재료일반은 KGS AA112의 재료 및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성능 시험

3.1 시험방법

a) 비덕트형 가스히트펌프의 성능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냉방능력시험 : <표 1>의 냉방능력시험 시 온도조건에서 KS B 8052의 냉방 표준시험방법을 따른다.
- 난방능력시험 : <표 1>의 난방능력시험 시 온도조건에서 KS B 8052의 난방 표준시험방법을 따른다.
- 한랭지능력시험 : <표 1>의 한랭지능력시험 시 온도조건에서 KS B 8052의 난방저온시험방법을 따르되, 제상운전발생 시 KS B ISO 15042의 부속서(난방 능력 시험 절차)에 따른다.

b) 덕트 접속형 가스히트펌프의 성능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냉방능력시험 : <표 1>의 냉방능력시험 시 온도조건에서 KS B 8053의 냉방 표준시험방법을 따른다.
- 난방능력시험 : <표 1>의 난방능력시험 시 온도조건에서 KS B 8053의 난방 표준시험방법을 따른다.
- 한랭지능력시험 : <표 1>의 한랭지능력시험 시 온도조건에서 KS B 8053의 난방저온시험방법을 따르되, 제상운전발생 시에는 KS B ISO 15042의 부속서(난방 능력 시험 절차)에 따른다.

<표 1> 성능 시험 시 온도조건

시 험 조 건	실내 공기 온도(℃)		실외 공기 온도(℃)	
	건구 온도	습구 온도	건구 온도	습구 온도
냉방능력시험	27.0±0.3	19.0±0.2	35.0±0.3	24.0±0.2
난방능력시험	20.0±0.3	15.0±0.2	7.0±0.3	6.0±0.2
한랭지능력시험	20.0±0.3	15.0±0.2	-15.0±0.3	-

c) 가스통로 기밀성능 시험방법은 KGS AA112의 기밀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d) 절연저항 시험방법은 KGS AA112의 절연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e) 연소성능 시험방법은 KGS AA112의 연소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f)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겸용 제품인 경우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시험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다. 단, 도시가스(천연가스)로만 시험하여 인증을 기 취득한 제품인 경우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 겸용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액화석유가스로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g) 배출가스 시험방법은 KS B 8051의 부속서 G, H를 따른다.

3.2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에 따른 세부적용 기준

a)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2>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기본모델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관련자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표 2>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외 형[1]	시험 면제
2	열교환기[2]	성적계수
3	팽창밸브	성적계수
비 고		[1] 외형변경은 구조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변경(색상, 디자인 등)에 한함. [2] 동일한 재질, 형태, 구조이면서 전열면적이 동등 이상일 경우에 한함.

4. 인증기술기준

4.1 모듈화 시험

a) 실외 유닛을 기준으로 모델 유닛의 조합으로 대용량의 모델이 정해질 경우 각각의

모델 유닛의 합산으로 모듈화 시험을 할 수 있다. 모듈화 시험 시에는 조합모델 각각이 인증기술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모델 유닛의 시험결과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다.

예) 25 kW급 모델 유닛 1기와 23 kW급 모델 유닛 1기를 조합하여 총 48 kW급 모델을 시험할 시 각각의 25 kW급 모델과 23 kW급 모델의 시험결과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b) 모듈화는 실외유닛의 기술이 같은 경우에만 한하며, 실외유닛의 기술이 서로 다른 경우는 각각 독립적으로 시험을 한다.

4.2 인증기술기준

가스히트펌프는 <표 3>의 인증기술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인증기술기준

구 분	인 증 기 술 기 준	
구조 및 일반	적합	KGS AA112 재료 및 구조
성능요구사항	냉·난방 시험시 운전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제품사양에 1) 표시된 냉방능력 및 난방능력의 95 % 이상 2) 표시된 냉방 표준가스소비량 및 난방 표준가스소비량의 110 % 이하 3) 표시된 냉방 및 난방소비전력의 110 % 이하 4) 표시된 냉방 및 난방성적계수의 90 % 이상 5) 한랭지능력은 표시된 냉방능력의 85 % 이상일 것	
성적계수	냉방성적계수 ≥ 1.20	
	난방성적계수 ≥ 1.40	
	한랭지성적계수 ≥ 0.90	
기밀성능	가스누설량 0.07 L/h 이하	KGS AA112 기밀성능
절연저항	1 ㏁ 이상	KGS AA112 절연성능
연소성능	CO농도 0.28 % 이하	KGS AA112 연소성능
배출가스 농도	1) NOx ≤ 20 ppm (NOx 12모드값) 2) CO ≤ 800 ppm (CO 12모드 값)	

5. 시험설비(필수 보유 장비 포함)

a) 전력측정장치*

b) 내전압 시험장치

c) 절연저항

d) 열량측정장치*

e) 가스미터

f) 압력 측정장치

g) 배기가스 분석기*

(주) *는 고효율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대체가 가능한 설비

6. 제품표시방법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모델명

3)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 인증마크

4) 냉방성적계수, 난방성적계수, 한랭지성적계수

5) 실외유닛 기준(냉방) : 정격표시 냉방능력(W), 정격 냉방 표준가스 소비량(W), 정격표시 냉방 소비전력(W)

6) 실외유닛 기준(난방) : 정격표시 난방능력(W), 정격 난방 표준가스 소비량(W), 정격표시 난방 소비전력(W)

7) 실외유닛 기준(한랭지) : 정격표시 한랭지능력(W), 정격 한랭지 표준가스 소비량(W), 정격표시 한랭지 소비전력(W)

8) 가스 종류

9) 전원(φ, V, Hz)

10) 냉매명 또는 그 기호 및 냉매 충전량(kg)

11) 압축기오일명

12) 설계 압력(고압부, 저압부)(MPa)

13) 제조자명(제조국가), 제조년월, 제조 번호 또는 로트 번호

14) 총 질량[대략의 질량(kg)]

15) 정격 풍량(m^3/min) (필요시)

16) 정격 기외 정압(Pa) (필요시)

17) A/S 연락처

※ 표시 항목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 장치 명판을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2) 전력저장장치(ESS)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종류

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 2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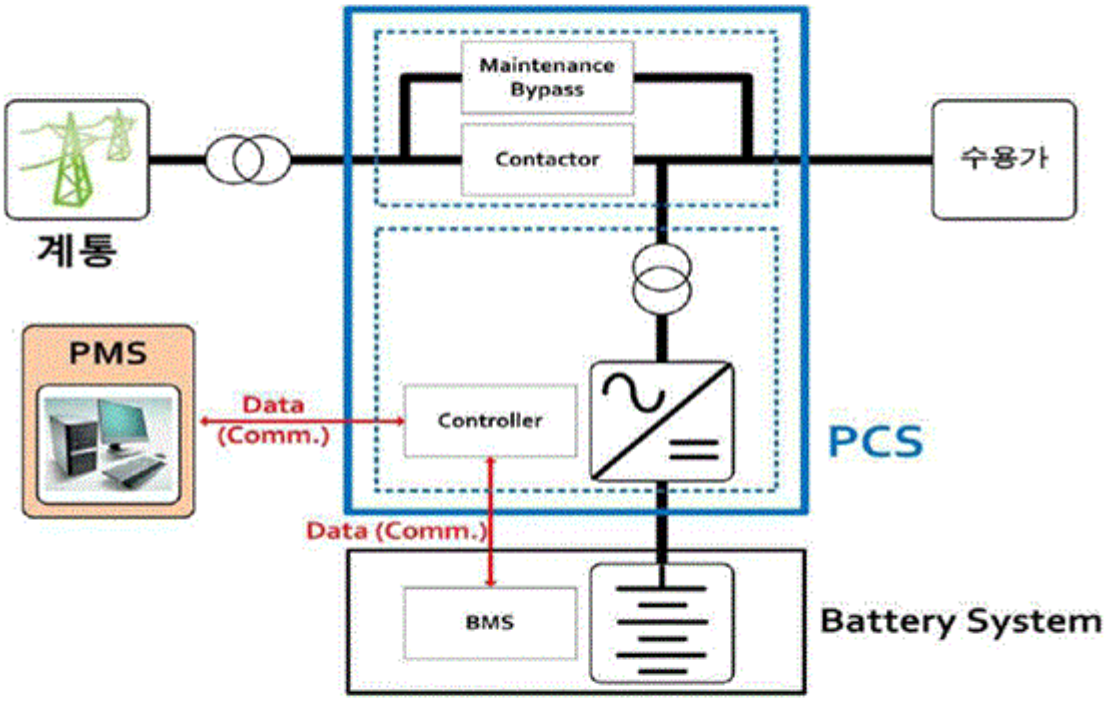

[그림 1] 전력저장장치 개념도

(PCS 및 Battery system을 포함 한 것으로 계통으로 부터 입력 및 수용가측 출력으로 구분함)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 시간 이상으로 함

2차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력을 이용함으로써, 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 연계·비상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용도에 따라 외부 PMS와의 통신이 필요할 경우 통신 기능수행을 위한 하드웨어 (예 : 모뎀) 포함

2.1 인용규격

SPS-C KBIA-10104-03-7312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 이차 전지시스템 – 성능 및 안전 요구사항

SPS-C KBIA-10304-02-7386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흐름 전지시스템 – 성능 및 안전 요구사항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

2.2 용어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완전 충전 : 제조사가 기술 문서에 이차전지를 완전 충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전압까지의 충전

2) 완전 방전 : 제조사가 기술 문서에 이차전지를 완전 방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전압까지의 방전

3) 정격 용량 : PCS 정격(kW) 및 PCS 정격(kW)으로 연속 출력 가능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 전력량(kWh) 표기 예) 100 kW × 2 h

4) 시스템 대기상태 : 제조자 기술시방에 기술된 상태

2.3 효율기준 및 시험방법

다음 기준 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기준

전력저장장치 용량 (PCS 기준)	효율(%)	
	리튬이차전지	흐름전지
10 kW 미만	84	70
10 kW이상 ~ 30 kW 미만	87	
30 kW이상 ~ 100 kW 이하	89	
100 kW초과 ~ 250 kW 이하	89.2	75
250 kW초과 ~ 500 kW 이하	89.0	
500 kW초과 ~ 1000 kW 이하	88.6	

2.3.1 전력저장장치 용량 100 kW이하 시험방법 및 측정설비

1) 시험방법

① 효율 측정을 위한 온도 조건 : 25 ℃ ± 5 ℃

※ 비고 : 오픈된 공간에서 시험하며, 강제 냉각시키지 않고, 효율측정 중, 효율측정의

포함 대상이 되는 디바이스들이 동작할 경우 모두 효율 계산에 포함한다.

② 완전방전상태에서, 정격전력(kW)으로 전력저장장치를 완전 충전하여 충전된 전력량(kWh)을 측정한다.

③ 30분 간 전력저장장치를 시스템 대기 상태로 둔다.

④ 정격 전력으로 완전 방전(방전시간은 2 h 이상 이며, 방전시간 + 1 min 이내)하여, 전력량(정격전력량 + 1 kWh 이내)을 측정함(출력전압은 정격전압 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정확히 2시간 동안 100 kW로 방전하여 방전량 (200 kWh + 1 kWh 이내)을 측정 하며, 방전 중에는 계통 입력은 차단한다.)

⑤ ④에서 측정한 방전전력량(예 : 정격전력량 + 1 kWh 이내 기준)을 (2)에서 측정한 충전전력량으로 나누어 효율을 정한다.

효율(%) = 방전 전력량(kWh) / 충전 전력량(kWh) × 100

⑥ 효율측정시 포함 대상 : PCS 내부 제어전원, PCS 내부 냉각전원, PCS 내부 전등전원, Battery BMS전원, Battery 내부 냉각전원

⑦ 효율측정시 제외 대상 : 부대설비(ESS에 별도로 구성 된 설비 예 : 별도 콘테이너 사용 시 온도 조절용 공조장치, 전등 및 기타 조명관리 시설, 자동소방설비등 안전보조장치)에 따른 효율 제외

⑧ 효율은 최소 2회 이상 측정(약 30분 시간간격)하여 평균값으로 하며, 표기는 ⑥ 및 ⑦을 고려하여 전력저장설비 명판의 표시사항에 기록하고(효율 포함 대상 표기), 별도 항목으로 부대설비의 소비전력을 표시한다.

2) 측정 설비

① 측정범위 이내로, 온도 유지가 가능한 측정 룸

② 측정 오차 한계가 다음의 값 이내인 전력 계측기를 이용한다.
기본파에서 교류 전력계측 정밀도 ± 0.2 % 이하
전압 및 전류를 별도 계측할 경우 위의 전력계측 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2.3.2 전력저장장치 용량 100 kW초과 시험기준 및 방법

1) 시험기준

① 전력저장장치용 배터리(전지시스템) 효율(%)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 전지시스템 : 전지시스템 구성이 유닛 랙으로 직렬 혹은 병렬로 연결 되었을 경우, 해당시험 항목은 유닛 랙으로 시험
- 배터리(전지시스템) 효율(%) = 배터리(유닛 랙)효율(%) + (-0.0255 x (전지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유닛 랙의 수량-1))

② 전력변환장치(PCS) 입·출력 변환효율은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구 분	전력변환장치(PCS)
변환효율(AC → DC)	97 % 이상
변환효율(DC → AC)	97 % 이상

③ 전력저장장치 용량 100 kW 초과 시에는 정격출력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배터리 효율(%)과 전력변환장치(PCS)의 입·출력 변환효율의 곱으로 <표 1>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 전력저장장치(ESS) 효율(%) = 배터리(전지시스템) 효율(%) × PCS(AC → DC)변환 효율(%) × PCS(DC → AC)변환효율(%)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2) 시험방법

① 공급자가 정한 정격출력에서 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배터리 효율을 측정한다.

② PCS를 정격 출력으로 기동하여 1시간 경과 후 교류→직류 변환 효율 및 직류→교류 변환 효율을 측정한다.

③ PCS 교류입력전압(AC입력), 직류출력전압(DC배터리 쪽 출력) 및 주파수는 정격값으로 한다.

※ 시험조건 : 온도 (5 ~ 30) ℃ , 습도 80 % R.H. 이하

④ 효율 측정 중, 직류 쪽의 전압 또는 전류 및 교류 쪽의 전압 또는 전류는 정격값에서 제조사가 제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해 효율을 산출한다.

$$\text{교류}\rightarrow\text{직류변환효율} = \frac{\text{직류출력전력}}{\text{교류입력전력}} \times 100\%$$

⑤ PCS의 직류→교류 변환 효율은 PCS 교류출력전압(AC출력), 직류입력전압(DC 배터리 쪽 입력) 및 주파수는 정격값으로 한다.

⑥ 효율 측정 중, 직류 쪽의 전압 또는 전류 및 교류 쪽의 전압 또는 전류는 정격값에서 제조사가 제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해 효율을 산출한다.

$$\text{직류}\rightarrow\text{교류변환효율} = \frac{\text{교류출력전력}}{\text{직류입력전력}} \times 100\%$$

⑦ DC 출력 쪽은 저항부하 혹은 동등한 설비를 이용하며, AC 입력은 AC power source 등을 이용한다. AC 출력 쪽은 계통을 모의하는 AC 시뮬레이터를 이용

하며, DC 입력은 DC power source 등을 이용한다.

※ 전력변환장치(PCS) 입·출력 변환효율에 대한 측정은 시험대상 PCS와 동등 용량이상 PCS의 DC측을 서로 연결하고, AC측 입/출력 단을 각각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한 시험방법을 할 수 있다.

2.4 절연저항시험

1) 절연저항 값 : 1 MΩ이상으로 한다.
전력저장장치의 입력일괄과 대지 및 출력 일괄과 대지사이

2) 시험방법 : 절연저항은 시험품의 전력저장장치의 입력 및 출력이 500 V 미만에서는 500 V 절연저항계로, 500 V 이상에서는 1 000 V 절연저항계를 사용한다.

※ 전원을 모두 정전시킨 상태에서 배터리, 서지 보호기 및 노이즈필터를 회로로부터 분리하여 실행할 수 있다.

2.5 절연내력시험

1) 시험방법 : 전력저장장치의 입력일괄과 대지 및 출력일괄과 대지사이

※ 전원을 모두 정전시킨 상태에서 배터리, 서지 보호기 및 노이즈필터를 회로로부터 분리하여 실행할 수 있다.

2) 시험 전압 : <표 2>에 해당하는 시험전압을 1분간 연속 인가하였을 때, 절연파괴가 없어야 한다.

<표 2> 시험전압

구분	시험전압	
	50 V 이하	50 V 초과
교류	500 Vrms	(동작전압 + 1200 Vrms) 최소 1500 Vrms 이상
직류	500 Vrms	(시스템전압 + 1200 Vrms) 최소 1500 Vrms 이상

2.6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3>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기본모델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관련 자료 등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의 경우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 및 관련 자료 등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표 3>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외형(케이스) 형상	시험면제
2	PCS(동일정격)	효율*
3	배터리	효율*
비고	* 100 kW 이하 ESS의 경우에도 100 kW 초과 ESS와 동일한 방법으로 효율 시험 가능	

2.7 복수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복수 부품 등재에 따른 인증 신청 시 복수부품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표 4>의 복수부품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 복수 부품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PCS(동일정격)	효율*
2	배터리	효율*
비고	* 기존 모델의 고효율인증이 유효한 경우 100 kW 이하 ESS의 경우에도 100 kW 초과 ESS와 동일한 방법으로 효율 시험 가능	

3. 시험설비(필수 보유 장비 포함)

1) 전력분석기
2) 절연저항계
3) 상용주파 내압기
4) 전압계
5) 부하 시뮬레이터*
6) 그리드 시뮬레이터*

주 : *는 고효율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대체가 가능한 설비

4. 제품 표시사항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e 마크) 및 제조자명을 각인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판에 다음 사항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모델명
2) 명 칭

3) 정격 출력, 방전시간(@정격출력)

4) 효율

5) 제조년월

6) 제조번호

7)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8) 제조국(PCS, 배터리, ESS)

(13)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범위 및 개요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사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 장치(전력량 인출 장치, 동기 접속 장치, 외부 릴레이 장치, 원격 제어 장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어전원은 AC (110 ~ 220) V 및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 통신방식은 RS232C, RS485, 및 Ethernet 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이 8개 이상이고, 사용소비전력은 20 W 이하인 제품에 적용한다.

1) 구성품 및 정격

① 구성품

본 표준의 적용을 받는 계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성 품	주 기 능	비 고
본체 장치	연산 및 부하 제어	실내 설치형 단독 장치 또는 PC 장치 및 기타
동기 접속 장치	전력량계의 수요 시한 검출 및 본체 전송	단독 장치
전력량 인출 장치	사용 전력량 검출 및 펄스 변환 후 본체 전송	단독 장치
관리자용 소프트웨어	전력 상황 모니터링 및 프린터 출력	
원격 제어 장치	동신 연결을 통한 원격 부하 제어	
외부 릴레이 장치	현장 부하 제어용 릴레이 시퀀스 제공	현장 신호선 직접 결선

② 정격

ⓐ 제어전원 : AC (110 ~ 220) V 및 DC (110 V ~ 125) V 를 포함하는 Free volt 일 것

ⓑ 통신방식 : RS232C, RS485, 및 ethernet 통신이 가능 할 것

ⓒ 출력접점 : 직접 제어하는 접점이 8개 이상일 것 (10 A, 250 V)

ⓓ 사용전력 : 20 W 이하 일 것

2) 성능

본 장치는 다음의 기능을 가져야 하며, 각각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수요 전력의 조정 기능

ⓐ 현재 전력을 계산하여 예측 전력과 기준 전력을 비교하여야한다.

ⓑ 예측 전력이 최대 수요 전력을 초과할 경우 부하를 차단시켜야 한다.

ⓒ 1개의 본체에서 최소 8개 이상의 부하를 개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룹 제어를 통해 그 이상의 부하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의 경보가 출력되어야 한다.

- 현재 수요 전력이 기준 전력을 넘어설 경우
- 부하 제어가 들어가는 경우
- 부하기 모두 차단되었을 경우

② 표시부

ⓐ 현재 전력 및 남아 있는 수요 시한 표시

ⓑ 목표 전력

ⓒ 예측 전력

ⓓ 일/월/년의 최대 수요 전력 표시

ⓔ 각종 설정 데이터(펄스 상수, PT/CT비, 부하 제어 방법, 부하 용량 등) 표시

ⓕ 현재 날짜, 시간, 요일의 표시

③ 조작부

ⓐ 키 조작에 의하여 데이터 설정 및 보기가 용이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환경에서 설정 데이터의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통신부

ⓐ 관지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전용 통신 포트

ⓑ전력 회사의 온라인 직접 제어를 위한 별도의 전용 통신 포트

⑤ 출력부

ⓐ 본체의 부하 제어 출력단자에서 현장 신호선을 직결하여, 외부, 릴레이 장치로 연결 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 출력 등의 용도로 별도의 출력단자가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⑥ 수용가별 환경 설정

ⓐ 부하 제어 방법을 "순차 제어", "우선순위 제어", "복잡 제어" 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부하 제어 시간을 부하 차단시와 부하 투입시 각각 설정 가능하여야한다.

ⓒ 수동으로 부하 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전기 요금 규정에 따른 수용가의 구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변성기부의 PCT 비와 펄스 상수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치에서 경보 출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정보 출력은 별도의 출력

단자로 수용가의 경보 장치에 출력 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용 S/W와 통신 속도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어 대상 부하의 특성에 따라 차단용 출력과 투입용 출력이 별도로 각각 구분되어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

⑦ 보상 기능

기능 연속으로 1개월간의 데이터 보존이 가능하야여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기능이 복전 후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기능

ⓐ 전기 요금 종별에 따른 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기본 공휴일을 제외한 추가 임시 공휴일 입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⑨ 데이터 저장 기능

ⓐ 일보

- 최소 3 개월(1 분기) 이상의 일보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 매 15분마다 최대 수요 전력 상태가 저장되어야 한다.
- 일사용 전력량(kWh)이 저장 되어야 한다.

ⓑ 월보

- 최소 1년 이상의 월보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 연 사용 전력량(kWh)이 저장되어야 한다.

ⓒ 연보

- 최소 1년 이상의 월보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 연 사용 전력량(kWh)이 저장되어야 한다.

ⓓ 정전 상황

- 정전 발생시 발생 시간 및 복건 시간이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변경 상황

- 특정 데이터들의 변경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⑩ 온라인 직접 제어 기능

ⓐ 온라인 직접 제어 포트가 지원되어야 한다.

ⓑ 센터에서 개별 수용가에 대한 일일 시간별 목표 전력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 현재 전력 사용 현황(최대 수요 전력, 순시 전력량)이 센터에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온라인 직접 제어 포트의 통신 속도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⑪ 최대 수요 전력량계의 사용 전력량 및 15 분 수요 시한 지시계가 본체와 일치하여야 한다.

ⓐ 최대 수요 전력량계의 수용가 서비스 단자 개방에 관계없이 한전 계기와 본체의 15분 수요 시한 오차는 월 30 초 이내이어야 한다.

⑫ 동기 접속 장치

ⓐ 최대 수요 전력량계의 수요 시한 리셋시 수요 시한 동기 펄스를 출력 할 수 있어야 한다.

ⓑ 최대 수요 전력량계의 타입에 관계없이 수요 시한 검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검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⑬ 관리자용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근무지에서 상시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부하의 제어 상태 및 전력 사용수를 감시할 수 있고, 최대 수요 전력 관리 장치의 설정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⑭ 모니터링 기능

ⓐ 일반 PC에서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표시 기능으로 목표 전력, 예측 전력, 현재 전력, 기준 전력이 실시간으로 출력되어야 한다.

ⓒ 수요 시한 동안에 현재 전력과 기준 전력의 동향을 기록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장치의 설정 데이터를 관리자용 S/W에서 요청하면 화면상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 화면상에 부하 상태가 상시적으로 출력되어야 하며, 부하 차단 및 복귀의 ON/OFF 시간이 표시 되어야 한다.

ⓕ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장치의 경보 상태를 상시적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장치의 남은 수요 시한을 기본 화면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장치의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⑮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장치의 설정 데이터 변경

ⓐ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장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읽고 관리자가 근무지에서 수시로 데이터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안 유지를 위하여 데이터 읽기 및 수정에서는 암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동작 모드가 "수동"일 때 부하를 관리자용 프로그램에서 임의로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 부하 제어 모드를 "순차 제어/우선 순위제어" 중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 수용가의 전력량계의 "펄스 정수"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용가의 "CT/PT 비"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용가의 "목표 전력"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요 시한"시간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어 모드 "자동/수동"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보 출력 상태 "ON/OFF"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장치와 통신에 관련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⑯ 보고서 기능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자용 S/W 조작을 통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보

- 출력 제목
- 출력 년, 월, 일, 시, 분
- 출력하고자 하는 해당 일보의 년, 월, 일
- 해당일의 수요 시한에 사용한 최대 수요 전력이 기록되어야 하며 일일 최대 수요 전력 및 일일 합계 전력량이 기록되어야 한다.

ⓑ 월보

- 출력 제목
- 출력 년, 월, 일, 시, 분
- 출력하고자 하는 해당 일보의 년, 월
- 해당월 일별 최대 수요 전력 및 합계 전력량, 월 최대 수요 전력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연보

- 출력 제목
- 출력 년, 월, 일, 시, 분
- 출력하고자 하는 해당 일보의 년
- 전년 및 금년 중 선택하여 월 최대 수요 전력 및 연간 최대 수요 전력과 연간 합계 전력량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전 보고

- 출력 제목
- 출력 년, 월, 일, 시, 분
- 출력하고자 하는 해당 일보의 년, 월, 일
- 출력 시점까지 발생된 정전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

ⓔ 결과 보고

- 출력 제목
- 출력 년, 월, 일, 시, 분
- 출력 시점까지 발생된 정보의 변경 또는 에러 발생에 관련된 정보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조

① 계기는 정상 동작 위치와 정상 동작상태에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통상의 온도 및 습도 변화, 진동,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② 계기는 각 구성 부품에 이물질,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는 상자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장치의 구성

장치 구성은 본체와 동기 접속 장치와 전력량 인출 장치 및 원격 제어 장치 혹은 외부 릴레이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 본체 장치

최대 수요 전력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중앙 처리 장치부와 사용자가 간단한 키 조작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설정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각종 정보와 동작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및 설정부, 외부 신호와 동기 접속 장치 또는 전력량 인출 장치와 접속시켜 주는 DIO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 동기 접속

장치 최대 수요 전력량계의 15분 수요 시한 지시계의 동작을 비접촉 방식으로 인지하여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변환부 및 변환 된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여 최대 수요 전력량계의 수요시한 리셋 여부를 검출하는 연산부로 구성되어 본체 장치에서 수요 시한에 동기하여 연산 처리되어야 한다. 수요 시한 오차 범위는 월 30초 이내이어야 한다.

ⓒ 전력량 인출 장치

그 상 및 선식에 적당한 소자가 사용되어 전력량 측정을 할 때 오차 범위가 20 % 이내이어야 하고, 그것을 부상할 수 있도록 본체 장치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 부하에 정확하게 비례하여야 하며,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펄스가 발생되어 본체 장치에서 연산 처리되어야 한다.

ⓓ 원격 제어 장치 혹은 외부 릴레이 장치

본체 장치의 연산 결과에 따라 제어 대상 부하에 대한 ON/OFF 제어 명령을 제공 받아 현장의 부하를 직접 제어 한다.

1.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 하고,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C 1213 :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장치
- SPC-KEMC 1120-0579 : 디지털 보호계전기

- 한국전력공사 기술규격"건물 냉난방기기 원격관리시스템"
- IEC 60255-5 : Insulation coordination for measuring relays and protection equipment – Requirements and tests
- IEC 61000-4-2 :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Electrostatic immunity test
- IEC 61000-4-3 :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Radiated, radio-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 immunity test
- IEC 61000-4-4 :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Electrical fast transient/burst immunity test
- IEC 61000-4-5 :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Surge immunity test
- IEC 61000-4-6 :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Immunity to conducted disturbances, induced by radio-frequency fields
- IEC 61000-4-18 :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Damped oscillatory wave immunity test
- IEC 60255-11 : Voltage dips, short interruptions, variations and ripple on auxiliary power supply port
- CISPR 11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Radio-frequency disturbance characteristics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 IEC 60255-21-1 : Vibration, shock, bump and seismic tests on measuring relays and protection equipment - Section One - Vibration tests (sinusoidal)
- IEC 60255-21-2 : Vibration, shock, bump and seismic tests on measuring relays and protection equipment - Section Two - Shock and bump tests
- IEC 60255-21-3 : Vibration, shock, bump and seismic tests on measuring relays and protection equipment - Section 3: Seismic tests
- IEC 60068-2-1 : Environmental testing – Test A: Cold
- IEC 60068-2-2 : Environmental testing – Test B: Dry heat

1.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장치 : 일정 계약 전력이상 되는 수용가에 대하여 수요 시한 동안의 사용전력과 수요 시한 리셋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수요 시한 종료 시까지 사용 전력이 설정된 목표전력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 및 투입하고, 사용된 전력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전력 공급처 등에서 전력 수급 필요시 온라인 직접 제어를 통해 수용가의 피크 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

2) 수요 시한 :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의 길이로 국내의 경우 15 분으로

설정되어있음

3) 수요 전력 : 수요 시한 동안 측정된 전력의 평균 값

4) 목표 전력 : 수용가의 수요 전력을 전력 소비 상태와 제어 가능 부하의 용량에 따라 제어하고자 설정한 전력

5) 기준전력 : 설정된 목표 전력에 대한 현재 값으로 현재 전력과 비교하여 제어하기 위한 전력

6) 최대 수요 전력 : 전력량계에 기록되는 전력으로 수요 전력 측정 기간 중에 수요 전력의 최대값

7) 예측 전력 : 수요 시한이 끝나는 시험의 전력을 미리 예상한 전력으로, 단위 시간 동안 전력 변화와 현재 수요 전력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수요 시한이 종료 되면 자동 리셋 되는 계측 값

8) 현재 전력 : 수요 시한 시작부터 현 시점까지 실제 사용된 적산 누계값으로 수요 시한이 종료되면 자동 리셋 되는 계측 값

1.4 사용 환경 조건

사용 환경 기준은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온도 범위 : 장치의 동작 온도 범위는 -10 ℃ ~ 50 ℃

2) 상대습도범위 : RH 10 % ~ 90 %

2.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2.1 성능

성능은 1.1 2)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소비전력 : 정상사용상태에서 20W이하여야 한다.

2.3 내환경 시험 및 EMC시험

1) 절연저항 측정

측정 구분	절연저항
전기회로 - 대지간	10 MΩ 이상
전기회로 상호간	5 MΩ 이상

2) 상용 주파 내전압

상용 주파수 전압을 전기회로-대지간, 전기회로 상호간 및 접점회로 단자 상호간에 인가하여 1분간 견디며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측정 구분	시험 전압(V)	시험 조건
전기회로 - 대지간	2 000	- 60V 이하 회로는 500V
전기회로 상호간	2 000	
접점 상호간	1 000	

3) 뇌 임펄스 내전압

뇌 임펄스 전압을 정·부 극성별로 각 3회 인가하여 견디어야 하며 시험 후 성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인가 회로	시험 전압(kV)	시험 조건
전기회로 일괄 - 대지간	5	- 뇌 임펄스 1.2×50μs 파형인가 - 정·부 극성별로 각각 3회 인가 - 60V 이하 회로는 1.5kV 인가
변성기 회로 상호간	5	
변성기 회로 제어회로간	5	
제어회로 상호간	3	
제어회로 단자간	3	

4) 전자기적합성(EMC) 시험

① 정전기 내성 시험

ⓐ 제어전원 : 정격제어전원

ⓑ 전력 펄스신호 모의 장치 연결

ⓒ 통신 모의 장치 연결

ⓓ 인가전압 : 접촉 6kV, 기중 8kV

ⓔ 인가횟수 : 정부극성 각 10회를 1초 간격으로인가

ⓕ 판정조건 : 시험 중 순간적인 기능저하는 허용하나 자기회복이 되어야하고 출력접점 등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 후 각종 정정치 및 저장된 데이터 변동이 없어야 한다.

② 무선주파 방사 내성 시험

ⓐ 제어전원 : 정격제어전원

ⓑ 전력 펄스신호 모의 장치 연결

ⓒ 통신 모의 장치 연결

ⓓ 전계 : 10V/m

ⓔ 주파수 : 80 ㎒ ~1 ㎓, 1.4 ㎓ ~2.7 ㎓

ⓕ 판정조건 : 시험 중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 후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③ Fast Transient Burst 내성 시험 : IEC 61000-4-4

ⓐ 제어전원 : 정격제어전원

ⓑ 전력 펄스신호 모의 장치 연결

ⓒ 통신 모의 장치 연결

ⓓ 시험전압

- 제어전원 회로 : 4kV/2.5kHz, CDN 사용
- 전압 및 전류 회로 : 4kV/2.5kHz, CDN 사용
- 접점 입출력 회로 : 4kV/5kHz, CDN 사용
- 통신회로 : 2kV/5kHz, 정전결합장치 사용

ⓔ 시험극성 및 주기: 정극성, 부극성(극성별 2분 이상)

ⓕ 판정조건 : 시험 중 순간적인 기능저하는 허용하나 자기회복이 되어야하고 출력접점 등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 후 각종 정정치 및 저장된 데이터 변동이 없어야 한다.

④ Surge 내성 시험

ⓐ 제어전원 : 정격제어전원

ⓑ 전력 펄스신호 모의 장치 연결

ⓒ 통신 모의 장치 연결

ⓓ 시험전압

- 제어전원 회로 : 차동모드 2kV, 공통모드 4kV
- 전압 및 전류 회로 : 차동모드 1kV, 공통모드 2kV
- 접점 입출력 회로 : 차동모드 1kV, 공통모드 2kV
- 통신회로 : 공통모드 1kV

ⓔ 출력임피던스 : 제어전원 (2, 12) Ω
전압, 전류 및 입출력 접점회로 : 42 Ω

ⓕ 시험극성 및 횟수 : 정극성, 부극성(극성별 5회)

ⓖ 인가 간격 : 60 초

ⓗ 판정조건 : 시험 중 순간적인 기능저하는 허용하나 자기회복이 되어야하고 출력접점 등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 후 각종 정정치 및 저장된 데이터 변동이 없어야 한다.

⑤ 무선주파 전도내성 시험

ⓐ 제어전원 : 정격제어전원

ⓑ 전력 펄스신호 모의 장치 연결

ⓒ 통신 모의 장치 연결

ⓓ 시험전압 : 10V

ⓔ 주파수 대역 : 150㎑~ 80㎒

ⓕ 판정조건 : 시험 중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 후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⑥ 진동성 Surge 내성 시험

ⓐ 시험 주파수 : 100kHz 및 1MHz

ⓑ 제어전원 : 정격제어전원

ⓒ 전력 펄스신호 모의 장치 연결

ⓙ 통신 모의 장치 연결

ⓚ 시험전압

- 제어전원 회로 : 차동모드 1kV, 공통모드 2.5kV
- 전압 및 전류 회로 : 차동모드 1kV, 공통모드 2.5kV
- 접점 입출력 회로 : 차동모드 1kV, 공통모드 2.5kV
- 통신회로 : IEC 61000-4-18에 따름

ⓛ 시험극성 및 인가시간 : 정극성, 부극성 각 10초 이상

ⓜ 판정조건 : 시험 중 순간적인 기능저하는 허용하나 자기회복이 되어야하고 출력접점 등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 후 각종 정정치 및 저장된 데이터 변동이 없어야 한다.

⑦ 전자파장해시험

ⓐ 잡음단자전압측정

주파수 ㎒	한계치 dB㎶	
	준첨두치 Quasi-peak	평균치 Average
0.15 ~ 0.5	79	66
0.5 ~ 30	73	60

ⓑ 잡음전계강도측정

주파수 ㎒	준첨두치(Quasi-peak) 한계치 dB㎶/m
30 ~ 230	40
230 ~ 1 000	47

* 피시품의 크기가 1.5m x 1.5m x 1.5m를 넘지 않는 경우 3m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때 위의 한계치에 10.5 dB㎶/m를 증가시킨 값을 기준치로 적용한다.

⑧ 제어전원이상시험

ⓐ 제어전원 순단 시험 : 정격제어전원의 0 %

제어전원 : 정격제어전원

전력 펄스신호 모의 장치 연결

통신 모의 장치 연결

시험 전압 및 인가 시간 : 0 V, (0.5, 1, 2.5, 5, 10, 25) cycles

판정조건 : 시험 중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 후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 제어전원 순단 시험 : 정격제어전원의 40 %

제어전원 : 정격제어전원

전력 펄스신호 모의 장치 연결

통신 모의 장치 연결

시험 전압 및 인가 시간 : 88 V, 30 cycles

판정조건 : 제어전원이 순단될 때 오동작, 오표시, 부동작 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며, 기계적인 파괴가 없어야 한다.

ⓒ 정전시험

제어전원 : 정격제어전원

전력 펄스신호 모의 장치 연결

통신 모의 장치 연결

시험 전압 및 인가 시간 : 0 V, 300 cycles,

판정조건 : 제어전원 정전 시 오동작, 오표시, 부동작 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며, 기계적인 파괴가 없어야 한다.

ⓓ 전압변동시험

제어전원 : 정격제어전원

전력 펄스신호 모의 장치 연결

통신 모의 장치 연결

시험 전압 : 176 V ~ 264 V

판정조건 : 시험 중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 후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⑨ 온도특성시험

ⓐ 동작 보증 : - 20 ℃ 4 h, 55 ℃ 4 h

제어전원 : 정격제어전원

전력 펄스신호 모의 장치 연결

통신 모의 장치 연결

판정조건 : 시험 중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 후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 복원 보증 : - 30 ℃ 4 h, 70 ℃ 4 h

제어전원 및 전압 변성기 : 무통전

전류 회로 : 무통전

판정조건 : 시험 후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 후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⑩ 진동 및 충격, 지진 시험

구분		시험방법 및 기준
진동 시험	진동 응답	- 주파수 범위 : 10 Hz ~ 150 Hz - 절점(crossover) 주파수 : 60 Hz - 가진력 60 Hz 이하 : 변위진폭 0.035 ㎜(편진폭) 60 Hz 이상 : 가속도 0.5 G(4.9 ㎧) - 스위프 사이클 : 1(약 8 분) - 가진 방향 : 전후, 좌우 및 상하 - 시험 중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을 것
	진동 내구	- 주파수 범위 : 10 Hz ~ 150 Hz - 가속도 : 1 G(9.8㎧) - 스위프 사이클 : 20(약 160 분) - 가진 방향 : 전후, 좌우 및 상하 - 시험 후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
충격 시험	충격 응답	- 펄스파형 : 정현반파 - 최대가속도 : 5 G(49 ㎧) - 펄스지속시간 : 11 ㎳ - 인가방향 : 전후, 좌우 및 상하 - 인가횟수 : 각 방향 정부극성 3 회 - 시험 중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을 것
	충격 내구	- 펄스파형 : 정현반파 - 최대가속도 : 15 G(147 ㎧) - 펄스지속시간 : 11 ㎳ - 인가방향 : 전후, 좌우 및 상하 - 인가횟수 : 각 방향 정부극성 3 회 - 시험 후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
	충돌	- 펄스파형 : 정현반파 - 최대가속도 : 10 G(98 ㎧) - 펄스지속시간 : 16 ㎳ - 인가방향 : 전후, 좌우 및 상하 - 인가횟수 : 각 방향 정부극성 1 000 회 (1 초 간격) - 시험 후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
지진시험		- 주파수 범위 : 1 Hz ~ 35 Hz - 절점(crossover) 주파수 : 8.5 Hz - 수평방향 가진력 8.5 Hz 이하 : 변위진폭 3.5 ㎜(편진폭) 8.5 Hz 이상 : 가속도 1 G(9.8 ㎧) - 수직방향 가진력 8.5 Hz 이하 : 변위진폭 1.5 ㎜(편진폭) 8.5 Hz 이상 : 가속도 0.5 G(4.9 ㎧) - 스위프 사이클 : 1(약 10 분) - 가진 방향 : 수평(전후, 좌우), 수직(상하) - 시험 중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⑪ 내구성 시험

제어 출력을 1000회 동작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⑫ 접점용량 시험

구분	시험방법 및 기준
차단기 제어용 폐로용량	전압 : AC 220 V 전류 : 10 A 통전시간 : 0.2 s 휴지시간 : 15 s 부하 : 저항 횟수 : 1 000회
신호 및 경보용 폐로용량	전압 : AC 220 V 전류 : 5 A 통전시간 : 0.5 s 휴지시간 : 15 s 부하 : 저항 횟수 : 1 000회
개로용량	전압 : AC 220 V 전류 : 1 A 역률 : 0.1 횟수 : 1 000회

3. 제품 표시사항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e 마크) 및 제조자명을 각인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에 다음 사항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모델명
2) 명 칭
3) 정격
4) 제조년월
5) 제조번호
6)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7) 고효율기자재마크 및 인증번호

(14) 문자간판용 LED모듈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 범위 및 개요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DC 50 V 이하의 LED 모듈(광원)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이 규격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2) 일반 문자 간판용이 아닌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
     (LED경관등, LED유도등, 자동차용 등)
- 문자 간판용 LED모듈에 사용되는 컨버터는 KC 또는 KS인증을 득한 조명기구용 컨버터(LED램프용) 이어야 한다.

1.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참조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9, 문자 간판용 LED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 제2-13부 : LED 모듈용DC/AC 전원 전자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 제어장치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050-845 : 조명용어
CIE 127 : Measurement of LEDs
CIE 84 : Measurement of Luminous Flux
KS C IEC 60695-2-10 : 환경시험 방법(전기 · 전자)내화성 시험 - 글로 와이어장치 및 일반 시험 절차
KS C IEC 60695-2-2 : 화재 위험성 시험 - 제 2부 : 시험방법 - 제 2절 : 니들 프레임 시험
KS C IEC 60529 : 외곽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1.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을 따른다.

1) 문자 간판 (channel letter signs)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 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2) LED 모듈 (LED module) :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

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컨버터는 제외

3) 간판용 LED 모듈 (LED module for channel letter signs) :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LED 모듈로써 단일 파장의 칩으로 구성된 단색 모듈과 서로 다른 파장의 칩으로 이루어진 혼합색 모듈이 있음

4) 정격 전압 (rated voltage) : LED 모듈에 표시된 전압

5) 정격 전류 (rated current) : LED 모듈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전류

6) 정격 전력 (rated wattage) : LED 모듈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전력

7) 초기 특성 (initial values) : 100시간 에이징 후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8) 광효율 (lumen maintenance) : LED 모듈의 수명 이내의 주어진 시간에서 측정된 광속을 초기광속으로 나눈값으로 백분율로 나타냄

9) 단색 LED 모듈 (monochrome LED module) : 단일 색상의 동일한 LED 칩을 사 용한 LED 모듈(적색, 녹색, 청색, 백색)

10) 혼합색 LED 모듈 (polychrome LED module) : 적색, 녹색, 청색, 백색 LED 칩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LED 모듈

11) 종단전압 (terminal voltage) : 한 개의 컨버터에 여러 개의 LED 모듈을 병렬 연 결할 때 컨버터에서 전기적으로 제일 먼 모듈에 걸리는 전압

12) 정격광속 : 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

13) 광속유지율 : LED모듈의 수명 내 주어진 시간에서의 광속을 등기구의 초기 광 속으로 나눈 값으로써, 초기 광속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14) 부품 변경 : 인증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인정되고 인증모델명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15) 방열부 : 히트싱크(Heat Sink)와 같이 기구의 열을 방출하거나 열전도에 의해 뜨 거워진 표면을 식히는 장치

16) 광원부 : LED 모듈, LED 패키지(Package) 등 빛을 발산하는 구성요소

17) 기구부 : 반사갓(판), 렌즈, 커버, 마감재 등의 기구물

18) 구동부 : 광원을 점등시키기 위한 전원장치

19) 외형 변경 :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방열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광원부를 변경하지 않고 광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색상, 단순 디자인, 마감재 등의 변경

2. 종류 및 구조

문자 간판용 LED 모듈의 종류는 <표 1>에 따른다.

<표 1> 문자 간판용 LED 모듈의 종류

구분	종류
색상	단색(적색, 녹색, 청색, 백색)
	혼합색
정격전압	12 Vdc
	24 Vdc
	48 Vdc

* 하나의 컨버터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LED 모듈의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성능 시험

3.1 시험조건

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험은 10 ~ 30 ℃의 주위 온도에서 항목 순으로 시험한 다. 단, 광학특성 시험은 정격입력 전압 및 주파수를 인가한 후 (25 ± 1) ℃의 주 위 온도에서 측정한다.
2) 시험전압은 ± 3%의 허용오차를 가질 수 있다. 전압 범위의 경우 평균값에서 측 정한다.
3) 또한 전체 고조파 성분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합으로 정의된다.
4) 시험품은 관련된 모든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면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2 시험 방법 및 절차

KS 인증을 득한 모델은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 기준에 적합할 경우 동일한 시험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고효율 인증을 득한 컨버터 사용 시 컨버터 입출력 효율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내열성

감전을 방지하는 절연 재료의 외부 부분,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부분 또는 SELV 부분을 제 위치에 있게 하는 절연 재료의 부분은 충분한 내열성을 가져야 한다. 구슬 압력시험은 보조절연을 한 등기구의 플라스틱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에 의해 점검한다. 시험은 세라믹 물질의 부분이나 배선 절연에 대해서는 수행되지 않는다. 시험은 항온실 안에서 행해지는데, 이 상자는 (25 ± 5)℃

온도를 가져야 하며,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나 SELV 부분을 제 위치에 있게 하는 부분이 시험될 때는 125 °C의 최소 온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75 °C의 최솟값으로 시험한다. 시험할 부분의 표면은 수평면에 놓아야 하고 지름이 5 mm인 강철공이 이 면을 20 N의 힘으로 누르게 해야 한다.

이 시험을 위한 적절한 장치가 [그림 1]에 있다. 시험 중인 표면이 구부러지면, 공이 누르는 부분은 지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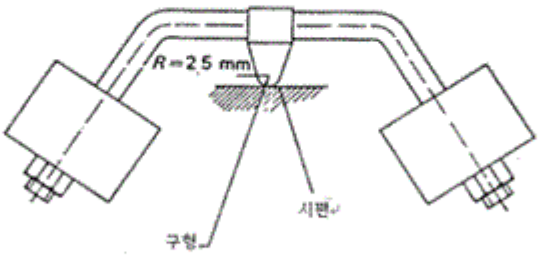

[그림 1] 구슬 압력 장치

2) 내화성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나 SELV 부분을 제 위치에 있게 하는 절연 재료의 부분과 감전을 방지하는 절연 재료의 외부 부분은 내화성 및 내점화성이 있어야 한다. 세라믹이 아닌 물질에 대해서, 적합성은 a)나 b)의 시험에 의해 적절하게 점검한다.

a) 전기가 통하는 부분을 적절한 위치에 있게 하는 절연 재료 부분은 다음 시험을 견뎌야 한다. 시험하는 부분이 KS C IEC 60695-2-2의 니들-프레임 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시험 화염은 가장 높은 온도가 발생하기 쉬운 지점에서 10초 동안 시료에 인가되고, 필요하다면 KS C IEC 60598-1의 12. 열 시험 동안 측정한다. 타는 시간은 시험 화염을 제거한 후 30초를 넘어서는 안 되고, 시료에서 타서 떨어지는 부분이 시료의 아래 (200±5) mm 지점에서 수평으로 퍼져 있는 티슈 종이에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 부속절의 요구 사항은 등기구가 타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장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충전부가 적절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감전에 대해 보호 장치가 있는 절연 재 료의 부분과 SELV 부분을 제 위치에 있게 하는 절연 재료의 부분은 다음 시험을 견뎌야 한다. 부분은 650 °C로 가열된 니켈-크롬 글로 소선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시험 장치와 시험 과정은 KS C IEC 60695-2-10에서 설명한 대로이어야 한다. 시료의 화염이나 백열은 글로 소선을 치운 후 30초 이내에 꺼져야 하고, 타거나 녹아서 떨어지는 부분이 시료 아래 (200±5) mm 수평으로 퍼져 있는 한 층의 티슈 종이에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요구 사항은 등기구가 연소 낙하 물에 대한 효과적인 방벽을 제공하거나 절연 재료가 세라믹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보호 등급 (IP 코드)

제조자가 표시한 보호 등급을 확인하여 알맞은 시험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한 것은 KS C IEC 60529 참조한다.

분류의 이 체계에 의해 다루어지는 보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 외부 내에서 전류 운반부와 접촉하거나 접근하는 것에 대해, 또한 움직이는 부 분(부드럽게 회전하는 축이나 이와 비슷한 것 외의 것)에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보호하고 고체 외부 물질의 유입에 대해 장비를 보호

b) 물의 해로운 유입에 대해 외부 내의 장비를 보호

① 제1특성 숫자로 표시되는 외래 고형물에 대한 보호 등급(제1특성 숫자 6(내진형)) 먼지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탤크분은 정해진 "굵기 Φ 50 ㎛ 철사를 공칭 간격 75 ㎛ 에서 직각으로 서로 배치한 사각형 망체의 눈"을 통과하는 것 이어야 하며 장치의 마노미타에서 2 ㎪ (20 mbar)을 넘어 감압하여서는 안되며 피 시험품(외곽)을 시험실 내에 설치하고 피시험품 내의 압력을 진공 펌프로 대기압이하로 하며 시험 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② 제 2특성 숫자로 표시되는 물에 대한 보호등급(제2특성 숫자 5)지름이 6.3 ㎜인 노즐을 사용하여 12.5 L/min ± 5 % 거리 2.5 m에서 3 m사이에 피 시험품을 놓고 최저 3분간 살수한다.

③ 제2특성 숫자로 표시되는 물에 대한 보호등급(제2특성 숫자 6)지름이 12.5 ㎜인 노즐을 사용하여 100 L/min ± 5 % 거리 2.5 m에서 3 m 사이에 피 시험품을 놓고 최저 3분간 살수한다.

<표 2> 보호등급

첫번째 특성 숫자	보호의 등급	
	간략한 설명	외곽으로부터 '제외된' 물체의 요약 설명
6	먼지 방지	먼지의 유입이 없다.
두번째 특성 숫자	보호의 등급	
	간략한 설명	외곽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 유형의 설명
5	물 분출에 대한 보호	임의의 방향으로 외곽에 대해 노즐로 내뿜는 물은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매우 강한 물에 대한 보호	강한 분출로 내뿜는 물이나 매우 강한 분출은 해를 일으킬 정도의 양이 외곽 안에 들어 가서는 안 된다.

보호의 정도를 가리키는 명칭은 특성 문자 IP 다음에 오는 두 자리의 수 ("특성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 에 각각 나온 조건과의 적합성을 가리킨다.

첫 번째 숫자는 A)에서 설명한 보호의 등급을 가리키고
두 번째 숫자는 B)에서 설명한 보호의 등급을 가리킨다.

4) 입력전력

입력전력 시험은 [그림 2]와 같이 접속하고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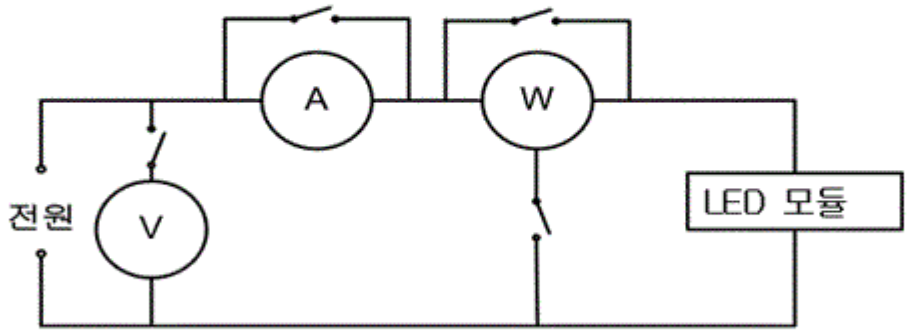

[그림 2] 입력 전류 및 입력 전력 측정 회로

5) 광출력

① 초기광속 : LED 모듈에 정격 전압을 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및 입력 전력을 측정한다.

② 광효율 : 초기광속 측정시 측정한 광속 및 입력 전력으로 계산한다.

$$\text{광효율}[\text{lm/W}] = \frac{\text{측정초광속}}{\text{측정입력전력}}$$

③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LED 모듈을 2,000시간 에이징 후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광속을 측정한다. 다만, '[부록]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당해 품목 광속유지율 기준 이상의 LED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6) 종단전압에 의한 광속 변동률

제조자가 제시한 한 개의 컨버터에 연결될 수 있는 최대 모듈의 수만큼 모듈을 연결하여 정격전압을 입력한 후 종단전압을 측정한다. 측정된 종단전압에서 광속을 측정한 후, 정격전압에서의 광속과 비교한다.

7) 컨버터 입출력 효율

입출력 효율 시험은 입력 전력 대비 출력전력의 비로 최대 개수의 LED 모듈을 연결하여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하여 산출한다.

입출력 효율(%) = (출력 전력[W] / 입력 전력[W]) × 100

8) 온도순환시험

시험 온도의 범위는 -30 ℃~70℃에서, 미점등 상태로 수행하고. 한쪽의 온도 극한값으로부터 다른 극한 온도 값으로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내이어야 하며 도달한 극한 온도로 30분간 유지한다. 이러한 주기로 최소 20회 동작시킨다.

9) 개폐(ON/OFF)시험

① 저온 개폐 시험 : 등기구를 주위 온도 -30 ℃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미점등 상태로 유지한 후 30초 ON, 30초 OFF의 주기로 15,000회 반복한다.

② 고온 개폐 시험 : 등기구를 주위 온도 70 ℃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미점등 상태로 유지한 후 30초 ON, 30초 OFF의 주기로 15,000회 반복한다.

3.3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1)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3>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부록]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당해 품목 광속유지율 기준 이상의 LED 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표 3>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방열판	초기광속 및 광효율, 온도순환시험
2	외형	시험면제
3	광원부 커버 또는 렌즈	초기광속 및 광효율, 내열성, 내화성, 온도순환시험
4	LED Chip 및 Package(1)	입력전력, 초기광속 및 광효율, 광속유지율, 전압변동에 따른 광속변동률
5	컨버터	컨버터 입출력 효율
비 고		(1) LED Chip 및 Package 모델, 제조회사, 배열의 변경이 해당된다.

4. 인증기술기준

1) 내열성 시험 후 눌려진 곳의 직경은 2 mm 이하이어야 한다.

2) 내화성

시료의 화염이나 백열은 글로 소선을 치운 후 30초 이내에 꺼져야 하고, 타거나 녹아서 떨어지는 부분이 시료 아래 (200±5) mm 수평으로 퍼져 있는 한층의 티슈 종이에 불을 붙어서는 안 된다.

3) 보호 등급 (IP 코드)

옥외용 조명기구 조건 상 표시 보호 등급은 IP 65이상이어야 하며 이 시험이 끝난 뒤 LED 모듈은 이 기준에 규정된 전기적 강도 시험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정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야 한다.

① 제1특성 숫자로 표시되는 외래 고형물에 대한 보호 등급(제1특성 숫자 6(내진형)) 시험시간은 2시간으로 하여 내부 기기의 동작 및 안전성을 저해하는 양의 먼지의 침입이 없어야 한다.

② 제2특성 숫자로 표시되는 물에 대한 보호 등급(제2특성 숫자 5,6)최저 3분간 살수하여 피 시험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입력 전력

입력전력 시험은 정격 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을 측정한다. 입력 전력은 표시값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5) 광출력 : 초기 광속 및 광속유지율, 광효율은 <표 4>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 LED 모듈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목	성능 기준
초기 광속	정격 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 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종단전압 변동에 의한 광속변동률	정격전압 광속의 90% 이상

구분(색상)	광효율(lm/W)
적색	25
녹색	35
청색	6.5
백색	90
혼합색	25

6) 종단전압에 의한 광속변동률

종단전압에 의한 광속변동률은 <표 4>를 만족하여야 한다.

7) 컨버터 입출력 효율

<표 5>에 나와 있는 출력 전력에 따른 입출력 효율에 만족해야 한다.

<표 5> 입출력 효율 기준(1)

Level	명판표시 출력전력 (P_{no})	입출력 효율
IV	$0 < P_{no} \leq 1$	$\geq 0.5 \times P_{no}$
	$1 < P_{no} \leq 51$	$\geq [0.09 \times Ln(P_{no})] + 0.5$(2)
	$51 < P_{no}$	≥ 0.85

주) (1) <표 5>는 Energy Star의 International Efficiency Marking Protocol for External Power Supplies를 인용하였음

(2) Ln은 natural logarithm임

8) 온도순환시험

시험 온도의 범위는 -30 ℃~70℃에서 미점등 상태로 수행하고 한쪽의 온도 극한값으로부터 다른 극한 온도 값으로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내이어야 하며 도달한 극한 온도로 30분간 유지한다. 최소한 20회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후 균열 등 기능장애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9) 개폐(ON/OFF)시험

시험 종료 후 LED 모듈의 균열이나 파손이 없어야 하고 정상점등 하여야 한다.

5. 시험설비 (필수 보유 장비 포함)

1) 치수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등)
2) 전력 분석계(Power Analyzer)
3) 항온 항습조*
4) 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측정기*
5) 열충격 시험기*
6) 정전압 공급장치(AC/DC Power Supply)
7) ON/OFF 개폐시험 설비
8) 내분진시험기*
9) 살수시험기*
10) 볼프레셔 시험기*
11) 니들프레임 시험기*
12) 글로우와이어 시험기*
13) 에이징 시험설비

주) *는 고효율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대체가 가능한 설비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및 제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1 LED 모듈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

1)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 마크
2) 제조사명 또는 약호
3) 정격전압(V)
4) 색상(적색, 녹색, 청색, 백색, 혼합색 또는 약호)

6.2 사용설명서와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 되어야 하는 사항

1)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 마크
2) 제조사명 또는 약호
3) 정격전압(V)
4) 색상(적색, 녹색, 청색, 백색, 혼합색 또는 약호)
5) 정격광속(lm)
6) 정격전력(W)
7) 광효율(lm/W)
8) 한 개의 컨버터에 연결될 수 있는 최대 모듈의 개수
9) 컨버터의 입력전력 및 출력전력
10) IP등급
11) 원산지 표시
12) 제조 연월 또는 그 약호
13) A/S 연락처

[부록]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

1. LED램프 및 등기구 시험면제조건

1) LED램프 및 등기구의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에 대한 광속유지율시험은 아래의 2.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을 적용한 고효율인증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본 기준의 시험방법 동등이상의 기준을 적용한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하며, 광속유지율 시험성적서의 측정값은 2.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의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2) LED램프 및 등기구의 LED패키지에서 측정된 온도 및 전류는 패키지 성적서에 기재된 온도 및 전류 이하이어야 한다.

2.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

LED패키지 제조사에서 제공한 LED패키지(20개) 전수에 대한 광속유지율 시험을 실시한다.

1) 광속유지율

① 초기광속 : 에이징 없이 LED패키지에 정격 전류를 가하여 광속 및 전압을 측정한다.

② 광속유지율 : LED패키지에 정격 전류를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 후 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하며 시험완료한 LED패키지(20개의)의 광속유지율은 해당 품목의 광속유지율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에이징 방법 : LED패키지 제조사에서 제시한 최대온도 ± 2 ℃에서 정격전류를 LED패키지에 인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을 실시한다. (패키지에 부착되는 방열판은 업체에서 제공 또는 시험기관과 협의)

2) 온도상승 시험

① LED패키지, LED램프 및 등기구의 온도측정은 KS A 0511(온도 측정 방법 통칙)에 따른 방법 및 KS C 1602(열전대)에 해당하는 열전대를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LED 패키지의 표면온도(Ts)*는 제조자가 제시한 LED패키지의 측정 부위에 열전대

(Thermocouple)를 부착하여 측정하며, 표면온도(Ts)는 시험기간 동안 관찰되어야 한다.

* 표면온도(Ts) : LED패키지 제조자가 제시한 LED패키지 측정부위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측정한 표면온도

③ LED램프 및 등기구의 온도 측정은 3 mm 이하의 구멍을 천공하여 열전대(Thermocouple)를 부착 한 후 구멍을 완전히 밀봉시킨 후 LED패키지의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된 위치는 사진으로 성적서에 첨부)

④ LED램프 및 등기구의 측정된 최대온도는 LED 패키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온도 이하이어야 한다.

3.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 시험면제 기준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LED패키지에서 아래 일부항목이 변경되는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에 대해서는 아래 시험면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No	변경 항목	시험 면제조건
1	동일한 재질 렌즈	시험면제
2	동일한 재질 형광체(색온도)	LED패키지 색온도(2700K이상~3500K이하, 3500K초과~6500K이하)범위내에서 시험면제 (다만, 낮은 색온도 범위(2700K이상~3500K이하)의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만족시 높은 색온도 범위(3500K초과~6500K이하)의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시험면제 가능)
3	LED chip 수량(동일 chip)	LED패키지 기본모델 대비 수량이 그 이하일 것
4	LED chip 배열(동일 chip)	LED패키지 기본모델 대비 정격전력(W)이 그 이하일 것
5	LED chip	시험면제 불가

(15) 가스진공온수보일러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 범위 및 개요

1.1 적용범위

1) 보일러 방식에 따른 범위

① 연관식

② 수관식

③ 노통 . 수관 혼합식

④ 관류식

⑤ 기 타

2) 폐열회수방식 범위

① 미부착

② 공기예열기

③ 온수발생장치

④ 기타

1.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일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6205 육용강제보일러의 열정산 방식

KS B 6233 육용강제보일러의 구조

KS B 6204 육용수관증기보일러의 정격용량

EN 92/42/EEC Council Directive on Efficiency Requirements for New Hot 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for Related Standards See TEST/92/42

ISO/TS 16528/2002 Registration of Codes and Standards to promote international recognition

KS B 8109 가스온수보일러

KS B 8127 콘덴싱 가스보일러

1.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일러 관련용어

① Envelope Boundary

보일러 효율계산시 열정산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보일러 및 그 부속설비의 한계를 설정한 경계선을 말한다.

② 기준공기 온도(Reference Air Temperature)

보일러 효율을 산정함에 있어 열손실 및 부가 입열(Heat Credits) 계측의 기준이 되는 공기온도를 말한다. 보일러의 열정산을 하려면 보일러 계내로 출입하는 에너지의 기준점인 Zero Level이 먼저 확립되어야 하는 바, 이것이 기준공기 온도가 되며 효율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기준온도에 대한 각국의 규정은 서로 상이하여 그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 즉 ASME Code는 A/H 입구 공기온도, ISO, BS는 Air Intake 입구 온도, DIN은 25℃(실내온도)를, 또한 KS 및 JIS는 외기온도로 규정한다.

③ 외기온도(Ambient Air Temperature)

기기의 주변공기온도로서 일반적으로 대기온도를 말한다.

④ 입열, 출열, 순환열(Heat Input, Heat Output, Circulating Heat)

보일러 입열이란 단순 입력이라고도 하며 보일러에 공급되는 모든 열량의 총계를 의미하며 연료의 화학적 연소열에다 공기, 가스, 물, 연료, 전력 등 외부로 부터 보일러 Boundary로 들어오는 각종 유체가 가지고 들어오는 부가입열을 더하여 준 것이다. 한편 출열 또는 출력이란 작동유체 또는 각종 유체가 보일러에서 유효하게 흡수한 열량을 말하며 총 입열에서 보일러 손실을 빼준 것을 의미한다.

순환열이란 보일러에서 발생한 열의 일부를 빼내어서 이것을 보일러에 공급되는 열의 일부에 더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⑤ 건/습 가스

건가스(Dry Gas)란 수분이 포함된 가스인 습가스(Wet Gas)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수분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가스를 의미한다.

연소생성물인 Fuel Gas중에는 CO_2, SO_2, CO, O_2, N_2 등 각종 가스류 외에도 수분이 포함 되어 있어 습가스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수분은 연료중의 수소 연소시 생성되는 수분, 연료자체의 수분, 연소용 공기중의 수분과 Atomizing Steam의 증발에 의한 수분 등이 포함된다.

⑥ Heat Balance

Heat Balance란 열정산, 열수지, 열평형이라고도 불리며 보일러를 출입하는 열의 양적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보일러에 공급된 열은 작동유체나 동력 변환장치에 전달되어 유효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실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열의 출입관계를 나타낸 것이 Heat Balance이며 여하한 경우에도 공급된 열과 유효출열 및 손실을 합한 열 사이에는 등가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LNG 관련용어

① 몰 분율(Mole Fraction)

Gas Chromatograph로 분석한 LNG 각 성분 분자의 구성 비율로서 체적%와 동일하며, 각 성분에 대한 몰 분율의 합은 100%가 된다.

② 가스 분석기(Gas Chromatograph)

기체의 시료를 충진제가 들어있는 세관중에 통과시켜 각 성분별로 분리, 정량분석하는 가스분석장치로서 원소분석은 되지 않고 구성성분에 대한 몰% 만 분석된다.

③ 표준상태

물리학상의 표준상태는 0℃, 1기압(1.03323kg/㎠)이나 가스 계산시의 표준 상태(Standard Condition)는 석유제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15℃, 1기압이 기준이 된다.

④ 이상기체(Ideal Gas)

이상기체란 원자 또는 분자 상호간의 거리가 아주 먼 상태의 기체로서 분자 상호간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고, 분자 자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전 부피에 대해 무시할 정도로 작은 기체를 말한다. 각종 가스에 관련된 기준 Data는 모두 이상기체를 기준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제가스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압축계수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3) A/H 관련용어

① 공기예열기(Air Heater)

연소가스의 보유열을 중간 열전달 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소용 공기에

전달하는 열교환기로서 재생식 공기예열기, 관형 공기예열기가 포함된다.

② 공기누설(Air Leakage)

공기예열기의 공기 측에서 가스 측으로 누설되는 공기량을 말하며, A/H 관련 각종 계산식에서는 이 누설공기량은 A/H의 Heating Element를 거치지 않고 공기 입구 측에서 가스 출구 측으로 직접 누설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배기가스 온도(Exit Gas Temperature)

실제 측정되는 냉각된 출구가스온도를 말한다.

④ 공기온도 상승(Air Temperature Rise)

A/H 출구 공기온도와 입구 공기온도의 차로서 구하며 A/H에서의 공기온도 상승을 의미한다.

⑤ 가스온도 강하(Gas Temperature Drop)

A/H에서의 가스의 온도강하를 의미하며 A/H 입구 가스온도와 출구 가스 온도의 차로서 구한다.

2. 종류 및 구조

2.1 종 류

1) 용량구분

① 난방

구 분	정 격 출 력 (10^3 x kcal/h)
1 군	50, 100, 150
2 군	200, 250, 300,
3 군	350, 400, 500,
4 군	600, 700, 800,
5 군	900, 1,000
6 군	1,500, 2,000

② 급탕

구 분	정 격 출 력 (10^3 x kcal/h)
1 군	50, 100, 150
2 군	200, 250, 300,
3 군	350, 400, 500,
4 군	600, 700, 800,
5 군	900, 1,000
6 군	1,500, 2,000

2) 등급 이외의 용량 및 압력

등급 구분 내에서 정한 이외의 난방 및 급탕의 용량은 신청자의 신청에 따른다.

2.2 구 조

1)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제조 및 검사대상 보일러는 검사결과 적합하여야 한다.
2) 1)항 이외의 보일러는 KS B 6233 육용강제보일러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2)항의 보일러 중 구조 및 검사기준에 적용할 수 없는 온수 보일러는 구조상 강도가 각부의 내압 또는 외압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보일러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는 각 보일러의 특성에 맞게 구비하여야 하며, 원활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5) 배기가스가 응축되는 구조일 경우 지속적으로 배기가스 응축수를 중화시키는 적합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배기가스가 응축되어 접촉하는 온수발생장치의 열교환기 전열관 재료는 KSD 3705 KS D 3698의 STS 316과 KS D 3577의 STS 316 TB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기가스가 응축되어 접촉하는 기타부분은 KS D3705, KS D 3698의 STS 304와 KS D 3577의 STS 304TB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보일러 내부는 대기압 이하(진공압)로 유지되어 내부 열매수에 의한 간접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8) 내부 열매수는 시운전 이후 보충이 필요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대기압 이상으로의 상승을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1개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3. 성능시험

3.1 시험 일반

1) 부하운전 성능

보일러의 시동준비가 완료되고 보일러 장치가 가동되면 부하를 걸어야 한다

부하율은 30%이상으로 하고 가능한 한 정격 용량에 가깝게 한다) 정상운전상태에서 이상진동과 이상소음이 없고 각종기계 및 부속품의 작동이 원활한 가를 확인한다.

2) 배기가스 성분

보일러의 배기가스온도는 최종 배출구에서 측정하며 이외의 성분은 보일러 본체 출구에서 측정한다.

3) 보일러 표면온도

보일러 표면온도를 측정한다. 단, 버너연결부 및 연도는 제외 한다.

4) 배기가스 응축수의 수소이온 농도

응축형 보일러의 초기가동과 3.2 a)항의 시험 조건에서 배출되는 응축수의 pH를 최종 방류구에서 측정한다. 다만, 저탕식일 경우에는 저탕조의 초기 pH를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5) 소음

① 보일러 소음

보일러의 소음은 보일러 측면, 후면의 1.5m 떨어진 곳의 1.2m 높이에서 측정한다. 이때 송풍기 정면은 측정하지 않는다.

② 송풍기

송풍기의 소음은 송풍기 정면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다.

6) 시험조건

① 3.1 2)항 내지 3.1 6)항의 성능시험은 3.2 1)항과 2)항의 정격용량 및 시험온도에서 시험된다. 기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KS B 6205 육용보일러의 열정산 방식에 따른다.

② 시험연료의 총발열량은 KS M 0019에 따르며 그 기준을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3.2 정격출력

1) 난방출력

① 온수보일러에서 난방 전용과 난방. 온수의 겸용인 경우는 동일용량의 난방에 대하여만 성능을 시험하며 온수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난방출력 시험은 [그림1]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장치를 하여 시험 한다.

③ 유량조절 밸브 V_1 및 V_2를 조작함에 따라, 난방 되돌림 구멍온도 (th_3)가 난방

출구온도(th_2)보다 15~20 ℃ 낮게 되도록 조절한다. 이때, 난방출구온도(th_2)는 75~85℃로 한다.

④ 난방 출력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다.

$$Q_W = G_h \cdot C_p(th_2 - th_1)$$

여기에서 Q_W ; 난방 출력(kcal/h) {kJ/h}

G_h ; 출탕량 또는 급수량(kg/h)

C_P ; 물의 평균 비열 (kcal/kg·℃) {kj/kg·℃}

th_2 ; 난방 출구 온도(℃)

th_1 ; 급수 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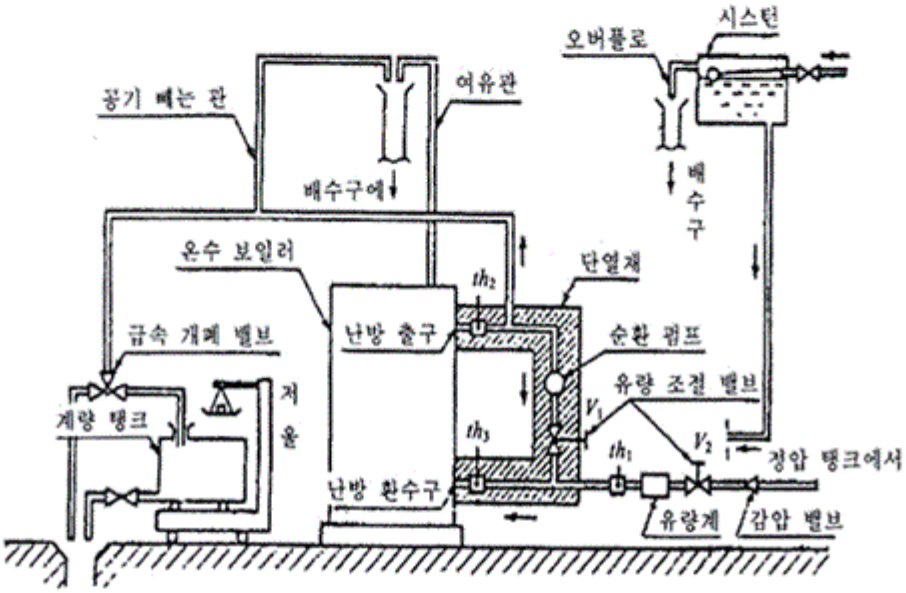

[그림 1] 난방 성능 시험도

2) 급탕출력

① 급탕출력 시험은 [그림2]를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장치를 하여 시험한다.

② 온수의 출구온도는 급수온도보다 35 ± 2℃ 높게 되도록 조절하여 안정된 때부터 실시한다.

③ 연속 급탕 출력을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H = G_h \cdot C_P(th_2 - th_1)$$

여기에서 H ; 연속급탕 출력(kcal/h) {kJ/h}

G_h ; 급탕량 또는 급수량(kg/h)

C_P ; 물의 평균 비열 (kcal/kg·℃) {kJ/kg·℃}

th_2 ; 급탕 평형 온도(℃)

th_1 ; 급수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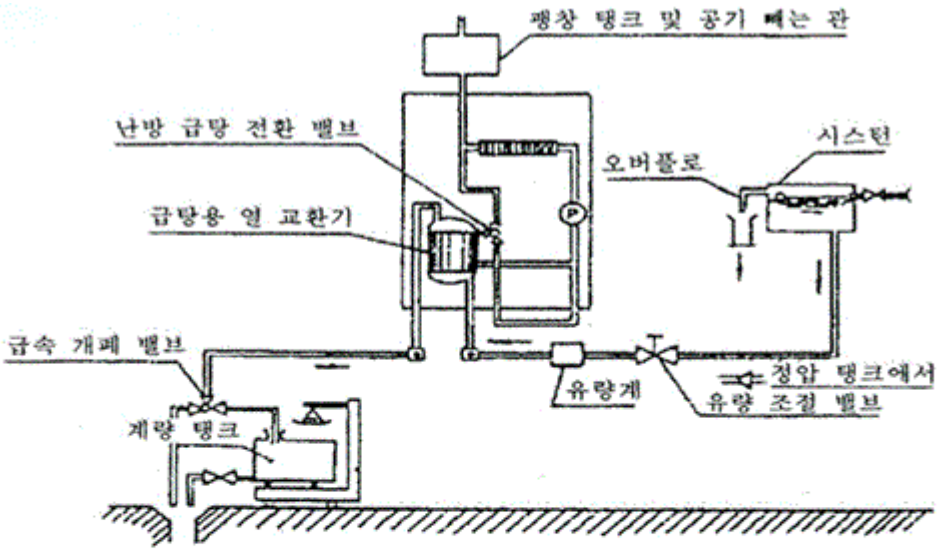

[그림 2] 급탕 성능 시험도

3) 효율

효율은 정격출력으로 가동 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n_w = \{ Gh \times Cp \times (th_2 - th_1) \ / \ (Go \times Hh) \} \ / \ \times 100(\%)$$

n_w : 효율(%)

Gh : 난방(온수) 공급수량(kg/h)

Cp : 물의 평균 비열(kcal/kg℃)

th : 출구온도에서의 포화수 엔탈피(kcal/kg)

th_1 : 급수온도에서의 포화수 엔탈피(kcal/kg)

Go : 연료 소비량(Nm^3/h)

H : 연료의 총발열량($kcal/Nm^3$)

3.4 제품표시방법

제조자는 보일러의 보기 쉬운 곳에 에너지절약마크 및 제조자명을 각인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인증번호

2) 품명 및 형식

3) 정격난방출력

4) 정격급탕출력

5) 제조자

6) 제조년월

7) 전열면적

8) 버너 품명 및 형식

9) 부속장치

4. 인증기술기준

4.1 50만 ㎉/hr 이하 진공 온수보일러

50만 ㎉/hr이하의 온수보일러는 3.성능시험'에 의하여 측정하며 다음 〈표 1〉 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진공 온수보일러 인증기술기준

시 험 항 목			기 준	적 용
부 하 운 전 성 능			이상 없을 것	3.1의 a)항
정 격 출 력		난 방	용량의 100 % 이상	3.2의 a), b)항
		급 탕		
배 기 가 스	CO		100 ppm 이하	3.1의 b)항
	LNG	CO_2	10.1 % 이상	
		O_2	3.3 % 이하	
	LPG	CO_2	12.2 % 이상	
		O_2	3.3 % 이하	
표면 온도			측정 주위온도와 차 30℃ 이하	3.1의 c)항
배기가스 온도	온수발생장치 미부착		170 deg℃ 이하	3.1의 b)항
	온수발생장치 부착		110 deg℃ 이하	
배기가스 응축수			최종처리 방류 PH 5.8 이상 8.6 이하	3.1의 d)항
소 음	본 체		83 dB 이하	3.1의 e)항
	송 풍 기		85 dB 이하	
열효율	온수장치발생 미부착	난 방	84 % 이상	3.2의 c)항
	온수발생장치 부착	난 방	88 % 이상	

* 열효율 표시는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가스공급사에서 하는 분석결과를 참고한 진발열량을 기준으로 한 열효율을 병기할 수 있음.

4.2 50만 ㎉/hr 초과 진공 온수보일러

50만 ㎉/hr 초과 온수보일러는 정격출력의 120% 이상의 입열량을 30분이상 연소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표 2〉 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2〉 진공 온수보일러 인증기술기준

시 험 항 목			기 준	적 용
부 하 운 전 성 능			이상 없을 것	3.1의 a)항
배 기 가 스	CO		100 ppm 이하	3.1의 b)항
	LNG	CO_2	10.1 % 이상	
		O_2	3.3 % 이하	
	LPG	CO_2	12.2 % 이상	
		O_2	3.3 % 이하	
표면 온도			측정 주위온도와 차 30℃ 이하	3.1의 c)항
배기가스 온도	온수장치발생 미부착		170 deg℃ 이하	3.1의 b)항
	온수발생장치 부착		110 deg℃ 이하	
배기가스 응축수			최종처리 방류 PH 5.8 이상 8.6 이하	3.1의 d)항
소 음	본 체		83 dB 이하	3.1의 e)항
	송 풍 기		85 dB 이하	

(16) 중온수 흡수식냉동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 범위 및 개요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2,813 kW (800 USRT)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 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하여 규정한다.

1.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KS B 8207 직화형 흡수식 냉난방기

지역냉방 흡수식냉동기 기술규격서 (한국지역난방공사)

ANSI/ARI 560 ABSORPTION WATER CHILLING AND WATER HEATING PACKAGES

JIS B 8622 ABSORPTION REFRIGERATING MACHINES

GB T 18362 DIRECT-FIRED LITHIUM BROMIDE ABSORPTION WATER CHILLER HEATER

1.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1 정격냉동능력 : 냉동기를 5.2.3의 전부하 조건에서 운전하였을 때, 순환되는 냉수로부터 제거되는 열량, 단위는 kW로 표시

1.3.2 정격유량 : 냉동기의 냉동능력 시험 시에 냉수, 냉각수, 구동온수 등의 유량. 단위는 m^3/h 또는 L/h로 표시

1.3.3 1중 효용형 : 냉동기의 냉동 사이클에서 냉매의 재생을 재생기에서만 행하는 것

1.3.4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 : 증발기·흡수기·응축기·재생기·용액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1중 효용 흡수식 냉동사이클 원리를 사용하며 중온수를 구동온수로 사용하는 흡수식냉동기

1.3.5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 : 증발기·흡수기·응축기·제1재생기·제2재생기·보조재생기·보조흡수기·제1용액열교환기·제2용액열교환기·보조용액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는 것

1.3.6 통합성능계수(IPLV : Integrated Part Load Value) : 각 부분부하 운전조건에서

산출된 성능계수와 부분부하 운전시간비율을 반영하여 가중 평균한 값으로 무차원임

1.3.7 환산계수 : 1 USRT는 3,024kcal/h, 1kW는 860kcal/h를 이용하여, USRT와 kW간의 환산계수를 소수점 셋째짜리인 3.516으로 한다.

$$\left(\frac{1\,USRT}{1\,kW} = \frac{3{,}024\,kcal/h}{860\,kcal/h} = 3.516\right)$$

1.3.8 수치맺음 : 각 냉방, 냉동능력은 USRT 표기치를 근간으로 하며, 환산값은 정수로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2. 종류

1.1 단수에 따른 구분

2.1.1 1단 : 일반적인 1중 효용 방식으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라 한다.

2.1.2 2단 : 1중 효용 방식에 보조사이클을 추가하여 구성한 방식으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라 한다.

1.2 용량 구분

정격 냉동능력은 kW(USRT)로 표시하여 <표 1>과 같이 용량별로 구분한다.

<표 1>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용량구분

구 분	정격 냉방능력 kW(USRT)(단위병기)
1 군	176(50)이하
2 군	176(50) 초과 ~ 352(100) 이하
3 군	352(100) 초과 ~ 703(200) 이하
4 군	703(200) 초과 ~ 1,055(300) 이하
5 군	1,055(300) 초과 ~ 1,406(400) 이하
6 군	1,406(400) 초과 ~ 1,758(500) 이하
7 군	1,758(500) 초과 ~ 2,110(600) 이하
8 군	2,110(600) 초과 ~ 2,813(800) 이하
※ 성능인증용량은 각 군내에서 35.16 kW(10 USRT) 단위로 인정함	

3. 구조

1.3 구조 일반사항

사용 상태에서 사람이 접촉하는 부분은 날카로운 돌기나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제어반 및 배선은 열의 영향이 적은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전선의 관통부분은 전선이 상하지 않는 위치에 배선되어야 한다.

3.2 부속 종류 및 기능

3.2.1 증발기 : 냉수 공급시에는 냉매펌프 가동으로 냉매액이 전열관군에 산포되어 증발함으로써, 전열관내의 냉수온도를 떨어뜨린다.

3.2.2 흡수기 : 냉수 공급시에 증발기에서 증발된 냉매증기를 흡수액에 흡수시키고 증발기내의 압력을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냉매 증기를 흡수할 때 발생하는 흡수열은 전열관군을 통과하는 냉각수에 의해 외부로 방출된다.

3.2.3 보조흡수기 : 냉수공급 시에 제2재생기에서 발생된 냉매증기를 흡수액에 흡수시키고, 제2재생기 내의 압력을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의 주요 구성기기)

3.2.4 응축기 : 냉수공급 시에 재생기(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의 경우 제1재생기와 보조재생기)에서 발생된 냉매증기를 전열관군을 통과하는 냉각수로 냉각하여 응축시킨다.

3.2.5 재생기 : 흡수기에서 공급된 저농도의 흡수액은 구동온수로 가열·농축되어 고농도의 흡수액이 되고, 이 때 냉매증기가 발생한다.

3.2.6 제1재생기 : 흡수기에서 공급된 저농도의 흡수액은 구동온수로 가열·농축되어 중간농도의 흡수액이 되고, 이 때 냉매증기가 발생한다.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의 주요 구성기기)

3.2.7 제2재생기 : 냉수 공급시 제1재생기에서 농축된 중간농도의 흡수액은 구동온수로 가열·농축되어 고농도의 흡수액이 되고, 이때 냉매증기가 발생한다. (중온수 2단흡수식냉동기의 주요 구성기기)

3.2.8 보조재생기 : 냉수 공급시 보조흡수기에서 공급된 저농도의 흡수액은 구동온수로 가열·농축되어 고농도의 흡수액이 되고, 이 때 냉매증기가 발생한다.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의 주요 구성기기)

3.2.9 용액열교환기 : 흡수기에서 공급된 저온의 흡수액과 재생기에서 공급된 고온의 흡수액을 열교환시켜 저온의 흡수액은 가열하고, 고온의 흡수액은 냉각된다.

3.2.10 제1용액열교환기 : 흡수기에서 공급된 저온의 흡수액과 제1재생기에서 공급된 고온의 흡수액을 열교환시켜 저온의 흡수액은 가열하고, 고온의 흡수액은 냉각한다.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의 주요 구성기기)

3.2.11 제2용액열교환기 : 흡수기에서 공급된 저온의 흡수액과 제2재생기에서 공급된 중온의 흡수액을 열교환시켜 저온의 흡수액은 가열하고, 중온의 흡수액은 냉각한다.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의 주요 구성기기)

3.2.12 보조용액열교환기 : 보조흡수기에서 공급된 저온의 흡수액과 보조재생기에서 공급된 고온의 흡수액을 열교환시켜 저온의 흡수액은 가열하고, 고온의 흡수액은 냉각한다.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의 주요 구성기기)

3.2.13 흡수액펌프 : 흡수액을 제1재생기, 제2재생기, 흡수기 등으로 압송한다.

3.2.14 보조흡수액펌프 : 흡수액을 보조재생기, 보조흡수기 등으로 압송한다.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의 주요 구성기기)

3.2.15 냉매펌프 : 증발기에 고여 있는 냉매액을 증발기 전열관군 위로 산포하여 냉매의 증발작용을 촉진한다.

3.2.16 추기장치 : 냉동기 내부의 불응축가스를 냉동기 외부로 추출제거하는 장치

3.2.17 안전장치 : 이상현상 발생 또는 비정상적인 운전시 냉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안전하게 운전되도록 냉동기를 제어한다.

3.2.18 제어판넬 : 냉동기 운전·정지 등의 조작, 운전상태 감시, 고장현황 표시, 중앙제어장치 또는 주변장치와 신호 및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

3.2.19 온수제어밸브(TCV : 온도조절밸브) : 냉동기로 들어오는 온수의 유량을 제어하여 냉동기의 냉동용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3.2.20 명 판 : 냉동기의 특징과 규격을 표시한다.

3.2.21 냉 매 : 냉동기의 내부에서 증발하여 냉수를 냉각하는 매체를 말한다.

3.2.22 흡수액 : 흡수식냉동사이클에서 냉매증기를 흡수하는 매체를 말한다.

4. 인증 성능기준

표준 정격 성능은 <표 2>에 따른다.

<표 2> 각종 성능지표

항 목		성 능 기 준	시험방법
냉동능력 kW(USRT)		정격 및 부분부하 냉동능력의 95 % 이상	5.2.4
구동온수열 소비량		정격 소비열량의 105 % 이하	5.2.4
통합성능계수 (IPLV)	1단 냉동기	0.74	5.2.4
	2단 냉동기	0.83	
절연저항 (MΩ)		1 이상이어야 한다.	5.2.1
내전압 (V)		이상이 없어야 한다.	5.2.1
소비전력		기재된 값의 105 % 이하	5.2.1
기밀성		1.01 Pa · ml/s 이하	5.2.1
내압성		최고사용압력의 1.3배 이상	5.2.1

5. 시험방법

1.4 시험일반

5.1.1 시험은 정격주파수 및 정격 전압에서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5.1.2 통상 사용 상태에서 사용되는 부품은 모두 부착한 상태로 한다.

5.1.3 시험이 들어가기 전에 불응축 가스는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5.1.4 기타 시험 조건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KS B 6271(흡수식냉동기)에 따른다.

1.5 성능시험

성능시험은 규정된 정격 운전 조건에서 수행하고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다.

5.2.1 안전시험

안전시험은 제조사 제시한 시험 결과값을 포함한 서류 제출로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밀시험 : 흡수액 냉매계통이 포함된 몸체의 기밀시험은 할로겐가스 또는 헬륨가스(기계 밖으로부터 기계 내로)를 사용하며, 할로겐 가스의 경우 78.5 kPa {0.85 kgf/cm²} 이상 유지하고, 누설량은 1.01 Pa·㎖/s{1×10^{-5}atm·cc/s} 이하여야 한다.

(2) 내압시험 : 냉/온수, 냉각수, 구동온수 등의 계통에 적용하는 내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3배 이상 조건에서 시행하며, 이를 10분 이상 지속 시 변형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한다.

(3) 절연저항 : 절연저항은 시험운전 전에 시행하며,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충전부와 접지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4) 내전압 : 정격전압 회로에 대한 내전압 시험은 <표 3>의 기준에 따르며, 주파수 60Hz의 사인파에 가까운 전압을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지속적으로 가한다. 정격출력이 400W 미만인 전동기에서는 1,000V로 하며, 조작회로 전압에서 내전압이 직류 30V 이하인 회로에 사용되는 전자응용 부품에 대해서는 내전압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표 3> 정격전압 대비 시험전압 기준

정격전압	30V이하	100V	200V/220V	380V/400V	440V
시험전압	500V	1,000V	1,500V	1,800V	1,880V

(5) 소비전력 : 소비전력은 정격 운전 중에 측정된 값을 고려하며, 그 값은 기재되어 있는 값의 105% 이하이어야 한다.

5.2.2 온도 및 유량확인 시험

유량 및 온도계의 교정기간 및 측정 위치를 확인하고, 유량계의 경우 영점확인, 온도계의 경우 모든 온도계의 부위별 온도 평형을 확인해야 한다.

5.2.3 냉동능력 시험

(1) 시험조건 및 안정판단 기준은 다음 <표 4>에 따른다.

<표 4> 시험조건 및 안정판단 기준

항 목		시 험 조 건	비고
냉 수		○ 출구온도 7 ± 0.5 ℃ (유량 : 정격의 ±5%)	
구동온수		○ 입구온도95 ± 2 ℃ (유량 : 정격의 ±5%)	
냉각수	100 %부하	○ 입구온도 32 ± 0.5 ℃ (유량 : 정격의 ±5%)	
	75 %부하	○ 입구온도 30.75 ± 0.5 ℃ (유량 : 정격의 ±5%)	
	50 %부하	○ 입구온도 29.5 ± 0.5 ℃ (유량 : 정격의 ±5%)	
	25 %부하	○ 입구온도 28.25 ± 0.5 ℃ (유량 : 정격의 ±5%)	

(2) 안정조건 : 시험조건의 온도변동 허용치 내에서 20분 이상 안정되어 있는 상태. 모든 데이터는 가능한 동시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조건의 판별을 위해 온도 및 유량측정에 대한 데이터 변동 그래프를 확인한다. (디스플레이 사진촬영 대체 가능)

(3) 냉수 입출구 및 냉각수 입구의 온도와 유량이 안정된 후 온도와 유량을 20분 내에 3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한다.

(4) 부분부하 운전 : 구동온수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냉각수 온도를 부분능력 %에 맞추어 조절하면서 구동온수 유량을 조절하여 공칭 냉동능력의 %비율 부분부하 상태를 유지한다.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의 경우 100% 운전 시만 보조사이클을 운전한다.)

5.2.4 능력 및 효율 산출방법

(1) 냉동능력

$$Q_c = (1/3.6)\, W_c C_c Y_c (t_{c1} - t_{c2})\, \{Q_c = 1{,}000\, W_c C_c Y_c (t_{c1} - t_{c2})\}$$

Q_c : 냉동 능력 (kW){kcal/h}

W_c : 냉수 유량 (㎥/h)

C_c : 냉수 비열 (kJ/kg℃){kcal/kg℃}

Y_c : 냉수 밀도 (kg/ℓ)

t_{c1} : 냉수 입구온도 (℃)

t_{c2} : 냉수 출구온도 (℃)

(2) 구동온수열 소비량

-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보온시 다음의 식을 따른다. (어떤 보온조건도 보온조건으로 본다)

$$Q_i = (1/3{,}600)\, W_k C_k Y_k (t_{k1} - t_{k2})\, \{Q_i = W_k C_k Y_k (t_{k1} - t_{k2})\}$$

Q_i : 가열량 (kW){kcal/h}

W_k : 구동온수 유량 (ℓ/h)

C_k : 구동온수 비열 (kJ/kg℃){kcal/kg℃}

Y_k : 구동온수 밀도 (kg/ℓ)

t_{k1} : 구동온수 입구온도 (℃)

t_{k2} : 구동온수 출구온도 (℃)

-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미보온시 다음의 식을 따른다.

$$Q_i = (1/3{,}600)\, W_k C_k Y_k (t_{k1} - t_{k2})(1 - l)\, \{Q_i = W_k C_k Y_k (t_{k1} - t_{k2})(1 - l)\}$$

l은 열손실률을 나타내며, 열손실률 계산은 다음의 식과 같은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

$$l = \frac{Q_o - Q_1}{Q_i}$$

l : 열손실률

Q_o : 보온시공전의 열손실량 (W){㎉/h}

Q_1 : 보온시공후의 열손실량 (W){㎉/h}

Q_t : 가열원소비량 (W){㎉/h}

※ 열손실률은 냉동기의 단수분류 및 용량분류에 따라 <표 5>를 참조하여 계산한다.

<표 5> 용량군에 따른 열손실률(l)

용량군 / 종 류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8군	9군	10군
1단 흡수냉동기	0.011	0.01	0.009	0.008	0.007	0.006	0.005	0.004	0.004	0.004
2단 흡수냉동기	0.016	0.015	0.013	0.012	0.011	0.01	0.009	0.008	0.008	0.008

(3) 성능계수(COP)

$$COP = \frac{Q_c}{Q_i}$$

COP : 성능계수

Q_c : 냉동능력 (kW){㎉/h}

Q_i : 구동온수열 소비량 (kW){㎉/h}

(4) 통합성능계수(IPLV) : 통합성능계수의 산출은 능력 100%(운전시간 1%), 능력 75%(운전시간 42%), 능력 50%(운전시간 45%), 능력 25%(운전시간 12%) 조건으로 다음의 식을 따른다.

통합성능계수 = 0.01A + 0.42B + 0.45C + 0.12D

A = 100% 운전에서 성능계수

B = 75% 운전에서 성능계수

C = 50% 운전에서 성능계수

D = 25% 운전에서 성능계수

※ 통합성능계수(IPLV) 산출 예시

만약 시스템이 25%의 용량에서 용량제어운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운전 가능한 최소용량으로 운전하고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부분부하 성능을 계산한다.

$$COP = \frac{Q_c}{C_d \cdot Q_i} \qquad C_d = (-0.13 \cdot LF) + 1.13$$

$$LF = \frac{\frac{25}{100} \cdot (\text{정격냉방능력})}{(\text{운전가능 최소냉방능력})}$$

COP : 성능계수

C_d : 손실계수(싸이클링 손실을 고려)

LF : 부하계수

5.3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에 따른 세부적용 기준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6>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기본모델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관련자료 등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표 6>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외 형[1], 최고사용압력[2]	시험 면제
2	열교환기[3]	통합성능계수
3	펌프[4]	통합성능계수
비 고		[1] 외형변경은 구조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변경(디자인 등)에 한함. [2] 동일한 형태, 구조이면서 단위용량 당 전열면적이 동등이상인 경우에 한함 [3] 동일한 재질, 형태, 구조이면서 전열면적이 동등이상인 경우에 한함. [4] 펌프의 용량, 구조, 재질, 형식이 동일하고, 효율이 동등이상인 경우에 한함.

5.4 복수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 기준

복수부품 등재에 따른 인증 신청 시 복수부품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7>의 복수부품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7> 복수 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열교환기[1]	통합성능계수
2	펌프[2]	통합성능계수
비 고		[1] 동일한 재질, 형태, 구조이면서 전열면적이 동등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펌프의 용량, 구조, 재질, 형식이 동일하고, 효율이 동등 이상일 경우에 한함.

6. 시험설비(필수 보유 장비 포함)

1) 전력측정장치*
2) 내전압 시험장치
3) 절연저항계
4) 유량계
5) 온도 측정장치
6) 압력 측정장치

(주) *는 고효율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대체가 가능한 설비

7. 제품 표시사항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 마크
2) 품목명, 모델명
3) 제조자명, 제조번호
4) 정격 냉동 능력
5) 전부하 성능계수
6) 통합성능계수(IPLV)
7) 냉수 입·출구 온도, 유량
8) 구동온수 입·출구 온도, 유량
9) 냉각수 입·출구 온도, 유량
10) 최고 사용압력
11) 사용전원(상수 ϕ, 전압 V, 주파수 Hz)
12) 제조년월
13) A/S 연락처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 범위 및 개요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전기자동차의 메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장치 중, KS R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 에서 규정하는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에 적용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KC인증을 득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1.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R IEC 61851-1	전기 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S R IEC 61851-23	전기 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제 23부 : 직류 충전설비
KS R IEC 62196-1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제 1부 : 일반 요구사항
KS R IEC 62196-3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제 3부 : 직류 및 교류/직류 핀과 접촉 튜브 자동차 커플러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1851-23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3부 : 직류 충전 장치
KC 62196-1	전기차 충전시스템 - 플러그, 소켓-아웃렛, 커넥터 및 인렛,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1.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R IEC 61851-1, KS R IEC 61851-23, KS R IEC 62196-1, KS R IEC 62196-3 및 동등한 KC 규격에 따르며, 기본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EV charger) : 상, 중성, 보호 접지 도체를 포함한 도체, 전기자동차 커플러, 부착 플러그 및 다른 모든 부속품, 장치, 전력 아웃렛 또는 구내 배선에서 전기 자동차로 에너지를 전송하고 필요하다면 그들 간의 통신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된 장치

2) 전기 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d.c. EV charging system) : 직류 충전기, 케이블 어셈블리 및 충전 제어를 위한 디지털 통신을 포함한 충전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자동차 내 장치로 구성된 설비

3) 절연형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Isolated d.c. EV charging system) : 외부 측의

직류 회로가 최소 기초 절연을 통해 전원 시스템 측의 교류 회로와 전기적으로 분리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 설비

4) 전압 제어 충전 (Controlled voltage charging, CVC)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가 차량에서 요구하는 전압값에 따라 충전 전압을 조정하는 에너지 전달 방식

5) 전류 제어 충전 (Controlled voltage charging, CCC)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가 차량에서 요구하는 전류값에 따라 충전 전류를 조정하는 에너지 전달 방식

2. 종류 및 구분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구분은 <표 1>에 따른다.

<표 1> 전기차 충전장치 시스템 구분

종류	구분	비고
시스템	A	KS R IEC 61851-23, 부속서AA 참조
	B	KS R IEC 61851-23, 부속서BB 참조
	C	KS R IEC 61851-23, 부속서CC 참조
	D	KS R IEC 61851-23, 부속서FF 참조
	기타	2개 이상의 시스템을 포함한 경우 (각각의 시스템을 별도의 충전기로 평가)

<표 2> 전기차 충전장치 입력 용량 범위 구분

종류	구분	비고
입력 용량 범위	I	10 kW 이하
	II	10 kW 초과 50 kW 이하
	III	50 kW 초과 100 kW 이하
	IV	100 kW 초과 200 kW 이하

3. 효율 및 성능시험

이 규격에서 허용하는 요구사항과 허용차는 제조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한 형식시험 시료의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이 형식시험 시료는 제조자의 생산품을 대표하는 특성을 갖는 장치로 구성해야 하며, 가능한 생산 중심점 값에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3.1 시험조건

1) 시험품은 의뢰자가 제공한 상태로 시험한다.

2) 20±5℃의 통풍이 없는 위치에서 시험한다.

3) 전원 전압은 될 수 있는 한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 변동 범위를 표준 공칭 전압의 ±10% 이내로 한다.

4) 전원 주파수는 될 수 있는 한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 변동 범위를 60 Hz±1%로 한다.

5) 전원, 부하시뮬레이터 및 파형측정기는 그림1과 같이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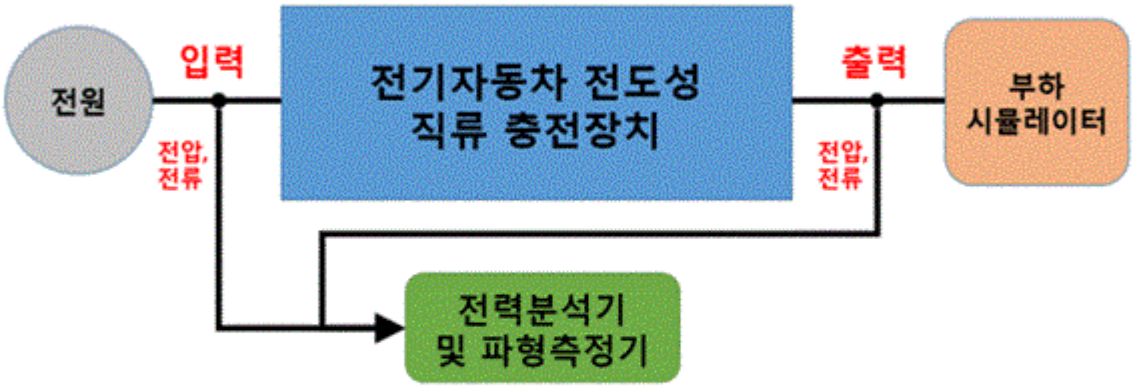

[그림 1]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험구성도

3.2 시험방법 및 절차

안전인증(KC) 또는 KS인증을 득한 모델은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 동일한 시험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효율 시험

① 그림1과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전원, 부하시뮬레이터 및 파형측정기를 연결한다.

② 전류제어충전(CCC) 모드에서 정격전류 충전을 실시한다.

③ 10분 동안 충전을 실시한 후(aging), 이후부터 일정시간마다(1초 이내) 입력단과 출력단의 전력량을 적산하여 효율을 계산한다. 이때, 소수 둘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text{효율} = \frac{\text{출력 유효전력량}(kWh)}{\text{입력 유효전력량}(kWh)} \times 100 \quad [\%]$$

④ 효율측정은 정격출력전력의 ±5%에서 정격출력전류를 기준으로 총 10분간 전력량을 적산한다. 단, 정격출력전류가 범위로 제시된 경우 최대출력전류를 기준으로 적산한다.

(전체시험시간 = 10분 충전(aging) + 10분 효율측정 = 총 20분)

⑤ 출력단은 DC 전력량계 출력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정전압제어시 정기 편차 및 임의 편차

① 그림1과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전원, 부하시뮬레이터 및 파형측정기를 연결한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를 정전압제어모드에서 정격출력전압의 90%로 운전한다.

③ 출력전압이 안정화 된 후, 최대전압 편차와 최대전압 리플을 측정한다.

3) 부하 덤프 시험

부하 덤프가 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출력 전류의 정상값 100 %에서 0 %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의 다른 부하는 연결되어 있지만 차량 배터리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① 그림1과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전원, 부하시뮬레이터 및 파형측정기를 연결한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를 전류제어충전(CCC)에서 정력출력전류의 100%로 운전한다.

③ 출력전류가 안정화 된 후, 부하를 0%로 급감시킨다.

④ 부하 급감 시, DC 전력량계 출력 지점을 기준으로 출력전압을 측정한다.

3.3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1)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변경 모델에 대한 시료를 제출해야 하며, <표 3>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전원용 변압기, 정류용 다이오드, DC link단 커패시터, 파워 스위칭 소자 (IGBT 등)	효율
2	외형(케이스) 형상	시험면제

4. 인증기술기준

1) 효율

<표 4> 전기차 전도성 직류 충전장치 고효율 기준

입력용량 구분	효율
Ⅰ, Ⅱ, Ⅲ	94.0 %
Ⅳ	95.0 %

* 전류 제어 충전(CCC) 모드에서 정격전류 충전 시

2) CVC 정기 편차 및 임의 편차

<표 5> CVC 정기 편차 및 임의 편차 기준

구분	기준
최대전압 편차	요청전압의 ±5% 이내
최대전압 리플	±5V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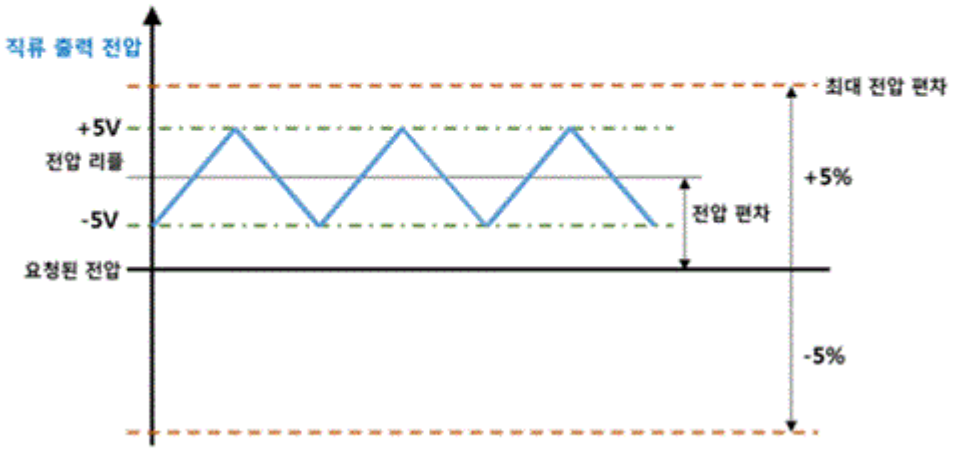

[그림 2] CVC 최대전압 편차 및 리플

3) 부하 덤프 시험

<표 6> 부하덤프시험 기준

구분	제한값	비고
시스템 A	600 V	KS R IEC 61851-23, 부속서AA 참조
시스템 B	차량에서 요청한 최대 전압 한계의 110%	KS R IEC 61851-23, 부속서BB 참조
시스템 C	차량에서 요청한 최대 전압 한계의 110%	KS R IEC 61851-23, 부속서CC 참조
시스템 D	600 V	KS R IEC 61851-23, 부속서FF 참조
기타		각 시스템의 사양을 각각 만족한다.

5. 시험설비 (필수 보유 장비 포함)

1) 전력분석기

2) 오실로스코프 및 전압, 전류 프로브

3) 부하시험기 (생산 중인 모델의 정격시험이 가능한 용량)

4) 절연저항계

6. 제품 표시사항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및 제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 마크

2) 제조사명, 모델번호

3)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시스템 및 용량범위 구분 (표 1~2 참조)

4) 입력 전압(V) 및 전류(A)

5) 출력 전압(V) 및 전류(A)

6) 보호 등급(IP 코드)

7) 필요 시 안전인증에서 요구하는 필수 사항

8) A/S 연락처

(18) 등기구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 범위 및 개요

1.1 적용 범위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의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등기구에 따른 구분은 실내용LED등기구, 실외용LED등기구, PLS등기구,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로 구분한다.
단, 스마트LED조명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제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하고, 참조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KS C 7613, 휘도 측정 방법
KS C 7653, LED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KS C 7657, LED 센서등기구
KS C 7658, LED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
KS C 7712, LED 투광등기구
KS C 7716, LED 터널등기구
KS C 8000 : 조명기구 통칙
KS C IEC 60050-845 : 조명용어
KS C 9610-3-2, 전기자기적합 (EMC) - 제3-2부 : 허용기준-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 (상당 입력 전류 16 A 이하 기기)
CIE 127 : Measurement of LEDs
CIE 84 : Measurement of Luminous Flux

1.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KS C 7653, KS C 7658, KS C 7657, KS C 7712, KS C 7716의 용어의 정의와 함께 다음을 따른다.

1) 등기구

주로 램프의 배광 및 광색을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며 그들 램프를 고정하여 보호하거나 전원에 접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갖춘 기구, 점등에 필요한 부속 장치도 포함

2) 실내용 LED등기구

실내에서 사용하는 등기구

3) 실외용 LED등기구

실외에서 사용하는 등기구

4) PLS등기구

PLS방식의 무전극 램프를 적용한 조명기기(Plasma Lighting System) :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벌브내의 기체, 금속증기 또는 그들의 혼합 기체에 의한 방전으로 발광토록 하는 PLS방식의 무전극 램프를 적용한 조명기기(KC 10006)

5) 초정압방전램프등기구

발광관 내부 안정화 가스봉입 방전 램프를 말하며, 혼합물 기중방전에 의해 발광하는 고휘도 방전 램프(HID)를 말하며, 혼합물에는 안정화 방전을 위하여 미량의 수은이나 제논(Xe) 등이 포함될 수 있다.

6)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방전 공간내에 전극이 없고 램프 벌브에 형광체와 봉입가스를 주입하며 외부 유도 코어에 고주파(3 kHz ~ 300 MHz)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램프 결합으로 된 조합된 등기구

7) 정격 전압

등기구에 표시된 전압 또는 전압의 범위

8) 정격 전류

등기구에 표시된 전류

9) 정격 전력

등기구에 표시된 전력

주) "전압", "전류" 및 "전력" 이라는 용어가 쓰인 곳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실효치를 의미한다.

11) 역률

등기구에서 소비하는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

12) 배광광도계(Goniophotometer)

광원, 조명기구, 반사물체 또는 투과 물체로부터 방사의 방향 특성을 측정하는 장치. 보통 광원이나 조명기구의 배광을 측정하는 것을 배광광도계라 하며 입사각, 관측각을 바꾸어 반사 또는 투과 물체의 특성을 측정하는 설비

13) 구형광속계(적분구)

적분구를 사용하여 광원의 전광속을 비교 측정하는 측광기(KS C IEC 60050-845)

14) 일체형 컨버터

LED모듈과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별도로 시험할 수 없는 램프 구동장치

15) 내장형 컨버터

LED 등기구 외함 내부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램프 구동장치

16) 독립형 컨버터

표시에 따른 보호 장치가 있고 LED 등기구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구동장치

17) 부품 변경

인증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인정되고 인증모델명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18) 복수부품

인증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추가로 인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 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인정되고 인증모델명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19) 방열부

히트싱크(Heat Sink)와 같이 기구의 열을 방출하거나 열전도에 의해 뜨거워진 표면을 식히는 장치

20) 광원부

LED 모듈, LED 패키지(Package) 등 빛을 발산하는 구성요소

21) 기구부

반사갓(판), 렌즈, 커버, 마감재 등의 기구물

22) 외형 변경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방열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광원부를 변경하지 않고 광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단순 부착물, 색상, 디자인, 마감재 등)

2. 종류 및 구조

1) 실내용 LED등기구

실내용LED등기구 종류는 KC 및 KS 표준에 따라 KS 7653(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KS C 7657(LED 센서등기구), KS C 7712(LED 투광등기구) 같이 구분한다.

※ 실내용 LED등기구는 안전인증(KC) 또는 KS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실외용 LED등기구

실외용 LED등기구 종류는 안전인증(KC) 및 KS 표준에 따라 KS 7658(LED 보안 및 가로등기구), KS C 7712(LED 투광등기구), KS C 7716(LED 터널등기구) 같이 구분한다.

※ 실외용LED등기구의 LED컨버터(구동장치)는 안전인증(KC) 또는 KS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PLS 등기구

700 W, 1000 W에 한하며, 안전인증(KC)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초정압방전램프등기구

150 W이하 실내에서 사용하는 등기구는 안전인증(KC)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단, 실외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의 경우 안정기(구동장치)는 안전인증(KC) 또는 KS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5)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150 W이하 실내에서 사용하는 등기구는 안전인증(KC)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단, 실외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의 경우 안정기(구동장치) 및 램프는 안전인증(KC) 또는 KS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성능 시험

3.1 시험조건

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험은 10 ~ 30 ℃의 주위 온도에서 항목 순으로 시험한다. 단, 광학특성 시험은 정격입력 전압 및 주파수를 인가한 후 (25 ± 3) ℃의 최대 65 %의 상대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한다.
2) 시험전압은 ± 3 %의 허용오차를 가질 수 있다. 전압 범위의 경우 평균값에서 측정한다.
3) 또한 전체 고조파 성분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합으로 정의된다.

3.2 시험방법 및 절차

KS인증을 득한 모델은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 동일한 시험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입력 전류 및 입력 전력 시험은 [그림 1]과 같이 접속하고 정격 주파수의 입력전압을 가하여 입력전류 및 입력 전력을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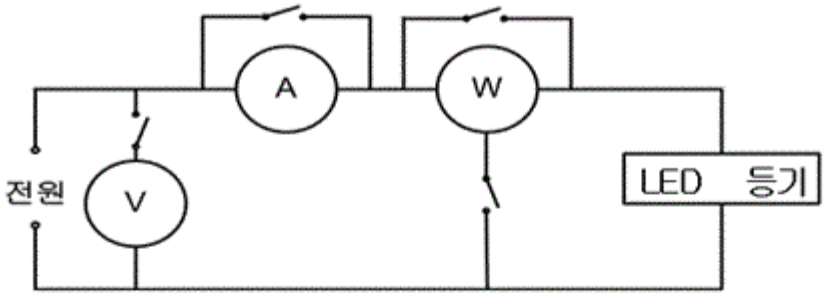

[그림 1] 입력 전류 및 입력 전력 측정 회로

2) 역률

[그림 1]과 같이 접속하고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역률} = \frac{\text{측정입력전력}}{\text{정격입력전압} \times \text{측정입력전류}}$$

3) 고조파 전류

정격 주파수의 정격 입력 전압을 가하여 충분히 안정된 후 고조파 전류 측정기기로 입력 측의 고조파 전류를 KS C 9610-3-2에 따라 시험한다.

4) 연색지수,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상관색온도는 KS C 0075 및 KS C 0076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5) 광출력

① 초기광속 : 등기구를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배광 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 및 입력 전력을 측정한다.

② 광효율 : 초기광속 측정시 측정한 광속 및 입력 전력으로 계산한다.

$$\text{광효율}[\text{lm/W}] = \frac{\text{초기광속}}{\text{입력전력}}$$

③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등기구에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 후 배광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한다.

다만, 'LED 등기구는 [부록]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당해 품목 광속유지율 기준 이상의 LED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3.3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1)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1>, <표 2>, <표 3>, <표 4>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LED 등기구의 경우 '[부록]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당해 품목 광속유지율 기준 이상의 LED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표 1> 실내용 및 실외용 LED등기구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방열판, LED PCB	입력전력, 입력전류, 초기광속, 광효율
2	외형	시험면제
3	확산커버 또는 렌즈	입력전력, 입력전류, 초기광속, 광효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4	LED 컨버터	입력전력, 입력전류, 역률, 고조파 전류, 초기광속, 광효율
5	LED Package	입력전력, 입력전류,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6	LED Package 수량	입력전력, 입력전류, 초기광속, 광효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7	LED package 배열	입력전력, 입력전류, 초기광속, 광효율

<표 2> PLS (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외형	시험 면제
2	광원부 커버재질	초기광속, 광효율, 연색지수
3	반사갓	초기광속, 광효율

<표 3> 초정압 방전 램프용 등기구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외형	시험 면제
2	광원부 커버재질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초기광속, 광효율
3	안정기	입력전력, 입력전류, 역률, 고조파 전류, 초기광속, 광효율
4	반사갓	초기광속, 광효율
5	램프의 아크튜브, 충진방식 등 방전구조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

<표 4>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외형	시험 면제
2	확산커버 및 반사갓	입력전력, 입력전류, 초기광속 및 광효율
3	안정기	입력전력, 입력전류, 역률, 고조파 전류, 초기광속 및 광효율
4	램프*	입력전력, 입력전류,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비고	* 램프의 변경은 KS C 7802 부속서 A에 따라 동일한 형태(전구형, 둥근형 [(a),(b)]) 및 전력의 램프에 한함.	

3.4 복수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1) 복수부품 등재에 따른 인증 신청 시 복수부품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5>, <표 6>, <표 7>, <표 8>의 복수부품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복수 부품이 다수 일 경우, 모든 경우의 수 만큼 시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실내용 및 실외용LED등기구 복수부품 항목에 따른 시험방법 기준은 <표 5>와 같이 적용하고 시험방법은 세부적용기준을 따른다.

<표 5> 실내용 및 실외용 LED등기구 복수 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복수부품 항목	세부적용기준
1	LED 컨버터*	입력전력, 입력전류, 역률, 초기광속, 광효율
2	LED Package*	입력전력,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
비고	* LED Package 의 경우 동일 상관색온도에서 [Vf 및 If(max)]동일한 경우만 등재 가능 * LED 컨버터의 경우 동일 성능(입력전류, 입력전력, 출력전압, 출력전류) 일 경우에만 복수부품 등재가 가능.	

3) PLS (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복수부품 항목에 따른 시험방법 기준은 <표 6>과 같이 적용하고, 시험방법은 세부적용기준을 따른다.

<표 6> PLS (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복수 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복수부품 항목	세부적용기준
1	광원부 커버재질	초기광속, 광효율, 연색지수
2	반사갓	초기광속, 광효율

4)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복수부품 항목에 따른 시험방법 기준은 <표 7>과 같이 적용하고, 시험방법은 세부적용기준을 따른다.

<표 7>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복수 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복수부품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안정기*	입력전력, 입력전류, 역률, 고조파 전류, 초기광속, 광효율
2	램프의 아크튜브, 충진방식 등 방전구조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
비고	* 안정기 정격(입력 및 출력, tc, 적용램프) 동일한 경우만 등재 가능	

5)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복수부품 항목에 따른 시험방법 기준은 <표 8>와 같이 적용하고 시험방법은 세부적용기준을 따른다.

<표 8>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복수 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복수부품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안정기*	입력전력, 역률, 초기광속, 광효율
2	램프*	입력전력,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 분광특성
비고	* 램프의 변경은 KS C 7802 부속서 A에 따라 동일한 형태(전구형, 둥근형 [(a),(b)]) 및 전력의 램프에 한함. * 안정기의 경우 동일 성능(입력전류, 입력전력, 출력전압, 출력전류, 출력주파수)일 경우에만 복수부품 등재가 가능	

4. 인증기술기준

4.1 공통기준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표시값의 ± 10 % 범위이어야 한다.

2) 역률

0.9 이상이어야 한다.

*실내용 및 실외용 LED등기구의 경우 5 W 이하는 0.85이상이어야 한다.

*PLS (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의 경우 표시치의 ± 0.05 이내 이어야 한다.

3) 고조파 전류

KS C 9610-3-2에 따라 시험하고 해당 규격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2 개별기준

1) 실내용 LED등기구

광학적 특성 및 광속유지율은 <표 9>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상관색온도 범위가 초과하는 것은 불가)

<표 9> 실내용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table>
<tr><td>항 목</td><td colspan="4">기 준</td></tr>
<tr><td>초기광속</td><td colspan="4">정격광속의 95% 이상</td></tr>
<tr><td>광속유지율</td><td colspan="4">초기 광속 측정값의 90% 이상</td></tr>
<tr><td>연색지수(Ra)</td><td colspan="4">80 이상</td></tr>
<tr><td rowspan="2">상관색온도(K)</td><td rowspan="2">색온도범위(K)</td><td colspan="3">광효율 (lm/W)</td></tr>
<tr><td>10W 이하</td><td>10W 초과
30W 이하</td><td>30W 초과</td></tr>
<tr><td>6 500</td><td>6 530 ± 510</td><td rowspan="8">100</td><td rowspan="8">105</td><td rowspan="8">110</td></tr>
<tr><td>5 700</td><td>5 665 ± 355</td></tr>
<tr><td>5 000</td><td>5 028 ± 283</td></tr>
<tr><td>4 500</td><td>4 503 ± 243</td></tr>
<tr><td>4 000</td><td>3 985 ± 275</td></tr>
<tr><td>3 500</td><td>3 465 ± 245</td></tr>
<tr><td>3 000</td><td>3 045 ± 175</td></tr>
<tr><td>2 700</td><td>2 725 ± 145</td></tr>
</table>

2) 실외용 LED등기구

광학적 특성 및 광속유지율은 <표 10>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상관색온도 범위가 초과하는 것은 불가)

<표 10> 실외용 LED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기 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 이상	
연색지수(Ra)	75 이상	
상관색온도(K)	색온도범위(K)	광효율 (lm/W)
6 500	6 530 ± 510	115
5 700	5 665 ± 355	
5 000	5 028 ± 283	
4 500	4 503 ± 243	
4 000	3 985 ± 275	
3 500	3 465 ± 245	
3 000	3 045 ± 175	
2 700	2 725 ± 145	

3) PLS (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광학적 특성 및 광속유지율은 <표 11>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11> PLS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시험항목 / 입력전력	초기광속 (lm)	광효율 (lm/W)	광속유지율(%)	연색지수(Ra)
7 00 W	42 000 이상	60 이상	80 이상	80 이상
1 000 W	65 000 이상	65 이상		

4)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광학적 특성 및 광속유지율은 <표 12>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12>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기 준			
초기광속(lm)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70 % 이상			
연색지수(Ra)	75 이상			
상관색온도(K)	색온도범위(K)	광효율(lm/W)		
		50 W이하	50 W 초과 100 W 이하	100 W 초과 150 W이하
6 500	6 530 ± 510	72	76	76
5 700	5 665 ± 355			
5 000	5 028 ± 283			
4 500	4 503 ± 243			
4 000	3 985 ± 275			
3 500	3 465 ± 245			
3 000	3 045 ± 175			
2 700	2 725 ± 145			

5)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광학적 특성 및 광속유지율은 <표 13>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13>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table>
<tr><td colspan="2">항 목</td><td colspan="2">기 준</td></tr>
<tr><td colspan="2">초기광속(lm)</td><td colspan="2">정격광속의 95 % 이상</td></tr>
<tr><td colspan="2">광속유지율</td><td colspan="2">초기광속 측정값의 90 % 이상</td></tr>
<tr><td colspan="2">연색지수</td><td colspan="2">75 이상</td></tr>
<tr><td>광원색</td><td>기호</td><td>색온도범위(K)</td><td>광효율(lm/W)</td></tr>
<tr><td>청백색
(또는 주광색)</td><td>D</td><td>5 700 ~ 7 100</td><td rowspan="5">75</td></tr>
<tr><td>연청백색
(또는 주백색)</td><td>N</td><td>4 600 ~ 5 400</td></tr>
<tr><td>백 색</td><td>W</td><td>3 900 ~ 4 500</td></tr>
<tr><td>연황백색
(또는 온백색)</td><td>WW</td><td>3 200 ~ 3 700</td></tr>
<tr><td>황백색
(또는 전구색)</td><td>L</td><td>2 600 ~ 3 150</td></tr>
</table>

5. 시험설비 (필수 보유 장비 포함)

1) 치수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등)

2) 정전압 공급장치(AC/DC Power Supply)

3) 전력분석계(Power Analyzer)

4) 광학적 특성 측정용(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측정기)*

5) 분광분석계*

6) 에이징 시험설비

주 : *는 고효율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대체가 가능한 설비

6. 제품 표시사항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및 제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마크 :
2) 품목명 및 모델명 :
3) 정격전압 :
4) 정격전력 :
5) 정격전류 :
6) 정격광속 :
7) 광효율 :
8) 상관색온도 :
9) 연색지수 :
10) 원산지표시(상표, 제조자명, 공급자명) :
11) KC 및 KS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 :
12) A/S연락처 :
13) 제조연월 :

[부록]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

1. LED램프 및 등기구 시험면제조건

1) LED램프 및 등기구의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에 대한 광속유지율시험은 아래의 2.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을 적용한 고효율인증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본 기준의 시험방법 동등이상의 기준을 적용한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하며, 광속유지율 시험성적서의 측정값은 2.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의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2) LED램프 및 등기구의 LED패키지에서 측정된 온도 및 전류는 패키지 성적서에 기재된 온도 및 전류 이하이어야 한다.

2.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

LED패키지 제조사에서 제공한 LED패키지(20개) 전수에 대한 광속유지율 시험을 실시한다.

1) 광속유지율

① 초기광속 : 에이징 없이 LED패키지에 정격 전류를 가하여 광속 및 전압을 측정한다.

② 광속유지율 : LED패키지에 정격 전류를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 후 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하며 시험완료한 LED패키지(20개의)의 광속유지율은 해당 품목의 광속유지율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에이징 방법 : LED패키지 제조사에서 제시한 최대온도 ± 2 ℃에서 정격전류를

LED패키지에 인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을 실시한다. (패키지에 부착되는 방열판은 업체에서 제공 또는 시험기관과 협의)

2) 온도상승 시험

① LED패키지, LED램프 및 등기구의 온도측정은 KS A 0511(온도 측정 방법 통칙)에 따른 방법 및 KS C 1602(열전대)에 해당하는 열전대를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LED 패키지의 표면온도(Ts)*는 제조자가 제시한 LED패키지의 측정 부위에 열전대(Thermocouple)를 부착하여 측정하며, 표면온도(Ts)는 시험기간 동안 관찰되어야 한다.

* 표면온도(Ts) : LED패키지 제조자가 제시한 LED패키지 측정부위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측정한 표면온도

③ LED램프 및 등기구의 온도 측정은 3 mm 이하의 구멍을 천공하여 열전대(Thermocouple)를 부착 한 후 구멍을 완전히 밀봉시킨 후 LED패키지의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된 위치는 사진으로 성적서에 첨부)

④ LED램프 및 등기구의 측정된 최대온도는 LED 패키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온도 이하이어야 한다.

3.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 시험면제 기준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LED패키지에서 아래 일부항목이 변경되는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에 대해서는 아래 시험면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No	변경 항목	시험 면제조건
1	동일한 재질 렌즈	시험면제
2	동일한 재질 형광체(색온도)	LED패키지 상관색온도(2 700K이상~3 500K이하, 3 500K초과~6 500K이하)범위내에서 시험면제 (다만, 낮은 색온도 범위(2 700K이상~3 500K이하)의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만족시 높은 색온도 범위(3 500K초과~6 500K이하)의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시험면제 가능)
3	LED chip 수량(동일 chip)	LED패키지 기본모델 대비 수량이 그 이하일 것
4	LED chip 배열(동일 chip)	LED패키지 기본모델 대비 정격전력(W)이 그 이하일 것
5	LED chip	시험면제 불가

(19) LED램프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 범위 및 개요

1.1 적용 범위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컨버터를 포함한다.

LED램프는 LED컨버터를 이용하여 구동해야 하며, 이 때 LED컨버터는 안전인증(KC)[품명 : 조명기구용컨버터(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컨버터내장형)

이 규격은 이중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적용한다.
이중 캡 LED 램프 중 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예 : KC 60081의 최대길이 1199.4 mm, 589.8 mm 형광램프 대체용),
단일 캡 LED 램프 중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 대체형 LED램프에 적용한다. (예 : KC 60901의 최대길이 415 mm, 535 mm 형광램프 대체용)

LED램프는 안전인증(KC)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안전인증(KC)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은 면제한다.

1.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C 20001 : 직관형 LED램프 - 컨버터 외장형 -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C 10025 :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KC 61195 : 이중 베이스 형광램프의 안전요구사항

KC 60081 : 이중 베이스 형광램프의 성능

KC 61199 : 단일캡 형광램프 - 안전

KC 60901 : 단일캡 형광램프 - 성능

KS C IEC 60061-1, 호환성 및 안전성 구동을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제1부 : 램프 캡

KS C IEC 60061-3, 호환성 및 안전성 구동을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제3부 : 게이지

KS C IEC 60061-4, 호환성 및 안전성 구동을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제4부 : 지침 및 일반정보

KS C 9610-3-2, 전자자기적합 (EMC) – 제 3-2부 : 허용기준-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 (상당 입력 전류 16A 이하 기기)

KS C IEC 61199, 단일캡 형광램프 – 안전요구사항

KS C IEC 61347-1, 램프구동장치 - 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KC 61347－2－3 : 램프 제어장치, 제2부 : 형광램프에 사용하는 교류전자식안정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C 61347－2－8 : 램프 구동장치 제2－8부 : 형광램프용 안정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7601 :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KS C IEC 60050－845 : 국제 전기기술 용어 – 제845장 : 조명

IEC TS 62504 : General lighting – LEDs and LED modules – Terms and definitions

Energy Star : International Efficiency Marking Protocol for External Power Supplies

1.3 용어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C20001, KC10025의 용어의 정의와 함께 다음을 따른다.

1) LED 램프 :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구조의 LED를 채용한 일반조명용 램프

2) 발광 다이오드 : 전류 인가 시 광학적 복사를 방출하는 p-n 접합을 구현한 반도체 소자

3) 광속 : 광원이 모든 방향으로 방출하는 광속으로, 방사속을 CIE 표준 비시감도와 최대 시감도에 근거하여 평가한 양(Φv, Φ). 방사속의 분광분포를 Φe, λ(λ)로 할 때,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Phi v = Km \int_0^{\infty} \Phi e,\lambda(\lambda) \cdot V(\lambda) \cdot d(\lambda)$$

여기에서 km: 최대 시감도, V(λ): CIE 표준 비시감도이다.(KS C IEC 60050-845)

4) 정격 전압
램프에 표시된 전압 또는 전압의 범위

5) 정격 전류
램프에 표시된 전류

6) 정격 전력
램프에 표시된 전력

7) 배광광도계(Goniophotometer)
광원, 조명기구, 반사물체 또는 투과 물체로부터 방사의 방향 특성을 측정하는 장치. 보통 광원이나 조명기구의 배광을 측정하는 것을 배광광도계라 하며 입사각, 관측각을 바꾸어 반사 또는 투과 물체의 특성을 측정하는 설비

8) 시스템 효율
LED램프의 광속을 LED컨버터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단위 : lm/W)

9) 형광램프용 시험용안정기(고주파시동장치)
형광램프 및 LED램프의 시험 및 비교기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계된 안정기

10) 안정기 방식

형광램프를 점등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정기는 구동방식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자기식안정기(글로우 스타터 식, 래피드 스타터 식, 반도체 스타터 식)
- 전자식안정기(자려 식, 타려 식, 순시기동 식)

11) 부품 변경

인증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인정되고 인증모델명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12) 복수부품

인증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추가로 인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 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인정되고 인증모델명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13) 방열부

히트싱크(Heat Sink)와 같이 기구의 열을 방출하거나 열전도에 의해 뜨거워진 표면을 식히는 장치

14) 광원부

LED 모듈, LED 패키지(Package) 등 빛을 발산하는 구성요소

15) 기구부

반사갓(판), 렌즈, 커버, 마감재 등의 기구물

16) 외형 변경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방열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광원부를 변경하지 않고 광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단순 부착물, 색상, 디자인, 마감재 등)

17) 더미G13캡 (Dummy G13 Cap)

더미G13캡의 형상 및 치수는 G13 캡의 형상과 동일하나 전기적 통전이 없으며 램프만 지지하는 구조

2. 종류 및 구조

LED램프의 종류는 형상, 정격전압 및 정격전력에 따라 <표 1>와 같이 구분한다.

<표 1> LED램프 종류 구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4">종 류</th></tr>
<tr><td rowspan="5">직관형
LED 램프
(컨버터외장형)</td><td rowspan="2">적용캡</td><td colspan="4">G13</td></tr>
<tr><td colspan="4">D12</td></tr>
<tr><td>정격램프전류(A)</td><td colspan="4">0.57 ± 0.005</td></tr>
<tr><td>정격램프전력(W)</td><td colspan="4">22 이하</td></tr>
<tr><td>치수(mm)</td><td colspan="4">1198.0 mm ± 1.5 mm</td></tr>
<tr><td rowspan="3">형광램프
대체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td><td>적용 캡</td><td colspan="2">G13</td><td colspan="2">2G11</td></tr>
<tr><td rowspan="2">램프길이</td><td>32 W,
40 W</td><td>최대 1199.4
mm</td><td>36 W</td><td>최대
415 mm</td></tr>
<tr><td>20 W</td><td>최대
589.8 mm</td><td>55 W</td><td>최대
535 mm</td></tr>
</table>

또한,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는 다음의 구조를 만족하여야 한다.

1) LED 램프는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사람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2) LED램프의 감전 보호용 부품은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다른 등기구에 잘못 삽입되어도 전기적으로 안전한 제품이 되어야 한다.

4) LED램프는 (+,-)극성에 관계없이 동작되는 무극성을 갖는 램프이어야 한다.

5) 캡과 몸체는 확실하게 접착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 사용 상태에서 느슨하게 될 우려가 없고,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풀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6) G13 캡은 혼용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쪽 이상의 캡을 절연하여 전기적 통전이 없어야 한다. 절연된 부분에는 더미 G13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더미 G13캡은 핀 등의 표면에 금속 등 도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기적 통전이 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3. 성능 시험

3.1 시험조건

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험은 10 ~ 30 ℃의 주위 온도에서 항목 순으로 시험한다. 단, 광학특성 시험은 정격입력 전압 및 주파수를 인가한 후 (25 ± 3) ℃의 최대 65 %의 상대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한다.

2) 시험전압은 ± 3 %의 허용오차를 가질 수 있다. 전압 범위의 경우 평균값에서 측정한다.

3) 또한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합으로 정의된다.

4) 시험 중 시험용 안정기 또는 램프 구동장치에서 25 mm이내에 자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5)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시험 항목 별 시험 방법

<표 2>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시험 항목 별 시험 방법

분류	LED램프	LED램프 + LED컨버터 시스템
시험항목	램프전력, 관색온도, 연색지수, 광학적 특성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	효율(시스템효율)
시험방법	DC POWER에 LED램프를 연결하여 측정	LED컨버터에 LED램프를 연결하여 측정

6)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시험 항목 별 시험 방법

<표 3>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시험 항목 별 시험 방법

분류	LED램프	LED램프 + 안정기
시험항목	램프전력, 램프전압, 램프전류,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광학적 특성(초기광속, 광효율)	광학적 특성(광속유지율)
시험방법	LED램프를 대체하고자 하는 형광램프의 시험용안정기에 연결하여 시험	제조자가 제시한 안정기에 LED램프를 연결하여 시험
측정 회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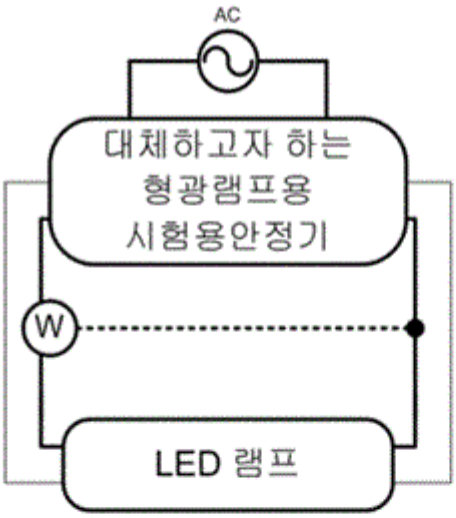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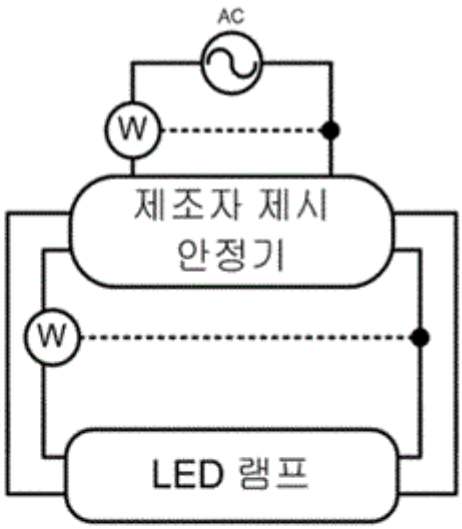

3.2 시험 방법 및 절차

안전인증(KC) 득한 모델은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 기준에 적합할 경우 동일한 시험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입력 전력, 입력 전류

입력 전류 및 입력 전력 시험은 [그림 1]과 같이 접속하고 정격 주파수의 입력전압을 가하여 입력 전류 및 입력 전력을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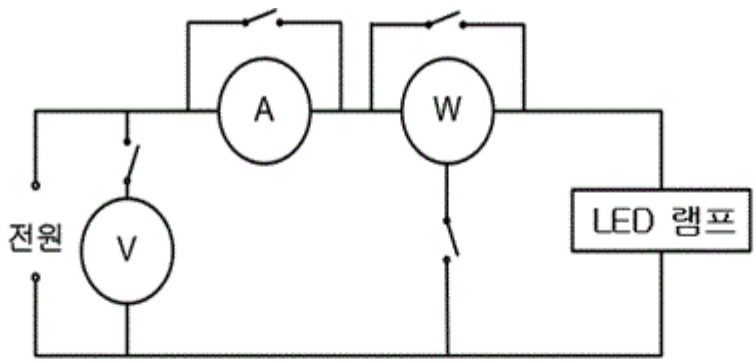

[그림 1] 입력 전류 및 입력 전력 측정 회로

2) 역률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역률} = \frac{\text{측정입력전력}}{\text{정격입력전압} \times \text{측정입력전류}}$$

3) 램프전력

LED램프를 100시간 에이징 후 램프를 점등하여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램프 전력을 측정한다.

4) 램프전압

LED램프를 100시간 에이징 후 램프를 점등하여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램프 전압을 측정한다.

5) 램프전류

LED램프를 100시간 에이징 후 램프를 점등하여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램프 전류를 측정한다.

6)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LED램프를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은 정격램프 전류값)을 가하여 점등하여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측정 장비로 측정한다.

7) 광학적 특성

① 초기광속 : LED램프에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은 정격램프 전류값)을 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 및 입력 전력을 측정한다.

② 광속유지율 : LED램프에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은 정격램프 전류값)을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 후 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한다. 다만, '[부록]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 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당해 품목 광속유지율 기준 이상의 LED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③ 광효율 : 초기 광속 측정시 측정한 광속 및 입력 전력으로 계산한다.

$$\text{광효율}[\text{lm/W}] = \frac{\text{초기광속}}{\text{입력전력}}$$

8) 시스템 효율

[그림 2]과 같이 접속하여 LED컨버터에 정격입력 전압을 가하고 LED램프를 100시간 에이징 후 LED램프의 광속을 측정하고 측정된 광속을 LED컨버터 입력전력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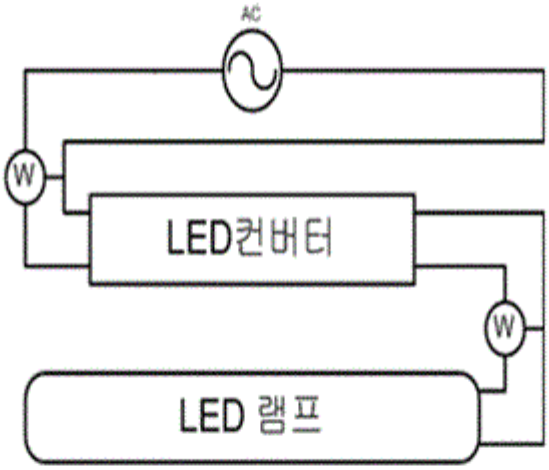

[그림 2] 시스템 효율 측정 회로도

$$\text{시스템 효율}[\text{lm/W}] = \frac{\text{측정광속}}{\text{LED컨버터 입력전력}}$$

3.3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1)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4>, <표 5>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방열판, LED PCB	램프전력, 초기광속, 광효율, 시스템효율
2	외형	시험면제
3	확산커버 또는 렌즈	램프전력, 초기광속, 광효율, 시스템효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4	LED컨버터	시스템효율
5	LED Package	램프전력,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 시스템효율
6	LED Package 수량	램프전력,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초기광속, 광효율, 시스템효율
7	LED package 배열	램프전력, 초기광속, 광효율, 시스템효율

<표 5>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파생 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방열판, LED PCB	램프전력, 램프전압, 램프전류, 초기광속, 광효율
2	외형	시험면제
3	확산커버 또는 렌즈	램프전력, 램프전압, 램프전류, 초기광속, 광효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4	LED Package	램프전력, 램프전압, 램프전류,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
5	LED Package 수량	램프전력, 램프전압, 램프전류,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초기광속, 광효율
6	LED package 배열	램프전력, 램프전압, 램프전류, 초기광속, 광효율

3.4 복수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1) 복수부품에 따른 인증 신청 시 복수부품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6>, <표 7>의 복수부품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직관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복수부품 항목에 따른 시험방법 기준

복수부품 등재는 <표 6>와같이 LED컨버터, LED Package 만 적용한다. 또한, 복수부품 등재에 따른 시험방법은 <표 6>의 세부적용기준을 따른다.

복수부품을 다수 등재 시 모든 경우의 수 만큼 시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 인증 후 복수부품 추가 등재 시 상기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6> 복수 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 번	복수 부품 항목	세부적용기준
1	LED Package*	램프전력,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
2	LED컨버터	시스템효율
비 고	* LED Package 의 경우 동일 상관색온도에서 [Vf 및 If(max)]동일한 경우만 등재 가능 * LED 컨버터의 경우 동일 성능(입력전류, 입력전력, 출력전압, 출력전류)일 경우에만 복수부품 등재가 가능.	

3)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복수부품 항목에 따른 시험방법 기준

복수부품 등재는 <표 7>와 같이 LED Package 만 적용한다. 또한, 복수부품등재에 따른 시험방법은 <표 7>의 세부적용기준을 따른다.

기 인증 후 복수부품 추가 등재 시 상기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7> 복수 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 번	복수 부품 항목	세부적용기준
1	LED Package*	램프전력, 램프전압, 램프전류,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
비 고	* LED Package 의 경우 동일 상관색온도에서 [Vf 및 If(max)]동일한 경우만 등재 가능	

4. 인증기술기준

4.1 공통기준

1)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상관색온도, 연색지수는 <표 8>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8> LED램프의 상관색온도 분류

상관색온도(K)	색온도범위(K)	연색지수(Ra)
6 500	6 530 ± 510	80 이상
5 700	5 665 ± 355	
5 000	5 028 ± 283	
4 500	4 503 ± 243	
4 000	3 985 ± 275	
3 500	3 465 ± 245	
3 000	3 045 ± 175	
2 700	2 725 ± 145	

4.2 개별기준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① 램프전력

램프전력은 표시치 이하여야 한다.

② 광학적 특성

ⓐ 초기광속 : 2 300 lm 이상이어야 한다.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 광효율 : 130 lm/W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스템 효율

110 lm/W 이상이어야 한다.(단, 이때 측정한 LED램프의 광속은 2 300 lm 이상이어야 한다.)

2)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① 램프전력

표시값의 ±10 % 이내 이어야 한다.

② 램프전압

표시값의 ±10 % 이내 이어야 한다.

③ 램프전류

표시값의 ±10 % 이내 이어야 한다.

④ 광학적 특성

ⓐ 초기광속 : <표 9> 이상 이어야 한다.

<표 9>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의 광학적 특성 기준

(단위 : lm)

대체 램프 전력(W) \ 상관색온도(K)		2700	3000	3500	4000	4500	5000	5700	6500
이중 캡 형광램프	20	920							
	32	2 300							
	40	2 600							
단일 캡 형광램프	36	2 202							
	55	3 400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 광효율 : 105 lm/W 이상이어야 한다.

5. 시험설비 (필수 보유 장비 포함)

1) 치수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등)
2) 정전압 공급장치(AC/DC Power Supply)
3) 전력분석계(Power Analyzer)
4) 광학적 특성 측정용(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측정기)*
5) 분광분석계*
6) 에이징 시험설비
7) 형광램프용 시험용안정기(고주파 시동장치)*
(주) *는 고효율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대체가 가능한 설비

6. 제품표시사항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고효율기자재마크(e 마크) 및 제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① 모델명,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 마크
② 정격램프전력
③ 정격램프전류
④ 정격램프전압
⑤ LED램프 정격광속
⑥ LED램프 광효율
⑦ 상관색온도
⑧ 연색지수
⑨ 시스템 효율*
⑩ 원산지 표시*
⑪ A/S 연락처*
⑫ LED컨버터 제조사, 모델명, 인증번호, 인증마크*
⑬ LED컨버터 (정격전력, 정격전압, 정격전류)*
⑭ LED컨버터 입출력 효율*
⑮ 제조연월
(주) *는 사용설명서 및 포장박스에 표시가능
2)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① 모델명,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 마크
② 정격램프전력
③ 정격램프전압
④ 정격램프전류

⑤ 대체하고자 하는 램프 종류(예: FLR32W 램프 대체용)

⑥ 정격 광속

⑦ 광효율

⑧ 상관색온도

⑨ 연색지수

⑩ 제조 연월

⑪ 원산지 표시*

⑫ A/S 연락처*

⑬ "정격 램프 전력은 형광램프용 시험용안정기(고주파시동장치)로 측정한 값이며 시중 안정기 연결 시 낮아 질 수 있음"과 같은 문구*

(주) *는 사용설명서 및 포장박스에 표시가능

(20) 스마트LED조명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적용범위 및 개요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명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환경이나 사전 설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한 스마트LED조명에 대해서 규정한다. 스마트LED조명은 스마트LED 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으로 구분한다.

1) 스마트LED램프

- AC 220 V, 60 Hz에서 유무선 통신(IR리모컨 제외)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광제어가 가능하고 일체형 LED 광원 및 KS C 7651에 규정된 베이스를 적용한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단, 150W 초과도 포함하고 별도의 아날로그 조광기로만 제어되는 제품은 제외)
- 구현되는 램프의 색이 단일 또는 다수의 상관색온도(2 200~6 500K) 범위 내 백색광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함
- 제품의 구동을 위해 네트워크 기기(게이트웨이 or 허브)와 제어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시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센서가 내장된 제품도 스마트LED램프에 포함됨
- 스마트LED램프 고효율 고시 시행 이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로 효율등급을 받은 품목은 제외

2) 스마트LED등기구

- AC 220 V, 60 Hz에서 유무선 통신(IR리모컨 제외)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광제어가 가능하고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광원을 적용한 등기구 (단, 별도의 아날로그 조광기로만 제어되는 제품은 제외)
- 구현되는 램프의 색이 단일 또는 다수의 상관색온도(2 200~6 500K) 범위 내 백색광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함
- 제품의 구동을 위해 네트워크 기기(게이트웨이 or 허브)와 제어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시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센서가 내장된 제품도 스마트LED등기구에 포함됨
- 독립된 하나의 등기구를 대상으로 하며 단일 전원공급장치에 복수의 등기구가 연결된 형태는 제외함

3)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 재실 또는 사물감지가 가능하고 조도 감지 센서가 포함되어 다음 필수 기능이 구현 가능한 조명제어시스템

  ※ 필수 기능 : 재실 감지 또는 사물 감지, 조도 감지, 최대 광속 설정, 시간대 제어, 구역 설정, 대체 제어, 에너지 모니터링, 원격 진단

1.2 인용규격

KS C IEC 60050-845 : 국제전기기술용어 제845장(조명)

KS C 8000 : 조명기구 통칙

IEC 62504 : General Lighting-Light emitting diode(LED) products and related equipment-Terms and definitions

IEC TS 63105 ED1 Lighting systems and related equipment - Vocabulary

CIE S 017, ILV : International Lighting Vocabulary

DLC, Networked Lighting Control System Technical Requirements Ver 5

KS C 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KS C 0076, 광원의 분포온도 및 색온도·상관 색온도의 측정 방법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3, LED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KS C 7657, LED 센서등기구

KS C 7658, LED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

KS C 7712, LED 투광등기구

KS C 7716, LED 터널등기구

KS C 9610-3-2, 전기자기적합 (EMC) - 제3-2부 : 허용기준-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 (상당 입력 전류 16 A 이하 기기)

CIE 127 : Measurement of LEDs

CIE 84 : Measurement of Luminous Flux

DLC, Technical Requirements Version 5.1

DOE, Controls-Enabled LED Retrofic Kit Performance Specification ver0.1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for lamps version 2.1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for luminaires version 2.2

KS I ISO 3745,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레벨과 음향 에너지레벨 측정방법 — 무향실과 반무향실의 정밀 측정방법

KS C IEC 61672-1,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 — 제1부: 규격

KS I ISO 7574-4,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

적 방법 — 제4부: 기계 배치(batch)에 대한 표시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

ISO 7574-4, Statistical Methods for Determining and Verifying Stated Noise Emission Values of Machinery and Equipment

IEC TR 63037, Electrical interface specifications for self ballasted lamps and controlgear in phase-cut dimmed lighting systems

SPS-C KLFLC 2601-7317, 실내조명용 LED 스마트 등기구

KS C 7751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제1-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7752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제1-2부 IP 주소체계

KS C IEC 62301,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전력 측정방법

IEC 63103, Lighting equipment - Non-active mode power measurement

SPS-C KOPTI 0008-7387, 조명기기 - 비활성모드에서의 소비전력 측정방법

Ecodesign requirements,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2020 of 1 October 2019, laying down ecodesign requirements for light sources and separate control gears pursuant to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44/2009, (EC) No 245/2009 and (EU) No 1194/2012

IEC TR 61547-1, Equipment for general lighting purposes - EMC immunity requirements - Part 1: Objective light flickermeter and voltage fluctuation immunity test method

IEC TR 63158, Equipment for general lighting purposes - Objective test method for stroboscopic effects of lighting equipment

1.3 용어 정의

1) 스마트LED조명

조명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환경이나 사전 설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한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조명

2) 스마트LED램프

AC 220V,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광원을 사용하고 유무선 통신으로 광속 및/또는 상관색온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센서와 연동 가능한 램프

3) 스마트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광원을 사용하고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광속 및/또는 상관색온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센서와 연동 가능한 등기구

4)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네트워크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센서, 제어기기 등의 정보의 입출력과 제어를 통해 조명의 품질을 만족하면서 주변 환경이나 사전 설정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조명 시스템

5) 스마트 센서

센서에 제어 및 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센싱 데이터를 관제장치 또는 제어기기로 전달하거나 직접 활용하여 스마트LED조명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6) 제어기기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센서 또는 스마트 센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LED램프 및 스마트LED등기구를 제어하고 에너지 절감량 등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주소 할당이 가능하고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기

7) 재실 감지

공간 내 사람들의 재실 유/무를 감지하여 조명이나 다른 설비들의 동작을 조절하는 조명 제어 방식

8) 사물 감지

공간 내 사물을 감지하여 조명이나 다른 설비들의 동작을 조절하는 조명 제어 방식

9) 조도 감지

빛의 밝기를 감지하는 기능

10) 조광 제어

하나 이상의 사전에 결정된 단계로 제조자가 선언한 범위 내에서 광속을 조절하는 기능

11) 연속 조광

감지할 수 없는 단계에서 깜빡임 없이 전체 출력에서 최소 조명 출력까지 연속적인 범위에 걸쳐 조명시스템의 출력을 변경하는 조명 제어 방식

12) 상관색온도 제어
제조자가 선언한 범위 내에서 상관색온도를 조절하는 기능

13) 시간대 제어
하루 중 시간대별 또는 천문학적인 이벤트를 토대로 스마트LED램프 및 스마트LED 등기구의 광속 및/또는 상관색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

14) 그룹 제어
사용자가 임의로 조명그룹을 지정하여 스마트LED램프 및 스마트LED등기구의 조광 및/또는 상관색온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15) 정격 전압
스마트LED램프 및 스마트LED등기구에 표시된 전압

16) 정격 전류
스마트LED램프 및 스마트LED등기구에 표시된 전류
주) "전압", "전류"라는 용어가 쓰인 곳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실효치를 의미한다.

17) 정격 전력
스마트LED램프 및 스마트LED등기구에 표시된 전력

18) 기준 전력량
스마트LED조명 고효율 인증 취득을 위해 제출된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을 최대 부하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적산한 전력량
주) "전력" 및 "전력량"이라는 용어가 쓰인 곳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유효전력, 유효전력량을 의미한다.

19) 역률
스마트LED램프 및 스마트LED등기구에서 소비하는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

20) 네트워크 대기 모드
네트워크로부터 트리거를 사용하는 지원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기능이 꺼진 상태에

서 공급 전압에 연결된 때의 모드

21) 배광광도계

광원, 조명기구, 반사물체 또는 투과 물체로부터 방사의 방향 특성을 측정하는 기기. 보통 광원이나 조명기구의 배광을 측정하는 것을 배광광도계라 하며, 입사각, 관측각을 바꾸어 반사 또는 투과 물체의 특성을 측정하는 설비

22) 구형광속계

적분구를 사용하여 광원의 전광속을 비교 측정하는 측광기

23) 일체형 컨버터

LED모듈과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별도로 시험할 수 없는 램프 구동장치

24) 내장형 컨버터

스마트LED등기구 외함 내부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램프 구동장치

25) 독립형 컨버터

표시에 따른 보호 기기가 있고 스마트LED등기구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구동장치

26) 부품 변경

인증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인정되고 인증모델명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27) 복수 부품

인증 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추가로 인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 기준 및 측정 방법에 따라 인정되고 인증 모델명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28) 방열부

히트싱크(Heat Sink)와 같이 기구의 열을 방출하거나 열전도에 의해 뜨거워진 표면을 식히는 구성요소

29) 광원부

LED 모듈, LED 패키지(Package) 등 빛을 발산하는 구성요소

30) 구동부

스마트LED조명기기를 동작하는 데 필요한 컨버터, 통신 모듈, 제어기기 또는 그 기능을 하는 부품으로 구성된 PCB 조립품 일체

31) 외형 변경

기본 모델과 비교하여 방열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광원부를 변경하지 않고 광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단순 부착물, 색상, 디자인, 마감재 등)

32) 플리커(flicker)

관찰자와 관찰자가 바라보는 대상 물체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빛 자극(광도 또는 분광 분포)에 의해 유발된 시각적 불안정

33) 스트로보스코프 효과 (stroboscopic effect)

움직임이 없는 관찰자가 움직임이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빛 자극(광도 또는 분광 분포)에 의해 유도되는 움직임 인식의 변화

34) 최대 기준 제어 설정

제조자가 사전 정의한 공장 초기 설정

- 스마트LED조명기기의 유무선 통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제조자가 선언한 최대 입력 전력 상태를 의미
- 만일 제조자가 의도적으로 공장 초기값을 저전력으로 설정한 경우(예, 눈부심 방지, 안전상의 이유) 이유를 기술하고 최대 기준 제어 설정을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품, 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

35) 최소 기준 제어 설정

조광 제어를 통해 최대 기준 제어 설정 대비 입력 전력이 (20±2)% 수준으로 설정된 상태 (단, 최대 입력 전력 대비 (20±2)% 범위 내로 입력 전력이 제어되지 않는 경우 18% 미만의 가장 가까운 입력 전력을 의미한다.)

36) 기준 광속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스마트LED램프 및 스마트LED등기구의 광속

37) 기준 광효율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스마트LED램프 및 스마트LED등기구의 광효율

38) 기준 역률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스마트LED램프 및 스마트LED등기구의 역률

39) 최소 광효율

최소 기준 제어 설정에서 스마트LED램프 및 스마트LED등기구의 광효율

40) 최소 역률

최소 기준 제어 설정에서 스마트LED램프 및 스마트LED등기구의 역률

41) 최대 광속 설정
각 공간에서 요구되는 최대 광출력 레벨로 설정하는 조명 제어 방식으로 설치 시 또는 시운전 시에 스마트LED조명기기 개별 또는 그룹의 최대 광출력을 최댓값보다 낮은 상태로 설정하는 기능

42) 백색 가변 (White tunable)
광원의 출력을 백색에 해당하는 상관색온도(일반적으로 2 200 K~6 500 K) 내에서 색온도를 변화시키는 색온도 제어 방법
주) 이 규격에서는 단일 색상의 백색 LED패키지를 사용하여 조광 제어가 가능한 제품은 백색 가변으로 간주한다.

43) 풀컬러 가변 (Full-color tunable)
최소 3개의 원색 광원을 개별적으로 제어하여 백색을 포함한 다양한 색 제어 방법
주) 이 규격에서는 백색 가변 제어 범위 내에서만 시험한다.

44) 전구색 가변 (Dim-to-warm, warm-dimming, sunset-dimming)
광원의 출력을 백열램프나 할로겐램프의 조광 특성을 모사한 것
주) 이 규격에서는 2 200 K 미만으로 제어되는 상관색온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상관색온도 제어 범위가 1 800 K~3 000 K인 제품에 대해서는 2 200 K~3 000 K 범위에서만 시험한다.

45) 스마트LED조명기기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스마트LED등기구와 스마트LED램프를 통칭하며 기본적으로 통신, 제어, 컨버터 기능이 내장된 조명기기

46) 에너지 모니터링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스마트LED조명기기, 스마트 센서 및 기타 통신장치 등의 에너지 소비를 개별 또는 전체적으로 측정하여 보고하는 기능

47) 원격 진단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및/또는 구성 요소 오류를 포함한 운영 성능을 모니터링, 진단 및 보고하는 기능

2. 종류 및 구조

①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램프는 백색 가변, 풀컬러 가변, 전구색 가변으로 구분한다.

※ 스마트LED램프는 안전인증(KC)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등기구는 실내용, 실외용으로 구분한다.

※ 실내용 LED등기구와 150 W 이하의 LED투광등기구는 안전인증(KC) 또는 KS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에 적용되는 램프 및 등기구는 스마트LED조명 고효율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성능 시험

3.1 시험 조건

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험은 10 ~ 30℃의 주위 온도에서 항목 순으로 시험한다. 단, 광학특성 시험은 정격입력 전압 및 주파수를 인가한 후 (25 ± 3)℃의 최대 65%의 상대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2) 시험전압은 ±3%의 허용오차를 가질 수 있다. 전압 범위의 경우 평균값에서 측정한다.

3) 또한 전체 고조파 성분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합으로 정의된다.

4) 시스템 인증을 위한 제출 시료에는 필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조명기기는 5대로 한정한다.

3.2 스마트LED램프 시험방법 및 인증기준

3.2.1 시험방법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시험은 [그림 1]과 같이 접속하고 정격 주파수의 입력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를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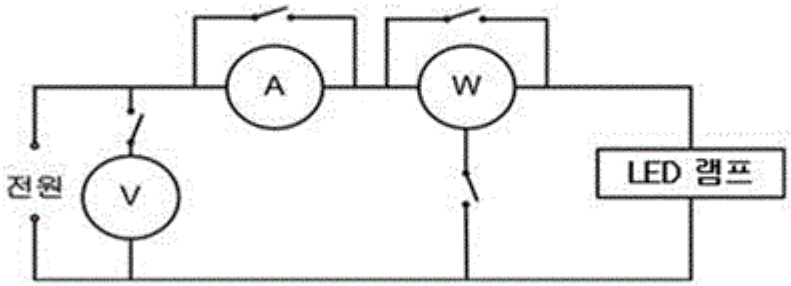

[그림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측정 회로

2) 역률

[그림 1]과 같이 접속하고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기준 역률을, 최소 기준 제어 설정 상태에서 최소 역률을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단,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입력 전력이 5 W 이하인 경우 기준 역률만 측정한다.

$$\text{기준역률(최대기준제어설정)} = \frac{\text{측정입력전력}}{\text{정격입력전압} \times \text{측정입력전류}}$$

$$\text{최소역률(최소기준제어설정)} = \frac{\text{측정입력전력}}{\text{정격입력전압} \times \text{측정입력전류}}$$

3) 고조파 전류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충분히 안정된 후 고조파 전류 측정기기로 입력 측의 고조파 전류를 KS C 9610-3-2에 따라 시험한다.

4) 대기 전력

네트워크 대기 모드에서 IEC 63103에 따라 대기 전력을 측정한다.

5) 상관색온도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KS C 0076의 측정방법에 따라 상관색온도 및 색도좌표를 측정한다.

6) 연색지수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KS C 0075의 측정방법에 따라 연색지수(R_a, R_9)를 측정한다.

7) 기준 광속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100시간 에이징 후 구형 광속계를 사용하여 기준 광속을 측정한다.

8) 기준 광효율

기준 광속 측정 시 측정된 광속 및 입력 전력으로 계산한다.

$$\text{광효율[lm/W]} = \frac{\text{초기 광속}}{\text{입력 전력}}$$

9) 광학적 플리커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및 최소 기준 제어 설정에서 램프가 점등된 후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IEC TR 61547-1에 따라 $P_{st}LM$을 측정하고 IEC TR 63158에 따라 SVM을 측정한다.

10) 조광 특성

① 최소 광효율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램프가 점등된 후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최소 기준 제어 설정으로 제어하여 구형광속계로 광효율을 측정한다.

* 단, 최대 입력 전력 대비 (20±2)% 범위 내로 입력 전력이 제어되지 않는 경우 18% 미만의 가장 가까운 입력 전력을 나타내도록 광속을 감소시켜 시험한다.

② 소음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램프가 점등된 후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KS I ISO 3745에 따라 측정한다. 이어서 램프를 최소 기준 제어 설정으로 제어하여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11) 광속 유지율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기준 광속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2,0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및 광색을 구형광속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12) 상관색온도 제어

① 최소 상관색온도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상관색온도를 가장 낮게 제어하여 KS C 0076의 측정방법에 따라 상관색온도를 측정한다. 단, 상관색온도가 2 200 K 미만으로 제어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최소 상관색온도를 (2 238 ± 102) K 범위로 제어하여 시험한다.

② 최대 상관색온도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상관색온도를 가장 높게 제어하여 KS C 0076의 측정방법에 따라 상관색온도를 측정한다.

③ 광속 변화율

최대 및 최소 상관색온도 조건에서 구형광속계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한다.

3.2.2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1>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스마트LED램프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방열판, LED PCB	입력전력, 입력전류,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2	외형	시험면제
3	광학부품 (확산커버, 렌즈 등)	입력전력, 입력전류,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4	구동부 (통신모듈 및 제어기기 포함)	입력전력, 입력전류, 역률(기준역률, 최소역률), 고조파전류, 대기전력,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광학적플리커, 조광특성
5	LED Package	입력전력, 입력전류,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광속유지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6	LED Package 수량	입력전력, 입력전류,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7	LED package 배열	입력전력, 입력전류,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3.2.3 인증기술기준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측정한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가 표시값의 ± 10% 범위이어야 한다.

2) 역률

기준 역률은 0.9 이상이며, 최소 역률은 0.7 이상이어야 한다. 단,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입력 전력이 5 W 이하인 경우 기준 역률만 측정하며 0.85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기준 제어 설정에서 입력 전력이 5 W 이하인 경우 최소 역률은 0.6 이상이어야 한다.

3) 고조파 전류

KS C 9610-3-2에 따라 시험하고 해당 규격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대기 전력

대기 전력은 1.5 W 이하이어야 한다.

5) 상관색온도

측정된 상관색온도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상관색온도 및 D_{uv} 기준

상관색온도 및 D_{uv} 기준			
공칭 상관색온도 (K)	상관색온도 공차 범위(K)	기준 D_{uv}	D_{uv} 공차 범위
2 200	2 238 ± 102	0.0000	T_X : 광원의 상관색온도 $T_X < 2870K$ 일 때 0.0000 ± 0.0060 $T_X \geq 2870K$ 일 때 $D_{uv}(T_X) \pm 0.0060$ 여기서 $D_{uv}(T_X) = 57700 \times (\frac{1}{T_X})^2 - 44.6 \times (\frac{1}{T_X}) + 0.00854$
2 500	2 460 ± 120	0.0000	
2 700	2 725 ± 145	0.0000	
3 000	3 045 ± 175	0.0001	
3 500	3 465 ± 245	0.0005	
4 000	3 985 ± 275	0.0010	
4 500	4 503 ± 243	0.0015	
5 000	5 029 ± 283	0.0020	
5 700	5 667 ± 355	0.0025	
6 500	6 532 ± 510	0.0031	
가변 상관색온도 (2 200-6 500)	T_F[1] ± ΔT[2]	$D_{uv}(T_F)$[3]	

1) T_F는 10개의 공칭 상관색온도를 포함하는 100 K 간격의 상관색온도를 선택
2) $\Delta T = 1.1900 \times 10^{-8} \times T^3 - 1.5434 \times 10^{-4} \times T^2 + 0.7168 \times T - 902.55$
3) D_{uv} 공차 범위는 같음

6) 연색지수

R_a는 80 이상이어야 하고 R_9은 0 이상이어야 한다.

7) 기준 광속

표시값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8) 기준 광효율

백색 가변은 100 lm/W 이상이어야 하고 풀컬러 가변은 90 lm/W 이상이어야 하고 전구색 가변은 80 lm/W 이상이어야 한다.

9) 광학적 플리커

$P_{st}LM$은 모두 1.0 이하이어야 한다. SVM은 측정값 중 높은 값을 성적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P_{st}LM$은 적부 판정, SVM은 기록)

10) 조광 특성

① 최소 광효율

기준 광효율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소음

소음은 측정값 모두 24 dB 이하이어야 한다.

11) 광속 유지율

광속 유지율은 기준 광속 대비 95% 이상이어야 한다. 광색변화 $\Delta u'v'$은 0.007 이하이어야 한다.

12) 상관색온도 제어

① 최소 상관색온도

측정된 최소 상관색온도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최대 상관색온도

측정된 최대 상관색온도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광속 변화율

기준 광속 대비 20% 이상이어야 한다.

13) 표시사항

*1)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마크 :

2) 품목명(백색/풀컬러/전구색) 및 모델명 :

*3) 정격 전압, 주파수 :

*4) 정격 전력 :

5) 대기 전력 :

6) 정격 전류 :

*7) 기준 광속 :

8) 기준 광효율 :

*9) 조광 가능 여부 : 제품 및 포장에 조광 가능 여부 표시

10) 연색지수 :

11) 원산지 표시(상표, 제조자명, 공급자명) :

12) KC 및 KS에서 요구하는 필수 사항 :

13) A/S 연락처 :

14) 제조연월 :

15) 통신 및 제어방식 :

16) 상관색온도 : 상관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포장에 스케일 그림과 수치로 제어 범위를 표시

예시) 3000K 또는

17) 적용 베이스 :

18) 공장초기화 방법 :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표시

* 는 제품 필수 표시사항임

3.3 스마트LED등기구 시험방법 및 인증기준

3.3.1 시험방법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시험은 [그림 2]와 같이 접속하고 정격 주파수의 입력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를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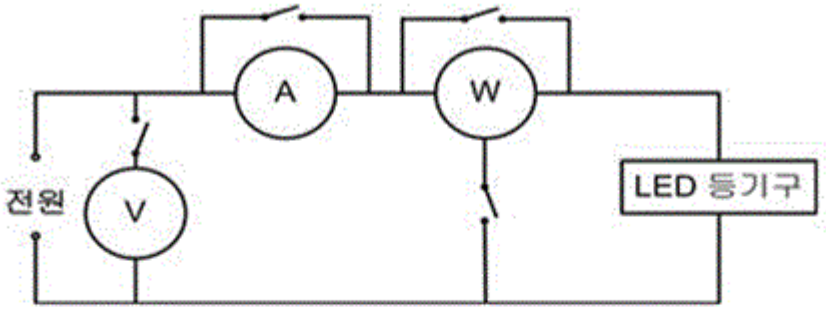

[그림 2]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측정 회로

2) 역률

[그림 2]와 같이 접속하고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기준 역률을, 최소 기준 제어 설정 상태에서 최소 역률을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기준역률(최대기준제어설정)} = \frac{\text{측정입력전력}}{\text{정격입력전압} \times \text{측정입력전류}}$$

$$\text{최소역률(최소기준제어설정)} = \frac{\text{측정입력전력}}{\text{정격입력전압} \times \text{측정입력전류}}$$

3) 고조파 전류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충분히 안정된 후 고조파 전류 측정기기로 입력 측의 고조파 전류를 KS C 9610-3-2에 따라 시험한다.

4) 대기 전력

네트워크 대기 모드에서 IEC 63103에 따라 대기 전력을 측정한다.

5) 상관색온도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KS C 0076의 측정방법에 따라 상관색온도를 측정한다.

6) 연색지수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KS C 0075의 측정방법에 따라 연색지수(R_a, R_9)를 측정한다.

7) 기준 광속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100시간 에이징 후 배광광도계 또는 구형광속계를 사용하여 기준 광속을 측정한다.

8) 기준 광효율

기준 광속 측정 시 측정된 광속 및 입력 전력으로 계산한다.

$$\text{광효율}[\text{lm/W}] = \frac{\text{초기 광속}}{\text{입력 전력}}$$

9) 광학적 플리커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및 최소 기준 제어 설정에서 램프가 점등된 후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IEC TR 61547-1에 따라 $P_{st}LM$을 측정하고 IEC TR 63158에 따라 SVM을 측정한다.

10) 조광 특성

① 최소 광효율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등기구가 점등된 후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최소 기준 제어 설정으로 제어하여 배광광도계 또는 구형광속계로 광효율을 측정한다.

② 소음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등기구가 점등된 후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KS I ISO 3745에 따라 측정한다. 이어서 등기구를 최소 기준 제어 설정으로 제어하여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11) 광속 유지율

기준 광속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등기구에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2,000시간 에이징 후 배광광도계 또는 구형광속계를 사용하여 광속 및 광색을 측정한다.

다만, '[부록 1]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 에 따라 당해 품목 광속유지율 기준 이상의 LED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2) 상관색온도 제어

① 최소 상관색온도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상관색온도를 가장 낮게 제어하여 KS C 0076의 측정방법에 따라 상관색온도를 측정한다. 단, 상관색온도가 2 200K 미만으로 제어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최소 상관색온도를 (2 238 ± 102)K 범위로 제어하여 시험한다.

② 최대 상관색온도

정격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가하여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상관색온도를 가장 높게 제어하여 KS C 0076의 측정방법에 따라 상관색온도를 측정한다.

③ 광속 변화율

최대 및 최소 상관색온도 조건에서 배광광도계 또는 구형광속계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한다.

3.3.2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3>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LED등기구의 경우 '[부록 1]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 에 따라 당해 품목 광속유지율 기준 이상의 LED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표 3> 스마트LED등기구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방열판, LED PCB	입력전력, 입력전류,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2	외형	시험면제
3	광학부품 (확산커버, 렌즈 등)	입력전력, 입력전류,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4	LED 컨버터	입력전력, 입력전류, 역률(기준 역률, 최소 역률), 고조파 전류, 대기전력,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광학적플리커, 조광특성
5	제어기기	입력전력, 입력전류, 역률(기준 역률, 최소 역률), 고조파 전류, 대기전력,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광학적플리커, 조광특성
6	LED Package	입력전력, 입력전류,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광속유지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7	LED Package 수량	입력전력, 입력전류,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8	LED package 배열	입력전력, 입력전류,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9	통신모듈	입력전력, 입력전류, 대기전력

3.3.3 인증기술기준

1)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측정한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가 표시값의 ± 10% 범위이어야 한다.

2) 역률

기준 역률은 0.9 이상이며, 최소 역률은 0.7 이상이어야 한다. 단, 최대 기준 제어 설정에서 입력 전력이 5 W 이하인 경우 기준 역률만 측정하며 0.85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기준 제어 설정에서 입력 전력이 5 W 이하인 경우 최소 역률은 0.6 이상이어야 한다.

3) 고조파 전류

KS C 9610-3-2에 따라 시험하고 해당 규격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대기 전력

대기 전력은 1.5 W 이하이어야 한다.

5) 상관색온도

측정된 상관색온도가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상관색온도 및 D_{uv} 기준

상관색온도 및 D_{uv} 기준			
공칭 상관색온도 (K)	상관색온도 공차 범위 (K)	기준 D_{uv}	D_{uv} 공차 범위
2 200	2 238 ± 102	0.0000	T_X : 광원의 상관색온도 $T_X < 2870K$ 일 때 0.0000 ± 0.0060 $T_X \geq 2870K$ 일 때 $D_{uv}(T_X) \pm 0.0060$ 여기서 $D_{uv}(T_X) = 57700 \times (\frac{1}{T_X})^2 - 44.6 \times (\frac{1}{T_X}) + 0.00854$
2 500	2 460 ± 120	0.0000	
2 700	2 725 ± 145	0.0000	
3 000	3 045 ± 175	0.0001	
3 500	3 465 ± 245	0.0005	
4 000	3 985 ± 275	0.0010	
4 500	4 503 ± 243	0.0015	
5 000	5 029 ± 283	0.0020	
5 700	5 667 ± 355	0.0025	
6 500	6 532 ± 510	0.0031	
가변 상관색온도 (2 200-6 500)	T_F[1] ± ΔT[2]	$D_{uv}(T_F)$[3]	

1) T_F는 10개의 공칭 상관색온도를 포함하는 100 K 간격의 상관색온도를 선택
2) $\Delta T = 1.1900 \times 10^{-8} \times T^3 - 1.5434 \times 10^{-4} \times T^2 + 0.7168 \times T - 902.55$
3) D_{uv} 공차 범위는 같음

6) 연색지수

R_a는 80 이상이어야 하고 R_9은 0 이상이어야 한다.

7) 기준 광속

표시값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8) 기준 광효율

<표 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스마트LED등기구 기준 광효율 기준

구분	입력 전력	광효율 (lm/W)
실내용	10 W 이하	100 이상
	10 W 초과 30 W 이하	110 이상
	30 W 초과 60 W 이하	115 이상
	60 W 초과	120 이상
실외용	125 이상	

9) 광학적 플리커

$P_{st}LM$은 모두 1.0 이하이어야 한다. SVM은 측정값 중 높은 값을 성적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P_{st}LM$은 적부 판정, SVM은 기록)

10) 조광 특성

① 최소 광효율

80 lm/W 이상이어야 한다.

② 소음

소음은 측정값 모두 24 dB 이하이어야 한다.

11) 광속 유지율

광속 유지율은 기준 광속 대비 95% 이상이어야 한다. 광색변화 $\Delta u'v'$은 0.007 이하이어야 한다.

12) 상관색온도 제어

① 최소 상관색온도

측정된 최소 상관색온도가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최대 상관색온도

측정된 최대 상관색온도가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광속 변화율

기준 광속 대비 20% 이상이어야 한다.

13) 표시사항

제조자는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마크 :

2) 품목명(실내용/실외용) 및 모델명 :

3) 정격 전압, 주파수 :

4) 정격 전력 :

5) 대기 전력 :

6) 정격 전류 :

7) 기준 광속 :

8) 기준 광효율 :

9) 조광 가능 여부 : 제품 및 포장에 조광 가능 여부 표시

10) 연색지수 :

11) 원산지 표시(상표, 제조자명, 공급자명) :

12) KC 및 KS에서 요구하는 필수 사항 :

13) A/S 연락처 :

14) 제조연월 :

15) 통신 및 제어방식 :

16) 상관색온도 : 상관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포장에 스케일 금리과 수치로 제어 범위를 표시

예시) 3 000K 또는

17) 공장초기화 방법 :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표시

3.4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시험방법 및 인증기준

3.4.1 시험방법

이 규격은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적용된 센서의 성능에 관한 시험은 배제하며 모든 시험은 제조자가 제시한 기능과 에너지 절감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력 측정 및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시스템 인증을 위해 제출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그림 3]과 같이 연결하여 최대 부하 상태에서 적어도 5초 간격으로 전력의 변화를 측정한다. 휴대용 전력분석기로 측정할 경우 Rogowski 코일을 사용하여 전류를 측정해야 한다. 전력이 안정화된 후 1시간 동안 측정하여 전력량(Wh)을 산출하고 이를 해당 시스템의 기준 전력량으로 정의한다.

구역 설정 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은 제공된 시스템을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하고 실시한다. 기준 전력량의 측정을 제외하고 전력 변화의 측정은 1초당 1회로 설정하여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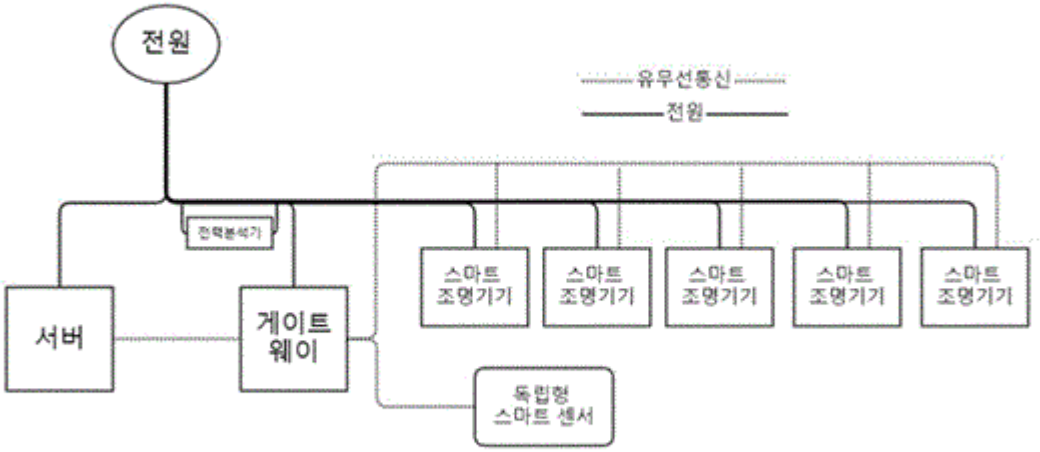

[그림 3]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결선도

1) 재실 감지 또는 사물 감지

스마트LED조명기기를 점등 상태로 유지하고 시스템의 재실 또는 사물 감지 기능을 작동시킨 후 사람이나 사물이 감지되지 않도록 방치한 후 제조자 제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연이어 수동으로 센서를 감지시켜 제조자 제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면서 전력 변화를 측정한다.

재실 또는 사물 감지 방식은 제조자가 제시하여야 하며, 실내 환경에서 시험 가능한 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조도 감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시스템이 안정화된 후 [그림 4]와 같이 조명기기 중 1개를 구형광속계에 설치한다. 시스템에 적용된 스마트LED조명기기의 모델이 다양한 경우 입력전력이 가장 높은 시료를 구형광속계에 설치한다. 소형광속계에 조도 센서 및 조광제어가 가능한 보조 광원을 [그림 4]를 참조하여 설치한다. (보조 광원의 규격은 조도센서의 감지 범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직류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보조 광원의 광속을 변화시켜 시스템이 조도 변화에 따라 조광 제어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전력 변화를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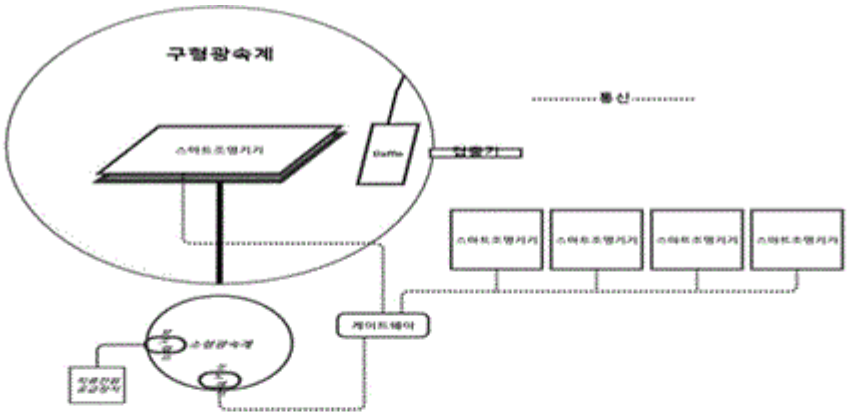

[그림 4] 조도 감지 시험 개략도

3) 최대 광속 설정

최대 부하 상태에서 시스템이 안정화된 후 [그림 5]와 같이 조명기기 중 1개를 구형광속계에 설치하고 최대 광속 설정에서 최소 100단계 이상 조광 제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시스템에 적용된 스마트LED조명기기의 모델이 다양한 경우 입력 전력이 가장 높은 시료를 구형광속계에 설치한다.

임의의 광속 값을 최대 광속 값으로 설정한 후에도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에서는 설정된 최대 광속 값이 100%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조광 제어를 최대치로 설정한 100% 상태에서 최대 광속 설정을 최대 부하의 80%, 60%, 40%로 낮추었을 때 전력 값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조광 제어로만 최대 부하의 80%, 60%, 40%로 낮추었을 때의 전력 값을 측정한다.

이후 최대 부하 상태로 복귀시킨 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사전 설정을 호출하여 전력의 변화를 측정한다. 단, 사전 설정은 최대 부하 상태 기준 전력의 (20±2) % 이하로 감소되는 설정으로 미리 저장해 두어야 한다.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여 연속 조광, 최대 광속 설정 및 사전 설정 기능의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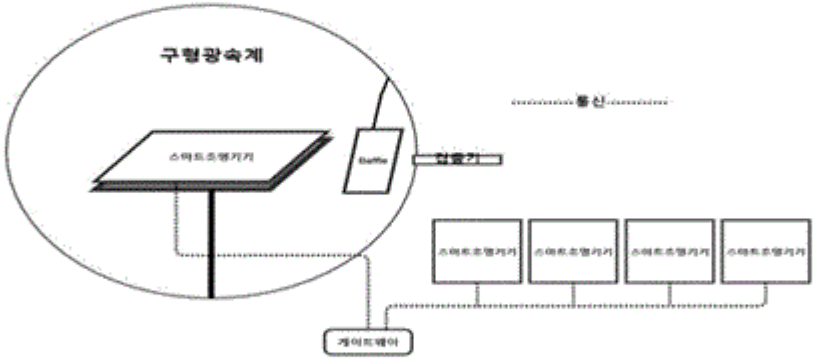

[그림 5] 최대 광속 설정 시험 개략도

4) 시간대 제어

시스템의 시간대 제어 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5분 단위로 전력을 5단계(80%, 60%, 40%, 20%, 전체 소등)로 나누어 최고 단계에서 소등 시까지 일괄 설정한 후 전력의 변화를 측정한다.

5) 구역 설정

(개별 제어) 시스템에 연결된 개별 스마트LED조명기기에 대해서 시간대 제어와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5회 이상 반복하여 전력 변화를 측정하여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그룹 제어) 조명기기 전체가 포함되도록 두 그룹 이상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시간대 제어와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5회 이상 반복하여 전력 변화를 측정하여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6) 대체 제어

최대 부하 상태에서 시스템이 안정화된 후 제어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거나 통신 기능을 차단시킨 후 대체 제어로 스마트LED조명기기를 점등 또는 소등시킨 후 전력 변화를 측정하여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7)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드로이드 앱, iOS 앱, 웹 인터페이스, 벽부형 터치스크린, 윈도 기반 프로그램, 벽부형 유무선 스위치, 음성 제어 등 사용설명서 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채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복수의 인터페이스를 채용한 경우 인터페이스 상에 표시 가능한 시스템의 상태 정보가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8)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안정화 후 시스템의 시간대 제어 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15분 단위로 전력을 4단계(100%, 80%, 50%, 20%)로 변화시켜 1시간 누적 전력량 값을 기록한다.

시스템에서는 최소 15분 간격으로 전력량을 기록해야 한다. 이때 보고된 적산 전력량과 측정한 전력량을 비교한다

단, 시스템 구성 요소별로 에너지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 15분 간격으로 전력량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9) 원격 진단

시스템이 최대 부하 상태에서 정상 동작 중임을 확인한 후 원격 진단을 필요로 하는 제조자 제시 고장상태(예시 - 개별 스마트LED조명기기 고장, 통신 이상)로 전환하여 시스템 상에 고장형태별 알림이 생성되는지 확인한다. 시스템을 정상 동작 상태로 전환하고 알림을 해지한 후 반복적인 알림이 뜨지 않고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10) 사이버 보안 (선택)

시스템에 포함된 스마트폰 앱, 통신 기능이 탑재된 센서, 통신모듈, 스마트LED등기

구 및 램프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oT 보안인증 Lite등급 이상 또는 기타 보안 인증/서비스(예시 : ANSI/UL 2900-1, IEC 62443, SOC 2, ISO 27001, UL 1376, CSA T200, Intertek Cyber Assured)를 받은 제품을 채용하였는지 확인한다. (관련 보안 인증을 받았다면 표시 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4.2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표 6>의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6>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세부적용기준

순번	변경 항목	세부적용기준
1	스마트LED등기구/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스마트LED램프 고효율 인증 기자재로 교체 시 시험면제
2	통신모듈	개별제어, 대체제어, 원격진단 (단, 제출 시료는 세부적용기준 확인을 위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최소 1개 이상의 스마트LED조명기기로 구성할 수 있음)

3.4.3 인증기술기준

1) 재실 감지 또는 사물 감지

측정된 전력 변화 그래프로 제조자 제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도 감지

보조 광원의 최대 입력 전력이 100%에서 20%로 변화 시, 시스템의 전력은 최소 10% 이상 변화해야 한다.

3) 최대 광속 설정

① 연속 조광

최대 광속 설정에서 100단계 이상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최대 광속 설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에서 100% 조건에서 최대 광속 설정으로 80%, 60%, 40% 조광 제어했을 때 전력 값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만으로 조광 제어했을 때의 전력 값과 비교하여 ±5% 이내이어야 한다.

③ 사전 설정

사전 설정 동작 시 측정된 전력이 최대 전력 대비 (20±2) % 이내이어야 한다.

4) 시간대 제어

설정된 시간 및 조광 단계에 따라 시스템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전력 변화량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구역 설정

① 개별 주소 부여

시스템에서 개별 스마트LED조명기기의 전원을 제어하여 동작 여부 및 전력 변화량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그룹 제어

시스템을 두 그룹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동작 여부 및 전력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대체 제어

동작 여부 및 전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대체 제어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설명서 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복수인 경우 인터페이스 간의 표시 가능한 시스템 상태 정보가 일치하여야 한다.

8) 에너지 모니터링

보고된 전력량과 측정된 전력량의 오차가 ±10 % 이내이어야 한다.

9) 원격 진단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스템의 상태와 알림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10) 사이버 보안 (선택)

시스템 구성 요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oT 보안인증 Lite등급 이상 또는 기타 보안인증/서비스(예시 : ANSI/UL 2900-1, IEC 62443, SOC 2, ISO 27001, UL 1376, CSA T200, Intertek Cyber Assured) 인증서를 제출하고 표시사항에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11) 표시사항

제조자는 사용설명서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 인증번호, 고효율마크 :

2) 품목명 및 모델명 :

3) 정격 전압, 주파수 :

4) 게이트웨이 (또는 허브) 당 최대 장치 수 :

5) 서버 구성(로컬 / 클라우드 / 복합(로컬+클라우드)) :

6) 통신 방식 :

7) 적용 등기구 및/또는 램프 모델명 :

8) 적용 센서 및 모델명 :

9) 외부 시스템 통합 정보 : 외부 시스템 통합 기술 자료 URL 표시

10) A/S 연락처 :

11) 제조연월 :

12) 원산지 표시(상표, 제조자명, 공급자명) :

13) 사이버 보안 인증 :

4. 시험설비 (필수 보유장비)

1) 치수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등)

2) 정전압 공급장치(AC/DC Power Supply)

3) 전력분석계(Power Analyzer)

4) 구형광속계(분광측광기 포함)*

5) 배광광도계*

6) 에이징 시험설비

(주) *는 고효율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으로 대체가 가능한 설비

[부록 1]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

1. 스마트LED등기구 시험면제조건

1) 스마트LED등기구의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에 대한 광속유지율 시험은 아래의 2.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을 적용한 고효율인증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본 기준의 시험방법 동등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하며, 광속유지율 시험성적서의 측정값은 2.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의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 단 LED 패키지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통해 모델명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모델명을 통해 광속, 상관색온도, 연색지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험성적서는 발행일 기준 3년 이내이어야 한다.

2) 스마트LED등기구의 LED패키지에서 측정된 온도 및 전류는 패키지 성적서에 기재된 온도 및 전류 이하이어야 한다.

2.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

LED패키지 제조사에서 제공한 LED패키지(20개) 전수에 대한 광속유지율 시험을 실시한다.

1) 광속유지율

① 기준광속 : 에이징 없이 LED패키지에 정격 전류를 가하여 광속 및 전압을 측정한다.

② 광속유지율 : LED패키지에 정격 전류를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 후 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하며 시험완료한 LED패키지(20개)의 광속유지율은 해당 품목의 광속유지율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에이징 방법 : LED패키지 제조사에서 제시한 최대온도 ± 2 ℃에서 정격전류를 LED패키지에 인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을 실시한다. (패키지에 부착되는 방열판은 업체에서 제공 또는 시험기관과 협의)

2) 온도상승 시험

① LED패키지, LED램프 및 등기구의 온도측정은 KS A 0511(온도 측정 방법 통칙)에 따른 방법 및 KS C 1602(열전대)에 해당하는 열전대를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LED 패키지의 표면온도(Ts)*는 제조자가 제시한 LED패키지의 측정 부위에 열전대(Thermocouple)를 부착하여 측정하며, 표면온도(Ts)는 시험기간 동안 관찰되어야 한다.

* 표면온도(Ts) : LED패키지 제조자가 제시한 LED패키지 측정부위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측정한 표면온도

③ 스마트LED등기구의 온도 측정은 3 mm 이하의 구멍을 천공하여 열전대(Thermocouple)를 부착 한 후 구멍을 완전히 밀봉시킨 후 LED패키지의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된 위치는 사진으로 성적서에 첨부)

④ LED램프 및 등기구의 측정된 최대온도는 LED 패키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온도 이하이어야 한다.

3.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 시험면제 기준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LED패키지에서 아래 일부항목이 변경되는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에 대해서는 아래 시험면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No	변경 항목	시험 면제조건
1	동일한 재질 렌즈	시험면제
2	동일한 재질 형광체 (색온도)	LED패키지 상관색온도(2 200K이상~3 500K이하, 3 500K초과~6 500K이하)범위 내에서 시험면제 (다만, 낮은 색온도 범위(2 200K이상~3 500K이하)의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만족 시 높은 색온도 범위(3 500K초과~6 500K이하)의 LED 패키지 광속유지율 시험면제 가능)
3	LED chip 수량 (동일 chip)	LED패키지 기본모델 대비 수량이 그 이하일 것
4	LED chip 배열 (동일 chip)	LED패키지 기본모델 대비 정격전력(W)이 그 이하일 것
5	LED chip	시험면제 불가

[부록 2] 스마트LED등기구 및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복수 부품 등재에 따른 세부적용 기준

복수 부품 등재에 따른 인증 신청 시 복수부품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아래 표의 복수부품에 따른 세부적용 기준에 따라 모든 경우의 수 만큼 시험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LED등기구의 경우 '[부록 1]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 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 에 따라 당해 품목 광속유지율 기준 이상의 LED 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table>
<tr><th>순번</th><th colspan="2">복수 부품 항목</th><th>세부적용기준</th></tr>
<tr><td>1</td><td rowspan="2">스마트LED 등기구</td><td>LED 컨버터*</td><td>입력전력, 입력전류, 역률(기준 역률, 최소 역률), 고조파 전류, 대기전력,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광학적플리커, 조광특성</td></tr>
<tr><td>2</td><td>LED Package*</td><td>입력전력,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기준광속, 기준광효율, 광속유지율</td></tr>
<tr><td>3</td><td rowspan="4">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td><td>스마트LED 등기구</td><td rowspan="2">스마트LED조명 고효율 인증 기자재로 교체 시 시험면제</td></tr>
<tr><td>4</td><td>스마트LED 램프</td></tr>
<tr><td>5</td><td>센서</td><td>재실감지 또는 사물감지, 조도감지</td></tr>
<tr><td>6</td><td>통신모듈</td><td>구역설정, 대체제어, 사용자인터페이스, 에너지모니터링, 원격진단, 사이버보안</td></tr>
<tr><td colspan="3">비 고</td><td>* LED Package 의 경우, 동일 상관색온도에서 [V_f 및 I_f(max)] 동일한 경우만 등재 가능
* LED 컨버터의 경우 동일 성능(입력전류, 입력전력, 출력전압, 출력전류)일 경우에만 복수부품 등재가 가능</td></tr>
</table>

[별표 3]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일반관리의 적정성
   가. 고효율인증 취득 목적의 적정성
   나. 공장심사를 위한 준비(서류 및 공장) 상태
   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연구 및 제품개발 능력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원자재 관리의 적정성
   가. 외주업체의 등록관리 및 평가 실시 여부
   나. 원자재 · 부품 검사의 문서화 및 시행 여부
   다. 원자재 · 부품 부적합 처리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질유지능력의 적정성
   가. 품질관리의 문서화 및 조직 구성 여부
   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조검사 기록 유지 여부
   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불량품 처리
   라. 품질관리 담당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4.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조능력의 적정성
   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조장비의 보유 및 관리
   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계측장비의 보유 및 관리
   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공정관리

5.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품서비스관리 적정성
   가. 제품사용설명서 및 시공지침서 적정성 여부
   나. 고객 불만 처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 운영 여부
   다. 고객 불만의 기록 및 처리
   라. 제조물책임(PL) 배상보험 가입 여부

[별표 4]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 및 표시방법(제4조제3항 관련)

1. 인증 표시

2. 색상 및 크기

ㅇ 전용 색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칼라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 표준색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도 인쇄할 수 있다.

구 분	한국 표준색	먼셀 기호	4원색
주 황	KS 0187	2.5YR 6/14	Magenta 50%, Yellow 100%
빨 강	KS 0106	7.5R 5/16	Magenta 90%, Yellow 100%
남 색	KS 1102	5PB 3/10	Cyan 100%, Magenta 70%
검 정	-	N1	Black 100%

ㅇ 경우에 따라 단색으로도 표현 가능하며 제품 표면의 경우 먹 100% 또는 표면의 주 색상을 사용한다.

ㅇ 크기 :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고효율인증업자가 정할 수 있다.

3. 표시방법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표시를 할 때에는 인증표시, 인증번호, 모델명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별표 2]에서 정한 표기사항은 제품, 포장박스 등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ㅇ 표시 시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별표 5]LED 조명 성능표시방법(제4조제3항 관련)

1. 성능 표시(양식 및 예시)

2. 색상 및 크기

- ㅇ 전용 색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칼라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먼셀 기호에 따른 색상 또는 4원색으로 인쇄할 수 있다.

구 분	먼셀 기호	4원색
주 황	5YR 6.5/14	Magenta 45%, Yellow 100%
노 랑	7.5Y 8.5/12	Yellow 100%
녹 색	2.5GY 7/10	Cyan 40%, Yellow 95%
검 정	N1	Black 100%

- ㅇ 색온도(Light Color)를 제외하고는 경우에 따라 단색으로도 표현 가능하며, 제품 표면의 경우 먹 100% 또는 표면의 주 색상을 사용한다.
- ㅇ 크기 :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고효율인증업자가 정할 수 있다.

3. 표시방법

-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LED 조명제품 포장박스에 정격광속, 소비전력, 광효율, 연색성, 색온도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포장박스의 잘 보이는 면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ㅇ 표시 시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별표 6]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 고효율시험기관(제4조제3항 관련)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시험기관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한국기계연구원(대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
2. 펌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평택,파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용인)
3. 스크류 냉동기	한국기계연구원(대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평택)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화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4. 무정전전원장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전기연구원(안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5. 인버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전기연구원(안산)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한국기계연구원(대전)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화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7. 원심식 송풍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평택)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안산,진주)
8. 터보압축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평택)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시험기관
9. LED 유도등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광주)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부산) ㈜씨티케이(용인) ㈜엔트리연구원(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한국광기술원(광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용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조명ICT연구원(부천)
10. 항온항습기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부산테크노파크(부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청주)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화성)
11. 가스히트펌프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화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12. 전력저장장치(ESS)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음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전기연구원(안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용인)
13.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한국전기연구원(안산)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부산)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한국광기술원(광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조명ICT연구원(부천, 익산)
15. 가스진공온수보일러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16.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한국기계연구원(대전)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화성)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시험기관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18. 등기구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부산) 도로교통공단(원주) ㈜씨티케이(용인) ㈜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용인) ㈜엔트리연구원(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한국광기술원(광주,시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구・경북지원(대구)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산) 한국조명ICT연구원(부천, 익산) ㈜아이씨알(김포)
19. LED램프	㈜씨티케이(용인) ㈜에스테크 조명시험연구소(용인) ㈜엔트리연구원(수원) 한국광기술원(광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조명ICT연구원(부천,익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아이씨알(김포)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산)
20. 스마트LED조명	-

[별표 7]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시험설비

(1) 산업 · 건물용 가스 보일러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급수량 측정장치	o 유량계 또는 무게(저울)측정식	±1.0% (최소눈금 0.1)	1
가스량 측정장치	o 연료(가스)량 측정용	±1.0% (최소눈금 0.1)	1
압력 측정장치	o 증기압력 측정용 o 지침의 최고지시값 :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의 150%	±1.5%	1
온도 측정장치	o 배기가스, 급수, 표면온도, 상온, 건도계출구 증기 측정계기	±2.0℃	5
증기건도 측정장치	o 교축식 o 건도측정장치 출구 증기온도 측정용	±1.5%	
배기가스 분석기	o O_2, CO, CO_2 측정기	±1.5%	1
소음측정기	o dB(A)로 측정 가능한 기기	±1.5%	1
수질측정계	o 응축수 수질 측정용 (pH)	±1.5%	1

(2) 펌프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토출량 측정장치	o 위어(직각삼각위어) 또는 전자식유량계	±1.0%	1
동력 측정장치	o 전압(V),전류(A),전력(kW)측정기기 o 동시 측정이 가능한 기기	±1.5% (최소눈금 0.1)	1
압력 측정장치	o 흡입압력(진공계) 및 토출압력 측정용 o 지침의 지시도가 최대압력이상인 눈금판을 가진 기기 또는 이와 동등한 압력측정 센서	±1.5%	2
온도 측정장치	o 수온, 상온 측정계기	±2.0℃	2
베어링온도 측정장치	o 온도기록계 또는 권선저항측정기 o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기기	온도기록계 : ±2.0℃ 권선저항측정기 : ±0.01Ω	1
수압시험기	o 측정범위는 체절압력의 1.5배이상인 기기	-	1
진동측정기	o 연속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기 o 최대 측정범위는 진폭기준 0.1mm이상인 기기	±1.5%	1
소음측정기	o 연속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기	±1.5%	1
회전수 측정기	o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기기 o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기기	±1.5%	1

(3) 스크류 냉동기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유량계	o 냉수 및 냉각수 유량 측정용	±2.0%	2
온도 측정장치	o 냉수 및 냉각수 온도 측정용	±0.1℃	2
전력 측정장치	o 입력 전력 측정용	±0.5%	1
내압성 시험장치	o 내압성 및 기밀성 시험용	최대 5MPa	1
내전압 시험기	o 내전압 시험용	±5.0%	1
절연저항계	o 절연저항 측정용	±5.0%	1

(4) 무정전 전원장치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전력분석기	o 전압(V), 전류(A), 주파수(Hz), 전력(W) 측정기기 o 각 측정항목을 동시측정이 가능한 기기	±0.2%	1
부하장치	o 규격에 규정된 UPS 시험용 부하인가 장치	-	1
누설전류계	o UPS의 누설전류 측정	±4.0%	1
전자파장비	o KS C IEC 62040-2 측정가능 할 것	-	1
소음측정장비	o KS C ISO 7779에 의해 측정가능 할 것	-	1
그 외 항목별 적용규격에 따라 시험 및 검사할 수 있는 장비	o KS C 4310 o KS C IEC 62040-1-1 사용자 접근 지역용 UPS의 안전 요구 사항 o KS C IEC 62040-1-2 접근 제한 지역용 UPS의 안전 요구 사항 o KS C IEC 62040-2 전자기 적합성(EMC) 요구 사항- KSC IEC 62040-3 성능 및 시험 방법 o IEC 61000-4-2, IEC 61000-4-3, IEC 61000-4-4, IEC 61000-4-5, IEC 61000-3-2, IEC 61000-2-2, IEC 61000-4-11 (각각이 개별 규격임) o CISPR 16-1, CISPR 22 o KS C IEC 60950 정보 기기의 안전성 o KS A ISO 3744 o KS A ISO 11201 o KS A ISO 6926 o KS A ISO 9296 o KS A ISO 3741 o JIS Z 8739 o KS A ISO 3745 o JIS Z 8739-1 o IEC 60364-4 외 다수	-	1

(5) 인버터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전력분석기	o 전압(V), 전류(A), 주파수(Hz), 전력(W) 측정기기 o 위 항목들을 동시에 측정이 가능한 기기	±0.2%	1
다이나모미터	o 인버터에 사용되는 모터의 정격 부하 인가 o 임의의 부하조건으로 운전 가능한 기기	토크센서 ±0.2%	1
온도 측정장치	o 소자 및 상온 측정용	±1.0℃	2
진동발생장치	o 규정된 진동폭 및 주파수 조절가능 한 장치	-	1
써지발생장치	o 규정된 충격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장치	-	1
AC내전압시험기	o 규정된 내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기기	±2.0%	1
절연저항측정기	o DC 500V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5%	1
항온항습기	o 규정된 온도로 최소 30분이상 유지가능 장치	-	1
주파수변환장치	o 규정된 주파수로 조절이 가능한 기기	-	1

(6)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유량계	o 냉·온수 및 냉각수 유량 측정용	±2.0%	2
가스미터 (가스유량계)	o 가스유량 측정용	±1.0%	1
온도 측정장치	o 냉·온수 및 냉각수 온도 측정용	±0.1℃	4
온도 측정장치	o 배기가스, 표면온도 및 상온 측정용	±2.0℃	2
배기가스 분석기	o CO, CO_2, O_2 측정용	±1.5%	1
압력 측정장치	o 공급되는 가스압력 측정용	±1.5%	1
초시계	o 가스유량 측정용	0.1sec	1
내전압 시험기	o 내전압 시험용	±5.0%	1
절연저항계	o 절연저항 측정용	±5.0%	1

(7) 원심식 송풍기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풍량 측정장치	o 노즐법, 피토관법 또는 오리피스법에 의한 풍량 측정장치	1.0%	1
동력 측정장치	o 전압(V),전류(A),전력(kW)측정기기 o 동시 측정이 가능한 기기	±5.0% (최소눈금 0.1)	1
정압 측정장치	o 정압 측정용 o 지침의 지시도가 최대 측정압력 이상의 눈금판을 가진 기기 또는 이와 동등한 압력측정센서	±1.5%	1
온도 측정장치	o 토출온도, 상온 측정계기	±2.0℃	2
회전수 측정기	o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기기 o 연속적으로 회전수 측정이 가능한 기기	±1.5%	1

(8) 터보압축기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풍량 측정장치	o 노즐법, 피토관법 또는 오리피스법에 의한 풍량 측정장치	1.0%	1
전력분석계	o 전압(V),전류(A),전력(kW)측정기기 o 위 항목들을 동시에 측정이 가능한 기기	±1.5% (최소눈금 0.1)	1
정압 측정장치	o 정압 측정용 o 최대정압 이상의 측정이 가능한 기기	±1.5%	1
온도 측정장치	o 토출온도, 상온 측정계기	±2.0℃	2
회전수 측정기	o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기기 o 연속적으로 회전수 측정이 가능한 기기	±1.5%	1

(9) LED 유도등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전력분석계	o Power Analyzer o 전압(V),전류(A),전력(W)측정기기 o 동시 측정이 가능한 기기	±0.5% (최소눈금 0.1)	1
수광기 (조도계)	o 평균휘도 측정시험용	AA급 이상의 조도계	1
항온항습기	o 환경시험용	-20 ℃~ 150℃	1
정전압 공급장치	o AC/DC Power Supply	±0.5%	1
온도 측정장치	o 챔버 실온, 상온 측정계기	±2.0℃	2
치수측정기	o 버니어캘리퍼스 등	±3.0% (최소눈금 0.1mm)	1

(10) 항온항습기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열량 측정기	o Calorimeter chamber (KS C 9306 기준에 적합) : 실외기룸 1실과 실내기룸 1실 : 냉방능력 측정 가능 : 난방능력 측정 가능 : 실내기 룸 온도 자동 제어 : 실내기 룸 습도 자동 제어 : 실외기 룸 온도 자동 제어 : 실외기 룸 습도 자동 제어 o Cord tester (KS C 9306 기준에 적합) : 실내기 풍량 측정 가능 : 정압제어가 가능한 장치	±0.2℃ 이내	1
	o 온·습도 센서 : 실내기 흡입 건구 온도 센서 : 실내기 흡입 습구 온도 센서 : 실내기 토출 건구 온도 센서 : 실내기 토출 습구 온도 센서 : 실외기 흡입 건구 온도 센서 : 실외기 흡입 습구 온도 센서	±0.1℃ 이내	1
풍량 측정장치	o 풍량측정장치 : 풍량 측정 가능한 덕트 및 유속계	±3.0%이내	1
전력 측정장치	o 전력측정장치(Powermeter)	±2.0%이내	1

(11) 가스히트펌프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열량 측정기	o Calorimeter chamber(KS B ISO 15042, KS B 8051, 8052, 8053에 적합) - 실외기룸 1실과 실내기룸 1실 이상 - 냉방능력 측정 가능 - 난방능력 측정 가능 - 실내기 룸 온도 자동 제어/습도 자동 제어 - 실외기 룸 온도 자동 제어/습도 자동 제어 o Cord tester(KS B ISO 15042, KS C 9306, KS B 8051 ,8052, 8053에 적합) - 실내기 각 룸 풍량 측정 가능 - RAC, PAC, Cassett, Duct형 실내기 시험이 가능 - 정압제어가 가능한 장치	±0.2 ℃ 이내	1
	o 온·습도 센서 - 실내기 흡입 건구/습구 온도 센서 - 실내기 토출 건구/습구 온도 센서 - 실외기 흡입 건구/습구 온도 센서	±0.1 ℃ 이내	1
풍량 측정장치	o 풍량측정장치 - 풍량 측정 가능한 덕트 및 유속계	±3.0 % 이내	1
전력 측정장치	o 전력측정장치(Powermeter)	±2.0 % 이내	1
가스미터	o 가스량 측정	±1.0 %	1
내전압 시험기	o 내전압 시험용	±5.0 %	1
절연저항계	o 절연저항 측정용	±5.0 %	1
온도 측정장치	o 냉·온수 및 냉각수 온도 측정용	±0.1 ℃	3
온도 측정장치	o 배기가스, 표면온도 및 상온 측정용	±2.0 ℃	3
배기가스 분석기	o CO 측정용	±1.5 %	1
압력 측정장치	o 공급되는 가스압력 측정용	±1.5 %	1

(12) 전력저장장치(ESS)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전력분석기	o 전력 계측 주파수 범위는 DC 및 0.1 Hz ~ 1 MHz 범위를 포함 할 것 o 60 Hz에서 교류 전력계측의 정밀도는 0.2 % 이하 o 전압 및 전류 계측 주파수 범위는 DC에서부터 5 MHz 까지의 범위를 포함 할 것	0.2 % 이내	1
절연저항계	o 절연저항 측정용	±5.0%	1
상용주파 내압기	o 상용주파내압시험	1.0%	1
전압계	o 전력저장장치 입력 및 출력 전압 측정용	0.2 % 이내	1
그리드 시뮬레이터	o 전력저장장치 효율 측정시 입력 용으로 ESS의 PCS용량 이상일 것으로 정격전압 출력으로 90 % 부하변동에서 출력전압 및 출력주파수 변동율은 0.6 %이하일 것	0.6 %이하	1
부하시뮬레이터	o 전력저장장치 효율 측정시 출력용으로 ESS의 PCS용량 이상일 것	-	1

(13)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파워메타	o 소비전력 측정용	±1.0%	1
절연저항측정기	o 절연저항 측정용	±5.0%	1
상용주파내전압시험기	o 상용주파내압시험	±1.0%	1
뇌임펄스내전압시험기	o 뇌임펄스내전압시험	±5.0%	1
정전기발생장치	o 접촉 및 기중방전이 가능할 것, IEC 61000-4-2에 적합할 것	±5.0%	1
무선주파방사내성용 EMC 챔버	o 80 MHz ~ 2.7 GHz의 주파수 범위가 시험 가능할 것 전계 강도 10 V/m이상 시험이 가능 할 것	±6dB	2
급과도버스트 발생장치	o 시험전압 4 kV, 반복주파수 5 KHz 이상 가능 할 것	±10.0%	1
조합서지발생장치	o 시험전압 4 kV 출력이 가능할 것	±10.0%	1
무선주파전도시험장치	o 0.15MHz ~ 80MHz의 주파수 범위가 시험 가능 할 것 전계강도 10 V 이상 출력이 가능 할 것	±6dB	1
진동성서지시험장치	o 시험전압 2.5kV이상 가능 할 것, 진동 주파수 100 kHz, 1MHz의 시험이 가능 할 것	±10.0%	1
잡음단자전압 및 전계강도 측정용 EMI Receiver	o CISPR 16-4-1의 측정장비에 적합할 것, 0.15 KHz ~ 3 GHz 까지 측정이 가능 할 것	±6dB	1
전원시뮬레이터	o AC, DC300V까지 출력이 가능할 것, 100 W 이상 출력이 가능할 것, 전압 변동 및 출력 변동 프로그램이 가능 할 것	±1.0%	1
온습도시험용 항온항습기	o 내부 크기 1m x 1m x 1m 보다 클 것, -20℃~70℃, 의 온도범위 설정이 가능할 것	±1.0%	1
진동, 충격 및 지진시험기	o IEC 60255-21-1,-2,-3의 시험이 가능할 것, 중력가속도 30G이상 시험이 가능할 것, 진동주파수 150Hz 이상 설정이 가능할 것	-	1
접점용량 시험기	o AC 250 V, 10A 이상 시험이 가능 할 것 저항부하 및 유도성 부하의 연결이 가능 할 것	±5.0%	1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치수측정기	o 버니어 캘리퍼스 및 마이크로 미터	±3.0 % (최소눈금 0.1)	1
전력분석계	o Power Analyzer	±0.5 % (최소눈금 0.1)	1
항온항습조	o 내습 시험용	습도 : 95 % 이상 온도 : 20 ℃ ~ 30 ℃	1
구형광속계	o 광출력 측정용	50 ~ 2,000 W	1
배광측정기	o 수광기 및 회전장치(KS C 8000) o 수광기는 표시치의 정확도가 ±4.0 % 이내의 AA급 이상의 조도계(KS C 16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것 o 회전장치는 각도 오차가 수평각 ±2도, 연직각 ±1도 일 것	수광기 : 표시치 ±4.0 % 회전장치 : 수평각 ±2도 회전장치 : 연직각 ±1도	1
열충격 시험기	o 온도순환시험용	-30 ~ 70 ℃	1
정전압 공급장치	o AC Power Supply	±0.5 %	1
ON/OFF 개폐시험 설비	o 개폐 시험용	30초 On, 30초 Off	1
내분진시험기	o 800×900×1200 mm	-	1
살수시험기	o (1~10) LPM	-	1
볼프레셔 시험기	o 구슬압력 장치 o 200 ℃까지 조절이 가능한 챔버	5 mm, 20 N	1
니들프레임 시험기	o 난연성 시험용(KS C IEC 60695-2-2)	-	1
글로우와이어 시험기	o 난연성 시험용(KS C IEC 60695-2-10)	650 ℃	1
에이징 시험설비	o 초기광속 및 광속유지율 측정용	15 ~ 40 ℃	1

(15)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급수량 측정장치	o 유량계 또는 무게(저울)측정식	±1.0% (최소눈금 0.1)	1
가스량 측정장치	o 연료(가스)량 측정용	±1.0% (최소눈금 0.1)	1
온도 측정장치	o 배기가스, 급수, 표면온도, 상온 측정계기	±2.0℃	5
배기가스 분석기	o O_2, CO, CO_2 측정기	±1.5%	1
소음측정기	o dB(A)로 측정 가능한 기기	±1.5%	1

(16)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내압성 측정장치	o 내압 및 기밀시험용	최대 5 MPa	1
내전압 시험기	o 내전압 시험용	±5.0 %	1
절연저항계	o 절연저항 측정용	±5.0 %	1
전력 측정기	o 소비전력 측정용	±5.0 %	1
온도 측정장치	o 냉수, 냉각수 입출구온도 측정용	±0.2 ℃ (최소눈금 0.1℃)	4
유량계	o 냉수, 냉각수 유량측정용	±2.0 %	1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험 설비	사 양	정밀도	대수(대)
전력 분석기	o 전력 계측 주파수 범위는 DC 및 0.1 Hz ~ 1 MHz 범위를 포함 할 것 o 60 Hz에서 교류 전력계측의 정밀도는 0.2 % 이하 o 전압 및 전류 계측 주파수 범위는 DC에서부터 5 MHz 까지의 범위를 포함 할 것 o 전기차 직류충전장치의 입력, 출력을 동시에 측정 가능 할 것 (2ch 이상 일 것)	0.2 % 이내	1
파형 측정기	o 오실로스코프 o 2ch 이상 일 것	-	1
부하 시뮬레이터	o 정전압제어 및 정전류제어 시험이 가능할 것 o 용량이 200 kW보다 클 것	-	1

(18) 등기구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치수측정기	o 버니어 캘리퍼스 및 마이크로 미터	±3.0% (최소눈금 0.1)	1
전력분석계	o Power Analyzer	±0.5% (최소눈금 0.1)	1
온도기록계	o 온도측정 기록용(타점식)	0 ~ 300 ℃ (6타점)	1
정전압 공급장치	o AC/DC Power Supply	±0.5%	1
구형광속계	o 광출력 측정용	50 ~ 2,000W	1
휘도계 또는 분광계	o 휘도 측정용	조도 AA급이상	1
배광광도계	o 수광기 및 회전장치(KS C 8000) o 수광기는 표시치의 정확도가 ±4.0% 이내의 AA급 이상의 조도계(KS C 16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것 o 회전장치는 각도 오차가 수평각 ±2도, 연직각 ±1도 일 것	수광기 : 표시치 ±4.0% 회전장치 : 수평각 ±2도 회전장치 : 연직각 ±1도	1

(19) LED램프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대)
치수측정기	o 버니어 캘리퍼스 및 마이크로 미터	±3.0% (최소눈금 0.1)	1
전력분석계	o Power Analyzer	±0.5% (최소눈금 0.1)	1
온도기록계	o 온도측정 기록용(타점식)	0 ~ 300 ℃ (6타점)	1
정전압 공급장치	o AC/DC Power Supply	±0.5%	1
구형광속계	o 광출력 측정용	50 ~ 2,000W	1
휘도계 또는 분광계	o 휘도 측정용	조도 AA급이상	1
배광광도계	o 수광기 및 회전장치(KS C 8000) o 수광기는 표시치의 정확도가 ±4.0% 이내의 AA급 이상의 조도계(KS C 16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것 o 회전장치는 각도 오차가 수평각 ±2도, 연직각 ±1도 일 것	수광기 : 표시치 ±4.0% 회전장치 : 수평각 ±2도 회전장치 : 연직각 ±1도	1
시험용안정기 (고주파시동장치)	o 램프 전기적 특성 측정 용	0 ~ 500 V, 0 ~ 50 kHz	1
광도계 또는 조도계	o 광도 측정용	조도 AA급이상	1

(20) 스마트LED조명

시험설비	사 양	정밀도	보유대수 (대)
치수측정기	o 버니어 캘리퍼스 및 마이크로 미터	±3.0% (최소눈금 0.1)	1
정전압공급장치	o AC/DC Power Supply	±0.5%	1
전력분석계	o Power Analyzer (전력적산 및 데이터 저장 기능 필수) o 전력품질분석기로 대체 가능	±0.5% (최소눈금 0.1)	1
구형광속계	o 광출력 측정용	50 ~ 2,000 W	1
분광측광기	o 연색지수, 상관색온도 측정용	조도 : AA급 이상	1
플리커 측정 장비	o $P_{st}LM$, SVM 측정용	조도 : AA급 이상, 샘플링주파수 : 10 ㎑ 이상	1
배광광도계	o 수광기 및 회전기기(KS C 8000) o 수광기는 표시치의 정확도가 ±4.0% 이내의 AA급 이상의 조도계(KS C 16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것 o 회전기기는 각도 오차가 수평각 ±2도, 연직각 ±1도 일 것	수광기 : 표시치±4.0% 회전기기 : 수평각±2도 회전기기 : 연직각±1도	1
소음측정설비	o 시험실 (KS I ISO 3745) o 소음계 (KS C IEC 61672-1)	시험실 : 무향실, 반무향실 소음계 : 클래스 1	1
에이징 시험설비	o 시료 특성 안정화 및 에이징용	30 A 이상 ON/OFF 개폐	1

2. 전문인력

가. 시험요원의 자격요건

- 시험요원은 기술표준원고시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KS A ISO/IEC 운영실무 등의 시험측정자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시험요원으로서 요구되는 최소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분 야	최소 실무경력		
	고등학교 졸업	대학(4년미만) 졸업	대학(4년이상) 졸업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 전 분야	3년	2년	1년

나. 시험요원 최소 보유인력 :

-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정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다수인 경우에는 시험요원이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앞쪽)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재지	사 무 소			전화번호	
	공 장	(위도 : / 경도 :)* * 해외 인증심사의 경우에 한함		전화번호	
⑤ 인증대상 기자재명					
⑥ 모델 구분		□ 기본모델 □ 파생모델			
⑦ 기본모델명			⑧ 파생모델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신청일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
2. 에너지효율유지에 관한 사항
   가. 업체 현황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공급계약서(수입업체)
   나. 해당기자재의 설명서 및 규격사항
   - 인증신청모델 설명서, 품질유지 서약서(최초 인증시), 주요부품 목록 및 규격
   다. 시험·검사설비의 보유 내역
   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서, 측정결과 등의 사본
   마. 기본모델 대비 파생모델 내용/사진/부품명세서/설계(회로)도면(파생모델만 해당)
   바. 그 밖에 에너지효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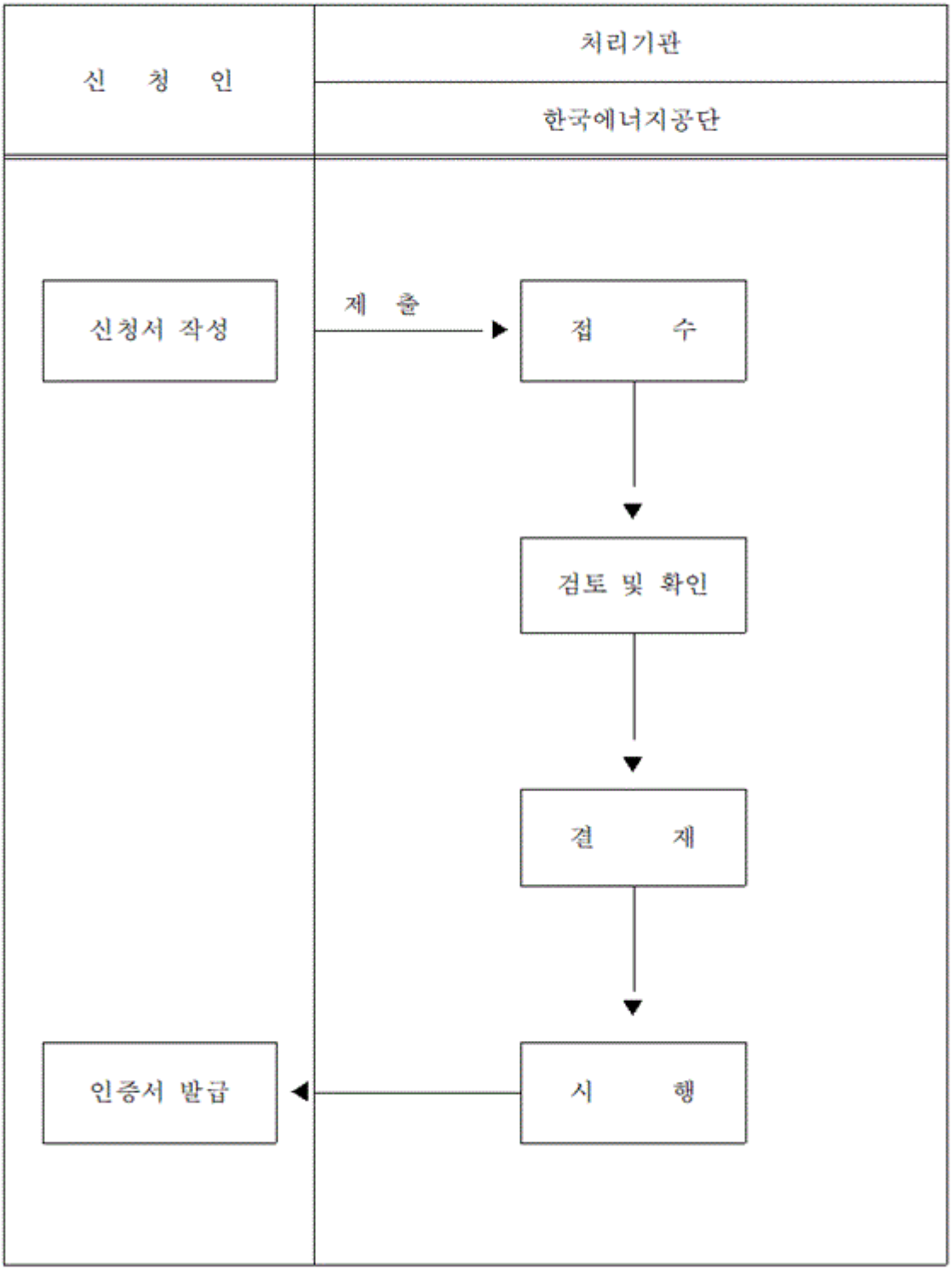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기자재명 제　　호　　유효기간 : 20 . . . ~ 20 .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①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② 사무소소재지

③ 공장소재지

④ 인증기자재

기자재명 :
형　　식 :
모 델 명 :
용　　량 :
효　　율 : (※효율의 표시가 어려운 기자재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명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붙임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의 특징]

측 정 항 목	측 정 값	단 위

[붙임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공 장 명	공 장 주 소	비 고

[붙임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No.	일 자	내 용	비 고

[별지 제3호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영문)

Appliance No. : Validation period : 20 . . ~ 20 . .

Certificate of High efficiency energy using appliance

① Company Name (Company ID No) :

② Office Address :

③ Factory Address :

④ Certified Appliance

Appliance :

Class :

Model :

Capacity :

Efficiency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ppliance above has been certified as High efficiency energy us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Rationalization of Energy Utilization Act clause 4, Article 22.

. . .

Certified by

KOREA ENERGY AGENCY

Reference :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It is necessary to make an application within 90 days before the expiry date if your company wants to extend the validity period.

[Attachment 1 : Characteristics of the Certified Appliance]

Item	Result	Unit

[Attachment 2 : Factory list of the Certified Appliance]

Name	Address	Reference

[Attachment 3 : Status of Compliance Certificate Revision]

No.	Date	Content of revision	Reference

[별지 제4호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①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	
	공 장			전화번호	
⑤ 연장신청 기자재명					
⑥ 모델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 - 호의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구비서류**

1. 제품사진/부품명세서/설계(회로)도면
2.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의 변경 또는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험성적서

[별지 제5호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변경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			
	모 델 명		인 증 번 호	
변경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			
	모 델 명			
	부 품 사 양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 - 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구비서류

1.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부품사양 변경
   - 시험성적서, 변경전후 사진/부품명세서/설계(회로)도면

[별지 제6호서식]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앞쪽)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업 체 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중 지정 신청 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 포함)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 포함)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 · 검사기관 인정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4. 기자재별 시험비용 및 산출내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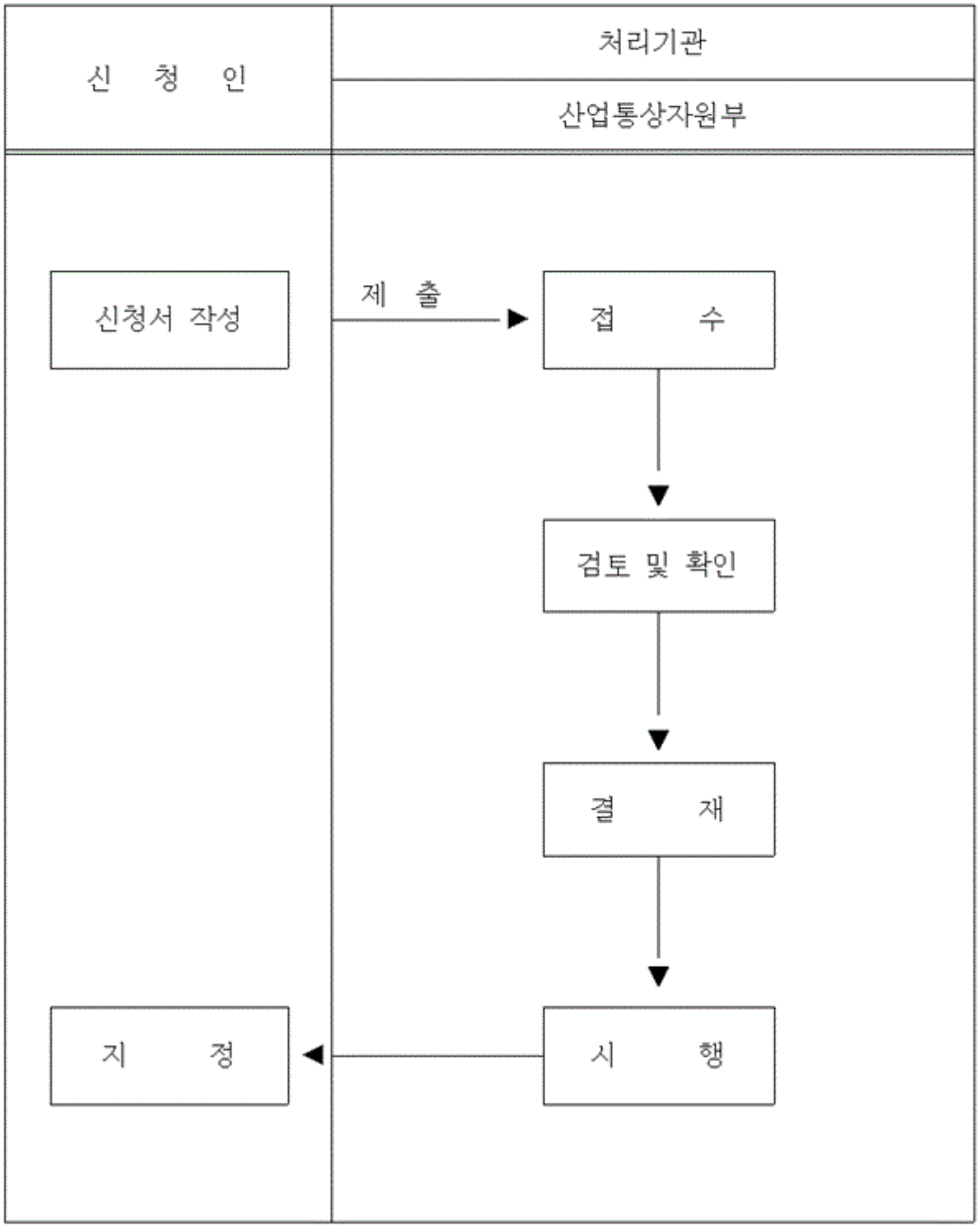

[별지 제7호서식]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기관명		담당		전화번호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업 체 명	기자재명	모델명	시험결과 (적합, 부적합)	비고

[별지 제8호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판매실적 제출 서식

업 체 명 :

담당부서 :

담 당 자 : (전화) (팩스) (전자우편)

수 신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참 조 :

제 목 : ( )년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판매실적 제출

우리 회사의 ( )년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판매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기자재명	인증번호	모 델 명	단위	( )년도 실적		
				생산·수입량	판 매 량	판매금액

비고 1. 생산(수입)·판매량은 국내 내수량 기준입니다.
2. 상기자료는 생산(수입)·판매량 통계에 의한 에너지절약 효과분석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연도에 인증이 취소된 모델도 필히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9. 1.] [고시 제2023 - 176호, 2023. 9.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044 - 203 - 51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ㆍ관리ㆍ운영 통합시

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2. "거실"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이란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합동청사의 경우 본부장급ㆍ소장급, 합동청사 입주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ㆍ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 중 소유 또는 관리 주체는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제6조제3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 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시공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ㆍ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ㆍ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ㆍ중ㆍ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버스ㆍ철도ㆍ지하철 시설 및 공항
4. 병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5.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6.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단,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용량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⑥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ㆍ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ㆍ군ㆍ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ㆍ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ㆍ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공공기관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ㆍ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를 따른다.

④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형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구역의 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지킴이,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ㆍ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ㆍ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이 고

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라 한다)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내지 제11호 구역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역의 에너지사용량은 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 - 154호,2011. 7.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 - 18호,2012. 2.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329호, 2009.12.31)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 - 61호,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개정 시행일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는다.

② 제6조, 제10조, 제13조제2항의 경우, 이 규정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 - 71호,2013. 7.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개정 시행일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는다.

② 제6조, 제13조제2항의 경우, 이 규정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제10조의 경우,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는다.

④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 - 95호,2014. 6.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적용대상 건축물이 업무시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 사항은 2014년 9월 2일(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 - 196호,2014. 10.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적용대상 건축물이 업무시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 사항은 2014년 9월 2일(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의무도입 비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 - 158호,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 - 195호,2015. 9.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 - 97호,2016. 5.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은 2017.1.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고시 개정전 연도별 LED 제품 설치비율을 적용하였던 도로조명은 동 비율대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신축 건축물은 2017.1.1.(건축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하고 기존 건축물은 2023.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0.>

부칙 <제2016 - 183호,2016. 10.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 - 13호,2017.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7 - 154호,2017. 11.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 - 203호,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 - 188호,2019. 11.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 - 97호,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 - 134호,2020. 8.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 - 197호,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 - 138호,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 - 161호,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8.1. 이후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의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 - 176호,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진단의무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의무 대상은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나. 진단의무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 집합건축물 또는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의한다.
- 복합시설의 경우, 주용도에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 진단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 주차장, 창고, 기계실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진단의무 면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운영성과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할 수 있다.

2.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방법 등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대상 기관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에너지사용량, 건축물 준공연도, 과거에 받은 진단시기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진단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등의 기준은 다음을 기준하여 시행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1호, 제2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 · 군 및 자치구
4. 시 · 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 · 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운영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증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인증 받은 설비 사용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건물 실내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대기전력저감 제품 구매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에너지절감 활동	에너지진단 실시		
		ESCO사업 추진		
		적정실내온도 준수(동절기 및 하절기)		
		개인난방기 사용 제한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도입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상 확보		
	에너지절감활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에너지절약홍보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보고	추진계획	1월 31일까지 추진계획[별표4] 제출완료		
	추진실적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별표4] 제출완료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계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 1회)		
	실적분석·개선조치		
	예산편성 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 반영		
고효율 조명	고효율인증제품 설치(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주2) 실외조명 실적보고 대상기관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3	3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2	1회 실시	
				0	그 외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운영	3	3	지정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6 (7)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2 (3)	산출식	기준 등급 이상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설치·운영	5 (6)	산출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운영성과)확인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	산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검토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2	산출식	인증 설비 구매액/인증대상 설비 구매액×배점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5)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고효율 기자재 구매	실내 LED조명 보급률 (실내 조명)	5	산출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 - 제외대상조명수)×배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4	산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액/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구매액×배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4	산출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구매액/에너지소비효율등급 대상제품 구매액×배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	3	산출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액/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배점	
	에너지 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2	산출식	조명기구 부분점멸 및 창측 전등군 부분점멸 회로 구성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2 (3)	산출식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대상건축물의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개수의 30%×배점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2	산출식	전력절감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 대수/전체PC 대수×배점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2	2	옥외 경관조명이 없는 경우	
				0	그 외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2 (3)	산출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상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에너지 절감 활동	에너지진단 실시	5 (6)	산출식	에너지진단 실시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5 (6)	산출식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건수/진단결과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대상 건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적정실내온도 준수 (동절기 및 하절기)	4	4	점검결과 동절기 및 하절기 실내온도를 준수한 경우	
				2	점검결과 동절기 또는 하절기 실내온도를 준수한 경우	
				0	그 외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2	2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경우	
				0	그 외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	2	문서상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2	2	문서상 운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	4 (5)	산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5)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상 확보	2	산출식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주차면의 10% × 배점	
	에너지 절감 활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2	2	문서상 승용차 요일제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교육 홍보	에너지 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 실시	2	2	문서상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한 경우	
				0	그 외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2	2	문서상 담당자가 8시간 이상 전문기관 교육에 참여한 경우	
				0	그 외	
	에너지 절약 홍보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2	2	문서상 홍보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보고	추진 계획	1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계획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추진	3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실적이 보고된 경우	

	실적		0	그 외	
총 점		100 (110)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20	문서상 편성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실적분석·개선조치	30	30	개선조치 공문시행이 있을 경우	
			15	문서상 실적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0	그 외	
고효율제품 구매	실외조명 고효율인증제품 신규설치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터널등)	50	산출식	신규설치 및 교체한 고효율인증 조명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기구수 / 전체 신규설치 및 교체한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기구수×배점	
총 점		100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ㅇ 모든 항목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추진계획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명						
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1. 전년도 평가결과[별표 3] 대비 개선계획

	이행항목	전년도 평가결과	금년도 목표점수	개선계획(요약)
1				
2				

2. 건축물 신축·재축·증축·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주용도	건축유형	건축현황	이행항목	대상여부	이행계획	신청예정일
1					□신축 □재축 □증축 □별동증축 □개축 □기타	□설계중 □허가신청 □착공신고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2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실내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 설치·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4. 실적점검 및 교육일정

	이행항목		추진일자	주요내용(요약)
1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상반기		
		하반기		
2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자체평가 ([별표 3] 평가표 및 평가기준)			
3	적정실내온도 준수	하절기		
		동절기 (개인난방기단속 포함)		
4	내부 임직원 자체교육			
5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 전문기관 교육 참석(8시간 이상)			

5. (관리감독기관)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지도점검 (2회까지만 기재)	1회	일자	월 일 ~ 월 일	점검기관 수 (개소)	
	2회		월 일 ~ 월 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월 일 ~ 월 일		
	개선조치 시행계획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 추진실적 >

ㅇ 모든 항목은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시·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LED 보급실적(4-1 항목)을 취합하여 제출

□ 추진실적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명						
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1. **에너지사용량 정보**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1,000m²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별로 2개년도(전년도, 전전년도)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사용승인일		
소유구분	□소유 □임차	주용도		연면적		(m²)
규모	□지상 ( )층 □지하 ( )층			냉·난방면적		(m²)
주소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기														kWh
도시가스														MJ
지역냉·난방														Mcal
유류														MJ
기타														MJ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기														kWh
도시가스														MJ
지역냉·난방														Mcal
유류														MJ
기타														MJ

주1) 월간 에너지공급자 고지서에 기재된 에너지사용량
주2) 공공기관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작성 제외

2. 추진체계

2-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위원장	성 명			위 원 회 주관부서	부서명		
		직 위				담당자		
	구성위원	부서명						
		직 위						
개최실적		일자	(상반기) 년 월 일			(하반기) 년 월 일		
		주요 내용						

주) 위원회에서 수행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별표3] 이행실적 평가표)를 붙임으로 제출

2-2.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에너지지킴이 지정	성 명					
	직 위					
	활동기간					
에너지지킴이 활동	(주요활동 요약)					

3. 건축물 신축·증축

3-1. 건축물 신축·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 일	사용 승인 일	이행항목	대상 여부	이행실적		취득 일
1					□신축 □재축 □증축 □분동증축 □개축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등급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 □비대상	본인증	( )등급	
								BEMS 설치·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등급	
										운영성과 확인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2												

3-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2-1. 설치계획검토 결과(전년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설치계획서 검토 여부	검토완료 일자	신재생 에너지 비중(%)	세부설비 용량		
						설비명	용량	단위
1			□검토 □미실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kW Mcal kW kW
2								

3-2-2. 인증설비 구매현황(전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인증제품 사용여부	설치완료 일자	인증제품 미사용, 예외 사유	세부설비 금액			
					설비명	용량	단위	구매액(원)
1		□사용 □미사용 □예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2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 □GHP □축냉식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 고효율제품 구매

4-1. LED조명(건물 실내 조명) 교체현황(누적)

청사 이전(移轉) 계획유무	실내조명 설치현황			
	전체 조명수 (개, A)	전체 LED조명수 (개, B)	LED 교체 제외대상 조명수 (개, C)	실내 LED비율 (B/(A-C),%)
□있음(본청(본사)) □있음(지청(지사)) □없음				

주1) 조명수는 조명(유도등 포함)의 개수가 아니며 등기구 개수임

주2) 시·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LED 보급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4-2.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구분	대상제품 구매실적		고효율제품 구매실적		비율 (B/A, %)
		제품수 (개)	구매액 (천원, A)	제품수 (개)	구매액 (천원, B)	
1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2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3	대기전력 저감우수					

주) 최종 잔금 지출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품목별 구매실적은 별임으로 제출

5.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5-1. 옥외 경관조명(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경관조명 설치여부	경관조명설치시 LED 설치	미설치 사유
1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주) 공동주택은 제외

5-2.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부분점멸회로	창측 전등군	미설치 사유
1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2					

5-3. 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전년도에 신축, 증축 또는 개축된 건축물 기재)

건축물 전체의 거실 총 콘센트 (A, 개)	자동절전제어장치로 제어되는 콘센트 (B, 개)	비율 (B/A, %)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30%이상 설치여부	설치비율 (%)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개축			□설치 □미설치		
2								

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5-4.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전체 보유 PC수 (A, 개)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PC 수 (B, 개)	비율 (B/A, %)

5-5.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계약전력 (kW)	이행의무 대상여부	진행상황	설치 실적(연말 누계)			미추진 (지연) 사유
						PCS용량 (kW)	배터리용량 (kWh)	설치예정 (완료)일	
1				□대상 □비대상	□완료 □추진 중 □미추진			년 월	
2									

주) 계약전력이 1,000kW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전력 단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건축물 대장상 한 대지에 여러 동(건물)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전력으로 계약한 경우 대표 건축물 명을 기재)

6. 에너지절감 활동

6-1. 에너지진단(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준공년도	의무대상여부	진단일자
1				□대상 □비대상	
2					

주) 건물에너지진단 의무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5년 주기 진단)

6-2. ESCO 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 명	에너지절감효과			ESCO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 기간(ROI)	
1			□대상 □비대상						
2									

6-3. 기타(본청(본사) 및 지청(지사)에 대하여 기재)

	구분	소유 형태	냉·난방온도 기준완화	시책명		이행여부	점검일자 (자체)
1	본청 (본사)	□자가 □부분임차	□일반 □완화 (비전기식 60%이상) □탄력적 운영 대상	적정 실내온도	동절기	□준수 □미준수	
					하절기	□준수 □미준수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준수 □미준수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3시~일출시)		□준수 □미준수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영		□시행 □미시행	
2	지청 (지사)						

7.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하이브리드차 수(대)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 수(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총 보유수(대)	하이브리드차 수(대)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7-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수

총 주차면 수(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수(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설치비율(%)	전기자동차 충전기수(개)

7-3.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8. 교육 및 홍보

8-1. 교육 실적

구분	수강자(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형태	주요내용	교육기관
임직원 내부교육				□자체(집체) □자체(온라인) □전문기관 위탁		
담당자 전문교육						

주) 추진실적이 더 있는 경우 추가 기재

8-2. 홍보 실적

	홍보명	홍보매체	홍보내용	시행일자
1		□지역회보 □전광판 □홈페이지 □기타( )		
2				

9. (관리감독기관만 기재)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지도점검 (2회까지만 기재)	1회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기관 수 (개소)	
	2회		년 월 일 ~ 년 월 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선조치 내용		(5건 이내를 요약하여 기재)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10. (해당기관만 기재)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등에 고효율인증제품 설치

10-1. 보급현황(누적)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 등기구 기준

10-2.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신규설치 및 교체 실적(전년도)

☐ 전체 조명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램프		등기구		램프		등기구		램프		등기구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 고효율기자재인증 조명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램프		등기구		램프		등기구		램프		등기구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 전년도에 시행한 램프 및 등기구 신규설치 및 교체 실적 기재

[별표 5] 실내온도 산정방법(제14조 관련)

1. 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층별 냉·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 등 5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하고, 5층 미만의 건축물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건축물의 냉방온도로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13	'14	'15	'17	'20
신축 건축물 (설치 비율)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40%	50%	60%	80%	100%

주1) 설치 비율은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주2) 보급비율은 해당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LED 조명 설치나 교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상주 인원이 없으면서 필요시에만 조명을 사용하는 곳(기계실, 전기실 등)
나. 센서등이 설치되어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곳
다. LED조명으로 설치 및 교체가 불가능한 곳(설치 장소에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하는 LED조명 제품이 없는 경우, 특수용도의 조명 등)

※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조명이라 하더라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조명 혹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별표 7]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시·군의 인구 수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항을 제외대상 차량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여부를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가'항 이외에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①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②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③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④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임직원 차량

라.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요일제 적용 방식 〉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유 형 별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선택요일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끝번호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마.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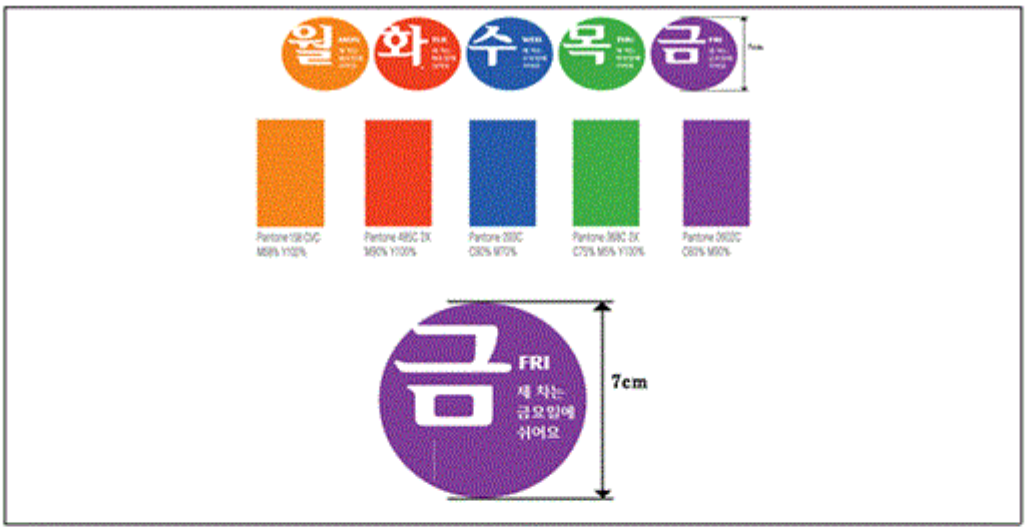

*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적용 제외

가. 공통사항

○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운휴

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2]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제외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ㅇ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 · 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 · 퇴근 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 · 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 · 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 · 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 · 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④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중교통 배차간격은 동일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 아닌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함)

⑤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장거리 출퇴근은 위원회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에서 정한다.

⑥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 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임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

○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제외증명서의 발급

ㅇ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ㅇ '제외증명서'는 [참고1]의 양식으로 해당 공공기관장 명의로 발행하고,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한다.

□ 기타 특이사항

ㅇ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ㅇ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참고2]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o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o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o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3. 2. 28.] [고시 제2023 - 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044 - 201 - 3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하기 전에 영 제10조제2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확인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신청구분 사전확인란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 신청을 받으면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도서 등을 검토한 후 사전확인 결과를 사전확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확인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규칙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처리절차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가 제14조 및 제15조 또는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전확인 결과 중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항목별 평가결과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며, 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법 제14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삭제
2.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단, 공공기관의 경우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기능ㆍ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8. 제21조제2항에서 제시하는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6. "고효율제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 고시에서 고효율로 정한 제품을 말한다.
7.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8.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9.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부문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방 또는 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자.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 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한다.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타.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 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파.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하. "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거.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너.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차양, 구조체 또는 태양열취득률이 낮은 유리를 말한다. 이 경우 차양은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차양으로 구분하며, 가동여부에 따라 고정형과 가동형으로 나눌 수 있다.

더. 삭제

11. 기계설비부문

가. "위험률"이라 함은 냉(난)방기간 동안 또는 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분포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쪽으로부터 총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라. "대수분할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 "비례제어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ㆍ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사. "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열교환효율과 에너지계수의 최소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아.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차. "TAB"라 함은 Testing(시험), Adjusting(조정), Balancing(평가)의 약어로 건물내의 모든 설비시스템이 설계에서 의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점검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카. "커미셔닝"이라 함은 효율적인 건축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확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공사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건축주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모든 시스템의 계획, 설계, 시공, 성능시험 등을 확인하고 최종 유지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입주 후 건축주의 요

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운전성능 유지 여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12. 전기설비부문

가.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나.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전압)과 부하측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를 말한다.

라.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마.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바.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사. "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자. "자동절전멀티탭"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멀티탭을 말한다.

차. "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또는 구역 단위(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카. "회생제동장치"라 함은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의 경우)할 때 모터는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며, 이 때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타. 삭제

파. 삭제

하. "간선"이라 함은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측의 부분을 말한다.

13. 신ㆍ재생에너지설비부문

가. "신ㆍ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5.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란 에너지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16.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에너지요구량"이란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부문에서 표준 설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18. "에너지소요량"이란 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19. "1차에너지"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하며,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20. "시험성적서"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다목에 해당하는 성적서로 동법에 따라 발급ㆍ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또는 온실 등 지표면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부위
      7) 「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1) 이 기준 별표3의 지역별ㆍ부위별ㆍ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2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벽ㆍ바닥ㆍ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 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또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성능지표(이하 "에너지성능지표"라 한다)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

계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배치계획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태양열 취득을 최대한 증대시킨다.
2. 평면계획
   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다. 실의 냉난방 설정온도, 사용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적 조닝계획을 한다.
3. 단열계획
   가. 건축물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나. 외벽 부위는 외단열로 시공한다.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기타 열교부위는 별표11의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라. 건물의 창 및 문은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의 창 및 문의 면적은 최소화한다.
   마.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 및 문의 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 - E) 복층창이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한다.
   바.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ㆍ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취득률(SHGC), 창 및 문의 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건축물 외부에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4. 기밀계획
   가.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다. 기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거실의 창 및 문 등 개구부 둘레를 기밀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외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기밀하게 처리한다.

5. 자연채광계획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6. 삭제

제2절 기계설비부문 설계기준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설계용 외기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률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별표7에서 정한 외기온ㆍ습도를 사용한다. 별표7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률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다.

2. 열원 및 반송설비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4.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제9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별표 8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열원설비

가.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나.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다. 난방기기, 냉방기기, 급탕기기는 고효율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을 가진 제품을 설치한다.

라. 보일러의 배출수ㆍ폐열ㆍ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 - pass)설비를 설치한다.

마.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ㆍ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3. 공조설비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4. 반송설비

가. 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펌프, 냉각수 순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다. 공조용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5. 환기 및 제어설비

가. 환기를 통한 에너지손실 저감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열회수형환기장치를 설치한다.

나.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 - 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을 위해 TAB 또는 커미셔닝을 실시한다.

라.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6. 삭제

제3절 전기설비부문 설계기준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수변전설비

가.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효율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간선 및 동력설비

가.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간선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조명설비

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4.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야 한다.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수변전설비
   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률,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나.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를 채택한다.
   마.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바. 건축물의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2. 조명설비
   가. 옥외등은 고효율제품인 LED 조명을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또는 조도조절 기능) 및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제품을 설치한다.
   라.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또는 구역별로 일괄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한다.
3. 제어설비
   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나.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한다.
   바.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
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표12의 설치기준에 따라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5. 삭제
6. 삭제

제4절 신ㆍ재생에너지설비부문 설계기준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난방, 냉방, 급탕 및 조명에너지 공급 설계 시 신、재생에너지를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은 전 항목 채택 시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2.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② 삭제

제18조(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④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의 취득) ① 신청인이 인증에 의해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여부 확인) ① 인증취득을 통해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행여부 확인결과 건축주가 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완화적용을 받기 이전의 해당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삭제

②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 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하며, 별표10의 평가기준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ㆍ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

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정)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작성ㆍ검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 - 5호,2008. 1. 11.>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08 - 652호,2008. 11. 18.>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0 - 371호,2010. 6. 11.>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단열재 두께 기준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0 - 1031호,2010. 12. 31.>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단열재 두께 기준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 및 제21조, 별표 10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2 - 69호,2012. 2. 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제2013 - 149호,2013. 3.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2조의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제2013 - 587호,2013. 10.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2조의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제2014 - 520호,2014. 9.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제2014 - 957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와 별표 9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제2015 - 596호,2015. 8. 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제2015 - 1108호,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별표1 및 별표3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제2016 - 944호,2016. 12.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부칙 <제2017 - 71호,2017. 1.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부칙 <제2017 - 881호,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부칙 <제2022 - 52호,2022. 1.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제2023 - 104호,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K)

건축물의 부위 \ 지역				중부1지역[1]	중부2지역[2]	남부지역[3]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창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문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창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문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련 표준	단열재 종류
	W/mK	kcal/mh℃		
가	0.034 이하	0.029 이하	KS M 3808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KS M 3809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A, Ⅱ종A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kcal/mh℃)이하인 경우	
나	0.035~0.040	0.030~0.034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L 9102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 0.034 kcal/mh℃)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0.035~0.039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kcal/mh℃)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0.040~0.044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kcal/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1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2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 · 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창	복층창	일반복층창[2]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하드코팅)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 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3.3	2.9	2.8	3.0	2.6	2.5	2.5	2.1	2.0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3.2	2.7	2.6	2.9	2.4	2.3	2.3	1.9	1.8
	삼중창	일반삼중창[2]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하드코팅)		2.9	2.4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 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2.5	2.2	2.1	2.2	1.9	1.8	1.8	1.5	1.4
	사중창	일반사중창[2]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하드코팅)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 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문	일반문	단열 두께 20㎜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 이상		1.80			1.70			1.60		
	유리문	단창문	유리비율[3] 50%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이상	5.50			5.20			4.70		
		복층창문	유리비율 50%미만	3.20	3.10	3.00	3.00	2.90	2.80	2.70	2.60	2.50
			유리비율 50%이상	3.80	3.50	3.40	3.30	3.10	3.00	3.00	2.80	2.70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 및 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 단창, 삼중창은 단창+ 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 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주4)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 및 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 단창, 단창+ 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주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7)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 및 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저항 / 건물 부위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K/W] (괄호안은 ㎡·h·℃/kcal)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K/W] (괄호안은 ㎡·h·℃/kcal)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 문 포함)	0.11(0.13)	0.11 (0.13)	0.043 (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0.086(0.10)	0.15 (0.17)	0.043 (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086(0.10)	0.086 (0.10)	0.043 (0.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0.086(0.10)	-	-

[별표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공기층의 두께 da (cm)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K/W] (괄호안은 ㎡·h·℃/kcal)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2 cm 이하	0.086×da(cm) (0.10×da(cm))
	2 cm 초과	0.17 (0.20)
(2) 현장시공 등	1 cm 이하	0.086×da(cm) (0.10×da(cm))
	1 cm 초과	0.086 (0.10)
(3) 중공층 내부에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방사율 0.5이하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방사율 0.1이하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2.0배	

[별표7]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구분 / 도시명	냉방		난방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서 울	31.2	25.5	-11.3	63
인 천	30.1	25.0	-10.4	58
수 원	31.2	25.5	-12.4	70
춘 천	31.6	25.2	-14.7	77
강 릉	31.6	25.1	-7.9	42
대 전	32.3	25.5	-10.3	71
청 주	32.5	25.8	-12.1	76
전 주	32.4	25.8	- 8.7	72
서 산	31.1	25.8	- 9.6	78
광 주	31.8	26.0	- 6.6	70
대 구	33.3	25.8	- 7.6	61
부 산	30.7	26.2	- 5.3	46
진 주	31.6	26.3	- 8.4	76
울 산	32.2	26.8	- 7.0	70
포 항	32.5	26.0	- 6.4	41
목 포	31.1	26.3	- 4.7	75
제 주	30.9	26.3	0.1	70

[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구 분 / 용 도	난 방	냉 방	
	건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공동주택	20~22	26~28	50~60
학교(교실)	20~22	26~28	50~60
병원(병실)	21~23	26~28	50~60
관람집회시설(객석)	20~22	26~28	50~60
숙박시설(객실)	20~24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50~70

[별표9] 세부 완화기준

1)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비고
6%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3%	녹색건축 우수 등급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비고
15%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1%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영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비고
10%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4)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영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 이 경우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비 고

1)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신청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이 외 중첩 적용 최대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및 「건축법」 제60조제4항에 따른다.

[별표10] 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기준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frac{\text{난방에너지요구량}}{\text{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냉방에너지요구량}}{\text{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급탕에너지요구량}}{\text{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조명에너지요구량}}{\text{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frac{\text{난방에너지소요량}}{\text{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냉방에너지소요량}}{\text{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급탕에너지소요량}}{\text{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조명에너지소요량}}{\text{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환기에너지소요량}}{\text{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에너지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 에너지 소비 총량제 판정 기준이 되는 1차 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

[별표 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 (※ 구성 재료 : 콘크리트 단열재 단열보강)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선형 열관류율 (W/mK)
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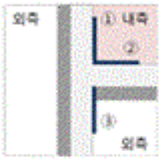	없음	0.520(0.800)
		①	0.485(0.760)
		①+ ②	0.430(0.695)
		③	0.440(0.730)
		①+ ③	0.415(0.695)
		①+ ②+ ③	0.370(0.640)
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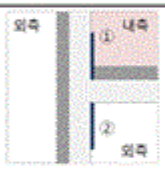	없음	0.465(0.600)
		①	0.390(0.520)
		②	0.445(0.585)
		①+ ②	0.375(0.510)
T-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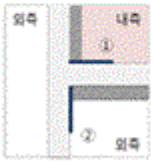	없음	0.545(0.705)
		①	0.450(0.605)
		②	0.540(0.700)
		①+ ②	0.450(0.605)
T-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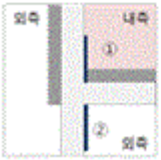	없음	0.520(0.605)
		①	0.410(0.520)
		①+ ②	0.365(0.465)
T-5		없음	0.720(0.960)
		①	0.535(0.780)
		②	0.665(0.895)
		①+ ②	0.500(0.740)
T-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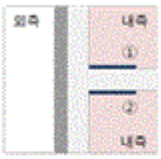	없음	0.000(0.300)
		① 또는 ②	0.000(0.300)
		①+ ②	0.000(0.300)
T-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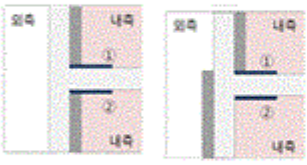	없음	0.700
		① 또는 ②	0.650
		①+ ②	0.600
T-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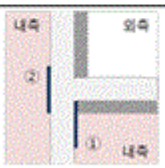	없음	0.605(0.740)
		①	0.605(0.740)
		②	0.570(0.705)
		①+ ②	0.565(0.700)
T-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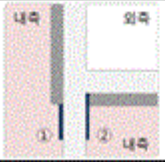	없음	0.580
		①	0.555
		②	0.550
		①+ ②	0.515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선형 열관류율 (W/mK)
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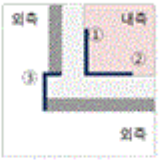	없음	0.530(0.820)
		①	0.485(0.765)
		①+ ②	0.435(0.710)
		③	0.375(0.675)
		①+ ③	0.345(0.640)
		①+ ②+ ③	0.315(0.600)
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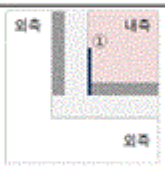	없음	0.545(0.665)
		①	0.450(0.565)
L-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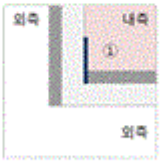	없음	0.520(0.605)
		①	0.410(0.520)
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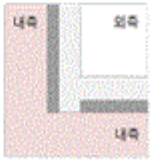	없음	0.580
X-1		없음	1.040(1.295)
		① 또는 ②	0.950(1.180)
		①+ ②	0.800(1.040)
X-2		없음	0.505(0.630)
		①	0.415(0.535)
X-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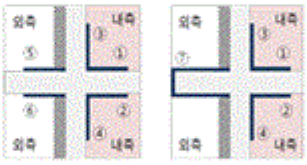	없음	0.730(1.000)
		① 또는 ②	0.720(1.000)
		①+ ②	0.710(0.975)
		①+ ②+ ③+ ④	0.645(0.895)
		①+ ②+ ⑤+ ⑥	0.580(0.850)
		①+ ②+ ③+ ④+ ⑤+ ⑥	0.530(0.790)
		①+ ②+ ⑦	0.530(0.800)
		①+ ②+ ③+ ④+ ⑦	0.485(0.695)
X-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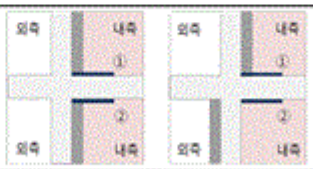	없음	0.700
		① 또는 ②	0.650
		①+ ②	0.600
X-5		없음	0.465(0.885)
		①	0.455(0.870)
		②	0.435(0.850)
		①+ ②	0.425(0.835)
		①+ ②+ ③	0.395(0.800)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선형 열관류율 (W/mK)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선형 열관류율 (W/mK)
X-6		없음	0.820(1.085)	X-10		없음	1.090
		① 또는 ②	0.600(0.850)			①+ ③	1.065
		①+ ②	0.550(0.800)			①+ ②+ ③	0.915
X-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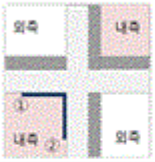	없음	0.960(1.220)	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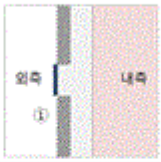	없음	0.780(1.045)
		① 또는 ②	0.860(1.115)			①	0.445(0.715)
		①+ ②	0.730(0.970)				
X-8		없음	0.760(0.885)	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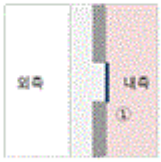	없음	0.655
		①	0.330(0.445)			①	0.390
X-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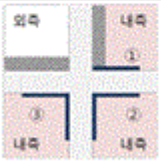	없음	0.610(0.750)	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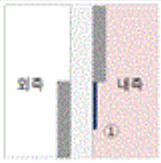	없음	0.810(0.930)
		①+ ③	0.580(0.720)			①	0.595(0.710)
		①+ ②+ ③	0.555(0.690)				
평가 대상 예외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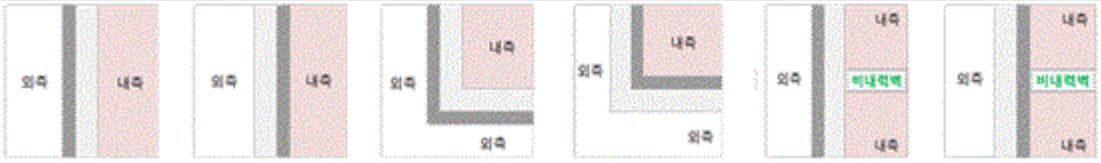						커튼월 부위 또는 샌드위치 패널 부위

※ 외측은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의 구조체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바깥쪽을 말하며, 내측은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의 구조체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안쪽을 말한다.

※ 외피 열교부위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가 접하는 부위는 평가대상에 포함)를 말한다.
주1) 'T'형 및 'L'형에서 단열시공이 연속적으로 된 부위, 커튼월 부위, 샌드위치 패널 부위는 평가대상에서 예외(커튼월 부위 또는 샌드위치 패널 부위가 벽식 구조체 부위와 복합적으로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벽식 구조체 부위만 평가)

※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은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들의 선형 열관류율을 길이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점수 부여)
-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계산식 =
  [Σ(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별 길이)] / (Σ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별 길이)

※ 외단열 적용 시 건식 마감재 부착을 위해 단열재를 관통하는 철물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의 값을 적용한다.

※ 별표 11의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이외의 경우에는 제시된 형상의 회전 또는 변형('T'형 → 'Y'형, 'L'형 → 'T'형 등)을 통하여 가장 유사한 형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표 11의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의 회전 또는 변형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ISO 10211에 따른 평가결과 인정 가능)

※ 외단열과 내단열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전체 단열두께의 50%를 초과한 부위의 선형 열관류율을 적용하며, 외단열 두께와 내단열 두께가 동일한 경우에는 내단열 부위의 선형열관류율을 적용한다.

※ 단열보강은 열저항 0.27㎡K/W, 길이 300㎜ 이상 적용
- 단열보강 부위가 2면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면이 열저항 기준 및 길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 단열보강을 하고자 하는 면의 단열보강 가능 길이가 300mm 미만일 경우는 해당 면 전체를 보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별표 12]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기준

항 목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BEMS 운영방식(자체/외주/클라우드 등), 주요설비 및 BAS와 연계 운영 등 BEMS 설치 일반사항 정의
2	시스템 설치	관제점 일람표 작성, 데이터 생성방식 및 태그 생성 등 비용효과적인 BEMS 구축에 필요한 공통사항 정의
3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4	정보감시	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화
5	데이터 조회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6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7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8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9	에너지 소비 예측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10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11	제어시스템 연동	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1호서식]

(12쪽 중 제1쪽)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6번 또는 17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고효율제품으로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개선용 커패시터(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 (공동주택 제외)					
⑦ 공동주택 세대별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제외)					
⑧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야 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2쪽 중 제3쪽)

2. 에너지성능지표[주1)]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대형 (3,000㎡ 이상)	소형 (500~3,000㎡ 미만)	주택 1	주택 2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축부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21	34			중부1	0.380미만	0.380~0.430미만	0.430~0.480미만	0.480~0.530미만	0.530~0.580미만		
						중부2	0.490미만	0.490~0.560미만	0.56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40미만		
						남부	0.620미만	0.620~0.690미만	0.690~0.760미만	0.760~0.840미만	0.840~0.910미만		
						제주	0.770미만	0.770~0.860미만	0.860~0.950미만	0.950~1.040미만	1.040~1.130미만		
				31	28	중부1	0.300미만	0.300~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10미만	0.410~0.460미만		
						중부2	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20미만	0.420~0.460미만	0.460~0.500미만		
						남부	0.420미만	0.420~0.470미만	0.470~0.510미만	0.510~0.560미만	0.560~0.61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50미만	0.750~0.81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10	10	중부1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중부2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남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50미만	0.150~0.160미만		
						제주	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10미만	0.210~0.25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5	6	6	6	중부1	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80미만		
						중부2	0.120미만	0.12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210미만		
						남부	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10미만	0.210~0.280미만		
						제주	0.200미만	0.20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0.280~0.340미만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0.400미만		0.400~0.440미만	0.440~0.475미만	0.475~0.515미만	0.515~0.55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주4)]	5	6	6	6	1등급 (1 ㎥/h㎡ 미만)		2등급 (1~2 ㎥/h㎡ 미만)	3등급 (2~3 ㎥/h㎡ 미만)	4등급 (3~4 ㎥/h㎡ 미만)	5등급 (4~5 ㎥/h㎡ 미만)		
	6.창 및 문의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 기밀성능 강화 조치	1	2	2	2	외기 직접 면한 창 및 문 틀레의 60% 이상에 적용							
	7.냉방부하저감을 위한 거실 외피 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5)]	7	5	3	3	19W/㎡ 미만		19~24W/㎡ 미만	24~29W/㎡ 미만	29~34W/㎡ 미만	34~39W/㎡ 미만		
공동주택	8.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를 설치	-	-	1	1	적용 여부							
	9.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7)]	-	-	1	1	1.20이상		1.15이상~1.20미만	1.10이상~1.15미만	1.05이상~1.10미만	1.00이상~1.05미만		
	10.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4번에 대한 보상점수	-	-	1	1	--							
건축부문 소계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4쪽)

항 목				기본배점 (a) 비주거 대형(3,000㎡ 이상)	비주거 소형(500~3,000㎡ 미만)	주거 주택 1	주거 주택 2	배점 (b)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평점 (a*b)	근거
기계설비부문	1.난방설비[주9] (효율%)	기름 보일러		7	6	9	6	93이상	90~93미만	87~90미만	84~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90미만	84~86미만	82~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6	2	-	2	5.18이상	4.51~5.18미만	3.96~4.51미만	3.52~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계수, COP)	①1중효용					0.75이상	0.73~0.75미만	0.7~0.73미만	0.65~0.7미만	0.65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이상	1.1~1.2미만	1.0~1.1미만	0.9~1.0미만	0.9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3.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 설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 가중평균)			3	1	-	1	60%이상	57.5~60%미만	55~57.5%미만	50~55%미만	50%미만		
	4.냉온수, 냉각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9]			2	2	3	3	1.16E 이상	1.12E~1.16E미만	1.08E~1.12E미만	1.04E~1.08E미만	1.04E 미만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 냉방시스템의 도입			3	1	-	1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6.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채택[주10]	공조기 부착형		3	3	3	3	설치 여부						
		개별장치(열교환효율, %)	전열교환기 난방					74 이상	73 이상	72 이상	71 이상	70 이상		
			전열교환기 냉방					57 이상	54 이상	51 이상	48 이상	45 이상		
			현열교환기 난방					88 이상	86 이상	84 이상	82 이상	80 이상		
			현열교환기 냉방					72 이상	69 이상	66 이상	63 이상	60 이상		
	7.기기배관 및 덕트 단열			2	1	2	2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 제외)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1	2	2	전체 열원설비의 60% 이상 적용 여부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0.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 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2	1	-	1	100	90~100미만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11.전체 급탕용 보일러 용량에 대한 우수한 효율설비 용량 비율 (단, 우수한 효율설비의 급탕용 보일러는 고효율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2	2	2	2	80이상	70~80미만	60~70미만	50~60미만	50미만		
	12.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2	2	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3.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 설비 채택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	-	커미셔닝	-	T.A.B	-	-		
	16.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 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 여부 (단, 부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1]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기계설비부문 소계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5쪽)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대형 (3,000㎡ 이상)	소형 (500~3,000㎡ 미만)	주택 1	주택 2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전기설비부문	1.거실의 조명밀도(W/㎡)	9	8	8	8	8 미만	8~11미만	11~14미만	14~17미만	17~20미만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3.5 미만	3.5~4.0미만	4.0~5.0미만	5.0~6.0미만	6.0~7.0미만		
	3.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2	1	1	1	적용 여부						
	4.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1	1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5.옥외등은 LED 조명을 사용하고 격등 조명(또는 조도조절기능) 및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1	1	1	1	적용 여부 (고효율제품인 경우 배점)						
	6.층별 또는 구역별로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1	1	-	-	설치 여부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2	-	-	층별 1대 이상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8.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별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3	3	2	2	별표 12에 따른 BEMS 설치	-	3개이상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2개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1개 에너지원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적용 여부						
	10.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2	2	2	2	80% 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11.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율	2	1	-	-	전체 승강기 동력의 60% 이상에 회생제동장치 설치 여부						
	전기설비부분 소계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6쪽)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 이상)	소형 (500~3,000㎡ 미만)	주택 1	주택 2							
신재생설비부문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5	4	2% 이상	1.75% 이상	1.5% 이상	1.25% 이상	1% 이상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	3	2% 이상	1.75% 이상	1.5% 이상	1.25% 이상	1% 이상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1	1	4	3	10% 이상	8.75% 이상	7.5% 이상	6.25% 이상	5% 이상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4.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4	3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잉여 전력은 계통 연계를 통해 활용)						
	신재생설비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7쪽)

3.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신축 또는 별동 증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및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

-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 분야별 정보

구 분		평가 분야별 정보						
건 축	일반 개요	냉·난방면적	지상층연면적	지하층연면적	층고	천장고	지상층수	지하층수
		(㎡)	(㎡)	(㎡)	(m)	(m)	(층)	(층)
	외벽	면적의 합 : (㎡)			평균 열관류율 : (W/㎡K)			
	창 및 문	면적의 합 : (㎡)			평균 열관류율 : (W/㎡K)			
	최상층지붕	면적의 합 : (㎡)			평균 열관류율 : (W/㎡K)			
	최하층바닥	면적의 합 : (㎡)			평균 열관류율 : (W/㎡K)			
기 계	난방	난방설비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순환펌프동력	전력난방 설비 용량비율		
			(kW)	(%) (COP)	(kW)	(%)		
	급탕	급탕설비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순환펌프동력	전력급탕 설비 용량비율		
			(kW)	(%) (COP)	(kW)	(%)		
	냉방	냉방설비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냉수순환펌프동력	냉각수순환펌프동력	전력냉방 설비 용량비율	
			(kW)	(COP)	(kW)	(kW)	(%)	
	공조	공조설비방식	급·배기풍량	용량가중효율	급·배기팬동력	열회수율		
			급기 : (CMH) 배기 : (CMH)	급기 : (%) 배기 : (%)	급기 : (kW) 배기 : (kW)	난방 : (%) 냉방 : (%)		
전 기	조명설비	조명기기종류	LED 조명전력	거실 조명전력	거실 면적	거실 조명밀도		
			(kW)	(kW)	(㎡)	(W/㎡)		
신재생	태양열	종류	집열판면적	집열판기울기	집열판방위	집열효율		
			(㎡)	(°)		(%)		
	태양광	종류	모듈면적	모듈기울기	모듈방위	모듈효율		
			(㎡)	(°)		(%)		
	지열	종류	난방용량·효율	냉방용량·효율	급탕용량·효율	순환펌프동력		
			용량 : (kW) 효율 : (COP)	용량 : (kW) 효율 : (COP)	용량 : (kW) 효율 : (COP)	(kW)		

-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 최종 결과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난 방			
냉 방			
급 탕			
조 명			
환 기			
합 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해당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주택 1 : 난방(개별난방,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 2 : 주택 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

주1) 에너지성능지표에서 각 항목에 적용되는 설비 또는 제품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성능을 용량 또는 설치 면적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또한 각 항목에 대상 설비 또는 제품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배점은 인정된다.

주2) 평균열관류율의 단위는 W/㎡·K를 사용하며, 이를 kcal/㎡·h·℃로 환산할 경우에는 다음의 환산 기준을 적용한다.
1 [W/㎡·K] = 0.86 [kcal/㎡·h·℃]

주3) "평균열관류율"이라 함은 거실부위의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 값이 다를 경우 이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거실의 외벽 (창포함) (Ue)	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Ur)	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Uf)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적)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주4)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창 및 문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5) "외주부"라 함은 거실공간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를 말하며, 개폐 가능한 창면적은 창이 개폐되는 실유효면적을 말한다.

주6)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이라 함은 채광창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오는 태양열취득의 합을 거실 외피면적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외피면적 계산 시 지붕과 바닥은 제외한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의 계산법]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Σ(해당방위의 수직면 일사량 x 해당방위의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x 해당방위의 거실 투광부 면적) / 거실 외피면적의 합

※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SHGC) = 유리의 태양열취득률(SHGC) × 창틀계수
여기서, 창틀계수 = 유리의 투광면적(㎡) / 창틀을 포함한 창면적(㎡)
창틀의 종류 및 면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틀계수를 0.90으로 가정한다.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은 KS L 9107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 유리의 종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은 KS L 2514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에 제시된 물성자료를 사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표4 또는 표5를 사용할 수 있다.

※ 투광부의 가시광선투과율은 복층유리의 경우 40% 이상, 3중유리의 경우 30% 이상, 4중유리 이상의 경우 2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거나 유리의 태양열취득률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 지하층 및 벽이나 문 등으로 거실과 구획되어 있는 비냉난방공간(예: 계단실, 복도, 아트리움)에 면한 외피는 태양열취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1> 방위별 수직면 일사량(W/㎡)

방위	남	남서	서	서북	북	북동	동	동남
평균 수직면 일사량	256	329	340	211	138	243	336	325

<표2>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평차양의 돌출길이(P) / 수평차양에서 투광부하단까지의 길이(H)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동	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57	0.74	0.79	0.79	0.89	0.78	0.79	0.73
0.4	0.48	0.55	0.63	0.64	0.83	0.64	0.63	0.54
0.6	0.45	0.42	0.51	0.54	0.79	0.54	0.50	0.42
0.8	0.43	0.35	0.42	0.48	0.76	0.48	0.42	0.36
1.0	0.41	0.33	0.36	0.43	0.73	0.43	0.37	0.33

<표3>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직차양의 돌출길이(P) / 수직차양에서 투광부폭까지의 길이(W)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동	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73	0.84	0.88	0.76	0.68	0.79	0.89	0.82
0.4	0.61	0.72	0.79	0.61	0.56	0.64	0.80	0.67
0.6	0.54	0.60	0.74	0.46	0.47	0.50	0.75	0.54
0.8	0.50	0.51	0.70	0.38	0.42	0.42	0.71	0.46
1.0	0.45	0.43	0.65	0.28	0.34	0.31	0.66	0.39

<표4>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유리의 외측에 설치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	유리 내측에 설치
0.34	0.5	0.88

<표5> 유리의 종류별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

유리종류		유리의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 투과율					
공기층		6mm		12mm		16mm	
		태양열 취득률	가시광선 투과율	태양열 취득률	가시광선 투과율	태양열 취득률	가시광선 투과율
복층	일반유리	0.717	0.789	0.719	0.789	0.719	0.789
	일반유리+아르곤	0.718	0.789	0.720	0.789	0.720	0.789
	로이유리	0.577	0.783	0.581	0.783	0.583	0.783
	로이유리+아르곤	0.579	0.783	0.583	0.783	0.584	0.783
삼중	일반유리	0.631	0.707	0.633	0.707	0.634	0.707
	일반유리+아르곤	0.633	0.707	0.634	0.707	0.635	0.707
	로이유리	0.526	0.700	0.520	0.700	0.518	0.700
	로이유리+아르곤	0.523	0.700	0.517	0.700	0.515	0.700
사중	일반유리	0.563	0.637	0.565	0.637	0.565	0.637
	일반유리+아르곤	0.564	0.637	0.565	0.637	0.566	0.637
	로이유리	0.484	0.629	0.474	0.629	0.471	0.629
	로이유리+아르곤	0.479	0.629	0.468	0.629	0.466	0.629

주7) 인동간격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인동간격비 =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 / (대향동의 높이)

※ 대향동의 높이는 옥상 난간(경사지붕인 경우에는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며, 난간 또는 지붕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 대지 내에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이 없는 경우의 인동간격비는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 2) / (해당동의 높이) 로 산출한다.

주8) 보일러의 효율은 해당 보일러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계산 방법에 따른다. 단, 배점 판정을 위한 효율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는 진발열량(저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는 총발열량(고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에 의해 판정한다.

주9) 펌프 효율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E는 다음표의 A 및 B효율을 의미하며 A 및 B효율이 모두 만족될 때 해당배점을 받을 수 있다..

나) 펌프가 여러대일 경우에는 개별 펌프에 대해 배점을 구하고 배점에 대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 펌프의 가중평균 배점 = Σ{토출량(㎥/분)*대수(대)*각 펌프의 배점}/Σ{토출량(㎥/분)*대수(대)}

※ 단, 토출량 0.2㎥/분 이하의 펌프는 효율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소형펌프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토출량(㎥/분)		0.08	0.1	0.15	0.2	0.3	0.4	0.5	0.6	0.8	1.0	1.5	2	3.	4	5	6	8	10	15
효율E	A효율(%)	32	37	44	48	53.5	57	59	60.5	63.5	65.5	68.5	70.5	73	74	74.5	75	75.5	76	76.5
	B효율(%)	26	30.5	36	39.5	44	46.5	48.5	49.5	52	53.5	56	58	60	60.5	61	61.5	62	62.5	63

■ 대형펌프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토출량(㎥/분)		2	3	4	5	6	8	10	15	20	30	40	50
효율E	A효율(%)	67	70	71	72	73	74	75	76	77	78	78.5	79
	B효율(%)	57	59	60	61	61.5	62.5	63	64	65	66	66.5	67

※ 사용하는 펌프의 토출량이 표에서 제시된 값과 값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해당 효율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효율(%) = a + [lnX]2 + b + [lnX] + c 여기서, X = 토출량[lpm 또는 (㎥/(분*1000))]
a, b, c = 계수로서 아래 해당펌프의 값을 적용하며 식에서 ln은 로그를 의미한다.

펌프종류 \ 계수		a	b	c	해당펌프종류
소형펌프	A특성	-1.738	32.48	-75.8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B특성	-1.403	26.35	-61.3	
대형펌프	A특성	-0.697	16.43	-17.3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B특성	-0.407	10.52	0.71	

※ A특성 : 펌프효율의 최대치, B특성 : 규정토출량에서의 펌프효율

주10) 열회수형환기장치는 전체 외기도입 풍량의 60% 이상 적용 시 배점획득이 가능하며 개별장치의 난방과 냉방 열교환효율이 모두 만족될 때 해당 배점을 받을 수 있다.

주11) 개별냉난방방식은 실내기가 집합 또는 중앙식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을 포함한 경우로 중앙에서 모니터링기능,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전기구동방식일 경우에 한함)가 가능하고 또한 인버터 방식 또는 능력가변 방식 등을 이용한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단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2호서식]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 - □□□□ - □□□□□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관련지번	
	지 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완화신청의 근 거	해당 항목에 √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최대 완화 비율
	( )등급	( )등급	( )등급	( )	%

신청 완화비율	□ 건축물 용적률	□ 건축물 높이
	( )%	( )%
완화기준 적용 전·후 변경내역	적용 전 : %	적용 전 : m
	적용 후 : %	적용 후 : m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기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해당 예비인증서 사본 또는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지정 고시 사본 1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3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사전확인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사전확인일련번호)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1. 일반사항

건축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주 소				지역구분	중부	남부	제주
	주용도		제출대상 연면적		㎡	외벽면적		㎡
	층수(층고)	층(m)	냉난방면적		㎡	창면적		㎡
시공자	회사명		착공일			공사완료일		
작성책임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소 속		직위			성명		(인)
건축허가일			건축허가시 적용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호			

2. 확인사항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건축부문의무사항	①단열조치 (해당 부위 열관류율)	외 벽	최대: 최소:	W/㎡K	□적합 □부적합
		최상층지붕	최대: 최소:	W/㎡K	
		최하층바닥	최대: 최소:	W/㎡K	
		바닥난방 부위	최대: 최소:	W/㎡K	
		창	최대: 최소:	W/㎡K	
		문	최대: 최소:	W/㎡K	
	②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창 및 문 포함)	외 벽 (창 및 문 포함)		W/㎡K	□적합 □부적합
		건축부문 EPI 1번항목 배점(b)		점	
		점수		점	
	③바닥난방 (슬래브 상부 열저항)	최하층바닥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층간바닥		㎡K/W	
	④방습층	□ 단열재 자체성능 : 보온판 □ PE필름 적용: ㎜× 장 = ㎜ □ 기타 방습재료 :			□적합 □부적합
	⑤방풍구조	□ 회전문 □ 방풍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창의 기밀성능	□ 기밀성 :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⑦공공기관 차양장치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한함)	□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 W/㎡ □ 건축부문 EPI 7번 항목 배점(b) : 점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부문성능지표	① 평균열관류율	외벽		W/㎡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최상층지붕		W/㎡K	
		최하층바닥		W/㎡K	
	②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값	전체 선형 열교 길이의 합		m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값		W/mK	
	③ 기밀성 창 및 문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량		㎥/h㎡	
		적용비율		%	
	④ 기밀성능 강화조치	외기 직접 면한 창 및 문에 적용한 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⑤ 평균태양열취득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 공동주택 선택항목	방풍실 등	주동 출입구 또는 세대현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동간격비(거리/높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상점수	지하주차장 미설치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부문소요량평가	① 일반 개요	냉·난방면적	지상층연면적	지하층연면적	층고	천장고	지상층수	지하층수
		(㎡)	(㎡)	(㎡)	(m)	(m)	(층)	(층)
	② 외벽	면적의 합 : (㎡)			평균 열관류율 : (W/㎡·K)			
	③ 창 및 문	면적의 합 : (㎡)			평균 열관류율 : (W/㎡·K)			
	④ 최상층지붕	면적의 합 : (㎡)			평균 열관류율 : (W/㎡·K)			
	⑤ 최하층바닥	면적의 합 : (㎡)			평균 열관류율 : (W/㎡·K)			

건축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인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기계설비부	① 설계용 외기조건	난방용 온·습도	℃	%	□적합 □부적합
		냉방용 온·습도	℃	%	
	② 펌프	구 분	효율비	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급수용	A :	kW	
			B :		

문의무사항		급탕용		A :	kW	
				B :		
		순환수용		A :	kW	
				B :		
		기 타		A :	kW	
				B :		
	③ 기기배관 및 덕트 단열	배 관 (냉온수)	관경		mm	□적합 □부적합
			보온재 열전도율		W/m·K	
			두께		mm	
		덕 트	보온재 열전도율		W/m·K	
			두께		mm	
	④ 공공기관 전기대체 냉방설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한함)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설비용량				
		대체설비 설치용량				
		기계부문 EPI 10번항목 배점(b)			점	
	⑤ 공공기관 고효율 냉난방설비 채택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한함)	□ 기계부문 1번 항목 배점(b) : 점 □ 기계부문 2번 항목 배점(b)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계설비부문성능지표	① 난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제품 사용)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② 냉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제품 사용)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③ 열원 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제품 사용)
	④ 펌프(냉온수, 냉각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제품 사용)
	⑤ 외기냉방시스템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공조기 부착형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제품 사용)
		전열	적용비율		%	
			열교환 효율	난방	%	
				냉방	%	
		현열	적용비율			
			열교환 효율	난방	%	
				냉방	%	
	⑦ 기기배관 및 덕트 단열	표준시방 대비 20%이상 여부			□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계설	⑧ 열원설비 제어	대상기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방식				
		적용비율			%	

비부문성능지표	⑨ 공조용 송풍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적용비율		%	
	⑩ 대체냉방 설비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설비용량		kW	
		대체설비 설치용량		kW	
		담당비율		%	
	⑪ 급탕용 보일러	전체급탕 설비용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증기기 용량		kW	
		적용비율		%	
	⑫ 순환수 펌프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적용비율		%	
	⑬ 급수펌프 전동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적용비율		%	
	⑭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적용비율		%	
	⑮ TAB 또는 커미셔닝	□ TAB □ 커미셔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⑯ 보상점수(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	난방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용비율		%	
	⑰ 보상점수(개별난방, 개별냉난방)	개별난방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별냉난방 적용비율		%	

기계부문소요량평가	① 난방	난방설비 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순환펌프동력		전력난방 설비 용량비율
			(kW)	(%) (COP)	(kW)		(%)
	② 급탕	급탕설비 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순환펌프동력		전력급탕 설비 용량비율
			(kW)	(%) (COP)	(kW)		(%)
	③ 냉방	냉방설비 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냉수순환 펌프동력	냉각수순환 펌프동력	전력냉방 설비 용량비율
			(kW)	(COP)	(kW)	(kW)	(%)
	④ 공조	공조설비방식	급·배기풍량	용량가중효율	급·배기팬동력		열회수율
			급기 : (CMH)	급기 : (%) 배기 : (%)	급기 : (kW) 배기 : (kW)		난방 : (%) 냉방 : (%)

			배기 (CMH)				

기계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인)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전기설비부문의무사항	① 변압기	총 설치용량		kVA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설치대수		대		
		□ 고효율제품 사용				
	②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	부설용량기준표 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③ 전압강하	설비유형	□ A(저압) □ B(고압)			□적합 □부적합
		전압강하율	조명		%	
			기타		%	
	④ 조명기기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적용			□적합 □부적합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	□ 고효율제품(LED조명) 적용			
	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공동주택, 숙박)	공동주택, 숙박시설	□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 부분조명	부분조명이 가능한 점멸회로 구성(창가측 회로분리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 일괄소등스위치	공동주택		□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1 공공기관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한함)	전기부문 8번 항목 배점(b)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2 공공기관 BEMS(「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한함)	전기부문 8번 항목 배점(b)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설비부문성능지표	① 거실의 조명밀도	조명밀도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② 전압강하	평균전압강하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③ 최대수요전력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크컷 가능 여부				
	④ 조명설비자동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조명전력 대비 제어비율		%		
	⑤ 옥외등	조명기기	□ 고효율제품 LED 조명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방식	□ 격등조명 □ 조도조절기능 □ 자동점멸기			
	⑥ 층별 또는 구역별 일괄소등스위치	층별 또는 구열별 설치	□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 층별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층별 및 임대구획별 1대 이상 설치 여부		□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 건물에너지관리	BEMS 적용 여부		□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계측 에너지원 개수		개	
			에너지원 종류			
	⑨ 역률자동조절장치	역률자동조절장치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⑪ 승강기회생제동장치	전체 승강기 동력			kV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동력			kV	
		적용비율			%	

전기 부문 소요량 평가	①조명설비	조명기기종류	LED 조명전력	거실 조명전력	거실 면적	거실 조명밀도
			(kW)	(kW)	(㎡)	(W/㎡)

전기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인

신재생설비성능지표	① 신재생 난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신재생설비 설차용량		kW	
		전체 난방설비용량		kW	
		신재생 적용비율		%	
	② 신재생 냉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신재생설비 설차용량		kW	
		전체 냉방설비용량		kW	
		신재생 적용비율		%	
	③ 신재생 급탕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신재생설비 설차용량		kW	
		전체 급탕설비용량		kW	
		신재생 적용비율		%	
	④ 신재생 발전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신재생설비 설차용량		kW	
		전체 조명설비전력		kW	
		신재생 적용비율		%	

신재생부문생산	①태양열	종류	집열판면적	집열판기울기	집열판방위	집열효율
			(㎡)	(°)		(%)
	②태양광	종류	모듈면적	모듈기울기	모듈방위	모듈효율
			(㎡)	(°)		(%)
	③지열	종류	난방용량·효율	냉방용량·효율	급탕용량·효율	순환펌프동력
			용량 :	용량 :	용량 :	(kW)

량 평 가			(kW) 효율 : (COP)	(kW) 효율 : (COP)	(kW) 효율 : (COP)	
신재생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에너지소요량평가최종결과값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²년)
	① 난 방			
	② 냉 방			
	③ 급 탕			
	④ 조 명			
	⑤ 환 기			
	합 계			
	□적합 □부적합 (제4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			

* 제15조에 따라 판정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설비 부문별 성능지표란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축, 기계, 전기 부문별 소요량 평가란 및 신재생부문 생산량 평가란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제2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4조제8호에 따라 제15조를 적용받지 아니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 기계, 전기 부문별 소요량 평가란 및 신재생부문 생산량 평가란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설비 부문별 성능지표란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승강기안전관리법령

1.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6호, 2023. 12.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044 - 205 - 42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가. 주기적인 점검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리주체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나.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ㆍ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 부품안전인증표시등 ” 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설치공사업자
6.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결과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9.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절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1.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2.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2. 제18조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승강기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승강기의 대여업자
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5. 승강기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2항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9.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

제22조(안전인증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준
2. 승강기: 제17조제3항 각 호의 기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 지정인증기관 ”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부품안전인증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 승강기의 종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목개정 2019. 4. 30.]

제3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

하 " 표준유지관리비 " 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51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 유지관리

3. 부품안전인증
4. 승강기안전인증
5. 설치검사
6. 자체점검
7. 안전검사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ㆍ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기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ㆍ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8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 12. 26.>
1.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제60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 조직 및 정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5.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하게 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6.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65조(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2. 승강기설치공사업
3. 유지관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2.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협회의 설립)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 협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협회 설립의 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제70조(건의와 자문 등) ①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

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
2. 유지관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

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5.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12.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제77조(청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9장 벌칙

제8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3. 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6.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0.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3.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4.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24. 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25.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7. 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8.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11.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

제8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2. 18.>

부칙 <제15526호,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3항(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6조(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6호(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행금지 표지의 발급ㆍ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ㆍ제3항(운행금지 표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월(月)에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제3호(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4호(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행하는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개정법률"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전에 같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경우로서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이하 "종전정밀안전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17년 1월 28일부터 2년 이내
2.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17년 1월 28일부터 1년 이내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취소, 운행정지명령,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개선명령, 이행명령, 공고 등의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라 한다)
3.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 신고, 신청, 보고, 제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4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범위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등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확인표시등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한 자율안전확인표시

제15조(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승강기 검사 및 검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4에 따라 검사를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ㆍ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제18조(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구성된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19조(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가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교육
2.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교육

제20조(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본다.

제21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제2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④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416호,2019. 4. 30.>(건축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 「건축법」 ”을 “ 「건축물관리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건축법」 제35조 ”를 “ 「건축물관리법」 제12조 ”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7007호,2020. 2. 18.>(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091호,2020. 3. 2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94호,2021. 1. 12.>(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836호,2023.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7. 25.] [대통령령 제33644호, 2023. 7.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 - 205 - 42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2021. 1. 5.>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리프트
6. 주한외국공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설치된 승강기 등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제3조(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승강기사업자)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제5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 위원회 ”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6. 법 제6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7.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 공단 ” 이라 한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 전문위원회 ” 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3. 7. 25.>

⑧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7.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3. 7. 25.>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에는 그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
   가. 판매일 또는 양도일
   나. 품질보증기간
   다. 품질보증내용
   라.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조국가, 제조사 및 보유기간
   바. 사후수리 및 지원체계의 안내문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는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서면 교육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는 해당 제조·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①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제조·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제14조(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수입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제11조제3항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른 고장이나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단,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2. 3.>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 ”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 승강기안전부품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 부품안전인증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설계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의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技術圖書)가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2. 안전성시험: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3. 공장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 부품공장심사기준 ”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 법 제1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2조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 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④ 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품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설계심사: 승강기의 기계도면, 전기회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2. 안전성시험: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3. 공장심사: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 법 제18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22조(승강기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

2. 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해당 승강기에 대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시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승강기안전부품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해 시험할 수 있는 설비로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품안전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품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신설 2022. 2. 3.>

제25조(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해 그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법 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법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개정 2023. 7. 25.>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이행기간 및 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
4. 승강기안전부품명ㆍ승강기명 및 모델명 등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이하 "개선등"이라 한다)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 7. 25.>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개선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개선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행기간 내에 개선등 명령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④ 제조ㆍ수입업자등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공단이 발급한 안전성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신설 2023. 7. 25.>

1.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2.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위해(危害)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3. 법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4.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최초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 7. 2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ㆍ수입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7. 25.>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 7. 25.>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제외한다)
2.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해 사실 공표,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한 후 제25조제5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신설 2023. 7.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7. 25.>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 후유장애 ”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 2. 3.>

⑤ 제4항에 따른 입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2. 2. 3.>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 자체점검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 승강기 기사 자격 ”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 ”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 승강기 실무경력 ”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 승강기 기능사 자격 ”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 ”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

한다. 이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기준
2.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서 정하는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2. 2. 3.>

제30조(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①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3.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계약(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4.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지관리업자가 최근 2년 동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은 승강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중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의 엘리베이터
   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
   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③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사업장마다 별표 7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신설 2022. 2. 3.>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제34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① 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
2.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
3. 유지관리 업무 중 자체점검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자체점검 업무의 3분의 2

②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받은 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2. 도급받은 자와 하도급받은 자 간의 유지관리 업무 구분
3. 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비율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신설 2022. 2. 3.>

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
2.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개정 2022. 2. 3.>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2. 2. 3.>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친 사고로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제3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 사고조사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5. 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6.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③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위원회 ”는 “ 사고조사위원회 ”로 본다.

②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위원회 ”는 “ 사고조사위원회 ”로 본다.

제42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 ”란 별표 9에 따른 기술자를 말한다.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2. 승강기의 설치공사
3.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 교육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공단
   나.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
   다.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46조(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47조(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 ”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51조(인력 및 설비 기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검사 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52조(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인력 지원 등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승강기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협력업자의 등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자의 등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하려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실적 및 재무구조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등재하는 경우 그 등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그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나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55조(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5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를 해지할 수 있다.

제56조(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57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협회 설립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의 5분의 1을 말한다.

제8장 보칙

제59조(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인증 또는 검사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2. 승강기안전인증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제60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의 부착 위치 및 발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2. 2. 3.]

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의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
3.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4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1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3. 법 제18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8.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9.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1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2.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3. 법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및 제6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 범죄경력자료정보 ”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 주민등록번호등 ”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 및 제조、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32조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안전검사의 대행,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0. 법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1.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제6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기준: 2019년 7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 2019년 7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8. 제34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2019년 7월 1일
9.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

제9장 벌칙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부칙 <제29498호,2019.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업자가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하도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으로서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승강기부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품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책임기술인력의 승강기 실무경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책임기술인력의 승강기 실무경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자체점검의 주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가 조정된 승강기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가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으로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9조(협력업자의 등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협력업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8)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 및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16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검사한 승강기 설치검사에 관한 자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0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0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1호부터 제103호까지의 종류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을 각각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⑧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256호,2019. 12. 2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2% 부터4) 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993호,2020. 9. 8.>(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28호,2020. 12. 29.>(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22호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169호,2021. 11. 30.>(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32382호,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체점검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고장을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승강기 고장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의 추가 조사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44호,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 중에 있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종류	구분 기준
가.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를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業)
나. 승강기 수입업	외국으로부터 승강기를 수입하는 업
다. 승강기부품 제조업	제9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부품을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
라. 승강기부품 수입업	외국으로부터 제9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수입하는 업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가. 승강기 제조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인력	책임기술인력	설계책임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이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이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생산책임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설비	제조 설비	1) 기계가공설비 5종 이상 2) 조립설비 3) 용접설비
	시험 검사 설비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아들자 캘리퍼스(vernier calipers) 4) 전류계 5) 전압계 6)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7) 밝기측정기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감속도 측정기 10) 토크렌치(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공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소음진동측정기 12) 표면온도측정기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전압의 변화

		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4) 분동 3톤 이상(임대하거나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15) 주행시험설비(임대하거나 대여하는 주행시험설비를 포함한다)

나. 승강기 수입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 인력	책임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설비	시험 검사 설비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아들자 캘리퍼스 4) 전류계 5) 전압계 6) 절연저항계 7) 조도계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감속도 측정기 10) 토크렌치 11) 소음진동측정기 12) 표면온도측정기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4) 분동 3톤 이상(임대하거나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다. 승강기부품 제조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인력	책임기술인력	설계책임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

			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생산책임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일반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설	제조		1) 기계가공설비(기계가공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비	설비	2) 조립설비(조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용접설비(용접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험 검사 설비	1) 아들자 캘리퍼스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전압계 4) 전류계 5) 절연저항계

라. 승강기부품 수입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 인력	책임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

		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설비	시험 검사 설비	1) 아들자 캘리퍼스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전압계 4) 전류계 5) 절연저항계

비고: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중 2개 이상의 업을 겸업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며, 해당 업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가. 견인 도르래(Traction sheave)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다. 자동구출운전장치
   라. 주행안내 레일(Guide rail)
   마. 출입문 개폐장치
   바. 출입문 제어장치
   사. 출입문 안내수단(Guides)

2.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디딤판 경계틀(Demarcation)
   다. 디딤판 측면 끼임방지장치(Skirt deflector)
   라. 손잡이(Handrail system)
   마. 끼임방지 빗(Comb)

3.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과징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매출액을 말한다)은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한다.

라. 부과권자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산출기준

등급	연간매출액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
1	5억원 이하	10만원
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3	10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20만원
4	1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25만원
5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만원
6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40만원
7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50만원
8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60만원
9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70만원
10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80만원
11	200억원 초과 ~ 250억원 이하	90만원
12	25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105만원

13	3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120만원
14	4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35만원
15	500억원 초과	150만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

구 분	승강기안전부품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1. 문열림출발방지장치(unintended car movement protection means) 2. 과속조절기(Overspeed governors)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4. 럽처밸브(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기름의 누설에 의한 승강기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비상통화장치 6. 상승과속방지장치(Ascending car overspeed protection means) 7. 완충기 8. 유량제한기(One-way restrictor) 9. 이동케이블 10. 제어반 11. 추락방지안전장치(Safety gear) 12. 출입문 잠금장치 13. 출입문 조립체 14. 매다는 장치(Suspension means)
에스컬레이터	1. 과속역행방지장치 2.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3. 구동 체인 4. 디딤판 5. 디딤판 체인 6. 제어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7. 2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과학기술원
   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너.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
2. 전시회 전시 또는 박람회 출품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3.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 5.>

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등급	보험금액	상해 내용
1급	1,500만원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출혈로 머리뼈 절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심한 뇌 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넓적다리뼈 중간부분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 9. 3도 화상 등 연조직(soft tissue)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0. 팔다리와 몸체에 연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有莖)피부이식술(pedicled skin graft: 피부·피하조직을 전면에 걸쳐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만원	1. 위팔뼈 중간부분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쐐기모양 압박 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 골절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 중간부분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엉치엉덩관절 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750만원	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 2. 위팔뼈 복사부분[踝部]골절과 팔꿉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손목손배뼈[手筋舟狀骨]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 7. 무릎뼈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정강이뼈 복사부분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9. 발목뼈·발허리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가시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膝內障): 무릎관절을 구성하는 뼈, 반월판, 인대 등의 손상과 장애를 말한다]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한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1. 넓적다리뼈 복사부분 골절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3. 목말뼈[距骨] 윗목부분 골절 4. 슬개인대(무릎뼈와 정강이뼈를 연결하는 인대를 말한다) 파열 5. 어깨 관절부의 회전 근개 파열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골절(뼈가 어긋나는 골절을 말한다) 7. 팔꿉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5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게뉴 골절 등) 2. 발목관절부의 안쪽·바깥쪽 복사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무릎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4. 발허리뼈 골절 5.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노뼈 먼쪽부위 골절 7. 자뼈 몸쪽부위 골절 8.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또는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상해 9. 발등부 근육힘줄 파열창 10. 손바닥부 근육힘줄 파열창 11. 아킬레스힘줄 파열 12.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1. 소아의 다리 긴뼈의 중간부분 골절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 골절 4. 다발성 발허리뼈[中足骨] 골절 5. 두덩뼈·궁둥뼈(좌골)·긴뼈의 단일골절

		6. 단순 무릎뼈 골절 7. 노뼈 중간부분 골절(먼쪽부위는 제외한다) 8. 자뼈 중간부분 골절(몸쪽부위는 제외한다) 9.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 10.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1.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2.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250만원	1. 소아의 팔 긴뼈 중간부분 골절 2. 발목관절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골절 윗복사부분 굴곡(굽히기)골절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어깨봉우리·쇄골 간 관절 탈구 7. 발목관절 탈구 8.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 위팔뼈 윗복사부분 폄골절 2. 빗장뼈 골절 3. 팔꿉관절 탈구 4. 어깨뼈 골절 5. 팔꿉관절 내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6. 종아리뼈 중간부분 골절 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갈비뼈 골절 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 또는 가로돌기 골절 2. 노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허리뼈 골절 6. 손목뼈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허리뼈 골절

		9. 발목관절부 삠 10. 갈비뼈 골절 11. 척추체 간 관절부 삠과 주위 연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손목관절 탈구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 2. 손허리손가락관절 탈구 3. 손목뼈·손허리뼈 간 관절 탈구 4. 손목관절부 삠 5. 모든 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0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2. 손가락 관절 탈구 및 삠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급	4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급	2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비고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질병명 중 개발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질병명 중 단순성 선 모양 골절로 뼛조각의 위치 변화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질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2.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애
1급	8,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7,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6,4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5,6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4,8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4,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3,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8급	2,4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1,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1,0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빗장뼈·복장뼈(흉골)·갈비뼈·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8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 6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급	5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 4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中足趾關節]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은 발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1. 5.>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

구분		지정기준
검사인력	책임검사인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일반검사인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검사인력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검사설비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아들자 캘리퍼스 4. 전류계 5. 전압계 6. 절연저항계 7. 밝기측정기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감속도 측정기 10. 도어운동에너지 측정기 11. 각도계 2대 이상 12. 인장압축 측정기 2대 이상 13. 토크렌치 2대 이상 14. 접지저항계 2대 이상 15.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16. 분동 5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이상

비고

1. 검사인력은 직접 정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당 연간 1,500대를 초과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위 표의 검사설비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사설비는 검사인력 2명당 1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 5.>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

1.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구분기준
고속 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중저속 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

2.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등록기준

가. 고속 승강기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 인력	책임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8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설비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아들자 캘리퍼스 4) 전압계 5) 전류계 6) 절연저항계 7) 밝기측정기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전기회로시험기 10) 감속도 측정기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 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 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 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나. 중저속 승강기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 인력	책임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6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설비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아들자 캘리퍼스 4) 전압계 5) 전류계 6) 절연저항계 7) 밝기측정기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전기회로시험기 10) 감속도 측정기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 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 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 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비고

1. 유지관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1개의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추가 사업장"이라 한다)의 기술인력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2.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추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고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가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의 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일반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하고,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추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 기준 인력으로 확보한 사람은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에서 제외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7.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8.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9.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0.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1.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2.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기술자
14.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

1. 기술교육

구분		기준
인력	총괄책임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이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었던 사람 마.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강사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총괄책임인력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이었던 사람
시설	사무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장비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각 1대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대 다. 모형 승강기(작동이 가능한 승강기의 축소 모형을 말한다) 1대 라. 소음진동측정기 1대 마.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대 바. 용접기 1대 사. 전기도면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1대

	아. 기계도면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1대 자. 개인용 컴퓨터 10대 차. 조립공구 10대 카.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2. 직무교육

구분		기준
인력	총괄책임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었던 사람 마.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강사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가. 총괄책임인력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었던 사람
시설	사무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장비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각 1대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대 다. 승강기안전부품 각 1대 라. 모형 승강기(작동이 가능한 승강기의 축소 모형을 말한다) 1대 마. 소음진동측정기 1대

	바.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대 사. 개인용 컴퓨터 10대 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비고

1.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기 위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2. 2. 3.>

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

1. 안전인증

구분		인력 및 설비기준
인증 인력	특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인증 또는 검사에 관한 경력(이하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라 한다)이 1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이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라 한다)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9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 실무경력이 22년 이상인 사람
	고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가.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 실무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중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2명 이상.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중급인증인력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가.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초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시험·검사 설비		가. 승강기 주행 시험 등을 위한 설비 나. 하중시험을 위한 분동 5톤 이상 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검사설비 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검사설비

2.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구분		인력 및 설비기준
검사 인력	특급 검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9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22년 이상인 사람
고급 검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중급 검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6명 이상.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중급검사인력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초급 검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검사설비		가. 금속 줄자 나.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다. 아들자 캘리퍼스 라. 전류계 마. 전압계 바. 절연저항계 사. 밝기측정기 아. 순간식 회전속도계 자. 감속도 측정기 차. 도어운동에너지 측정기 카. 각도계 2대 이상 타. 인장압축 측정기 2대 이상 파. 토크렌치 2대 이상 하. 접지저항계 2대 이상 거. 분동 3톤 이상 너.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비고

1. 제1호에 따른 인증인력(이하"인증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인력(이하"검사인력"이라 한다)은 직접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인증인력 또는 검사인력 기준보다 상위의 인증인력 또는 검사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각 지사 또는 출장소별로 갖춰야 한다. 다만, 출장소의 검사인력은 고급검사인력 1명, 중급검사인력 2명, 초급검사인력 1명으로 할 수 있다.
4. 검사인력은 1인당 연간 설치검사 1,100대, 정기검사 1,500대, 수시검사 1,100대, 정밀안전검사 1,000대를 각각 초과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여러 종류의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상한 대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대수를 산정한다.

5. 초급인증인력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6. 초급검사인력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설치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7. 검사설비란의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검사설비는 검사인력 2명당 1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8. 그 밖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갖춰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3.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4. 유지관리업의 등록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비고: 제2호가목1)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2.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나.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2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2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4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5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아.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3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자.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6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7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4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법 제82조제2항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자체심사를 하지 않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제8호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9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하.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0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거.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1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너.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4항 제1호			
1)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2)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3)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원	
더.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러.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2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머.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4호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가)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서.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5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5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저. 법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법 제82조제4항 제2호	10만원	20만원	50만원
터.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6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7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허.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8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고.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9호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미만인 경우				
다)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노.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20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도.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4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로.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5호			
1)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나)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모.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제4항 제3호	10만원	20만원	50만원
보.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6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소.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7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오.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제8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조.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6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초.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7호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6.]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2023. 7.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044 - 205 - 42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 엘리베이터 " 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 휠체어리프트 " 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 출입문의 문틀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 에스컬레이터 " 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 제조업 또는 수입업 ”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장(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의 수 및 소재지
4. 대표자
5. 영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③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 제조ㆍ수입업자 ”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2.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제9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기계도면
2. 전기도면(전기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전기ㆍ전자부품의 목록 및 제품안내서
4. 설치 매뉴얼
5. 유지관리 매뉴얼
6. 결함이나 고장 진단 안내서

제10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① 영 제15조제5항 및 제6항(영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21.]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법 제11조제1항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 ”이란 영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 승강기안전부품 ”이라 한다)을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안전부품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 부품안전인증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 공단 ”이라 한다)이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 지정인증기관 ”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설명서
3.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技術圖書)
5.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5 제1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3.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제2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부품안전인증을 하기 위해 안전성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부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특성상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이하 “부품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제13조(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2. 21.>

1. 승강기안전부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회로(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의 변경 또는 연소방지를 위한 재질 변경의 경우
2. 승강기안전부품의 색상 변경의 경우
3.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의 변경 없이 제어회로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안전부품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ㆍ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2.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 및 지정인증기관에 알려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영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기준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①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 법 제12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도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2조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20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개 이하의 승강기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2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3. 수입하려는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이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과 동일한 경우
4. 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정비를 위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대상
2. 심사기간
3. 심사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⑦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부품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해야 한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심사주기
3. 심사방법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2. 자체심사의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 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자체심사 수량
5. 자체심사 결과

[제목개정 2022. 2. 21.]

제2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제조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출고 전
2.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통관 전

③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

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표시등
2. 부품안전인증번호
3. 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4.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제25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3.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내용(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인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ㆍ처분일 및 사유

제26조(승강기의 모델)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모델은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
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
4. 동일한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6.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별표 5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승강기를 공단의 시험설비 등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시료

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2. 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제1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하기 위해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부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

1. 해당 승강기의 특성상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제2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승강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치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결과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9조(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30조(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1.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
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2. 21.>
1. 승강기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회로(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의 변경 또는 연소방지를 위한 재질 변경의 경우
2. 승강기의 색상 변경의 경우
3.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동력회로, 브레이크회로 및 안전회로를 제외한 회로를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ㆍ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1조(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2.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에 알려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기준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제3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제34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5조(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 법 제18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2. 국제표준화기구의 승강기에 대한 인증제도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8조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6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8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3.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수입하려는 모델의 승강기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승강기와 동일한 경우

제38조(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대상
2. 심사기간
3. 심사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승강기를 제조하는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⑦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제39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체심사의 기준에 따른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심사주기
3. 심사방법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승강기명 및 모델명
2. 자체심사의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 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자체심사 수량

5. 자체심사 결과

제4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 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제조하는 승강기: 출고 전
2.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 통관 전

③ 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를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2. 승강기안전인증번호
3. 승강기명 및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4.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제4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
2. 승강기명 및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3.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내용(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인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ㆍ처분일 및 사유

제42조(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①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제4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지정인증기관의 명칭
3. 지정인증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범위

⑥ 지정인증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의2(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안전성확인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6.]

제45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명 또는 승강기명
2.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법 제2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위반사항”이라 한다)의 내용 및 원인
4.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의 예상되는 위해(危害)의 내용 및 주의사항
5.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등 위반사항의 시정 방법 및 시정 기간
6. 소비자(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통지 방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치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인증서(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말한다) 사본

3. 설치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전기도면 및 기계도면을 포함한다)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21.>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4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51조(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②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목 및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① 관리주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 안전검사 ”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이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 지정검사기관 ”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57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서류
3. 법 제32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그 밖에 안전검사 신청 관련 안내문의 발송 및 안전검사 신청의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 정기검사 ”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2.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③ 법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 수시검사 ”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 정밀안전검사 ”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⑥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55조(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를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가. 별표 1 제2호가목4)에 따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5)에 따른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
2. 그 밖에 검사의 기준이 같은 수준으로 승강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수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및 검사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지정검사기관의 명칭
3. 지정검사기관의 주소(사업장을 포함한다)
4. 업무수행범위

⑥ 지정검사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0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 및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장의 수 및 소재지
4. 대표자
5. 영 별표 8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6. 기술인력

③ 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 유지관리업자 ”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2.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5조(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1. 공단
2.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물가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은 표준유지관리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 공표 내용 및 공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시ㆍ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
3.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

제67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8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법 제47조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란 별표 1 제2호다목2)에 따른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말한다.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관리주체(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2. 21.>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명칭 및 주소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고유 번호
3.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일시
4. 사고 또는 고장 내용
5. 피해 정도(사람이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내에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와 구출한 자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승강기에 대해 그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2. 2. 21.>

1.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접수일의 다음 날
2.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정기검사: 제5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의 다음 날
   나. 수시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 정밀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

제71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붙여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앙
2. 에스컬레이터: 탑승하는 승강장 입구 바닥의 중앙
3.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소
   가.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의 중앙
   나. 별표 1 제1호다목2)에 따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제어반 개폐문의 중앙 및 운반구 바닥의 중앙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72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6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의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주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③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2. 2. 21.>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원격교육

④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육평가를 위한 시험과목, 시험 실시 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 출제, 시험방법ㆍ관리, 시험지 보관, 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2. 교육생은 총교육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수료할 수 있다.

⑤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초급ㆍ중급 또는 고급의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4.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6조(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 자문업
2. 승강기의 설치공사 감리업
3. 승강기 유지관리 및 검사를 위한 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

제78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3.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배점
3. 심사항목별 심사방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보칙

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5. 법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6. 법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7. 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 현황
9.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10.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11.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관한 현황
12.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0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승강기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대행 실태
3.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제조·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수수료)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

외한다)에 설치된 승강기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2. 21.>
1. 제8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범위: 2022년 7월 1일
2.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자격요건: 2019년 7월 1일
3. 제52조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2019년 7월 1일
4. 제66조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2022년 7월 1일

부칙 <제105호,2019.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2.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제4조(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비율을 초과하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로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월간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1.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제6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의 60퍼센트
2.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6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의 50퍼센트

제5조(기술자의 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기술자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6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협회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침대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소형 엘리베이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6, 별표 8,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호,2020. 9. 8.>(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21. 9.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22.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인증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로 본다.

부칙 <제373호,2023. 1. 5.>(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420호,2023.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7. 26.>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나. 에스컬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2) 무빙워크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다. 휠체어 리프트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2) 전망용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3) 병원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6) 피난용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

	엘리베이터	·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7) 주택용 엘리베이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편도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8)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9)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Dumbwaiter)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에스컬레이터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3)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4) 승객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다. 휠체어리프트	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2. 21.>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제8조 관련)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구분	분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기계류 공 간 (기계실)	제어반	가. 릴레이 · 스위치 · 전자접촉기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다. 비상통화장치 라. 인쇄회로기판 마. 인버터(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력변환장치 바. 자동구출운전장치 사. 제어반(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아. 회생제동장치
	구동기	가. 구동기(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나. 기어(감속기) 다. 럽처밸브(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기름의 누설에 의한 승강기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 유량제한기 라. 방진수단 마. 유압 유닛(油壓 unit: 높은 압력의 기름을 빼낼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말한다) 및 그 부속품 바. 전동기 사. 전자기계 브레이크 및 그 부속품
	도르래	가. 견인 도르래 나. 풀리(Pulley)
	안전장치	가. 문열림출발방지수단 및 그 부속품 나. 과속조절기 다. 상승과속방지수단 및 그 부속품 라. 추락방지안전장치 연계수단
운반구 (카)	내부	가. 등록 · 열림 · 닫힘버튼 나. 비상통화장치 다. 위치표시기 라. 소방 · 피난운전장치
	출입문	가. 문닫힘 안전장치 나. 출입문(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다. 출입문 안내수단 라. 출입문 개폐장치 및 그 부속품 마. 출입문 잠금장치
		가. 과부하감지장치

	상·하부	나. 릴레이·스위치·전자접촉기 다. 방진수단 라. 앞 보호판(Apron) 마. 운반구(카) 안내수단 바. 이동케이블 사. 추락방지안전장치 및 그 부속품
승강로	승강로	가. 주행안내 레일 및 그 부속품 나. 과속조절기 로프 다. 위치검출장치 라. 매다는 장치(로프, 벨트 등) 및 그 부속품
	하부공간(피트)	가. 과속조절기 로프 인장장치 나. 배수장치 다. 완충기
승강장	승강장	가. 비상통화장치 나. 위치표시기 다. 소방·피난 운전장치 라. 호출버튼
	출입문	가. 문닫힘 안전장치 나. 출입문(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다. 출입문 안내수단(이탈방지장치를 포함한다) 라. 출입문 개폐장치 및 그 부속품 마. 출입문 잠금장치
전기안전장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안전장치

2. 에스컬레이터

구분	분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기계류 공 간 (기계실)	제어반	가. 릴레이·스위치·전자접촉기 나. 인쇄회로기판 다. 인버터 등 전력변환장치 라. 자동급유장치 마. 제어반(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구동기	가. 구동·종동 체인기어 및 그 부속품 나. 구동 체인 다. 기어(감속기) 라. 과속역행방지장치 및 그 부속품 마. 전동기 바. 전자기계 브레이크 및 그 부속품
발판	디딤판	가. 디딤판 경계틀(Demarcation)

		나. 디딤판 및 그 부속품 다. 디딤판 체인
	난간	가. 난간 나. 난간데크 다. 측면 끼임방지판(Skirt guard) 라. 측면 끼임방지장치(Skirt deflector) 마. 외부·내부패널 바. 손잡이 사. 손잡이 구동장치
승강로	승강로	가. 릴레이·스위치·전자접촉기 나. 배수수단 및 그 부속품 다. 정화시설 및 그 부속품
승강장	승강장	가. 끼임방지 빗(Comb) 나. 자동 재기동 수단 및 그 부속품 다. 손잡이 인입구안전장치 및 그 부속품 라. 빗 받침판(Comb plate)
전기안전장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안전장치

비고: 제1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은 해당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 5.>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倂科)한다.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2호	등록취소	-	-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3호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등록취소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3개월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3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		등록취소	-	-

한 경우				
3) 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라.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4호	등록취소	-	-
마.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5호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바. 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6호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경고	사업 전부정지 1개월	사업 전부정지 2개월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2. 21.>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

1.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

승강기의 구분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모델 구분 기준
가.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1) 문열림출발방지장치	ㅇ 종류 ㅇ 적용하중
	2) 과속조절기	ㅇ 종류 ㅇ 정격속도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ㅇ 종류 ㅇ 브레이크 종류 ㅇ 정격속도 ㅇ 정격하중
	4) 럽처밸브	ㅇ 종류 ㅇ 밸브크기
	5) 비상통화장치	ㅇ 종류 ㅇ 정격전압 ㅇ 연결 국수(局數)
	6) 상승과속방지장치	ㅇ 종류 ㅇ 정격속도 ㅇ 적용하중
	7) 완충기	ㅇ 종류 ㅇ 정격속도 ㅇ 적용하중
	8) 유량제한기	ㅇ 종류 ㅇ 밸브크기
	9) 이동케이블	ㅇ 종류 ㅇ 정격전압 ㅇ 케이블 구조 ㅇ 선심수/단면적
	10) 제어반	ㅇ 종류 ㅇ 정격속도 ㅇ 정격전압(안전회로 전압으로 한정한다) ㅇ 정격전류 ㅇ 인버터 용량 ㅇ 인쇄회로기판 구성(주제어기판 및 안전회로와 관련된 기판으로 한정한다)
	11) 추락방지안전장치	ㅇ 종류 ㅇ 정격속도 ㅇ 적용하중
	12) 출입문 잠금장치	ㅇ 종류 ㅇ 정격전압 ㅇ 정격전류
	13) 출입문 조립체	ㅇ 종류 ㅇ 개폐방식 ㅇ 문짝 크기 ㅇ 재질 ㅇ 방화유무
	14) 매다는 장치	ㅇ 종류 ㅇ 소선강도 ㅇ 공칭 지름 ㅇ 소선 수 ㅇ 재질
나. 에스컬레이터	1) 과속역행방지장치	ㅇ 종류 ㅇ 적용하중

	2)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ㅇ 종류 ㅇ 브레이크 종류 ㅇ 정격하중
	3) 구동 체인	ㅇ 종류 ㅇ 핀 고정방법
	4) 디딤판	ㅇ 종류 ㅇ 공칭폭
	5) 디딤판 체인	ㅇ 종류 ㅇ 핀 고정방법 ㅇ 롤러 재질
	6) 제어반	ㅇ 종류 ㅇ 정격속도 ㅇ 정격전압(안전회로 전압으로 한정한다) ㅇ 정격전류 ㅇ 인버터 용량 ㅇ 인쇄회로기판 구성(주제어기판 및 안전회로와 관련된 기판으로 한정한다)

2.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

승강기의 구분	승강기의 종류	모델 구분 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ㅇ 종류 ㅇ 정격하중 ㅇ 견인하중 ㅇ 정격속도 ㅇ 운행거리 ㅇ 구동기 위치 ㅇ 운반구(카) 무게 ㅇ 출입문 개폐구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ㅇ 종류 ㅇ 정격하중 ㅇ 견인하중 ㅇ 정격속도 ㅇ 운행거리 ㅇ 구동기 위치 ㅇ 운반구(카) 무게 ㅇ 출입문 개폐구조
나. 에스컬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ㅇ 종류 ㅇ 정격하중 ㅇ 정격속도 ㅇ 구동기 위치
	2) 무빙워크	ㅇ 종류 ㅇ 정격하중 ㅇ 정격속도 ㅇ 구동기 위치
다. 휠체어리프트	1) 전기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ㅇ 종류 ㅇ 정격속도 ㅇ 정격하중 ㅇ 구동방식
	2) 유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ㅇ 종류 ㅇ 정격속도 ㅇ 정격하중 ㅇ 구동방식
	3)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ㅇ 종류 ㅇ 구동방식 ㅇ 정격속도 ㅇ 정격하중

비고

1. 모델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기본모델"이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을 말한다.

나. "파생모델"이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기본모델에서 파생되는 모델을 말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

(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가.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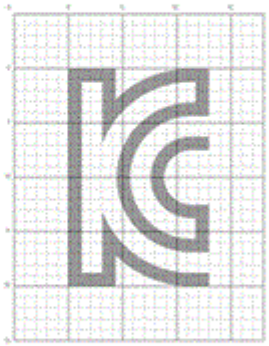

부품안전인증번호: 승강기안전인증번호:

※ 도안 크기 및 색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방법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도안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크기에 따라 각각 조정하되 가로, 세로 비율은 가목에 따른다.

2)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또는 해당 승강기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또는 승강기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로마자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승강기안전부품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최소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가.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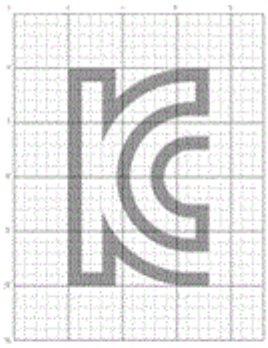

안전인증 면제확인

나. 표시방법

1)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해야 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확인증을 부착하여 보관해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2. 21.>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부품안전인증 취소	-	-
나.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요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6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매우 중요한 결함사항에 해당하거나 부품안전인증서에 기록된 승강기부품을 임의로 누락·변경한 경우		부품안전인증 취소	-	-
다.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부품안전인증 취소	-	-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결과 법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6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7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8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8호	부품안전인증표시 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
차. 법 제25조제1항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9호	부품안전인증 취소	-	-
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0호	부품안전인증 취소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2.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나.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요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6개월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매우 중요한 결함사항에 해당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서에 기록된 승강기부품을 임의로 누락·변경한 경우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다.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

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제1항제8호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인증 취소	
차.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9호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
카.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0호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2. 21.>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2호	지정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7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2. 21.>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2.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나.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의 이수

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이수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2. 2. 21.>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및 기간(제52조제1항 관련)

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이하 "비상구출운전"이라 한다)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일
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4.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등 5. 비상구출운전(해당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일
별표 9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4. 비상구출운전(별표 9 제3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해당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1일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2. 21.>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2호	지정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3. 1. 5.>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倂科)한다.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	-
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등록취소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3개월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3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3) 유지관리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라. 법 제40조 각 호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	-
마.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5호			
1) 하도급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전부정지 2개월	사업 전부정지 4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2) 하도급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하도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바.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6호			
1)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 전부정지 1개월	사업 전부정지 2개월
2)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전부정지 2개월	사업 전부정지 4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사.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7호	사업 전부정지 2개월	등록취소	-
아.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8호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경고	사업	사업

			전부정지 1개월	전부정지 2개월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2. 2. 21.>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

1. 기술교육

교육 내용	교육시간
가. 승강기 설계이론 나. 승강기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실무 다. 승강기 설치공법 라. 승강기 유지관리 실무 마.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바. 승강기 기술 관련 국제표준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28시간

2. 직무교육

교육 내용	교육시간
가. 부품안전인증 실무 나. 승강기안전인증 실무 다. 설치검사 실무 라. 안전검사 실무 마.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기준 바. 승강기 안전기준 관련 국제표준 사. 승강기 관계법령 아.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대책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28시간

비고

기술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승강기 기술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의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승강기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2. 2. 21.>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지정취소	-	-
다.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5호 및 영 제46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2. 2. 21.>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다.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2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등록 구분	승강기 [ ] 승강기 제조업 [ ] 승강기 수입업	
		승강기부품 [ ] 승강기부품 제조업 [ ] 승강기부품 수입업	
	자본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본인정보 공동이용 항목	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보유기관: 국세청)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포함)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 사항	상호(법인명)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공장의 수 및 그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변경 전	[ ] 승강기 제조업 [ ] 승강기 수입업 [ ] 승강기부품 제조업 [ ] 승강기부품 수입업
		변경 후	[ ] 승강기 제조업 [ ] 승강기 수입업 [ ] 승강기부품 제조업 [ ] 승강기부품 수입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2.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1. 상호(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주된 사무소)
   (공 장)
4. 대표자의 성명:
5. 대표자의 생년월일:
6. 등록 연월일:
7.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 ] 폐업 [ ] 휴업 [ ] 재개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폐업일, 휴업일 또는 재개일
	등록 구분	승강기 [ ] 승강기 제조업 [ ] 승강기 수입업	
		승강기부품 [ ] 승강기부품 제조업 [ ] 승강기부품 수입업	

신고현황	구분 [ ] 폐업 [ ] 휴업	폐업·휴업 사유
	휴업기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신고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2. 2. 2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과징금 부과내역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6항,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포함)	→	결재	→	통보
신청인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2. 2. 21.>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과징금 부과내역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신청내역	합 계	1차(년 월 일까지)	2차(년 월 일까지)	3차(년 월 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6항,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포함)	→	결재	→	통보
신청인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품안전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부품안전 인증대상	승강기안전부품명	수량
	기본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구분*(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설명서 3.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5.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6. 별표 5 제1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설계심사	→	공장심사	→	안전성시험 및 결재	→	부품안전인증서 작성 및 발급
신청인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210㎜×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부품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부품안전인증번호:
(Certificate No.)

제조·수입업자명:
(Manufacturer/importer)

주소:
(Address)

승강기안전부품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정격/모델구분:
(Rating)

시험기준:
(Test Code)

대행기관:
(Notified Body)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직인
(이곳에 기관의 영문 명칭을 기재합니다)

이 부품안전인증서는	제 조 국 가 명: 제조·수입업자명: 제조공장의 주소: 여러 개의 공장명: 의 승강기안전부품만 해당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Safety Certificate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2(5) or 14(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levator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생략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 이 부품안전인증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인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서류	1.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 2. 기본모델·파생모델의 내용(Descriptions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3. 부품안전인증의 변경 현황(Revisions Status)

210mm× 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2. 21.>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부품안전 인증내용	승강기안전부품명	부품안전인증번호
	기본모델명 *(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심사 및 시험 대상)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변경내용	[ ]파생모델 등록 [ ]부품 변경 [ ]상호 변경 [ ]주소 변경 [ ]그 밖의 변경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귀하
[ ] 행정안전부장관

붙임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부품안전인증서 작성	→	부품안전인증서 발급
신청인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210㎜× 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9. 8.>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대상 승강기안전 부품	승강기안전부품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모델 구분*(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	금액
	사용장소	
면제 신청사유	[ ] 연구개발, 전시 또는 시험용 [ ] 외국의 인증을 받은 경우 [ ] 일회성으로 수입한 경우 기타*(그 밖의 면제사유 기재)*	[ ]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 자체적으로 안전성시험을 한 경우 [ ] 부품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합니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유 의 사 항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면제확인서 작성	→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안전부품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모델 구분
	수량	
	사용 장소	
	면제 구분 [ ] 부품안전인증 [ ] 설계심사 [ ] 안전성시험 [ ] 공장심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 설계심사, 안전성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면제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2. 21.>

부품정기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부품안전 인증내용	승강기안전부품명	부품안전인증번호
	기본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심사 및 시험대상)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귀하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심사결과 작성	→	심사결과 통보
신청인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210㎜×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 [ ] 수입업자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수량
	기본모델명	정격전압/전류
	파생모델명 *(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 구분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 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 4. 동일한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6.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7. 별표 5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설계심사	→	공장심사	→	안전성시험 및 결재	→	승강기안전인증서 작성 및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 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 [ ] 수입업자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구조/용도)	승강기명
	정격하중	정격전압/전류
	운행층수	정격속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 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 4. 동일한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6. 별표 5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설계심사	→	승강기안전인증서 작성 및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210㎜× 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접수번호:

승강기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승강기안전인증번호:
(Certificate No.)

제조·수입업자명:
(Manufacturer/importer)

주소:
(Address)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정격/모델구분:
(Rating)

시험기준:
(Test Code)

대행기관:
(Notified Body)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인
(이곳에 기관의 영문 명칭을 기재합니다)

이 승강기안전인증서는	제 조 국 가 명: 제조·수입업자명: 제조공장의 주소: 여러 개의 공장명: 의 승강기만 해당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Safety Certificate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7(5), 28(4) or 30(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levator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생략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 이 승강기안전인증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서류	1.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 2. 기본모델·파생모델의 내용(Descriptions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3.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현황(Revisions Status)

210㎜× 297㎜[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2. 21.>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또는 2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신청 구분	[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 ]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인증 내용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승강기안전인증번호
	기본모델명 *(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심사 및 시험 대상)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변경내용	[ ]파생모델등록, [ ]부품변경, [ ]상호변경, [ ]주소변경, [ ]그 밖의 변경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승강기안전인증서 작성	→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210㎜× 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금액
	사용장소	
면제 신청사유	[ ] 연구개발, 전시 또는 시험용 [ ] 외국의 인증을 받은 경우 [ ] 일회성으로 수입한 경우 기타*(그 밖의 면제사유 기재)*	[ ]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 자체적으로 안전성시험을 한 경우 [ ]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합니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면제확인서 작성	→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210㎜× 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 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사용장소	
	면제 구분 [ ] 승강기안전인증 [ ] 설계심사 [ ] 안전성시험 [ ] 공장심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 안전성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면제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2. 21.>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모델 승강기 안전 인증내용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승강기안전인증번호
	기본모델명 *(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심사 및 시험 대상)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심사결과 작성	→	심사결과 통보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심사)	→	현장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지정인증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업무수행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23. 7. 26.>

[ ] 개선명령
[ ] 파기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 ] 수거명령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내용	개선(파기·수거)명령번호	당초 개선(파기·수거)명령 이행기간	변경 개선(파기·수거)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사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선(파기·수거)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안전성확인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승강기 설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설치신고 세부현황	건물명 (상호)						
	주소						
	승강기 설치 현황	승강기의 종류 (구조/용도)	층수	수량	제조·수입업체		설치일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승강기 설치현황 작성란은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회신
신고인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설치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설치검사 대상 승강기	건물명(상호)				건물층수			
	승강기 소재지				설치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명	모델명	승강기안전 인증번호	운행 층수	수 량	설치검사 희망일
	구조	용도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인증서(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말합니다) 사본 3. 설치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전기도면 및 기계도면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합니다)가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설치검사대상 승강기의 작성란은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	설치검사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 9. 7.>

승강기 안전관리자 [ ] 선임 [ ] 변경 통보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통보인	건물명(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승강기([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 ] 피난용 엘리베이터, [ ] 기타) 소재지	

승강기 안전 관리자 현황	기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임 또는 교체일
	선임 · 변경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선임 또는 변경일
		승강기관리교육 수료번호	승강기관리교육 수료일*(받은 경우만 기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별표 8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은 빈칸으로 둔 채 "선임 · 변경"란만 작성합니다. 이미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란과 "선임 · 변경"란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3. 통보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전산등록	→	회 신
통보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 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2. 21.>

안전검사 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수시검사: 15일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30일

신청인	건물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승강기 소재지	
	안전검사의 종류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 ] 정밀안전검사	

	승강기의 종류		운행 층수	수량	제조·수입 업체명	유지관리업체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검사 희망일
	구조	용도				업체명	등록번호		
안전 검사 대상 승강기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 ] 행정안전부장관

붙임서류 (수시검사 신청 시)	1.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해당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도서 3.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사항 관련 서류(변경허가서, 건축도면, 건축사항 관련 기술서류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처리기간 란의 처리기간까지 안전검사 업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이 지나 신청한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검사 업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안전검사 대상 승강기의 작성란은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수시검사)	→	승인 (수시검사)	→	안전검사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		공단		공단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안전검사 연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건물명(상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승강기 소재지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번호	정기검사주기 도래일	안전검사 연기사유 번호
	구조	용도			
연기대상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안전검사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안전검사 연기사유 번호란에는 안전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합니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 2. 21.>

(앞쪽)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발행번호 : 제 호
검사구분 : [ ]설치, [ ]정기, [ ]수시, [ ]정밀안전검사
건물명칭 :
승강기종류 : (설치호기:)
소 재 지 :
검 사 자 :
대행기관 : 대행기관의 장 직인
다음 검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이내에 받아야 함
년 월 일

승강기번호
-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생략

105mm × 74mm (백상지 120g/㎡)

(뒤쪽)

[안 내]

이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발급받은 즉시 붙이시기 바랍니다.

105mm × 74mm (백상지 12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승강기 운행금지

이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아래의 사유로 불합격했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호(건물명):	승강기번호:
불합격 내용: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생략

1. 바탕: 노란색
2. 글자: 검은색
3. 사선: 붉은색
4. 크기: 320㎜ × 220㎜
5. 종이질: 백상지 150g/㎡

(뒤쪽)

[안 내]

이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발급받은 즉시 붙이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및 검사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심사)	→	현장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 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업무수행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직인

210㎜×297㎜[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2. 2. 2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등록구분	[ ] 고속 승강기 [ ] 중저속 승강기	
	자본금		기술인력의 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본인정보 공동이용 항목	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보유기관: 국세청)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포함)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본사)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 사항	상호(법인명)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의 수 및 그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종류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인력	변경 전	
		변경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1. 유지관리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1. 상호(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주된 사무소)
   (사업장)
4. 대표자의 성명:
5. 대표자의 생년월일:
6. 등록 연월일:
7.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본사)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 폐업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 ] 휴업 신고서
[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신고현황은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유지관리업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폐업일, 휴업일 또는 재개일
	등록구분 [ ] 고속 승강기, [ ] 중저속 승강기		

신고현황	구분 [ ] 폐업 [ ] 휴업	폐업·휴업 사유
	휴업기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신고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 중대한 사고 / [ ] 중대한 고장 보고서

일반 현황	보고자	보고일
	건물명(상호)	건물용도
	대표자 성명	승강기 안전관리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장소(설치호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일시
승강기 현황	승강기 번호(ID)	승강기 종류(구조/용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유지관리업체
	모델명(개별인증의 경우 승강기명)	안전인증번호
검사 현황	설치검사 합격일	최종 검사의 종류 및 검사 대행기관
	최종 검사일	최종 검사 결과
자체점검 현황	최종 점검일	최종 점검 결과
	자체점검자	자격 유무
사고·고장 내용 및 조치사항	중대한 사고 여부 [ ] 중대한 사고 [ ] 중대한 사고 아님 [ ] 중대사고 여부 판단 곤란(전문조사 필요)	현장보존 조치 필요 여부 [ ] 현장보존 조치 필요 [ ] 현장보존 조치 불필요
	①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피해정도)	
	② 사고 또는 고장 내용 및 응급조치	
	③ 사고 또는 고장의 원인 및 예방 대책	
비 고	*사고 또는 고장 내용의 설명, 그림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0. 9. 8.>

(앞쪽)

승강기 운행정지

이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운행을 정지합니다.

상호(건물명):	승강기번호:
운행정지 기간:	
운행정지 사유: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1. 바탕: 노란색
2. 글자: 검은색
3. 사선: 붉은색
4. 크기: 320㎜ × 220㎜
5. 종이질: 백상지(150g/㎡)

(뒤쪽)

[안 내]

이 "승강기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발급받은 즉시 붙이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기술자 경력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진 (3.5cm×4.5cm)
		영문		
	소속 업체명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① 학력	~			
	~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발급기관
②자격증				

	근무기간	근무처	기술인력 구분	담당 업무
③경력	~			
	~			
	~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수료번호
④교육훈련 사항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승강기사업자 협회장 귀하
[ ] 행정안전부장관

붙임서류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 학력란에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와 관련된 학력을 적습니다.
2. ② 자격증란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적습니다.
3. ③ 경력란에는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유지관리·설계 자문 또는 감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적습니다.
4. ④ 교육훈련사항란에는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이수한 교육 결과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전산 등록	→	회 신
신고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자격증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발급기관
	추가 근무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기술인력 구분	담당업무
		~			
		~			
	교육 사항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비고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승강기사업자 협회장 귀하
[ ] 행정안전부장관

붙임서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승강기사업자 협회장 귀하
[ ] 행정안전부장관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번호: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사진 (3.5㎝×4.5㎝)
		영문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체점검 가능대상	[ ] 고속 승강기 [ ] 중저속 승강기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학력사항	~			
	~			
	~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국가기술 자격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기술인력 구분	비고
경력사항	~			
	~			
	~			
	~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비고
교육훈련 사항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승강기사업자 협회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심사)	→	현장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 297㎜[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업무수행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주소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담당부서	부서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성명	전자우편주소

기업구분		업종구분	

기업 현황	자본금 (억원)	종업원 수		기술인력		매출 현황(최근 3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제조	유지관리	연도	매출액(억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3.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선정	→	선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제　　호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기업구분:

업종구분: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기업은 우수한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승강기 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 확보에 기여했으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직인

210㎜× 297㎜[백상지 150g/㎡]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3. 3. 28.] [고시 제2023 - 17호, 2023. 3. 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044 - 205 - 42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ㆍ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설치검사"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경우에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안전검사"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말한다.
4.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승강기의 설치검사

제3조(설치검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해당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설치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제4조(설치검사의 일정 통보 등) ① 공단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자에 소속 기술자 또는 대리인(이하 "기술자등"이라 한다)을 검사현장에 입회(入會)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해야 하며,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

제5조(설치검사의 실시) ① 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1 제2호에 따른 고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을 2인 1조로 하여 설치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② 검사자는 별표 1에 따른 설치검사기준(이하 "설치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이 무부하(無負荷) 또는 감소된 속도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무부하 또는 감소된 속도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③ 검사자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설치검사의 결과 등) ①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치검사의 판정 결과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설치검사기준에 맞는 경우: 합격
2. 설치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합격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자는 승강기가 설치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완이 확인될 때까지 설치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설치검사 기록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자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제7조(설치검사의 결과 통보) ①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인 경우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날
2. 신청인에게 통보: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③ 공단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보완 기간을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이내에 보완하도록 알린 내용이 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완된 경우 : 합격 처리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2. 보완되지 않은 경우 : 불합격 처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할 때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위임 규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를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는 관리주체 등에게 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은 서류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승강기의 안전검사

제8조(안전검사의 신청 안내 등) ① 공단은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 규칙 제5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그 검사주기 도래일, 안전검사의 신청 방법, 안전검사 수수료 및 그 밖에 안전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② 정기검사의 신청 안내에 드는 경비는 공단과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9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기검사: 제8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가. 수시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승강기를 변경 또는 수리한 경우 해당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날 15일 이전까지
   나. 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 15일 이전까지
3. 정밀안전검사: 제8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

② 관리주체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차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의 변경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0조(안전검사의 일정 통보 등) ① 공단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지정검사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에 기술자등을 검사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해야 하며,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

제11조(안전검사의 실시) ① 공단 이사장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 검사인력을 2인 1조로 하여 안전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을 위해 합동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인력 각 1인을 1조로 할 수 있다.

1. 정기검사: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중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
2. 수시검사: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고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
3. 정밀안전검사: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특급 검사인력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과 중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

② 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안전검사가 지연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공단 소속 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영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을 2인 1조로 하여 정기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④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무부하 또는 감소된 속도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무부하 또는 감속된 속도에서 검사할 수 있다.

1. 정기검사: 별표 2
2. 수시검사: 별표 3
3. 정밀안전검사: 별표 4

⑤ 검사자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검사의 결과 등) ①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검사의 판정 결과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 및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검사기준에 맞는 경우: 합격
2.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합격
3.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으나 그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조건부합격

② 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관리주체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검사 기록표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13조(안전검사의 결과 통보) ①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인 경우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
2. 신청인에게 통보: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

③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합격인 경우 그 내용 및 이행 기간을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등 2개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건부합격의 내용을 제1호에 따른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따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알린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행된 경우 : 합격 처리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2. 이행되지 않은 경우 : 불합격 처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제4장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

제14조(안전검사의 특례 인정) ①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강기부품의 추가 설치 등 그 승강기의 설계 또는 기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 ①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목적이 제1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할 수 있다.

1. 변경된 승강기의 설계도면
2. 설계 또는 기능이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자체 평가서. 이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에서 정한 위험성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3.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하 "대체기준"이라 한다)

4. 그 밖에 안전성 평가에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기술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신청목적이 제1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도면 및 기술서류가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체 평가서가 적절한지 여부
3. 대체기준이 승강기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 평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받는 경우로서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승강기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신청을 하는 자는 안전성 평가 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신청목적이 제1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한다)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신청수수료: 50,000원
2. 기술서류심사비용: 평가수당 × 3일(+ 평가수당 × 2일, 필요한 경우)
3. 현지 평가비용: 평가수당 × 평가자(인) × 평가일수(일) + 출장비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수당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준 가운데 기계/설비 분야의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4항제3호에 따른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안전검사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 등) ①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 평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 평가서의 사본
2. 대체기준
3. 그 밖에 검사특례 인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신청인, 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에 관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기준과 해당 승강기의 대체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검사 업무규정)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기검사의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검사방법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행에 관한 표준화 업무(이하 "검사방법 표준화"라 한다)를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검사방법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의 방법 및 해석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검사방법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결과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불합격 승강기 등의 관리) ① 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관리카드(전자방식의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검사를 받고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안내 등을 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적정 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해당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연간 검사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공단은 공단과 지정검사기관 소속 검사인력의 인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된 검사인력 증원 인원을 포함한다) 및 정기검사 대상 승강기의 대수 등을 고려하여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의 수립 시 지정검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이 승강기 안전관리에 불합리하거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시정명령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연간 검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지정검사기관의 조직 및 정원) ① 지정검사기관의 정기검사 관련 조직 및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직을 확대하거나 검사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공단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지정검사기관은 검사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① 공단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고,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지도등을 받아야 하는 지정검사기관은 지도등의 개시 2일 전까지 지도등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드는 비용은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평가비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도등을 하는 사람은 7명 이하로 하고, 지도등의 일수는 5일 이내로 한다.
④ 공단은 지도등의 과정에서 지정검사기관의 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공단은 지도등의 결과를 포함한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검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지정검사기관과의 상호 정보교환 및 협의를 통해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19 - 29호,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속 검사인력이 아닌 자를 검사보조자로 활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검사인력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속 검사자 1인과 함께 2인 1조로 하여 정기검사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2.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포함한다):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 - 73호,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2.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포함한다):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종전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설치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의 설치를 제외(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추가 실시, 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 결과 기록ㆍ관리 등 자체개선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부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없어 조건부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022 - 16호,2022. 3.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의 규정을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2.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포함한다):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종전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9 - 29호)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설치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의 설치를 제외(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추가 실시, 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 결과 기록ㆍ관리 등 자체개선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없어 조건부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023 - 17호,2023. 3. 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치검사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엘리베이터 설치검사기준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 기본제원(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작성한다)

■ 현장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호기(설치위치)

■ 승강기번호

■ 승강기 인증번호

■ 모델명/제품명

■ **승강기 용도**

☐ 승객용 ☐ 전망용 ☐ 병원용 ☐ 장애인용 ☐ 소방구조용
☐ 피난용 ☐ 주택용 ☐ 승객화물용 ☐ 화물용 ☐ 자동차용

■ **운행층수(전체)**

· 정면

· 후면

· 측면

■ **정격하중(kg)**

■ **적용인승**

■ **구동방식** 권상/포지티브/유압

■ **전원공급**

· 전압(V)

· 주파수(Hz)

■ **정격속도(㎧)**

■ **출입문개폐방식**

■ **운행거리(m)**

■ **기어형식** WG.HG.GL.Etc

■ **기계실 위치**

☐ 승강로 상부 ☐ 승강로 아래 ☐ 승강로 측면 ☐ 기타 위치

위의 모든 사항은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1.2 안전부품(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작성한다)

1.2.1 제어반 해당없음

☐

가) 제어반의 외부에서 수행된 모든 시험을 확인한다. 예 ■

나) 제어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1.2.2 구동기 해당없음

☐

가) 구동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구동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1.2.3 카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작동속도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1.2.4 균형추/평형추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작동속도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1.2.5 카측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1.2.6 균형추/평형추측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1.2.7 상승과속방지장치

가) 상승과속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상승과속방지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1.2.8 문열림출발방지장치

가) 문열림출발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문열림출발장지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1.2.9 매다는 장치

가) 매다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매다는 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1.2.10 출입문 조립체 해당없음

□

가) 출입문 조립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출입문 조립체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1.2.11 출입문 잠금장치

가) 출입문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모든 출입문 잠금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1.2.12 카측 완충기

가) 카측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완충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1.2.13 균형추측 완충기 해당없음

□

가) 균형추측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완충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1.2.14 립처밸브 해당없음 ☐

가) 립처밸브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립처밸브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1.2.15 유량제한기 해당없음

☐

가) 유량제한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유량제한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1.2.16 비상통화장치 해당없음

☐

가) 비상통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비상통화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다) 비상통화장치가 설치 높이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16.3.6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1.2.17 이동케이블

가) 이동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이동케이블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1.3. 기계류 공간_일반사항

1.3.1 적용방식(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기계실 내 기계류 ☐ 1.3.2 참조

승강로 내의 기계류

승강로 내의 작업구역 ☐ 1.3.3.1 참조

카상부 또는 카의 작업구역 ☐ 1.3.3.2 참조

피트내의 작업구역 ☐ 1.3.3.3 참조

승강로 플랫폼 위의 작업구역	☐ 1.3.3.4 참조
승강로 외부의 작업구역	☐ 1.3.3.5 참조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 1.3.4 참조
풀리공간	
풀리실	☐ 1.3.5.1 참조
승강로 내의 풀리실	☐ 1.3.5.2 참조

1.3.1.1 주개폐기

가) 주 개폐기가 가) 비상통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따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주 개폐기를 차단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5.1에 따라 잠글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다) 주 개폐기 차단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5.1.1 및 14.5.5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주 개폐기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5.2에 따라 신속하게 접근 할 수 있고,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쉽게 식별되는지 확인한다.

예 ■

1.3.1.2 접근 및 출입

가) 기계류 공간의 접근/출입수단(계단, 사다리, 피트 출입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4 및 6.2.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풀리실 및 관련 작업구역의 접근통로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1 및 6.2.3에 따라 개인적인 공간을 경유하지 않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한다.(주택용 엘리베이터 제외: 지침서 제공)

주택용 ☐ 예 ■

1.3.1.3 안전표시

가) 표시 및 주의사항 등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2, 6.1.1.2, 6.4, 6.6.2, 13.2.3.5 및 13.3.9.1.6에 따라 식별/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보호조치가 필요 없는 매끄럽고 둥근 부품(권상도르래, 수동핸들, 브레이크 드럼 등)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2에 따라 부분적으로 노란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3.1.4 구동방식

설치된 구동방식(권상식, 유압식 등)을 확인한다.

예 ■

1.3.1.5 제어방식

설치된 제어방식을 확인한다.

제어방식 ☐ 예 ■

1.3.1.6 오일쿨러 해당없음 ☐

오일쿨러가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냉각방식 ☐ 예 ■

1.3.1.7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가) 승강로 내에 구동기 작업공간이 있는 경우,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6.1에 따라 승강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패널에는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가 포함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6.2에 따라 감시장치 또는 표시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6.3에 따라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에서 조도가 20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lx 예 ■

라)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앞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6.4 및 6.6.3.2.1에 따른 충분한 작업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비상운전 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3 또는 13.3.9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바) 고장처리 및 승객구출 설명서 등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2.3에 따라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정전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3.6에 따라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3.1.8 통신

승강로에 갇혀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피트, 승강로 내부 작업구역, 카 상부 등)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6에 따라 피난 공간에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3.1.9 지진관제운전 해당없음 ☐

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3에 따라 지진을 감지하는 엘리베이터 전용 수단(지진감지기 등)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지진관제운전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3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1.3.2 기계실 내의 기계류(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체크하시오)

1.3.2.1 기계실 내의 기계류 해당없음 ☐

가) 기계실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2.1에 따른 설비를 제외한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실 작업공간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3.2.1에 따라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실 출입문의 구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2, 6.3.3가)·나)·다)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실 출입문의 기계적 강도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3마)·바)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마) 기계실 바닥의 개구부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3.3에 따라 물체가 승강로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바) 기계실의 환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사)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2, 6.1.5.2가) 및 14.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작업구역 [redacted] lx 예 ■ / 이동통로 [redacted] lx 예 ■

아)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2나) 및 14.7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자)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7에 따라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3.3 승강로 내의 기계류(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체크하시오)

1.3.3.1 승강로 내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2 및 6.6.4.1.2에 따른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로의 환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 및 14.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작업구역 ■ lx 예

■

라)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7에 따라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3.3.2 카 내 또는 카 상부의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카 내부, 카 상부에서 유지관리/점검이 수행되는 경우,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을 보호하는 기계적인 정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3.1가), 나)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3.1다)에 따라 안전하게 승강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점검문(전기적 스위치 포함)이 카의 벽에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3.3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카 벽에 설치된 점검문을 열고 카 내부에서 카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점검운전 조작반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3.4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3.3.3 피트 내 작업공간

가) 구동기가 피트에 설치되고 피트에서 유지관리/점검이 수행되는 동안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4.1가), 나), 다), 마) 및 바)에 따라 기계적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피트에 출입하는 문이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3.라) 및

6.6.4.4.1 라)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엘리베이터의 정상운전으로의 복귀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4.1사)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4.2에 따라 안전하게 피트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수직틈새가 0.5 m 이상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예 ■

1.3.3.4 플랫폼 위의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영구적으로 고정 설치되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작업용 플랫폼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플랫폼이 엘리베이터 주행로에 있는 경우,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설치된 기계적 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2가)·나)에 따라 설치되고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집어넣을 수 있는 플랫폼의 경우, 완전히 집어넣어진 위치를 확인하는 전기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4가)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집어넣을 수 있는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을 밀어 넣거나 제거하는 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4나)에 따라 피트 또는 승강로 외부에 설치한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플랫폼으로의 접근이 승강장문을 통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이 작업 위치에 없을 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4다)에 따라 플랫폼으로 출입하는 문의 개방이 불가능하거나 추락을 방지하는 수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완충기가 결합된 나)의 장치와 전기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5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플랫폼에서 카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점검운전 조작반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6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아) 최대 허용하중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8에 따라 플랫폼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3.3.5 승강로 외부의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승강로 외부에서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6에 따라 작업구역 및 점검문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류 공간의 환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2, 6.1.5.2가) 및 14.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작업구역 ■ lx 예 ■ / 이동통로 ■ lx 예 ■

라)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2 나) 및 14.7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7에 따른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3.4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해당없음

☐

가) 엘리베이터 전용공간에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5.1.1에 따라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5.1.2에 따라 허용하는 개구부를 제외하고 기계류 공간의 벽, 지붕, 바닥 및 문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류 공간의 출입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5.1.3에 따라 문 잠금 및 열림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류 공간 전면의 모든 작업구역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5.2에 따라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기계류 공간의 환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3에 따라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바) 기계류 공간의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6.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 lx 예 ■

사) 기계류 공간의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2나) 및 14.7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3.5 풀리공간

1.3.5.1 풀리실 해당없음

☐

가) 풀리실의 치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7.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풀리실 출입문의 구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2 및 6.3.3가)·나)·다)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풀리실 출입문의 기계적 강도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3마)·바)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풀리실 바닥의 개구부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7.2에 따라 물체가 승강로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풀리실 접근 지점의 가까운 곳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2다)에 따라 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바) 풀리실의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2 및 6.1.5.2가)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작업구역 ■ lx 예 ■ / 이동통로 ■ lx 예 ■

사) 풀리실의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2나) 및 14.7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4. 승강로

1.4.1 피트 내 설비

가) 피난 공간에서 0.3 m 떨어진 범위 이내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1나)에 따라 점검운전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두개 이상의 점검운전 조작반이" 점검" 위치에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5.2.1자)에 따라 동일한 조작버튼을 동시에 누를 때만 운행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피트 내의 정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1가)에 따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피트 점검운전 조작반에서 엘리베이터 정상운행으로의 복귀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5.2.2에 따른 조건에서만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마) 승강장문을 통해서만 피트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9.3.5에 따라 승강장문 잠금장치에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구동기의 감속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5.6.1.2, 16.1.3에 따라 감시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튀어오름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5.6.1.3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4.2 틈새 및 여유거리

가) 권상구동 엘리베이터의 균형추 및 평형추가 가장 낮은 위치(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램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다음 틈새를 확인한다.

1) 레일의 길이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5.6.2 및 6.5.6.4.1에 따라 가이드 슈/롤러 위로 0.1 m 이상 연장되는지 확인한다.

m 예 ■

2)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과 카 지붕[아래 3)·4)는 제외]의 사이 틈새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5.7.2가)에 따라 0.5 m 이상인지 확인한다.

m 예 ■

3)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과 카의 투영부분에서 수평거리 0.4 m 이내의 가이드슈/롤러, 로프 단말처리부, 수직 개폐식 문의 헤더 또는 부품의 가장 높은 부분 사이 수직틈새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7.2나)에 따라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m 예 ■

4) 카 상부 난간 주위 공간 및 수직거리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7.2다)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 난간이 없는 곳의 수평돌출부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5.2.2.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6) 카 지붕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7.1에 따라 피난공간의 허용 가능 인원(자세 유형) 표지 및 충분한 피난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7)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엘리베이터 안전기준」6.5.7.3에 따라 6)항의 피난 공간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다음 틈새를 확인한다.

1) 피트 공간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5.8.1에 따라 피난공간의 허용 가능 인원(자세 유형) 표지 및 충분한 피난 공간을 수용하는지 확인한다.

예 ■

2) 카의 가장 낮은 부품과 피트의 바닥 사이[아래 3)·4) 제외]의 유효 수직거리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5.8.2가)에 따라 0.5 m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m 예 ■

3) 위의 2)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접한 벽에서 수평거리 0.15 m 이내의 에이프런 또는 수직 개폐식 문의 어느 부분이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8.2가)1)에 따라 유효 수직거리가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m 예 ■

4) 위의 2)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8.2가)2)에 따라 최소 유효 수직거리까지 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m 예 ■

5) 위의 3)과 4)를 제외하고 피트의 가장 높은 부품(보상로프 인장장치의 가장 높은 부분, 잭 지지대·파이프 및 그 부속품 등)과 카의 가장 낮은 부품사이의 유효 수직거리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8.2나)에 따라 0.3 m 이상인지 확인한다.

m 예 ■

6) 주행안내 레일(균형추/평형추)의 여유거리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6.2 및 6.5.6.4.2에 따라 가이드 슈/롤러 위로 0.1 m 이상 연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m 예 ■

7)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과 램의 가장 높은 부분 사이의 거리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7.4에 따라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m 예 ■

8)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잭이 뒤집어진 경우 램 헤드와 피트의 유효 수직거리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8.2다)에 따라 0.5 m 이상(스크린이 있는 경우 0.1 m)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m 예 ■

9)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피트 바닥과 직접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카 아래에 있는 다단 잭의 가장 낮은 가이드 이음쇠 사이의 유효 수직거리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8.2라)따라 0.5 m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m 예 ■

1.4.3 감소된 완충 행정

해당없음 ☐

주행로 끝에 강제감속시스템이 적용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2.2에 따라 완충기 충돌속도가 완충기 행정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4.4 완충기

1.4.4.1 카측 완충기

가) 완충기가 확실하게 고정되고 충돌지점에 정확하게 정렬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선형)
피트 틈새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완충기 행정거리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확인 ____ m 예 ☐

다)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비선형)
피트 틈새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완충기 행정거리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____ m

라) 에너지 분산형 완충기(유압식) 해당없음
☐

1) 정격하중, 정격속도의 카를 완충기와 충돌시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기술문서에 따라 엘리베이터 또는 완충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 ■

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2.4에 따라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복귀되는지 감지하는 전기안전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1.4.4.2 균형추측 완충기

가)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선형)
피트 틈새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완충기 행정거리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확인 ____ m 예 ☐

나)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비선형)
피트 틈새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완충기 행정거리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확인 ____ m 예 ☐

다) 에너지 분산형 완충기(유압식) 해당없음
☐

1) 빈 카의 균형추를 정격속도로 완충기와 충돌시켜 엘리베이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 ■

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2.4에 따라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복귀되는지 감지하는 전기안전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1.4.5 완충기 받침대 해당없음
☐

완충기 받침대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1.1 및 12.1.3에 따라 완충기 충격 영역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4.6 승강로 내의 보호

가) 밀폐식 승강로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2.2.1에 따라 허용하는 개구부를 제외하고 구멍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주행구간에 설치된 칸막이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5.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5.2, 6.5.5.2.1 및 6.5.2.2에 따라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 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5.2.2에 따라 승강로 전체 높이까지 칸막이가 연장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반-밀폐식 승강로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2.3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승강로 환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카 출입구와 마주하는 승강로 벽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3.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아) 승강로 내 도르래·풀리 및 스프로킷의 보호수단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에 따라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자) 피트 바닥 직하부에 접근공간이 있는 경우,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4에 따른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차) 건축 관련 요구사항(특히, 유리 관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8 및 6.1.9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카)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에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2.1에 따라 다른 용도의 설비가 없는지 확인한다.

예 ■

타) 승강로에 설치된 출입문·비상문 및 점검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2 및 6.3.3가)·나)·다)·라)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파) 승강로에 설치된 출입문·비상문 및 점검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3마)·바)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하) 권상도르래, 풀리 및 스프로킷이 승강로 최상층 승강장 바닥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편향 풀리 및 스프로킷의 기계적인 고장 발생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8가)에 따라 추락을 방지하는 고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 권상도르래, 풀리/스프로킷이 카의 수직 투영공간에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8나)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4.7 승강장문

가) 승강장문의 유효 높이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2.1에 따라 2 m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나)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자동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1에 따라 함몰되거나 돌출부분이 3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라) 승강장문에 방화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한 승강장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승강장문에 유리가 사용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3.7에 따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어린이 손끼임방지 수단(틈새)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2.1자)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예 ■

1.4.8 조명 및 콘센트

가) 승강로 내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 6.1.5.1라) 및 14.7에 따라 조도, 조명위치 및 점멸수단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작업구역 ■ lx 예 ■ / 이동통로 ■ lx 예 ■

나) 피트 내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1다)에 따라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4.9 카 및 균형추/평형추의 주행안내 레일

가) 주행안내 레일과 제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카 ☐ 예 ■ / 균형추 ☐ 예 ■

나) 주행안내 레일의 고정간격이 제출된 서류(레일 관련 서류 및 도면 등)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

1.5. 카, 운전 및 접근허용

1.5.1 카

가) 카의 정격하중이 인증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격하중 ■ kg

나) 카의 유효면적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2에 따라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유효면적 ■ ㎡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적재 및 하역을 위한 운송장치의 중량이 카의 정격하중 계산에서 제외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2.2.1가)5)에 따라 운송 장치의 최대 중량이 승강장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카 내부의 유효 높이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1에 따라 2 m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마) 카에 유리가 사용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3.7 및 8.3.2.5에 따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카문 해당없음 □ 예 ■ / 카벽 해당없음 □ 예 ■

바) 카의 재질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4에 따라 불연재료인지 확인한다.

예 ■

사) 카 바닥에서 1.1m 미만에 유리가 사용된 카 벽의 경우, 손잡이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3.3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유리와 독립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아) 카 내부(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장의 적재구역)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2.3.2 및 8.2.3.3에 따라 정격하중 등 표기를 확인한다.

예 ■

자) 비상통화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3에 따라 적합하고, 카 내에서 시설물 내 및 유지관리업체 등으로 통화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차) 카의 환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9 및 부속서 VI.3.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카) 카의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10.1에 따라 10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카 내부 조도 ■ lx 예 ■

타) 카의 비상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10.4에 따라 5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카 내부 비상조도 ■ lx 예 ■

파) 카의 과부하감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2에 따라 적합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하) 에이프런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5에 따라 관련치수 및 강도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치수 및 강도 예 ☐ 설치상태 예 ■

거) 전기안전장치를 포함한 카의 비상구출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6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5.2 카 상부

가) 점검운전 조작반, 정지장치 및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8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지붕의 점검운전 스위치가 점검 위치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5.2.1에 따라 정상운전제어, 전기적 비상운전, 착상 및 재-착상, 도어작동 제어가 무효화 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카 지붕의 비상조명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10.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lx 예 ■

라) 카 지붕의 보호수단 및 보호난간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2, 8.7.3 및 8.7.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5.3 카 문

가)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자동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1에 따라 함몰되거나 돌출부분이 3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다) 어린이 손끼임방지 수단(틈새)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2.1자)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틈새 ■ ㎜ 예 ■

라) 카 문의 문턱과 승강장문의 문턱 사이의 수평 거리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1에 따라 35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마) 카 문과 승강장문 전체가 정상 작동하는 동안, 카문의 앞 부분과 승강장문 사이의 수평거리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2에 따라 0.12 m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바) 승강로 내측과 카 문턱, 카 문틀 또는 카문의 닫히는 모서리 사이의 수평거리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3.1에 따라 0.15 m 이하(함몰부분의 수직 높이가 0.5 m 이하인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0.2 m 이하)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잠금해제구간에서만 열리는 카문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3.1다) 및 7.9.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아) 문의 개폐방식이 조합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3에 따라 문과 문 사이의 틈새는 150 ㎜ 이내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5.4 승강장 문 및 카 문의 시험

가) 문이 닫히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힘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2.1다)에 따라 150 N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유리문이 열리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힘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2.1아)에 따라 150 N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문의 운동에너지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2.1가)에 따라 10 J 이하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문닫힘안전장치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2.1나)·라)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문 열림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3에 따라 카가 승강장에 있을 때 열림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문닫힘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무효화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2.1나)4)에 따라 음향신호 장치가 작동되고 문의 운동에너지가 4 J 이하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150 N의 기계적인 힘을 가할 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3.3에 따라 문의 틈새가 45 ㎜(중앙 개폐식 문), 30 ㎜(측면 개폐식 문)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아) 잠금해제구간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8.1에 따라 승강장 바닥 위·아래로 0.2 m(카문과 승강장문이 동시에 작동되는 문은 0.35 m)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자) 승강장 바닥의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에 따라 50 lx(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바닥 조명의 경우 15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승강장 조도 ■ lx 예 ■

차) 카가 잠금해제구간 밖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9.3.4에 따라

승강장문이 100 ㎜ 열린 상태에서 자동으로 닫히고 잠기는지 확인한다.

예 ■

카) 승강장문의 비상잠금해제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9.3.1에 따라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잠금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타) 비상해제장치의 높이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9.3.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파) 잠금해제구간에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5.1에 따라 전원을 끄고 300 N 이하의 힘으로 카 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하) 접이식 문이 열리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힘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2.1마)에 따라 150 N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거) 카 문의 개방을 제한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5.2에 따라 카 문의 열림이 50 ㎜ 이상 열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너) 수직개폐식 문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더) 각 승강장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접점이 개방되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9.4에 따라 잠금해제구간 밖의 카가 정지하고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러) 승강장문의 닫힘 및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장치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0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머) 카 문의 잠금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9.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버) 카 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서) 수동개폐식 문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2에 따라 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어) 자동차 진입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6 다)에 따라 공인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5.5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 무선 통신장치

가)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 카 내부에 표시되는 내용과 글자 크기의 높이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1 나)에 따라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무선통신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1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봇이 KS B 7317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안전성 평가서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5.6 정상운전 제어

가) 정상운전 제어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1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3에 따라 시각적 표시 또는 신호가 카 내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에 정지했는지 알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1.6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제동 및 권상

1.6.1 매다는 장치 해당없음 ☐

1.6.1.1 로프 / 벨트 해당없음 ☐

가) 본수 설계 [본] 측정 [본]

나) 지름/두께 설계 [mm] 측정 [mm]

1.6.1.2 로프 단말처리 해당없음 ☐

카측 [ ], 균형추/평형추측 [ ]

가) 로프의 단말부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2.3.1 및 9.2.3.2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로프 간의 분산 하중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5.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6.1.3 체인 해당없음 ☐

가) 본수 설계 ☐ 측정 ■

나) 호칭번호 설계 ☐ 측정 ■

다) 체인의 끝 부분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2.4에 따른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체인 간의 분산 하중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6.2 매다는 장치의 이완감지장치 해당없음 ☐

매다는 장치에 이완감지장치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5.3에 따라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1.6.3 보상 수단 및 추가적인 보호조치 해당없음 ☐

가) 보상 수단 및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6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설계 ☐ 확인 ■ 예 ■

나) 튀어오름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6.1다)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보상 로프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6.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6.4 권상/제동 해당없음 ☐

가) 오버밸런스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 예 ■

나) 카에 125% 부하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2.2.1에 따라 브레이크 작동에 의해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감속도 g 예 ■

다) 하나의 브레이크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2.2.1에 따라 정격속도 및 정격하중으로 하강하는 카(또는 무부하 상태로 상승하는 카)를 감속, 정지 및 정지상태로 유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2.2.9에 따른 적재하중을 카에 싣고 브레이크를 수동 개방 할 경우, 카가 인접 층으로 이동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마) 로프 권상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3.1에 따라 적합한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125%로 적재될 때 승강장 바닥 높이에서 미끄러짐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2) 무부하의 정격속도로 상승운행 중 비상정지 시켜 로프와 도르래간 과도한 미끄러짐 없는지 확인한다.

예 ■

3) 125%로 적재된 상태에서 정격속도로 하강운행 중 비상정지 시켜 로프와 도르래간 과도한 미끄러짐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카 또는 균형추가 완충기를 완전히 누르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3.1다)에 따라 로프가 미끄러지거나 구동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1.7. 안전회로

1.7.1 안전접점 및 회로

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2에 따라 설치되고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정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1에 따른 장소에 설치되고,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승강장 문짝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1.2에 따른 모든 문짝에 전기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로프 또는 체인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5.3에 따른 이완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완충기 행정을 감소하기 위한 전기적 강제감속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3에 따라 최상층 및 최하층에 도착하기 전에 감속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전기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2에 따라 작동될 경우 카의 움직임이 방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1.8 카 및 균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와 과속에 대한 보호

1.8.1 카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가 균일하게 분포된 부하와 특정한 속도 초과로 과속조절기가 작동되면 하강방향으로 움직이는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1) 권상구동식의 즉시 작동형은 정격하중과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2) 유압구동식의 즉시 작동형은 125%의 하중과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3) 권상구동식의 점차 작동형은 125%의 정격하중과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4) 포지티브 구동식 및 유압구동식(화물용 제외)의 점차 작동형은 100%의 하중과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5) 유압구동식 화물용의 점차 작동형은 125%의 정격하중(125%의 정격하중은 표 5의 정격하중을 초과할 수 없음)과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나) 카의 수평도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3.2.1에 따라 5 %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위의 가) 검사 후,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1.5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1.8.2 카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의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1.6가)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1.5에 따라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 지름이 인증서와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과속조절기 로프의 지름 ____ mm 예 ■

1.8.3 균형추 또는 평형추측의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다음의 속도로 빈 카를 운전하면서 추락방지안전장치가 하강하는 균형추/평형추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1) 즉시 작동형은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2) 점차 작동형은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나) 위의 가) 검사 후,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1.8.4 균형추 또는 평형추 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설치된 경우, 과속조절기의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1.6가)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과속조절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1.5에 따라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의 지름이 인증서와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과속조절기 로프의 지름 _____ mm 예 ■

1.8.5 멈춤 쇠 장치 해당없음 ☐

가) 멈춤 쇠 장치가 균일하게 분포된 125% 하중으로 하강하는 정격속도의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위의 가) 검사 후,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멈춤 쇠 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9, 10.5.9.1 및 10.5.9.2에 따른 위치에 있을 때 운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라) 멈춤 쇠 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1.3 및 10.5.3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운행할 때 지지대와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마) 멈춤 쇠 장치에 에너지 분산형 완충기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10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8.6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 해당없음 ☐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0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1.8.7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가)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가 빈 카에서 정격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6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6.5에 따라 작동 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위의 가) 검사 후,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1.8.8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장치

가)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7.3에 따라 자체감시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7.5에 따라 보호거리 내에서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7.8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1.9. 주행성능 측정

1.9.1 일반적인 주행시험

가) 주전원 전류가 최대 부하에서 전동기가 지정된 전류 값 이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설계 [A] / 측정 [A]

나) 카가 주행하는 중간지점에서 카의 속도와 모터의 전류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카의 부하상태	운행 방향	속도(m/s)	전류(A)	착상속도(< 0.8m/s)	재착상 (<0.3m/s)	점검운전 (<0.63m/s)	비상운전 (<0.3m/s)
무부하	상승						
	하강						
오버밸런스율	상승						
	하강						
정격하중	상승						
	하강						

다) 권상구동 엘리베이터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4에 따라 주행구간의 중간에서 측정한 속도가 정격속도의 92~105 % 이내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3.8에 따른 주행구간 중간에서 측정한 속도가 정격속도(빈 카의 상승, 정격하중을 실은 카의 하강)의 8%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착상 정확도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4에 따라 모든 승강장에서 ±10 ㎜ 이내이고, 적재 또는 하역 중에는 ±20 ㎜ 이내인지 확인한다.

예 ■

1.9.2 유압시스템의 점검 해당없음 □

가) 최상층에 있는 카의 전부하 압력을 확인한다.

전부하 압력 ■ bar

나) 릴리프 밸브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3.5.3.2에 따라 전 부하 압력의 140%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전 부하 압력의 200 %를 유압시스템에 5분 동안 가할 경우 누유에 의한 압력저하가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라) 부하 압력의 200% 시험 후 유압 시스템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마) 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지기 전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3.9.1.5에 따라 더 이상 하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유압유의 온도감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4.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사) 카가 과속으로 하강할 때 립처밸브 또는 유량제한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3 및 10.4에 따라 균일한 정격하중의 카를 정지 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1.10. 보호장치

1.10.1 전동기의 보호

권상 및 포지티브 구동방식에서 온도감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4.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10.2 승강장문·카문 및 기타 전동기의 보호 해당없음 □

승강장문·카문 및 기타 전동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4.2에 따라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1.10.3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7 또는 13.3.10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10.4 조명 및 콘센트의 보호

모든 조명 및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7.1 및 14.8.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11. 전기적 보호

1.11.1 절연저항

가)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전동기 절연저항 [ ] MΩ 예 ■

나) 조명장치의 절연저항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조명장치 절연저항 [ ] MΩ 예 ■

1.11.2 접지

엘리베이터의 모든 활성상태의 전기부품과 주 접지단자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9에 따라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1.11.3 전기배선

가) 이동케이블을 포함한 전기배선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14.6.1 및 14.6.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제조시방에 따라 EMC 적합배선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제어패널 및 기타 전기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6.5.1.2, 14.1.2.2가) 및 14.6.3.4에 따라 IP 2X 이상으로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제어패널 및 기타 전기장치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14.1.2에 따라 직접 접촉에 대하여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전기배선의 늘어짐 및 손상을 확인하고, 모든 접지선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14.1.3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바) 바이패스 장치가「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8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12. 기술서류

1.12.1 기술서류

엘리베이터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13.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추가 요건

해당없음 ☐

1.13.1 승강장의 공간

가) 승강장 전면의 활동공간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2.1에 따라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장 바닥과 카 바닥의 틈새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2.2에 따라 0.03 m 이하인지 확인한다.

■ m 예 ■

1.13.2 카 및 출입문 크기 예

■

카 크기 및 출입문 치수를 확인한다.

가) 카의 폭(1.6 m 이상) 설계 □ m 측정 ■ m

나) 카의 깊이(1.35 m 이상) 설계 □ m 측정 ■ m

나) 출입문의 통과 폭(0.8 m 이상) 설계 □ m 측정 ■ m

1.13.3 조작설비

가) 호출버튼, 조작반, 통화장치 등의 조작설비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4.1에 따른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4.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4.3 및 17.1.4.4에 따라 점자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13.4 기타 설비

가) 카 내 수평손잡이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1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거울이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2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승강장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카 내 표시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3에 따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호출버튼 또는 등록버튼에 의하여 카가 승강장문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4에 따라 10초 이상 열린 상태로 대기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승강장의 점형블럭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5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카 내부의 층수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 표시 및 음성안내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6에 따라 동작되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카 내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7에 따라 15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 lx 예 ■

1.14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 해당없음

□

1.14.1 건축물의 요건

가) 승강장문 전면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2에 따라 방화구획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로 및 기계류 공간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2에 따라 내화규정에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소방운전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3.2에 따라 모든 출입구마다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카의 크기 및 출입구 폭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3.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확인한다.

예 ■

마) 운행속도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3.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바)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사이가 7 m 초과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3.5에 따라 비상문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1.14.2 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

가) 승강로 내 전기설비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4에 따라 물에 대한 보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피트 침수를 방지하는 보호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4.4 및 14.2.4.5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14.3 소방관의 구출

가) 비상구출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5.1, 17.2.5.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외부 구출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5.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자체 탈출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5.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14.4 제어 시스템

가) 소방운전 스위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1에 따른 위치에 설치되고, 알림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소방운전 스위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2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1단계 및 2단계 조건 하에 모든 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3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비접촉 문닫힘안전장치 무효화)

예 ■

라) 소방운전 호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7사),아)에 따라 경보음 및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1단계 운전(우선 호출)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7에 따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시작되는지 확인한다.

예 ■

바) 1단계 운전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7에 따라 적합한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승강장 호출 및 카 내의 등록버튼이 작동되지 않고, 미리 등록된 호출이 취소되는지 확인한다.

예 ■

2) 문 열림 버튼과 비상통화 버튼의 작동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3) 소방 활동 통화시스템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4) 비접촉 문닫힘안전장치가 무효화되는지 확인한다.

예 ■

5) 소방관 접근 지정 층에 카가 도착하면 카 문과 승강장문이 열린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6) 승강로와 기계실 조명이 자동점등 되는지 확인한다.

예 ■

사) 2단계 운전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8에 따라 적합한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카 내의 운전 시 새로운 층 등록이 가능하고 미리 등록된 층이 취소되는지

확인한다.

예 ■

2) 카 등록버튼 또는 문 닫힘 버튼을 지속적으로 문이 누르면 닫히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버튼을 놓으면 문이 자동으로 다시 열리는지 확인한다.

예 ■

3) 문 열림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면 문이 열리고,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버튼을 놓으면 문이 자동으로 다시 닫히는지 확인한다.

예 ■

4) 카 내 소방운전 키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0' 의 위치에서 제거되고 그 기능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 소방운전 스위치가' 0' 으로 전환 시 소방관 접근 지정 층 복귀 후 정상운전 되는지 확인한다.

예 ■

아)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가 2개의 출입구를 갖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9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1) 2개의 카 출입문이 있는 경우,「엘리베이터 안전기준」17.2.2.3에 따라 소방운전 시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2) 카의 조작반이 카 문 출입구 근처에 각각 위치하고, 승강장의 방화구획된 로비와 소방관 접근 지정 층의 로비와 같은 측면에 위치한 소방구조용 카 조작반에 알림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 1단계 운전 시 일반용 조작반이 무효화되고, 2단계 시작과 동시에 소방구조용 조작반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1.14.5 전원공급

가) 엘리베이터 및 조명의 전원공급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9에 따라 주전원과 보조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보조전원 공급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9.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 개별, □ 자가, □ 다중

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전 대수를 동시에 운행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력 용량인지 확인한다.

전력용량 [kW] 예 ■

2) 60초 이내에 자동 공급되고 2시간 이상 운행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14.6 카 및 승강장 설비

가) 카와 승강장의 제어관련 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1에 따라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소방 활동 통화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1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15 피난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 해당없음

□

1.15.1 건축물의 요건

가)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2에 따라 통제자의 직접적인 조작아래에서 운행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의 크기 및 정격하중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2.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승강로 내부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2.5에 따라 연기가 침투되지 않는 구조인지 자체시험 성적서 등으로 확인한다.

예 ■

1.15.2 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

가) 승강로 내 전기설비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3에 따라 물에 대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피트 침수를 방지하는 보호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4.4 및 14.2.4.5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15.3 카에 갇힌 이용자의 구출

피난호출 및 피난운전 중 고장이나 결함으로 승강로 중간에 정지한 경우, 외부 구출수단 및 자체 탈출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4.1에 따라 적합한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비상구출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5.1, 17.2.5.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외부 구출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5.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자체 탈출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5.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사이가 7 m 초과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3.5에 따라 비상문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1.15.4 제어 시스템

가) 피난호출 스위치 및 피난운전 스위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피난호출 및 피난운전 작동 시 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5.4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문닫힘안전장치는 제외)

예 ■

다) 피난호출 작동 시 제어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5.7에 따라 적합한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승강장 호출 및 카 내의 등록버튼이 작동되지 않고, 미리 등록된 호출이 취소되는지 확인한다.

예 ■

2) 문 열림 버튼과 비상통화시스템의 작동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3) 피난 층에 카가 도착하면 카 문 및 승강장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4) 승강로와 기계실 조명이 자동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피난운전 작동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5.8에 따라 적합한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피난운전이 통제자에 의해 카 내 조작반에서만 운전되고, 피난운전스위치에 의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2) 피난운전 스위치가' 해제' 위치에서만 제거되고, 그 기능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 피난운전으로 전환되면, 카 내·승강장 및 방재실에" 피난운전 중" 표시가 명확히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예 ■

4) 피난 층에 도착 후 문 열림 대기시간이 15초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 피난운전 스위치가" 해제" 위치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지정된 피난층으로 복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피난운전 운행이 중단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5.9에 따라 각 층 승강장에 시각·청각적으로 안내되는지 확인한다.

예 ■

1.15.5 카 및 승강장 설비

가) 지정된 피난층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6.1에 따른 카 위치 표시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피난 활동 통화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7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16 표시 등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작동 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17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해당없음

□

1.17.1 주행성능 측정

정격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10회 왕복운행을 한 후 주행 중 소음 및 진동값을 기록한다.

소음 [dB(A)] 진동(X축/Y축/Z축) [gal/ gal/ gal] 예

■

1.17.2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시험

정격하중과 정격속도로 1.8.1 및 1.8.3에 따른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지적사항]

2.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검사기준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2.1 기본제원(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작성한다)

■ **현장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호기(설치위치)**

■ **승강기번호**

■ **승강기 인증번호**

■ **모델명/제품명**

■ **승강기의 종류(용도)**

☐ 승객용 ☐ 전망용 ☐ 병원용 ☐ 장애인용 ☐ 승객화물용 ☐ 화물용 ☐ 자동차용

■ **운행층수(전체)**		■ **전원공급**	
· 정면		· 전압(V)	
· 후면		· 주파수(Hz)	
· 측면		■ **정격속도(m/s)**	
■ **정격하중(kg)**		■ **출입문개폐방식**	
■ **적용인승**		■ **운행거리(m)**	
■ **경사도**	°	■ **기어형식**	*WG.HG.GL.Etc*

■ **기계실 위치**

☐ 승강로 상부 ☐ 승강로 아래 ☐ 승강로 측면 ☐ 기타 위치

위의 모든 사항은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2.2 안전부품(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작성한다.)

2.2.1 제어반

가) 제어반의 외부에서 수행된 모든 시험을 확인한다.

예

나) 제어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예

2.2.2 구동기

해당없음

☐

가) 구동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나) 구동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예

2.2.3 카측 과속조절기

가) 과속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작동속도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2.2.4 균형추/평형추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작동속도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2.2.5 카측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2.2.6 균형추/평형추측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2.2.7 상승과속방지장치

가) 상승과속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상승과속방지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2.2.8 문열림출발방지장치

가) 문열림출발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문열림출발방지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2.2.9 매다는 장치 해당없음

□

가) 매다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매다는 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2.2.10 출입문 조립체

가) 출입문 조립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출입문 조립체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2.2.11 출입문 잠금장치

가) 출입문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모든 출입문 잠금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2.2.12 카측 완충기

가) 카측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완충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2.2.13 균형추측 완충기

가) 균형추측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완충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2.2.14 비상통화장치

가) 비상통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비상통화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다) 비상통화장치가 설치 높이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2.3.4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2.2.15 이동케이블

가) 이동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이동케이블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2.3. 기계류 공간_일반사항(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체크하시오)

2.3.1 적용방식(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기계실 내 기계류	☐	2.3.2 참조
승강로 내의 기계류		
승강로 내의 작업구역	☐	2.3.3.1 참조
카상부 또는 카의 작업구역	☐	2.3.3.2 참조
피트내의 작업구역	☐	2.3.3.3 참조
승강로 플랫폼 위의 작업구역	☐	2.3.3.4 참조
승강로 외부의 작업구역	☐	2.3.3.5 참조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	2.3.4 참조
풀리공간		
풀리실	☐	2.3.5.1 참조
승강로 내의 풀리실	☐	2.3.5.2 참조

2.3.1.1 주 개폐기

가) 주 개폐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4.3에 따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주개폐기를 차단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4.4에 따라 잠글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다) 주 개폐기 차단 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4.1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주 개폐기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4.4에 따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고,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쉽게 식별되는지 확인한다.

예 ■

2.3.1.2 접근 및 출입

가) 기계류 공간의 접근/출입수단(계단, 사다리, 피트 출입문)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4.2 및 7.2.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풀리실 및 관련 작업구역의 접근통로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 및 7.2.1에 따라 개인적인 공간을 경유하지 않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2.3.1.3 안전표시

가) 표시 및 주의사항 등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2.5에 따라 식별/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보호조치가 필요 없는 매끄럽고 둥근 부품(권상도르래, 수동핸들, 브레이크 드럼 등)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1에 따라 부분적으로 노란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3.1.4 구동방식

설치된 구동방식(권상, 포지티브 등)을 확인한다.

예 ■

2.3.1.5 제어방식

설치된 제어방식을 확인한다.

제어방식 _____ 예 ■

2.3.1.6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가) 승강로 내에 구동기 작업공간이 있는 경우,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1에 따라 승강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패널에는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가 포함되어 있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에 따라 감시장치 또는 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3에 따라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에서 조도가 5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_____ lx 예 ■

라)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앞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4에 따른 충분한 작업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비상운전 수단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5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바) 고장처리 및 승객구출 설명서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정전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5.4에 따라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3.1.7 통신 해당없음 ☐

승강로에 갇혀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피트, 승강로 내부 작업구역, 카 지붕 등)에「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10에 따라 피난공간에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3.2 기계실 내의 기계류(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2.3.2.1 기계실 내의 기계류 해당없음 ☐

가) 기계실에「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1에 따른 설비를 제외한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실 작업공간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3에 따라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실 출입문의 구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실 바닥의 개구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5에 따라 물체가 승강로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기계실의 환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6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바)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작업구역 ■ lx 예 ■ / 이동통로 ■ lx 예 ■

사) 콘센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7 및 14.5.5.2에 따라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아)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8에 따라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3.3 승강로 내의 기계류(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2.3.3.1 승강로 내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2 및 7.4.1.3에 따른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로의 환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7.4.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7.4.8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작업구역 [redacted] lx 예 ■

라)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9에 따라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3.3.2 카 내 또는 카 지붕의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카 내부, 카 지붕에서 유지관리/점검이 수행되는 경우,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을 보호하는 기계적인 정지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3.1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4.2에 따라 안전하게 승강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점검문 또는 점검 트랩문(전기적 스위치를 포함한다)이 카의 벽에 있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3.3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점검문/점검 트랩문을 열고 카 내부에서 카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점검운전 조작반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3.4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3.3.3 피트 내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구동기가 피트에 설치되고 피트에서 유지관리/점검이 수행되는 동안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의 위험이 있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4.1 가),나),다)에 따라 기계적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피트에 출입하는 문이 열렸을 때「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7.4.4.1 마)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엘리베이터의 정상운전으로의 복귀가 7.4.4.1 아)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4.2에 따라 안전하게 피트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3.3.4 플랫폼 위의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영구적으로 고정 설치되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작업용 플랫폼이 「경사형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플랫폼이 엘리베이터 주행로에 있는 경우,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설치된 기계적인 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2에 따라 설치되고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집어넣을 수 있는 플랫폼의 경우, 완전히 집어넣어진 위치를 확인하는 전기안전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4가)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집어넣을 수 있는 플랫폼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4나)에 따라 피트 또는 승강로 외부에서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플랫폼으로의 접근이 승강장문을 통하지 않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4에 따라 플랫폼이 작업 위치에 없을 때 플랫폼으로 출입하는 문의 개방이 불가능하거나 추락을 방지하는 수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완충기가 결합된 나)의 장치와 전기안전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5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플랫폼에서 카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점검운전 조작반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6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3.3.5 승강로 외부의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승강로 외부에서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6.2에 따라 작업구역 및 점검문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기계류 공간의 환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8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작업구역 ■ lx 예 ■ / 이동통로 ■ lx 예 ■

라) 콘센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8, 14.5.5.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9에 따른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3.4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해당없음 □

가) 엘리베이터 전용공간에는「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1에 따라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2에 따른 허용 개구부를 제외하고 기계류 공간의 벽, 지붕, 바닥 및 문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류 공간의 출입문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3에 따라 문 잠금 및 열림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류 공간 전면의 작업구역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3에 따라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기계류 공간의 환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바) 기계류 공간의 조명이「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lx 예 ■

사) 기계류 공간의 콘센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7.5.5 및 14.5.5.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3.5 풀리공간 해당없음 □

2.3.5.1 풀리실 해당없음 □

가) 풀리실의 치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풀리실 출입문의 구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풀리실 바닥의 개구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5에 따라 물체가 승강로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풀리실 접근지점 가까운 곳에 있는 정지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6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풀리실의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8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작업구역 ■ lx 예 ■ / 이동통로 ■ lx 예 ■

바) 풀리실의 콘센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8 및 14.5.5.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4. 승강로

2.4.1 피트내 설비

가) 피트 바닥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4.1에 따라 피트에 물이 침투되지 않거나 물을 제거하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두개 이상의 점검운전 조작반이" 점검" 위치에 있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15.2.1.4.3 나)에 따라 동일한 조작버튼을 동시에 누를 때만 운행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피트 내의 정지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4.4가)에 따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피트 내의 콘센트 및 조명 점멸장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4.4 나), 다)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마) 구동기의 감속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1.3 및 13.8에 따라 감시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튀어오름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1.3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4.2 틈새 및 여유거리

2.4.2.1 권상구동 엘리베이터의 상부틈새

해당없음 □

가) 권상구동 엘리베이터의 균형추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아래 틈새에 0.035 v^2 /sinα를 더한 값 이상)

1) 레일의 길이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1.1 가)에 따라 가이드 슈/롤러 위로 0.1 m 이상 연장되는지 확인한다.

m 예 ■

2)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과 카 지붕[아래 3)는 제외]의 사이 틈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1.1 나)에 따라 1.0 m 이상인지 확인한다.

m 예 ■

3) 승강로 천장과 카 지붕의 설비 틈새를 확인한다.

- 카 지붕의 고정된 가장 높은 부분[아래 4)에 포함된 부품 제외] 사이의 수직틈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1.1다)1)에 따라 0.3 m 이상인지 확인한다.

m 예 ■

- 카 지붕의 가이드슈/롤러, 로프 단말처리부, 수직 개폐식 문의 헤더 또는 부품의 가장 높은 부분 사이 틈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1.1다)2)에 따라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m 예 ■

4)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1.1라)에 따라 장방형 공간(0.5m×0.6m×0.8m)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균형추 또는 평형추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1.2에 따라 주행안내 레일의 여유거리가 0.1 m 이상 연장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4.2.2 포지티브 구동방식 엘리베이터 상부틈새 해당없음

□

가) 카가 최상층 승강장 바닥에서부터 상승방향으로 상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까지 카의 주행거리는 경사진 경로를 따라 0.50 m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나) 포지티브구동 엘리베이터의 카가 완전히 압축된 상부 완충기에 있을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예 ■

1) 카 지붕과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의 피난공간의 수직높이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2.2 가)에 따라 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m 예 ■

2)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품과 카 지붕에 고정된 설비의 가장 높은 부분[아래 3)항 제외]사이의 유효 수직거리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2.2 나)1)에 따라 0.3 m 이상인지 확인한다.

m 예

3) 위의 2)를 제외하고 카 지붕의 가이드슈/롤러, 로프 단말처리부,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의 헤더 또는 부품의 가장 높은 부분 사이 수직틈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2.2 나)2)에 따라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m 예

4)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2.2다)에 따라 장방형 공간(0.5m×0.6m×0.8m)이 있는지 확인한다.

m 예

다)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 위에 있을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2.3에 따라 평형추 주행안내 레일의 여유거리가 0.3 m 이상 연장되는지 확인한다.

m 예

2.4.2.3 피트의 하부틈새 해당없음

☐

카가 완전히 압축된 하부 완충기에 있을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가) 피트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4.3가)에 따라 장방형 공간(0.5m×0.6m×1.0m)이 있는지 확인한다.

m 예

나) 피트의 승강로 주행구간 끝 벽면과 접하는 카의 가장 돌출된 부분 사이의 거리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4.3나)에 따라 0.5 m 이상인지 확인한다.

m 예

다) 위 나)항의 부품을 제외한 주행안내 레일과 수평으로 0.15 m 이내인 부품사이의 거리는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m 예

라) 카의 가장 뒷부분과 승강로 벽에 고정된 처음 충돌되는 부품사이의 거리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4.3다)에 따라 0.3 m 이상인지 확인한다.

m 예

2.4.2.4 전면에 출입문이 있는 엘리베이터 해당없음

☐

엘리베이터 전면에 출입문이 설치된 경우, 위의 2.4.2.1 (권상구동방식의 상부틈새), 2.4.2.2 (포지티브구동의 상부틈새), 2.4.2.3 (피트의 하부틈새)는 제외되며, 위의 2.3.3.3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예

2.4.3 감소된 완충 행정 해당없음 ☐

주행로 끝에 강제감속시스템이 적용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1.3에 따라 완충기 충돌속도가 완충기 행정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4.4 완충기

2.4.4.1 카 및 균형추측 완충기

가) 완충기가 확실하게 고정되고 충돌지점에 정확하게 정렬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선형)

피트 틈새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완충기 행정거리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확인 _____ m 예 □

다)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비선형) 해당없음 □

피트 틈새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완충기 행정거리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_____ m

라) 에너지 분산형 완충기(유압식) 해당없음 □

1) 정격하중, 정격속도의 카를 완충기와 충돌시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기술문서에 따라 엘리베이터 또는 완충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 ■

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1.3.6 다)에 따라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복귀되는지 감지하는 전기안전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2.4.5 완충기 받침대 해당없음 □

완충기 받침대가 설치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1.3.1 및 11.3.2에 따라 완충기 충격 영역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4.6 승강로 내의 보호

가) 밀폐식 승강로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2.1에 따라 개구부가 없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주행구간에 설치된 칸막이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1.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2에 따른 최하층 승강장 바닥 위로 2.5 m 이상 연장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 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2.3에 따라 승강로 전체 높이까지 칸막이가 연장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반-밀폐식 승강로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3.2에 따라 적합한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승강로 환기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카와 카 출입구를 마주하는 벽 사이의 틈새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아) 승강로 내 도르래·풀리 및 스프로킷의 보호수단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7에 따라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자) 승강로 아래에 접근공간이 있는 경우,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에 따라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차) 건축 관련 요구사항(특히, 유리 관련)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카) 경사형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8에 따른 다른 용도의 설비가 없는지 확인한다.

예 ■

타) 승강로에 설치된 점검문 및 비상문, 점검 트랩문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파) 승강로(주행구간)아래 사람이 접근할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2에 따라 적절한 칸막이로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하) 승강로 내부에 편향 풀리가 설치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2에 따라 승강로 외부에서 유지보수, 점검운전 및 작동시험 등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4.7 승강장문

가) 승강장문의 유효높이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3.1에 따라 2 m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나)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1에 따라 6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다) 자동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에 함몰되거나 돌출된 부분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5.1에 따라 3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라) 승강장문에 방화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2에 따라 관련규정에 적합한 승강장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승강장문에 유리가 사용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2.3.5에 따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어린이 손끼임방지 수단(틈새)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5.2.2.1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틈새 ■ ㎜ 예 ■

2.4.8 조명 및 콘센트

가) 승강로 내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9 및 14.5.5에 따라 조도, 조명위치 및 점멸수단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작업구역 ■ lx 예 ■ / 이동통로 ■ lx 예 ■

나) 피트 내 콘센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4.4나)에 따라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4.9 카 및 균형추/평형추의 주행안내 레일

가) 주행안내 레일이 제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카 □ 예 ■ / 균형추 □ 예 ■

나) 주행안내 레일의 고정간격이 제출된 서류(레일 관련 서류 및 도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

2.5. 카, 운전 및 접근허용

2.5.1 카

가) 카의 정격하중이 인증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격하중 ■ kg

나) 카의 유효면적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2에 따라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유효면적 ■ ㎡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적재 및 하역을 위한 운송장치의 무게가 카의 정격하중 계산에서 제외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2.2에 따른 운송장치의 최대무게가 승강장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카 내부의 유효높이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에 따라 2 m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마) 카에 유리가 사용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3.1.6에 따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카문 해당없음 ☐ 예 ■ / 카벽 해당없음 ☐ 예 ■

바) 카의 재질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3.3에 따라 불연재료인지 확인한다.

예 ■

사) 카 바닥에서 1.1m 미만에 유리가 사용된 카벽의 경우, 손잡이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3.1.4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유리와 독립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아) 카 내부(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장의 적재구역)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2.2.1에 따른 정격하중 등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자) 비상통화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2.3에 따라 적합하고, 카 내에서 건물 내 및 유지관리업체 등으로 통화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차) 카의 환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6에 따라 적절한지 확인한다.

예 ☐

카) 카의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7.1에 따라 5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 lx 예 ■

타) 카의 비상등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7.4에 따라 5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 lx 예 ■

파) 카의 과부하감지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2.5에 따라 적합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하) 에이프런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4에 따라 관련치수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치수 예 ☐ 설치상태 예 ■

거) 전기안전장치를 포함한 카의 비상구출문 및 비상문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5.2 카 지붕

가) 점검운전 조작반, 정지장치 및 콘센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5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지붕의 점검운전 스위치가 점검 위치에 있을 때「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2.1에 따라 정상운전제어, 전기적 비상운전, 착상 및 재-착상, 도어작동 제어가 무효화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카 지붕의 보호수단 및 보호난간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3.3.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5.3 카문

가)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6.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자동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은 함몰되거나 돌출된 부분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1에 따라 3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다) 어린이 손끼임방지 수단(틈새)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2.2.1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 ■

라) 카 문의 문턱과 승강장문의 문턱 사이의 수평 거리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2에 따라 35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마) 카 문과 승강장문 전체가 정상 작동하는 동안, 카문의 앞 부분과 승강장문 사이의 수평 거리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3에 따라 0.12 m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바) 승강로 내측과 카 문턱, 카 문틀 또는 카문의 닫히는 모서리 사이의 수평거리가「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1에 따라 0.15 m 이하, 화물용의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0.20 m 이하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잠금해제구간에서만 열리는 카문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1나) 및 12.2.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아) 문의 개폐방식이 조합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4에 따라 문과 문 사이의 틈새는 150 ㎜ 이내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5.4 승강장 문 및 카 문의 시험

가) 문이 닫히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힘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2.2.1가)에 따라 150 N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문의 운동에너지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2.2.1나)에 따라 10 J 이하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문닫힘 안전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2.2.1다)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문 열림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8에 따라 카가 승강장에 있을 때 열림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문닫힘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무효화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2.2.1다)에 따라 문이 닫히는 운동에너지는 4 J 이하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150 N의 기계적인 힘을 가할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2.2.1에 따라 문의 틈새가 중앙 개폐식 문은 25 ㎜, 측면 개폐식 문은 50 ㎜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잠금해제구간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1.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 측면 장착문의 경우 경사각에 따라 양 측면에서 0.2 m 이하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 전면 장착문의 경우, 카 문턱과 승강장문 문턱 사이 수평거리는 35 m 이하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아) 승강장 바닥의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6.1에 따라 5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승강장 조도 [redacted] lx 예 ■

자) 카가 잠금해제구간 밖에 있을 때,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3.3.3 및 8.7.6에 따라 승강장문이 100 ㎜ 열린 상태에서 자동으로 닫히고 잠기는지 확인한다.

예 ■

차) 승강장문의 비상잠금해제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3.3에 따라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잠금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카)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에 문이 확실하게 잠기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이 부착되거나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타) 잠금해제구간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1.2에 따라 전원을 끄고 300 N 미만의 힘으로 카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파) 접이식 문이 열리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힘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2.2.1라)에 따라 150 N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하) 카문의 개방을 제한하기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1.3에 따라 카문의 열림이 50mm 이상 열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2.3에 따라 수직개폐식 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너) 각 승강장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접점이 개방되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4에 따라 잠금해제구간 밖의 카가 정지하고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더) 승강장문의 닫힘 및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장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3에 따라 작동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러) 카문의 잠금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1.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머) 카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9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버) 수동개폐식 문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6.2에 따라 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5.5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 무선 통신장치

가)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 카 내부에 표시되는 내용과 글자 크기의 높이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6 나)에 따라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무선통신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6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봇이 KS B 7317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안전성 평가서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5.6 정상운전 제어

가) 정상운전 제어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2.1.2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2.3에 따라 시각적 표시 또는 신호가 카 내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에 정지했는지 알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2.6.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제동 및 권상

2.6.1 매다는 장치

해당없음 □

2.6.1.1 로프 /벨트

해당없음 □

가) 본수 설계 [본] 측정 [본]

나) 지름/두께 설계 [mm] 측정 [mm]

2.6.1.2 로프 끝부분 처리

해당없음 □

카측 [ ], 균형추(평형추) [ ]

가) 로프의 단말부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1.4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로프 간의 분산하중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6.1.3 체인

해당없음 □

가) 본수 설계 [ ] 측정 [ ]

나) 호칭번호 설계 [mm] 측정 [mm]

다) 체인의 끝 부분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2에 따른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체인 간의 분산 하중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6.2 매다는 장치의 이완감지

매다는 장치에 이완감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5에 따라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6.3 보상수단

가) 보상수단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6.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설계 ☐

확인 ■ 예 ■

나) 튀어오름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6.2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6.4 권상/제동 해당없음 ☐

가) 오버밸런스율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 % 예 ■

나) 카에 125% 부하 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4.2.1에 따라 브레이크 작동에 의해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감속도 ☐ g 예 ■

다) 하나의 브레이크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4.2.1에 따라 정격속도 및 정격하중으로 하강하는 카(또는 무부하 상태로 상승하는 카)를 감속, 정지 및 정지 상태로 유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라)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4.2.4에 따라 적재하중을 카에 싣고 브레이크를 수동 개방 할 경우, 카가 인접층으로 이동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마) 로프 권상 시 다음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1) 125%로 적재될 때 승강장 바닥 높이에서 미끄러짐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2) 무부하의 정격속도로 상승운행 중 비상정지 시켜 로프와 도르래간 과도한 미끄러짐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3) 125%로 적재된 상태에서 정격속도로 하강운행 중 비상정지 시켜 로프와 도르래간 과도한 미끄러짐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카 또는 균형추가 완충기를 완전히 누르고 있을 때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3다)에 따라 로프가 미끄러지거나 구동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2.7. 안전회로

2.7.1 안전접점 및 회로

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1.5에 따라

설치되고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피트, 기계실 및 풀리실, 카 지붕, 점검운전 조작반, 엘리베이터 구동기 및 패널의 정지장치 작동 시 카의 움직임이 방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승강장 문짝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6.2에 따라 모두 전기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로프 또는 체인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5에 따른 이완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완충기 행정을 감소하기 위한 전기적 강제감속 시스템이 있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8에 따라 최상층 및 최하층에 도착하기 전에 감속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전기안전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1.2에 따라 작동될 경우, 카의 움직임이 방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2.8. 카 및 균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와 과속에 대한 보호

2.8.1 카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가 균일하게 분포된 부하와 특정한 속도 초과로 과속조절기가 작동되면 하강방향으로 움직이는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1) 권상구동식의 완충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은 정격하중과 정격속도

해당없음 □ 예 ■

2) 권상구동식의 점차 작동형은 125%의 하중과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3) 포지티브 구동식의(화물용 제외) 점차 작동형은 100%의 하중과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나) 카의 수평도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8.7에 따라 5 %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위의 가) 검사 후,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8.5에 따라 정상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8.8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2.8.2 카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의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9.8.1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9.7에 따라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 지름이 인증서와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과속조절기 로프의 지름 _____ ㎜ 예 ■

2.8.3 균형추 및 평형추측의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다음의 속도로 빈 카를 운전하면서 추락방지안전장치가 하강하는 균형추/평형추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점차 작동형은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나) 위의 가) 검사 후,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2.8.4 균형추/평형추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설치된 경우, 과속조절기의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9.8.1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과속조절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9.7에 따라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의 지름이 인증서와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과속조절기 로프의 지름 _____ ㎜ 예 ■

2.8.5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가)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가 빈 카에서 정격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10.2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10.6에 따라 작동 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위의 가) 검사 후,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2.8.6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장치

가)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11에 따라

자체감시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11.5에 따라 보호거리 내에서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11.7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2.9. 주행성능 측정

2.9.1 일반적인 주행시험

경사형 엘리베이터의 주행구간에서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주전원 전류가 최대 부하에서 전동기에 지정된 전류 값 이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설계 [A] / 측정 [A]

나) 카가 주행하는 중간지점에서 카의 속도와 모터의 전류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카의 부하상태	운행 방향	속도(m/s)	전류(A)	제착상 (<0.3m/s)	점검운전 (<0.63m/s)	비상운전 (<0.63m/s)
무부하	상승					
	하강					
오버밸런스율	상승					
	하강					
정격하중	상승					
	하강					

다) 권상구동 엘리베이터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6에 따라 주행구간의 중간에서 측정한 속도가 정격속도의 92% 이상 105% 이내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착상정확도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2에 따라 모든 승강장에서 ±10 ㎜ 이내이고, 적재 또는 하역 중에는 ±20 ㎜ 이내인지 확인한다.

예 ■

2.10. 보호장치

2.10.1 전동기의 보호

권상 및 포지티브 구동방식에서 온도감지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3.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10.2 승강장문, 카문 및 기타 전동기의 보호

해당없음 □

승강장문, 카문 및 기타 전동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3.3에 따라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2.10.3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0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10.4 조명 및 콘센트의 보호

모든 조명 및 콘센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5.5 및 14.5.6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11 전기적 보호

2.11.1 절연저항

가)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전동기 절연저항 _____ MΩ 예 ■

나) 조명장치의 절연저항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조명장치 절연저항 _____ MΩ 예 ■

2.11.2 접지

엘리베이터의 모든 활성상태의 전기부품과 주 접지단자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5에 따라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2.11.3 전기배선

가) 이동케이블을 포함한 전기배선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5.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제조시방에 따라 EMC 적합배선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제어패널 및 기타 전기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2 및 14.1.2에 따라 IP2X 이상으로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제어패널 및 기타 전기장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2에 따라 직접 접촉에 대하여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전기배선의 늘어짐 및 손상을 확인하고 모든 접지선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5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12 기술서류

엘리베이터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13 표시 등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작동 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14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사형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해당없음 ☐

2.14.1 소음 및 진동 측정

정격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10회 왕복운행을 한 후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소음 [dB(A)] 진동(X축/Y축/Z축) [gal/ gal/ gal] 예 ■

2.14.2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시험

정격하중과 정격속도로 2.8.1 및 2.8.3에 따른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지적사항]

3. 에스컬레이터 설치검사기준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1 기본 제원

3.1.1 일반사항

■ 현장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호기(설치위치)

■ 승강기번호

■ 승강기 인증번호

■ 모델명/제품명

■ 층고

■ 경사도

■ 공칭폭

■ 정격속도

■ 설치형태 ☐ 단독 ☐ 평행배치 ☐ 교차배치 ☐ 연속배열

3.1.2 공급전원

구 분	설 계	현 장
전압 (V)		
주파수(Hz)		

가) 전용전원으로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영구적인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비고 전원 공급 장치가 시험 시점에서 영구적이지 않은 경우, 전원 관련 시험은 작동하기 전에 반복해야 할 수 있음

3.1.3 구동기 설치 위치

☐ 골조 구조물(Truss) 내부 ☐ 골조 구조물(Truss) 외부

3.1.4 제어반 설치 위치

☐ 골조 구조물(Truss) 내부 ☐ 골조 구조물(Truss) 외부

3.1.5 디딤판 형식

☐ 스텝식 ☐ 팔레트식 ☐ 벨트식

3.1.6 구동방식

☐ 체인식 ☐ 기타방식_____

3.1.7 구동 운전방식

☐ 인버터식 ☐ Y-△식 ☐ 직결식 ☐ 기타방식_____

3.1.8 전동기

구 분	설 계	현 장
전동기 수	대	대
출 력(kW)	kW	kW
전 압(V)	V	V
전 류(A)	A	A
회전속도	rpm	rpm

3.1.9 감속기

구 분	설 계	현 장
감속기 수	대	대

3.1.10 감속기 형태

☐ 웜/헬리컬기어 ☐ 헬리컬 기어 ☐ 기타_____

3.1.10.1. 적용될 경우, 감속기 오일양을 확인한다. 예 ■

3.1.11 브레이크(「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2.1 참조)

구 분	설 계	현 장
브레이크 형태	☐전자기계식 ☐기타_____	☐전자기계식 ☐기타_____
브레이크 수		

3.1.12 보조 브레이크(「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2.2 참조) 해당없음 ☐

구 분	설 계	현 장
보조 브레이크 수		

3.1.13 기타

가) 수동핸들을 비치하는 경우, 수동핸들은「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1.4에 따라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자동운전 방식(준비운전)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골조 구조물(Truss)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5.2.1에 따라 보호조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브레이크와 디딤판 구동기 사이는「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1.3.1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는「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5.9에 따라 화재 보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바) 기계류 공간 및 구동 순환장소는「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5.8.1에 따라 운전, 유지보수 및 점검에 필요한 설비만 있으며, 움직이는 부품에 대한 보호 및 방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사) 기계류 공간 및 구동 순환장소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5.8.2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2 안전부품

3.2.1 제어반

가) 제어반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제어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3.2.2 구동기

가) 구동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구동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3.2.3 과속역행방지장치

해당없음 □

가) 과속역행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역행방지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3.2.4 구동체인

해당없음 □

가) 구동체인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구동체인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3.2.5 디딤판

가) 디딤판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디딤판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인증번호 [ ] 예 ■

다) 디딤판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3.1에 따라 구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3.2.6 디딤판 체인 해당없음

□

가) 디딤판 체인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디딤판 체인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3.3 일반정보

3.3.1 안전표시

사용 표지판, 표지 및 안내문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6.1에 따라 안전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3.2 수동핸들 지침

수동핸들이 제공될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6.1.3에 따라 사용지침이 근처에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운행방향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3.3 기계류 접근 출입문 안내

골조 구조물(Truss) 외부의 기계류 공간, 구동 및 순환장소가 있는 경우, 출입문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6.1.4에 따라 안내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3.4 비상정지장치 표시

모든 비상정지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6.1.2.2에 따라 적색으로 표시되고 비상정지장치 또는 그 근처에 "정지" 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3.5 유지보수 및 점검 중 접근방지 수단

유지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해 접근을 막는 수단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6.1.2.3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근처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3.6 자동 기동 운행방향 표시장치

자동 기동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경우, 운행방향 표시장치(시각 신호시스템)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6.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4. 설치현장 주변장치

3.4.1 접근금지장치

가) 에스컬레이터가 벽 근처에 위치하여 하부 외측 데크의 폭(b_{13})이 125 ㎜를 초과할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2에 따라 그 벽의 상·하부 끝에 접근금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인접한 평행 배치로 결합된 난간 데크의 폭(b_{14})이 125 ㎜를 초과할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2에 따라 접근금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4.2 미끄럼방지장치

손잡이 높이의 난간 데크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와 근처의 벽 사이에 있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2에 따라 미끄럼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4.3 디딤판 위 높이

디딤판 위의 틈새 높이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1에 따라 2.3 m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3.4.4 인접한 손잡이 및 장애물로부터의 보호

가) 평행하거나 교차형으로 근접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손잡이 간 거리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3에 따라 160 ㎜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건축물의 장애물로 인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4에 따라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4.5 승강장 공간

가) 에스컬레이터의 출구(승객 순환지역)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5에 따라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쇼핑 카트 및 수하물 카트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4.2에 따라 진입방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자유공간에 고정 안내 울타리 또는 운행 안내 표시 기둥이 설치될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5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4.6 방화셔터 인근의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승강장에 대면하는 방화셔터가 손잡이 반환부의 선단에서 2 m 이내에 설치된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5.1에 따라 방화셔터가 닫히기 시작할 때 연동하여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는 자동으로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4.7 연속되는 에스컬레이터 사이 공간

연속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사이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비상정지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5.2에 따라 디딤판이 콤 교차선에 도달하기 전 2 m ~ 3 m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4.8 손잡이 바깥쪽 건물난간

사람이 승강장에서 손잡이 바깥 끝단에 접촉할 수 있고, 추락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경우,「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7에 따라 진입방지 및 고정난간 설치 등 예방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4.9 조명 및 콘센트

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주변 또는 콤 부근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8, Ⅰ.2.9, Ⅰ.3.3 및 Ⅰ.3.4에 따라 조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콤을 포함한 승강장 조도 [ ] 예 ■

나) 골조 구조물(Truss) 내부의 구동·순환 장소 및 기기 공간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8.3에 따라 어느 한 곳에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용 조명이 비치되어 있으며, 각 장소에는 1개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5. 조명, 절연 및 접지

3.5.1 조명 절연저항

가) 손잡이 조명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절연저항이 1㏁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스커트 가드 조명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절연저항이 1㏁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콤 조명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절연저항이 1㏁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디딤판 하부 조명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절연저항이 1㏁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5.2 접지, 전동기 절연저항 및 배선

가) 전동기 절연저항이 1MΩ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제어반에는 접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정전기 방지조치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1.5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주 개폐기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1.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8.3, 5.11.4에 따라 전기배선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6 틈새

3.6.1 디딤판 주행안내

디딤판 주행안내 시스템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3.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6.2 스텝/팔레트 사이의 틈새

연속되는 2개의 스텝 또는 팔레트 사이의 틈새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3.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6.3 디딤판과 스커트 사이 틈새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의 디딤판과 스커트 사이의 수평 또는 수직틈새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5.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6.4 트레드 홈에 맞물리는 콤의 깊이

가) 콤 또는 콤의 지지구조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7.3.2.4에 따라 콤의 물림이 조정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나) 트레드 홈에 맞물리는 콤 깊이(h_8)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7.3.3.1에 따라 4 ㎜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다) 트레드 홈에 맞물리는 콤 틈새(h_6)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7.3.3.2에 따라 4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3.6.5 손잡이 외형 및 가이드/덮개

가) 손잡이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2 및 5.6.5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손잡이 중심선 사이 거리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3에 따라 스커트 사이의 거리보다 0.45 m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손잡이의 입구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6.6 손잡이 틈새

가) 손잡이 바깥 가장자리와 벽 또는 다른 장애물 사이의 거리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2.1 및 부속서 Ⅰ.2.2에 따라 80 ㎜ 이상이고, 손잡이 하부 모서리 아래에서 수직으로 25 ㎜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충돌방지를 위한 최소 자유구역 높이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2에 따라 디딤판에서 2.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3.7 전기 안전장치

3.7.1 유지보수 정지장치

구동 및 순환 장소에 유지보수 정지장치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17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7.2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8에 따라 승강장 또는 승강장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7.3 과부하(전류 증가)

전동기 과부하장치가 작동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1.3.2에 따라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7.4 과부하(온도 증가)

전동기 과부하장치가 온도상승에 의해 작동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1.3.3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7.5 과속감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는 과속이 발생하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2.3 및 5.12.2.7.2에 따라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정지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7.6 의도되지 않은 운행 방향의 역전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는 의도되지 않은 운행방향의 역전이 발생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2.3 및 5.12.2.7.3에 따라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정지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7.7 보조브레이크의 미-작동 감지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는 보조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4에 따라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7.8 인장장치의 과도한 움직임

디딤판 체인 인장장치의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3.3, 5.4.4.2 및 5.12.2.7.6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정지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7.9 디딤판 체인의 파단과 과도한 늘어짐

디딤판 체인의 파손 또는 과도한 늘어짐이 발생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3.1 및 5.12.2.7.5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정지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7.10 콤 안전장치

가) 콤 안전장치의 형태를 확인한다.

수평 감지식 ■ 수직 감지식 ■ 통합 감지식 ■ 기타 ■

나) 콤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이물질이 끼었을 때 등)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7.3.2.6 및 5.12.2.7.7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정지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7.11 연속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추가 정지장치

중간 출입구 없이 연속되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8 및 부속서 Ⅰ.2.6에 따라 1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면 나머지 1대도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7.12 손잡이 인입구 장치

손잡이 인입구에 이물질이 끼이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4.3 및 5.12.2.7.9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7.13 스텝/팔레트 처짐 감지 장치

스텝 또는 팔레트에 처짐이 발생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7.2.5 및 5.12.2.7.10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는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기동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7.14 스텝/팔레트 누락 감지 장치

스텝 또는 팔레트가 누락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3.6 및

5.12.2.7.11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7.15 브레이크의 미-작동 감지장치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운행 시작 후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개방되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12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7.16 손잡이의 속도 편차 감지

손잡이와 디딤판 사이 속도차가 발생하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1 및 5.12.2.7.13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7.17 점검용 덮개 열림

점검용 덮개가 제거되거나 열리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2.1.6, 5.2.4 및 5.12.2.7.14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7.18 과도한 정지거리

과도한 정지거리가 발생되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10에 따라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7.19 접지 결함

안전장치가 있는 회로의 접지결함은「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1.4에 따라 구동기를 정지시키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7.20 수동핸들의 설치 감지

탈착 가능한 수동핸들이 제공되는 경우, 수동핸들이 장착되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1.4 및 5.12.2.7.16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7.21 점검운전 제어장치의 정지장치 작동 감지

점검운전 제어장치에 있는 정지장치가 작동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18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7.22 쇼핑 카트 및 수하물 카트 진입방지대 감지

양방향 운행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에서 자유구역에 이동식 진입방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 진입방지대 유무를 감지하는 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19 및 부속서 I .4.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7.23 고장 잠금 기능

전기 제어장치 및 기능의 시작을 방지하는 기능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8에 따라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8. 운전장치

3.8.1 점검운전 제어장치

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유지보수, 수리 및 점검을 위해 휴대가 쉽고, 수동으로 작동하는 점검운전 제어장치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13.1에 따라 대당 1개 이상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점검운전 제어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13.1 및 5.12.3.13.3에 따라 조작되며, 운행방향버튼에는 운행방향이 버튼 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점검운전 제어장치의 이동케이블 연결을 위한 점검용 콘센트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13.2에 따라 적어도 각 승강장[골조 구조물(Truss) 내의 구동 및 순환 장소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어떤 곳이든 도달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점검운전 시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13.4에 따라 점검운전 제어장치가 기동시키는 유일한 수단이고, 2개 이상의 점검운전 제어장치가 점검용 콘센트에 연결된 경우, 모든 점검운전 제어장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기동시킬 수 없는지 확인한다.

예 ■

3.8.2 수동 기동 운전

가) 수동 기동 운전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2 및 5.12.3.11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정지하기 전 운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수단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6에 따라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8.3 자동 기동 운전 –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기동/양 방향 기동

해당없음 □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기동 ■ / 양 방향 기동 ■

가) 이용자의 진입을 감지하여 자동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3.1 또는 5.12.3.4.1에 따라 이용자가 콤 교차선에 도착할 때 공칭속도 0.2배 이상으로 움직이고, 이용자가 출입 시 감지수단을 우회할 수 없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자동 운전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3.2, 5.12.3.4.2 및 6.2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시각 신호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이용자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미리 정해진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에 5.12.3.3.1 및 5.12.3.3.2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10초 이상 운행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이용자를 감지하는 장치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3.3 또는 5.12.3.4.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감지수단이 작동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7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비상정지스위치에 의해 정지된 후 자동-재기동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설치된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12에 따라 자동-재기동이 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9 디딤판, 손잡이, 난간 및 주변보호

3.9.1 디딤판 주행

디딤판은 각각의 운행방향에 대해 상호 디딤판, 스커트 패널, 콤, 디플렉터 및 기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구조 부품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9.2 손잡이 주행

손잡이는 각각의 운행방향에 대해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구조 부품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9.3 승강장

승강장에 충분한 자유공간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5에 따라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9.4 승강장 표면

가) 승강장 표면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7.1에 따라 콤의 빗살에서 0.85 m 이상이고 안전한 발판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디딤판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7.2.1 또는 5.7.2.4에 따라 수평 또는 경사도로 운행되도록 안내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9.5 스커트 및 스커트 디플렉터

가) 스커트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스커트 디플렉터는「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3.4다)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9.6 난간 및 뉴얼

가) 난간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뉴얼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9.7 기어오름 방지장치 및 접근 금지장치

가) 기어오름방지장치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2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접근금지장치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2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9.8 미끄럼방지장치

미끄럼방지장치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2나)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9.9 안전 보호판

안전 보호판(고정식/비고정식)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9.10 쇼핑카트

쇼핑카트를 사용하는 곳 주변의 에스컬레이터가 쇼핑카트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4에 따라 진입을 방지하는 접근 방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9.11 옥외용 에스컬레이터의 추가요건 해당없음 □

가)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투영면적 바로 위에 보호 덮개가 설치되거나 눈·비 등에 젖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한 디딤판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7.2.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난방시스템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7.2.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배수 및 정화시설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7.2.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승강장 플레이트 및 콤 플레이트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7.2.4에 따라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조명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7.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10 주행성능 측정

3.10.1 속도, 전류 및 정지거리

가) 무부하 상태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다음을 측정하여 기록하되, 2대 이상의 전동기가 설치된 경우, 각 전동기에 대해 측정한다.

구 분		순방향(상승)	역방향(하강)
디딤판 속도			
핸드레일 속도	좌 측		
	우 측		
전류			
정지거리			

나) 디딤판의 속도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1.2에 따라 공칭속도의 ±5%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속도차이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1에 따라 0~2% 이내인지 확인한다.

예 ■

라) 핸드레일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1에 따라 정상운행 중 운행방향의 반대편에서 450N의 힘으로 당겨도 정지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10.2 보조브레이크

정상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2.2에 따라 보조브레이크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11 표시 등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작동 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1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에스컬레이터의 추가요건 해당없음 □

무부하 상태에서 전 구간 10회 운행을 한 후 주행 중 소음 및 진동값을 기록한다.

소음 [dB(A)] 진동(X축/Y축/Z축) [gal/ gal/ gal] 예 ■

[지적사항]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검사기준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4.1 기본제원(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작성하시오)

■ 현장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호기(설치위치)	■ 승강기번호
■ 승강기 인증번호	■ 모델명/제품명

■ 운행층수(전체)

· 정면

· 후면

· 측면

■ 정격하중(kg)

■ 구동방식

권상/포지티브/유압

■ 기어형식 WG,HG,GL,Etc

■ 기계실 위치

☐ 승강로 상부 ☐ 승강로 아래 ☐ 승강로 측면 ☐ 기타 위치

■ 전원공급

· 전압(V)

· 주파수(Hz)

■ 정격속도(m/s)

■ 출입문개폐방식

■ 운행거리(m)

위의 모든 사항은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4.2 안전부품(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작성한다.)

4.2.1 제어반 해당없음

☐

가) 제어반의 외부에서 수행된 모든 시험을 확인한다.

예

나) 제어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예

4.2.2 구동기 해당없음

☐

가) 구동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구동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4.2.3 카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작동속도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4.2.4 균형추/평형추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작동속도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4.2.5 카측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4.2.6 균형추/평형추측 추락방지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4.2.7 매다는 장치 해당없음

□

가) 매다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매다는 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4.2.8 출입문 잠금장치 해당없음

□

가) 출입문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모든 출입문 잠금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4.2.9 카측 완충기 해당없음 □

가) 카측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완충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4.2.10 균형추측 완충기 해당없음 □

가) 균형추측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완충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4.2.11 립처밸브 해당없음 □

가) 립처밸브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립처밸브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4.2.12 유량제한기 해당없음 □

가) 유량제한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유량제한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4.2.13 이동케이블 해당없음 □

가) 이동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이동케이블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인증번호 [ ] 예 ■

4.3 기계실(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작성한다)

4.3.1 기계실의 시공 및 설비

4.3.1.1 주개폐기

가) 주개폐기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4에 따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A 예

나) 주개폐기를 차단한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4.2에 따라 잠글 수 있는지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다) 주 개폐기 차단 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4.1 및 13.4.3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라) 주개폐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4.2에 따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고, 여러 대의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등 다른 승강기가 있는 경우 쉽게 식별되는지 확인한다.

예

4.3.1.2 접근 및 출입

가) 구동기 및 관련 설비의 접근 및 출입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1에 따라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나) 출입할 수 없는 기계실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2에 따라 점검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다) 출입할 수 있는 기계실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3에 따라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라) 구동기 및 관련 장치에 출입할 수 있는 계단 등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4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4.3.1.3 안전표시

가) 표시 및 주의사항 등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4에 따라 식별/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나) 위험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회전부품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9에 따라 부분적으로 노란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예

4.3.1.4 구동방식

설치된 구동방식(권상식, 유압식)을 확인한다. 예

4.3.1.5 제어방식

설치된 제어방식을 확인한다. 예

4.3.1.7 비상운전

가) 비상운전장치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2.2 및 12.3.9에

따라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실 근처에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4.1.2 및 12.3.9.2에 따라 잠금해제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비상운전장치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4 및 12.3.9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고장처리 및 비상해제 열쇠 사용 지침 등 관련 설명서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4.3에 따라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4.3.2 기계실의 내부

가) 기계실에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1에 따라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실 작업공간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2.1에 따라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실 출입문(점검문)의 구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 및 6.2.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실의 환기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2.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마) 조명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작업구역 ■ lx 예 ■

바) 콘센트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4에 따른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4.4 승강로

4.4.1 피트내 장치 해당없음 □

가) 피트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 피트 내의 기계적 정지장치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4.2 및 14.2.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피트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 피트 내의 콘센트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4.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피트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승강로 외부에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4.4에 따라 청소가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4.2 틈새 및 여유거리

가) 권상구동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해당없음

☐

- 균형추가 가장 낮은 위치일 때 카 주행레일의 길이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1.1에 따라 가이드 슈/롤러 위로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 m 예 ■

- 카가 가장 낮은 위치일 때 균형추 주행레일의 길이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1.2에 따라 가이드 슈/롤러 위로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 m 예 ■

나) 포지티브구동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해당없음

☐

- 카 주행안내 레일의 길이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2.1에 따라 최상층 위로 승강로 천장에 충돌하기 전까지 최소 0.2 m 이상 연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m 예 ■

- 카가 고정된 쐐기 또는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에 위치할 때 평형추 주행안내 레일의 길이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2.2에 따라 가이드 슈/롤러 위로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 m 예 ■

다) 유압구동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해당없음

☐

- 카 주행레일의 길이는 램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3.1에 따라 가이드 슈/롤러 위로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 m 예 ■

- 평형추 주행안내 레일의 길이는 카가 고정된 쐐기 또는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에 위치할 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3.2에 따라 가이드 슈/롤러 위로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 m 예 ■

4.4.4 완충기 해당없음

☐

4.4.4.1 카측 완충기 해당없음

☐

가) 완충기가 확실하게 고정되고 충돌지점에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선형)

피트 틈새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완충기 행정거리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확인 ■ m 예 ■

다)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비선형)

피트 틈새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완충기 행정거리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확인 ■ m 예 ■

라) 에너지 분산형 완충기(유압식) 해당없음

□

1) 정격하중, 정격속도의 카를 완충기와 충돌시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또는 완충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 ■

2)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4.1에 따라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복귀되는지 감지하는 전기안전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3) 피트 틈새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완충기 행정거리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확인 ■ m 예 ■

4.4.4.2 균형추측 완충기 해당없음

□

가)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선형) 해당없음

□

상부 틈새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완충기 행정거리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확인 ■ m 예 ■

나)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비선형) 해당없음

□

상부 틈새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완충기 행정거리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확인 ■ m 예 ■

다) 에너지 분산형 완충기(유압식) 해당없음

□

1) 빈 카의 균형추를 정격속도로 완충기와 충돌 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 ■

2)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4.1에 따라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복귀되는지 감지하는 전기안전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3) 상부 틈새거리 계산에 사용되는 완충기 행정거리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확인 ■ m 예 ■

4.4.5 승강로 내의 보호

가) 밀폐식 승강로의 경우에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2.1에 따른 개구부를 제외한 개구부가 없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주행구간에 설치된 칸막이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5.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여러 대의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5.2에 따라 최하층 승강장 바닥 위로 2.5 m 이상 연장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승강로 환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2.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카 출입구와 마주하는 승강로 벽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1.2에 따라 30 ㎜ 이내인지 확인한다.

예 ■

바) 도르래, 풀리 및 스프라켓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6에 따라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피트 바닥 직하부에 접근공간이 있는 경우,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4, 9.7 및 10.3.1에 따른 추락방지안전장치 또는 완충기, 멈춤쇠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아) 건축관련 요구사항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자)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다른 용도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예 ■

차) 승강로에 설치된 점검문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2.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4.6 승강장문

가) 승강장문의 크기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에 따라 카 출입구 유효크기와 같거나 작은지 확인한다.

예 ■

나)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자동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1.3에 따라 함몰되거나 돌출부분이 3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4.4.7 카 및 균형추/평형추의 주행안내 레일

가) 주행안내 레일이 제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카 ☐ 예 ■ / 균형추 ☐ 예 ■

나) 주행안내 레일의 고정간격이 제출된 서류(레일관련 서류 및 도면 등)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

4.5 카, 점검운전 및 접근허용

4.5.1 카

가) 카의 정격하중이 인증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유효면적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2에 따라 정격하중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측정 ■ ㎡

다) 카의 치수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1(바닥면적 1㎡ 이하, 깊이 1m 이하, 높이 1.2m 이하)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카의 재질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3.2.4에 따라 불연재료인지 확인한다.

예 ☐

마) 에이프런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4.1에 따라 관련치수 및 설치상태는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바) 에이프런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4.2에 따라 승강장 바닥에 고정된 자동 받침대 문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카 출입구에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5에 따라 승강로 벽과 충돌을 방지하는 수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5.2 카문 해당없음 ☐

가) 카 문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6.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문을 닫았을 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6.2에 따라 카 출입구를 완전히 막는지 확인한다.

예 ■

4.5.3 승강장 문 및 카 문의 시험

가) 동력 작동식 문인 경우, 문이 닫히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힘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1.1 및 8.7.1.1에 따라 150 N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동력 작동식 문인 경우, 문닫힘 안전장치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1.2 및 8.7.1.2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열리는 방향으로 150 N을 가할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2.3.2에 따라 문 벌어짐이 중앙 개폐식 문은 45 ㎜, 측면 개폐식 문은 30 ㎜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잠금해제구간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에 따라 승강장 바닥 위·아래로
0.1 m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승강장 조명장치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1에 따라 조도 5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lx 예 ■

바) 승강장문이 카 문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3.2 및 7.7.5에 따라 해제하면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잠기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승강장문의 비상잠금해제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3.2에 따라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잠금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아) 수직개폐식 문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자) 각 승강장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접점이 개방되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4에 따라 잠금해제구간 밖의 카가 정지하고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차) 승강장문에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3.1에 따라 잠금을 입증하는 기계적 잠금장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카) 잠금해제구간 밖에서 카/승강장문 접점 또는 여러 개의 문중 어느 하나라도 열려 있을 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2.1에 따라 카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타) 수동개폐식 문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에 따라 카의 유무를 알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6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제동 및 권상

4.6.1 매다는 장치

해당없음 ☐

4.6.1.1 로프

해당없음 ☐

가) 본수 설계 [ ] 측정

[ ]

나) 지름 설계 [ ] mm 측정

[ ] mm

4.6.1.2 로프 단말처리 해당없음

☐

카측 [ ], 균형추/평형추측 [ ]

가) 로프 단말사이의 연결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2.2에 따라 제작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로프 간의 분산 하중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4.6.1.3 체인 해당없음

☐

가) 본수 설계 [ ] 측정

[ ]

나) 호칭번호 설계 [ ] 확인

[ ]

다) 체인 간의 분산 하중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5에 따라 체인 사이의 하중을 분산하는지 확인한다.

예 ■

4.6.2 매다는 장치의 이완감지장치 해당없음

☐

매다는 장치에 이완감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7 및 12.3.13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4.6.3 권상/제동 해당없음

☐

가) 오버밸런스율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 ] % 예 ■

나) 카에 125% 부하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3.2.1에 따라 브레이크 작동에 의해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감속도 [ ] g 예 ■

다) 로프 권상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3.1에 따라 적합한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무부하 정격속도로 상승운행 중 비상정지시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2) 정격하중의 125%를 싣고, 정격속도로 하강운행 중 비상정지시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균형추가 완충기를 누르고 있을 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3.1가)에 따라 로프가 미끄러지고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4.7 안전회로

4.7.1 안전접점 및 회로

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에 따라 설치되고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피트, 기계실 및 풀리실, 카상부, 점검장치,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기계 및 패널에 설치된 정지장치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2.2에 따라 작동 시 카의 움직임을 방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문 개방된 상태에서의 착상 및 재-착상은「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2.1.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승강장 문짝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5.2에 따라 모든 문짝에 전기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로프 또는 체인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3.13에 따른 이완감지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전기안전장치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2에 따라 작동될 경우 카의 움직임을 방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4.8 카/균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와 과속에 대한 보호

4.8.1 카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는 균일하게 분포된 부하와 다음 특정한 속도 초과로 과속조절기가 작동되고 하강방향으로 움직이는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1) 권상구동식의 즉시 작동형, 정격하중과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2) 유압구동식의 즉시 작동형, 125%의 하중과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3) 권상구동식의 점차 작동형, 125%의 하중과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4) 포지티브 구동식 및 유압구동식의 점차 작동형, 정격하중과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해당없음 ☐ 예 ■

나) 검사 후,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8.5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4.8.2 카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의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9.2에 따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9.2.8에 따라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 지름이 인증서와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과속조절기 로프의 지름 _____ ㎜ 예 ■

4.8.3 균형추 및 평형추측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다음의 속도로 빈 카로 운전하면서 추락방지안전장치가 하강하는 균형추/평형추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즉시 작동형 해당없음 ☐ 예 ■
- 정격속도(필요한 경우 점검속도), 점차 작동형 해당없음 ☐ 예 ■

나) 검사 후,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4.8.4 균형추/평형추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설치된 경우, 과속조절기의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9.2에 따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과속조절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9.2.8에 따라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 지름이 인증서와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과속조절기 로프의 지름 _____ ㎜ 예 ■

4.8.5 범츰 쇠 장치 해당없음 ☐

가) 멈춤 쇠 장치는 균일하게 분포된 125%의 하중으로 하강 중인 정격속도의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확인한다.

예 ■

나) 검사 후,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4.8.6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 해당없음 □ 예 ■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2.1.3에 따라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4.9. 주행성능 측정

4.9.1 일반적인 주행시험

가) 주전원 전류가 최대 부하에서 전동기가 지정된 전류 값 이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설계 [ ] A / 측정 [ ] A

나) 카가 주행하는 중간지점에서 카의 속도와 전동기의 전류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카의 부하상태	운행 방향	속도(m/s)	전류(A)	착상속도(< 0.8m/s)	재착상 (<0.3m/s)	점검운전 (<0.63m/s)	비상운전 (<0.3m/s)
무부하	상승						
	하강						
오버밸런스율	상승						
	하강						
정격하중	상승						
	하강						

다) 권상구동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5에 따라 주행구간의 중간에서 측정한 속도가 정격속도의 92~110% 이내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유압식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3.8에 따른 주행구간 중간에서 측정한 속도가 정상속도(빈 카의 상승, 부하가 있는 카의 하강)의 1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9.2 유압시스템의 점검 해당없음 □

가) 최상층에 있는 카의 전부하 압력을 확인한다.

[ ] bar

나) 릴리프 밸브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3.5.3에 따라 전부하 압력의 140 %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전 부하 압력의 200 %를 유압시스템에 5분 동안 가해지는 경우, 누유로 인한 압력저하가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전 부하 압력의 200% 시험 후 유압 시스템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마) 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지기 전에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3.13에 따라 더 이상 하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유압유의 온도감지장치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3.14에 따라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카가 과속으로 하강할 때 럽처밸브 또는 유량제한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3.5.5 및 12.3.5.6에 따라 균일한 정격하중의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4.10 보호장치

4.10.1 전동기의 단락 보호

전동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3.1에 따라 단락에 대해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4.10.2 전동기의 회로차단기

전동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3.2 및 13.3.3에 따라 회로가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10.3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8 또는 12.3.12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4.10.4 조명 및 콘센트의 보호

모든 조명 및 콘센트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6에 따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전원과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4.11 전기적 보호

4.11.1 절연저항

가)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전동기 절연저항 _____ MΩ 예 ■

나) 조명장치의 절연저항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조명장치 절연저항 ■ MΩ 예 ■

4.11.2 전기배선

가) 이동케이블을 포함한 전기배선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5.1 및 13.5.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제조시방에 따라 EMC 적합배선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실의 직접적인 접촉에 대비한 전기장치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2에 따라 IP2X 이상으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전기배선의 늘어짐 및 손상을 확인하고 모든 접지선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5.3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4.12 표시 등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작동 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4.13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해당없음 □

정격하중과 정격속도로 4.8.1 및 4.8.3에 따른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지적사항]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검사기준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5.1 기본제원

■ 현장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설치위치(호기)

■ 승강기번호

■ 승강기 인증번호

■ 모델명/제품명

■ 정격용량(kg) 설계 현장

■ 플랫폼 (폭 ㎜ × 길이 ㎜) 설계 × 현장 ×

비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8.3에 따라 길이는 1,400 ㎜ 이상이어야 한다.

■ 유효면적 (㎡) 설계 현장

비고 카의 유효면적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8.1에 따라 2 ㎡ 이하이어야 한다.

■ 정격속도(㎧) 설계 현장

■ 운행구간 설계 현장

■ 건물측 전원공급

· 전압(V) 설계 현장

· 주파수(Hz) 설계 현장

비고 전원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1에 따라 전용전원에 연결되어야 한다.

■ 전동기 전원공급

· 정격전압(V) 설계 ☐ 현장 ■

· 정격전류(A) 설계 ☐ 현장 ■

비고 구동기의 동작전압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에 따라 500V 이하

■ 구동방식

랙-피니언 구동방식	☐	5.9.3 참조
로프 및 체인 현수 구동방식	☐	5.9.4 참조
스크류-너트 구동방식	☐	5.9.5 참조
마찰 견인 구동방식	☐	5.9.6 참조
유도체인 구동방식	☐	5.9.7 참조
펜터그래프식 구동방식	☐	5.9.8 참조
유압 구동방식	☐	5.9.9 참조
2차전지 구동방식	☐	5.9.10 참조

■ 옥외 설치 해당없음

☐

가) 기계 및 전기부품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1.1에 따라 외부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로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1.2에 따라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배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밀폐된 승강로의 바닥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1.2에 따라 침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0예 ■

라) 전기설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2에 따라 IP 54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위의 모든 사항은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

5.2 안전부품

5.2.1 제어반

가) 제어반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제어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5.2.2 구동기

해당없음 ☐

가) 구동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구동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5.2.3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작동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5.2.4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5.2.5 매다는 장치

해당없음 ☐

가) 매다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매다는 장치 [ ] 예 ■

나) 매다는 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5.2.6 출입문 잠금장치

해당없음 ☐

가) 출입문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출입문 잠금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5.2.7 립처밸브/유량제한기 해당없음

□

가) 립처밸브/유량제한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립처밸브/유량제한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5.2.8 비상통화장치

가) 비상통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비상통화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5.2.9 이동케이블

가) 이동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이동케이블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 예 ■

5.3 일반사항

5.3.1 전용전원

가) 주개폐기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1에 따라 설치되고 적절한 용량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A] 예 ■

나) 주개폐기는 전원차단 위치 또는 차단상태에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1에 따라 잠글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주개폐기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1에 따라 조명기구 및 유지보수용 콘센트의 전원과 독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3.2 기계안전

가) 업무수행자 및 이용자 등을 위한 보호수단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3, 5.1.11.3, 5.1.4.4.2, 5.9.1 및 5.10.8.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보호수단을 고정하는 부품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3에 따라 보호수단 제거 후에도 보호수단 또는 기계장치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권상도르래, 풀리 및 스프로킷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7에 따라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3.3 조도 및 콘센트

가) 카 바닥, 카 조작반 및 승강장 문 근처의 조도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4에 따라 5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카 바닥 □ / 카 조작반 □ / 승강장 근처 □ 예 ■

나) 조명스위치를 설치한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4에 따라 비인가된 조작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비상등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4에 따라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에 연결되어 조도가 2 lx 이상이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즉시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조도 ■ 예 ■

라) 전원 콘센트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5에 따라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3.4 비상구출운전/수동운전

5.3.4.1 일반사항(유압구동방식 제외) 해당없음 □

가) 비상구출 운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15분 이내에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비상운전 설명서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6.1에 따라 경고문이 명시되어 보기 쉬운 곳에 부착 및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수권조작 장치 사용시 브레이크 수동 개방력이 30 N 이상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브레이크 개방 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브레이크 개방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지속적인 인력을 가해야 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예비전원 또는 장치를 사용하는 비상운전을 하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비상구출 운전장치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6.2에 따라 운행방향을 나타내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3.4.2 유압 구동방식에서의 비상운전 해당없음 □

가) 수동조작 비상하강밸브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7.1에 따라 승강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수동조작 비상하강밸브 조작시 카의 속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7.1에 따라 0.15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다) 수동조작 비상하강밸브 조작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7.1에 따라 지속적인 수동 작동력이 요구되며, 의도되지 않은 조작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간접 유압식의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7.1에 따라 밸브의 수동 작동으로 로프 또는 체인의 이완 및 램의 함몰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수동펌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7.2에 따라 추락방지안전장치 또는 클램핑 장치가 설치된 모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에 차단밸브와 체크밸브 또는 하강방향밸브 사이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수동조작 비상하강 밸브 근처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6.3에 따라 "위험-비상하강밸브"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3.5 경고 및 표시

승강기번호, 경고 및 표시 문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4, 6.1에 따라 부착 및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3.6 건물의 유효 틈새에 대한 요건

작업 공간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7에 따라 작업 구역 높이 및 수평 작업 구역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4 유지보수 및 검사를 위한 접근

5.4.1 일반사항

비상운전 및 동적시험에 필요한 장치들은「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1.3 및 5.1.4.2.3에 따라 승강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4.2 카 위 작업구역 해당없음 □

가) 기계적인 고정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5.1.4.1.2에 따라 승강로 내 고정부와의 틈새를 300 ㎜ 이상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에 천장이 있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5에 따라 다음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1) 천장 접근을 위한 문은 열쇠가 사용되어야 되며, 카의 정상적인 운전이 방지되어야 한다.

예 ■

2) 카의 정상 운행 복귀는 인가된 작업자만 접근 가능한 승강로 외부의 재-설정 장치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예 ■

3) 천장을 발로 밟는 것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야 한다.

해당없음 □ 예 ■

5.4.3 카 아래 작업구역

5.4.3.1 기계적 고정장치 해당없음 □

가) 카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카 하부 여유틈새가 500 ㎜ 미만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1가)에 따라 수동식 기계적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적 고정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1나)에 따라 피트 출입 전에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능의 사용목적과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적 고정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1다)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시각적 경고안내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4.3.2 피트 출입문 해당없음 □

피트 출입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1다)에 따라 열쇠로 열려야 하며, 열렸을 때는 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5.4.3.3 정상운행 재-설정

카의 정상적인 운행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1다)에 따라 업무수행자만이 접근 가능한 승강로 밖의 재-설정 장치에 의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5.4.3.4 피트에서의 점검운전 해당없음 □

카를 피트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1라)에 따라 5.5.17에 따른 점검운전이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4.3.5 피트에서 탈출

업무수행자가 카 아래 작업구역에 있을 때,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2에 따라 작업구역을 쉽고 안전하게 빠져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4.4 승강로 외부의 작업구역(점검문 및 트랩문) 해당없음 □

가) 승강로내 유지보수 및 점검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3 및 5.6.6에 따라 점검문 및 트랩문을 통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점검문 및 트랩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6.1 및 5.6.6.2에 따라 카의 운행에 간섭되지 않으며, 특수한 열쇠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다) 점검문 및 트랩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6.3 및 5.5.10에 따라 기계적으로 잠기는 구조이며, 전기적으로 제어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4.5 승강로 외부 설비 해당없음 □

가) 제어반, 구동기 등 설비의 일부분이 승강로 외부에 설치된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4에 따라 제작된 캐비닛 안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4.2에 따라 캐비닛의 개구부에 대한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4.6 점검운전 해당없음 □

점검운전 조작반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7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5. 주행안내 레일

5.5.1 일반사항

가) 카 지지/안내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1.1에 따라 승강로 벽의 내부 표면과 최대 설계하중을 적재한 플랫폼의 출입구 부품간의 수평 틈새가 20 ㎜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정격하중이 카 바닥 길이의 절반, 카 바닥 폭의 절반에 걸쳐 분포될 때,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1.2에 따라 카의 가장자리는 수평에서 ±10 ㎜ 이상 기울어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카 지지/안내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1.3에 따라 금속제로 제작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5.2 주행안내 레일

주행안내 레일, 주행안내 레일 이음부 및 부속품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1.4에 따라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는지 확인한다.

예 ■

5.6 승강로 및 카

5.6.1 일반사항

5.6.1.1 상부틈새

카가 최상부 기계적 정지장치와 접할 때,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 및 5.10.2에 따라 카의 바닥과 상부 장애물 사이의 여유틈새는 2 m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5.6.1.2 승강로 내 작업자에 대한 위험성

가) 승강로 내 갇힌 업무수행자를 위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 및 5.10.3에 따라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승강로 내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 및 5.10.3에 따라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와 관련 없는 설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2 밀폐식 승강로 해당없음 □

5.6.2.1 승강로 벽의 구조

가) 승강로 벽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1에 따라 수직으로 연속적인 평탄한 면을 형성하고 경질재료로 구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로 벽 내면의 함몰 또는 돌출부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2에 따라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최상층 승강로 벽의 높이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2.2 승강로 출입구

승강로 출입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1에 따라 승강장문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2.2.1 경첩이 부착된 승강장문

가) 카와 승강장문 출입구의 유효크기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8.4 및 5.8.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장문의 구조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2.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2.2.2 승강장문의 구조

가) 승강장문의 내부표면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4.1에 따라 연속적이고 단단한 매끄러운 수직면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장문의 내부표면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4.2에 따라 승강로 벽 내부 표면과 연속적인 평면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승강장문 상·하, 좌·우 틈새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4.4에 따라 6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라) 승강장문 끝부분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4.5에 따라 끼이거나 이탈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마) 단차로 램프가 설치되어야 하는 출입구의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4.6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6.2.3 출입문의 잠금

가)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5.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5.6에 따라 잠금 효력이 감소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5.9에 따라 보호되고, 점검창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2.4 비상잠금해제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6에 따라 비상잠금해제 삼각키를 사용하여 잠금 해제가 가능하고, 비상 해제 후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잠글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2.5 문 작동 중의 보호

자동으로 열리는 승강장문인 경우, 승강장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7.3에 따라 5초 이상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6.2.6 감지날, 포토셀 또는 광커튼

가) 감지날, 포토셀 또는 광커튼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2.1에 따라 협착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감지날, 포토셀 또는 광커튼의 작동시 정지거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2.2 및 5.9.2.3에 따라 카가 충돌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카의 감지날, 포토셀 또는 광커튼과 승강로 내벽 사이, 또는 카와 승강장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2.4에 따라 20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5.6.2.7 토가드

토가드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2.8 카 바닥 소재와 색상

카의 바닥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4에 따라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로 마감되고, 카 또는 승강장문의 문턱은 출입구 승강장과 색상 대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2.9 운전반

카 내 운전반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6 및 5.5.15.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2.10 카 내 손잡이

카 내 손잡이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7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2.11 접이식 의자 해당없음 □

접이식 의자가 설치된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9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3 비-밀폐식 승강로 해당없음 □

5.6.3.1 승강로 벽의 구조

가) 카의 플랫폼 가장자리에서부터 400 ㎜ 이내에 물체가 있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4.1에 따라 연속적인 수직면 형상이고, 경질재료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카의 어느 부분에서부터 120 ㎜ 이내에 위치한 물체의 함몰 또는 돌출부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4.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모든 중간층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4.4에 따라 마감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운전상 목적으로 필요한 홈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5에 따라 전단 또는 협착의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예 ■

5.6.3.2 승강로 출입구

5.6.3.2.1 승강장문 해당없음 □

가) 승강로 출입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1에 따라 승강장문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장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3.2.2 승강장문의 구조

가) 승강장문의 내부표면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4에 따라 연속적이고 단단한 매끄러운 수직면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장문의 내부표면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4에 따라 승강로 벽 내부 표면과 연속적인 평면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승강장문 끝부분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4에 따라 끼이거나 이탈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라) 승강장문의 크기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4.1에 따라 높이가 1,100 ㎜ 이상, 유효 폭은 800 ㎜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마) 승강장문의 하,좌,우 틈새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4.2에 따라 6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바) 단차로 램프가 설치되어야 하는 출입구의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4.3에 따라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3.3 출입문의 잠금

가)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5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5에 따라 잠금 효력이 감소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5에 따라 보호되고, 점검창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3.4 비상잠금해제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6에 따라 비상잠금해제를 사용하여 잠금 해제가 가능하고, 비상 해제 후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잠글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3.5 문 작동 중의 보호

자동으로 열리는 승강장문의 경우, 승강장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7에 따라 5초 이상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6.3.6 카의 구조

가) 감지날, 포토셀 또는 광커튼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2.1에 따라 협착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감지날, 포토셀 또는 광커튼의 작동시 정지거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2.2 및 5.9.2.3에 따라 카가 충돌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카의 감지날, 포토셀 또는 광커튼과 승강로 내벽 사이, 또는 카와 승강장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2.4에 따라 20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라) 토가드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카의 바닥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4에 따라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로 마감되고, 카 또는 승강장문의 문턱은 출입구 승강장과 색상 대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카내 운전반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6 및 5.5.15.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카 내부 손잡이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7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3.7 카 출입구 보호

5.6.3.7.1 전락방지

휠체어 전락방지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1에 따라 모든 카의 최하부 승강장 측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3.7.2 안전 날개판

가) 안전 날개판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안전 날개판의 경사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4.6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3.7.3 방호울 해당없음 □

가) 방호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3.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방호울의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3.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방호울의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3.6에 따라 방호울이 처지더라도 잠금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5.6.3.8 카 출입구 이외의 모서리

5.6.3.8.1 행정이 500 ㎜ 이하인 카 해당없음 □

전 행정에 걸쳐 인접한 벽면이 없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10.1에 따라 탑승방향이 아닌 카의 측면은 카 바닥에서 높이 75㎜ 이상의 전락방지용 방호물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3.8.2 행정이 500 ㎜ 초과 2,000 ㎜ 이하인 카 해당없음 □

전 행정에 걸쳐 인접한 벽면이 없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10.2에 따라 탑승방향이 아닌 카의 측면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3.1에 따른 고정된 방호울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6.3.9 카 하부 마감 및 보호 해당없음 □

가) 카 하부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11.1에 따라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감지날 또는 감지면 작동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11.2 및 5.10.11.3에 따라 카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감지날 또는 감지면 작동 후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11.2에 따라 운행 반대방향으로 운전 조작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5.7 카 운전장치

5.7.1 운전장치

5.7.1.1 일반사항

가) 운전장치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1에 따라 모든 승강장과 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내 운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2에 따라 지속적으로 눌러야 작동하나, 승강장 운전장치는 지속적으로 눌러서 작동하는 형태가 아님을 확인한다.

예 ■

다) 카 내부에서의 운전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3에 따라 승강장의 운전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승강장 호출은 불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라) 카의 기동 전 시간지연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4에 따라 1초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5.7.1.2 무선 운전장치

해당없음 □

가) 무선 운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6.1에 따라 1대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에 대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무선 운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6.1에 따라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근처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 추락방지안전장치 및 과속조절기

5.8.1 추락방지안전장치

가) 추락방지안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1 및 5.4.8.2.3에 따라 최대 설계하중을 적재한 카를 정지시키고 정지된 상태로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작동된 추락방지안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1에 따라 로프나 체인의 이완 또는 카의 하강 움직임으로 인해 복귀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카의 기울어짐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3.8에 따라 5° 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추락방지안전장치의 복귀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3 및 5.4.6.1.3.6에 따라 카를 상승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복귀 후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추락방지안전장치로의 접근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4에 따라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5.8.2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 또는 기타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2.1에 따라 과속조절기 작동 속도에 도달할 때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로프 지름이 인증서와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과속조절기 로프의 지름 [ ] mm 예 ■

5.9 구동방식

5.9.1 일반사항

가) 구동방식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2에 따라 상·하 주행은 동력으로 구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감속기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3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2 동력전달장치 해당없음 □

가) 체인 또는 벨트를 동력 전달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동력전달장치의 종류를 확인한다.

2열 체인 [ ] 단열 체인 [ ] 벨트 [ ]

2열 체인 ■ 단열 체인 ■ 벨트 ■

다) 동력전달 체인 또는 벨트의 파단 및 이완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4 및 5.4.1.5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3 랙-피니언 구동방식 해당없음 □

5.9.3.1 일반사항

가) 구동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1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전동기에 의해 랙과 맞물리는 하나 이상의 피니언으로 지지, 상승 및 하강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구동 또는 안전 피니언과 치차모양 랙 사이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1에 따라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3.2 구동 피니언 해당없음 □

구동 피니언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3에 따라 언더컷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5.9.3.3 랙

가) 랙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4.1에 따라 단단히 부착되어 있으며, 랙의 이음부는 잘못된 맞물림 또는 치차에 대한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랙의 재질은「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4.2에 따라 금속인지 확인한다.

예 ■

5.9.3.4 랙-피니언의 맞물림

가) 랙과 구동 및 안전장치 피니언을 물리도록 하는 수단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5.1에 따라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랙과 피니언을 물리도록 하는 수단의 고장에 대비하여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5.2에 따라 추가적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랙의 폭이 완전한 형태의 피니언 치차와 항상 수평으로 맞물리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5.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랙의 폭이 피니언 치차와 수평으로 맞물리도록 하는 수단의 고장 시 랙의 폭 90% 이상을 피니언 치차와 수평으로 맞물리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5.4에 따라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피니언 치차와 랙 치차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5.5에 따라 모든 평면에서 서로 직각인지 확인한다.

예 ■

5.9.4 로프 및 체인 현수 구동방식 해당없음 □

5.9.4.1 일반사항 드럼과 로프 ■ 스프로킷과 체인 ■

5.9.4.2 로프와 체인

가) 평행추가 설치된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2.1에 따라

평형추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와 와이어로프, 또는 수평링크 체인(갈리형태) 또는 롤러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공칭직경 또는 호칭번호를 확인한다. 설계 ☐ 측정 ■

다) 본수를 확인한다. 설계 ☐ 측정 ■

라) 로프 또는 체인의 끝 부분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3.2에 따라 카와 평형추 또는 매다는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4.3 도르래, 드럼 및 스프로킷

가) 드럼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4.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스프로킷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4.3에 따라 16개 이상의 톱니가 있으며, 체인이 8개 이상의 톱니에 물리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체인과 스프로킷의 보호수단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4.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9.4.4 로프와 체인 사이의 장력

가) 장력 조정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5.1 및 5.4.5.5.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같은 축에 여러 개의 회전 스프로킷이 있는 체인의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5.3에 따라 스프로킷은 독립적으로 회전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장력 균등을 위해 스프링이 사용되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5.4에 따라 압축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9.5 스크류-너트 구동방식 해당없음 ☐

5.9.5.1 추락방지안전장치

가) 추락방지안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3.2에 따라 하강 방향에서만 작동되고, 과속조절기의 작동 속도에서 최대 설계하중을 적재한 스크류와 너트 사이의 상대적 회전을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다른 유형의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3.3에 따라 점차작동형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조정 가능한 추락방지안전장치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3.7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9.5.2 안전너트

가) 안전너트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안전너트에 의해 작동되는 전기안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4에 따라 오염 및 진동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5.3 카의 구동

가) 여러 개의 스크류와 너트를 사용하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2.1에 따라 운행 중인 카가 1% 이상 기울어지면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다단으로 이뤄진 스크류 기둥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2.2.1에 따라 분리되지 않도록 기계결합 요소로 조립되고, 스크류 연결부는 잘못된 맞물림 또는 너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구동너트는「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2.2.3.2에 따라 마모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스크류에 압축 하중을 가하는 카의 경우,「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2.4.1에 따라 카와 구동너트 사이의 연결은 유연한지 확인한다.

예 ■

마) 스크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2.4.2에 따라 카와 분리되지 않도록 기계결합 요소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6 마찰 견인 구동방식 해당없음 ☐

5.9.6.1 일반사항

가) 견인 휠은「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7.1에 따라 주행면을 제외하고 금속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정상 운행상태에서 최대 하중을 적재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행할 때 주행면 또는 금속과 다른 재료 사이 접합부분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레일 주행면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7.2에 따라 견인력에 영향을 주는 오일, 그리스 및 얼음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견인휠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7.3에 따라 마모에도 불구하고 견인력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5.9.7 유도체인 구동방식 해당없음 □

5.9.7.1 일반사항

가) 구동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8.1.1 및 5.4.8.2.2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전동기 및 동력 전달장치에 의해 지지, 상승 및 하강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체인 등 구동과 관련된 부품사이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8.1.1에 따라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모든 구동 스프로킷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8.1.5에 따라 금속으로 제작되고, 16개 이상의 톱니가 있으며, 체인이 8개 이상의 톱니에 물리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라) 체인 유도 부품 및 체인 보호 부품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8.1.5에 따라 마모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 ■

5.9.7.2 추락방지안전장치

추락방지안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8.2.3에 따라 카의 하강 방향에서만 작동되고, 과속조절기 작동속도에서 최대 설계하중 상태의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8 팬터그래프식 구동방식 해당없음 □

비고 모든 구동방식에 요구되는 사항은 팬더그래프식 구동방식에도 적용된다.

5.9.9 유압 구동방식 해당없음 □

5.9.9.1 일반사항

가) 구동방식을 확인한다.

직접식 ■ 간접식 ■

나) 간접식인 경우, 매다는 로프와 체인은「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 공칭직경 또는 호칭번호를 확인한다.

설계 □ 측정 ■

2) 본수 설계 □ 측정

■

3) 로프 또는 체인의 끝 부분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3.2에 따라 카와 매다는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9.2 잭

가) 간접식인 경우, 램 행정의 끝단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4에 따라 램을 멈추게 하는 수단에 의한 감속으로 로프 또는 체인에 이완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잭이 지면의 내부로 연장되는 경우, 잭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5에 따라 보호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잭이 다른 공간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립처밸브/유량제한기, 립처밸브/유량제한기와 실린더를 연결하는 고정식 배관, 립처밸브/유량제한기와 상호 연결하는 고정식 배관이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잭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5에 따라 실린더 헤드로부터 새어 나오는 유체를 모으며, 공기배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9.3 카와 램(실린더)의 연결

가) 직접식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3.1에 따라 카와 램(실린더) 사이의 연결은 유연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간접식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3.4에 따라 램(실린더)의 상단부분이 안내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간접식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3.5에 따라 램의 상단부분을 유도하는 부품이 카의 수직 투영면적 안에 없는지 확인한다.

예 ■

5.9.9.4 다단잭

다단잭이 사용될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4.3 및 5.4.10.4.4에 따라 기계식 또는 유압식 동기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9.9.5 배관

5.9.9.5.1 일반사항

가) 배관 및 이음 부속품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5.1에 따라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되고, 고정되어야 하며, 점검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나) 배관(단단하거나 탄력적인)이 벽 또는 바닥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경우, 배관은 보호덮개(ferrules)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9.5.2 가요성 호스

가요성 호스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5.3에 따라 제조업체명(또는 로고), 시험압력 및 시험일자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9.6 차단밸브, 체크밸브, 릴리브밸브 및 하강방향밸브

가) 차단밸브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8에 따라 실린더에서 체크밸브와 하강방향밸브로 연결되는 유압회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체크밸브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9에 따라 펌프와 차단밸브 사이 유압회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릴리프 밸브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0에 따라 펌프와 체크밸브 사이 유압회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하강방향밸브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9.7 유압계통 고장에 대한 보호

유압계통 고장에 대한 보호장치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2 및 5.4.10.1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럽처밸브 ■ 유량제한기 ■ 하강방향밸브와 체크밸브의 조합

예 ■

5.9.9.8 필터

필터 또는 그와 유사한 장치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4에 따라 탱크와 펌프 사이 회로와 차단밸브와 하강방향밸브 사이 회로에는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차단밸브와 하강방향밸브 사이의 필터 또는 그와 유사한 장치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5.9.9.10 압력계

압력계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5에 따라 차단밸브와 체크밸브 또는 하강방향밸브 사이 회로 상에 설치되고, 주 회로와 압력계 연결부 사이에 압력계용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9.11 유압탱크

유압탱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6에 따라 작동유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쉽게 채워지고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탱크 위에 작동유의 특성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9.12 크리핑에 대한 보호

가) 크리핑에 대한 보호를 위한 장치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8.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유압식인 경우, 승강장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8.2에 따라 정전 시에도 닫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9.9.13 클램핑 장치 해당없음 □

가) 클램핑 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9.2에 따라 하강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최대 설계하중을 적재하고 정격속도로 운행하는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작동된 클램핑 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9.3.2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서 해제되어야 하며, 클램핑 장치의 해제 및 자동 재-설정은 카의 상승에 의해서만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5.9.9.14 멈춤 쇠 해당없음 □

가) 멈춤 쇠 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가)에 따라 최대 설계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정격속도로 운행하는 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카를 지지대 위로 올릴 때까지 멈춤 쇠 장치의 수납이 불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전기적으로 격납 가능한 멈춤 쇠(Pawl)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나)에 따라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각 승강장 지지대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다)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전기식 멈춤 쇠 장치에 공급되는 전원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마)에 따라 구동기가 정지될 때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멈춤 쇠 및 지지대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바)에 따라 카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카가 정지되거나 어떤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여러 개의 멈춤 쇠가 설치된 경우, 카가 하강 운행하는 동안 전원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모든 멈춤 쇠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사)에 따라 각 지지대에서 작동되는 것을 보장하는 예방조치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9.15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 해당없음 □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1 및 5.4.10.22에 따라 승강장문의 위치와 관계없이 카를 상승방향으로 작동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5.9.10 2차전지 구동방식 해당없음

□

가) 운전회로 전압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1에 따라 60 V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나) 2차전지의 단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4에 따라 단락방지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2차전지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5에 따라 안전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2차전지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6에 따라 제어 및 구동 전동기 회로로부터 분리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마) 카가 충전접점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휴지할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7에 따라 시각 또는 청각적으로 알려 주는지 확인한다.

예 ■

바) 2차전지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9에 따라 기울여도 새지 않는 구조이며, 충전 및 정상운전 시에도 유해한 기체가 방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5.10 전기설비 및 전기기구

5.10.1 절연저항

가)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5.5.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전동기 절연저항 [ ] MΩ 예 ■

나) 조명장치의 절연저항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5.5.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조명장치 절연저항 [ ] MΩ 예 ■

5.10.2 이동케이블 고정

전력 및 제어용 이동케이블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3에 따라 케이블 연결부에 기계적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양 끝에 단단히 고정되고, 마모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0.3 접지

접지선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2에 따라 전도체 이외 전기적으로 충전될 수 있는 모든 노출된 금속제 외함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0.4 전기 식별 표시

단자, 결선장치 및 전기부품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5에 따라 식별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0.5 누전차단기

콘센트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1에 따라 30 mA 이하인 누전차단기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1 전기안전장치

5.11.1 과부하감지장치 작동감지

가) 과부하감지장치 작동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7에 따라 카가 출발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과부하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7가)에 따라 청각과 시각적 신호가 발생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과부하감지장치 작동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7나)에 따라 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거나 문을 열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1.2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감지 해당없음 □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5, 5.4.6.1.3.9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카가 재-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5.11.3 과속감지 해당없음 □

과속조절기가 작동속도에 도달하기 전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전기안전장치는「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2.1에 따라 작동 후 복귀 전까지 카가 기동되지 못하게 하는지 확인한다.

예 ■

5.11.4 과속조절기 로프 파단 및 이완감지 해당없음 □

과속조절기 로프의 파손 또는 이완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2.1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가 정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1.5 매다는 장치의 이완감지 해당없음 ☐

매다는 로프 또는 체인이 이완되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6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주 전동기 및 브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예 ■

5.11.6 안전너트 작동감지 해당없음 ☐

구동 너트 고장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4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전동기와 브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1.7 비상구출운전 시 보호

비상운전 중 부주의에 의한 정상운전이 불가능하도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전기안전장치를 사용하여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1.8 클램핑 장치 해당없음 ☐

클램핑 장치 작동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9.3.3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하강 운행 중인 카가 즉시 정지되고, 카가 하강방향으로 출발되는 것을 방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5.11.9 멈춤 쇠 해당없음 ☐

멈춤 쇠가 복귀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아)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의 정상적인 하강 운행이 방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1.10 전기안전장치 작동 등에 따른 전원 차단

구동기 전원공급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7.3에 따라 한번의 운전지령이 끝나거나 전원공급장치의 고장 및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면 즉시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예 ■

5.11.11 카에 설치된 정지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5에 따라 카 내부에 쉽게 볼 수 있고, 접근 가능하며, 부주의로 작동시킬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1.12 종점 리미트 스위치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종점 리미트 스위치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6, 5.5.14.7 및 5.5.14.8에 따라 독립적으로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작동 시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5.11.13 출입문

출입문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5.2, 5.8.5.3, 5.10.7.5에 따라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카가 출발하거나 운행될 수 없도록 전기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1.14 감지날과 감지면

감지날과 감지면 작동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2.2 및 5.10.11.2에 따라 구동기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예 ■

5.11.15 방호울

방호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3.4에 따라 잠그지 않고 카가 운행될 수 없는지 확인한다.

예 ■

5.11.16 기계적 고정장치

기계적 고정장치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1.1 및 5.1.4.2.1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2. 주행성능 측정

5.12.1 정상운행 속도 및 전류

가) 카가 주행하는 중간지점에서 카의 속도와 전동기의 전류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카의 부하상태	운행방향	속도(㎧)	전류(A)
무부하	상승		
	하강		
정격하중	상승		
	하강		

나) 정격속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5에 따라 전 행정방향에서
0.15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다) 착상정확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2.3가)에 따라 ± 10 ㎜ 이며, 재-착상 정확도는 ± 20 ㎜인지 확인한다.

예 ■

라) 정지거리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7.3에 따라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20 ㎜ 이하이고, 운전지령 종료 및 주전원 공급장치 고장 시에는 50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마) 마찰 견인 구동방식의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7.3에 따라 최대 정하중까지 적재될 때 미끄러짐 없이 착상위치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12.2 비상구출운전 해당없음 □

예비 전원 또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최대 설계하중을 적재한 카를 승강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3 표시 등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작동 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4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추가요건 해당없음 □

5.14.1 소음 및 진동 측정

정격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10회 왕복운행을 한 후 주행 중 소음 및 진동값을 기록한다.

소음 [dB(A)] 진동(X축/Y축/Z축) [gal/ gal/ gal] 예 ■

5.14.2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시험

정격하중과 정격속도로 5.3.1에 따른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지적사항]

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검사기준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6.1 기본제원

■ **현장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설치위치(호기)

■ 승강기번호

■ 승강기 인증번호

■ 모델명/제품명

■ 정격용량(kg)	설계		현장	
■ 플랫폼 (폭 ㎜ × 크기 ㎜)	설계	×	현장	×
■ 정격속도(㎧)	설계		현장	
■ 운행구간	설계		현장	
■ 건물측 전원공급				
· 전압(V)	설계		현장	
· 주파수(Hz)	설계		현장	
■ 전동기 전원공급				
· 정격전압(V)	설계		현장	
· 정격전류(A)	설계		현장	

■ 구동방식

로프 현수 구동방식	☐ 6.8.2	참조
랙-피니언 구동방식	☐ 6.8.3	참조
체인 현수 구동방식	☐ 6.8.4	참조
스크류-너트 구동방식	☐ 6.8.5	참조

마찰 견인 구동방식	☐ 6.8.6	참조
유도 로프-볼 구동방식	☐ 6.8.7	참조
2차전지 구동방식	☐ 6.8.8	참조

■ 플랫폼 방식

복합형(입석식 + 좌석식)	☐ 6.5.4.1	참조
좌석식	☐ 6.5.4.2	참조
입석식	☐ 6.5.4.3	참조
휠체어용	☐ 6.5.4.4	참조

■ 옥외 설치

기계 및 전기부품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0에 따라 외부의 유해한 영향으로 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위의 모든 사항은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

6.2 안전부품

6.2.1 제어반

가) 제어반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제어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_____ 예 ■

6.2.2 구동기

가) 구동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구동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6.2.3 과속감지기 해당없음 ☐

가) 과속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작동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감지기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6.2.4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6.2.5 매다는 장치 해당없음

☐

가) 매다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매다는 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6.2.6 비상통화장치

가) 비상통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비상통화장치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6.2.7 이동케이블 해당없음 ☐

가) 이동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이동케이블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한다.

안전인증번호 ☐ 예 ■

6.3. 일반사항

6.3.1 전용전원

가) 주개폐기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에 따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A 예 ■

나) 주개폐기를 차단한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에 따라 잠글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다) 주전원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7에 따라 주전원 근처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전원"이라는 표지판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3.2 기계안전

가) 제어반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에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업무수행자 보호를 위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1에 따라 틈새 및 안전거리 확보 등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보호수단을 고정하는 부품은「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1에 따라 보호수단 제거 후에도 보호수단 또는 기계장치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권상도르레, 풀리 및 스프로킷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7 및 5.4.7.4에 따라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끼임, 절단, 이탈 및 휠이나 풀리를 타고 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4 및 5.4.9.5에 따라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3.3 조도 및 콘센트

가) 콘센트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7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장 조도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7에 따라 50 lx 이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승강장 조도 [ ] 예 ■

6.3.4 비상구출 운전장치

가) 비상구출 운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수권조작이 이뤄지는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 및 6.6.2에 따라 제작 및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예비전원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비상운전을 하는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계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경우, 전동기능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비상운전 상태에서도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단계별 비상 수동 운전지침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6.1에 따라 제어반 내에 표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3.5 진입 보호대

탈착 또는 접을 수 있는 진입 보호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7.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3.6 경고 및 표시

가) 경고문 등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1에 따라 제작되고,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2, 6.2, 6.3, 6.4 및 6.5에 따라 부착 및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운전설명서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8에 따라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4. 주행안내 레일

6.4.1 일반사항

가) 정격하중 상태의 카 기울기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1.2에 따라 5° 미만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주행안내 레일의 재질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1.3에 따라 금속제인지 확인한다.

예 ■

다) 레일 종단정지장치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3에 따라 주행안내 레일 끝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레일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4에 따라 기계적 고정 또는 이동식 연장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직접 최상층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전체 운행을 볼 수 없는 곡선 레일인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6.2에 따라 카가 움직이기 전에 청각과 시각적 신호가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6.4.2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 해당없음

6.4.2.1 일반사항 예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을 접었을 때,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2.1에 따라 계단통로나 승강장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6.4.2.2 전동 접이식 해당없음

가) 전동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 운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2.4 및 5.2.2.7에 따라 지속적 누름 제어방식이고, 레일의 접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나) 전동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2.5에 따라 비상 시 수동으로 접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다) 전동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 작동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2.6 및 5.2.2.7에 따라 기기 손상 및 이용자의 위험이 없으며, 청각신호 및 접히는 부분 위 또는 근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각적 안내신호가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6.5 카-일반사항

6.5.1 내화성 예

카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6에 따라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5.2 운전장치

6.5.2.1 일반사항

가) 운전장치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1에 따라 모든 승강장 및 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나) 카 내부에서의 운전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2에 따라 승강장 운전보다 우선 되는지 확인한다.

예

다) 카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3에 따라 인가된 이용자만이 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ON/OFF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예

라) 운전장치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4 및 5.5.14.5에 따라 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5.2.2 무선 운전장치 해당없음 □

가) 무선 운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1에 따라 1대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에 대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무선 운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3에 따라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근처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무선 운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5에 따라 카가 주행하는 전 구간에서 유효한지 확인한다.

예 ■

6.5.3 비상통화장치 및 경고장치

가) 비상통화장치와 비상경보장치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6.1에 따라 카 및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정전 시에도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6.1.2에 따라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경보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전체 운행을 볼 수 없는 곡선 레일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6.2에 따라 청각과 시각적 신호장치가 설치되고, 이 신호는 카가 움직이기 전에 경고 신호가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예 ■

6.5.4 카

6.5.4.1 복합형 플랫폼의 카 해당없음 □ 좌석 □ 입석 □

6.5.4.1.1 일반사항

가) 손잡이로 사용하기 위한 카의 일부 또는 모서리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1.2에 따라 카의 전 행정구간에서 손이 끼이지 않도록 100 ㎜ 이상 틈새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주행 구간에서의 최소 틈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1.3에 따라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5.4.2 좌석식 플랫폼의 카 해당없음 □

6.5.4.2.1 일반사항

가) 좌석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1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보호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1에 따라 펼쳐진 위치에 있지 않으면 카에 장착된 제어장치에 의해 카의 운행이 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이용자가 사용가능한 안전벨트 또는 안전 구속장치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5.4.2.2 이동식 또는 회전식 의자 해당없음 □

가) 이동식 또는 회전식 의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4.1에 따라 완전히 작동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카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수동 이동식 또는 회전식 의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4.2에 따라 완전히 작동된 위치에서 기계적 잠금장치로 고정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전동 이동식 또는 회전식 의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4.3에 따라 자기유지형 또는 브레이크에 의해 완전히 작동된 위치에서 고정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6.5.4.2.3 의자 바닥 수평장치

의자 바닥의 기울기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6에 따라 전체 운행구간에 걸쳐 수평에서 ± 5° 이내인지 확인한다.

운행중 기울기 □ 예 ■

6.5.4.3 입석식 플랫폼의 카 해당없음 □

가) 플랫폼에 손잡이와 지지대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1.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플랫폼의 표면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1.2에 따라 미끄럼 방지 소재로 마감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추락보호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2에 따라 플랫폼 바닥면에서 900 ㎜ ~ 1,100 ㎜ 사이에 하강운행 방향 쪽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추락보호대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3에 따라 펼쳐진 위치에 있지 않으면 카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5.4.4 휠체어용 플랫폼의 카 해당없음 ☐

6.5.4.4.1 일반사항

플랫폼의 바닥재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1에 따라 미끄럼 방지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플랫폼 또는 승강장 턱은 승강장 바닥면과 색상 대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5.4.4.2 램프와 토가드

가) 램프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5.1에 따라 플랫폼에 접근하는 모든 끝부분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올려진 램프의 높이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5.2에 따라 펼쳐진 플랫폼 바닥 위로 100 ㎜ 이상이고, 플랫폼이 아래층에 착상될 때까지 올려 진 위치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플랫폼의 출입측 이외의 모서리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5.3에 따라 펼쳐진 플랫폼 바닥 위로 75 ㎜ 이상 말아 올려 진 토 가드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5.4.4.3 플랫폼 측면 보호

가) 레일에 인접한 플랫폼의 측면 패널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6.1에 따라 펼쳐진 플랫폼 바닥 위로 1,000 ㎜ 이상까지 견고한 구조로 연장되고, 길이가 플랫폼 측면만큼 연장되지 않은 경우, 5.6.4.5.3에 따라 토 가드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내부 손잡이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6.2에 따라 펼쳐진 플랫폼 바닥 위로 800 ~ 1,000 ㎜ 사이 플랫폼 측면에 설치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카 내부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카의 측면판으로부터 30 ㎜ 이상 틈새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가) 맞은편 측면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6.3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6.4에 따라 수동식 추락보호대는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6.5.4.4.4 추락보호대와 램프의 잠금장치

가) 모든 추락보호대와 램프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7.2에 따라 플랫폼이 펼쳐졌을 때, 상승방향 추락보호대를 제외한 펼쳐진 추락보호대와 올려 진 램프를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잠그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보호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8.1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에서 플랫폼이 승강장에서 높이가 50 ㎜ 이상이 되거나, 승강장에서 레일을 따라 이동한 거리가 150 ㎜ 이상일 때 여는 것이 불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추락보호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8.2에 따라 회로를 개방하는 접점 소자들 중 하나와 기계식으로 잠기는 장치 사이의 연결은 확실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해 잠금 해제될 수 없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라) 추락보호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8.3에 따라 잠금요소와 그것들의 고정장치는 충격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추락보호대 잠금요소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8.4에 따라 추락 보호대 열림 방향의 힘에 잠금효과가 약화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잠금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8.5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시 고의적인 오용 및 접근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추락보호대와 램프가 펼쳐진 위치에 있지 않으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2, 5.6.3.3 및 5.6.4.8.6에 따라 카가 기동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6.5.4.4.5 비상해제

잠금장치 비상해제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9에 따라 플랫폼 또는 승강장에서 전용 공구 또는 그와 동등한 장치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해제되는지 확인한다.

예 ■

6.5.4.4.6 좌석

좌석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12에 따라 휠체어 플랫폼은 앉아있는 사람 전용이며, 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접이식 의자인 경우,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예 ■

6.5.4.4.7 승강장에서의 운전

승강장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카의 전체 운행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13에 따라 펼쳐진 상태의 플랫폼을 승강장에서 운전하지 못하는지 확인한다.

예 ■

6.6 감지날 및 감지면

6.6.1 일반사항

가) 감지날과 감지면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5.1, 5.6.2.5.2 5.6.3.5 및 5.6.4.10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감지날과 감지면이 작동하면「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5.3에 따라 카가 정지되며, 장애물 제거를 위한 운행방향 반대방향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다) 감지날과 감지면이 작동 시 정지거리는「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5.4에 따라 카가 고정된 부분에 충돌하기 전에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6.6.2 안전도색

이용자나 다른 사람과의 충돌 우려가 있는 카의 모든 부위는「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5.6에 따라 안전도색, 보호패드 또는 보호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7 추락방지안전장치 및 과속감지기

6.7.1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1에 따라 정격하중의 125%를 적재한 카를 정지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작동된 추락방지안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3 및 5.3.3에 따라 작동된 로프나 체인의 이완 또는 카의 하강 움직임으로 인해 복귀되지 않고, 카의 상승 운전에 의해 복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카의 기울어짐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7에 따라 좌석식인 경우 10°, 입석식 및 휠체어용의 경우 5°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추락방지안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4에 따라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6.7.2 과속감지기

해당없음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6에 따라 과속감지기는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키고,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6.7.3 회전감지기 해당없음

□

가) 회전감지기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7에 따라 과속감지기의 회전이 중단된 경우, 10초 이내에 전동기와 브레이크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회전감지기 작동 후 카의 운행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7에 따라 방향지시 버튼의 해지와 재-작동으로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6.8 구동방식

6.8.1 동력전달장치 해당없음

□

가) 동력전달장치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4 및 5.4.1.5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동력전달장치의 종류를 확인한다.

설계 2열 체인 □ 단열 체인 □ 벨트 □

확인 2열 체인 ■ 단열 체인 ■ 벨트 ■

6.8.2 로프에 의한 구동방식 해당없음

□

가) 공칭직경을 확인한다. 설계 □ 측정 ■

나) 본수를 확인한다. 설계 □ 측정 ■

다) 로프 장력 조정장치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1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카가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2에 따라 드럼에 1.5바퀴 이상의 로프가 항상 감겨져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6.8.3 랙-피니언 구동방식 해당없음

□

가) 랙과 피니언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2에 따라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랙의 접합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2에 따라 물림이 잘못되거나 치차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8.4 체인에 의한 구동방식 해당없음 □

가) 호칭번호를 확인한다. 설계 □ 측정

■

나) 본수를 확인한다. 설계 □ 측정

■

다) 체인 장력조정 장치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체인의 끝부분 및 중간부분 연결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3에 따라 확실하고, 잘못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 ■

6.8.5 스크류-너트 구동방식 해당없음 □

스크류 오염방지 수단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7.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8.6 마찰견인 구동방식 해당없음 □

레일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8.1에 따라 오일, 그리스 및 얼음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6.8.7 유도로프-볼 구동방식 해당없음 □

유도로프 직경을 확인한다. 설계 □ 측정

■

6.8.8 2차전지 구동방식 해당없음 □

가) 제어회로의 전압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1에 따라 60 V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나) 2차전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2에 따라 기울여도 새지 않는 구조이며, 충전 및 정상운전 시에도 유해한 기체가 방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2차전지의 단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5에 따라 단락방지를 위해 물리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2차전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6에 따라 안전한 위치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2차전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7에 따라 제어 및 구동 전동기 회로로부터 분리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바) 카가 충전점점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휴지하고 있을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9에 따라 시각 또는 청각적으로 알려주는지 확인한다.

예 ■

6.9. 전기설비 및 전기기구

6.9.1 절연저항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전동기 절연저항 [ ] MΩ 예 ■

6.9.2 정지 후 재-기동 시간

카 정지 후「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7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지 재-기동시 1초 이상의 시간지연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9.3 이동케이블 고정

가) 전력 및 제어용 이동케이블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9.3.1에 따라 케이블 연결부에 기계적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양 끝에 단단히 고정하고, 마모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이동케이블을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너트와 나사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9.5에 따라 다른 부품을 고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 ■

6.9.4 접지

접지선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9.6에 따라 전도체 이외 전기적으로 충전될 수 있는 모든 노출된 금속제 외함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9.5 누전차단기

해당없음 □

대지전압 50V 초과하는 모든 전기회로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1에 따라 정격 차단 전류가 30 mA 이하인 누전차단기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9.6 보호등급

제어반과 전기 안전장치의 충전부 덮개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4.1에 따라 클램핑 장치가 부착되고 탈착 시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경우 열쇠 또는 특수한 공구로 고정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6.10 전기안전장치

6.10.1 과부하감지장치 작동감지

가) 과부하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8.2에 따라 카가 정상적인 출발이 방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과부하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8.2에 따라 청각과 시각적 신호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10.2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 접근방지 해당없음 □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에 접히는 부분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2.3에 따라 카가 접근하지 않도록 전기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10.3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감지 해당없음 □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5에 따라 카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6.10.4 안전너트 작동감지 해당없음 □

안전너트 작동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8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구동기의 기동이 방지되거나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6.10.5 동력전달장치, 매다는 로프 또는 체인 이완(파단)감지 해당없음 □

동력전달 장치, 매다는 로프 또는 체인의 장력 이완 또는 파단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4, 5.4.1.5 및 5.4.1.6에 따라 카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6.10.6 비상구출운전시 보호 해당없음 □

수권조작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비상운전 중 부주의에 의한 정상운전이 불가능하도록 전기안전장치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10.7 유도로프 파단, 이완감지 해당없음 □

유도로프 파단 및 이완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9.1 및 5.4.9.4에 따라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6.10.8 카에 설치된 비상정지스위치

카 내부에 설치된 비상정지스위치가 작동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1에 따라 카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6.10.9 종점 리미트스위치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종점 리미트 스위치 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작동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5.1 및 5.5.15.2에 따라 카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6.10.10 감지날과 감지면

감지날과 감지면 작동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5, 5.6.2.5.3 및 5.6.4.10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6.10.11 의자 바닥 수평장치

의자 바닥 기울기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6에 따라 수평에서 ±10° 도달하기 전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6.10.12 추락보호대와 램프

모든 추락보호대와 램프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7.1에 따라 다음과 같지 않을 경우 카 운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1) 플랫폼이 펼쳐져 있을 때 모든 추락보호대는 펼쳐져야 하고, 램프는 완전히 올려져야 한다.

예 ■

2) 플랫폼이 위로 접혀 있을 때 모든 추락보호대는 접혀져야 한다. 이 위치에서 램프는 안전하고 적합하게 위치하여야 한다.

예 ■

3) 하강 방향 추락보호대는 아래 승강장에서 멀어지는 플랫폼의 움직임에 의해 작동될 수 있으며, 플랫폼이 아래 층으로 복귀할 때까지 내려진 위치에서 유지해야 한다.

예 ■

6.11. 주행성능 측정

6.11.1 정상운행 속도 및 전류

가) 카 주행 중 속도 및 전류를 측정한다.

카의 부하상태	운행방향	속도(㎧)	전류(A)
무부하	상승		
	하강		
정격하중	상승		
	하강		

나) 착상정확도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2, 5.6.3.4 및 5.6.4.5.1에 따라 좌석식 및 입석식의 경우, 승강장 바닥 위와 발 받침대 표면 사이 거리는 170 ㎜ 이하이고, 휠체어용의 경우, 램프의 앞 끝에서 단차가 15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다) 좌석식 및 입석식인 경우, 주행 중 발 받침대와 가장 근접한 계단 돌출부와의 틈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2 및 5.6.3.4에 따라 400 ㎜ 이하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6.11.2 정지거리

구동기 전원공급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2.1, 5.5.3.3 및 5.5.13.4에서 운전지령이 종결되거나 전원공급장치의 고장 및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면 즉시 차단되며, 전원공급 차단 시 정지거리를 확인한다.

정지거리 [ ] 예 ■

6.12 표시 등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작동 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1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추가요건 해당없음 □

정격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10회 왕복운행을 한 후 주행 중 소음 및 진동값을 기록한다.

소음 [dB(A)] 진동(Z축) [gal] 예 ■

[지적사항]

[별표 2]

승강기 정기검사기준(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엘리베이터 정기검사기준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 기본제원(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작성한다)

■ 현장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호기(설치위치)

■ 승강기번호

■ 승강기 인증번호

■ 모델명/제품명

■ 승강기의 종류(용도)

☐ 승객용 ☐ 전망용 ☐ 병원용 ☐ 장애인용 ☐ 소방구조용

☐ 피난용 ☐ 주택용 ☐ 승객화물용 ☐ 화물용 ☐ 자동차용

■ 운행층수(전체)

· 정면

· 후면

· 측면

■ 정격하중(kg)

■ 적용인승

■ 구동방식

권상/포지티브/유압

■ 전원공급

· 전압(V)

· 주파수(Hz)

■ 정격속도(m/s)

■ 출입문개폐방식

■ 운행거리(m)

■ 기어형식

WG.HG.GL.Etc

■ 기계실 위치

☐ 승강로 상부 ☐ 승강로 아래 ☐ 승강로 측면 ☐ 기타 위치

위의 모든 사항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

1.2 기계류 공간(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작성한다)

1.2.1 일반사항

기계실 내 기계류	☐	1.2.2 참조
승강로 내의 기계류		
승강로 내의 작업구역	☐	1.2.3.1 참조
카상부 또는 카의 작업구역	☐	1.2.3.2 참조
피트내의 작업구역	☐	1.2.3.3 참조
승강로 플랫폼 위의 작업구역	☐	1.2.3.4 참조
승강로 외부의 작업구역	☐	1.2.3.5 참조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	1.2.4 참조
풀리공간		
풀리실	☐	1.2.5.1 참조
승강로 내의 풀리실	☐	1.2.5.2 참조

1.2.1.1 주 개폐기

가) 주 개폐기 차단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5.5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이 방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주 개폐기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5.2에 따라 신속하게 접근 할 수 있고,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쉽게 식별되는지 확인한다.

예 ■

1.2.1.2 접근

가) 기계류 공간의 접근/출입수단(계단, 사다리, 피트 출입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4 및 6.2.5에 따라 안전하게 접근 및 출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풀리실 및 관련 작업구역의 접근통로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1 및 6.2.3에 따라 개인적인 공간을 경유하지 않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한다. (주택용 엘리베이터 제외 : 지침서 제공)

주택용 ☐ 예 ■

1.2.1.3 안전표시(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가) 표시 및 주의사항 등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2, 6.1.1.2, 6.4, 6.6.2, 13.2.3.5 및 13.3.9.1.6에 따라 적합하게 식별/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보호조치가 필요 없는 매끄럽고 둥근 부품(권상도르래, 수동핸들, 브레이크

드럼 등)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2에 따라 부분적으로 노란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2.1.4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가)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에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6.2에 따라 감시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6.3에 따라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에서 조도가 20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다) 비상운전 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3 또는 13.3.9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고장처리 및 승객구출 설명서 등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6.2.3에 따라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자동구출운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3.6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1.2.1.5 통신 해당없음 ☐

피트, 승강로 내부 작업구역 및 카 상부 등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1.6에 따라 피난 공간에서 조작 가능하고,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2.1.6 누수

가) 승강로 및 피트에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1.2.1.7 지진관제운전 해당없음 ☐

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3에 따라 지진을 감지하는 엘리베이터 전용 수단(지진감지기 등)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지진관제운전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3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1.2.2 기계실 내의 기계류(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1.2.2.1 기계실 내의 기계류 해당없음 ☐

가) 기계실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2.1에 따른 설비를 제외한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실 작업공간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3.2.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실 출입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3가)·나)·다)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실 바닥의 개구부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3.3에 따라 물체가 승강로 내부로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기계실의 환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바)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2, 6.1.5.2가)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사)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2나)에 따라 1개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아)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7에 따라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2.3 승강로 내의 기계류

1.2.3.1 승강로 내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승강로의 환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2, 6.1.5.2가)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7에 따라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2.3.2 카 내 또는 카 상부의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통제되지 않은 카의 움직임을 보호하기 위한 기계적인 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3.1나)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3.1다)에 따라 안전하게 승강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점검문(전기적 스위치가 포함)이 카의 벽에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3.3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카 벽에 설치된 점검문을 열고 카 내부에서 카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점검운전 조작반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6.4.3.4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2.3.3 피트 내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구동기가 피트에 설치되고 피트에서 유지관리/점검이 수행되는 동안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4.1가)에 따라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피트에 출입하는 문이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3.3.라) 및 6.6.4.4.1 라)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엘리베이터의 정상운전으로의 복귀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6.4.4.1사)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4.2에 따라 안전하게 피트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수직틈새(0.5 m)가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예 ■

1.2.3.4 플랫폼 위의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영구적으로 고정 설치되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작업용 플랫폼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1에 따라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플랫폼이 엘리베이터 주행로에 있는 경우,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설치된 기계적 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6.4.5.2가)·나)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집어넣을 수 있는 플랫폼의 경우, 완전히 집어넣어진 위치를 확인하는 전기안전장치가「엘리베이터 안전기준」6.6.4.5.4가)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집어넣을 수 있는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을 밀어 넣거나 제거하는 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4나)에 따라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플랫폼으로의 접근이 승강장문을 통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이 작업 위치에 없을 때「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4다)에 따라 플랫폼으로 출입하는 문의 개방이 불가능 하거나 추락을 방지하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완충기가 결합된 나)의 장치와 전기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5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플랫폼에서 카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점검운전 조작반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6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아) 최대 허용하중이「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5.8에 따라 플랫폼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2.3.5 승강로 외부의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승강로 외부에서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4.6에 따라 점검문의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류 공간의 환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2, 6.1.5.2가)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2나)에 따라 1개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7에 따라 허용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2.4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해당없음

☐

가) 엘리베이터 전용공간에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5.1.1에 따라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5.1.2에 따라 허용 개구부를 제외하고 기계류 공간의 벽, 지붕, 바닥 및 문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류 공간의 출입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5.1.3에 따라 문 잠금 및 열림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류 공간의 환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3에 따라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기계류 공간의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6.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바) 기계류 공간의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2나)에 따라 1개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2.5 풀리공간

1.2.5.1 풀리실 해당없음

□

가) 풀리실 출입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3가)·나)·다)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풀리실 바닥의 개구부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7.2에 따라 물체가 승강로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풀리실 접근 지점의 가까운 곳에 있는 정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2다)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풀리실의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2 및 6.1.5.2가)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풀리실의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2나)에 따라 1개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3 승강로

1.3.1 피트 내 설비

가) 피난 공간에서 0.3 m 떨어진 범위 이내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1나)에 따라 점검운전 조작반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두개 이상의 점검운전 조작반이" 점검" 위치에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5.2.1자)에 따라 동일한 조작버튼을 동시에 누를 때만 운행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피트 내의 정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1가)에 따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피트 점검운전 조작반에서 엘리베이터 정상운행으로의 복귀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5.2.2에 따른 조건에서만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마) 승강장문을 통해서만 피트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9.3.5에 따라 승강장문 잠금장치에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튀어오름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6.1.3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3.2 틈새 및 여유거리

가) 권상구동 엘리베이터의 균형추 및 평형추가 가장 낮은 위치(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램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카의 상부틈새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권상구동 엘리베이터의 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균형추 및 평형추의 상부틈새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간접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과 램의 가장 높은 부분 사이의 거리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7.4에 따라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피난공간의 허용 가능 인원 및 자세 유형 표지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7.1 및 6.5.8.1에 따라 카 지붕 및 피트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3.3 완충기

가) 완충기가 확실하게 고정되고 충돌지점에 정확하게 정렬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복귀(전기안전장치 포함)하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2.4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정상운행 되는지 확인한다.

예 ■

1.3.4 완충기 받침대 해당없음 □

완충기 받침대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1.1 및 12.1.3에 따라 완충기 충격 영역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3.5 승강로 내의 보호

가) 밀폐식 승강로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2.2.1에 따라 허용하는 개구부를 제외하고 구멍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주행구간에 설치된 칸막이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5.1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5.2에 따라

설치된 칸막이가 움직이는 부품들과 충돌이 없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반-밀폐식 승강로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2.3에 따라 적합한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승강로 환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승강로 내 도르래·풀리 및 스프로킷의 보호수단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에 따라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에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2.1에 따라 다른 용도의 설비가 없는지 확인한다.

예 ■

아) 승강로에 설치된 출입문·비상문 및 점검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3가)·나)·다)·라)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3.6 승강장문

가)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자동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1에 따라 함몰되거나 돌출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어린이 손끼임방지 수단(틈새)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2.1자)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3.7 조명 및 콘센트

가) 승강로 내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 6.1.5.1라)에 따라 조도, 점멸수단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피트 내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5.1다)에 따라 1개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3.8 카 및 균형추/평형추의 주행안내 레일

주행안내 레일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1.1.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4 카, 운전 및 접근허용

1.4.1 카

가) 카 바닥에서 1.1m 미만에 유리가 사용된 카 벽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3.3에 따라 손잡이의 고정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카 내부(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장의 적재구역)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2.3.2 및 8.2.3.3에 따른 정격하중 등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비상통화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3.3에 따라 카 내에서 시설물 내 및 유지관리업체 등으로 통화가 가능하고, 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카의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10.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마) 카의 비상등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10.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바) 카의 과부하감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2.3가)·나)·다)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에이프런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5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아) 비상구출문의 전기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6.4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4.2 카 상부

가) 점검운전 조작반, 정지장치 및 콘센트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8에 따라 카 상부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지붕의 점검운전 스위치가 작동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5.2.1에 따라 정상운전제어, 도어작동 제어가 무효화 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카 지붕의 비상등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10.4가)·다)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카 지붕의 보호수단 및 보호난간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2, 8.7.3 및 8.7.4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4.3 카 문

가)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자동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7.6.1에 따라 함몰되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어린이 손끼임방지 수단(틈새)이「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2.1자)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카 문의 문턱과 승강장문의 문턱 사이의 수평 거리는「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4.4 승강장 문 및 카 문의 시험

가) 문닫힘 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7.6.2.2.1나)·라)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카 내부의 열림 버튼이「엘리베이터 안전기준」7.6.3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문의 틈새가「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3.3에 따라 45 ㎜(중앙 개폐식 문), 30 ㎜(측면 개폐식 문)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승강장 바닥의 조명이「엘리베이터 안전기준」7.7.1에 따라 50 lx(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바닥 조명의 경우 15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마) 카가 잠금해제구간 밖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 안전기준」7.9.3.4에 따라 승강장문이 100 ㎜ 열린 상태에서 자동으로 닫히고 잠기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승강장문의 비상잠금해제가「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9.3.1에 따라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잠금해제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사)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가 특수 도구로 간주되는 경우「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9.3.2에 따라 해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아) 비상잠금해제 후, 승강장문 잠금장치는「엘리베이터 안전기준」7.9.3.3에 따라 잠금해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자) 카 문의 개방을 제한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7.15.2에 따라 카

문의 열림이 50 mm 이상 열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차) 각 승강장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접점이 개방되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9.4에 따라 잠금해제구간 밖의 카가 정지하고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카) 승강장문의 닫힘 및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장치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0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타) 카 문의 잠금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9.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파) 카 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하) 수동개폐식 문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2에 따라 카의 유무를 확인하는" 카 있음" 신호표시가 작동되는지, 투명 전망창이 있는 경우에는 파손이 없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거) 자동차 진입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6 나)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4.5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 무선 통신장치

가)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 카 내부에 표시되는 내용과 글자 크기의 높이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1 나)에 따라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무선 통신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1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봇이 KS B 7317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안전성 평가서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1.4.6 정상운전 제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3에 따라 시각적 표시 또는 신호가 카 내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에 정지했는지 알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1.5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제동 및 권상

1.5.1 매다는 장치 해당없음

☐

1.5.1.1 로프 해당없음

☐ 가) 로프의 마모 및 파단이 부속서 Ⅳ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나) 로프(벨트)의 본수가 제원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예

1.5.1.2 로프 단말처리 해당없음

가) 로프의 끝부분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2.3.1 및 9.2.3.2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나) 로프 간 장력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5.1에 따라 균등한지 확인한다.

예

1.5.1.3 체인 해당없음

가) 체인의 호칭번호가 제원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예

나) 체인의 끝 부분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2.4에 따른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다) 체인 간 장력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5에 따라 균등한지 확인한다.

예

1.5.2 로프/체인 이완감지장치 해당없음 예

로프 또는 체인 이완감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5.3에 따라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1.5.3 보상 수단 및 추가적인 보호조치 해당없음 예

가) 튀어오름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6.1다)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예

나) 보상 로프가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6.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예

다) 보상 체인이 설치된 경우 견고하게 고정되고 바닥에 닿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예

1.5.4 권상/제동 해당없음 예

가) 무부하의 정격속도로 상승운행 중 비상정지 시켜 로프와 도르래간 과도한 미끄러짐 없이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나) 권상도르래의 언더컷 잔여량이 1 ㎜ 이상, 주 로프 가닥끼리의 높이차가 2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1.6 안전회로

1.6.1 안전접점 및 회로

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2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정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1에 따른 장소에 있고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승강장 문짝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1.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로프 또는 체인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5.3에 따라 이완감지장치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완충기 행정을 감소하기 위한 전기적 강제감속 시스템이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3에 따라 최상층 및 최하층에 도착하기 전에 감속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전기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2에 따라 작동될 경우 카의 움직임이 방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1.7 카 및 균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와 과속에 대한 보호

1.7.1 카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 작동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1.6가)에 따라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되고, 하강방향으로 움직이는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카의 수평도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3.2.1에 따라 5 %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위의 가) 검사 후,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1.5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1.7.2 카 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의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1.6가)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1.5에 따라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의 마모 및 파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Ⅳ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 예 ■

1.7.3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 작동 시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추락방지장치가 작동하고, 균형추 또는 평형추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위의 가) 검사 후, 정상 운행에 지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1.7.4 균형추 또는 평형추 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의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1.6가)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과속조절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1.5에 따라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의 마모 및 파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Ⅳ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 예 ■

1.7.5 멈춤 쇠 장치 해당없음 ☐

가) 멈춤 쇠 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에 따라 작동하면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지지대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1 및 10.5.9.1에 따라 멈춤 쇠 장치와 적합하게 결합되는지 확인한다.

예 ■

1.7.6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 해당없음 ☐ 예 ■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0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1.7.7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가)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6.5에 따라 작동 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검사 후,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6.8에 따라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1.7.8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장치

무부하 상승 시 문열림출발이 감지되면「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7.5에 따른 보호거리 내에서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1.8 주행성능 측정

1.8.1 일반적인 주행시험

가) 카가 주행하는 중간 지점에서 카의 속도와 모터의 전류를 측정하고 기록하시오

카의 부하상태	운행방향	속도(㎧)	전류(A)	착상속도 (<0.8㎧)	재착상 (<0.3㎧)	점검운전 (<0.63㎧)	비상운전 (<0.3㎧)
무부하	상승						
	하강						

나) 권상구동 엘리베이터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4에 따라 주행구간의 중간에서 측정한 속도가 정격속도의 92~105 % 이내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3.8에 따른 주행구간 중간에서 측정한 속도가 정상속도(빈 카의 상승)의 8%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착상정확도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1.4에 따라 모든 승강장에서 ±10 ㎜ 이내인지 확인한다.

예 ■

1.8.2 유압시스템의 점검 해당없음 □

가) 릴리프 밸브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3.5.3.2에 따라 전 부하 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지기 전에「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3.9.1.5에 따라 더 이상 하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유압유의 온도감지장치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4.4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립처밸브 또는 유량제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3 및 10.4에 따라 누유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1.9 전기적 보호

1.9.1 접지에 의한 절연저항

가)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3.1에 따라 1 MΩ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조명장치의 절연저항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3.1에 따라 1 MΩ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1.9.2 전기배선

가) 이동케이블을 포함한 전기배선에 늘어짐 및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바이패스 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8에 따라 식별 가능하고, 작동상태가 명확히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예 ■

1.10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 해당없음 □

1.10.1 승강장의 공간

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2.1에 따라 승강장 전면의 활동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장 바닥과 카 바닥의 틈새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2.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10.2 조작설비

가) 호출버튼, 조작반 및 통화장치 등 조작설비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4.1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4.3 및 17.1.4.4에 따라 점자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10.3 기타 설비

가) 카 내 수평손잡이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1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거울이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2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승강장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카 내 표시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3에 따라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호출버튼 또는 등록버튼에 의하여 카가 승강장문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4에 따라 10초 이상 열린 상태로 대기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승강장의 점형블럭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5에 따라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카 내부의 층수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 표시 및 음성안내가「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6에 따라 동작되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카 내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1.5.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1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 해당없음

□

1.11.1 건축물의 요건

가) 소방운전 시「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3.2에 따라 모든 출입구마다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3.5에 따라 잠금장치 및 전기안전장치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11.2 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

피트 침수를 방지하는 수단이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3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1.11.3 소방관의 구출

가) 비상구출문이「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5.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외부 구출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5.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자체 탈출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5.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11.4 제어 시스템

가) 소방운전 스위치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1에 따라 알림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소방운전 스위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2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1단계 및 2단계 조건 하에 모든 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3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비접촉 문닫힘안전장치 무효화)

예 ■

라) 소방운전 호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7사),아)에 따라 경보음 및 기능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1단계 운전(우선 호출)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7에 따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시작되는지 확인한다.

예 ■

바) 1단계 운전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7에 따라 적합한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카 내의 제어는 작동되지 않고 호출이 취소되는지 확인한다.

예 ■

2) 문 열림 버튼과 비상통화 버튼의 작동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 소방 활동 통화시스템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4) 비접촉 문닫힘안전장치가 무효화되는지 확인한다.

예 ■

5) 소방관 접근 지정 층에 카가 도착하면 카 문과 승강장문이 열린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6) 승강로와 기계실 조명이 자동점등 되는지 확인한다.

예 ■

사) 2단계 운전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8에 따라 적합한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카 내의 운전 시 새로운 층 등록이 가능하고 미리 등록된 층이 취소되는지 확인한다.

예 ■

2) 카 등록버튼 또는 문 닫힘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면 문이 닫히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버튼을 놓으면 문이 자동으로 다시 열리는지 확인한다.

예 ■

3) 문 열림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면 문이 열리고,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버튼을 놓으면 문이 자동으로 다시 닫히는지 확인한다.

예 ■

4) 소방 활동 통화시스템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5) 카 내 소방운전용 키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0' 의 위치에서 제거되고 그 기능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6) 소방운전 스위치가' 0' 으로 전환 시 소방관 접근 지정 층 복귀 후 정상운전 되는지 확인한다.

예 ■

아)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가 2개의 출입구를 갖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8.9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1) 2개의 카 출입문이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2.3에 따라 소방운전 시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2) 카의 조작반이 카 문 출입구 근처에 각각 위치하고, 승강장의 방화구획된 로비와 소방관 접근 지정 층의 로비와 같은 측면에 위치한 소방구조용 카 조작반에 알림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 1단계 운전 시 일반용 조작반이 무효화되고, 2단계 시작과 동시에 소방구조용 조작반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1.11.5 전원공급

보조전원 공급장치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예 ■

1.11.6 카 및 승강장 설비

가) 카 내부와 승강장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11.4에 따라 알림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소방 활동 통화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12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1.12 피난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 해당없음 ☐

1.12.1 건축물의 요건

가)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2에 따라 통제자의 직접적인 조작아래에서 운행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로 내부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2.5에 따라 연기가 침투되지 않는 장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12.2 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

피트 침수를 방지하는 수단이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3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1.12.3 카에 갇힌 이용자의 구출

피난호출 및 피난운전 중 고장이나 결함으로 승강로 중간에 정지한 경우, 외부 구출수단 및 자체 탈출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4.1에 따라 적합한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비상구출문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5.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외부 구출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5.3에 따라 적합한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자체 탈출수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5.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3.5에 따라 잠금장치 및 전기안전장치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1.12.4 제어 시스템

가) 피난호출 스위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5.1 및 17.3.5.2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고, 박스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피난호출 및 피난운전 작동 시 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5.4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문닫힘안전장치는 제외)

예 ■

다) 피난호출 작동 시 제어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5.7에 따라 적합한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승강장 호출 및 카 내의 등록버튼이 작동되지 않고, 미리 등록된 호출이 취소되는지 확인한다.

예 ■

2) 문 열림 버튼과 비상통화 버튼의 작동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3) 피난 층에 카가 도착하면 카 문 및 승강장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4) 승강로와 기계실 조명이 자동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피난운전 작동 시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5.8에 따라 적합한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피난운전이 통제자에 의한 카 내 조작반에서만 운전되고 피난운전 스위치에 의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2) 피난운전 스위치가' 해제' 위치에서만 제거되고, 그 기능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 피난운전으로 전환되면 카 내, 승강장 및 방재실에는" 피난운전 중" 표시가 명확히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예 ■

4) 피난 층에 도착 후 문 열림 대기시간이 15초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5) 피난운전 스위치가" 해제" 위치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지정된 피난 층으로 복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피난운전 운행이 중단된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5.9에 따라 각 층 승강장에 시각적, 청각적으로 안내되는지 확인한다.

예 ■

1.12.5 카 및 승강장 설비

가) 지정된 피난층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6.1에 따라 설치된 카 위치 표시기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피난 활동 통화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7에 따라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1.13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의 상태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모든 승강기부품은 심한 마모 또는 부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승강기부품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예 ■

1.14 그 밖의 표시 등

1.1~1.13에서 규정한 표시 등을 제외한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작동 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가 훼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1.15 자체점검의 확인

엘리베이터에 대한 자체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지적사항]

2. 경사형 엘리베이터 정기검사기준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2.1 기본제원(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작성한다)

■ 현장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호기(설치위치)

■ 승강기번호

■ 승강기 인증번호

■ 모델명/제품명

■ 승강기의 종류(용도)

☐ 승객용 ☐ 전망용 ☐ 병원용 ☐ 장애인용 ☐ 승객화물용 ☐ 화물용 ☐ 자동차용

■ 운행층수(전체)

· 정면

· 후면

· 측면

■ 정격하중(kg)

■ 전원공급

· 전압(V)

· 주파수(Hz)

■ 정격속도(m/s)

■ 적용인승 ☐

■ 운행거리(m) ☐

■ 경사도(°) ☐

■ 출입문개폐방식 ☐

■ 기계실 위치

☐ 승강로 상부 ☐ 승강로 아래 ☐ 승강로 측면 ☐ 기타 위치

위의 모든 사항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

2.2 기계류 공간_일반사항(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2.2.1 적용방식

기계실 내 기계류	☐ 2.2.2 참조
승강로 내의 기계류	
승강로 내의 작업구역	☐ 2.2.3.1 참조
카상부 또는 카의 작업구역	☐ 2.2.3.2 참조
피트내의 작업구역	☐ 2.2.3.3 참조
승강로 플랫폼 위의 작업구역	☐ 2.2.3.4 참조
승강로 외부의 작업구역	☐ 2.2.3.5 참조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 2.2.4 참조
풀리공간	
풀리실	☐ 2.2.5.1 참조
승강로 내의 풀리실	☐ 2.2.5.2 참조

2.2.1.1 주개폐기

가) 주 개폐기 차단 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4.1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주 개폐기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4.4에 따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고,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쉽게 식별되는지 확인한다.

예 ■

2.2.1.2 접근

가) 기계류 공간의 접근/출입수단(계단, 사다리, 피트 출입문)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7.4.2 및 7.2.2에 따라 안전하게 접근 및 출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풀리실 및 관련 작업구역의 접근통로가「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 및 7.2.1에 따라 개인적인 공간을 경유하지 않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2.2.1.3 안전표시

가)「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2.5에 따른 장소의 주의사항 및 표시를 확인한다.

예 ■

나) 보호조치가 필요없는 매끄럽고 둥근 부품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1에 따라 부분적으로 노란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2.1.4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가)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에 따라 감시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3에 따라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에서 조도가 5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다) 비상운전 수단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13.5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고장처리 및 승객구출 설명서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자동구출운전장치가「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5.4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2.2.1.5 통신

피트, 승강로 내부 작업구역 및 카 지붕 등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10에 따라 피난 공간에서 조작 가능하고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2.1.6 누수

가) 승강로 및 피트에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은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2.2.2 기계실 내의 기계류(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2.2.2.1 기계실 내의 기계류 해당없음 □

가) 기계실에「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1에 따른 설비를 제외한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실 작업공간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실 출입문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7.3.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실 바닥의 개구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5에 따라 물체가 승강로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기계실의 환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6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바)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사) 콘센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7 및 14.5.5.2에 따라 1개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아)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3.8에 따라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2.3 승강로 내의 기계류(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2.2.3.1 승강로 내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승강로의 환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7.4.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조명이「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7.4.8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9에 따라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2.3.2 카 내 또는 카 지붕의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통제되지 않은 카의 움직임을 보호하기 위한 기계적인 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3.1가)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4.2에 따라 안전하게 승강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점검문 또는 점검트랩문(전기적 스위치가 포함)이 카의 벽에 있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3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점검문/점검 트랩문을 열고 카 내부에서 카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점검운전 조작반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3.4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2.3.3 피트 내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구동기가 피트에 설치되고 피트에서 유지관리/점검이 수행되는 동안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의 위험이 있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4.1 가),나),다)에 따라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피트에 출입하는 문이 열렸을 때「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7.4.4.1 마)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엘리베이터의 정상운전으로의 복귀가 7.4.4.1 아)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4.2에 따라 안전하게 피트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2.3.4 플랫폼 위의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영구적으로 고정 설치되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작업용 플랫폼이「경사형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1에 따라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플랫폼이 엘리베이터 주행로에 있는 경우,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설치된 기계적인 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2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집어넣을 수 있는 플랫폼의 경우, 완전히 집어넣어진 위치를 확인하는 전기안전장치가「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4가)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집어넣을 수 있는 플랫폼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4나)에 따라 피트 또는 승강로 외부에서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플랫폼으로의 접근이 승강장문을 통하지 않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4에 따라 플랫폼이 작업 위치에 없을 때 플랫폼으로 출입하는 문의 개방이 불가능하거나 추락을 방지하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완충기가 결합된 나)의 장치와 전기안전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5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플랫폼에서 카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점검운전 조작반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5.6에 따라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2.3.5 승강로 외부의 작업공간 해당없음 ☐

가) 승강로 외부에서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6.2에 따라 점검문의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기계류 공간의 환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8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콘센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8, 14.5.5.2에 따라 1개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9에 따른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2.4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해당없음 ☐

가) 엘리베이터 전용공간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1에 따라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2에 따른 허용 개구부를 제외하고 기계류 공간의 벽, 지붕, 바닥 및 문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류 공간의 출입문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3에 따라 문 잠금 및 열림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기계류 공간의 환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마) 기계류 공간의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바) 기계류 공간의 콘센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5 및 14.5.5.2에 따라 1개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2.5 풀리공간 해당없음 □

2.2.5.1 풀리실 해당없음 □

가) 풀리실 출입문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풀리실 바닥의 개구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5에 따라 물체가 승강로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풀리실 접근지점 가까운 곳에 있는 정지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6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풀리실의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8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풀리실의 콘센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1.8 및 14.5.5.2에 따라 1개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2.5.2 승강로 내의 풀리 해당없음 □

승강로 내부에 편향 풀리가 설치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2에 따라 유지보수, 점검운전 및 작동시험이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예 ■

2.3 승강로

2.3.1 피트 내 설비

가) 피트 바닥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4.1에 따라 피트에 물이 침투되지 않거나 물을 제거하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두개 이상의 점검운전 조작반이 "점검" 위치에 있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2.1.4.3 나)에 따라 동일한 조작버튼을 동시에 누를 때만 운행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피트 내의 정지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4.4가)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피트 내의 콘센트 및 조명 점멸장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4.4나),다)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튀어오름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2.1.3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3.2 틈새 및 여유거리

2.3.2.1 권상구동방식 틈새 해당없음 □

가) 균형추 또는 평형추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카의 상부틈새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상부틈새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3.2.2 포지티브 구동방식 틈새 해당없음 □

가) 카의 상부틈새는 카가 완전히 압축된 상부 완충기에 있을 때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카의 하부틈새는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 위에 있을 때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3.2.3 전면에 출입문이 있는 엘리베이터 해당없음 □

엘리베이터 전면에 출입문이 설치된 경우, 위의 권상구동방식의 상부틈새, 포지티브 구동방식의 상부틈새, 피트 하부틈새는 제외되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4.4에 따른 피트와 승강로 상부공간 내의 작업구역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3.3 완충기

가) 완충기가 확실하게 고정되고 충돌지점에 정확하게 정렬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복귀(전기안전장치 포함)하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1.3.6 다)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정상운행 되는지 확인한다.

예 ■

2.3.4 완충기 받침대 해당없음 □

완충기 받침대가 설치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1.3.1 및 11.3.2에 따라 완충기 충격 영역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3.5 승강로 내의 보호

가) 밀폐식 승강로의 경우,「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2.1에 따라 개구부가 없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주행구간에 설치된 칸막이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1.1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6.2에 따라 설치된 칸막이가 움직이는 부품들과 충돌이 없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반-밀폐식 승강로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3.2에 따라 적합한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승강로 환기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승강로 내 도르래·풀리 및 스프로킷의 보호수단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7에 따라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사)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8에 따라 다른 용도의 설비가 없는지 확인한다.

예 ■

아) 승강로에 설치된 점검문 및 비상문, 점검 트랩문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자) 승강로(주행구간)아래 사람이 접근할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2에 따라 적절한 칸막이로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3.6 승강장문

가)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자동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5.1에 따라 함몰되거나 돌출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어린이 손끼임방지 수단(틈새)이「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5.2.2.1 바)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3.7 조명 및 콘센트

가) 승강로 내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9 및 14.5.5에 따라 조도, 점멸수단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피트 내 콘센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7.4.4나)에 따라 1개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3.8 카 및 균형추/평형추의 주행안내 레일

주행안내 레일이「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1.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4 카, 운전 및 접근허용

2.4.1 카

가) 카 바닥에서 1.1m 미만에 유리가 사용된 카 벽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3.1.4에 따라 손잡이의 고정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카 내부(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장의 적재구역)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2.2.1에 따른 정격하중 등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비상통화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2.3에 따라 카 내에서 건물 내 및 유지관리업체 등으로 통화가 가능하고 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카의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7.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마) 카의 비상등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7.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바) 카의 과부하감지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2.5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에이프런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4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아) 카의 비상구출문 및 비상문의 전기안전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2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4.2 카 지붕

가) 점검운전 조작반, 정지장치 및 콘센트가「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5에 따라 카 지붕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지붕의 점검운전 스위치 작동 시「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2.1에 따라 정상운전제어, 도어작동 제어가 무효화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카 지붕의 보호수단 및 보호난간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3.3.2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4.3 카문

가)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6.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자동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1에 따라 함몰되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카 문의 문턱과 승강장문의 문턱 사이의 수평 거리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어린이 손끼임방지 수단(틈새)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2.2.1바)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4.4 승강장 문 및 카 문의 시험

가) 문닫힘 안전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5.2.2.1다), 9.7.2.2.1다)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카 내부의 열림 버튼이「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8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문의 틈새가「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7.2.2.1에 따라 중앙 개폐식 문은 25 ㎜, 측면 개폐식 문은 50 ㎜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승강장 바닥의 조명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6.1에 따라 50 lx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마) 카가 잠금해제구간 밖에 있을 때,「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3.3.3 및 8.7.6에 따라 승강장문이 100 ㎜ 열린 상태에서 자동으로 닫히고 잠기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승강장문의 비상잠금해제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3.3에 따라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잠금해제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사)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에 문이 확실하게 잠기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이 부착되거나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아) 카문의 개방을 제한하기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1.3에 따라 카문의 열림이 50 ㎜ 이상 열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자) 각 승강장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접점이 개방되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4에 따라 잠금해제구간 밖의 카가 정지하고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차) 승강장문의 닫힘 및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장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3에 따라 작동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카) 카문의 잠금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11.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타) 카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9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파) 수동개폐식 승강장 문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6.2에 따라 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카 있음" 신호표시가 작동되는지, 투명 전망창이 있는 경우에는 파손이 없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4.5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 무선 통신장치

가)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 카 내부에 표시되는 내용과 글자 크기의 높이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6 나)에 따라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무선 통신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6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봇이 KS B 7317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안전성 평가서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2.4.6 정상운전 제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2.3에 따라 시각적 표시 또는 신호가 카 내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에 정지했는지 알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2.5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제동 및 권상

2.5.1 매다는 장치 해당없음

☐

2.5.1.1 로프 해당없음

☐

가) 로프의 마모 및 파단이 부속서 Ⅳ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로프의 직경

[redacted]

나) 로프(벨트)의 본수가 제원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예 ■

2.5.1.2 로프 끝부분 처리 해당없음

☐

가) 로프의 끝부분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1.4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로프 간 장력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에 따라 균등한지 확인한다.

예 ■

2.5.1.3 체인 해당없음

☐

가) 체인의 호칭번호가 제원과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체인의 끝 부분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2에 따른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체인 간 장력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에 따라 균등한지 확인한다.

예 ■

2.5.2 매다는 장치의 늘어짐 해당없음 ☐

로프 또는 체인 이완감지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5에 따라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2.5.3 보상수단 해당없음

☐

가) 튀어오름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6.2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보상/루프 로프가 설치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6.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2.5.4 권상/제동 해당없음

☐

가) 무부하의 정격속도로 상승운행 중 비상정지 시켜 로프와 도르래간 과도한 미끄러짐 없이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권상도르래의 언더컷 잔여량이 1 ㎜ 이상, 주로프 가닥끼리의 높이차가 2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2.6 안전점점 및 회로

2.6.1 안전접점 및 회로

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1.5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피트, 기계실 및 풀리실, 카 지붕, 점검운전 조작반, 엘리베이터 구동기 및 패널의 정지장치 작동 시 카의 움직임이 방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승강장 문짝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7.6.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로프 또는 체인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5에 따라 이완감지장치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마) 완충기 행정을 감소하기 위한 전기적 강제감속 시스템이 있는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8에 따라 최상층 및 최하층에 도착하기 전에 감속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전기안전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1.2에 따라 작동될 경우 카의 움직임이 방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2.7 카 및 균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와 과속에 대한 보호

2.7.1 카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 작동 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8.3.1에 따라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되면 하강방향으로 움직이는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카의 수평도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8.7에 따라 5 %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검사 후,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8.5에 따라 정상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8.8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2.7.2 카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의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9.8.1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9.7에 따라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의 마모 및 파단이 부속서 Ⅳ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과속조절기 로프의 직경 ____ ㎜ 예 ■

2.7.3 균형추 및 평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 작동시 균형추 및 평형추의 추락방지장치가 작동하여 균형추 및 평형추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위의 가) 검사 후, 정상 운행에 지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2.7.4 균형추/평형추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의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9.8.1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과속조절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9.7에 따라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의 마모 및 파단이 부속서 Ⅳ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과속조절기 로프의 직경 ____ ㎜ 예 ■

2.7.5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가)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10.6에 따라 작동 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검사 후,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10.9에 따라 정상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2.7.6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장치

무부하 상승시 문열림출발이 감지되면「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11.5에 따른 보호거리 내에서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2.8 주행성능 측정

가) 카가 주행하는 중간지점에서 카의 속도와 전동기의 전류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카의 부하상태	운행 방향	속도(㎧)	전류(A)	제착상 (<0.3㎧)	점검운전 (<0.63㎧)	비상운전 (<0.63㎧)
0%	상승					
	하강					

나) 권상구동 엘리베이터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6에 따라 주행구간의 중간에서 측정한 속도가 정격속도의 92% 이상 105% 이내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착상정확도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2에 따라 모든 승강장에서 ±10 ㎜ 이내이고, 적재 또는 하역 중에는 ±20 ㎜ 이내인지 확인한다.

예 ■

2.9 보호장치

2.9.1 전동기의 보호 예 □

전동기 보호장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3.3에 따라 과열에 대해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2.9.2 조명 및 콘센트의 보호 예 □

모든 조명 및 콘센트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5.5 및 14.5.6에 따라 적절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2.10 전기적 보호

2.10.1 절연저항

가)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3에 따라 1 MΩ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조명장치의 절연저항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3에 따라 1 MΩ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2.10.2 전기배선

이동케이블을 포함한 전기배선의 늘어짐 및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2.11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의 상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모든 승강기부품은 심한 마모 또는 부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승강기부품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예 ■
2.12 그 밖의 표시 등
2.1~2.11에서 규정한 표시 등을 제외한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작동 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가 훼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2.13 자체점검의 확인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한 자체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지적사항]

3. 에스컬레이터 정기검사기준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1 기본 제원	
3.1.1 일반사항(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현장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호기(설치위치)**	■ **승강기번호**
■ **승강기 인증번호**	■ **모델명/제품명**
■ **층고**	■ **경사도**
■ **공칭폭**	■ **정격속도**
3.1.2 구동기 설치 위치	
☐ 골조 구조물(Truss) 내부	☐ 골조 구조물(Truss) 외부

3.1.3 제어반 설치 위치

☐ 골조 구조물(Truss) 내부 ☐ 골조 구조물(Truss) 외부

3.1.4 디딤판 형식

☐ 스텝식 ☐ 팔레트식 ☐ 벨트식

3.1.5 구동방식

☐ 체인식 ☐ 기타방식_____

3.1.6 구동 운전방식

☐ 인버터식 ☐ Y-△식 ☐ 직결식 ☐ 기타방식_____

3.1.7 디딤판 체인 윤활

가) 윤활방법을 확인한다. 자동식 ■ 수동식 ■

나) 윤활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1.8 손잡이 체인 윤활

가) 윤활방법을 확인한다. 자동식 ■ 수동식 ■

나) 윤활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1.9 구동체인 윤활

가) 윤활방법을 확인한다. 자동식 ■ 수동식 ■

나) 윤활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1.10 기타

가) 수동핸들을 비치하는 경우, 수동핸들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1.4에 따라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자동운전 방식(준비운전)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기계류 공간 및 구동 순환장소는「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5.8.1에 따라 운전, 유지보수 및 점검에 필요한 설비만 있으며, 움직이는 부품에 대한 보호 및 방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위의 모든 사항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

3.2 일반 정보

3.2.1 안전표시

사용 표지판, 표지 및 안내문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6.1에 따라 안전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2.2 수동핸들 지침

수동핸들이 제공될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6.1.3에 따라 사용지침이 근처에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운행방향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2.3 기계류 접근 출입문 안내

골조 구조물(Truss) 외부의 기계류 공간, 구동 및 순환장소가 있는 경우, 출입문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6.1.4에 따라 안내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2.4 비상정지장치 색상

모든 비상정지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6.1.2.2에 따라 적색으로 표시되고 비상정지장치 또는 그 근처에 "정지"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2.5 유지보수 및 점검 중 접근방지 수단

유지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해 접근을 막는 수단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6.1.2.3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근처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2.6 자동 기동 운행방향 표시장치

자동 기동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경우, 운행방향 표시장치(시각 신호시스템)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6.2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3 설치현장 주변장치

3.3.1 접근금지장치

가) 에스컬레이터가 벽 근처에 위치하여 하부 외측 데크의 폭(b_{13})이 125 ㎜를 초과할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2에 따라 그 벽의 상·하부 끝에 설치된 접근금지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인접한 평행 배치로 결합된 난간 데크의 폭(b_{14})이 125 ㎜를 초과할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2에 따라 설치된 접근금지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3.2 미끄럼방지장치

핸드레일 높이의 난간 데크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와 근처의 벽 사이에 있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2에 따라 설치된 미끄럼방지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3.3 장애물로부터의 보호

건축물의 장애물로 인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4에 따라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3.4 방화셔터 인근의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승강장에 대면하는 방화셔터가 손잡이 반환부의 선단에서 2 m 이내에 설치된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5.1에 따라 방화셔터가 닫히기 시작할 때 연동하여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는 자동으로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3.5 연속되는 에스컬레이터 사이 공간

연속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사이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5.2에 따라 디딤판이 콤 교차선에 도달하기 전 2 m ~ 3 m 사이에 설치된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3.6 손잡이 바깥쪽 건물난간

사람이 승강장에서 손잡이 바깥 끝단에 접촉할 수 있고, 추락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7에 따라 예방 조치된 진입방지 및 고정난간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3.7 조명 및 콘센트

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주변 또는 콤 부근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8, Ⅰ.2.9, Ⅰ.3.3 및 Ⅰ.3.4에 따라 조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골조 구조물(Truss) 내부의 구동·순환 장소 및 기기 공간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8.3에 따라 어느 한 곳에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용 조명이 비치되어 있으며, 각 장소에는 1개 이상 설치된 콘센트의 상태를 확인한다.

예 ■

3.4 조명, 절연 및 접지

3.4.1 조명 절연저항

가) 손잡이 조명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절연저항이 1㏁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스커트 가드 조명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절연저항이 1㏁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콤 조명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절연저항이 1㏁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디딤판 하부 조명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절연저항이 1㏁ 이상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4.2 접지, 전동기 절연저항 및 배선

가) 전동기 절연저항이 1㏁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제어반에는 접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정전기 방지조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1.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주 개폐기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5 틈새

3.5.1 디딤판 주행안내

디딤판 주행안내 시스템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3.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5.2 스텝/팔레트 사이의 틈새

연속되는 2개의 스텝 또는 팔레트 사이의 틈새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3.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5.3 디딤판과 스커트 사이 틈새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의 디딤판과 스커트 사이의 수평 또는 수직틈새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5.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5.4 트레드 홈에 맞물리는 콤의 깊이

가) 트레드 홈에 맞물리는 콤 깊이(h_8)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7.3.3.1에 따라 4 ㎜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나) 트레드 홈에 맞물리는 콤 틈새(h_6)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7.3.3.2에 따라 4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3.5.5 손잡이 외형 및 가이드/덮개

손잡이 외형과 주행안내 장치 또는 덮개 외관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2.1에 따라 이상마모 또는 접합부 박리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3.5.6 손잡이 틈새

손잡이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2.1 및 부속서 Ⅰ.2.2에 따라 충돌 및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자유구역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6 전기 안전장치

3.6.1 유지점검 및 보수용 정지스위치

구동 및 순환 장소에 유지보수 정지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1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6.2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8에 따라 승강장 또는 승강장 근처에 설치되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6.3 과부하(전류 증가)

전동기 과부하장치가 작동하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1.3.2에 따라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6.4 과부하(온도 증가) 해당없음 □

전동기 과부하장치가 온도상승에 의해 작동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1.3.3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6.5 과속감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는 과속이 발생하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2.3 및 5.12.2.7.2에 따라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정지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6.6 의도되지 않은 운행 방향의 역전 해당없음 □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는 의도되지 않은 운행방향의 역전이 발생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5.4.2.3 및 5.12.2.7.3에 따라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정지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6.7 보조브레이크의 미-작동 감지 해당없음 □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는 보조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4에 따라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6.8 인장장치의 과도한 움직임

디딤판 체인 인장장치의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3.3, 5.4.4.2 및 5.12.2.7.6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정지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6.9 디딤판체인의 파단과 과도한 늘어짐

디딤판 체인의 파손 또는 과도한 늘어짐이 발생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3.1 및 5.12.2.7.5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정지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6.10 콤 안전장치

콤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이물질이 끼었을 때 등)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7.3.2.6 및 5.12.2.7.7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정지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6.11 연속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추가 정지장치 해당없음 □

중간 출입구 없이 연속되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8 및 부속서 I.2.6에 따라 1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면 나머지 1대도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6.12 손잡이 인입구 장치

손잡이 인입구에 이물질이 끼이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4.3 및 5.12.2.7.9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6.13 스텝/팔레트 처짐 감지 장치 해당없음 □

스텝 또는 팔레트에 처짐이 발생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7.2.5 및 5.12.2.7.10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는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기동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6.14 스텝/팔레트 누락 감지 장치

스텝 또는 팔레트가 누락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3.6 및 5.12.2.7.11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6.15 브레이크의 미-작동 감지장치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운행 시작 후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개방되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12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정지되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6.16 손잡이의 속도 편차 감지

손잡이와 디딤판 사이 속도차가 발생하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1 및 5.12.2.7.13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6.17 점검용 덮개 열림

점검용 덮개가 제거되거나 열리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2.1.6, 5.2.4 및 5.12.2.7.14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3.6.18 과도한 정지거리

과도한 정지거리가 발생되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10에 따라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6.19 접지 결함

안전장치가 있는 회로의 접지결함은「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1.4에 따라 구동기를 정지시키고,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까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6.20 수동핸들의 설치 감지

탈착 가능한 수동핸들이 제공되는 경우, 수동핸들이 장착되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1.4 및 5.12.2.7.16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6.21 점검운전 제어장치의 정지장치 작동 감지

점검운전 제어장치에 있는 정지장치가 작동되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18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6.22 쇼핑 카트 및 수하물 카트 진입방지대 감지

진입방지대는「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19 및 부속서Ⅰ.4.2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7 운전장치

3.7.1 점검운전 제어장치

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유지보수, 수리 및 점검을 위해 휴대가 쉽고, 수동으로 작동하는 점검운전 제어장치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13.1에 따라 대당 1개 이상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점검운전 제어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13.1 및 5.12.3.13.3에 따라 조작되며, 운행방향버튼에는 운행방향이 버튼 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점검운전 제어장치의 이동케이블 연결을 위한 점검용 콘센트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13.2에 따라 적어도 각 승강장[골조 구조물(Truss) 내의 구동 및 순환 장소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어떤 곳이든 도달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점검운전 시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13.4에 따라 점검운전 제어장치가 기동시키는 유일한 수단이고, 2개 이상의 점검운전 제어장치가 점검용 콘센트에 연결된 경우, 모든 점검운전 제어장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기동시킬 수 없는지 확인한다.

예 ■

3.7.2 수동 기동운전

가) 수동 기동운전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2 및 5.12.3.11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정지하기 전 운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수단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6에 따라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7.3 자동 기동 운전 -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기동/양 방향 기동 해당없음 □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기동 ■ / 양 방향 기동 ■

가) 이용자의 진입을 감지하여 자동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3.1 또는 5.12.3.4.1에 따라 이용자가 콤 교차선에 도착할 때 공칭속도 0.2배 이상으로 움직이고, 이용자가 출입 시 감지하는 수단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예 ■

나) 자동 운전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3.2, 5.12.3.4.2 및 6.2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시각 신호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예 ■

다) 이용자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미리 정해진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에 5.12.3.3.1 및 5.12.3.3.2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10초 이상 운행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이용자를 감지하는 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3.3.3 또는 5.12.3.4.3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감지수단이 작동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에 5.12.3.7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비상정지스위치에 의해 정지된 후 자동-재기동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설치된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에 5.12.3.12에 따라 자동-재기동이 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3.8 디딤판, 손잡이, 난간 및 주변보호

3.8.1 디딤판 주행

디딤판은 각각의 운행방향에 대해 상호 디딤판, 스커트 패널, 콤, 디플렉터 및 기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구조 부품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8.2 손잡이 주행

손잡이는 각각의 운행방향에 대해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구조 부품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8.3 스커트 및 스커트 디플렉터 해당없음 ☐

가) 스커트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3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스커트 디플렉터는「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3.4다)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8.4 기어오름방지장치 해당없음 ☐

기어오름방지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2가)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8.5 접근금지장치 해당없음 ☐

접근금지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2가)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8.6 미끄럼방지장치 해당없음 ☐

미끄럼방지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5.2.2나)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8.7 안전 보호판 해당없음 ☐

안전 보호판(고정식/비고정식)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Ⅰ.2.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8.8 쇼핑카트 해당없음 ☐

쇼핑카트를 사용하는 곳 주변의 에스컬레이터가 쇼핑카트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I.4에 따라 설치된 접근 방지대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8.9. 옥외용 에스컬레이터의 추가요건

해당없음 □

가)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투영면적 바로 위에 보호 덮개가 설치되거나 눈·비 등에 젖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한 디딤판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7.2.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난방시스템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7.2.2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배수 및 정화시설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7.2.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승강장 플레이트 및 콤 플레이트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7.2.4에 따라 미끄러지지 않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조명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7.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3.9 주행성능 측정

3.9.1 속도, 전류 및 정지거리

가) 무부하 상태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다음을 측정하여 기록하되, 2대 이상의 전동기가 설치된 경우, 각 전동기에 대해 측정한다.

구 분		순방향(상승)	역방향(하강)
디딤판 속도			
핸드레일 속도	좌 측		
	우 측		
정지거리			

나) 디딤판의 속도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2.1.2에 따라 공칭속도의 ±5%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속도차이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1에 따라 0~2% 이내인지 확인한다.

예 ■

라) 핸드레일은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1에 따라 정상운행 중 운행방향의 반대편에서 450 N의 힘으로 당겨도 정지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3.9.2 보조브레이크 해당없음 □ 정상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2.2에 따라 보조브레이크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3.10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의 상태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모든 승강기부품은 심한 마모 또는 부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승강기부품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예 ■
3.11그 밖의 표시 등
3.1~1.10에서 규정한 표시 등을 제외한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작동 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가 훼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3.12 자체점검의 확인
에스컬레이터 자체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지적사항]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정기검사기준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4.1 기본제원(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현장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호기(설치위치)

■ 승강기번호

■ 승강기 인증번호

■ 모델명/제품명

■ 운행층수(전체)

· 정면

· 후면

· 측면

■ 전원공급

· 전압(V)

· 주파수(Hz)

■ 정격하중(kg)

■ 정격속도(m/s)

■ 구동방식 권상/권동/유압

■ 출입문개폐방식

■ 기어형식 WG.HG.GL.Etc

■ 운행거리(m)

■ 기계실 위치

☐ 승강로 상부	☐ 승강로 아래	☐ 승강로 측면	☐ 기타 위치

위의 모든 사항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

4.2 기계실(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4.2.1 기계실의 설비

4.2.1.1 주개폐기

가) 주 개폐기 차단 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4.1 및 13.4.3에 따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이 방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주개폐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4.2에 따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고, 여러 대의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등 다른 승강기가 있는 경우 쉽게 식별되는지 확인한다.

예 ■

4.2.1.2 접근 및 출입

구동기 및 관련 설비의 접근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에 따라 적절하게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4.2.1.3 안전표시

가) 표시 및 주의사항 등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5에 따라 식별/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위험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회전부품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9에 따라 부분적으로 노란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2.1.4 누수

가) 승강로는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은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4.2.1.5 비상운전

가) 기계실 근처에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4.1.2 및 12.3.9.2에 따라 잠금해제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비상운전장치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4 및 12.3.9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4.2.2 기계실의 내부

가) 기계실에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1에 따라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실 출입문(점검문)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2.3에 따라 잠금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실의 환기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2.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조명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마) 콘센트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4에 따라 허용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4.3 승강로

4.3.1 피트 내 장치 해당없음 ☐

가) 피트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 피트 내의 기계적 정지장치는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4.2 및 14.2.2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피트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 피트 내의 콘센트는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4.3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승강로에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4.3.2 틈새 및 여유거리

가) 권상구동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해당없음 ☐

– 균형추 및 평형추가 가장 낮은 위치(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램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카의 상부틈새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 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균형추 및 평형추의 상부틈새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나) 포지티브구동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해당없음 □

– 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상부틈새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유압구동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해당없음 □

– 램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3.1에 따라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과 램의 가장 높은 부분 사이의 거리가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 평형추 주행안내 레일의 길이는 카가 고정된 쐐기 또는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에 위치할 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6.3.2에 따라 가이드 슈/롤러 위로 0.1 m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4.3.3 완충기 해당없음 □

4.3.3.1 카 및 균형추 완충기 해당없음 □

가) 완충기가 확실하게 고정되고 충돌지점에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완충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예 ■

다) 완충기가 정상적으로 복귀(전기안전장치 포함)하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4.1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정상운행 되는지 확인한다.

예 ■

4.3.4 승강로 내의 보호

가) 밀폐식 승강로의 경우에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2.1에 따른 개구부를 제외한 개구부가 없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주행구간에 설치된 칸막이가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5.1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여러 대의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가 있는 경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5.2에 따라 설치된 칸막이가 움직이는 부품들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승강로 환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2.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도르래,풀리 및 스프로킷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6에 따라 보호 조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다른 용도의 설비가 없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승강로에 설치된 점검문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5.2.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3.5 승강장문

가)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자동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1.3에 따라 함몰되거나 돌출부분이 3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4.3.6 주행안내 레일

카 및 균형추(평형추)의 주행안내 레일이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1에 따라 고정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4.4 카, 점검운전 및 접근허용

4.4.1 카

가) 에이프런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4.1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출입구에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5에 따라 승강로 벽과 충돌을 방지하는 수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4.2 카문 해당없음 ☐

가) 카 문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6.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문을 닫았을 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6.2에 따라 카 출입구를 완전히 막는지 확인한다.

예 ■

4.4.3 승강장 문 및 카 문의 시험

가) 동력 작동식 문인 경우, 문닫힘 안전장치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5.2.1.2 및 8.7.1.2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문 벌어짐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2.3.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승강장 조명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승강장문이 카 문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3.2 및 7.7.5에 따라 해제하면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잠기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승강장문의 비상잠금해제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3.2에 따라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잠금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바) 각 승강장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접점이 개방되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4에 따라 잠금해제구간 밖의 카가 정지하고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승강장문의 닫힘과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장치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3.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아) 카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3.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자)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2.1에 따라 잠금해제구간 밖에서 카/승강장문 접점 또는 여러 개의 문중 어느 하나라도 열려 있을 때 카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차) 수동개폐식 문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에 따라 "카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수단의 표시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5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제동 및 권상

4.5.1 매다는 장치

해당없음 □

4.5.1.1 로프

해당없음 □

가) 로프의 마모 및 파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Ⅳ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redacted] 예

[redacted]

나) 로프(벨트)의 본수가 제원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예 ■

4.5.1.2 로프 단말처리

해당없음 □

가) 로프 끝부분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2.2에 따라 체결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로프 간의 장력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4.5.1.3 체인

가) 체인의 호칭번호가 제원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체인 간 장력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5에 따라 균등한지 확인한다.

예 □

4.5.2 매다는 장치의 이완감지장치

매다는 장치에 이완감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7 및 12.3.13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5.3 권상/제동

가) 무부하의 정격속도로 상승운행 중 비상정지 시켜 로프와 도르래간 과도한 미끄러짐 없이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권상도르래의 언더컷 잔여량이 1 ㎜ 이상, 주 로프 가닥끼리의 높이차가 2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4.6 안전회로

4.6.1 안전접점 및 회로

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5에 따라 설치되고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피트, 승강로 내부 등에 에 설치된 정지장치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2.2에 따라 작동 시 카의 움직임을 방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문 개방된 상태에서의 착상 및 재-착상은「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2.1.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승강장 문짝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7.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로프 또는 체인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3.13에 따른 이완감지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바) 전기안전장치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1.2에 따라 작동될 경우 카의 움직임을 방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4.7 카 및 균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와 과속에 대한 보호

4.7.1 카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 작동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8.1.1에 따라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되고, 하강방향으로 움직이는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검사 후,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8.5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적합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4.7.2 카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의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9.2에 따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과속조절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9.2.8에 따른 봉인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의 마모 및 파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Ⅳ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 예

■

4.7.3 균형추 및 평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과속조절기 작동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8.1.1에 따라 추락방지안전장치가작동하여 균형추 및 평형추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검사 후,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4.7.4 균형추/평형추측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가) 설치된 경우, 과속조절기의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9.2에 따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과속조절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9.9.2.8에 따른 봉인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의 마모 및 파단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Ⅳ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 예

■

4.7.5 멈춤 쇠 장치 해당없음 □

가) 멈춤 쇠 장치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3.4에 따라 작동하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멈춤 쇠 장치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3.4에 따라 변형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4.7.6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4.2.1.3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8 주행성능 측정

4.8.1 일반적인 주행시험

가) 카가 주행하는 중간지점에서 카의 속도와 전동기의 전류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카의 부하상태	운행방향	속도(m/s)	전류(A)
무부하	상승		
	하강		

나) 권상구동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2.5에 따라 주행구간의 중간에서 측정한 속도가 정격속도의 92~110% 이내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유압식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3.8에 따른 주행구간 중간에서 측정한 속도가 정상속도(빈 카의 상승)의 1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4.8.2 유압시스템의 점검 해당없음 □

가) 릴리프 밸브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3.5.3에 따라 전부하 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지기 전에「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3.13에 따라 더 이상 하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유압유의 온도감지장치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3.14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럽처밸브 또는 유량제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2.3.5.5 및 12.3.5.6에 따라 누유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4.9 보호장치

4.9.1 전동기의 보호

전동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3에 따라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예 ■

4.9.2 조명 및 콘센트의 보호

모든 조명 및 콘센트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6에 따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전원과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4.10 전기적 보호

4.10.1 절연저항

가) 전동기 절연저항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3에 따라 1㏁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조명장치 절연저항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1.3에 따라 1㏁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4.10.2 전기배선

전기배선의 늘어짐 및 손상을 확인하고 모든 접지선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5.3에 따라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4.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의 상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모든 승강기부품은 심한 마모 또는 부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승강기부품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예 ■

4.12 그 밖의 표시 등

4.1~4.11에서 규정한 표시 등을 제외한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작동 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가 훼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4.13 자체점검의 확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자체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지적사항]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기준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5.1 기본제원

■ 현장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설치위치(호기)

■ 승강기번호

■ 승강기안전인증 번호

■ 모델명/제품명

■ 정격용량 kg

■ 플랫폼 mm × mm

■ 정격속도 m/s

■ 운행구간

■ 전동기 전원공급

· 정격전압 V

· 정격전류 A

■ 구동방식

랙-피니언 구동방식	☐	5.8.2 참조
로프 및 체인 현수 구동방식	☐	5.8.3 참조
스크류-너트 구동방식	☐	5.8.4 참조
마찰 견인 구동방식	☐	5.8.5 참조
유도체인 구동방식	☐	5.8.6 참조
펜터그래프식 구동방식	☐	5.8.7 참조
유압 구동방식	☐	5.8.8 참조

2차전지 구동방식 ☐ 5.8.9 참조

■ 옥외 설치 해당없음 ☐

위의 모든 사항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

5.2 일반사항

5.2.1 전용전원

주개폐기 차단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1에 따라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움직임이 방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5.2.2 기계안전

가) 업무수행자 및 이용자 등을 위한 보호수단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3, 5.1.11.3, 5.1.4.4.2, 5.9.1 및 5.10.8.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보호수단을 고정하는 부품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3에 따라 보호수단 제거 후에도 보호수단 또는 기계장치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권상도르래, 풀리 및 스프로킷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7에 따라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2.3 조도 및 콘센트

가) 카 바닥, 카 조작반 및 승강장 문 근처의 조명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4에 따라 작동되고 있는지 상태를 확인한다.

예 ■

나) 조명스위치를 설치한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4에 따라 비인가된 조작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비상등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4에 따라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에 연결되어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즉시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전원 콘센트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5에 따라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근처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2.4 비상구출운전/수동운전

5.2.4.1 일반사항(유압구동방식 제외)

해당없음 ☐

가) 비상구출운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15분 이내에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비상운전설명서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6.1에 따라 경고문이 명시되어 보기 쉬운 곳에 부착 및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수권조작 장치 사용시 브레이크 수동 개방력이 30 N 이상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브레이크 개방 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예비전원 또는 장치를 사용하는 비상운전을 하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비상구출 운전장치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6.2에 따라 운행방향을 나타내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2.4.2 유압 구동방식에서의 비상운전 해당없음 □

가) 수동조작 비상하강밸브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7.1에 따라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수동조작 비상하강밸브 조작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7.1에 따라 지속적인 수동 작동력이 요구되며, 의도되지 않은 조작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간접 유압식의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7.1에 따라 밸브의 수동 작동으로 로프 또는 체인의 이완 및 램의 함몰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수동펌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7.2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수동조작 비상하강 밸브 근처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6.3에 따라 "위험-비상하강밸브" 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2.5 경고 및 표시

승강기번호, 경고 및 표시 문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4, 6.1에 따라 부착 및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3 유지보수 및 검사를 위한 접근

5.3.1 카 위 작업구역 해당없음 □

가) 기계적인 고정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1.2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에 천장이 있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5에 따라 다음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1) 천장 접근을 위한 문은 열쇠가 사용되어야 되며, 카의 정상적인 운전이 방지되어야 한다.

예 ■

2) 카의 정상 운행 복귀는 인가된 작업자만 접근 가능한 승강로 외부의 재-설정 장치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예 ■

3) 천장을 발로 밟는 것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야 한다.

해당없음 □ 예 ■

5.3.2 카 아래 작업구역

5.3.2.1 기계적 고정장치 해당없음 □

가) 카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카 하부 여유틈새가 500 ㎜ 미만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1가)에 따라 설치된 수동식 기계적 고정장치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기계적 고정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1나)에 따라 기능의 사용목적과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기계적 고정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1다)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시각적 경고안내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3.2.2 피트 출입문 해당없음 □

피트 출입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1다)에 따라 열쇠로 열려야 하며, 열렸을 때는 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5.3.2.3 정상운행 재-설정

카의 정상적인 운행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1다)에 따라 업무수행자만이 접근 가능한 승강로 밖의 재-설정 장치에 의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5.3.2.4 피트에서의 점검운전 해당없음 □

카를 피트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1라)에 따라 5.5.17에 따른 점검운전이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3.3.5 피트에서 탈출

업무수행자가 카 아래 작업구역에 있을 때,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2.2에 따라 작업구역을 쉽고 안전하게 빠져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3.4 승강로 외부의 작업구역(점검문 및 트랩문) 해당없음 □

가) 승강로내 유지보수 및 점검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3 및 5.6.6에 따라 점검문 및 트랩문을 통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점검문 및 트랩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6.1 및 5.6.6.2에 따라 카의 운행에 간섭되지 않으며, 특수한 열쇠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열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점검문 및 트랩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6.3 및 5.5.10에 따라 기계적으로 잠기는 구조이며, 전기적으로 제어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3.5 승강로 외부 설비 해당없음 □

가) 제어반, 구동기 등 설비의 일부분이 승강로 외부에 설치된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4.2에 따라 제작된 캐비닛의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4.2에 따라 캐비닛의 개구부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5.3.6 점검운전 해당없음 □

점검운전 조작반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7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4 주행안내 레일

5.4.1 일반사항

카 지지/안내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1.1에 따라 승강로 벽의 내부 표면과 플랫폼의 출입구 부품간의 수평 틈새가 20 ㎜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4.2 주행안내 레일

주행안내 레일, 주행안내 레일 이음부 및 부속품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1.4에 따라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는지 확인한다.

예 ■

5.5 승강로 및 카

5.5.1 일반사항

5.5.1.1 상부틈새 예 ■

카가 최상부 기계적 정지장치와 접할 때,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 및 5.10.2에 따라 카의 바닥과 상부 장애물 사이의 여유틈새는 2 m 이상인지 확인한다.

5.5.1.2 승강로 내 작업자에 대한 위험성

가) 승강로 내 갇힌 업무수행자를 위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 및 5.10.3에 따라 설치된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승강로 내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 및 5.10.3에 따라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와 관련 없는 설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5.2 밀폐식 승강로 해당없음 □

5.5.2.1 경첩이 부착된 승강장문

경첩이 부착된 승강장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2.1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며, 승강로 내부로 열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5.5.2.2 승강장문의 구조

가) 승강장문 상·하, 좌·우 틈새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4.4에 따라 6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장문 끝부분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4.5에 따라 끼이거나 이탈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다) 단차로 램프가 설치되어야 하는 출입구의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4.6에 따라 램프의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5.5.2.3 승강장문의 잠금

가)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5.1에 따라 정상 운전 시 카가 승강장문턱에서 50 ㎜ 이상 이동할 때 승강장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5.6에 따라 잠금 효력이 감소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5.9에 따라 보호되고, 점검창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5.2.4 비상잠금해제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6에 따라 비상

해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5.2.5 문 작동 중의 보호

자동으로 열리는 승강장문의 경우, 승강장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7.3에 따라 5초 이상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5.2.6 감지날, 포토셀 또는 광커튼

가) 감지날, 포토셀 또는 광커튼의 작동 시 정지거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2.2 및 5.9.2.3에 따라 카가 충돌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의 감지날, 포토셀 또는 광커튼과 승강로 내벽 사이, 또는 카와 승강장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2.4에 따라 20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5.5.2.7 토가드

토가드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5.5.2.8 카 바닥 미끄럼 방지 및 색상

카의 바닥재와 색상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5.5.2.9 운전반

카내 운전반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6 및 5.5.15.1에 따라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5.2.10 카내부 손잡이

카 내부 손잡이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7에 따라 적합한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5.2.11 접이식 의자 해당없음 □

접이식 의자가 설치된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9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5.5.3 비-밀폐식 승강로 해당없음 □

5.5.3.1 승강로 벽의 구조

가) 카의 플랫폼 가장자리에서부터 400 ㎜ 이내에 물체가 있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4.1에 따라 연속적인 수직면 형상이고, 경질재료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카의 어느 부분에서부터 120 ㎜ 이내에 위치한 물체의 함몰 또는 돌출부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4.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운전상 목적으로 필요한 홈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5에 따라 전단 또는 협착의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예 ■

5.5.3.2 승강로 출입구

5.5.3.2.1 승강장문

승강장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2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6.3.2.2 승강장문의 구조

가) 승강장문 끝부분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4에 따라 끼이거나 이탈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장문의 하,좌,우 틈새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4.2에 따라 6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다) 단차로 램프가 설치되어야 하는 출입구의 경우, 램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4.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5.5.3.3 승강장문의 잠금

가)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5에 따라 정상 운전 시 카가 승강장 문턱에서 50 ㎜ 이상 이동시 승강장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5에 따라 잠금 효력이 감소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5에 따라 보호되고, 점검창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5.3.4 비상잠금해제

출입문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6에 따라 비상 해제되는지 확인한다.

예 ■

5.5.3.5 문 작동 중의 보호 해당없음 ☐

자동으로 열리는 승강장문의 경우, 승강장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7.7에 따라 5초 이상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5.3.6 카의 구조

가) 감지날, 포토셀 또는 광커튼의 작동시 정지거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2.2 및 5.9.2.3에 따라 카가 충돌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의 감지날, 포토셀 또는 광커튼과 승강로 내벽 사이, 또는 카와 승강장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2.4에 따라 20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다) 토가드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카의 바닥재와 색상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마) 카내 운전반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6 및 5.5.15.1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카 내부 손잡이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5.5.3.6 카 출입구 보호

5.5.3.6.1 전락방지

카의 최하부 승강장 측에 설치된 휠체어 전락방지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5.5.3.6.2 안전 날개판 해당없음 ☐

가) 안전 날개판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2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안전 날개판의 경사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4.6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5.5.3.6.3 방호울 해당없음 ☐

가) 방호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3.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방호울의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3.3에 따라 정상 운전 시 카가 승강장 문턱에서 50 ㎜를 초과하여 이동하면 열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방호울의 잠금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3.6에 따라 방호울이 처지더라도 잠금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5.5.3.7 카 출입구 이외의 모서리

5.5.3.7.1 행정이 500 ㎜ 이하인 카 해당없음 □

전 행정에 걸쳐 인접한 벽면이 없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10.1에 따라 탑승방향이 아닌 카의 측면은 카 바닥에서 높이 75㎜ 이상의 전락방지용 방호물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5.3.7.2 행정이 500 ㎜ 초과 2,000 ㎜ 이하인 카 해당없음 □

전 행정에 걸쳐 인접한 벽면이 없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10.2에 따라 탑승방향이 아닌 카의 측면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3.1에 따른 고정된 방호울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5.3.8 카 하부 마감 및 보호 해당없음 □

가) 카 하부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11.1에 따라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감지날 또는 감지면 작동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11.2 및 5.10.11.3에 따라 카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감지날 또는 감지면 작동 후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11.2에 따라 운행 반대방향으로 운전 조작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5.6 카 운전장치

5.6.1 운전장치

5.6.1.1 일반사항

가) 모든 승강장과 카에 설치된 운전장치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내 운전장치 및 승강장 호출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2, 5.5.14.3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카의 기동 전 시간지연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4에 따라 1초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5.6.1.2 무선 운전장치 해당없음 □

가) 무선 운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6.1에 따라 1대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에 대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무선 운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6.1에 따라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근처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7 추락방지안전장치 및 과속조절기

5.7.1 추락방지안전장치

가) 추락방지안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1 및 5.4.8.2.3에 따라 카를 정지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작동된 추락방지안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1에 따라 로프나 체인의 이완 또는 카의 하강 움직임으로 인해 복귀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카의 기울기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3.8에 따라 5° 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추락방지안전장치의 복귀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3 및 5.4.6.1.3.6에 따라 카를 상승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복귀 후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추락방지안전장치로의 접근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4에 따라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5.7.2 과속조절기 해당없음 □

과속조절기 또는 기타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2.1에 따라 과속조절기 작동 속도에 도달할 때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5.8 구동방식

5.8.1 동력전달장치 해당없음 □

가) 동력전달 장치의 상태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동력전달 체인 또는 벨트의 파단 및 이완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4 및 5.4.1.5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5.8.2 랙-피니언 구동방식 해당없음 □

5.8.2.1 일반사항

구동 또는 안전 피니언과 치차모양 랙 사이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1에 따라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2.2 구동 피니언 해당없음 □

구동 피니언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3에 따라 언더컷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 ■

5.8.2.3 랙

랙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4.1에 따라 단단히 부착되어 있으며, 랙의 이음부는 잘못된 맞물림 또는 치차에 대한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2.4 랙-피니언의 맞물림

가) 랙과 구동 및 안전장치 피니언을 물리도록 하는 수단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5.1에 따라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랙과 피니언을 물리도록 하는 수단의 고장에 대비하여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5.2에 따라 추가적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랙의 폭이 완전한 형태의 피니언 치차와 항상 수평으로 맞물리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5.3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랙의 폭이 피니언 치차와 수평으로 맞물리도록 하는 수단의 고장 시 랙의 폭 90% 이상을 피니언 치차와 수평으로 맞물리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5.4에 따라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피니언 치차와 랙 치차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5.5에 따라 모든 평면에서 서로 직각인지 확인한다.

예 ■

5.8.3 로프 및 체인 현수 구동방식 해당없음 ☐

5.8.3.1 로프와 체인

가) 로프의 마모 및 파손상태를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2.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로프의 끝 부분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3.2에 따라 카와 평형추 또는 매다는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3.2 도르래, 드럼 및 스프로킷

가) 드럼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4.2에 따라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물 위에 있을 때, 드럼에 1.5권 이상의 로프가 감겨져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체인과 스프로킷의 보호수단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4.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8.3.4 로프와 체인 사이의 장력

가) 장력 조정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5.1 및 5.4.5.5.2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같은 축에 여러 개의 회전 스프로킷이 있는 체인의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5.3에 따라 스프로킷은 독립적으로 회전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8.4 스크류-너트 구동방식 해당없음 ☐

5.8.4.1 추락방지안전장치

가) 추락방지안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3.2에 따라 하강 방향에서만 작동되고, 과속조절기의 작동 속도에서 스크류와 너트 사이의 상대적 회전을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조정 가능한 추락방지안전장치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3.7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8.4.2 안전너트

가) 안전너트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안전너트에 의해 작동되는 전기안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4에 따라 오염 및 진동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4.3 카의 구동

가) 여러 개의 스크류와 너트를 사용하는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2.1에 따라 운행 중인 카가 1% 이상 기울어지면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예 ■

나) 다단으로 이뤄진 스크류 기둥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2.2.1에 따라 분리되지 않도록 기계결합 요소로 조립되고, 스크류 연결부는 잘못된 맞물림 또는 너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구동너트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2.2.3.2에 따라 마모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스크류에 압축 하중을 가하는 카의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2.4.1에 따라 카와 구동너트 사이의 연결은 유연한지 확인한다.

예 ■

마) 스크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2.4.2에 따라 카와 분리되지 않도록 기계결합 요소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5 마찰 견인 구동방식 해당없음 □

가) 견인휠 주행면 또는 금속과 다른 재료 사이의 접합부분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7.1에 따라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레일 주행면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7.2에 따라 견인력에 영향을 주는 오일, 그리스 및 얼음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견인휠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7.3에 따라 견인력이 자동으로 조절되는지 확인한다.

예 ■

5.8.6 유도체인 구동방식 해당없음 □

5.8.6.1 일반사항

가) 체인 등 구동과 관련된 부품사이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8.1.1에 따라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체인 유도 부품 및 체인 보호 부품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8.1.5에 따라 마모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 ■

5.8.6.2 추락방지안전장치

추락방지안전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8.2.3에 따라 카의 하강 방향에서만 작동되고, 과속조절기 작동속도에서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7 팬터그래프식 구동방식 해당없음 □

비고 모든 구동방식에 요구되는 사항은 팬더그래프식 구동방식에도 적용된다.

5.8.8 유압 구동방식 해당없음 □

5.8.8.1 일반사항

가) 로프의 마모 및 파손상태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2.2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로프의 끝 부분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3.2에 따라 카와 매다는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8.2 잭

가) 간접식인 경우, 램 행정의 끝단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4에 따라 램을 멈추게 하는 수단에 의한 감속으로 로프 또는 체인에 이완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나) 잭이 지면의 내부로 연장되는 경우, 잭, 럽처밸브/유량제한기, 럽처밸브/유량제한기와 실린더를 연결하는 고정배관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5에 따라 보호관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잭이 다른 공간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잭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5에 따라 실린더 헤드로부터 새어 나오는 유체를 모으며, 공기배출장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8.3 카와 램(실린더)의 연결

가) 직접식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3.1에 따라 카와 램(실린더) 사이의 연결은 유연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간접식인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3.4에 따라 램(실린더)의 상단부분이 안내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8.4 다단잭 해당없음 □

다단잭이 사용될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4.3 및 5.4.10.4.4에 따라 기계식 또는 유압식 동기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8.5 배관

가) 배관 및 이음 부속품은「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5.1에 따라 적합하게 보호 및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배관(단단하거나 탄력적인)이 벽 또는 바닥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경우, 배관은 보호덮개(ferrules)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8.6 차단밸브, 체크밸브, 릴리브 밸브 및 하강방향밸브

가) 차단밸브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8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체크밸브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9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릴리프 밸브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0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라) 하강방향밸브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5.8.8.7 유압계통 고장에 대한 보호

유압계통 고장에 대한 보호장치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2 및 5.4.10.1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 럽처밸브 ■ 유량제한기 ■ 하강방향밸브와 체크밸브의 조합

예 ■

5.8.8.8 필터

필터 또는 그와 유사한 장치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4에 따라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5.8.8.9 압력계

압력계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5.8.8.10 유압탱크

유압탱크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6에 따라 작동유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탱크 위에 작동유의 특성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8.11 크리핑에 대한 보호

가) 크리핑에 대한 보호를 위한 장치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8.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유압식인 경우, 승강장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8.2에 따라 정전 시에도 닫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5.8.8.12 클램핑 장치 해당없음 ☐

가) 클램핑 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9.2 및 5.4.10.19.3에 따라 하강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해제 및 자동 재-설정은 카의 상승에 의해서만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작동된 클램핑 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9.3.2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서 해제되어야 하며, 클램핑 장치의 해제 및 자동 재-설정은 카의 상승에 의해서만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5.8.8.13 멈춤 쇠 해당없음 ☐

가) 멈춤 쇠 장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가)에 따라 카를 정지시키고, 카를 지지대 위로 올릴 때까지 멈춤 쇠 장치의 수납이 불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각 승강장 지지대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다)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전기식 멈춤 쇠 장치에 공급되는 전원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마)에 따라 구동기가 정지될 때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멈춤 쇠 및 지지대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바)에 따라 카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카가 정지되거나 어떤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여러 개의 멈춤 쇠가 설치된 경우, 카가 하강 운행하는 동안 전원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모든 멈춤 쇠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사)에 따라 각 지지대에서 작동되는 것을 보장하는 예방조치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8.8.14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 해당없음 ☐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은「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1 및 5.4.10.22에 따라 카가 승강장 문턱 아래 최대 20 ㎜까지 연장된 잠금 해제 구간의 하부 한계 내에 있을 때 승강장문의 위치와 관계없이 카를 상승방향으로 작동시키는지 확인한다.

예 ■

5.8.9 2차전지 구동방식 해당없음 ☐

가) 2차전지의 단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4에 따라 단락방지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2차전지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5에 따라 안전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2차전지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6에 따라 제어 및 구동 전동기 회로로부터 분리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라) 카가 충전접점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휴지할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7에 따라 시각 또는 청각적으로 알려 주는지 확인한다.

예 ■

마) 2차전지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9에 따라 기울여도 새지 않는 구조이며, 충전 및 정상운전 시에도 유해한 기체가 방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5.9 전기설비 및 전기기구

5.9.1 절연저항

가) 전동기의 절연저항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5.5.3에 따라 1㏁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조명장치의 절연저항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5.5.3에 따라 1㏁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5.9.2 이동케이블 고정

전력 및 제어용 이동케이블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3에 따라 케이블 연결부에 기계적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양 끝에 단단히 고정되고, 마모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3 접지

접지선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2에 따라 전도체 이외 전기적으로 충전될 수 있는 모든 노출된 금속제 외함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4 전기 식별 표시

단자, 결선장치 및 전기부품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5에 따라 식별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9.5 누전차단기

콘센트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1에 따라 30 mA 이하의

누전차단기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0 전기안전장치

5.10.1 과부하감지 장치 작동감지

가) 과부하감지장치 작동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7에 따라 카가 출발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과부하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7 가)에 따라 청각과 시각적 신호가 발생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과부하감지장치 작동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7 나)에 따라 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거나 문을 열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0.2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감지

해당없음 □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5, 5.4.6.1.3.9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카가 재-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5.10.3 과속감지

해당없음 □

과속조절기가 트리핑 속도에 도달하기 전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전기안전장치는「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2.1에 따라 작동 후 복귀 전까지 카가 기동되지 못하게 하는지 확인한다.

예 ■

5.10.4 과속조절기 로프 파단 및 이완감지

해당없음 □

과속조절기 로프의 파손 또는 과도하게 이완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2.1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가 정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0.5 매다는 장치의 이완감지

해당없음 □

매다는 장치에 이완감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6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주 전동기 및 브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예 ■

5.10.6 안전너트 작동감지

해당없음 □

구동 너트 고장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1.4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전동기와 브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0.7 비상구출운전시 보호

비상운전 중 부주의에 의한 정상운전이 불가능하도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전기안전장치를 사용하여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0.8 클램핑 장치 해당없음 □

클램핑 장치 작동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19.3.3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하강 운행 중인 카가 즉시 정지되고, 카가 하강방향으로 출발되는 것을 방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5.10.9 멈춤 쇠 해당없음 □

멈춤 쇠가 복귀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0.20아)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의 정상적인 하강 운행이 방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0.10 전기안전장치 작동 등에 따른 전원 차단

구동기 전원공급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7.3에 따라 한번의 운전지령이 끝나거나 전원공급장치의 고장 및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면 즉시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예 ■

5.10.11 카에 설치된 정지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5에 따라 카 내부에 쉽게 볼 수 있고, 접근 가능하며, 부주의로 작동시킬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0.12 종점 리미트 스위치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종점 리미트 스위치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6, 5.5.14.7 및 5.5.14.8에 따라 독립적으로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작동 시 카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한다.

종점 리미트 장치 상부 □ 확인 ■ / 하부 □ 확인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상부 □ 확인 ■ / 하부 □ 확인 ■

5.10.13 출입문

출입문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8.5.2, 5.8.5.3, 5.10.7.5에 따라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카가 출발하거나 운행될 수 없도록 전기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0.14 감지날과 감지면

감지날과 감지면 작동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9.2.2 및 5.10.11.2에 따라 구동기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예 ■

5.10.15 방호울

방호울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0.9.3.4에 따라 잠그지 않고 카가 운행될 수 없는지 확인한다.

예 ■

5.10.16 기계적 고정장치

기계적 고정장치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4.1.1 및 5.1.4.2.1에 따라 전기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1 주행성능 측정

5.11.1 정상운행

가) 정격속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5에 따라 전행정방향에서 0.15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착상정확도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2.3가)에 따라 ± 10 ㎜ 이며, 재-착상 정확도는 ± 20 ㎜인지 확인한다.

예 ■

다) 전기안전장치 작동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2.3나)에 따라 정지거리는 20 ㎜ 이하이고, 운전지령 종료 및 주전원 공급장치 고장시에는 50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5.11.2 비상구출운전 해당없음 □

예비 전원 또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카를 승강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2 옥외용 해당없음 □

가) 기계 및 전기부품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1.1에 따라 외부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로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1.2에 따라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배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밀폐된 승강로의 바닥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1.2에 따라 침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3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의 상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모든 승강기부품은 심한 마모 또는 부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승강기부품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예 ■
5.14 그 밖의 표시 등
5.1~5.13에서 규정한 표시 등을 제외한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작동 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가 훼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5.15 자체점검의 확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자체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지적사항]

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기준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6.1 기본제원	
■ 현장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설치위치(호기)	■ 승강기번호
■ 승강기 인증번호	■ 모델명/제품명
■ 정격용량 kg	■ 플랫폼 mm × mm
■ 정격속도 m/s	■ 운행구간
■ 전동기 전원공급	
· 정격전압	· 정격전류

V	A
■ 구동방식	
로프 현수 구동방식	☐ 6.7.1 참조
랙-피니언 구동방식	☐ 6.7.2 참조
체인 현수 구동방식	☐ 6.7.3 참조
스크류-너트 구동방식	☐ 6.7.4 참조
마찰 견인 구동방식	☐ 6.7.5 참조
유도체인 구동방식	☐ 6.7.6 참조
2차전지 구동방식	☐ 6.7.7 참조
■ 플랫폼 방식	
복합형(입석식 + 좌석식)	☐ 6.4.3.1 참조
좌석식	☐ 6.4.3.2 참조
입석식	☐ 6.5.3.3 참조
휠체어용	☐ 6.5.3.4 참조

■ 옥외 설치 해당없음 ☐

위의 모든 사항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 ■

6.2 일반사항

6.2.1 전용전원

주개폐기 차단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에 따라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움직임이 방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6.2.2 기계안전

가) 제어반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에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업무수행자 보호를 위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1에 따라 틈새 및 안전거리 확보 등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보호수단을 고정하는 부품은「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1에 따라 보호수단 제거 후에도 보호수단 또는 기계장치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권상도르래, 풀리 및 스프로킷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7 및 5.4.7.4에 따라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끼임, 절단, 이탈 및 휠이나 풀리를 타고 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4 및 5.4.9.5에 따라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2.3 조도 및 콘센트

가) 콘센트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승강장 조도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7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6.2.4 비상구출 운전장치

가) 비상구출 운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수권조작이 이뤄지는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 및 6.6.2에 따라 제작 및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예비전원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비상운전을 하는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계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경우, 전동기능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비상운전 상태에서도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마) 단계별 비상 수동 운전지침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6.1에 따라 제어반 내에 표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2.5 진입 보호대

탈착 또는 접을 수 있는 진입 보호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7.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6.2.6 경고 및 표시

가) 경고문 등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1에 따라 제작되고,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2, 6.2, 6.3, 6.4 및 6.5에 따라 부착 및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운전설명서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6.8에 따라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3 주행안내 레일

6.3.1 일반사항

가) 레일 종단정지장치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3에 따라 주행안내 레일 끝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전체 운행을 볼 수 없는 곡선 레일인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6.2에 따라 카가 움직이기 전에 청각과 시각적 신호가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6.3.2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

해당없음 □

가) 전동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 운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2.4 및 5.2.2.7에 따라 지속적 누름 제어방식이고, 레일의 접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전동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2.5에 따라 비상 시 수동으로 접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전동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 작동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2.6 및 5.2.2.7에 따라 기기 손상 및 이용자의 위험이 없으며, 청각신호 및 접히는 부분 위 또는 근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각적 안내신호가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4 카-일반사항

6.4.1 운전장치

6.4.1.1 일반사항

가) 모든 승강장 및 카에 설치된 운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1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내부에서의 운전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2에 따라 승강장 운전보다 우선 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카에 설치된 잠금장치가 있는 ON/OFF 스위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3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라) 운전장치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4 및 5.5.14.5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6.4.1.2 무선 운전장치 해당없음 □

가) 무선 운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1에 따라 1대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에 대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무선 운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3에 따라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근처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무선 운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3.5에 따라 카가 주행하는 전 구간에서 유효한지 확인한다.

예 ■

6.4.2 비상통화장치 및 경고 신호

가) 비상통화장치와 비상경보장치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6.1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정전 시에도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6.1.2에 따라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경보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전체 운행을 볼 수 없는 곡선 레일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6.2에 따라 청각과 시각적 신호장치가 설치되고, 이 신호는 카가 움직이기 전에 경고 신호가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예 ■

6.4.3 카

6.4.3.1 복합형 플랫폼의 카 해당없음 □

가) 손잡이로 사용하기 위한 카의 일부 또는 모서리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1.2에 따라 카의 전 행정구간에서 손이 끼이지 않도록 100 ㎜ 이상 틈새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주행 구간에서의 최소 틈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1.3에 따라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4.3.2 좌석식 플랫폼의 카 해당없음 □

6.4.3.2.1 일반사항

가) 좌석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보호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1에 따라 펼쳐진 위치에 있지 않으면 카에 장착된 제어장치에 의해 카의 운행이 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이용자가 사용가능한 안전벨트 또는 안전 구속장치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6.4.3.2.2 이동식 또는 회전식 의자 해당없음 □

가) 이동식 또는 회전식 의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4.1에 따라 완전히 작동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카가 기동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수동 이동식 또는 회전식 의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4.2에 따라 완전히 작동된 위치에서 기계적 잠금장치로 고정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전동 이동식 또는 회전식 의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4.3에 따라 자기유지형 또는 브레이크에 의해 완전히 작동된 위치에서 고정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6.4.3.2.3 의자 바닥 수평장치

의자 바닥의 기울기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6에 따라 전체 운행구간에 걸쳐 수평에서 ± 5° 이내인지 확인한다.

운행중 기울기 _____ 예 ■

6.4.3.3 입석식 플랫폼의 카 해당없음 □

가) 플랫폼에 손잡이와 지지대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1.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플랫폼의 표면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1.2에 따라 미끄럼 방지 소재로 마감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추락보호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2에 따라 하강운행 방향 쪽에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추락보호대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3에 따라 펼쳐진 위치에 있지 않으면 카가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6.4.3.4 휠체어용 플랫폼의 카 해당없음 □

6.4.3.4.1 일반사항

카의 바닥재와 색상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6.4.3.4.2 램프와 토가드

가) 플랫폼에 접근하는 모든 끝부분의 램프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5.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올려진 램프의 높이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5.2에 따라 펼쳐진 플랫폼 바닥 위로 100 ㎜ 이상이고, 플랫폼이 아래층에 착상될 때까지 올려 진 위치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플랫폼의 출입측 이외의 모서리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5.3에 따라 펼쳐진 플랫폼 바닥 위로 75 ㎜ 이상 말아 올려 진 토가드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4.3.4.3 플랫폼 측면 보호

가) 레일에 인접한 플랫폼의 측면 패널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6.1에 따라 펼쳐진 플랫폼 바닥 위로 1,000 ㎜ 이상까지 견고한 구조로 연장되고, 길이가 플랫폼 측면만큼 연장되지 않은 경우, 5.6.4.5.3에 따라 토 가드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카 내부 손잡이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6.2에 따라 펼쳐진 플랫폼 바닥 위로 800 ~ 1,000 ㎜ 사이 플랫폼 측면에 설치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카 내부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카의 측면판으로부터 30 ㎜ 이상 틈새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가) 맞은편 측면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6.3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6.4에 따라 수동식 추락보호대는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6.4.3.4.4 추락보호대와 램프의 잠금장치

가) 모든 추락보호대와 램프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7.2에 따라 플랫폼이 펼쳐졌을 때, 상승방향 추락보호대를 제외한 펼쳐진 추락보호대와 올려 진 램프를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잠그는 잠금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예 ■

나) 추락보호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8.1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에서 플랫폼이 승강장에서 높이가 50 ㎜ 이상이 되거나, 승강장에서 레일을 따라 이동한 거리가 150 ㎜ 이상일 때 여는 것이 불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다) 추락보호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8.2에 따라 회로를 개방하는 접점 소자들 중 하나와 기계식으로 잠기는 장치 사이의 연결은 확실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해 잠금 해제가 될 수 없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추락보호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8.3에 따라 잠금요소와 그것들의 고정장치는 충격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마) 추락보호대 잠금요소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8.4에 따라 추락 보호대 열림 방향의 힘에 잠금효과가 약화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바) 잠금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8.5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시 고의적인 오용 및 접근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사) 추락보호대와 램프가 펼쳐진 위치에 있지 않으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3.2, 5.6.3.3 및 5.6.4.8.6에 따라 카가 기동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6.4.3.4.5 비상해제

잠금장치 비상해제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9에 따라 플랫폼 또는 승강장에서 전용 공구 또는 그와 동등한 장치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해제되는지 확인한다.

예 ■

6.4.3.4.6 좌석

좌석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12에 따라 휠체어 플랫폼은 앉아있는 사람 전용이며, 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접이식 의자인 경우,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예 ■

6.4.3.4.7 승강장에서의 운전

승강장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카의 전체 운행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13에 따라 펼쳐진 상태의 플랫폼을 승강장에서 운전하지 못하는지 확인한다.

예 ■

6.5 감지날 및 감지면

6.5.1 일반사항

가) 감지날과 감지면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5.1, 5.6.2.5.2 5.6.3.5 및 5.6.4.10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감지날과 감지면이 작동하면「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5.3에 따라 카가 정지되며, 장애물 제거를 위한 운행방향 반대방향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다) 감지날과 감지면이 작동 시 정지거리는「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5.4에 따라 카가 고정된 부분에 충돌하기 전에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6.5.2 안전도색

이용자나 다른 사람과의 충돌 우려가 있는 카의 모든 부위는「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5.6에 따라 안전도색, 보호패드 또는 보호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6 추락방지안전장치 및 과속감지기

6.6.1 추락방지안전장치 해당없음 □

가) 추락방지안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1에 따라 카를 정지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작동된 추락방지안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3 및 5.3.3에 따라 작동된 로프나 체인의 이완 또는 카의 하강 움직임으로 인해 복귀되지 않고, 카의 상승 운전에 의해 복귀되는지 확인한다.

예 ■

다)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카의 기울어짐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1.7에 따라 좌석식인 경우 10°, 입석식 및 휠체어용의 경우 5°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라) 추락방지안전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4에 따라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6.6.2 과속감지기 해당없음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6에 따라 과속감지기는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키고,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6.6.3 회전감지기 해당없음 □

가) 회전감지기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7에 따라 과속감지기의 회전이 중단된 경우, 10초 이내에 전동기와 브레이크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예 ■

나) 회전감지기 작동 후 카의 운행은「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7에

따라 방향지시 버튼의 해지와 재-작동으로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6.7 구동방식

6.7.1 로프 현수 구동방식

해당없음 □

가) 로프 장력 조정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1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카가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2에 따라 드럼에 1.5바퀴 이상의 로프가 항상 감겨져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다) 로프의 마모 및 파손상태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1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6.7.2 랙-피니언 구동방식

해당없음 □

가) 랙과 피니언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2에 따라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랙의 접합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5.2에 따라 물림이 잘못되거나 치차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렬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6.7.3 체인 현수 구동방식

해당없음 □

가) 체인 장력조정 장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3에 따라 적합 한지 확인한다.

예 ■

나) 체인의 끝부분 및 중간부분 연결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6.3에 따라 확실하고, 잘못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 ■

6.7.4 스크류-너트 구동방식

해당없음 □

스크류 오염방지 수단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7.4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7.5 마찰 견인 구동방식

해당없음 □

레일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8.1에 따라 오일, 그리스 및 얼음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

6.7.6 유도로프-볼 구동방식 해당없음 ☐

로프의 마모 및 파손상태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4.1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6.7.7 2차전지 구동방식 해당없음 ☐

가) 2차전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2에 따라 기울여도 새지 않는 구조이며, 충전 및 정상운전 시에도 유해한 기체가 방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 ■

나) 2차전지의 단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5에 따라 단락방지를 위해 물리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다) 2차전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6에 따라 안전한 위치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라) 2차전지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7에 따라 제어 및 구동 전동기 회로로부터 분리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 ■

마) 카가 충전접점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휴지하고 있을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2.9에 따라 시각 또는 청각적으로 알려주는지 확인한다.

예 ■

6.8 전기설비 및 전기기구

6.8.1 전동기 절연저항

전동기 절연저항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5에 따라 1㏁ 이상인지 확인한다.

예 ■

6.8.2 정지 후 재-기동 시간

카 정지 후「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7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지 재-기동시 1초 이상의 시간지연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8.3 이동케이블 고정

가) 전력 및 제어용 이동케이블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9.3.1에 따라 케이블 연결부에 기계적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양 끝에 단단히 고정하고, 마모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이동케이블을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너트와 나사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9.5에 따라 다른 부품을 고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 ■

6.8.4 접지

접지선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9.6에 따라 전도체 이외 전기적으로 충전될 수 있는 모든 노출된 금속제 외함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8.5 누전차단기 해당없음 □

대지전압 50V 초과하는 모든 전기회로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1에 따라 정격 차단 전류가 30 mA 이하인 누전차단기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8.6 보호등급

제어반과 전기 안전장치의 충전부 덮개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4.1에 따라 클램핑 장치가 부착되고 탈착 시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경우 열쇠 또는 특수한 공구로 고정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예 ■

6.9 전기안전장치

6.9.1 과부하감지장치 작동감지

가) 과부하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8.2에 따라 카가 정상적인 출발이 방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나) 과부하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8.2에 따라 청각과 시각적 신호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9.2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 접근방지 해당없음 □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에 접히는 부분의 접근방지 조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2.2.3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 ■

6.9.3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감지 해당없음 □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5에 따라 카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6.9.4 안전너트 작동감지 해당없음 □

안전너트 작동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3.8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구동기의 기동이 방지되거나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6.9.5 동력전달장치, 매다는 로프 또는 체인 이완(파단)감지 해당없음 □

동력전달 장치, 매다는 로프 또는 체인의 이완 또는 파단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1.4, 5.4.1.5 및 5.4.1.6에 따라 카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6.9.6 비상구출 운전 시 보호 해당없음 □

수권조작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3에 따라 비상운전 중 부주의에 의한 정상운전이 불가능하도록 전기안전장치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9.7 유도로프 파단, 이완감지 해당없음 □

유도로프 파단 및 이완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9.1 및 5.4.9.4에 따라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6.9.8 카에 설치된 비상정지스위치

카 내부에 설치된 비상정지스위치가 작동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4.1에 따라 카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6.9.9 종점 리미트스위치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종점 리미트 스위치 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작동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5.15.1 및 5.5.15.2에 따라 카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6.9.10 감지날과 감지면

감지날과 감지면 작동 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5, 5.6.2.5.3 및 5.6.4.10에 따라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가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예 ■

6.9.11 의자 바닥 수평장치

의자 바닥 기울기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6에 따라 수평에서 ±10° 도달하기 전 카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예 ■

6.9.12 추락보호대와 램프

모든 추락보호대와 램프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4.7.1에 따라 다음과 같지 않을 경우 카 운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1) 플랫폼이 펼쳐져 있을 때 모든 추락보호대는 펼쳐져야 하고, 램프는 완전히 올려져야 한다.

예 ■

2) 플랫폼이 위로 접혀 있을 때 모든 추락보호대는 접혀져야 한다. 이 위치에서

램프는 안전하고 적합하게 위치하여야 한다.

예 ■

3) 하강 방향 추락보호대는 아래 승강장에서 멀어지는 플랫폼의 움직임에 의해 작동될 수 있으며, 플랫폼이 아래 층으로 복귀할 때까지 내려진 위치에서 유지해야 한다.

예 ■

6.10 주행성능 측정

6.10.1 정상운행

가) 착상정확도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2, 5.6.3.4 및 5.6.4.5.1에 따라 좌석식 및 입석식의 경우, 승강장 바닥 위와 발 받침대 표면 사이 거리는 170 ㎜ 이하이고, 휠체어용의 경우, 램프의 앞 끝에서 단차가 15 ㎜ 이하인지 확인한다.

예 ■

나) 좌석식 및 입석식인 경우, 주행 중 발 받침대와 가장 근접한 계단 돌출부와의 틈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6.2.2 및 5.6.3.4에 따라 400 ㎜ 이하인지 확인한다.

해당없음 □ 예 ■

6.10.2 정지거리

구동기 전원공급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4.2.1, 5.5.3.3 및 5.5.13.4에서 운전지령이 종결되거나 전원공급장치의 고장 및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면 즉시 차단되며, 전원공급 차단 시 정지거리를 확인한다.

정지거리 _____ 예 ■

6.11 옥외용

해당없음 □

기계 및 전기부품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5.1.110에 따라 외부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1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의 상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모든 승강기부품은 심한 마모 또는 부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승강기부품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예 ■

6.13 그 밖의 표시 등

6.1~6.12에서 규정한 표시 등을 제외한 모든 라벨, 주의사항, 표시, 작동 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가 훼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6.14 자체점검의 확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자체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지적사항]

[별표 3]

수시검사기준(제11조제3항제2호 관련)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 수시검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계실의 크기 등 변경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없음' 처리한다.

2. 승강기를 구성하는 모든 승강기부품은 심한 마모 또는 부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승강기부품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3.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별표 4]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

※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 승강기 정밀검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계실의 크기 등 변경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없음' 처리한다.

2.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검사항목
가. 엘리베이터	1) 제어반(열화상태) 2) 구동기(권상능력) 3) 전동기(운전 및 절연상태) 4) 유압유니트(운전상태) 5) 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6) 비상정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7) 럽처밸브(제동력 및 감속도) 8) 상승과속방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9) 개문출발방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10) 릴리프밸브(압력) 11) 카문 및 승강장문(문닫힘 속도 및 운동에너지)
나. 경사형 엘리베이터	1) 제어반(열화상태) 2) 구동기(권상능력) 3) 전동기(운전 및 절연상태) 4) 유압유니트(운전상태) 5) 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6) 비상정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7) 럽처밸브(제동력 및 감속도) 8) 상승과속방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9) 개문출발방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10) 릴리프밸브(압력) 11) 카문 및 승강장문(문닫힘 속도 및 운동에너지)
다. 에스컬레이터	1) 제어반(열화상태) 2) 전동기(운전 및 절연상태) 3) 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4) 보조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5) 핸드레일(디딤판과의 공차속도 및 장력상태)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1) 제어반(열화상태) 2) 구동기(권상능력)

	3) 전동기(운전 및 절연상태) 4) 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5) 비상정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6) 럽처밸브(제동력 및 감속도) 7) 릴리프밸브(압력)
마.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1) 제어반(열화상태) 2) 전동기(운전 및 절연상태) 3) 유압유니트(운전상태) 4) 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5) 럽처밸브(제동력 및 감속도)
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제어반(열화상태) 2) 전동기(운전 및 절연상태) 3) 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3. 승강기를 구성하는 모든 승강기부품은 심한 마모 또는 부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승강기부품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비고 검사자는 승강기의 운행 및 정지를 반복할 때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분석하여 승강기의 승차감을 진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가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승강기 안전성 평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승강기안전인증번호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 ] 기타

승강기 안전인증 내용	제품명(승강기의 종류)	승강기안전인증번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구분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설계변경 내용	[ ]부품의 추가 설치 *(필요시 별지 사용)* : [ ]그 밖의 변경 *(필요시 별지 사용)*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성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1. 변경된 승강기의 설계도면 1부 2. 설계가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성이 승강기 안전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자체 평가서 1부 3.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기준 1부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기술서류(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	수수료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안전성 평가 및 결재	→	안전성 평가서 작성	→	안전성 평가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210㎜× 297㎜[백상지 80g/㎡]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승강기 안전성 평가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 ] 기타	
승강기 안전인증 내용	제품명(승강기의 종류)		승강기안전인증번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구분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설계변경 내용	[ ]부품의 추가 설치 : [ ]그 밖의 변경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성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210㎜× 297㎜[백상지 80g/㎡]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승강기 안전검사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승강기안전인증번호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 ] 유지관리업자, [ ] 관리주체, [ ] 기타

승강기 안전인증 내용	제품명(승강기의 종류)	승강기안전인증번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구분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설계변경 내용	[ ]부품의 추가 설치*(필요시 별지 사용)* : [ ]그 밖의 변경*(필요시 별지 사용)*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검사의 검사특례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승강기 안전성 평가서 사본 1부 2.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기준 1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 · 의결 및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 297㎜[백상지 80g/㎡]

최신 전기관계법령

제 작 자 : 전익표

제작일자 : 2024. 1.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